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4020호

2024. 11. 7.(목)



서울특별시

목 차

◈ 자치법규 등

[입법예고]

제2024-3033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5
제2024-3050호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2
제2024-3051호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8
제2024-3052호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21

◈ 고 시

제2024-524호 관악구 봉천동 945-11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 ····· 25
제2024-525호 동작구 상도동 188-19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승인(변경) 고시 ····· 39
제2024-52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청계천) ····· 41
제2024-527호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42
제2024-528호 온수근린공원(온수체육지구)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00
제2024-529호 도시관리계획(대림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BYC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14
제2024-530호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 고시 ····· 156
제2024-531호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160
제2024-532호 도시철도 역명 제정 확정고시(안) ····· 198
제2024-533호 24년 7차 모아타운 수시공모 대상지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 200
제2024-535호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고시 ····· 214
제2024-537호 도시관리계획(등촌동 365-27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15
제2024-539호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제정 고시 ····· 225

◈ 공 고

제2024-2979호 2024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공표 ····· 297

제2024-2987호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1회차 위반 경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 301
제2024-2988호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303
제2024-2989호 종합건설사업자 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 306
제2024-2995호 시립장사시설 관리비 및 재사용료 독촉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307
제2024-2998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공고 …… 314
제2024-3002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 315
제2024-3004호 종합건설사업자 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 316
제2024-3010호 도시계획시설(시장)사업 공사완료 공고 …… 317
제2024-3014호 도시관리계획(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 319
제2024-3018호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 송달 …… 320
제2024-3021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 329
제2024-3023호 회계직인 등록 및 폐기 공고 …… 330
제2024-3026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 공시송달 …… 331
제2024-3027호 공인등록(청인) 공고 …… 332
제2024-3030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333
제2024-3034호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373
제2024-3035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380
제2024-3036호 도시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하수도(하수종말처리장)]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 434
제2024-3044호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공고 …… 436
제2024-3045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청문조서 열람 · 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 437
제2024-3047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 · 양수 및 법인합병 등록 공고 …… 439
제2024-3049호 공인등록(청인) 공고 …… 440
제2024-3057호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예고 …… 441

◈ 구 고 시

제2024-91호 도시관리계획(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도봉구) …… 565
제2024-98호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강서구) …… 569
제2024-99호 도시관리계획(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강서구) …… 571
제2024-196호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일부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구로구) …… 572
제2024-129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 실효 고시(동작구) …… 574
제2024-2518호 도시관리계획(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강남구) …… 578

제2024-175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공공공지)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강동구) ····· 580
제2024-181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강동구) ····· 587

◈ 구 공 고

제2024-1054호 도시관리계획(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열람공고 (중구) ····· 611
제2024-1369호 버들개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 열람공고(용산구) ····· 613
제2024-1539호 도시계획시설[중화한마당근린공원(가칭)] 조성계획 결정(최초) 주민의견 청취 열람공고(중랑구) ····· 622
제2024-1668호 장위10구역 문화공원(가칭) 조성계획(안) 재열람공고(성북구) ····· 627
제2024-1895호 불광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열람 공고 (은평구) ····· 633
제2024-1552호 도시계획시설(독립문문화공원) 조성계획(변경) 열람공고(서대문구) ····· 645
제2024-158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열람공고(마포구) ····· 651
제2024-196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구로구) ····· 655
제2024-2328호 서울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서초구) ····· 657
제2024-2329호 서울서리풀2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서초구) ····· 661
제2024-2339호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내 소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열람공고(서초구) ····· 665
제2024-2023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송파구) ····· 676

◈ 사업소고시

제2024-31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679
제2024-32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680
제2024-32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680
제2024-32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681
제2024-32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681
제2024-32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682
제2024-32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682
제2024-32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683
제2024-33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683
제2024-33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684
제2024-33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684
제2024-33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685

제2024-33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685
제2024-33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686
제2024-33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686
제2024-33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687

◈ 사업소공고

제2024-316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미래한강본부) ····· 688
제2024-317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수시분)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미래한강본부) ····· 702
제2024-322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부과 공시송달 공고(미래한강본부) ····· 714

◈ 기 타

제2024-431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715
제2024-45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716
제2024-458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717
제2024-461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718
제2024-463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719

자치법규 등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3033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임대료 보조기준 조항의 각 호 금액에 대해 서울시 월세 가격 및 자산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하여 현실적인 주거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세부 금액을 삭제하고, 정부 조직 개편을 반영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정(안 제11조제1항제2호)

나. 서울시 월세(보증금)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이 임대료 보조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현실적인 주거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특정바우처를 임대료 보조기준에 포함함(안 제12조제2항)

다. 약칭 등 그 밖의 자구 정비(안 제3조, 제10조, 제18조, 제20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 · 이메일 · 등기우편 · 온라인

1) 팩 스: 02-768-8864

2) 이메일: gpwjd277@seoul.go.kr

3)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복지정책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　　의: 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정책과(☎02-2133-7317)
서울특별시 주택실 주택정책과(☎02-2133-7992)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호 중 “서울특별시”를 각각 “시”로 한다.

제10조제5호 본문 중 “국가·서울특별시·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특별시”를 “국가·시·서울주택도시공사·시”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임대료 보조기준은 시장이 가구규모,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 본문 중 “서울특별시”를 “시”로 한다.

제20조제3항제1호 중 “서울특별시”를 “시”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기관·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 5. (생 략) 6. 서울특별시 자치구	제3조(지원대상) ---------- --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 시---------- ----------.
	1. ~ 5. (현행과 같음) 6. 시 ----------
제10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 “공공부문의 임대주택”이란 국가·서울특별시·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특별시 자치구가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의 적용을 받는 영구임대주택은 제외한다. 6. ~ 9. (생 략)	제10조(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5. ---------- 국가·시·서울주택도시공사·시 ---------- ---------- ----------. ----- ---------- ---------- ---------- --. 6. ~ 9. (현행과 같음)
제11조(임대보증금 대출 및 임대료 보조대상)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공공부문 임	제11조(임대보증금 대출 및 임대료 보조대상) ① ---------- ---------- ----------

대주택 입주자(임대료를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등으로서 국가보훈처에서 저소득자로 인정한 자	2. ---------- ---------- ---------- ---------- 국가보훈부---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임대보증금 대출 및 임대료 보조기준) ① (생 략)	제12조(임대보증금 대출 및 임대료 보조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임대료 보조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② 임대료 보조기준은 시장이 가구규모,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1. 1인 가구에 대하여는 매월 80,000원을 지급한다.	<삭 제>
2. 2인 가구에 대하여는 매월 85,000원을 지급한다.	<삭 제>
3. 3인 가구에 대하여는 매월 90,000원을 지급한다.	<삭 제>
4. 4인 가구에 대하여는 매월 9	<삭 제>

5,000원을 지급한다.	
5. 5인 가구에 대하여는 매월 100,000원을 지급한다.	<삭 제>
6. 6인 이상 가구에 대하여는 매월 105,000원을 지급한다.	<삭 제>
7. 특정바우처 지원 대상과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제18조(임대료 보조대상자의 전·출입 등) 구청장은 연도 중에 제16조에 따라 결정된 임대료 보조대상자가 서울특별시 내 다른 자치구로 전출 또는 전입하는 때에는 임대료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며, 임대료 보조대상자는 전입지에서 임대료 보조금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간의 전출입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임대료 보조대상자의 전·출입 등) ---------- ---------- ---------- 시 ---------- ---------- ---------- ---------- ---------- ----------. ----- ---------- ------.
제20조(임대차 계약종료 전·후 세입자 지원) ①·② (생 략)	제20조(임대차 계약종료 전·후 세입자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조례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저소득층 보증보험료 지원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한다.	③ ---------- ---------- ---------- -----.

1. 계약종료 후 서울특별시 추천으로 보증금을 대출 받은 자 2. (생 략)	1. --------- 시 ---------- ---------- -- 2. (현행과 같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3050호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및 조례 규정 당시와 기능이 달라진 부분 등을 반영하여 행정의 체계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근거조항을 재정비함(안 제9조, 제11조)
나. 공공성이 강한 단지관리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탁규정을 재정비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창조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창조산업과(전화: 02-2133-92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FAX: 02-768-8969
2) 이메일: jwj021@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7층 창조산업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3조 중 “기업,연구소”를 “기업, 연구소”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4항”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10조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있으며,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제13조”를 “있으며,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제13조”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조”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로 한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제12조제3항 중 “민간”을 “공공단체 또는 민간”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를 “담당사무관이 맡는다”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18조 중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세칙으로”를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21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7. (생 략)	제2조(정의) ---------- 뜻은 ----------. 1. ~ 7.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입주자와 계약 등의 관계를 가지고 참여하는 디지털미디어시티 외의 기업,연구소, 교육기관 등에도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 기업, 연구소----------.
제9조(택지의 공급기준) ① 시장이 택지 공급을 하려면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따른다.	제9조(택지의 공급기준) ①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디지털미디어시티의 조기 활성화를 위하여 디지털미디어시티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택지의 공급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
제10조(외국인투자기업 지원) 시장은 디지털미디어시티에 외국	제10조(외국인투자기업 지원) ----------

인 투자기업의 입주 촉진을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하여 개발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제13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 있으며,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제13조---------- -----.
제11조(중소·벤처기업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과 벤처기업의 입주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지정·개발할 수 있다.	제11조(중소·벤처기업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 집적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 집적시설
3.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2조(입주자 지원사업) ①·② (생 략)	제12조(입주자 지원사업)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 및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③ ---------- ---------- ---------- 공공단체 또는 민간--.

제1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4조(구성) ① ---------- ---------- ---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⑤ ---------- ---------- -- 담당사무관이 맡는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회의 등) ① ~ ③ (생 략)	제16조(회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 ----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
제18조(운영세칙) 위원회 관리·운영과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8조(운영세칙) ---------- ---------- -----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
제19조(자문단 운영) ① (생 략)	제19조(자문단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구성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 ----------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 ----------.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시행규칙) ---------- -- 필요한 ----------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3051호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부칙을 신설하여 개정규정 적용 조건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5조제3항제2호 개정규정(서울특별시규칙 제4650호) 시행일(2024. 8. 5.) 이전의 협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서울특별시규칙 제4606호)을 적용(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친환경건물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친환경건물과(전화: 02-2133-35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 · 이메일 · 등기우편 · 온라인
1) 팩 스: 02-2133-1022
2) 이메일: heanyey1@seoul.go.kr
3) 우 편: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협의등에 관한 경과조치) 규칙 제15조제3항제2호 개정규정(서울특별시규칙 제4650호) 시행일(2024. 8. 5.) 이전의 협의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서울특별시규칙 제4606호)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부칙 제2조(변경협의등에 관한 경과조치) 규칙 제15조제3항제2호 개정규정(서울특별시규칙 제4650호) 시행일(2024. 8. 5.) 이전의 협의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서울특별시규칙 제4606호)에 따른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3052호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건축·공간환경 분야 민간전문가인 '공공건축가'와 '마을건축가'를 '공공건축가'로 단일화하고 업무범위를 통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마을건축가' 용어 삭제(안 제6조~제8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건축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건축기획과(전화 : 2133-71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FAX: 02-768-8926
(2) E-mail: pang83@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주택실 건축기획과 (☎ 02-2133-7100)

※ 이 입법예고문 및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공공건축가 및 마을건축가의 모집 방법)”을 “(공공건축가의 모집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공공건축가 및 마을건축가(이하 각각 “공공건축가” 및 “마을건축가””를 “공공건축가(이하 “공공건축가””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공공건축가 및 마을건축가의 행정 지원)”을 “(공공건축가의 행정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공공건축가 또는 마을건축가”를 각각 “공공건축가”로, 같은 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공공건축가 및 마을건축가”를 각각 “공공건축가”로 한다.

제8조 중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및 마을건축가”를 “총괄건축가 또는 공공건축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공공건축가 및 마을건축가의 모집 방법) 조례 제37조에 따른 공공건축가 및 마을건축가(이하 각각 "공공건축가" 및 "마을건축가"라 한다)는 공개모집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제6조(공공건축가의 모집 방법) ---------- --- 공공건축가(이하 "공공건축가"---------- ---------- ---------- ----------.
제7조(공공건축가 및 마을건축가의 행정 지원) ① 공공건축가 또는 마을건축가를 자문기관(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이 설치한 심의회·위원회 등의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래공간담당관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② 미래공간담당관은 자문기관의 심의 분야 등을 고려하여 공공건축가 또는 마을건축가를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건축가 및 마을건축가의 수당 지급 기준, 자문기관에 참석 횟수 등을 추천을 의뢰한 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7조(공공건축가의 행정 지원) ① 공공건축가---------- ---------- ---------- ---------- ---------- ---------- ----------. ② ---------- ---------- 공공건축가---------- ----------. ------- 공공건축가---------- ---------- ---------- ----------.

③ 미래공간담당관은 공공건축가 및 마을건축가의 참여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 공공건축가 ---------- ---------- --.
제8조(세부세칙) 그 밖에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및 마을건축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세부세칙) ----- 총괄건축가 또는 공공건축가 -------- ---------- ----------.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24호

관악구 봉천동 945-11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 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24조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관악구 봉천동 945-11 일원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하며, 같은 법 제26조,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관악구 봉천동 945-11 일원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관악구 봉천동 945-11 일원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945-11번지 일원
○ 면 적 : 1,130.0㎡

2. 촉진지구 지정일 : 2024년 11월 7일

3. 사업의 종류 :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및 건설사업

4. 시행자의 성명 및 소재지
○ 명 칭 : 주식회사 좋은책신사고
○ 대표자 명칭 : 홍 범 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63(마곡동, 새싹타워)
○ 법인등록번호 : 110111-1163437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 물건 및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 토지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행정동	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본번	부번									
1	봉천동	945	11	대	616.6	-	주식회사 좋은책신사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63(마곡동, 새싹타워)	100%	-	-	-
2	봉천동	945	12	대	106.8	-	주식회사 좋은책신사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63(마곡동, 새싹타워)	100%	-	-	-
3	봉천동	945	21	대	103.8	-	주식회사 좋은책신사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63(마곡동, 새싹타워)	100%	-	-	-
4	봉천동	945	22	대	144.8	-	주식회사 좋은책신사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63(마곡동, 새싹타워)	100%	-	-	-
5	봉천동	945	23	대	158.0	-	주식회사 좋은책신사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63(마곡동, 새싹타워)	100%	-	-	-
합계					1,130.0	-	-					

○ 물건조서

- 대상지 내 건축물 및 지장물 3개동은 2002.11.29.멸실, 2019.06.10. 등기기록 폐쇄, 1개동은 2003.10.31.멸실, 2019.06.10. 등기기록 폐쇄로 인한 잔존 건축물 및 지장물은 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 · 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입구역 사거리 일대	573,347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95호 (1996.7.13.)	-

7.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14층 전략주택공급과(☎02-2133-6297) 및 관악구청 본관 6층 건축과(☎02-879-640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함

Ⅱ.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

○ 명 칭 : 관악구 봉천동 945-11번지 일원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945-11번지 일원

○ 면 적 : 1,130.0㎡

○ 공급촉진지구의 지정목적

- 대상지의 위치적 특성과 개발가능성을 고려하여,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의 주거문제 개선을 위해 제정된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을 도입, 사회초년생 · 신혼부부 등의 주거 빈곤 문제를 개선하고, 지역 환경 개선 및 역세권 · 가로변 활성화를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고자 함

2. 시행자의 성명 및 소재지

○ 명 칭 : 주식회사 좋은책신사고

○ 대표자 명칭 : 홍 범 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63(마곡동, 새싹타워)

3. 사업시행기간 및 재원조달계획

○ 사업시행기간 : 지구지정일 ~ 2026년 12월 31일

○ 재원조달계획 : 자기자본

4.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130.0	-	-	100.0	
주거지역	소 계	1,130.0	-	1,130.0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1,130.0	감) 1,130.0	-	0.0	
	준주거지역	-	증) 1,130.0	1,130.0	100.0	

※해당 조서의 해당 사업 용도지역결정조서만 표기하였음

5.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130.00	100.00	
주택건설용지	1,130.00	100.00	

※행정절차 이행시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측량성과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6. 인구 · 주택 수용계획

◯ 계획인구수 : 132인

◯ 세대수 : 92세대

구 분		세대수(세대)	비율(%)	수용인구(인)	비율(%)
공공임대	47A	4	4.35	11	8.05
	47B	6	6.52	16	12.08
	47C	4	4.35	11	8.05
	52	3	3.26	8	6.04
	소 계	17	18.48	45	34.23
SH선매입	23B	2	2.17	2	1.52
	52	2	2.17	5	4.03
	소 계	4	4.35	7	5.55
공공지원민간임대	23A	8	8.70	8	6.08
	23B	46	50.00	46	34.95
	25	8	8.70	8	6.08
	27	4	4.35	4	3.04
	46	1	1.09	3	2.01
	47B	1	1.09	3	2.01
	51	1	1.09	3	2.01
	52	2	2.17	5	4.03
	소 계	71	77.17	79	60.22
합 계		92	100.00	132	100.00

※가구당 인구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적용

7. 교통 · 공공 · 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 : 해당없음

8.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1) 환경보전계획

가. 생태면적 확보

– 사업시행시 대상지 내 생태면적률은 자연지반녹지, 옥상녹화, 투수포장 등을 통한 피복형 유형과 식재형 유형을 적용한 결과 생태면적률은 29.43%로 계획

나. 일조영향 예측 및 저감

– 대상지 북측으로 40m 도로에 접하고 있어 정북일조 고려 대상이 아니나, 공동주택 채광등

의 확보를 위하여 건물높이, 배치계획 등을 수립

다. 오염물질 저감

- 발생 폐기물의 감용, 감량 및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계획지구 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성상별로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성상별(재활용성, 가연성, 불연성)로 보관용기를 설치토록 하며, 관악구와 협의하여 수집·운반 처리토록 할 계획임
- 생활계폐기물은 활동인구에게 지속적인 계몽을 실시하여 폐기물의 감량과 위생적인 분리수거가 가능토록 하고, 분리수거함은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 배출시부터 분리수거를 적극 유도함
- 운영시 음식물쓰레기가 발생될 예정으로 관악구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방침에 의거하여 적정 처리토록 할 계획임

라. 소음·진동 저감

- 공사시 소음저감대책

  : 규제기준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저소음 건설기계나 적정용량의 건설기계를 사용

- 공사시 진동저감대책

  : 공사장비에 의한 진동을 저감하기 위하여 공사강도를 조정토록 하되, 가능한 한 저진동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공사장비 가동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 운영시 소음저감대책

  : 본 계획구역 사업시행시 계획건축물의 주요 용도에 따라 미국냉동공조기술자협회(ASHRAE)의 용도별 소음기준을 참조하여, 이에 부합할 수 있는 차음설계(창호 및 외벽 계획)를 통해 이용객에 대한 교통소음영향을 최소화

2) 보전대상지 설정 및 보전계획

- 본 사업시행에 따른 조경녹지 조성 및 오픈스페이스 공간 마련, 녹지체계 구축 등 환경보전계획을 통해 도심지 내 생태 및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토록 할 계획임

3) 탄소저감계획

가. 녹지계획

- 탄소저감을 위해 사업지구 내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옥상녹화 등)하고, 녹지공간 내 조경식재 시 배기가스에 강하고 환경정화능력이 강한 수종을 식재토록 하여 대기질 정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계획

나. 녹색교통 활성화 유도

- 대상지 내 녹지 및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도로폭원을 적정하게 조성하여 보행, 자전거 등을 통한 녹색교통이 활성화되도록 계획
- 나눔카 등 녹색교통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탄소배출량 저감 유도

다. 저탄소 친환경단지 조성

- 운영시 난방연료 사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물의 열손실방지를 위해 열관류율에 적합한 단열재를 사용하는 등의 저감대책을 수립토록 함

9.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붙임]

[붙임]

1. 도시관리계획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기정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입구역 사거리 일대	573,347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95호 (1996.7.13.)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

가.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573,347.0		573,347.0	100.0	
주거지역	소계	447,500.7		447,500.7	78.1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5,929.4		5,929.4	1.0	
	제2종일반주거지역	3,447.0		3,447.0	0.6	
	제3종일반주거지역	181.428.6	감)1,130.0	180,298.6	31.5	
	준주거지역	256,695.7	증) 1,130.0	257,825.7	45.0	
상업지역	소계	125,846.3		125,846.3	21.9	
	일반상업지역	125,846.3		125,846.3	21.9	

□ 용도지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관악구 봉천동 945-11,12,21, 22,23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130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청년안심주택 건립을 위해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용도지역 변경

□ 용도지구(미관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교통시설 : 변경없음
- 공간시설 : 변경없음
- 유통 및 공급시설 : 변경없음
- 공공 및 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가구 및 획지계획 기준 : 변경없음

□ 가구 및 획지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 최대개발규모 : 변경없음

나.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불허용도계획

– 불허용도 결정조서 : 변경

구 분			불허용도	비 고
기정	U3	전층	– 미관지구 불허용도(미관지구일 경우) – 기숙사 – 운수시설 – 2종근린생활시설중(안마시술소)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취급소, 액화가스취급소,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제외)	준주거지역 (간선가로변)
		1층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철물점	
	U4	전층	– 근린생활시설 중 비디오물감상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 교정시설 – 자동차관련시설(단 주차장, 세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제외) – 학교시설 보호지구인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47조에 해당하는 용도	준주거지역 내부
		1층	– 제조업소, 수리점	

구 분		불허용도	비 고
변경	가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실내경마장 및 이와 유사한 실내사행행위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등 유사 성인전용업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및 다중생활시설 – 위락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제외)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발전시설 – 묘지 관련 시설 – 장례시설 – 야영장시설	

□ 건축물의 불허용도 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	불허용도(U3,U4) 변경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안심주택 건립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불허용도를 결정(변경)하고자 함

□ 건축물의 권장용도계획 : 변경없음

– 권장용도 조서 : 변경없음

□ 건축물의 지정용도계획 : 신설

– 지정용도 결정조서 : 신설

구 분		내용	비 고
신설	1	- 공동주택(주거복합) ※비주거용도 : 지상1층~지상2층	- 청년안심주택 건립을 위해 지정용도 신설

※공동주택은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항 제2호의 청년안심주택에 한하며,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 건폐율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변경사유
건폐율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	준주거지역 : 60%이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촉진지구에서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 준용

□ 용적률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변경사유
용적률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준용적률 : 230% 허용용적률 : 250%	준주거지역 기본용적률 :400%이하 상한용적률 :500%이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촉진지구에서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 준용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2-1에 따라 주거비율 85%이상, 비주거비율 5%이상(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 건축물의 높이계획 : 변경

– 건축물 높이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변경사유
높이	제3종일반주거지역 (남부순환도로변) : 35m이하	준주거지역 60m이하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3-1에 따른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구단위계획에 결정되어있는 최고높이' 는 심의를 거쳐 완화

□ 건축물 배치계획 : 변경없음

–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 건축물의 형태와 색채 등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건축물의 형태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공공기여 계획

구 분		용적률	공공기여 기준	기부채납 면적	비 고
공공임대주택	기본용적률 (부지면적)	400%이하	부지면적의 10.00%이상 (113.00㎡이상)	- 부지면적 기준 113.91㎡ (10.08%) - 공공임대주택 전용면적 : 251.349㎡(5세대)	총 92세대 중 공공임대주택 17세대 계획 : 47A TYPE(4세대), 47B TYPE(6세대), 47C TYPE(4세대), 52 TYPE(3세대) ■ 세대수 - 기본 5세대(5.43%) / 상한 12세대(13.04%) - 총 공공기여 세대수 :17세대(18.48%) ■ 부속토지 - 기본 113.91㎡(10.08%) / 상한 113.19㎡(10.02%) - 총 부속토지 면적 : 227.09㎡(20.10%)
	상한용적률 (연면적)	498.68%이하	완화용적률 1/2이상 (498.68%-400%)/2 =49.34%이상 (557.55㎡이상)	- 부지면적 기준 113.19㎡(10.02%) - 공공임대주택 제공 연면적 :566.97㎡(12세대)	

다.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대지내 공지 및 통로계획 : 변경없음

□ 교통처리계획 : 변경없음

4) 용적률 적용기준(의무사항) : 신설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 colspan="2">적용기준</th><th colspan="2">적용내용</th><th>비 고</th></tr>
<tr><td colspan="2" rowspan="2">공공기여율</td><td colspan="2">• 기본공공기여율 : 부지면적의 10.00% 이상 주1)
- 1,130㎡ x 10.00% = 113.00㎡</td><td>• 기본공공기여 : 113.91㎡(10.08%) [5세대]</td><td rowspan="2">• 총92세대중 공공임대주택 17세대 공공기여</td><td rowspan="5">기본용적률 400% 상한용적률 498.68% 부여

모든 항목을 충족해야함

(관악구 봉천동 945-11일원 청년안심주택에 한함)</td></tr>
<tr><td colspan="2">• 완화용적률(98.68%)의 50% 공공임대주택 제공
- 용적률 : 49.34%이상
- 연면적 :557.55㎡이상</td><td>•추가공공기여 :50.17% [12세대]
-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산정 연면적 :566.97㎡(50.17%) [완화용적률 98.68%의 50% :49.34%]</td></tr>
<tr><td rowspan="2">건축물 용도별 비율</td><td>주거비율</td><td colspan="2">• 85% 이상</td><td colspan="2" rowspan="2">• 주거 : 비주거 = 89.47% :10.53% (용적률 기준)</td></tr>
<tr><td>비주거비율 주2)</td><td colspan="2">• 5% 이상 (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td></tr>
<tr><td>주택건설기준</td><td>주택규모</td><td colspan="2">• 1인가구 : 전용면적 23㎡이상
• 2인 이상 세대 : 전용면적 40㎡이상(2룸이상)권장</td><td colspan="2">• 공공임대 : SH선매입 : 공공지원민간임대
- 세대수 기준 : 18.48% : 4.35% : 77.17%
- 건축물 연면적 기준 : 26.21% : 4.85% : 58.75%

• 공공임대주택 : 17세대
: 47A TYPE(4세대), 47B TYPE(6세대), 47C TYPE(4세대), 52 TYPE(3세대)

• SH선매입 : 4세대
: 23B TYPE(2세대), 52 TYPE(2세대)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71세대
: 23A TYPE(8세대), 23B TYPE(46세대), 25 TYPE(8세대), 27 TYPE(4세대), 46 TYPE(1세대), 47B TYPE(1세대), 51 TYPE(1세대), 52 TYPE(2세대)</td></tr>
<tr><td>건축물 형태</td><td>주거환경 미래지향적조성</td><td>• 2가지 이상 의무 이행
-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 친환경 건축물
- 커뮤니티 지원시설
- 수익형 임차시설</td><td>- 공공시설물 설치
- 서울시 건축물 심의 기준에 규정한 발코니 설치</td><td colspan="2">• 친환경 건축물
• 수익형 임차시설(상생형 임차시설) : 계획 61.134㎡(지상2층)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3-3-라. 건립호수별 커뮤니티시설 면적의 50%이상 : 50㎡이상)</td></tr>
<tr><td>주민 공동시설</td><td>커뮤니티시설</td><td colspan="2">•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3-13-가. 커뮤니티시설 설치면적
- 100호미만 : 100㎡이상</td><td colspan="2">• 259.508㎡ 계획(지상15층)</td></tr>
</table>

주1) 용도지역 변경(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시 부지면적의 10.0%이상
주2) 비주거비율은 용적률 기준으로 함.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개정 2023.07.06.)준용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3. 방재계획

1) 호우재해

- 사업지는 침수재해 발생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나 배수시설물의 유지관리계획을 통하여 사업대상지 내 침수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 공사 시 외부우수의 공사장 내 유입으로 인한 홍수 및 토사유출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침사지, 가배수로, 비닐보호막 등을 설치하여 재해영향을 저감토록 계획
- 운영 시 우수유출 저감을 위하여 저류시설, 침투시설 계획

2) 지진재해

-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건축계획 수립 및 대피시설, 대응시스템 등을 구축
- 지진 등 재난발생 시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정비 실시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 · 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

1) 토지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행정동	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본번	부번									
1	봉천동	945	11	대	616.6	-	주식회사 좋은책신사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63(마곡동, 새싹타워)	100%	-	-	-
2	봉천동	945	12	대	106.8	-	주식회사 좋은책신사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63(마곡동, 새싹타워)	100%	-	-	-
3	봉천동	945	21	대	103.8	-	주식회사 좋은책신사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63(마곡동, 새싹타워)	100%	-	-	-
4	봉천동	945	22	대	144.8	-	주식회사 좋은책신사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63(마곡동, 새싹타워)	100%	-	-	-
5	봉천동	945	23	대	158.0	-	주식회사 좋은책신사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63(마곡동, 새싹타워)	100%	-	-	-
합계					1,130.0	-	-					

2) 물건조서

- 대상지 내 건축물 및 지장물 3개동은 2002.11.29.멸실, 2019.06.10. 등기기록 폐쇄,

1개동은 2003.10.31.멸실, 2019.06.10. 등기기록 폐쇄로 인한 잔존 건축물 및 지장물은 없음

3) 토지취득방법 : 사업시행자 토지 확보 완료

4) 존치건축물의 공작물 처리계획 : 사업부지내 존치건축물, 공작물 등은 전면 철거 후 신축

5.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6.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 : 「주택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거 해당 지자체인 관악구청에서 감리자를 선정하여 감리업무 수행

7.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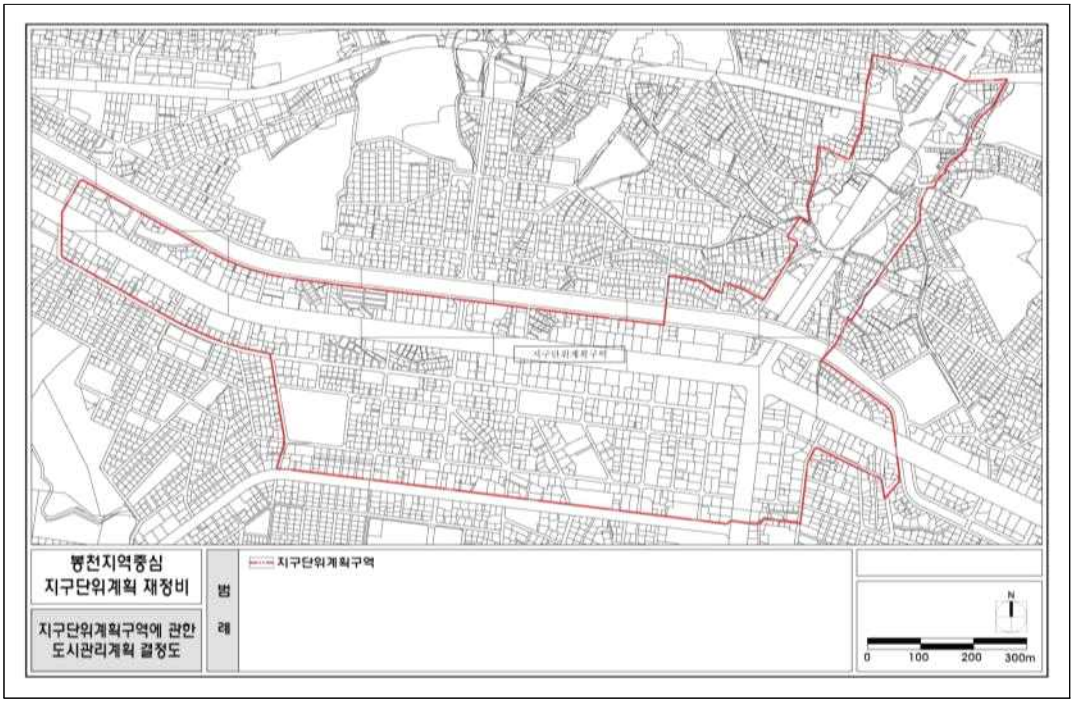
구 분	위 치		공급대상자	공급시기	비 고
	면적(㎡)	구성비(%)			
주택건설용지	1,130	100.0	자체사용	사용승인 이후	
합 계	1,130	100.0			

관계도면 : [붙임]

[공급촉진지구에 관한 결정도(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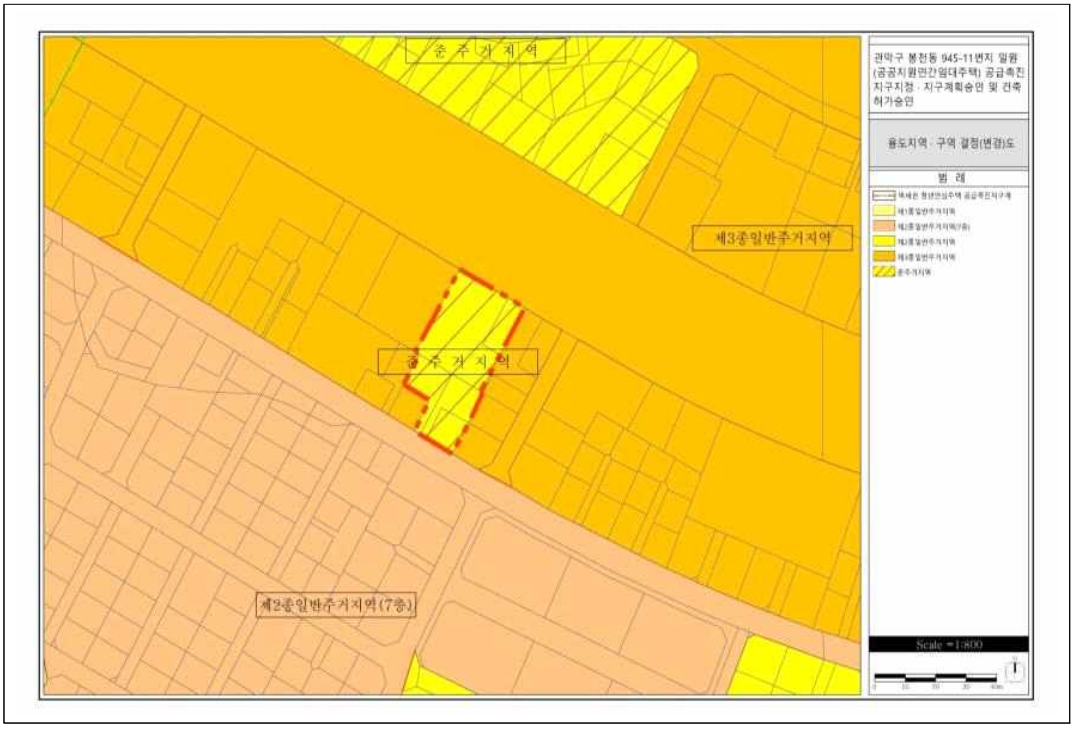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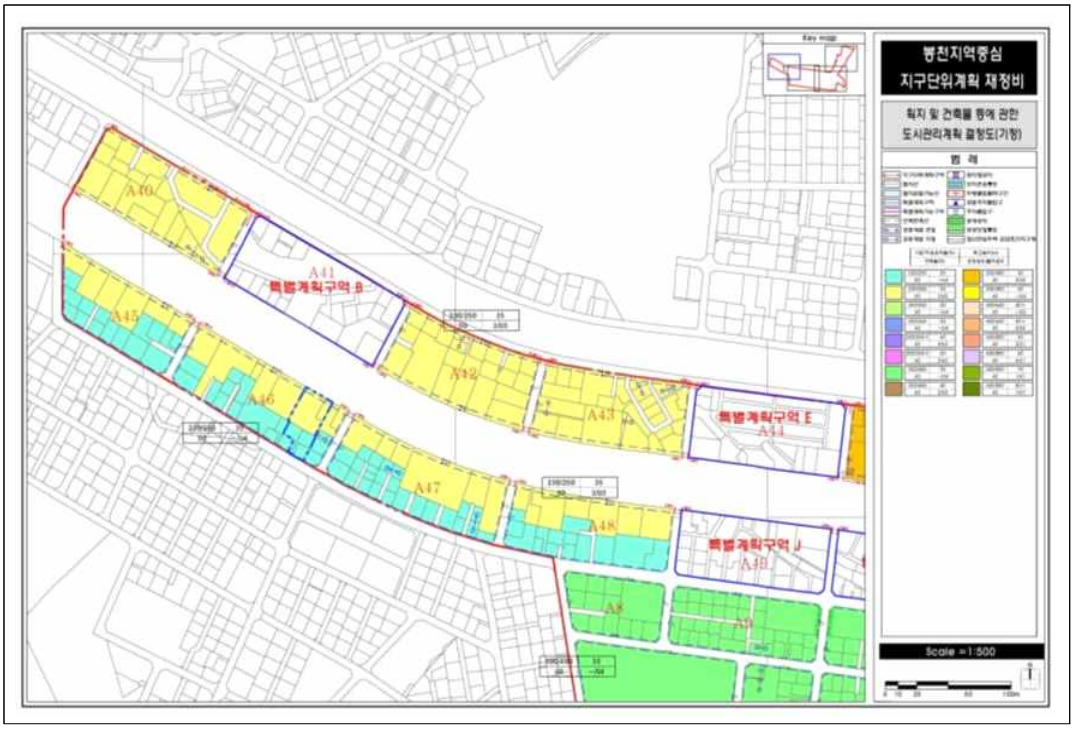
[용도지역 · 지구 등에 관한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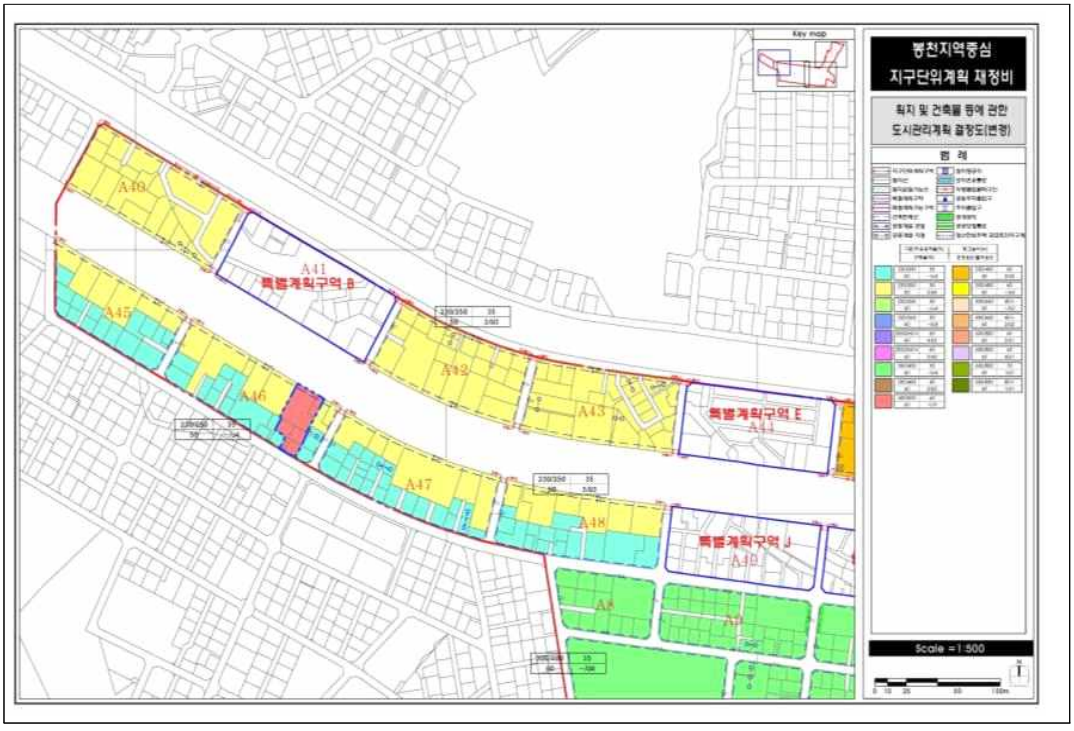
[용도지역 · 지구 등에 관한 결정도(변경)]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25호

동작구 상도동 188-19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승인(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73호(2022.12.01.), 제2023-457호(2023.10.19.)로 승인된 동작구 상도동 188-19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대해 계획 내용 일부 변경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제28조,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승인(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촉진지구 지정일(변경없음)
3.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 기정
  - ○ 명 칭 : 디에스네트웍스청년주택일반사모부동산개발투자회사제2호
  - ○ 대표자 성명 : 디에스네트웍스자산운용 주식회사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88, 12층
  - ○ 법인등록번호 : 110111-8335352
- 변경
  - ○ 명 칭 : 아이앤케이청년주택일반사모부동산개발투자회사제2호
  - ○ 대표자 성명 : 아이앤케이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2730호(여의도동, 원아이에프씨)
  - ○ 법인등록번호 : 110111-8335352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7.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 전략주택공급과(02-2133-6297)와 동작구 3층 건축과(02-820-983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Ⅱ.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변경)

- 기정

○ 명 칭 : 디에스네트웍스청년주택일반사모부동산개발투자회사제2호
○ 대표자 성명 : 디에스네트웍스자산운용 주식회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88, 12층
○ 법인등록번호 : 110111-8335352

- 변경

○ 명 칭 : 아이앤케이청년주택일반사모부동산개발투자회사제2호
○ 대표자 성명 : 아이앤케이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2730호(여의도동, 원아이에프씨)
○ 법인등록번호 : 110111-8335352

3. 사업기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4.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5.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없음)
6.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 : 해당사항 없음
7.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8.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변경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2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청계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하천의 명칭 : 청계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 주　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용두동)
4. 점용의 목적
   - 목　적 : 청계천 연결 산책로 출입 데크 산책로 설치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청계천(성동구 용답동 129-1, 129-4, 171-1)
   - 면　적 : 67.1㎡
5. 점용기간 : 영구점용
6. 최초허가 연월일 : 2024. 10. 28.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27호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04호(2009.3.19.)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67호(2010.7.15.)로 개발계획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113호(2021.3.4.)로 개발계획 (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487호(2021.8.273.)로 개발계획 (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발계획 (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가. 명칭 : 헌인마을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374번지 일대
 나. 면 적 : 132,523.0㎡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가. 노후화된 무허가 가구공장과 주택이 밀집되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재난상존지역으로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여 토지소유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기반시설 확충 및 친환경적 주거단지를 조성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가. 시행자 : 헌인마을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장 왕승만)
 나. 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374-130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식(변경없음)
 가. 사업시행기간 : 2021. 3. 4. ~ 환지처분일
 나. 사업시행방식 :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변 경		비 고
		면적(㎡)	구성비(%)	
총 계		132,523.0	100.00%	
주거용지	소 계	89,555.7	67.58%	
	제1종전용주거지역	28,446.5	21.47%	
	제2종전용주거지역	61,109.2	46.11%	
근린생활시설		2,331.2	1.76%	
기반시설	소 계	40,636.1	30.66%	
	도 로	27,036.5	20.40%	
	주차장	830.4	0.63%	
	공원	7,294.4	5.50%	
	녹지	5,449.4	4.11%	
	가스공급시설	25.4	0.02%	

7. 토지의 명세 및 토지의 세목(변경) : 별첨1

8.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변경)

가. 헌인마을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 수립 도서 「개발계획서 – Ⅲ.부문별 계획 - 구역외 도시기반시설 설치계획」 내용에 포함

9.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가. 도시개발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헌인마을 도시개발구역	서초구 내곡동 374번지 일대	132,523.0	-	132,52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04호 (2009.3.19.)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헌인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초구 내곡동 374번지 일대	132,523.0	-	132,52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04호 (2009.3.19.)	-

다.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1) 용도지역

(1)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계		132,523.0	-	132,523.0	100.0	
주거지역	소계	131,595.3	-	131,595.3	99.3	
	제1종전용주거지역	39,226.8	-	39,226.8	29.6	
	제2종전용주거지역	92,368.5	-	92,368.5	69.7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927.7	-	927.7	0.7	

2) 용도지구 : 해당없음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1)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총괄표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기정	합계	20	2,929 (2,603)	30,630.0 (27,036.5)	5	1,386	16,375.9	3	500 (212)	5,219.4 (2,169.7)	12	1,043 (1,005)	9,034.7 (8,490.9)
기정	중로	2	668 (595)	8,541.3 (7,272.6)	-	-	-	1	89 (54)	1,568.3 (843.4)	1	579 (541)	6,973.0 (6,429.2)
기정	소로	18	2,261 (2,008)	22,088.7 (19,763.9)	5	1,386	16,375.9	2	411 (158)	3,651.1 (1,326.3)	11	464	2,061.7

주) : ( )는 구역내 연장 및 면적임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위치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2	1	15	국지도로	89 (54)	내곡동 374-88	내곡동 1-657	일반도로	-	21.3.4 (서고2021-113)	
기정	중로	3	1	12	국지도로	579 (541)	내곡동 산12-660	내곡동 산12-634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1	1	11	국지도로	550	내곡동 374-44	내곡동 374-10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1	2	11	국지도로	306	내곡동 374-42	내곡동 374-86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2	-	8	-	361 (108)	내곡동 1-1829	내곡동 산12-634	일반도로	-	97.6.23 (서고1997-29)	
기정	소로	1	3	11	국지도로	33	내곡동 374-140	내곡동 374-101	일반도로	-	21.3.4 (서고2021-113)	
기정	소로	1	4	11	국지도로	464	내곡동 374-65	내곡동 374-100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1	5	11	국지도로	33	내곡동 374-60	내곡동 374-44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2	1	8	특수도로	50	내곡동 374-134	내곡동 374-52	보행자도로	-	〃	
기정	소로	3	1	6	특수도로	66	내곡동 374-81	내곡동 1-1912	보행자도로	-	〃	
기정	소로	3	7	6	특수도로	33	내곡동 374-57	내곡동 374-50	보행자도로	-	〃	
기정	소로	3	9	4	특수도로	54	내곡동 374-116	내곡동 374-40	보행자도로	-	〃	
기정	소로	3	2	4	특수도로	71	내곡동 374-101	내곡동 374-25	보행자도로	-	〃	
기정	소로	3	5	4	특수도로	50	내곡동 374-28	내곡동 1-3157	보행자도로	-	-	
기정	소로	3	6	6	특수도로	43	내곡동 374-26	내곡동 374-28	보행자도로	-	〃	
기정	소로	3	3	4	특수도로	31	내곡동 374-11	내곡동 374-10	보행자도로	-	〃	
기정	소로	3	4	4	특수도로	28	내곡동 374-67	내곡동 374-13	보행자도로	-	〃	
기정	소로	3	8	6	특수도로	24	내곡동 374-74	내곡동 374-58	보행자도로	-	-	
기정	소로	3	10	4	특수도로	33	내곡동 374-65	내곡동 374-72	보행자도로	-	〃	
기정	소로	3	11	4	특수도로	31	내곡동 374-66	내곡동 374-155	보행자도로	-	〃	

주) : ( )는 구역내 연장임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	830.4	-	830.4	-	
기정	①	주차장	내곡동 374-19번지 일대	830.4	-	830.4	21.3.4 (서고2021-113)	

2) 공간시설

(1) 녹 지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	-	5,449.4	-	5,449.4	-	
기정	②	녹 지	경관녹지	내곡동 1-722번지 일대	1,764.7	-	1,764.7	21.3.4 (서고2021-113)	
기정	③	녹 지	경관녹지	내곡동 374-76번지 일대	3,684.7	-	3,684.7	21.3.4 (서고2021-113)	

(2) 공 원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	-	7,294.4	-	7,294.4	-	
기정	④	공 원	어린이공원	내곡동 374-20번지 일대	7,294.4	-	7,294.4	21.3.4 (서고2021-113)	

3) 유통 및 공급시설

(1) 가스공급설비

■ 가스공급설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	25.4	-	25.4	-	
기정	⑤	가스공급설비	내곡동 374-63번지 일대	25.4	-	25.4	21.3.4 (서고2021-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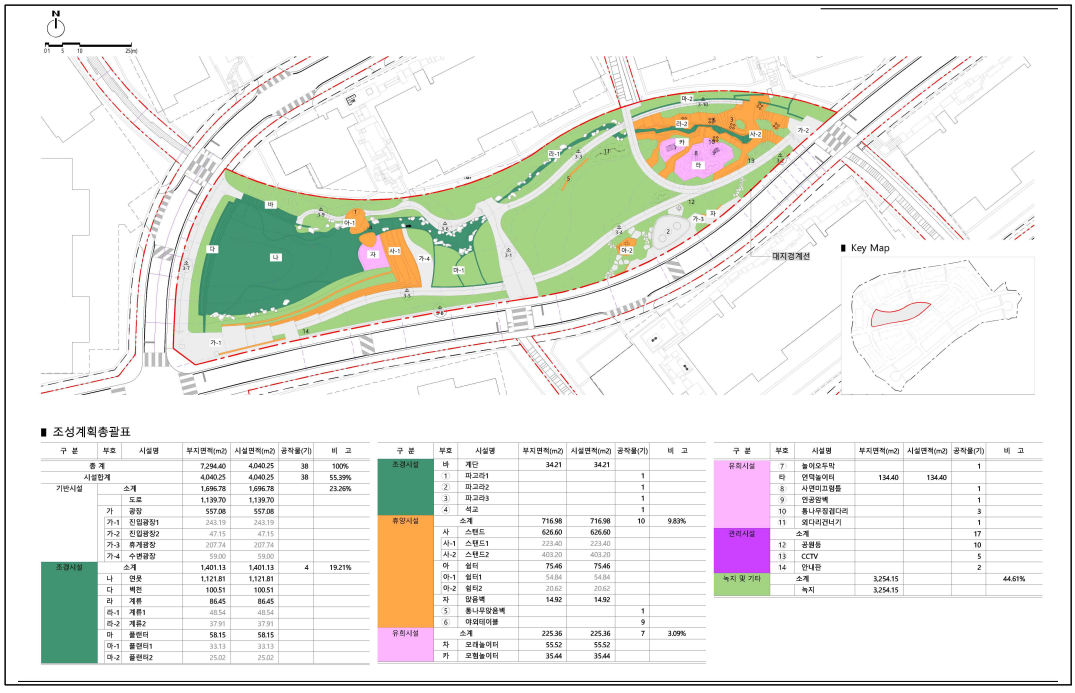
마. 공원조성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신설)

1) 어린이공원

■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총괄표

구 분	시 설 내 용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작물(기)	구성비(%)	비 고
총 계		7,294.40	4,040.25	38	100.0	
기반시설	소계	1,696.78	1,696.78		23.3	
	도로	1,139.70	1,139.70			
	광장	557.08	557.08			
조경시설		1,401.13	1,401.13	4	19.2	
휴양시설		716.98	716.98	10	9.8	
유희시설		225.36	225.36	7	3.1	
교양시설		-			-	
편익시설		-			-	
관리시설		-		17	-	
녹지 및 기타	녹지	3,254.15			44.6	
시설률 (법정 60% 이하)	(4,040.25/7,294.40) x 100 = 55.39%					

■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총괄도



■ 조성계획총괄표

구 분	부호	시설명	부지면적(m2)	시설면적(m2)	공작물(기)	비 고
총 계			7,294.40	4,040.25	38	100%
시설합계			4,040.25	4,040.25	38	55.39%
기반시설		소계	1,696.78	1,696.78		23.26%
		도로	1,139.70	1,139.70		
	가	광장	557.08	557.08		
	가-1	진입광장1	243.19	243.19		
	가-2	진입광장2	47.15	47.15		
	가-3	휴게광장	207.74	207.74		
	가-4	수변광장	59.00	59.00		
조경시설		소계	1,401.13	1,401.13	4	19.21%
	나	연못	1,121.81	1,121.81		
	다	벽천	100.51	100.51		
	라	계류	86.45	86.45		
	라-1	계류1	48.54	48.54		
	라-2	계류2	37.91	37.91		
	마	물레터	58.15	58.15		
	마-1	물레터1	33.13	33.13		
	마-2	물레터2	25.02	25.02		

구 분	부호	시설명	부지면적(m2)	시설면적(m2)	공작물(기)	비 고
조경시설	바	계단	34.21	34.21		
	1	파고라1			1	
	2	파고라2			1	
	3	파고라3			1	
	4	석고			1	
휴양시설		소계	716.98	716.98	10	9.83%
	사	스탠드	626.60	626.60		
	사-1	스탠드1	223.40	223.40		
	사-2	스탠드2	403.20	403.20		
	아	쉼터	75.46	75.46		
	아-1	쉼터1	54.84	54.84		
	아-2	쉼터2	20.62	20.62		
	자	망원렌	14.92	14.92		
	5	통나무앉음벽			1	
	6	야외테이블			9	
유희시설		소계	225.36	225.36	7	3.09%
	차	모래놀이터	55.52	55.52		
	카	모험놀이터	35.44	35.44		

구 분	부호	시설명	부지면적(m2)	시설면적(m2)	공작물(기)	비 고
유희시설	7	놀이오두막			1	
	타	연막놀이터	134.40	134.40		
	8	사면미끄럼틀			1	
	9	안공암벽			1	
	10	통나무징검다리			3	
	11	외다리건너기			1	
관리시설		소계			17	
	12	공중화			10	
	13	CCTV			5	
	14	안내판			2	
녹지 및 기타		소계	3,254.15			44.61%
		녹지	3,254.15			

■ 세부시설조서

구 분	도면표시 기호	시설명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작물 (기)	비고
합 계			7,294.40	4,040.25	38	100.0%
시설합계			4,040.25	4,040.25	38	55.39%
도로 및 광장	소계		1,696.78	1,696.78		23.26%
		도로	1,139.70	1,139.70		
	가	광장	557.08	557.08		
	가-1	진입광장1	243.19	243.19		
	가-2	진입광장2	47.15	47.15		
	가-3	휴게광장	207.74	207.74		
	가-4	수변광장	59.00	59.00		
조경 시설	소계		1,401.13	1,401.13	4	19.21%
	나	연못	1,121.81	1,121.81		
	다	벽천	100.51	100.51		
	라	계류	86.45	86.45		
	라-1	계류1	48.54	48.54		
	라-2	계류2	37.91	37.91		
	마	플랜터	58.15	58.15		
	마-1	플랜터1	33.13	33.13		
	마-2	플랜터2	25.02	25.02		
	바	계단	34.21	34.21		
	①	파고라1			1	
	②	파고라2			1	
	③	파고라3			1	
	④	석교			1	
휴양 시설	소계		716.98	716.98	10	9.83%
	사	스탠드	626.60	626.60		
	사-1	스탠드1	223.40	223.40		
	사-2	스탠드2	403.20	403.20		
	아	쉼터	75.46	75.46		
	아-1	쉼터1	54.84	54.84		
	아-2	쉼터2	20.62	20.62		
	자	앉음벽	14.92	14.92		
	⑤	통나무앉음벽			1	
	⑥	야외테이블			9	

구 분	도면표시 기호	시설명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작물 (기)	비고
유희 시설	소계		225.36	225.36	7	3.09%
	차	모래놀이터	55.52	55.52		
	카	모험놀이터	35.44	35.44		
	⑦	놀이오두막			1	
	타	언덕놀이터	134.40	134.40		
	⑧	사면미끄럼틀			1	
	⑨	인공암벽			1	
	⑩	통나무징검다리			3	
	⑪	외다리건너기			1	
관리 시설	소계				17	
	⑫	공원등			10	
	⑬	CCTV			5	
	⑭	안내판			2	
녹지 및 기타	소계		3,254.15			44.61%
		녹지	3,254.15			

■ 도로조서

구분	등급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소 계					455.7	1,139.70				
신설	소로	3	1	3.0-8.0	31.1	190.98	연결로	소로 3-6	공원경계	
신설	소로	3	2	2.4	68.4	174.92	연결로	공원경계	광장 가-2	
신설	소로	3	3	2.0	41.5	83.05	산책로	소로 3-1	소로 3-2	
신설	소로	3	4	2.4	58.2	126.69	산책로	소로 3-1	소로 3-2	
신설	소로	3	5	2.4	62.2	154.20	산책로	광장 가-1	소로 3-1	
신설	소로	3	6	2.0-4.5	37.5	83.11	산책로	쉼터 아-1	소로 3-1	
신설	소로	3	7	4.0	46.9	203.42	산책로	공원경계	광장 가-1	
신설	소로	3	8	1.0	61.9	61.99	산책로	광장 가-1	광장 가-3	
신설	소로	3	9	1.2	14.9	21.91	산책로	계단	쉼터 아-1	
신설	소로	3	10	1.2	33.1	39.45	산책로	소로 3-2	스탠드 사-2	

10. 관계도서(지형도면 고시 사항 포함)의 열람 방법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과 (☎02-2133-8497)
 서초구 도시계획과 (☎02-2155-6782)

Ⅱ. 실시계획 변경인가

1. 사업의 명칭 : 내곡동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변경없음)

2.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가. 노후화된 무허가 가구공장과 주택이 밀집되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재난상존지역으로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여 토지소유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기반시설 확충 및 친환경적 주거단지를 조성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374번지 일대
 나. 면적 : 132,523.0㎡

4. 시행자 : 헌인마을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장 왕승만)(변경없음)

5. 시행기간 : ‘21. 3. 4. ~ 환지처분일(변경없음)

6. 시행방식 :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변경없음)

7.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변경)
 가. 도시개발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헌인마을 도시개발구역	서초구 내곡동 374번지 일대	132,523.0	-	132,52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04호 (2009.3.19.)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헌인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초구 내곡동 374번지 일대	132,523.0	-	132,52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04호 (2009.3.19.)	-

다.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1) 용도지역

(1)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계		132,523.0	-	132,523.0	100.0	
주거지역	소계	131,595.3	-	131,595.3	99.3	
	제1종전용주거지역	39,226.8	-	39,226.8	29.6	
	제2종전용주거지역	92,368.5	-	92,368.5	69.7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927.7	-	927.7	0.7	

2) 용도지구 : 해당없음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1)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총괄표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기정	합계	20	2,929 (2,603)	30,630.0 (27,036.5)	5	1,386	16,375.9	3	500 (212)	5,219.4 (2,169.7)	12	1,043 (1,005)	9,034.7 (8,490.9)
기정	중로	2	668 (595)	8,541.3 (7,272.6)	-	-	-	1	89 (54)	1,568.3 (843.4)	1	579 (541)	6,973.0 (6,429.2)
기정	소로	18	2,261 (2,008)	22,088.7 (19,763.9)	5	1,386	16,375.9	2	411 (158)	3,651.1 (1,326.3)	11	464	2,061.7

주) : ( )는 구역내 연장 및 면적임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점	종 점				
기정	중로	2	1	15	국지 도로	89 (54)	내곡동 374-88	내곡동 1-657	일반 도로	-	21.3.4 (서고2021-113)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위치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3	1	12	국지도로	579 (541)	내곡동 산12-660	내곡동 산12-634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1	1	11	국지도로	550	내곡동 374-44	내곡동 374-10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1	2	11	국지도로	306	내곡동 374-42	내곡동 374-86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2	-	8	-	361 (108)	내곡동 1-1829	내곡동 산12-634	일반도로	-	97.6.23 (서고1997-29)	
기정	소로	1	3	11	국지도로	33	내곡동 374-140	내곡동 374-101	일반도로	-	21.3.4 (서고2021-113)	
기정	소로	1	4	11	국지도로	464	내곡동 374-65	내곡동 374-100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1	5	11	국지도로	33	내곡동 374-60	내곡동 374-44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2	1	8	특수도로	50	내곡동 374-134	내곡동 374-52	보행자도로	-	〃	
기정	소로	3	1	6	특수도로	66	내곡동 374-81	내곡동 1-1912	보행자도로	-	〃	
기정	소로	3	7	6	특수도로	33	내곡동 374-57	내곡동 374-50	보행자도로	-	〃	
기정	소로	3	9	4	특수도로	54	내곡동 374-116	내곡동 374-40	보행자도로	-	〃	
기정	소로	3	2	4	특수도로	71	내곡동 374-101	내곡동 374-25	보행자도로	-	〃	
기정	소로	3	5	4	특수도로	50	내곡동 374-28	내곡동 1-3157	보행자도로	-	-	
기정	소로	3	6	6	특수도로	43	내곡동 374-26	내곡동 374-28	보행자도로	-	〃	
기정	소로	3	3	4	특수도로	31	내곡동 374-11	내곡동 374-10	보행자도로	-	〃	
기정	소로	3	4	4	특수도로	28	내곡동 374-67	내곡동 374-13	보행자도로	-	〃	
기정	소로	3	8	6	특수도로	24	내곡동 374-74	내곡동 374-58	보행자도로	-	-	
기정	소로	3	10	4	특수도로	33	내곡동 374-65	내곡동 374-72	보행자도로	-	〃	
기정	소로	3	11	4	특수도로	31	내곡동 374-66	내곡동 374-155	보행자도로	-	〃	

주) : ( )는 구역내 연장임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	830.4	-	830.4	-	
기정	①	주차장	내곡동 374-19번지 일대	830.4	-	830.4	21.3.4 (서고2021-113)	

2) 공간시설

(1) 녹 지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	-	5,449.4	-	5,449.4	-	
기정	②	녹 지	경관녹지	내곡동 1-722번지 일대	1,764.7	-	1,764.7	21.3.4 (서고2021-113)	
기정	③	녹 지	경관녹지	내곡동 374-76번지 일대	3,684.7	-	3,684.7	21.3.4 (서고2021-113)	

(2) 공 원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	-	7,294.4	-	7,294.4	-	
기정	④	공 원	어린이공원	내곡동 374-20번지 일대	7,294.4	-	7,294.4	21.3.4 (서고2021-113)	

3) 유통 및 공급시설

(1) 가스공급설비

■ 가스공급설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	25.4	-	25.4	-	
기정	⑤	가스공급설비	내곡동 374-63번지 일대	25.4	-	25.4	21.3.4 (서고2021-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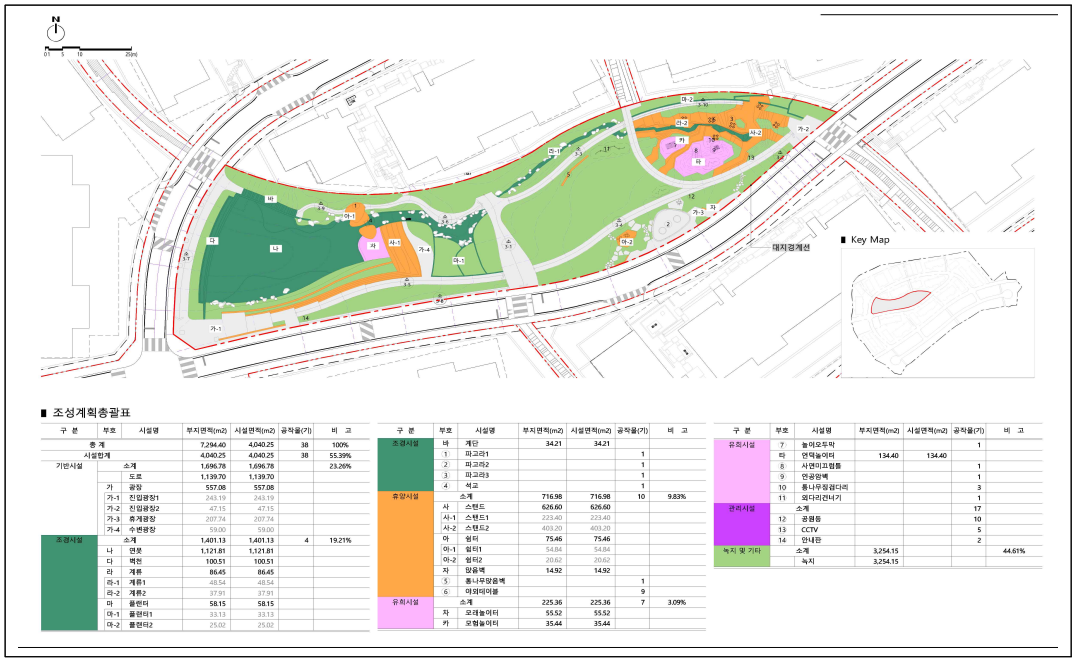
마. 공원조성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신설)

1) 어린이공원

■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총괄표

구 분	시 설 내 용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공작물 (기)	구성비 (%)	비 고
총 계		7,294.40	4,040.25	38	100.0	
기 반 시 설	소계	1,696.78	1,696.78		23.3	
	도로	1,139.70	1,139.70			
	광장	557.08	557.08			
조 경 시 설		1,401.13	1,401.13	4	19.2	
휴 양 시 설		716.98	716.98	10	9.8	
유 희 시 설		225.36	225.36	7	3.1	
교 양 시 설		-			-	
편 익 시 설		-			-	
관 리 시 설		-		17	-	
녹지 및 기타	녹지	3,254.15			44.6	
시설률 (법정 60% 이하)	(4,040.25/7,294.40) x 100 = 55.39%					

■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총괄도



■ 세부시설조서

구 분	도면표시 기호	시설명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작물 (기)	비고
합 계			7,294.40	4,040.25	38	100.0%
시설합계			4,040.25	4,040.25	38	55.39%
도로 및 광장	소계		1,696.78	1,696.78		23.26%
		도로	1,139.70	1,139.70		
	가	광장	557.08	557.08		
	가-1	진입광장1	243.19	243.19		
	가-2	진입광장2	47.15	47.15		
	가-3	휴게광장	207.74	207.74		
	가-4	수변광장	59.00	59.00		
조경 시설	소계		1,401.13	1,401.13	4	19.21%
	나	연못	1,121.81	1,121.81		
	다	벽천	100.51	100.51		
	라	계류	86.45	86.45		
	라-1	계류1	48.54	48.54		
	라-2	계류2	37.91	37.91		
	마	플랜터	58.15	58.15		
	마-1	플랜터1	33.13	33.13		
	마-2	플랜터2	25.02	25.02		
	바	계단	34.21	34.21		
	①	파고라1			1	
	②	파고라2			1	
	③	파고라3			1	
	④	석교			1	
휴양 시설	소계		716.98	716.98	10	9.83%
	사	스탠드	626.60	626.60		
	사-1	스탠드1	223.40	223.40		
	사-2	스탠드2	403.20	403.20		
	아	쉼터	75.46	75.46		
	아-1	쉼터1	54.84	54.84		
	아-2	쉼터2	20.62	20.62		
	자	앉음벽	14.92	14.92		
	⑤	통나무앉음벽			1	
	⑥	야외테이블			9	

구 분	도면표시 기호	시설명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작물 (기)	비고
유희 시설	소계		225.36	225.36	7	3.09%
	차	모래놀이터	55.52	55.52		
	카	모험놀이터	35.44	35.44		
	⑦	놀이오두막			1	
	타	언덕놀이터	134.40	134.40		
	⑧	사면미끄럼틀			1	
	⑨	인공암벽			1	
	⑩	통나무징검다리			3	
	⑪	외다리건너기			1	
관리 시설	소계				17	
	⑫	공원등			10	
	⑬	CCTV			5	
	⑭	안내판			2	
녹지 및 기타	소계		3,254.15			44.61%
		녹지	3,254.15			

■ 도로조서

구분	등급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소 계					455.7	1,139.70				
신설	소로	3	1	3.0-8.0	31.1	190.98	연결로	소로 3-6	공원경계	
신설	소로	3	2	2.4	68.4	174.92	연결로	공원경계	광장 가-2	
신설	소로	3	3	2.0	41.5	83.05	산책로	소로 3-1	소로 3-2	
신설	소로	3	4	2.4	58.2	126.69	산책로	소로 3-1	소로 3-2	
신설	소로	3	5	2.4	62.2	154.20	산책로	광장 가-1	소로 3-1	
신설	소로	3	6	2.0-4.5	37.5	83.11	산책로	쉼터 아-1	소로 3-1	
신설	소로	3	7	4.0	46.9	203.42	산책로	공원경계	광장 가-1	
신설	소로	3	8	1.0	61.9	61.99	산책로	광장 가-1	광장 가-3	
신설	소로	3	9	1.2	14.9	21.91	산책로	계단	쉼터 아-1	
신설	소로	3	10	1.2	33.1	39.45	산책로	소로 3-2	스탠드 사-2	

바.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1) 주택건설용지

(1) 제1종전용주거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합 계		28,446.5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가구면적 변경 및 가구신설
R1	R1(1)	3,369.3	■ 제1종전용주거용지의 필지분할은 환지계획을 따르되 아래 항목을 준수함 - 필지의 규모는 165㎡ 이상으로 함 - 환지계획으로 결정된 필지는 분할할 수 없으며 승인권자 (건축허가권자)의 허가를 득한 경우는 예외로 함 - 환지계획에 의해 분할된 필지의 합병은 인접한 2개의 필지 내에서 허용하며, 합병시 각 대지에 적용되었던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준수함
	R1(2)	3,204.9	
	R1(3)	3,603.8	
	R1(4)	5,000.0	
	R1(5)	3,093.6	
	R1(6)	2,466.2	
	R1(7)	3,277.6	
	R1(8)	4,431.1	

(2) 제2종전용주거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합 계		61,109.2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가구면적 변경
R2	R2(1)	5,454.6	■ 제2종전용주거용지의 필지분할은 환지계획을 따르되 아래 항목을 준수함 - 필지의 규모는 165㎡ 이상으로 함 - 환지계획으로 결정된 필지는 분할할 수 없으며 승인권자 (건축허가권자)의 허가를 득한 경우는 예외로 함 - 환지계획에 의해 분할된 필지의 합병은 인접한 2개의 필지 내에서 허용하며, 합병시 각 대지에 적용되었던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준수함
	R2(2)	7,636.1	
	R2(3)	6,505.5	
	R2(4)	7,564.9	
	R2(5)	4,084.3	
	R2(6)	5,378.0	
	R2(7)	5,307.8	
	R2(8)	5,800.9	
	R2(9)	9,147.7	
	R2(10)	4,229.4	

2) 기타용지

(1)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합 계		2,331.2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가구면적 변경
근1	근1	2,331.2	■ 근린생활시설용지의 필지분할은 환지계획을 따르되 아래 항목을 준수함 - 필지의 규모는 165㎡ 이상으로 함 - 환지계획으로 결정된 필지는 분할할 수 없으며 승인권자 (건축허가권자)의 허가를 득한 경우는 예외로 함 - 환지계획에 의해 분할된 필지의 합병은 인접한 2개의 필지 내에서 허용하며, 합병시 각 대지에 적용되었던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준수함

사.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1) 주택건설용지

(1) 제1종전용주거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도면1	R1	용도	지정용도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는 불허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최고층수 및 최고높이		•2층 이하 및 8m 이하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고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고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고	

(2) 제2종전용주거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도면2	R2	용도	지정용도	•단독주택, 공동주택(다세대 및 연립주택) - 지정용도는 건축연면적(주차장면적 제외)의 70%이상 확보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는 당해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용도에 한하여 허용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20% 이하	
		최고층수 및 최고높이		•3층 이하 및 12m 이하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고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고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고	

2) 기타용지

(1)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도면3	근1	용도	지정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불허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20% 이하	
		최고층수 및 최고높이		•3층 이하 및 15m 이하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고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고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고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과 (☎02-2133-8497)
 서초구 도시계획과 (☎02-2155-6782)

9. 「도시개발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변경없음)
 가.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나.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10.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별첨1 : 토지의 명세 및 토지의 세목(변경)

연번	구분	동 명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주 소	성 명	
계	기정	-	211	필지	139,837.0	132,523.0						
	변경	-	226	필지	132,523.0	132,523.0						
1	가정	내곡동	1-660	전	552.0	552.0	기획재정부					
-	기정	내곡동	1-661	답	36.0	36.0	기획재정부					
2	변경	내곡동	1-661	답	34.0	34.0	기획재정부					지적분할
3	변경	내곡동	1-3164	답	2.0	2.0	기획재정부					지적분할
4	기정	내곡동	1-662	전	79.0	79.0	기획재정부					
5	기정	내곡동	1-663	답	50.0	50.0	기획재정부					
6	기정	내곡동	1-664	전	113.0	113.0	기획재정부					
7	기정	내곡동	1-665	답	10.0	10.0	기획재정부					
-	기정	내곡동	1-684	대	295.0	228.0	박승평	서울 서초구 내곡동 1-684				
8	변경	내곡동	1-3148	대	228.0	228.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지적분할
9	기정	내곡동	1-685	대	720.0	720.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역삼동)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10	기정	내곡동	1-686	전	11.0	11.0	기획재정부					
-	기정	내곡동	1-691	전	202.0	202.0	기획재정부					
11	변경	내곡동	1-691	전	172.0	172.0	기획재정부					지적분할
12	변경	내곡동	1-3165	전	30.0	30.0	기획재정부					지적분할
13	기정	내곡동	1-722	대	728.0	728.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식회사	

연번	구분	동 명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주 소	성 명	
-	기정	내곡동	1-764	대	410.0	11.0	주식회사 우리강남피에프브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01, 15층(청담동, 금하빌딩)	근저당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수하동,미래에셋센터원빌딩이스트타워)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14	변경	내곡동	1-3149	대	11.0	11.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대신자산 신탁주식회사	지적분할
-	기정	내곡동	1-765	전	357.0	357.0	기획재정부					
15	변경	내곡동	1-765	전	313.0	313.0	기획재정부					
16	변경	내곡동	1-3166	전	44.0	44.0	기획재정부					
17	기정	내곡동	1-1092	전	5.0	5.0	기획재정부					
-	기정	내곡동	1-1829	도	2,602.0	864.0	서초구					
18	변경	내곡동	1-3152	도	847.0	847.0	서초구					지적분할
19	변경	내곡동	1-3171	도	17.0	17.0	서초구					지적분할
-	기정	내곡동	1-1831	도	13.0	3.0	국토교통부					
20	변경	내곡동	1-3153	도	3.0	3.0	건설교통부					지적분할
-	기정	내곡동	1-1839	대	386.0	353.0	노성애	인천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26번길 801동 1104호(송도동,월드마크)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주식회사 우리강남피에프브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01, 15층(청담동, 금하빌딩)	근저당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수하동,미래에셋센터원빌딩이스트타워)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21	변경	내곡동	1-3154	대	353.0	353.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역삼동)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지적분할
-	기정	내곡동	1-1845	대	422.0	111.0	서재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2로 52-20,1020호 (중동,동백아펠바움)				
22	변경	내곡동	1-3155	대	111.0	111.0	서재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2로 52-20,1020호 (중동,동백아펠바움)				지적분할

연번	구분	동 명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주 소	성 명	
-	기정	내곡동	1-1873	대	656.0	454.0	정화섭	서울 서초구 내곡동 1-1873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23	변경	내곡동	1-3156	대	454.0	454.0	주식회사 어퍼하우스헌인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1014, 6층 605-3호(병점동)	신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8층(여의도동, 신영증권빌딩)	신영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지적분할 소유자변경
-	기정	내곡동	1-1875	대	374.0	243.0	최영순	서울시관악구인헌16나길16,202호(봉천동,삼보파크빌라)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24	변경	내곡동	1-3157	대	243.0	243.0	헌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8층(여의도동, 신영증권빌딩)	신영부동산신탁 주식회사	
-	기정	내곡동	1-1878	대	382.0	286.0	헌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25	변경	내곡동	1-3158	대	286.0	286.0	헌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역삼동)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지적분할
-	기정	내곡동	1-1881	도	119.0	119.0	서초구					
26	변경	내곡동	1-1881	도	99.0	99.0	서초구					지적분할
27	변경	내곡동	1-3167	도	20.0	20.0	서초구					지적분할
-	기정	내곡동	1-1882	도	76.0	76.0	서초구					
28	변경	내곡동	1-1882	도	71.0	71.0	서초구					지적분할
29	변경	내곡동	1-3168	도	5.0	5.0	서초구					지적분할
-	기정	내곡동	1-1884	도	34.0	33.0	김동식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609-2 강변임광아파트102-803				
							주식회사 우리강남피에프브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01, 15층(청담동, 금하빌딩)	근저당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수하동,미래에셋센터원빌딩이스트타워)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이창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10-20 대주아파트 101-1103				

연번	구분	동 명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주 소	성 명	
							황주석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51번길 136, 209동 1601호(송도동, 송도 캐슬앤해모로)				
30	변경	내곡동	1-3159	도	33.0	33.0	헌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역삼동)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소유자변경 지적분할
							이창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79-10 단독 1층				
							황주석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향린1로 87번길 33				
31	기정	내곡동	1-1887	도	52.0	52.0	서초구					
32	기정	내곡동	1-1889	대	356.0	356.0	헌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역삼동)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33	기정	내곡동	1-1890	대	347.0	347.0	헌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키움파이낸스스퀘어)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34	기정	내곡동	1-1891	대	375.0	375.0	헌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식회사	
35	기정	내곡동	1-1896	전	16.0	16.0	기획재정부					
36	기정	내곡동	1-1897	전	36.0	36.0	기획재정부					
37	기정	내곡동	1-1898	전	4.0	4.0	기획재정부					
38	기정	내곡동	1-1899	전	18.0	18.0	기획재정부					
-	기정	내곡동	1-1900	도	961.0	924.0	서초구					
39	변경	내곡동	1-3160	도	338.0	338.0	서초구					
40	변경	내곡동	1-3172	도	61.0	61.0	서초구					지적분할
41	변경	내곡동	1-3173	도	2.0	2.0	서초구					지적분할
42	변경	내곡동	1-3174	도	312.0	312.0	서초구					지적분할

연번	구분	동 명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주 소	성 명	
43	변경	내곡동	1-3175	도	89.0	89.0	서초구					지적분할
44	변경	내곡동	1-3176	도	19.0	19.0	서초구					지적분할
45	변경	내곡동	1-3177	도	103.0	103.0	서초구					지적분할
46	기정	내곡동	1-1908	답	8.0	8.0	박은진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15길 17-20(구로동)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이덕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119동704호(상대원동,선경상대원2차아파트)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박영욱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247가길 11, 1층(봉천동)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46	기정	내곡동	1-1908	답	8.0	8.0	문성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39다길 11, 비동301호(홍제동,경일빌라)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김경옥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44-10, 101동304호(마북동,용화마을 태영데시앙(아))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김현문	경기도 광명시 광명역로 26, 912호(일직동,광명역 파크자이오피스텔)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박주연	경기도 고양시 고양대로624 태영아파트 106동 1601호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강재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20길 26, 105동 1904호 (공덕동, 삼성래미안공덕2단지)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강도형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4로 79, 304동 2502호(식사동, 위시티 일산블루밍3단지)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조윤숙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23길 38-15, 101동 1206호(서초동,서초동한신아파트)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연번	구분	동 명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주 소	성 명	
							권혜정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2로 37, 4103동1802호(중동,어은목마을 대원칸타빌)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윤성진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3길 123-11, 301호(묵동)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김금순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장여로 523-23				
							김서우	경기도 의정부시 둔야로17번길 35(의정부동)				
							김성훈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79길 26, 103동1801호(고덕동,고덕 아이파크)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김진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116번길 100, 209동 701호(언남동, 초원마을성원상떼빌)				
							김현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입북로77번길 62, 104동2104호(입북동,서수원레이크푸르지오1단지)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역삼동)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박미향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장수북동길 24, 비동 302호(에코빌)				
							송지혜	경기도 시흥시 목감남서로 92-15, 102동303호(산현동, 목감중흥에스-클래스레이크힐스)				
							왕승만	경기도 의왕시 내손중앙로 11, 1101동 1803호(내손동, 의왕내손이편한세상아파트)				
							우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442, 1201호(청담동, 피엔폴루스)				
							임상혁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62길 126, 102호(명일동,삼환고덕아파트)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연번	구분	동 명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주 소	성 명	
							임승철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23길 38-15, 101동 1206호(서초동,서초동한신아파트)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정세용	경기도 평택시 은실3길 14, 303호 (세교동,은실연립)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조혜정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90길26, 용산아크로타워 102동2903호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46	기정	내곡동	1-1908	답	8.0	8.0	조소라	서울시 강동구 아리수로97길 20 강일리버파크 509동 903호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이채형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용구대로2771번길 88, 1002동 902호(죽전동, 창죽마을벽산쉘시빌아파트)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조아란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3길 123-11, 301호(묵동)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남춘길	경상북도 안동시 길주길 101-12, 202동402호(용상동,현대아파트)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김정우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90길26, 용산아크로타워 102동2903호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김수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 344, 111동 909호(신사동,현대아파트)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김용성	경기도 의정부시 둔야로17번길 35 (의정부동)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김예나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5, 2302동1704호(풍산동,미사강변 더샵 센트럴포레)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곽미희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70길 12-9, 5동101호(신월동,한영)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연번	구분	동 명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주 소	성 명	
							이준묵	경기 부천시 옥길동 771-1 옥길센트리뷰 706동704호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박진희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30가길 71, 101동401호(상계동,우림루미아트)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김주희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19길 17, 202호 (송파동,장 트윈스)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이현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200-16 (신길동)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김경덕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27, 212호(서초동)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진종언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95, 107동 2002호(풍산동, 미사강변 센트럴자이)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46	기정	내곡동	1-1908	답	8.0	8.0	최혜진	서울시 금천구 한내로 62, 10동 703호(한신아파트)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오혜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청로59번길 37, 나동 1205호(일산동,미주8차아파트)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홍태극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30, 1201동 1218호(별내동, 별가람마을 1-2단지)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정유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로 45-1, 102호(구의동,현대빌라)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김경홍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 344, 111동 909호(신사동, 현대아파트)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유지영	경기도 부천시 안곡로16번길 38 (괴안동)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박정인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95, 107동2002호(풍산동,미사강변센트럴자이)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연번	구분	동 명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주 소	성 명	
							이문경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57(상도동)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봉정윤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46번길 7, 2201동 1003호(다산동,다산 자연앤 롯데캐슬)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최진희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밭로229, 5동607호(하계동,건영아파트)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강신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로16, 605동402호(도내동,엘에이치원흥도래울마을 6단지)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손민정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227, 509동305호(운양동,풍경마을 래미안 한강2차)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김아영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헌1나길 5, 301호(봉천동)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인지영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7길 4, 104호 (풍납동,영남빌라)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김재호	경기도 파주시 책향기로 448, 1204동1503호(동패동,책향기마을 진흥 효자아파트)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한영석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성로 14, 102동 302호 (호계동, 평촌신원아침도시)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민경화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1길 30(대방동)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박진영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나지로 332, 201동1806호 (작전동,우림카이저팰리스2단지)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연번	구분	동 명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주 소	성 명	
46	기정	내곡동	1-1908	답	8.0	8.0	박순학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산12-409				
							김갑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원로 7 401동203호(운중동,산운마을)				
							김남선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산12-2				
							김명환	서울 서초구 매헌로16길 40 양재리본타워 201동701호				
							김부순	서울 서초구 내곡동 374-50				
							김성순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468길 39 (내곡동)				
							김숙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58 백현마을 804동 604호				
							김태완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468길 55 (내곡동)				
							박금라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상미로 38, 104동103호				
							박복임	미합중국 펜실베니아주 모스코우 메이플그로브로드418				
							박임순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422길 125 (내곡동)				
							박정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동로 125번길 12 (중동)				
							박칠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515-8 정원빌라 101호				
							서상윤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산12-409				
							송재욱	서울시 강남구 자곡로 21, 209동306호				

연번	구분	동 명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주 소	성 명	
							송정식	서울시 강남구 자곡로3길 45, 411동1001호				
							이만용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468길 48(내곡동)				
							이재혁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신봉3로 6, 101동1404호				
							이철희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468길 38(내곡동)				
							임병임	서울시 구로구 개봉로17나길 61-8				
							임승남	경기도 오산시 운암로 89, 202동502호				
							송정식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 618 강남브리즈힐 411동1001호				
							최동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산12-2				
							최연숙	서울 강남구 서초동 산12-409				
							허종열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34 102동 903호(목동, 목동성원아파트)				
-	기정	내곡동	1-1909	답	207.0	191.0	변은주	경기도 광명시 도덕공원로 35, 203동1702호(철산동,브라운스톤광명)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조권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20나길 12, 201호(방배동)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신남식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17길 41, 714동404호(신내동,진로아파트)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유기영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나지로 332, 201동1806호 (작전동,우림카이저팰리스2단지)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연번	구분	동 명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주 소	성 명	
							김우길	경상북도 안동시 제비원로 172, 101동1905호(금곡동,태성경안타운)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김명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558번길 57, 1824동 901호(행신동, 햇빛마을)				
							김은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170, 2107동 304호 (행신동, 햇빛마을)				
							김재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함박뫼로 439, 204동703호(논현동,논현주공아파트)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정석진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27길 130, 105동701호(사당동,이수역리가아파트)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최현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용구대로2750, 101동 802호 (죽전동,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이영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역로 16, 105동 2004호 (구갈동, 기흥역 자웰푸르지오)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박운규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영덕로 449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박성하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660, 204동504호(금오동,금오2차신도브래뉴업아파트)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박수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대로290번길 26, 837동 1304호(영통동,벽적골 주공아파트)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이상봉	서울특별시 구로구 항동로 42, 508동403호(항동,한양수자인 에듀힐즈)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연번	구분	동 명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주 소	성 명	
							김진형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입북로77번길 62, 104동2104호(입북동,서수원레이크푸르지오1단지)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정인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기계로 355-2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박형진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5, 2302동1704호(풍산동,미사강변 더샵 센트럴포레)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민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446번길 7-15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	기정	내곡동	1-1909	답	207.0	191.0	민현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64번길 25, 1006호(언남동, 카사90)				
							엄성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624,106동 1601호(일산동,태영아파트)				
							허남일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장수북동길 24, B동 302호(에코빌)				
							이종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7로 56, 1101동1902호(동백동,호수마을 서해그랑블)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이충환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90, 208동204호(무실동,뜨란채아파트)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김대성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밭로229, 5동607호(하계동,건영아파트)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이광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02, 101동 1408호(목동, 현대아파트)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손영수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서로98, 609동1206호(반석동,반석마을 6단지아파트)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연번	구분	동 명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주 소	성 명	
							양동훈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2로 37, 4103동1802호(중동,어은목마을 대원칸타빌)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이태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3로61, 413동1402호(덕이동,하이파크시티 일산 파밀리에 4단지)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김현오	충청남도 아산시 서부북로 973, 103동705호(배미동,서진배미마을아파트)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임재성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56, 307동702호(소하동,휴먼시아)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오영환	경상북도 안동시 길주길 101-12, 202동402호(용상동,현대아파트)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이경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880-1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이도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 7길4, 104호(풍납동, 영남빌라)				
-	기정	내곡동	1-1909	답	207.0	191.0	정영석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30가길 71, 101동 401호(상계동 우림루미아트)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민경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128, 901동2502호(상하동,강남마을 한라비발디)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이삼순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654 영천주공아파트 103-303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홍성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기로 25, 301동904호(향동동, 디엠씨 호반베르디움 더 포레 3단지)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김판중	경기도 남양주시 늘을3로 65-26, 1310동 1306호(호평동, 호평마을 중흥에스-클래스)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연번	구분	동 명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주 소	성 명		
							조영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6길 134, 104동 701호(노량진동, 쌍용예가아파트)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 (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이은주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상오길 63-61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 (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이재청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상오길 63-61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 (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이기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200-16(신길동)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 (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신상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26길 92-6, 201호(구의동)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 (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김진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녕로 25바길 15, 202호(상도동, 엘리시아)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 (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이혜자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509-64, 101호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 (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김방현	경기도 파주시 책향기로 448, 1204동1503호(동패동,책향기마을 진흥 효자아파트)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 (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이석원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92길 19, 2627동 1505호(송동,동탄2신도시 하우스디 더 레이크)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 (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김형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로16, 605동402호(도내동,엘에이치원흥도래울마을 6단지)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 (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서원배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54번길 78-1, 201동 1003호(천동,휴먼시아2단지 아파트)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 (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이승철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3길 17, 305동401호(용산동,모아엘가)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 (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연번	구분	동 명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주 소	성 명	
							문성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창뜰아랫길 20, 201동101호(뜨라네)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최선옥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상오길 63-61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이영은	경기도 하남시 아리수로 499, 501동203호(망월동,미사강변 루나리움)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	기정	내곡동	1-1909	답	207.0	191.0	김기연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90, 201동1504호(우면동,서초힐스아파트)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홍순혁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46번길 7, 2201동 1003호(다산동, 다산 자연앤롯데캐슬)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김재훈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227, 509동 305호(운양동, 풍경마을 래미안 한강2차)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김희양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212, 209동206호(분당동,샛별마을)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박순학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산12-409				
							김경미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468길 55 (내곡동)				
							김기태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468길 55(내곡동)				
							김남선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산12-2				
							김내옥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산12-409				
							김명환	서울 서초구 매헌로16길 40 양재리본타워 201동701호				
							김부순	서울 서초구 내곡동 374-50				
							김태석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11길 38, 403호(양재동)				

연번	구분	동 명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주 소	성 명	
							박금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71길 54, 104동 603호				
							박복임	미합중국 펜실베니아주 모스코우 메이플그로브로드418				
							박신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어정로 62-7, 108동 401호				
							박칠연	서툴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05 5동501호(도곡동,도곡한신아파트)				
							서상윤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산12-409				
							송재욱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422길 25-4(내곡동)				
							송정식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산12-2				
							유민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헌릉로590길 10, 201동 903호(세곡동, 세곡리엔파크2단지)				
							이재혁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5길 19-7, 502호(석촌동)				
							이종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현암로 126 402동1902호(죽전동,새터마을푸르지오)				
							이지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468길 48(내곡동)				
							이철희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468길 38(내곡동)				
							임병임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산12-409				
							임승남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09, 802호 (역삼동,에스케이허브젠)				
							진남순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산12-2				
							최동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산12-2				

연번	구분	동 명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주 소	성 명	
							최승희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468길 42(내곡동)				
							최연숙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산12-409				
							한유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57길 9 5층(신사동)				
							허동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283, 102동 1103호 (중동, 참솔마을월드메르디앙)				
47	변경	내곡동	1-3161	답	191.0	191.0	변은주	경기도 광명시 도덕공원로 35, 203동1702호(철산동,브라운스톤광명)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지적분할
							조권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20나길 12, 201호(방배동)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신남식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17길 41, 714동404호(신내동,진로아파트)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유기영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나지로 332, 201동1806호 (작전동,우림카이저팰리스2단지)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김우길	경상북도 안동시 제비원로 172, 101동1905호(금곡동,태성경안타운)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김명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558번길 57, 1824동 901호(행신동, 햇빛마을)				
							김은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170, 2107동 304호 (행신동, 햇빛마을)				
							김재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함박뫼로 439, 204동703호(논현동,논현주공아파트)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연번	구분	동 명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주 소	성 명	
							정석진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27길 130, 105동701호(사당동,이수역리가아파트)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최현준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로 45-1, 102호(구의동, 현대골든빌라)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이영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역로 16, 105동 2004호 (구갈동, 기흥역 지웰푸르지오)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박운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 506번길 17, 203동 204호(오목천동, 청구2차@)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박성하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660, 204동504호(금오동,금오2차신도브래뉴업아파트)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박수현	서울시 강동구 아리수로97길 20 강일리버파크 509동 903호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이상봉	서울특별시 구로구 항동로 42, 508동403호(항동,한양수자인 에듀힐즈)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김진형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입북로77번길 62, 104동2104호(입북동,서수원레이크푸르지오1단지)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정인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기계로 355-2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박형진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5, 2302동1704호(풍산동,미사강변 더샵 센트럴포레)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47	변경	내곡동	1-3161	답	191.0	191.0	민현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64번길 25, 1006호(언남동, 카사90)				지적분할
							엄성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624,106동 1601호(일산동,태영아파트)				

연번	구분	동 명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주 소	성 명	
							허남일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장수북동길 24, B동 302호(에코빌)				
							이종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7로 56, 1101동1902호(동백동,호수마을 서해그랑블)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이충환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90, 208동204호(무실동,뜨란채아파트)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김대성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밭로229, 5동607호(하계동,건영아파트)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손영수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서로98, 609동1206호(반석동,반석마을 6단지아파트)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양동훈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2로 37, 4103동1802호(중동,어은목마을 대원칸타빌)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이태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3로61, 413동1402호(덕이동,하이파크시티 일산 파밀리에 4단지)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김현오	충청남도 아산시 서부북로 973, 103동705호(배미동,서진배미마을아파트)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임재성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2길22, 111동 1005호(목동, 한신청구아파트)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오영환	경상북도 안동시 길주길 101-12, 202동402호(용상동,현대아파트)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이도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 7길4, 104호(풍납동, 영남빌라)				
47	변경	내곡동	1-3161	답	191.0	191.0	정영석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30가길 71, 101동 401호(상계동 우림루미아트)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지적분할

연번	구분	동 명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주 소	성 명	
							민경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128, 901동2502호(상하동,강남마을 한라비발디)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홍성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기로 25, 301동904호(향동동, 디엠씨 호반베르디움 더 포레 3단지)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김판중	경기도 남양주시 늘을3로 71, 1501동 102호 (호평동, 한화꿈에그린)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이기석	경기도 광명시 목감로 58, 115동 801호 (광명동, 광명해모로이연아파트)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신상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26길 92-6, 201호(구의동)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김진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녕로 25바길 15, 202호(상도동, 엘리시아)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김방현	경기도 파주시 책향기로 448, 1204동1503호(동패동,책향기마을 진흥 효자아파트)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김형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로16, 605동402호(도내동,엘에이치원흥도래울마을 6단지)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서원배	경기도 화성시 서동탄로 11, 202동 2004호(능동서동탄역파크자이 2차)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이승철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3길 17, 305동401호(용산동,모아엘가)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문성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창뜰아랫길 20, 201동101호(뜨라네)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역삼동)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연번	구분	동 명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주 소	성 명	
							이영은	경기도 하남시 아리수로 499, 501동203호(망월동,미사강변 루나리움)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47	변경	내곡동	1-3161	답	191.0	191.0	김기연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90, 201동1504호(우면동,서초힐스아파트)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지적분할
							홍순혁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46번길 7,2209동401호 (다산동, 다산 자연앤롯데캐슬)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김재훈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227, 509동 305호(운양동, 풍경마을 래미안 한강2차)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김희양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212, 209동206호(분당동,샛별마을)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박순학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산12-409				
							김경미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109길9, 217동1008호				
							김기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로 26, 201동1704호				
							김남선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산12-2				
							김내옥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산12-409				
							김명환	서울 서초구 매헌로16길 40 양재리본타워 201동701호				
							김부순	서울 서초구 내곡동 374-50				
							김태석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11길 38, 403호(양재동)				
							박금라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상미로 38, 104동103호				

연번	구분	동 명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주 소	성 명	
							박복임	미합중국 펜실베니아주 모스코우 메이플그로브로드418				
							박신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어정로 62-7, 108동 401호				
							박칠연	서툴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05 5동501호(도곡동,도곡한신아파트)				
							서상윤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산12-409				
							송재욱	서울시 강남구 자곡로 21, 209동306호				
							송정식	서울시 강남구 자곡로3길 45, 411동1001호				
							유민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헌릉로590길 10, 201동 903호(세곡동, 세곡리엔파크2단지)				
							이재혁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신봉3로 6, 101동1404호				
							이종화	경기도 성남시 분당로 판교역로 72, 805동1002호				
							이지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468길 48(내곡동)				
							이철희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468길 38(내곡동)				
							임병임	서울시 구로구 개봉로17나길 61-8				
							임승남	경기도 오산시 운암로 89, 202동502호				
							진남순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 618 강남브리즈힐 411동1001호				
							최동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산12-2				
							최연숙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산12-409				

연번	구분	동 명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주 소	성 명	
							허동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283, 102동 1103호 (중동, 참솔마을월드메르디앙)				
-	기정	내곡동	1-1910	도	151.0	151.0	국토교통부					
48	변경	내곡동	1-1910	도	142.0	142.0	건설교통부					지적분할
49	변경	내곡동	1-3169	도	9.0	9.0	건설교통부					지적분할
50	기정	내곡동	1-1912	대	357.0	357.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역삼동)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51	기정	내곡동	1-1917	대	356.0	356.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역삼동)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지적분할
52	변경	내곡동	1-2306	대	180.0	180.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역삼동)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지적분할
53	기정	내곡동	1-2250	답	3.0	3.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8층(여의도동, 신영증권빌딩)	신영부동산신탁주식회사	
54	기정	내곡동	1-2260	도	17.0	17.0	서울특별시					
55	기정	내곡동	1-2261	도	10.0	10.0	서울특별시					
-	기정	내곡동	1-2264	도	18.0	18.0	서초구					
56	변경	내곡동	1-2264	도	12.0	12.0	서초구					지적분할
57	변경	내곡동	1-3170	도	6.0	6.0	서초구					지적분할
58	기정	내곡동	1-2308	대	339.0	339.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식회사	
59	기정	내곡동	1-2309	대	608.0	608.0	김정현	서울시 강남구 자곡로 21, 216동402호				
60	기정	내곡동	1-2310	대	633.0	633.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역삼동)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61	기정	내곡동	1-2311	대	349.0	349.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역삼동)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연번	구분	동 명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주 소	성 명	
62	기정	내곡동	1-2312	도	404.0	404.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63	기정	내곡동	1-2313	대	242.0	242.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역삼동)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천재순	서울 서초구 내곡동 1-1095				
64	기정	내곡동	1-2314	도	16.0	16.0	황주석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향린1로87번길 33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65	기정	내곡동	1-2315	대	14.0	14.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8층(여의도동, 신영증권빌딩)	신영부동산신탁주 식회사	
66	기정	내곡동	1-2467	대	525.0	525.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8층(여의도동, 신영증권빌딩)	신영부동산신탁주 식회사	
-	기정	내곡동	374	대	393.0	353.0	송진석	서울 서초구 내곡동 1-1095				
67	변경	내곡동	374-160	대	353.0	353.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역삼동)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지적분할
68	기정	내곡동	374-1	대	429.0	429.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한국투자부동산신 탁주식회사	
69	기정	내곡동	374-2	대	958.0	958.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70	기정	내곡동	374-3	대	495.0	495.0	천재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풍림2차 201동604호				
71	기정	내곡동	374-4	대	862.0	862.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한국투자부동산신 탁주식회사	
72	기정	내곡동	374-5	대	1,878.0	1,878.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역삼동)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73	기정	내곡동	374-6	대	937.0	937.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한국투자부동산신 탁주식회사	

연번	구분	동 명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주 소	성 명	
74	기정	내곡동	374-7	대	457.0	457.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식회사	
75	기정	내곡동	374-8	대	525.0	525.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8층(여의도동, 신영증권빌딩)	신영부동산신탁주식회사	
76	기정	내곡동	374-9	대	482.0	482.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역삼동)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77	기정	내곡동	374-10	대	489.0	489.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역삼동)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78	기정	내곡동	374-11	대	534.0	534.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79	기정	내곡동	374-12	대	1,068.0	1,068.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역삼동)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	기정	내곡동	374-13	대	688.0	688.0	김홍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468길 84(내곡동)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80	변경	내곡동	374-13	대	688.0	688.0	주식회사 어퍼하우스헌인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1014, 6층 605-3호(병점동)	신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8층(여의도동, 신영증권빌딩)	신영부동산신탁주식회사	소유자변경
-	기정	내곡동	374-14	대	3,630.0	3,630.0	김홍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468길 84(내곡동)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우리강남피에프브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01, 15층(청담동, 금하빌딩)	근저당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수하동,미래에셋센터원빌딩이스트타워)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김은옥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쟁골길 20-3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김혜경	서울시 송파구 잠실로 62 트리지움 아파트 310동 1502호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안금옥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30길 72(양재동) 2층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연번	구분	동 명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주 소	성 명	
81	변경	내곡동	374-14	대	3,630.0	3,630.0	주식회사 어퍼하우스헌인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1014, 6층 605-3호(병점동)	신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8층(여의도동, 신영증권빌딩)	신영부동산신탁주식회사	소유자변경
							헌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역삼동)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82	기정	내곡동	374-15	대	277.0	277.0	헌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식회사	
83	기정	내곡동	374-16	대	130.0	130.0	박칠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515-8 정원빌라 101호				
84	기정	내곡동	374-17	대	2,118.0	2,118.0	헌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역삼동)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85	기정	내곡동	374-18	대	794.0	794.0	헌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	기정	내곡동	374-19	대	1,728.0	1,728.0	송은근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422길 25-28(내곡동)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송인근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374-125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이영희	서울 서초구 내곡동 374-34				
							이재훈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원중앙로1길 71 406 (신림동,성안빌딩)	근저당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699(염창동)	염창동새마을금고	
86	변경	내곡동	374-19	대	1,728.0	1,728.0	주식회사 어퍼하우스헌인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1014, 6층 605-3호(병점동)	신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8층(여의도동, 신영증권빌딩)	신영부동산신탁주식회사	소유자변경
							이영희	서울 서초구 내곡동 374-34				
							헌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역삼동)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87	기정	내곡동	374-20	대	1,206.0	1,206.0	헌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8층(여의도동, 신영증권빌딩)	신영부동산신탁주식회사	

연번	구분	동 명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주 소	성 명	
88	기정	내곡동	374-21	대	628.0	628.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역삼동)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천재순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468길 70(내곡동)				
89	기정	내곡동	374-22	대	92.0	92.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역삼동)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강순남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468길 48(내곡동)				
90	기정	내곡동	374-23	대	1,530.0	1,530.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91	기정	내곡동	374-24	대	1,476.0	1,476.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92	기정	내곡동	374-25	대	1,278.0	1,278.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8층(여의도동, 신영증권빌딩)	신영부동산신탁주식회사	
93	기정	내곡동	374-26	대	352.0	352.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식회사	
94	기정	내곡동	374-27	대	1,500.0	1,500.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식회사	
95	기정	내곡동	374-28	대	4,124.0	4,124.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역삼동)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96	기정	내곡동	374-32	대	23.0	23.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8층(여의도동, 신영증권빌딩)	신영부동산신탁주식회사	
-	기정	내곡동	374-33	대	886.0	886.0	송은근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422길 25-28(내곡동)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97	변경	내곡동	374-33	대	886.0	886.0	주식회사 어퍼하우스헌인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1014, 6층 605-3호(병점동)	신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8층(여의도동, 신영증권빌딩)	신영부동산신탁주식회사	소유자변경
98	기정	내곡동	374-34	대	966.0	966.0	이영희	서울 강남구 세곡동 579, 강남엘에이치1단지 111동305호	근저당권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산로6길 3(양재동)(내곡지점)	영동농업 협동조합	

연번	구분	동 명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주 소	성 명	
99	기정	내곡동	374-35	대	972.0	972.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역삼동)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100	기정	내곡동	374-36	대	1,374.0	1,374.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식회사	
101	기정	내곡동	374-37	대	1,578.0	1,578.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역삼동)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102	기정	내곡동	374-38	대	714.0	714.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역삼동)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103	기정	내곡동	374-39	대	434.0	434.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역삼동)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104	기정	내곡동	374-40	대	132.0	132.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식회사	
105	기정	내곡동	374-41	대	1,101.0	1,101.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8층(여의도동, 신영증권빌딩)	신영부동산신탁주식회사	
106	기정	내곡동	374-42	대	565.0	565.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8층(여의도동, 신영증권빌딩)	신영부동산신탁주식회사	
107	기정	내곡동	374-43	대	166.0	166.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역삼동)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108	기정	내곡동	374-44	대	1,638.0	1,638.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역삼동)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	기정	내곡동	374-45	대	1,050.0	1,050.0	정화섭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422길 25-28(내곡동)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109	변경	내곡동	374-45	대	1,050.0	1,050.0	주식회사 어퍼하우스헌인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1014, 6층 605-3호(병점동)	신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8층(여의도동, 신영증권빌딩)	신영부동산신탁주식회사	소유권변경
110	기정	내곡동	374-46	대	1,500.0	1,500.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역삼동)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연번	구분	동 명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주 소	성 명	
111	기정	내곡동	374-47	대	1,562.0	1,562.0	채선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112	기정	내곡동	374-48	대	553.0	553.0	허봉래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468길 39(내곡동)				
113	기정	내곡동	374-49	대	369.0	369.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114	기정	내곡동	374-50	대	765.0	765.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115	기정	내곡동	374-51	대	143.0	143.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116	기정	내곡동	374-52	대	1,218.0	1,218.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식회사	
117	기정	내곡동	374-53	대	2,910.0	2,910.0	대한예수교장로회 현인교회	서울 서초구 내곡동 374-53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역삼동)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118	기정	내곡동	374-54	대	1,086.0	1,086.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119	기정	내곡동	374-55	대	329.0	329.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120	기정	내곡동	374-56	대	1,131.0	1,131.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121	기정	내곡동	374-57	대	1,200.0	1,200.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역삼동)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서충관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산12-409	압류		서초구	
-	기정	내곡동	374-58	대	1,122.0	1,122.0	서춘남	서울시 관악구 인헌16나길 16,202호(봉천동,삼보파크빌라)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연번	구분	동 명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주 소	성 명	
							주식회사 우리강남피에프브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01, 15층(청담동, 금하빌딩)	근저당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수하동,미래에셋센터원빌딩이스트타워)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김아론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468길 120(내곡동)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122	변경	내곡동	374-58	대	1,122.0	1,122.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역삼동)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주식회사 어퍼하우스헌인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1014, 6층 605-3호(병점동)	신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8층(여의도동, 신영증권빌딩)	신영부동산신탁주식회사	소유자변경
-	기정	내곡동	374-59	대	1,648.0	1,648.0	한경옥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468길 120(내곡동)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123	변경	내곡동	374-59	대	1,648.0	1,648.0	주식회사 어퍼하우스헌인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1014, 6층 605-3호(병점동)	신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8층(여의도동, 신영증권빌딩)	신영부동산신탁주식회사	소유자변경
124	기정	내곡동	374-60	대	1,012.0	1,012.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125	기정	내곡동	374-61	대	1,254.0	1,254.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역삼동)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126	기정	내곡동	374-62	대	2,496.0	2,496.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역삼동)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127	기정	내곡동	374-63	대	894.0	894.0	현인하이엔드씨티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내곡동 374-15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역삼동)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128	기정	내곡동	374-64	대	356.0	356.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역삼동)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129	기정	내곡동	374-65	대	834.0	834.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역삼동)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연번	구분	동 명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주 소	성 명	
130	기정	내곡동	374-66	대	481.0	481.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131	기정	내곡동	374-67	도	4,757.0	4,757.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식회사	
132	기정	내곡동	374-68	도	140.0	140.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133	기정	내곡동	374-69	도	146.0	146.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134	기정	내곡동	374-70	도	42.0	42.0	김용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90길26, 용산아크로타워 102동2903호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135	기정	내곡동	374-71	도	240.0	240.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식회사	
136	기정	내곡동	374-72	도	7,471.0	7,471.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식회사	
137	기정	내곡동	374-74	임	419.0	419.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8층(여의도동, 신영증권빌딩)	신영부동산신탁주식회사	
138	기정	내곡동	374-75	임	68.0	68.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8층(여의도동, 신영증권빌딩)	신영부동산신탁주식회사	
139	기정	내곡동	374-76	임	3,220.0	3,220.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8층(여의도동, 신영증권빌딩)	신영부동산신탁주식회사	
-	기정	내곡동	374-77	대	547.0	546.0	김춘식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468길 70(내곡동)	근저당권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산로6길 3(양재동)(내곡지점)	영동농업협동조합	
140	변경	내곡동	374-161	대	546.0	546.0	김춘식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풍림2차 201동604호	근저당권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산로6길 3(양재동)(내곡지점)	영동농업협동조합	지적분할
141	기정	내곡동	374-78	대	531.0	531.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연번	구분	동 명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주 소	성 명	
142	기정	내곡동	374-79	도	131.0	131.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143	기정	내곡동	374-80	대	546.0	546.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식회사	
144	기정	내곡동	374-81	대	502.0	502.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식회사	
145	기정	내곡동	374-82	대	221.0	221.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146	기정	내곡동	374-83	대	600.0	600.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147	기정	내곡동	374-84	대	505.0	505.0	이명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중앙로 216, 5308동204호				
148	기정	내곡동	374-85	도	97.0	97.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149	기정	내곡동	374-86	대	149.0	149.0	김춘식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풍림2차 201동604호				
150	기정	내곡동	374-87	대	461.0	461.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151	기정	내곡동	374-88	대	447.0	447.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역삼동)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152	기정	내곡동	374-89	도	180.0	180.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153	기정	내곡동	374-90	대	86.0	86.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154	기정	내곡동	374-91	대	50.0	50.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역삼동)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연번	구분	동 명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주 소	성 명	
							권택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청계산로459번길 13, 301호				
							황석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42-25 롯데리빌리지6차 101호				
155	기정	내곡동	374-92	도	115.0	115.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156	기정	내곡동	374-93	대	803.0	803.0	서충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468길 72(내곡동)	압류 근저당권		서초세무서장	
							서은옥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시 사우스 킹슬리 디알 949번지 415호-공람이후상속	압류		서초구	
							서은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468길 72(내곡동)	압류		서초구	
									근저당권		서초세무서장	
							서은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468길 72(내곡동)	근저당권		서초세무서장	
157	기정	내곡동	374-94	대	867.0	867.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식회사	
158	기정	내곡동	374-95	도	119.0	119.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159	기정	내곡동	374-96	대	67.0	67.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식회사	
160	기정	내곡동	374-97	대	922.0	922.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역삼동)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161	기정	내곡동	374-98	대	920.0	920.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식회사	
162	기정	내곡동	374-99	도	145.0	145.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연번	구분	동 명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주 소	성 명	
163	기정	내곡동	374-100	대	972.0	972.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식회사	
164	기정	내곡동	374-101	대	2,603.0	2,603.0	주식회사 어퍼하우스헌인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1014,6층605-3호(병점동)	신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8층(여의도동, 신영증권빌딩)	신영부동산신탁주식회사	
165	기정	내곡동	374-102	대	599.0	599.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역삼동)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166	기정	내곡동	374-103	대	197.0	197.0	박칠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32길 101호(도곡동, 정원빌라)				
167	기정	내곡동	374-104	대	614.0	614.0	김형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468길 55 (내곡동)	근저당권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등원로 527	광탄농업협동조합	
									지상권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등원로 527	광탄농업협동조합	
168	기정	내곡동	374-105	대	1,004.0	1,004.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169	기정	내곡동	374-106	대	293.0	293.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8층(여의도동, 신영증권빌딩)	신영부동산신탁주식회사	
170	기정	내곡동	374-107	대	302.0	302.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역삼동)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171	기정	내곡동	374-108	도	153.0	153.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172	기정	내곡동	374-109	대	337.0	337.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역삼동)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173	기정	내곡동	374-110	대	375.0	375.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역삼동)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174	기정	내곡동	374-111	대	273.0	273.0	김춘식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풍림2차 201동604호				
175	기정	내곡동	374-112	대	10.0	10.0	강귀옥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468길 48(내곡동)				

연번	구분	동 명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주 소	성 명	
176	기정	내곡동	374-113	도	27.0	27.0	김희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산운로 37, 204동 108호(운중동, 산운마을)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177	기정	내곡동	374-114	대	658.0	658.0	헌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식회사	
178	기정	내곡동	374-115	대	531.0	531.0	헌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8층(여의도동, 신영증권빌딩)	신영부동산신탁주식회사	
179	기정	내곡동	374-116	대	447.0	447.0	헌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역삼동)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180	기정	내곡동	374-117	대	509.0	509.0	헌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식회사	
181	기정	내곡동	374-118	대	291.0	291.0	허봉래	서울 서초구 내곡동 374-48				
182	기정	내곡동	374-119	대	229.0	229.0	헌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8층(여의도동, 신영증권빌딩)	신영부동산신탁주식회사	
183	기정	내곡동	374-120	대	126.0	126.0	헌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184	기정	내곡동	374-121	대	319.0	319.0	헌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8층(여의도동, 신영증권빌딩)	신영부동산신탁주식회사	
-	기정	내곡동	374-122	대	178.0	178.0	정화섭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422길 25-28(내곡동)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185	변경	내곡동	374-122	대	178.0	178.0	주식회사 어퍼하우스헌인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1014, 6층 605-3호(병점동)	신탁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8층(여의도동, 신영증권빌딩)	신영부동산신탁주식회사	소유자변경
186	기정	내곡동	374-123	대	246.0	246.0	헌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역삼동)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187	기정	내곡동	374-124	대	230.0	230.0	헌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연번	구분	동 명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주 소	성 명	
188	기정	내곡동	374-125	대	203.0	203.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	기정	내곡동	374-126	대	339.0	339.0	정화섭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422길 25-28(내곡동)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189	변경	내곡동	374-126	대	339.0	339.0	주식회사 어퍼하우스헌인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1014, 6층 605-3호(병점동)	신탁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8층(여의도동, 신영증권빌딩)	신영부동산신탁주 식회사	소유자변경
190	기정	내곡동	374-127	도	176.0	176.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191	기정	내곡동	374-128	대	487.0	487.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8층(여의도동, 신영증권빌딩)	신영부동산신탁주 식회사	
192	기정	내곡동	374-129	도	82.0	82.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한국투자부동산신 탁주식회사	
193	기정	내곡동	374-130	대	372.0	372.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역삼동)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194	기정	내곡동	374-131	대	393.0	393.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195	기정	내곡동	374-132	대	210.0	210.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196	기정	내곡동	374-133	대	351.0	351.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197	기정	내곡동	374-134	대	347.0	347.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198	기정	내곡동	374-135	도	114.0	114.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역삼동)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199	기정	내곡동	374-136	대	363.0	363.0	김춘식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풍림2차 201동604호				

연번	구분	동 명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주 소	성 명	
200	기정	내곡동	374-137	대	669.0	669.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201	기정	내곡동	374-138	대	697.0	697.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202	기정	내곡동	374-139	도	175.0	175.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203	기정	내곡동	374-140	대	762.0	762.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204	기정	내곡동	374-141	대	583.0	583.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205	기정	내곡동	374-142	대	602.0	602.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206	기정	내곡동	374-143	대	326.0	326.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식회사	
207	기정	내곡동	374-144	대	338.0	338.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208	기정	내곡동	374-145	대	27.0	27.0	김준형	경기도 광명시 광명역로 28, 203동 1802호(일직동, 광명역센트럴자이)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역삼동)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209	기정	내곡동	374-146	대	556.0	556.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210	기정	내곡동	374-147	대	729.0	729.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8층(여의도동, 신영증권빌딩)	신영부동산신탁주식회사	
211	기정	내곡동	374-148	도	85.0	85.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연번	구분	동 명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주 소	성 명	
212	기정	내곡동	374-149	대	260.0	260.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식회사	
213	기정	내곡동	374-150	대	190.0	190.0	현인하이엔드씨티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내곡동 374-150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주식회사무궁화신탁	
214	기정	내곡동	374-151	도	53.0	53.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식회사	
215	기정	내곡동	374-152	대	939.0	939.0	현인하이엔드씨티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내곡동 374-150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주식회사무궁화신탁	
216	기정	내곡동	374-153	대	1,060.0	1,060.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8층(여의도동, 신영증권빌딩)	신영부동산신탁주식회사	
217	기정	내곡동	374-154	도	61.0	61.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218	기정	내곡동	374-155	대	386.0	386.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219	기정	내곡동	374-156	대	441.0	441.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220	기정	내곡동	374-157	도	107.0	107.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221	기정	내곡동	산12-524	임	3,162.0	3,162.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역삼동)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	기정	내곡동	산12-557	임	1,923.0	942.0	고송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6길 14, 603동 1204호(장지동, 송파파인타운6단지)	근저당권	서울 강동구 둔촌동 180-1 주공아파트434-204	박한국	
							주식회사 우리강남피에프브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01, 15층(청담동, 금하빌딩)	근저당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수하동,미래에셋센터원빌딩이스트타워)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서춘남	서울시 관악구 인헌16나길 16,202호(봉천동,삼보파크빌라)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연번	구분	동 명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주 소	성 명	
222	변경	내곡동	산12-771	임	942.0	942.0	고송지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270 미사강변센트리버 712동302호	근저당권	서울 강동구 둔촌동 180-1 주공아파트434-204	박한국	지적분할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역삼동)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223	기정	내곡동	산12-569	임	662.0	662.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역삼동)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	기정	내곡동	산12-636	임	972.0	327.0	박종우	서울 서초구 반포동 718-11				
							김금숙	서울 서초구 반포동 718-11				
224	변경	내곡동	산12-772	임	327.0	327.0	박종우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53길 97				지적분할
							김금숙	서울 서초구 반포동 718-11				
-	기정	내곡동	산12-637	임	2,362.0	122.0	주식회사 우리강남피에프브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01, 15층(청담동, 금하빌딩)	근저당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수하동,미래에셋센터원빌딩이스트타워)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225	변경	내곡동	산12-773	임	122.0	122.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지적분할
-	기정	내곡동	산12-656	임	482.0	116.0	주식회사 우리강남피에프브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01, 15층(청담동, 금하빌딩)	근저당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수하동,미래에셋센터원빌딩이스트타워)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정성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내곡동 374-28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황정숙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39길3 동익아파트 804-1201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226	변경	내곡동	산12-774	임	116.0	116.0	현인타운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역삼동)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지적분할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28호

온수근린공원(온수체육지구)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 고시 제465호(1971. 8. 6.)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371호(2023. 8.31.)로 공원조성계획 최종 결정된 온수근린공원에 대하여 2023년 제5차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온수근린공원(온수체육지구) 내 미조성 보상완료지를 생활밀착형 공원으로 조성하여 공원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온수동 산11-2번지 일원
3. 공원면적 : 온수근린공원(온수체육지구) 17,413.20㎡*공원전체면적 427,993.00㎡
4.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및 도면 : 따로붙임
※ 첨부된 도면(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02-2133-2076) 및 구로구 공원녹지과(☎02-860-3088), 양천구 공원녹지과(☎02-2620-3574)에서 관련 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온수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 온수근린공원 총괄표

구분		변경전 부지면적(㎡)	변경전 시설면적(㎡)	변경전 건축물 동수(동)	변경전 건축물 바닥면적(㎡)	변경전 건축물 연면적(㎡)	변경전 공작물(기)	구분	변경후 부지면적(㎡)	변경후 시설면적(㎡)	변경후 건축물 동수(동)	변경후 건축물 바닥면적(㎡)	변경후 건축물 연면적(㎡)	변경후 공작물(기)	비고
계		427,993.00	67,344.78	9.00	1,002.04	1,044.04	347.00	계	427,993.00	73,187.64	9.00	1,002.04	1,044.04	347.00	
공원시설구역	소 계	427,993.00	67,344.78	9.00	1,002.04	1,044.04	347.00	소 계	427,993.00	73,187.64	9.00	1,002.04	1,044.04	347.00	
	지양지구	80,208.90	14,847.73	1	37.51	37.51		지양지구	80,208.90	14,847.73	1	37.51	37.51		
	연의지구	28,155.50	4,792.88	1.00	72.60	72.60	78	연의지구	28,155.50	4,792.88	1.00	72.60	72.60	78	
	강월지구	2,755.60	1,161.26	1	125.25	125.25	27	강월지구	2,755.60	1,161.26	1	125.25	125.25	27	
	강신지구	15,463.20	1,710.26				9	강신지구	15,463.20	1,710.26				9	
	농업지구	48,695.10	7,017.72	1	207.00	249.00	43	농업지구	48,695.10	7,017.72	1	207.00	249.00	43	
	매봉지구	88,731.00	4,413.54				48	매봉지구	88,731.00	4,413.54				48	
	잣절지구	77,320.60	17,508.19	2	48.74	48.74		잣절지구	77,320.60	17,508.19	2	48.74	48.74		
	반달지구	1,529.20	726.14				17	반달지구	1,529.20	726.14				17	
	문학지구	26,766.70	8,663.78	1	242.22	242.22	7	문학지구	26,766.70	8,663.78	1	242.22	242.22	7	
	텃골지구	6,026.00	1,282.80	1	214.72	214.72	1	텃골지구	6,026.00	1,282.80	1	214.72	214.72	1	
	궁동지구	868.00	485.62				1	궁동지구	868.00	485.62				1	
	벽산지구	26,074.70	3,767.60				36	벽산지구	26,074.70	3,767.60				36	
	온수골지구	7,985.30	2,060.77				10	온수골지구	7,985.30	2,060.77				10	
	온수체육지구	17,413.20	3,699.37	1	54.00	54.00	50	온수체육지구	17,413.20	4,749.35	1	54.00	54.00	70	
시설률 (법정40%이하)		67,344.78 / 427,993.00 x 100 = 16.85%						시설률 (법정40%이하)	73,187.64/ 427,993.00 x 100 = 17.10%						증 0.25% ※ 특정시설률 변동없음
건폐율 (법정10%이하)		1,002.04 / 427,993.00 x 100 = 0.23%						건폐율 (법정10%이하)	1,002.04 / 427,993.00 x 100 = 0.23%						

온수근린공원(온수체육지구)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14-1. 온수근린공원(온수체육지구) 총괄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17,413.20	3,699.37	1	54.00	54.00	50	17,413.20	4,749.35	1.00	54.00	54.00	70.00	
기반시설	소계	1,652.37	1,652.37					2,038.34	2,038.34	-	-	-	-	
	도로	1,189.37	1,189.37					1,575.34	1,575.34	-	-	-	-	
	광장	463.00	463.00					463.00	463.00	-	-	-	-	
조경시설								509.16	509.16	-	-	-	12.00	
휴양시설		450.00	450.00				31	487.21	487.21	-	-	-	36.00	
유희시설		420.00	420.00				5	537.64	537.64	-	-	-	8.00	
운동시설		1,123.00	1,123.00				13	1,123.00	1,123.00	-	-	-	13.00	
교양시설								-	-	-	-	-	-	
편익시설		54.00	54.00	1	54.00	54.00	1	54.00	54.00	1.00	54.00	54.00	1.00	
관리시설								-	-	-	-	-	-	
녹지 및 기타		13,713.83						12,663.85		-	-	-	-	

14-2. 온수근린공원(온수체육지구)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합 계				17,413.20	3,699.37		1	54.00	54.00	50			17,413.20	4,749.35		1	54.00	54.00	70	
기반시설	소계			1,652.37	1,652.37		-	-	-	-			2,038.34	2,038.34		-	-	-	-	지 385.97
	도로(소계)			1,189.37	1,189.37								1,575.34	1,575.34						지 385.97
	광장(소계)	가		463.00	463.00						가		463.00	463.00						
	광장	가-1	온수동 산20-14	148.00	148.00						가-1	온수동 산20-14	148.00	148.00						
		가-2	온수동 산10-4	115.00	115.00						가-2	온수동 산10-4	115.00	115.00						
		가-3	온수동 산10-4	200.00	200.00						가-3	온수동 산10-4	200.00	200.00						
조경시설	소계			-	-		-	-	-	-			509.16	509.16		-	-	-	12	지 509.16
	생태연못										나	온수동 산11-2	85.89	85.89						
	관찰데크										다	온수동 산11-2	42.20	42.20						
	목교										라	온수동 산11-2	40.94	40.94						
											라-1	온수동 산11-2	11.16	11.16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라-2	온수동 산11-2	6.12	6.12						
											라-3	온수동 산11-2	11.83	11.83						
											라-4	온수동 산11-2	11.83	11.83						
	하늘길데크										마	온수동 산11-2	13.61	13.61						
	흙막이										바	온수동 산11-2	16.38	16.38						
	계류정비										사	온수동 산11-2	30.91	30.91						
	틈새정원										아	온수동 산11-2	279.23	279.23						
	미로(천이관찰대)										①	녹지대							1	
	새집										②	녹지대							3	
	새모이대										③	녹지대							3	
	돌무더기										④	녹지대							3	
	나무더미										⑤	녹지대							2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휴양시설	소계			450.00	450.00		-	-	-	31.00			487.21	487.21		-	-	-	36	증 37.21
	휴게소	나		450.00	450.00						자		487.21	487.21						
		나-1	온수동 10-5	171.00	171.00						자-1	온수동 10-5	171.00	171.00						
		나-2	온수동 10-4	134.00	134.00						자-2	온수동 10-4	134.00	134.00						
		나-3	온수동 10-4	145.00	145.00						자-3	온수동 10-4	182.21	182.21						증 37.21
	파고라 A	①	휴게소 나-1							1	⑥	휴게소 자-1							1	
	파고라 B	②	전지역							3	⑦	전지역							3	
	초정										⑧	유희시설 차-3							1	신설
	그루터기의차										⑨	유희시설 차-3							4	신설
	평의차	③	전지역							17	⑩	전지역							17	
	등의차	④	전지역							10	⑪	전지역							10	
유희시설	소계			420.00	420.00		-	-	-	5			537.64	537.64		-	-	-		증 117.64
	어린이놀이터	다		420.00	420.00						차		537.64	537.64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다-1	온수동 10-5	161.00	161.00						차-1	온수동 10-5	161.00	161.00						
		다-2	온수동 20-16	259.00	259.00						차-2	온수동 20-16	259.00	259.00						
											차-3	온수동 산11-2	117.64	117.64						증 117.64
	조합놀이대	⑤	어린이놀이터 다-1							1	⑫	어린이놀이터 차-1							1	
	시소	⑥	어린이놀이터 다-1							1	⑬	어린이놀이터 차-2							1	
	그네	⑦	어린이놀이터 다-1							1	⑭	어린이놀이터 파-2							1	
	흔들놀이시설	⑧	어린이놀이터 다-1							2	⑮	어린이놀이터 차-2							2	
	기둥잡고오르기										⑯	어린이놀이터 차-3							1	신설
	통나무건너기										⑰	어린이놀이터 차-3							1	신설
	나무실로폰										⑱	어린이놀이터 차-3							1	신설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운동시설	소계			1,123.00	1,123.00		-	-	-	13			1,123.00	1,123.00		-	-	-	13	
	배드민턴장	라	온수동 10-5	384.00	384.00						카	온수동 10-5	384.00	384.00						
	체력단련장	마		119.00	119.00						타		119.00	119.00						
		마-1	온수동 10-5	70.00	70.00						타-1	온수동 10-5	70.00	70.00						
		마-2	온수동 20-14	49.00	49.00						타-2	온수동 20-14	49.00	49.00						
	다목적운동장	바	온수동 10-4	620.00	620.00						파	온수동 10-4	620.00	620.00						
	체력단련시설	⑨	전지역							13	⑲	전지역							13	
편익시설	소계			54.00	54.00		1	54.00	54.00	1			54.00	54.00		1	54.00	54.00	1	
	화장실	1	온수동 산10-4	54.00	54.00		1	54.00	54.00		1	온수동 산10-4	54.00	54.00		1	54.00	54.00		
	음수전	⑩	체력단련장 마-1							1	⑳	체력단련장 타-1							1	
녹지 및 기타	소계			13,713.83									12,663,85							감1,049.98
	녹지			13,713.83									12,663,85							감1,04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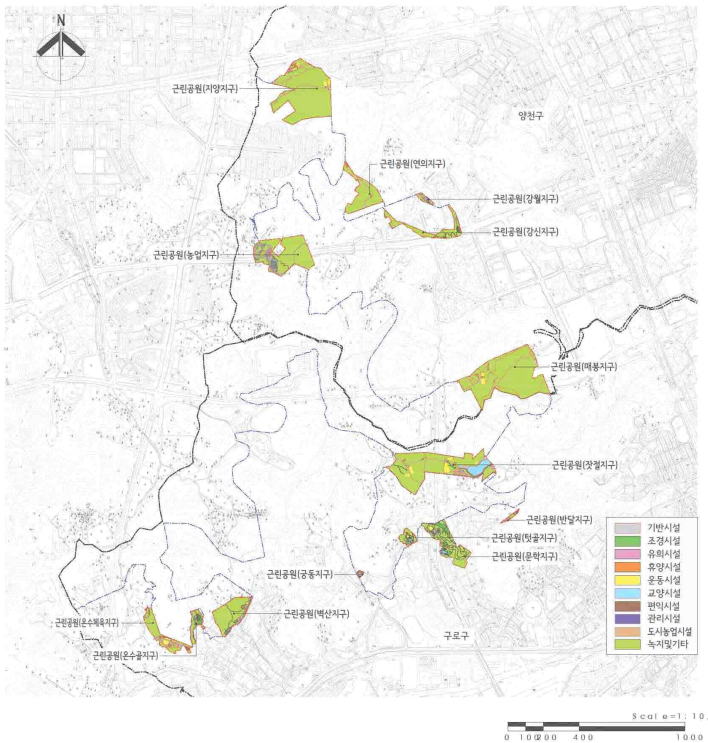
14-3.온수근린공원(온수체육지구)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계				541.57	1,189.37				
변경					875.60	1,575.34				
	산책로	계			905.53	1,638.18				
당초		산책로	1	4	3.17	12.37	산책로	광장가-3	휴게소나-2	
변경		산책로	1	1.5	2.60	3.60	연결로	광장가-3	산책로2	
당초		산책로	2	2	21.50	42.99	산책로	공원경계	휴게소자-2	
당초		산책로	3	2.0~2.5	136.20	310.11	산책로	휴게소자-2	광장가-1	
당초		산책로	4	2.0	11.70	23.42	산책로	산책로3	광장가-2	
당초		산책로	5	2.0	3.50	7.24	산책로	산책로4	다목적운동장하	
당초		산책로	6	1.5	25.10	37.98	산책로	공원경계	산책로3	
당초		산책로	7	1.0	10.90	10.89	산책로	산책로3	산책로10	
당초		산책로	8	1.8	9.10	15.72	산책로	공원경계	녹지대	
당초		산책로	9	3.0~4.0	48.20	150.17	산책로	광장가-1	산책로13	
당초		산책로	10	2.5	31.90	82.18	산책로	산책로3	산책로13	
당초		산책로	11	1.2~3.0	13.80	25.98	산책로	공원경계	산책로9	
당초		산책로	12	1.9	1.90	3.58	산책로	산책로13	배드민턴장카	
당초		산책로	13	1.8~5.0	83.70	211.58	산책로	어린이놀이터차-2	휴게소자-2	
당초		산책로	14	1.5~2.0	54.80	78.84	연결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변경		산책로	14	1.5~7.0	7.83	18.13	연결로	광장자-2	산책로30	
당초		산책로	15	2.0	86.10	176.32	산책로	산책로14	공원경계	
변경		산책로	15	1.0~4.0	14.41	15.35	산책로	산책로16	산책로30	
변경		산책로	16	1.0	53.04	53.04	산책로	산책로16	산책로30	
변경		산책로	17	1.5	44.76	68.70	산책로	산책로28	산책로18	
변경		산책로	18	1.5	70.85	106.34	산책로	공원경계	산책로19	
변경		산책로	19	1.5~3.0	7.16	10.78	산책로	산책로18	산책로20	
변경		산책로	20	1.0	21.81	20.94	산책로	산책로26	공원경계	
변경		산책로	21	1.5	8.24	9.89	산책로	관찰데크아	광장차-3	
변경		산책로	22	1.5	2.28	3.47	산책로	산책로23	관찰데크아	
변경		산책로	23	1.5~4.0	68.51	88.44	산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²)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변경		산책로	24	1.5~4.0	4.17	7.03	산책로	관찰데크아	산책로26	
변경		산책로	25	1.5	10.38	12.46	산책로	산책로23	산책로26	
변경		산책로	26	1.5	40.71	48.86	산책로	공원경계	광장차-3	
변경		산책로	27	1.5	39.69	60.40	산책로	산책로18	산책로29	
변경		산책로	28	1.5~4.0	3.49	8.83	산책로	산책로27	목교라-2	
변경		산책로	29	1.5	11.86	17.79	산책로	목교라-3	목교라-4	
변경		산책로	30	1.5	66.31	99.45	산책로	목교라-4	휴게소자-3	

조성계획도 [변경전]

온수근린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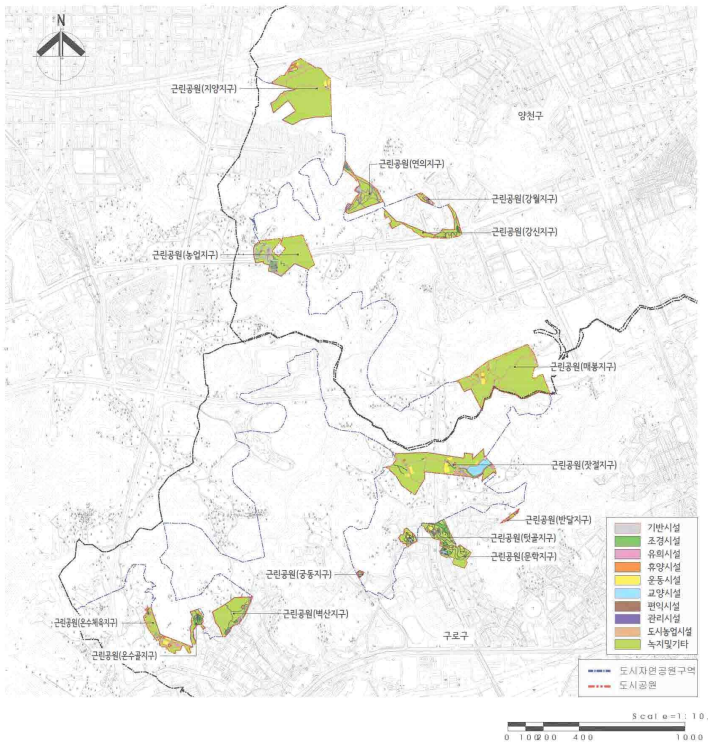
■ 총괄표

구분		총계	지양지구	연의지구	강월지구	강신지구	농업지구	매봉지구
부지 총 면적		427,993.00	80,208.90	28,155.50	2,755.60	15,463.20	48,695.10	88,731.00
시설 총 면적		73,187.64	14,847.73	4,792.88	1,161.26	1,710.26	7,017.72	4,413.54
기반시설	소계	33,465.35	5,496.91	3,983.44	449.70	1,256.02	4,550.72	2,812.61
	도로	28,146.40	5,345.17	2,778.61	115.07	1,256.02	3,285.72	2,486.11
	광장	5,318.95	151.74	1,204.83	334.63	-	1,265.00	326.50
조경시설		8,733.03	-	650.72	-	353.35	1,734.00	-
휴양시설		4,086.86	1,014.00	-	148.84	54.20	526.00	411.52
유희시설		2,282.41	207.64	-	283.53	-	-	-
운동시설		8,682.06	1,435.37	-	153.94	46.69	-	1,189.41
교양시설		15,045.01	6,656.30	-	-	-	-	-
편익시설		489.69	-	-	125.25	-	207.00	-
관리시설		403.23	37.51	158.72	-	-	-	-
녹지 및 기타		354,805.36	65,361.17	23,362.62	1,594.34	13,752.94	41,677.38	84,317.46

구분		잣절지구	반달지구	문학지구	탓골지구	궁동지구	벽산지구	온수골지구	온수체육지구
부지 총 면적		77,320.60	1,529.20	26,766.70	6,026.00	868.00	26,074.70	7,985.30	17,413.20
시설 총 면적		17,508.19	726.14	8,663.78	1,291.66	485.62	3,767.60	2,060.77	3,699.37
기반시설	소계	4,629.16	276.99	4,043.61	662.87	139.07	2,428.50	676.41	1,652.37
	도로	3,590.58	276.99	3,772.37	606.30	99.90	2,292.43	644.79	1,189.37
	광장	1,038.58	-	271.24	56.57	39.17	136.07	31.62	463.00
조경시설		995.25	6.00	2,680.36	22.80	-	397.03	1,384.36	-
휴양시설		300.17	112.32	501.34	138.77	177.81	244.54	-	450.00
유희시설		281.00	196.62	196.50	-	145.82	433.66	-	420.00
운동시설		3,339.87	134.21	761.78	211.00	22.92	263.87	-	1,123.00
교양시설		7,891.00	-	282.99	214.72	-	-	-	-
편익시설		71.74	-	197.20	41.50	-	-	-	54.00
관리시설		-	-	-	-	-	-	-	-
녹지 및 기타		59,812.41	803.06	18,102.92	4,734.34	382.38	22,307.10	5,924.53	13,713.83

조성계획도 [변경후]

온수근린공원



■ 총괄표

구분		총계	지양지구	연의지구	강월지구	강신지구	농업지구	매봉지구
부지 총 면적		427,993.00	80,208.90	28,155.50	2,755.60	15,463.20	48,695.10	88,731.00
시설 총 면적		73,187.64	14,847.73	4,792.88	1,161.26	1,710.26	7,017.72	4,413.54
기반시설	소계	33,465.35	5,496.91	3,983.44	449.70	1,256.02	4,550.72	2,812.61
기반시설	도로	28,146.40	5,345.17	2,778.61	115.07	1,256.02	3,285.72	2,486.11
기반시설	광장	5,318.95	151.74	1,204.83	334.63	-	1,265.00	326.50
조경시설		8,733.03	-	650.72	-	353.35	1,734.00	-
휴양시설		4,086.86	1,014.00	-	148.84	54.20	526.00	411.52
유희시설		2,282.41	207.64	-	283.53	-	-	-
운동시설		8,682.06	1,435.37	-	153.94	46.69	-	1,189.41
교양시설		15,045.01	6,656.30	-	-	-	-	-
편익시설		489.69	-	-	125.25	-	207.00	-
관리시설		403.23	37.51	158.72	-	-	-	-
녹지 및 기타		354,805.36	65,361.17	23,362.62	1,594.34	13,752.94	41,677.38	84,317.46

구분		잣절지구	번달지구	문학지구	탓골지구	궁동지구	벽산지구	온수골지구	온수체육지구
부지 총 면적		77,320.60	1,529.20	26,766.70	6,026.00	868.00	26,074.70	7,985.30	17,413.20
시설 총 면적		17,508.19	726.14	8,663.78	1,291.66	485.62	3,767.60	2,060.77	4,749.35
기반시설	소계	4,629.16	276.99	4,043.61	662.87	139.07	2,428.50	676.41	2,038.34
기반시설	도로	3,590.58	276.99	3,772.37	606.30	99.90	2,292.43	644.79	1,575.34
기반시설	광장	1,038.58	-	271.24	56.57	39.17	136.07	31.62	463.00
조경시설		995.25	6.00	2,680.36	22.80	-	397.03	1,384.36	509.16
휴양시설		300.17	112.32	501.34	138.77	177.81	244.54	-	487.21
유희시설		281.00	196.62	196.50	-	145.82	433.66	-	537.64
운동시설		3,339.87	134.21	761.78	211.00	22.92	263.87	-	1,123.00
교양시설		7,891.00	-	282.99	214.72	-	-	-	-
편익시설		71.74	-	197.20	41.50	-	-	-	54.00
관리시설		-	-	-	-	-	-	-	-
녹지 및 기타		59,812.41	803.06	18,102.92	4,734.34	382.38	22,307.10	5,924.53	12,663.85

구 분	입안 및 결정권자				
	작성자			확인자	
직 위	주무관	공원정책팀장	공원녹지과장	주 무 관	주택공원팀장
직 명	지방녹지주사보	지방녹지주사	지방녹지사무관	지방녹지주사	지방녹지사무관
성 명	양 예 지	유 정 화	손 희 남	가 덕 윤	장 창 수
확인인					

조성계획도 [변경전]

온수근린공원(온수체육지구)



■시설조서

구분		부호	부지면적 (㎡)	사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비고
합계			17,413.20	3,699.37	-	1	54.00	54.00	50	
기반시설	소계		1,652.37	1,652.37	-	-	-	-	-	
	도로		1,189.37	1,189.37	-	-	-	-	-	
	광장	가	463.00	463.00	-	-	-	-	-	
		가-1	(148.00)	(148.00)	-	-	-	-	-	
		가-2	(115.00)	(115.00)	-	-	-	-	-	
		가-3	(200.00)	(200.00)	-	-	-	-	-	
휴양시설	소계		450.00	450.00	-	-	-	-	31	
	휴게소	나	450.00	450.00	-	-	-	-	-	
		나-1	(171.00)	(171.00)	-	-	-	-	-	
		나-2	(134.00)	(134.00)	-	-	-	-	-	
		나-3	(145.00)	(145.00)	-	-	-	-	-	
	파고라A	①	-	-	-	-	-	-	1	
	파고라B	②	-	-	-	-	-	-	3	
	평의자	③	-	-	-	-	-	-	17	
	등의자	④	-	-	-	-	-	-	10	
유희시설	소계		420.00	420.00	-	-	-	-	5	
	어린이놀이터	다	420.00	420.00	-	-	-	-	-	
		다-1	(161.00)	(161.00)	-	-	-	-	-	
		다-2	(259.00)	(259.00)	-	-	-	-	-	
	조합놀이대	⑤	-	-	-	-	-	-	1	
	시소	⑥	-	-	-	-	-	-	1	
	그네	⑦	-	-	-	-	-	-	1	
	혼합놀이시설	⑧	-	-	-	-	-	-	2	
운동시설	소계		1,123.00	1,123.00	-	-	-	-	13	
	배드민턴장	라	384.00	384.00	-	-	-	-	-	
	체력단련장	마	119.00	119.00	-	-	-	-	-	
		마-1	(70.00)	(70.00)	-	-	-	-	-	
		마-2	(49.00)	(49.00)	-	-	-	-	-	
	다목적운동장	바	620.00	620.00	-	-	-	-	-	
	체력단련시설	⑨	-	-	-	-	-	-	13	
편익시설	소계		54.00	54.00	-	1	54.00	54.00	1	
	화장실	1	54.00	54.00	-	1	54.00	54.00	-	
	음수전	⑩	-	-	-	-	-	-	1	
녹지 및 기타	소계		13,713.83	-	-	-	-	-	-	
	녹지		13,713.83	-	-	-	-	-	-	

조성계획도 [변경후]

온수근린공원(온수체육지구)



■ 시설조서

구분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비고
합계			17,413.20	4,749.35	-	1	54.00	54.00	70	
기반시설	소계		2,038.34	2,038.34	-	-	-	-	-	
	도로		1,575.34	1,575.34	-	-	-	-	-	
	광장	가	463.00	463.00	-	-	-	-	-	
		가-1	(148.00)	(148.00)	-	-	-	-	-	
		가-2	(115.00)	(115.00)	-	-	-	-	-	
		가-3	(200.00)	(200.00)	-	-	-	-	-	
조경시설	소계			509.16	-	-	-	-	-	
	생태연못	나		85.89	-	-	-	-	-	
	관찰데크	다		40.94	-	-	-	-	-	
	목교	라		40.94						
		라-1		(11.16)	-	-	-	-	-	
		라-2		(6.12)	-	-	-	-	-	
		라-3		(11.83)	-	-	-	-	-	
		라-4		(11.83)	-	-	-	-	-	
	하늘길 데크	마		13.61	-	-	-	-	-	
	홍작이	바		16.38	-	-	-	-	-	
	계류정비	사		30.91	-	-	-	-	-	
	휴식정원	아		279.23	-	-	-	-	-	
	의자(관람석)	①			-	-	-	-	1	
	새집	③			-	-	-	-	3	
	새모이대	③			-	-	-	-	3	
	돌무더기	④			-	-	-	-	3	
	나무더미	⑤			-	-	-	-	2	
휴양시설	소계		487.21	487.21	-	-	-	-	36	
	휴게소	자	487.21	487.21	-	-	-	-	-	
		자-1	(171.00)	(171.00)	-	-	-	-	-	
		자-2	(134.00)	(134.00)	-	-	-	-	-	
		자-3	(182.21)	(182.21)	-	-	-	-	-	
	파고라A	⑤	-	-	-	-	-	-	1	
	파고라B	⑦	-	-	-	-	-	-	3	
	초정	⑧	-	-	-	-	-	-	1	
	그루터기 의자	⑨	-	-	-	-	-	-	4	
	평의자	⑨	-	-	-	-	-	-	17	
	등의자	⑩	-	-	-	-	-	-	10	

■ 시설조서

구분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비고
유희시설	소계			537.64	537.64	-	-	-	-	8
	어린이놀이터	차		537.64	537.64	-	-	-	-	-
		차-1		(161.00)	(161.00)	-	-	-	-	-
		차-2		(259.00)	(259.00)	-	-	-	-	-
		차-3		(117.64)	(117.64)	-	-	-	-	-
	조합놀이대	⑫		-	-	-	-	-	-	1
	시소	⑬		-	-	-	-	-	-	1
	그네	⑭		-	-	-	-	-	-	1
	흔들놀이시설	⑮		-	-	-	-	-	-	2
	기둥2오르기	⑯		-	-	-	-	-	-	1
	통나무건너기	⑰		-	-	-	-	-	-	1
	나무실로폰	⑱		-	-	-	-	-	-	1
운동시설	소계		1,123.00	1,123.00	-	-	-	-	-	13
	배드민턴장	카		384.00	384.00	-	-	-	-	-
	체력단련장	타		119.00	119.00	-	-	-	-	-
		타-1		(70.00)	(70.00)	-	-	-	-	-
		타-2		(49.00)	(49.00)	-	-	-	-	-
	다목적운동장	하		620.00	620.00	-	-	-	-	-
	체력단련시설	⑲		-	-	-	-	-	-	13
편익시설	소계			54.00	54.00	-	1	54.00	54.00	1
	화장실	1		54.00	54.00	-	1	54.00	54.00	-
	음수전	㉑		-	-	-	-	-	-	1
녹지 및 기타	소계			12,592.49	-	-	-	-	-	-
	녹지			12,592.49	-	-	-	-	-	-

구 분	입안 및 결정권자			확인자	
	작성자				
직 위	주무관	공원정책팀장	공원녹지과장	주 무 관	주제공원팀장
직 명	지방녹지주사보	지방녹지주사	지방녹지사무관	지방녹지주사	지방녹지사무관
성 명	양 예 지	유 정 화	손 희 남	가 덕 룡	장 창 수
확인인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29호

도시관리계획(대림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BYC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328호(1996.12.04.)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되고, 제2000-310호(2000.11.06.) 및 제2020-288호(2020. 7. 9.)로 결정된 대림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특별계획구역(BYC)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대하여 2024년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대림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BYC)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대림동 일대의 도시가치와 도시안전이 증진되는 거점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림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변경하고 특별계획구역(BYC)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고자 함

Ⅱ.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대림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영등포구 대림동 1104-1 일대	49,480	증) 24	49,504	2000.11.06. (서고 제2000-310호)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대림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 구역면적 변경 - 증) 24㎡	• BYC 특별계획구역 변경에 따른 구역면적 변경(국공유지 일부 편입)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가.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49,480	증) 24	49,504	100.0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9,810	증) 20	9,830	19.8	-
	제3종일반주거지역	101	-	101	0.2	-
	준주거지역	18,826	증) 4	18,830	38.0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20,743	-	20,743	42.0	-

※ 구역 편입에 대한 면적 증가사항이며, 용도지역 위치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사항은 없음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증) 20㎡	• 구역편입에 대한 면적 증가 (BYC부지 관련)
	준주거지역	증) 4㎡	• 구역편입에 대한 면적 증가 (BYC부지 관련)

(2)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총괄표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기정	9	1,112	11,926	1	102	1,055	5	605	6,576	3	405	4,295
	변경	9	1,118	11,274	2	208	1,416	4	422	5,038	3	488	4,820
중로	기정	3	619	8,210	-	-	-	2	327	4,676	1	292	3,534
	변경	2	538	7,291	-	-	-	1	259	3,847	1	279	3,444
소로	기정	6	493	3,716	1	102	1,055	3	278	1,900	2	113	761
	변경	7	580	3,983	2	208	1,416	3	163	1,191	2	209	1,376

■ 도로 결정(변경)조서(실효)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중로	2	1	12~15	보조간선	252	대림동 994-26	대림동 1104-4	일반도로	2000.11.06. (서고 제2000-310호)	-
변경	중로	2	1	13~15	보조간선	186	대림동 994-26	대림동 1104-4	일반도로	2000.11.06. (서고 제2000-310호)	미집행 구간 실효
기정	중로	2	2	15	집산도로	75	대림동 995-4	대림동 1103-16	일반도로	2000.11.06. (서고 제2000-310호)	-
폐지	중로	2	2	15	집산도로	75	대림동 995-4	대림동 1103-16	일반도로	2000.11.06. (서고 제2000-310호)	실효
기정	중로	3	1	12	보조간선	292	대림동 994-28	대림동 994-25	일반도로	2000.11.06. (서고 제2000-310호)	-
변경	중로	3	1	8~12	보조간선	292	대림동 994-28	대림동 994-25	일반도로	2000.11.06. (서고 제2000-310호)	미집행 구간 실효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102	대림동 1104-1	대림동 1101-16	일반도로	2000.11.06. (서고 제2000-310호)	-
변경	소로	1	1	6	국지도로	57	대림동 1104-1	대림동 1101-16	일반도로	2000.11.06. (서고 제2000-310호)	미집행 구간 실효
기정	소로	2	1	6~8	국지도로	157	대림동 1095-1	대림동 1123-7	일반도로	2000.11.06. (서고 제2000-310호)	-
변경	소로	2	1	8	국지도로	45	대림동 1095-1	대림동 1123-7	일반도로	2000.11.06. (서고 제2000-310호)	-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51	대림동 994-25	대림동 992-22	일반도로	2020.07.09. (서고 제2020-288호)	-
기정	소로	2	220	8	국지도로	70	대림동 1117-6	대림동 1103-15	일반도로	1970.07.25. (서고 제1970-32호)	-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23	대림동 1101-23	대림동 1101-11	일반도로	2000.11.06. (서고 제2000-310호)	-
변경	소로	3	1	6	국지도로	23	대림동 1101-23	대림동 1101-11	일반도로	2000.11.06. (서고 제2000-310호)	미집행 구간 실효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90	대림동 1094-2	대림동 1094-15	일반도로	2020.07.09. (서고 제2020-288호)	-

■ 실효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중로	2	1	13~15	보조간선	186	대림동 994-26	대림동 1104-4	일반도로	2000.11.06. (서고 제2000-310호)	-
변경	중로	2	1	14~15	보조간선	252	대림동 994-26	대림동 1104-4	일반도로	2000.11.06. (서고 제2000-310호)	-
기정	중로	3	1	8~12	보조간선	292	대림동 994-28	대림동 994-25	일반도로	2000.11.06. (서고 제2000-310호)	-
변경	중로	3	1	12	보조간선	292	대림동 994-28	대림동 994-25	일반도로	2000.11.06. (서고 제2000-310호)	방수설비중복결정
기정	소로	1	1	6	국지도로	57	대림동 1104-1	대림동 1101-16	일반도로	2000.11.06. (서고 제2000-310호)	-
변경	소로	1	1	10	국지도로	90	대림동 1104-1	대림동 1101-11	일반도로	2000.11.06. (서고 제2000-310호)	-
신설	소로	1	A	4~10	국지도로	122	대림동 995-1	대림동 1104-1	일방도로	-	방수설비중복결정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45	대림동 1095-1	대림동 1123-7	일반도로	2000.11.06. (서고 제2000-310호)	-
변경	소로	2	1	8	국지도로	40	대림동 1101-16	대림동 1123-7	일반도로	2000.11.06. (서고 제2000-310호)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51	대림동 994-25	대림동 992-22	일반도로	2020.07.09. (서고 제2020-288호)	-
기정	소로	2	220	8	국지도로	70	대림동 1117-6	대림동 1103-15	일반도로	1970.07.25. (서고 제1970-320호)	-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23	대림동 1101-23	대림동 1101-11	일반도로	2000.11.06. (서고 제2000-310호)	-
폐지	소로	3	1	6	국지도로	23	대림동 1101-23	대림동 1101-11	일반도로	2000.11.06. (서고 제2000-310호)	-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90	대림동 1094-2	대림동 1094-15	일반도로	2020.07.09. (서고 제2020-288호)	-
신설	소로	3	A	6	국지도로	100	대림동 1104-1	대림동 1101-3	일반도로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2-1	• 변경 - 폭원 : 13~15m → 14m~15m - 연장 : 186m → 252m	• 중로 2-1호선 실효된 미집행구간 도로 재결정
중로3-1	• 변경 - 폭원 : 8~12m → 12m • 방수설비 중복결정	• 중로 3-1호선 실효된 미집행구간 도로 재결정 • 방수설비 중복결정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1-1	• 변경 - 폭원 : 6m → 10m - 연장 : 57m → 90m	• 소로 1-1호선 실효된 미집행구간 도로 재결정 및 도로 폭원, 연장 변경
소로1-A	• 신설 - 폭원 : 4~10m, 연장 : 122m	• 원활한 교통체계를 고려한 신설
소로2-1	• 변경 - 연장 : 45m → 40m	• 도로선형 변경 및 원활한 교통체계를 고려한 연장 변경
소로3-1	• 폐지	• 원활한 교통체계를 고려한 폐지
소로3-A	• 신설 - 폭원 : 6m, 연장 : 100m	• 원활한 교통체계를 고려한 신설

나. 공간시설

(1) 공원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소공원	대림동 1104-1 일대	-	증)1,159	1,159 (1,159)	-	방수설비Ⓑ 1,159㎡ 중복결정

※ ( )는 중복결정 면적임

■ 공원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공원	• 신설 및 중복결정 - 증) 1,159㎡	• 지역주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공원 신설 • 지하부 방수설비(저류조) 중복결정

(2)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공공지	대림동 1122-1	894.4	-	894.4	2000.11.06. (서고 제2000-310호)	

다. 방재시설

(1) 방수설비

■ 방수설비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①	방수설비	대림동 1104-1 일대	1,527	감)1,527	-	2020.07.09. (서고 제2020-288호)	-
신설	Ⓐ	방수설비	대림동 1104-1 일대	-	증)1,421	1,421 (755)	-	- 방수설비부지 666㎡ 도로 중복결정 755㎡
신설	Ⓑ	방수설비	대림동 1104-1 일대	-	증)1,159	1,159 (1,159)	-	- 소공원Ⓐ 중복결정

※ ( )는 중복결정 면적임

■ 방수설비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방수설비	• 폐지	• 방수설비 현 위치 존치에 따른 이전부지 시설 폐지
Ⓐ	방수설비	• 신설 및 중복결정 - 증) 1,421㎡ • 중복결정 : 중로3-1, 소로1-A 중복결정 755㎡	• 현황 방수설비 존치에 따른 시설 결정
Ⓑ	방수설비	• 신설 및 중복결정 - 증) 1,159㎡	• 방수설비 신설

■ 방수설비 건축물에 관한 계획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구분	계획내용
Ⓐ	방수설비	용도	방수설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 적용
		높이	2층 이하(12m 이하)
		배치	도면 참조
		형태	• 주변경관과 어우러지는 소재를 적용 • 건축물 외부 공간은 공원화 조성 • 주변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성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및 획지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개발여부	면적			재정비 방향
			기정	변경	변경후	
I	대림동 1126번지	기개발	3,681	-	3,681	-
II	대림동 994-4번지 일대 (동서식품)	미개발	3,241.6	-	3,241.6	-
III	대림동 1121번지 (신대림자이1단지)	기개발	3,814	-	3,814	-
IV	대림동 1122번지 (신대림자이2단지)	기개발	4,179	-	4,179	-
V	대림동 1104-1번지 일대 (BYC 특별계획구역)	미개발	12,182	감) 817	11,365	-
VI	대림동 1101-7번지	기개발	2,967	-	2,967	-
VII	대림동 1101-1번지 (유탑유블레스)	기개발	964	-	964	-
VIII	대림동 1005-3번지 일대 (BYC마트)	기개발	4,184	-	4,184	-

※ 면적은 향후 측량성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계획(변경없음)

(1) 건축물의 불허용도 결정 조서

적용구역	전층 불허용도
공통	• 해당 용도지역 내 불허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마권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및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 위락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장례식장

(2) 건축물의 권장용도 결정 조서

구분	전층 권장용도	1층 권장용도
1 (특별계획구역)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판매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판매시설 중 상점
2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시설	-
3	• 판매시설 중 상점(1,000㎡ 미만) • 공동주택	-
4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5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판매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시설	-

(3) 건축물의 용도완화 결정 조서

구분	내용		비고
가	전층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일반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단, 전체 연면적의 30% 이상 근린생활시설 확보	BYC 마트부지

나. 건축물의 밀도 결정(변경) 조서

(1) 건폐율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일반상업지역	60% 이하	-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 용적률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용적률 계획(%)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 이하	200% 이하	조례용적률 2배 이하	※ 기 개발지에 한하여 기정용적률 계획 유지
준주거지역	300% 이하	360% 이하		
일반상업지역	300% 이하	630% 이하		

주) 1.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및 생활숙박시설 제외) 비율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생활숙박시설 관리방안 수립(2020.11.9.)' 에 따라 개정된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3-4-2(3)에 따라 지상부 용적률 10% 이상으로 함
2.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건축물 용도비율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 제3항 [별표3]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12호(2019.9.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13호(2019.9.19.)' 를 준수하여 용도비율 및 용적률을 적용
3.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걸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
4. 장기전세주택 및 관광숙박시설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지침을 따름
5. 상한용적률은 공공기여 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 제10항 및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개정(2019.1.16.)' 적용

(3) 건축물 높이계획 결정(변경) 조서

■ 기정

구분	계획내용	비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30m 이하	-
준주거지역	60m 이하	-
일반상업지역	75~120m 이하	동서식품 : 88m 이하 BYC(특별계획구역) : 120m 이하 (단, 평균높이 88m 이하 적용)

■ 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30m 이하	-
준주거지역	60m 이하	-
일반상업지역	75~120m 이하	동서식품 : 88m 이하 BYC(특별계획구역) : 120m 이하 (완화높이 144m 이하 적용)

■ 높이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간선부	• 평균높이(88m 이하)계획 폐지 • 일부 지역 높이 완화 – 특별계획구역(BYC) : 120m → 144m 이하	• 완화높이 적용을 통한 광역중심기능 강화 및 적정개발 규모 유도

※ 완화높이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시 완화(공공시설등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는 높이와 용적률 중복 적용 가능)

다. 건축물 배치 · 형태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건축물 배치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기정

구분			적용기준		비고
건축한계선	시흥대로변 도림천로변		건축한계선 5m		• 가로경관의 향상 • 유효한 전면공지 확보 • 가로경관의 연속성 확보 • 일조권 및 보행환경 확보
	12~15m 도로변	중로2-1	건축한계선 3~5m		
		중로3-1	건축한계선 6m		
	BYC마트부지		소로3-2	건축한계선 2m	
			중로2-1, 소로2-2	건축한계선 3m	
	공공공지①		건축한계선 3~5m		
	그 외 구간		건축한계선 1~2m		
벽면한계선			벽면한계선 2~8m		• 불합리한 보행동선 개선 • 공원녹지공간과 연계 강화

■ 변경

구분			적용기준		비고
건축한계선	시흥대로변 도림천로변		건축한계선 5m		• 가로경관의 향상 • 유효한 전면공지 확보 • 가로경관의 연속성 확보 • 일조권 및 보행환경 확보
	12~15m 도로변	중로2-1	건축한계선 3m		
		중로3-1	건축한계선 6m		
	BYC마트부지		소로3-2	건축한계선 2m	
			중로2-1, 소로2-2	건축한계선 3m	

구분		적용기준	비고
	공공공지①	건축한계선 3~5m	
	그 외 구간	건축한계선 1~2m	
벽면한계선		벽면한계선 2~8m	• 불합리한 보행동선 개선 • 공원녹지공간과 연계 강화

■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건축한계선	• 중로2-1 - 건축한계선 : 3~5m → 3m	• BYC부지 공원계획에 따른 건축한계선 폐지

(2) 건축물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물 형태	저층부 형태	• 폭 25m 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1층 전체벽 면적의 50% 이상을 투시형벽으로 설치, 셔텨는 투시형셔터를 사용 • 폭 25m 이상 도로에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여서는 안됨(단 벽면에 조경, 벽화 등 장식적 처리를 하여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경우 제외) • 건축물 바닥높이는 접하는 보도 또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 • 건축물의 1층 높이는 인접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 개구부의 형태는 인접건물 및 해당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고층부 형태	• 지역의 랜드마크적 기능 및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폭 25m 이상 도로변에 대하여 탑상형 건축물을 권장	
건축물 외관	재료/색채	• 외벽면의 재료 및 색채는 주변과 조화롭게 하고, 원색의 사용은 금하도록 한다.	
	담장 및 옹벽처리	• 담장은 가급적 설치하지 않도록 함(설치 시 식재 담장, 투시형 담장 권장) • 옹벽 등의 조성은 가급적 지양함(설치시 자연적 소재사용 권장 및 주변과 조합 도모)	
	야간조명	• 투시형 벽면설치 시 내·외부조명을 설치하여 가로분위기를 배려할 수 있도록 함 • 이면부 야간경관의 향상 및 보행활동 활성화 유도 • 전면도로변, 도로가각부에 경관 조명 설치 권장·	
	옥외광고물	• 외부에 노출이 심하거나 건축물과의 이질감이 심한 옥외 광고물에 대한 규제 • 통합간판 설치 유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등 관련규정 준수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기정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공개공지	구역 내 5개소(위치지정) ※ 특별계획구역은 해당 별도지침 준수	-
쌈지형공지	구역 내 4개소	-

■ 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공개공지	구역 내 5개소(위치지정) ※ 특별계획구역은 해당 별도지침 준수	• 특별계획구역(BYC) 공개공지 위치변경(도면참조)
쌈지형공지	구역 내 4개소	-

■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개공지	• 특별계획구역(BYC) 공개공지 위치변경	• Open Space의 효율적인 배치를 위한 공개공지 위치 변경

나. 차량출입 및 보행동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기정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공공보행통로	구역 내 5개소(지정)	특별계획구역(BYC) 외 3개소 지정 특별계획구역(BYC) 내 2개소 지정 (동서 방향 폭 6m, 남북 방향 폭 4m)
입체보행통로	구역 내 2개소 (위치 권장 / 지정)	-
차량출입 불허구간	시흥대로변	-

■ 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공공보행통로	구역 내 5개소(지정)	특별계획구역(BYC) 외 3개소 지정 특별계획구역(BYC) 내 2개소 지정 (동서 방향 폭 6~6.3m, 남북 방향 폭 6m)
입체보행통로	구역 내 2개소 (위치 권장 / 지정)	-
차량출입 불허구간	시흥대로변	-

■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공보행통로	• 특별계획구역(BYC) 내 공공보행통로 폭원 변경 - 동서 방향 : 6m → 6m~6.3m - 남북 방향 : 4m → 6m	•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공공보행통로 폭원 변경

다. 환경친화요소(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녹색건축 인증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 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기준에 따라 준용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른 의무 대상 준수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 법령」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49)' 의 기준에 따라 설치 권장	-
중수도시설설치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운영 권장	-
빗물관리시설 설치	• '서울시 저영향 사전협의제도(2014.1.)' 등 관련 기준에 따라 빗물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빗물관리시설 도입 권장	-
옥상녹화	• '서울시 옥상녹화 시스템 설계 및 설계도서 작성지침(2013.5.)' 에 의하여 설치토록 권장	-
자연지반보존	• 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없으며, 물의 자연 순환이 가능한 흙, 자갈, 잔디 등의 자연재료 및 투수성 포장	-
녹색주차장	• '서울시 녹색주차장 활성화계획'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잔디 등 투수성 재료를 사용한 녹색주차장 설치 권장	-

4. 인센티브 운영계획(변경없음)

가. 용적률 완화항목 및 내용

(1) 계획유도 인센티브

■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기준(공통사항)

1. 허용용적률 산정을 위한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친환경 인센티브는 100분의 30 이상, 계획유도 인센티브 합은 100분의 70 이내로 하고, 기준용적률과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의 합은 허용용적률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 단, 기 개발지에 한하여 기정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을 유지함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용도지역 용적률 범위 이내	유도 및 규제항목 준수 시(70% 이내)	친환경 계획 준수 시(30% 이상)	공공시설부지 제공 시

2.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은 해당 인센티브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준수를 통하여 부족한 친환경 인센티브의 대체 적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3. 친환경 인센티브를 해당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계획한 경우에는 계획유도 인센티브 미달량에 대하여 친환경 인센티브로 대체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4. 전층 권장용도는 당해 용도가 차지하는 바닥면적의 합이 건물전체 바닥면적의 50% 이상인 경우에 당해용도를 수용한 것으로 본다.(바닥면적 산정 시 주차장 제외)
5. 조경면적, 미관지구 내 건축선 후퇴 부분 등 관련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사항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없으며, 유사한 계획요소가 중복되는 경우 인센티브 적용은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나, 중복하여 계산할 수 없다.(예 : 공개공지와 전면공지 등)

■ 용적률 인센티브 유형 : A (일반상업지역)

구분	계획내용
위치특성	• 일반상업지역 ※특별계획구역(BYC) 공통 적용
기준/허용용적률	• 일반상업지역(300% 이하 / 630% 이하)

구분			완화조건	완화내용	비고
계획유도 인센티브 (70%이내)	획지계획		획지단위 개발 시	기준용적률 X 0.2	
	권장용도	전층	50% 이상 설치 시 (주차장 제외)	(권장용도 면적 ÷ 건축연면적) X 기준용적률	
		1층	1층 벽면길이 및 바닥면적의 1/2 이상 설치 시	기준용적률 X 0.2 이내	
	공개공지		설치 시	(설치면적 - 의무면적)÷ 대지면적 X 기준용적률 X 0.4 ※「건축법」에 따른 의무면적 초과시	쌈지형공지 포함
	건축선		건축한계선 및 벽면선이 지정되어 조성지침에 따라 조성하는 경우로 의무면적 초과 시 (공공보행통로와 중복결정 불가)	(조성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X 기준용적률 X 0.4	
	공공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 조성 시	조성면적 / 대지면적 X 기준용적률 ※ 필로티구조 시 : 조성면적/대지면적 X 기준용적률 X 0.7	
	입체보행통로		입체보행통로 조성 시	기준용적률 X 0.6 이내	※ 특벽계획구역(BYC)은 지하철 출입구와 직접 연결되는 데크 조성 시
	보행개선		가로지장물 지중화 또는 이전 설치 시	기준용적률 X 0.2 이내	
	건축물 개방		입체보행통로와 연계한 건축물 내 공익시설 설치 시	제공면적 / 연면적 X 기준용적률 X 0.5	

■ 용적률 인센티브 유형 : B (준주거지역)

구분	계획내용
위치특성	• 준주거지역 ※ 특별계획구역(BYC) 공통 적용
기준/허용용적률	• 준주거지역(300% 이하 / 360% 이하)

구분			완화조건	완화내용	비고
계획유도 인센티브 (70%이내)	획지계획		획지단위 개발 시	기준용적률 X 0.1	
	권장용도	전층	50% 이상 설치 시 (주차장 제외)	(권장용도 면적 ÷ 건축연면적) X 기준용적률	
		1층	1층 벽면길이 및 바닥면적의 1/2 이상 설치 시	기준용적률 X 0.2 이내	
	공개공지		설치 시	(설치면적 - 의무면적)÷ 대지면적 X 기준용적률 X 0.4 ※「건축법」에 따른 의무면적 초과 시	쌈지형공지 포함
	건축선		건축한계선 및 벽면선이 지정되어 조성지침에 따라 조성하는 경우로 의무면적 초과 시 (공공보행통로와 중복결정 불가)	(조성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X 기준용적률 X 0.4	
	공공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 조성 시	조성면적 / 대지면적 X 기준용적률 ※ 필로티구조 시 : 조성면적/대지면적 X 기준용적률 X 0.7	
	입체보행통로		입체보행통로 조성 시	기준용적률 X 0.3 이내	
	보행개선		가로지장물 지중화 또는 이전 설치 시	기준용적률 X 0.15 이내	
	건축물 개방		입체보행통로와 연계한 건축물 내 공익시설 설치 시	제공면적 / 연면적 X 기준용적률 X 0.5	

■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전체 인센티브의 30% 이상) – 공통사항

<table>
<tr><th>구분</th><th colspan="3">완화기준</th><th>세부내용</th><th>비고</th></tr>
<tr><td rowspan="3">녹색건축
인증</td><td>최우수(그린1등급)</td><td>기준용적률 × 0.12</td><td rowspan="11">3기준 모두 1등급
만족 시:
기준용적률× 0.4</td><td rowspan="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른 의무 대상 준수</td><td></td></tr>
<tr><td>우수(그린2등급)</td><td>기준용적률 × 0.08</td><td></td></tr>
<tr><td>우량(그린3등급)</td><td>기준용적률 × 0.04</td><td></td></tr>
<tr><td rowspan="3">에너지효율
등급인증</td><td>에너지효율1등급</td><td>기준용적률 × 0.08</td><td></td></tr>
<tr><td>에너지효율2등급</td><td>기준용적률 × 0.06</td><td></td></tr>
<tr><td>에너지효율3등급</td><td>기준용적률 × 0.04</td><td></td></tr>
<tr><td rowspan="5">신재생
에너지보급
확대</td><td>신재생에너지공급률
20% 초과</td><td>기준용적률 × 0.12</td><td rowspan="5">• 신 · 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준용
– 건축물 인증 심사기준(별표1)
※ 공급률로 등급판정 대체 가능</td><td></td></tr>
<tr><td>신재생에너지공급률
15% 초과 20% 이하</td><td>기준용적률 × 0.10</td><td></td></tr>
<tr><td>신재생에너지공급률
10% 초과 15% 이하</td><td>기준용적률 × 0.08</td><td></td></tr>
<tr><td>신재생에너지공급률
5% 초과 10% 이하</td><td>기준용적률 × 0.06</td><td></td></tr>
<tr><td>신재생에너지공급률
3% 초과 5% 이하</td><td>기준용적률 × 0.04</td><td></td></tr>
<tr><td>중수도시설 설치</td><td colspan="3">기준용적률 × 0.04</td><td>• 총 사용량의 10% 이상 처리시설 설치 시 적용
• 관련법상 의무시설인 경우 제외</td><td></td></tr>
<tr><td>빗물관리 시설설치</td><td colspan="3">기준용적률 × 0.04</td><td>• 빗물저류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침투시설
• 침투량(tom/hr)의 합이 건축면적 × 0.05 또는 대지면적 × 0.02 이상이 되도록 설치</td><td></td></tr>
<tr><td>옥상녹화</td><td colspan="3">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1</td><td>• 법적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 30%까지만 허용</td><td></td></tr>
<tr><td>자연지반
보존</td><td colspan="3">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2</td><td>• 자연토양 및 투수성 포장
• 지하구조물 미설치 시</td><td></td></tr>
<tr><td>녹색주차장</td><td colspan="3">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2</td><td>• 기준용적률 × 0.05 이내</td><td></td></tr>
</table>

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특별계획구역	대림동 1104-1 일대	16,275	최초결정일 2000.11.06. (서고 제2000-310호)
변경			16,302	

■ 계획기준(기정)

구분		계획기준		비고
위치		• 대림동 1104-1 일대		
토지이용		• 광역중심지 기능수행을 위한 상업·업무 복합개발		
용도지역·지구계획		•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구 및 획지	가구	• 가구(V)	• 16,275㎡(BYC부지)	
건축물 밀도	건폐율	일반상업/준주거지역	• 60% 이하	
	용적률	일반상업지역	• 기준/허용/상한 : 300% 이하 / 630% 이하 / 조례용적률 2배 이하	
		준주거지역	• 기준/허용/상한 : 300% 이하 / 360% 이하 / 조례용적률 2배 이하	
최고높이		• 일반상업지역 : 120m 이하 (단, 평균높이 88m 이하 적용) • 준주거지역 : 60m 이하		
건축물 용도	불허용도	전층	• 해당 용도지역 내 불허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및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 위락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 시설(단, 주차장 제외) • 장례식장	
	권장용도	전층	• 판매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1층	• 판매시설 중 상점	
건축물 배치	건축 한계선	• 도림천변, 구역 북측 : 5m /구역 서측 : 3m / 구역 동측 : 6m (차도 부속형 전면공지 3m)		
공공시설 확보계획	공공기여 계획	• 도로 및 건축물 공공기여 ⇒ 대지면적의 26% 이상 - 도로 : 중로2-1(B=12m), 중로2-2,(B=15m) 중로3-1(B=12m), 소로2-1(B=6~8m), 소로1-1(B=10m) ※ 중로2-1, 중로2-2, 중로3-1, 소로2-1, 소로1-1가 실효될 경우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 - 건축물 (문화·체육·복지시설 등) : 허용용적률 중복적용 불가 •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계획(2015.08.25.)」에 따라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영등포구 및 서울시 통합관리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공공기여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조성계획 및 도입용도 등을 결정하도록 한다.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도로 계획에 대한 교통량조사 및 교통계획 수립을 통해 공공기여의 적정성을 검토 ※ 공공기여량 산정(연면적 등)은 세부개발계획 시점에 재산정하고, 건축허가 시점에 확정됨

구분		계획기준	비고
		• 방수설비(기존 10년 빈도) 설치 및 이설은 개발주체 의무부담 - 도시계획시설 도로(중로2-2)와 방수설비 중복결정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위치·규모 등 세부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설치 • 방수설비의 용량(빈도수 등)증가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 현재 설비기준(10년 빈도)에서 증설(30년 빈도)할 경우 등 - 빈도수 증가에 따른 증대부분(추가비용 등)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관련부서와 협의 결정 - 방수설비 증가에 따른 증대부분(빈도수 증가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 시 증대 부분에 대해 공공기여 인정으로 상한용적률 적용 가능 ※ 방수설비는 기반시설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상기 기준에도 불구하고 공공기여 인정 여부 등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구체적 개발계획과 연계 및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종합 결정하도록 함 - 방수설비 용량여부와 상관없이 공공기여량 재산정 검토 등	
기타 계획지침		• 공개공지 : 3개소(대지면적의 10% 이상 확보, 「건축법」에 따른 의무면적 포함) ① 서측 도로(소로2-1) 가각부 ② 입체보행통로 주변 ③ 북측 교차로 • 공공보행통로(지정) : 2개소 ① 구역 내 동서 방향(6m) ② 구역 내 남북 방향(4m) ※ 공공보행통로의 위치는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심의를 통하여 조정 가능하며 필로티형으로 할 경우 높이 6m 이상으로 할 것 • 입체보행통로(지정) : 1개소(구로디지털단지 ↔ BYC 연결)	※ 공개공지는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기 위해 공공보행통로 주변에 설치 ※ 입체보행통로는 공공보행통로와 연결되도록 설치

■ 계획기준(변경)

구분		계획기준		비고
위치		• 대림동 1104-1 일대		
토지이용		• 광역중심지 기능수행을 위한 상업·업무 복합개발		
용도지역·지구계획		•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구 및 획지	가구	• 가구(V)	• 16,302㎡(BYC부지)	
건축물 밀도	건폐율	일반상업/준주거지역	• 60% 이하	
	용적률	일반상업지역	• 기준/허용/상한 : 300% 이하 / 630% 이하 / 조례용적률 2배 이하	
		준주거지역	• 기준/허용/상한 : 300% 이하 / 360% 이하 / 조례용적률 2배 이하	
최고높이		• 일반상업지역 : 120m 이하 (완화높이 : 144m 이하 적용) • 준주거지역 : 60m 이하		완화높이 적용 (공공시설등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 용적률과 중복 적용)

구분		계획기준		비고
건축물 용도	불허용도	전층	• 해당 용도지역 내 불허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및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 위락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 시설(단, 주차장 제외) • 장례식장	
	권장용도	전층	• 판매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1층	• 판매시설 중 상점	
건축물 배치	건축 한계선	• 도림천변 : 5m(일부 구간 차도 부속형 전면공지 2m) / 구역 서측 : 3m / 구역 동측 : 6m(보도 부속형 전면공지 3m)		
공공시설 확보계획	공공기여 계획	• 도로 및 건축물 공공기여 ⇒ 대지면적의 26% 이상 - 도로 : 중로2-1(B=14~15m), 중로3-1(B=12m), 소로1-1(B=10m), 소로1-A(B=4~10m), 소로3-A(B=6m) - 공원(1,159㎡) - 방수설비 부지(2,143㎡ : 방수설비부지 656㎡, 중복결정_도로 328㎡/소공원 1,159㎡) •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계획(2015.08.25.)」에 따라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영등포구 및 서울시 통합관리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공공기여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조성계획 및 도입용도 등을 결정하도록 한다.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도로 계획에 대한 교통량조사 및 교통계획 수립을 통해 공공기여의 적정성을 검토 ※ 공공기여량 산정(연면적 등)은 세부개발계획 시점에 재산정하고, 건축허가 시점에 확정됨
기타 계획지침		• 공개공지 : 3개소(대지면적의 10% 이상 확보, 「건축법」에 따른 의무면적 포함) ① 서측 교차로 주변 ② 입체보행통로 주변 ③ 소공원 주변 • 공공보행통로(지정) : 2개소 ① 구역 내 동서 방향(6m~6.3m) ② 구역 내 남북 방향(6m) ※ 공공보행통로의 위치는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심의를 통하여 조정 가능하며 필로티형으로 할 경우 높이 6m 이상으로 할 것 • 입체보행통로(지정) : 1개소(구로디지털단지 ↔ BYC 연결)	※ 공개공지는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기 위해 공공보행통로 주변에 설치 ※ 입체보행통로는 공공보행통로와 연결되도록 설치

■ 용적률 완화항목 및 내용(변경없음) : 변경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및 상한 용적률을 따름

4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제4항 제9호 규정에 의해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18조(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처리 등) 및 부칙 제4조에 관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음

1. 대지의 분할 · 교환에 관한 사항
2. 공개공지, 쌈지형공지, 대지내 통로의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신설, 폐지 포함)
3.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의 변경
4. 수종 · 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5. 구역과 연접한 필지의 공동개발(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
6. 필지분할 가능선의 변경
7. 법령이나 지침의 제 · 개정에 따라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민간 부문 시행지침의 변경

Ⅲ. 특별계획구역(BYC) 세부개발계획 결정조서

1 특별계획구역(BYC) 세부개발계획 결정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특별계획구역	영등포구 대림동 1104-1 일대	16,275	증) 27	16,302	2000.11.06. (서고 제2000-310호)	-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특별계획구역	• 구역면적 변경 - 증) 27㎡	•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실현 가능한 계획을 위해 구역계 변경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6,275	증) 27	16,302	100.0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697	증) 22	659	3.6	-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준주거지역	3,532	증) 5	3,537	21.9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2,046	-	12,046	74.5	-

※ 구역 편입에 대한 면적 증가사항으로 용도지역 변경 없음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증) 22㎡	• 특별계획구역계 변경에 따른 면적 감소
	준주거지역	증) 5㎡	• 특별계획구역계 변경에 따른 면적 증가

■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없음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총괄표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기정	6	517	3,774	1	106	652	3	251	2,445	2	160	677
	변경	5	523	3,093	2	212	1,013	1	68	907	2	243	1,173
중로	기정	3	292	2,405	-	-	-	2	136	1,736	1	156	669
	변경	2	211	1486	-	-	-	1	68	907	1	143	579
소로	기정	3	225	1,369	1	106	652	1	115	709	1	4	8
	변경	3	312	1,607	2	212	1,013	-	-	-	1	100	594

※ 중복결정 연장 및 면적 제외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중로	2	1	13~15	보조간선	186	대림동 994-26	대림동 1104-4	일반도로	2000.11.06. (서고 제2000-310호)	-
변경	중로	2	1	14~15	보조간선	252	대림동 994-26	대림동 1104-4	일반도로	2000.11.06. (서고 제2000-310호)	-
기정	중로	3	1	8~12	보조간선	292	대림동 994-28	대림동 994-25	일반도로	2000.11.06. (서고 제2000-310호)	-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변경	중로	3	1	12	보조간선	292	대림동 994-28	대림동 994-25	일반도로	2000.11.06. (서고 제2000-310호)	방수설비 중복결정
기정	소로	1	1	6	국지도로	57	대림동 1104-1	대림동 1101-16	일반도로	2000.11.06. (서고 제2000-310호)	-
변경	소로	1	1	10	국지도로	90	대림동 1104-1	대림동 1101-11	일반도로	2000.11.06. (서고 제2000-310호)	-
신설	소로	1	A	4~10	국지도로	122	대림동 995-1	대림동 1104-1	일반도로	-	방수설비 중복결정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45	대림동 1095-1	대림동 1123-7	일반도로	2000.11.06. (서고 제2000-310호)	-
변경	소로	2	1	8	국지도로	40	대림동 1101-16	대림동 1123-7	일반도로	2000.11.06. (서고 제2000-310호)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51	대림동 994-25	대림동 992-22	일반도로	2020.07.09. (서고 제2020-288호)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2-1	• 변경 - 폭원 : 13~15m → 14m~15m - 연장 : 186m → 252m	• 중로 2-1호선 실효된 미집행구간 도로 재결정
중로3-1	• 변경 - 폭원 : 8~12m → 12m • 방수설비 중복결정	• 중로 3-1호선 실효된 미집행구간 도로 재결정 • 방수설비 중복결정
소로1-1	• 변경 - 폭원 : 6m → 10m - 연장 : 57m → 90m	• 소로 1-1호선 실효권 미집행구간 도로 재결정 및 도로 폭원, 연장 변경
소로1-A	• 신설 - 폭원 : 4~10m, 연장 : 122m	• 도로 선형 변경 및 원활한 교통체계를 고려한 신설
소로3-1	• 폐지	• 원활한 교통체계를 고려한 폐지
소로3-A	• 신설 - 폭원 : 6m, 연장 : 100m	• 원활한 교통체계를 고려한 신설

(2) 공간시설

(가) 공원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소공원	대림동 1104-1일대	-	증) 1,159	1,159 (1,159)	-	방수설비Ⓑ 1,159㎡ 중복결정

※ ( )는 중복결정 면적임

■ 공원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공원	• 신설 및 중복결정 - 증) 1,159㎡	• 지역주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공원 신설 • 지하부 방수설비(저류조) 중복결정

(3) 방재시설

(가) 방수설비

■ 방수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①	방수설비	대림동 1104-1 일대	1,527	감) 1,527	-	2020.07.09. (서고 제2020-288호)	-
신설	Ⓐ	방수설비	대림동 1104-1 일대	-	증) 1,421	1,421 (984)	-	- 방수설비부지 666㎡(656㎡) 도로중복결정 755㎡(328㎡)
신설	Ⓑ	방수설비	대림동 1104-1 일대	-	증) 1,159	1,159 (1,159)	-	소공원Ⓐ 중복결정

※ ( )는 특별계획구역 내 포함 면적임

※ "서울시 대림2빗물펌프장 증설 및 배수개선대책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에 따라 공원 지하부에 방수설비(저류조) 설치가 계획 중으로 지하 방수설비(저류조) 설치 및 조성은 공공에서 별도 사업 시행 예정임.

■ 방수설비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방수설비	•폐지	• 방수설비 현 위치 존치에 따른 이전부지 시설 폐지
Ⓐ	방수설비	• 신설 및 중복결정 - 증) 1,421㎡ • 중복결정 : 중로3-1, 소로1-A 중복결정 755㎡	• 방수설비 존치에 따른 위치 및 면적 변경
Ⓑ	방수설비	• 신설 및 중복결정 - 증) 1,159㎡	• 방수설비 신설

■ 방수설비 건축물계획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구분	계획내용
Ⓐ	방수설비	용도	방수설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 적용
		높이	2층 이하(12m 이하)
		배치	도면 참조
		형태	• 주변경관과 어우러지는 소재를 적용 • 건축물 외부 공간은 공원화 조성 • 주변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성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개발여부	면적			재정비 방향
			기정	변경	변경후	
V	대림동1104-1 일대 (BYC)(특별계획구역)	미개발	12,182	감) 817	11,365	

※ 면적은 향후 측량성과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나. 건축물에 관한 결정 조서

(1) 건축물의 용도계획 결정 조서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기정				
건축물 용도	불허용도	전층	• 해당 용도지역 내 불허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마권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및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 위락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 시설(단, 주차장 제외) • 장례식장	좌동	-
	권장용도	전층	• 판매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좌동	-
		1층	• 판매시설 중 상점	좌동	

(2) 건축물의 밀도 결정 조서

(가) 건폐율 결정 조서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기정			
건폐율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60% 이하	좌동	-

(나) 용적률 결정 조서

구분	용도지역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용적률	일반상업지역	• 기준/허용/상한 : 300% 이하 / 630% 이하 / 조례용적률 2배 이하	• 기준/허용/상한 : 300% 이하 / 630% 이하 / 883% 이하	836% 이하 (대지 전체 가중평균 적용)
	준주거지역	• 기준/허용/상한 : 300% 이하 / 360% 이하 / 조례용적률 2배 이하	• 기준/허용/상한 : 300% 이하 / 360% 이하 / 360% 이하	

(다) 건축물 높이계획 결정 조서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기정		변경		
높이	일반상업지역	• 120m 이하 (평균높이 88m 이하)	• 120m 이하 (완화높이: 144m 이하)	좌동	완화높이 적용
	준주거지역	• 60m 이하	• 60m 이하	좌동	-

※ 완화높이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시 완화(공공시설등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는 높이와 용적률 중복 적용 가능)

(3) 건축물 배치·형태에 관한 결정 조서

(가) 건축물 배치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기정	변경		
건축한계선	• 도림천변, 구역 북측 : 5m / 구역 서측 : 3m / 구역 동측 : 6m (차도 부속형 전면공지 3m)	• 도림천변 : 5m(일부 구간 차도 부속형 전면공지 2m 포함) / 구역 서측 : 3m / 구역 동측 : 6m(보도 부속형 전면공지 3m 포함)	좌동	-

다.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기정	변경		
공개공지	• 3개소(대지면적의 10% 이상 확보, 「건축법」에 따른 의무면적 포함) ① 서측 도로(소로2-1) 가각부 ② 입체보행통로 주변 ③ 북측 교차로	• 3개소(대지면적의 10% 이상 확보, 「건축법」에 따른 의무면적 포함) ① 서측 교차로 주변 ② 입체보행통로 주변 ③ 소공원 주변	좌동	-

(2) 차량출입 및 보행동선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기정	변경		
공공보행통로	• 2개소(지정) ① 구역 내 동서 방향(6m) ②구역 내 남북 방향(4m) ※ 공공보행통로의 위치는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심의를 통하여 조정 가능하며 필로티형으로 할 경우 높이 6m 이상으로 할 것	• 2개소(지정) ① 구역 내 동서 방향(6m~6.3m) ②구역 내 남북 방향(6m) ※ 공공보행통로의 위치는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심의를 통하여 조정 가능하며 필로티형으로 할 경우 높이 6m 이상으로 할 것	좌동	-
입체보행통로	• 1개소(구로디지털단지 ↔ BYC 연결)	• 1개소(구로디지털단지 ↔ BYC 연결)	좌동	-

(3) 공공기여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기정	변경		
공공기여계획	• 도로 및 건축물 공공기여 ⇒ 대지면적의 26% 이상 - 도로 : 중로2-1(B=12m), 중로2-2,(B=15m) 중로3-1(B=12m), 소로2-1(B=6~8m), 소로1-1(B=10m) ※ 중로2-1, 중로2-2, 중로3-1, 소로2-1, 소로1-1가 실효될 경우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 - 건축물 (문화·체육·복지시설 등) : 허용용적률 중복적용 불가 •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계획(2015.08.25.)」에 따라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영등포구 및 서울시 통합관리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공공기여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조성계획 및 도입용도 등을 결정하도록 한다 • 방수설비(기존 10년 빈도) 설치 및 이설은 개발주체 의무부담 - 도시계획시설 도로(중로2-2)와 방수설비 중복결정 - 세부개발 수립 시 위치·규모 등 세부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설치 • 방수설비의 용량(빈도수 등)증가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 현재 설비기준(10년 빈도)에서 증설(30년 빈도)할 경우 등 - 빈도수 증가에 따른 증대부분(추가비용 등)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관련부서와 협의 결정 - 방수설비 증가에 따른 증대부분(빈도수 증가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 시 증대 부분에 대해 공공기여 인정으로 상한용적률 적용 가능 ※ 방수설비는 기반시설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상기 기준에도 불구하고 공공기여 인정 여부 등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구체적 개발계획과 연계 및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종합 결정하도록 함 - 방수설비 용량여부와 상관없이 공공기여량 재산정 검토 등	• 도로 및 건축물 공공기여 ⇒ 대지면적의 26% 이상 - 도로 : 중로2-1(B=14~15m), 중로3-1(B=12m), 소로1-1(B=10m), 소로1-A(B=4~10m), 소로3-A(B=6m) - 공원(1,159㎡) - 공공공지(29㎡) - 방수설비 부지(2,143㎡ : 방수설비부지 656㎡, 중복결정_도로 328㎡/소공원 1,159㎡) •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계획(2015.08.25.)」에 따라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영등포구 및 서울시 통합관리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공공기여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조성계획 및 도입용도 등을 결정하도록 한다.	• 대지면적의 28.58% 계획 (방수설비 부지포함) - 도로(설치 3,217㎡, 순부담 2,694㎡) : 중로2-1(B=14~15m), 중로3-1(B=12m), 소로1-1(B=10m), 소로1-A(B=4~10m), 소로3-A(B=6m), - 소공원(설치 및 순부담 1,159㎡) - 방수설비부지(설치 2,143㎡, 순부담 656㎡) (방수설비부지 656㎡, 중복결정_도로 328㎡ / 소공원 1,159㎡)	-

※ 향후 측량성과, 건축심의 등 절차 진행 시 공공기여율, 면적 등은 공공기여 기준(26% 이상)의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음

라. 인센티브 운영계획(특별계획구역)

(1) 계획유도 인센티브(70% 이내)(변경없음)

■ 용적률 인센티브 유형 : A (일반상업지역)

구분	계획내용
위치특성	• 일반상업지역 ※ 특별계획구역(BYC) 공통 적용
기준/허용용적률	• 일반상업지역(300% 이하 / 630% 이하)

구분			완화조건	완화내용	비고
계획유도 인센티브 (70% 이내)	획지계획		획지단위 개발 시	기준용적률 X 0.2	60%p 적용
	권장 용도	전층	50% 이상 설치 시 (주차장 제외)	(권장용도 면적 ÷ 건축연면적) X 기준용적률	
		1층	1층 벽면길이 및 바닥면적의 1/2 이상 설치 시	기준용적률 X 0.2 이내	
	공개공지		설치 시	(설치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X 기준용적률 X 0.4 ※ 「건축법」에 따른 의무면적 초과 시	쌈지형공지 포함
	건축선		건축한계선 및 벽면선이 지정되어 조성지침에 따라 조성하는 경우로 의무면적 초과 시 (공공보행통로와 중복결정 불가)	(조성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X 기준용적률 X 0.4	
	공공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 조성 시	조성면적 / 대지면적 X 기준용적률 ※ 필로티구조 시 : 조성면적 / 대지면적 X 기준용적률 X 0.7	16.26%p 적용
	입체보행통로		입체보행통로 조성 시	기준용적률 X 0.6 이내	180%p 적용 ※ 특별계획구역(BYC)은 지하철 출입구와 직접 연결되는 데크 조성 시
	보행개선		가로지장물 지중화 또는 이전 설치 시	기준용적률 X 0.2 이내	
	건축물 개방		입체보행통로와 연계한 건축물 내 공익시설 설치 시	제공면적 / 연면적 X 기준용적률 X 0.5	

■ 용적률 인센티브 유형 : B (준주거지역)

구분	계획내용
위치특성	• 준주거지역 ※ 특별계획구역(BYC) 공통 적용
기준/허용용적률	• 준주거지역(300% 이하 / 360% 이하)

구분			완화조건	완화내용	비고
계획유도 인센티브 (70% 이내)	획지계획		획지단위 개발 시	기준용적률 X 0.1	30%p 적용
	권장 용도	전층	50% 이상 설치 시 (주차장 제외)	(권장용도 면적 ÷ 건축연면적) X 기준용적률	
		1층	1층 벽면길이 및 바닥면적의 1/2 이상 설치 시	기준용적률 X 0.2 이내	
	공개공지		설치 시	(설치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X 기준용적률 X 0.4 ※ 「건축법」에 따른 의무면적 초과 시	쌈지형공지 포함
	건축선		건축한계선 및 벽면선이 지정되어 조성지침에 따라 조성하는 경우로 의무면적 초과 시 (공공보행통로와 중복결정 불가)	(조성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X 기준용적률 X 0.4	
	공공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 조성 시	조성면적 / 대지면적 X 기준용적률 ※ 필로티구조 시 : 조성면적 / 대지면적 X 기준용적률 X 0.7	
	입체보행통로		입체보행통로 조성 시	기준용적률 X 0.3 이내	
	보행개선		가로지장물 지중화 또는 이전 설치 시	기준용적률 X 0.15 이내	
	건축물 개방		입체보행통로와 연계한 건축물 내 공익시설 설치 시	제공면적 / 연면적 X 기준용적률 X 0.5	

■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전체 인센티브의 30% 이상) – 공통사항

구분	완화기준			세부내용	비고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그린1등급)	기준용적률 X 0.12	3기준 모두 1등급 만족 시: 기준용적률 X 0.4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른 의무 대상 준수	36%p 적용
	우수(그린2등급)	기준용적률 X 0.08			
	우량(그린3등급)	기준용적률 X 0.04			
에너지효율 등급인증	에너지효율1등급	기준용적률 X 0.08			24%p 적용
	에너지효율2등급	기준용적률 X 0.06			
	에너지효율3등급	기준용적률 X 0.04			
신재생 에너지보급 확대	신재생에너지공급률 20% 초과	기준용적률 X 0.12		•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준용 – 건축물 인증 심사기준(별표1) ※ 공급률로 등급판정 대체 가능	36%p 적용
	신재생에너지공급률 15% 초과 20% 이하	기준용적률 X 0.10			
	신재생에너지공급률 10% 초과 15% 이하	기준용적률 X 0.08			
	신재생에너지공급률 5% 초과 10% 이하	기준용적률 X 0.06			
	신재생에너지공급률 3% 초과 5% 이하	기준용적률 X 0.04			
중수도시설 설치	기준용적률 X 0.04			• 총 사용량의 10% 이상 처리시설 설치 시 적용 • 관련법상 의무시설인 경우 제외	
빗물관리 시설설치	기준용적률 X 0.04			• 빗물저류이용시설 요량(ton) 및 빗물침투시설 • 침투량(tom/hr)의 합이 건축면적 X 0.05 또는 대지면적 X 0.02 이상이 되도록 설치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X (녹화면적 / 대지면적) X 0.1			• 법적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 30%까지만 허용	
자연지반 보존	기준용적률 X (녹화면적 / 대지면적) X 0.2			• 자연토양 및 투수성 포장 • 지하구조물 미설치 시	6%p 적용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 X (녹화면적 / 대지면적) X 0.2			• 기준용적률 X 0.05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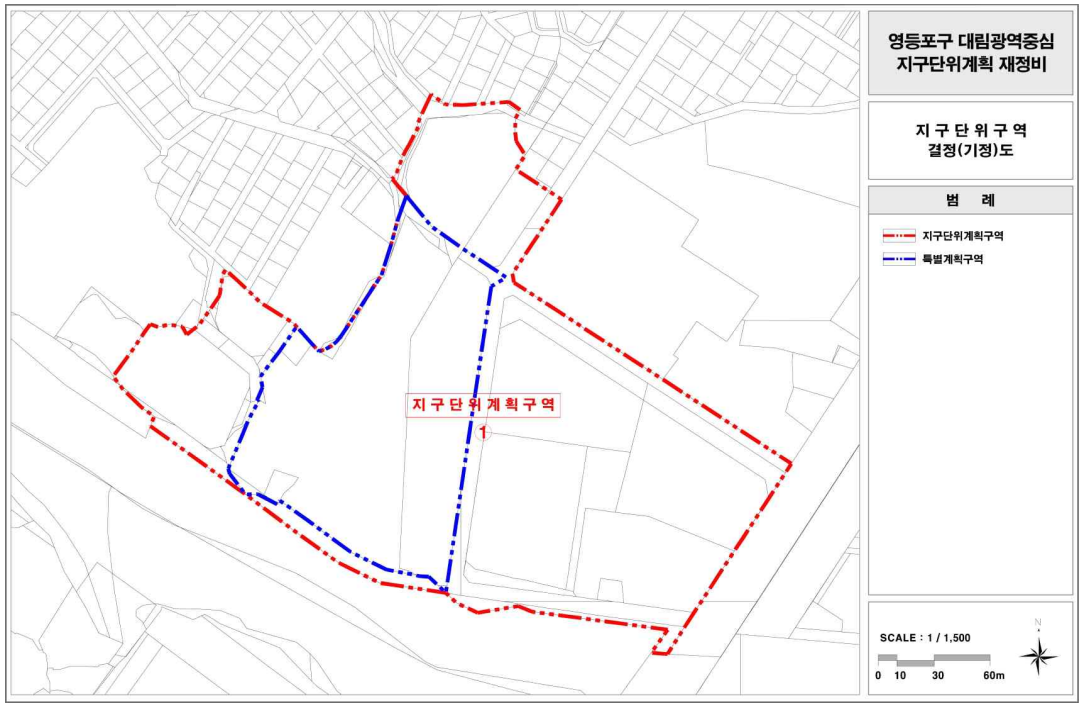
Ⅲ. 관계도면 : 붙임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에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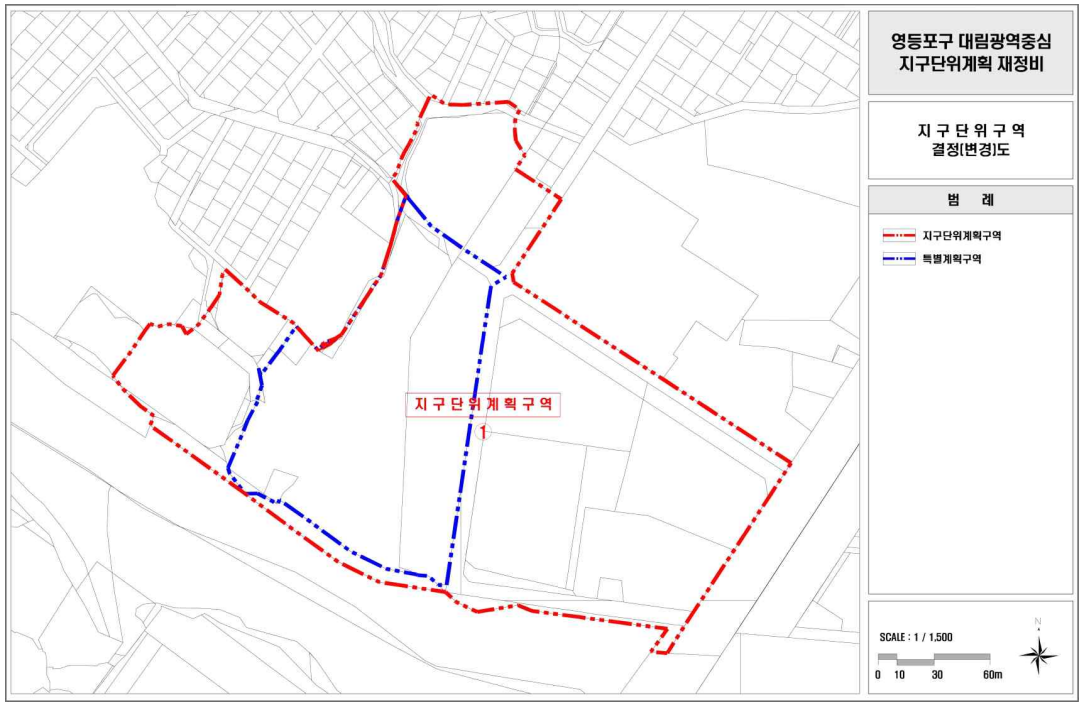
Ⅳ.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2133-8399) 및 영등포구 도시계획과(☎02-2670-3533)에 관련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 (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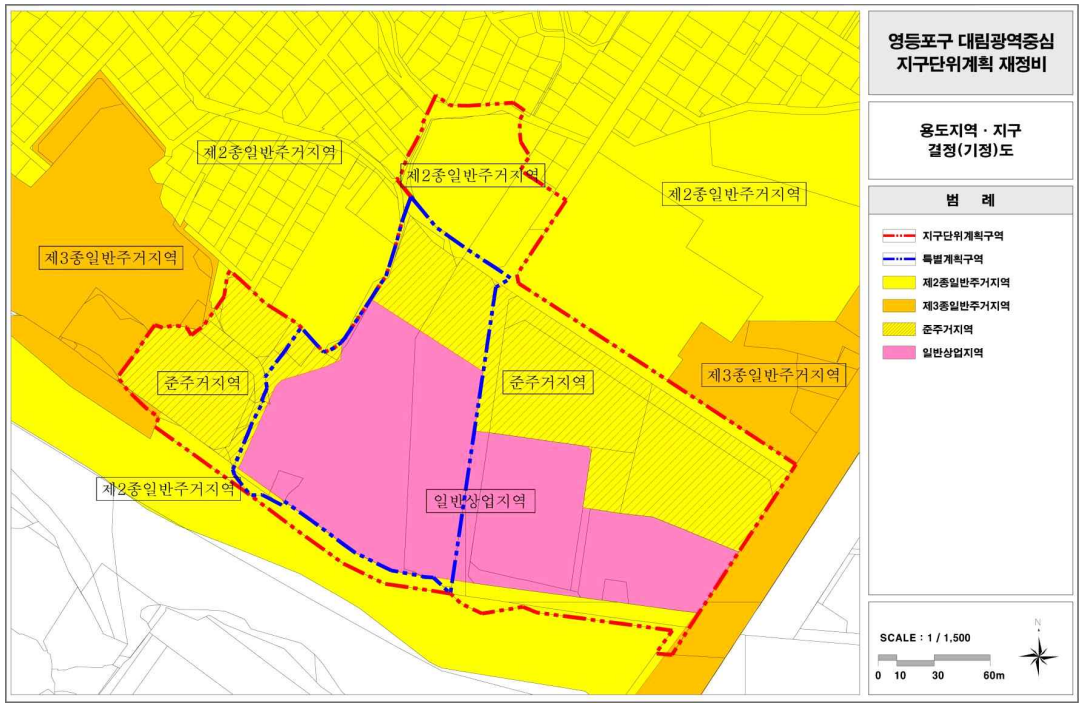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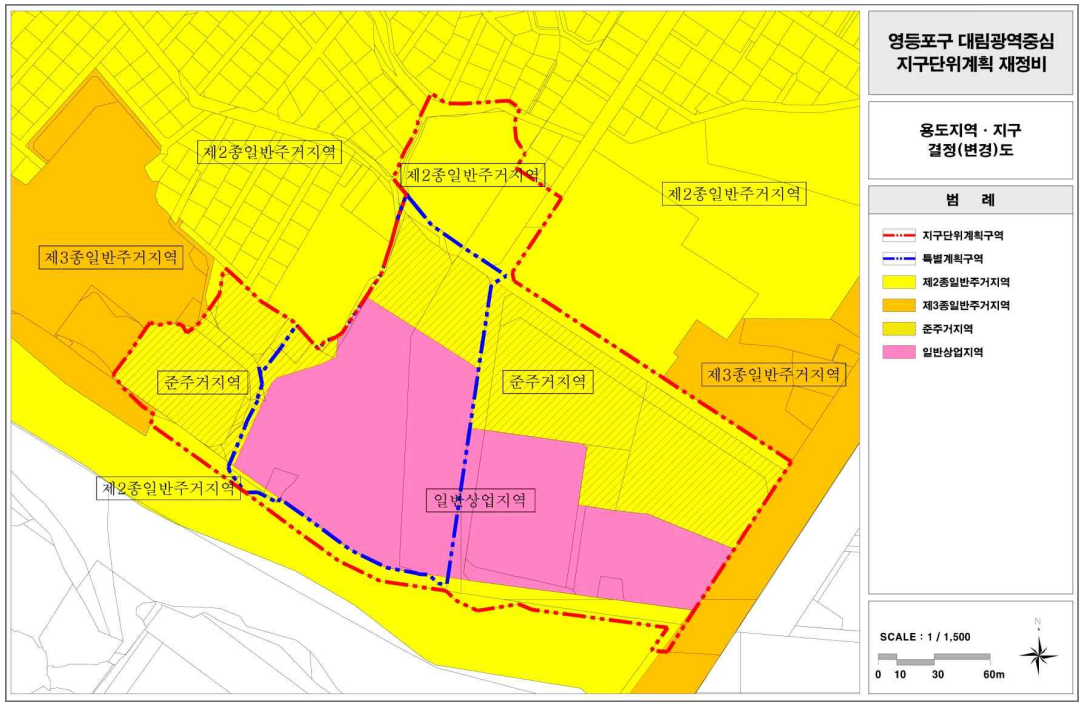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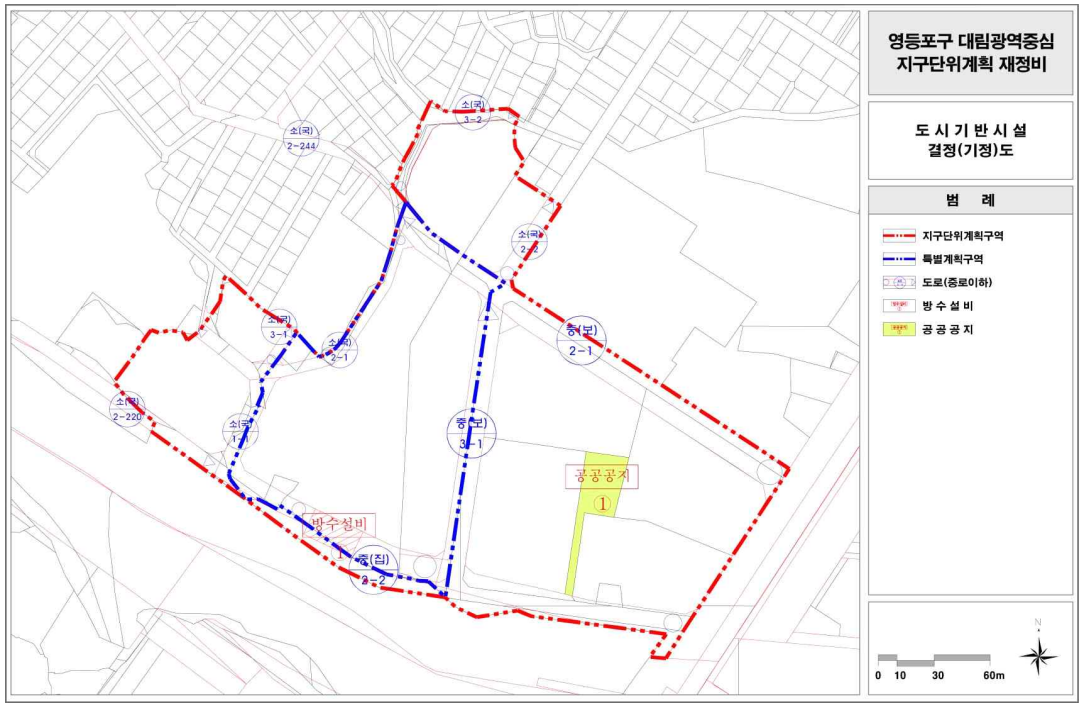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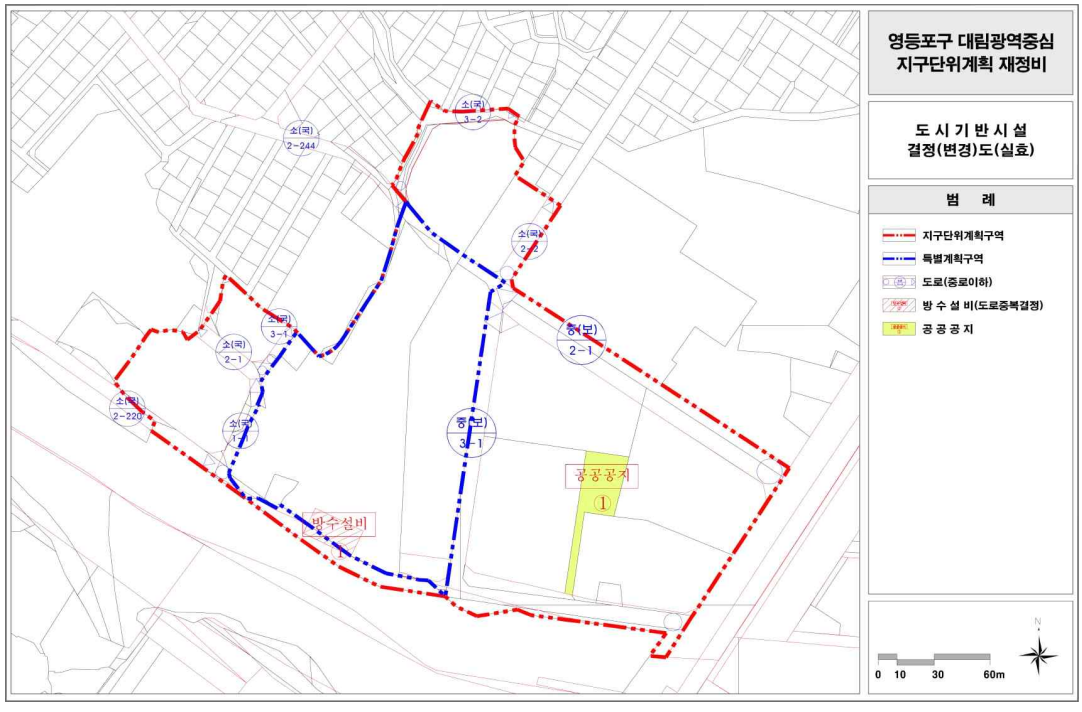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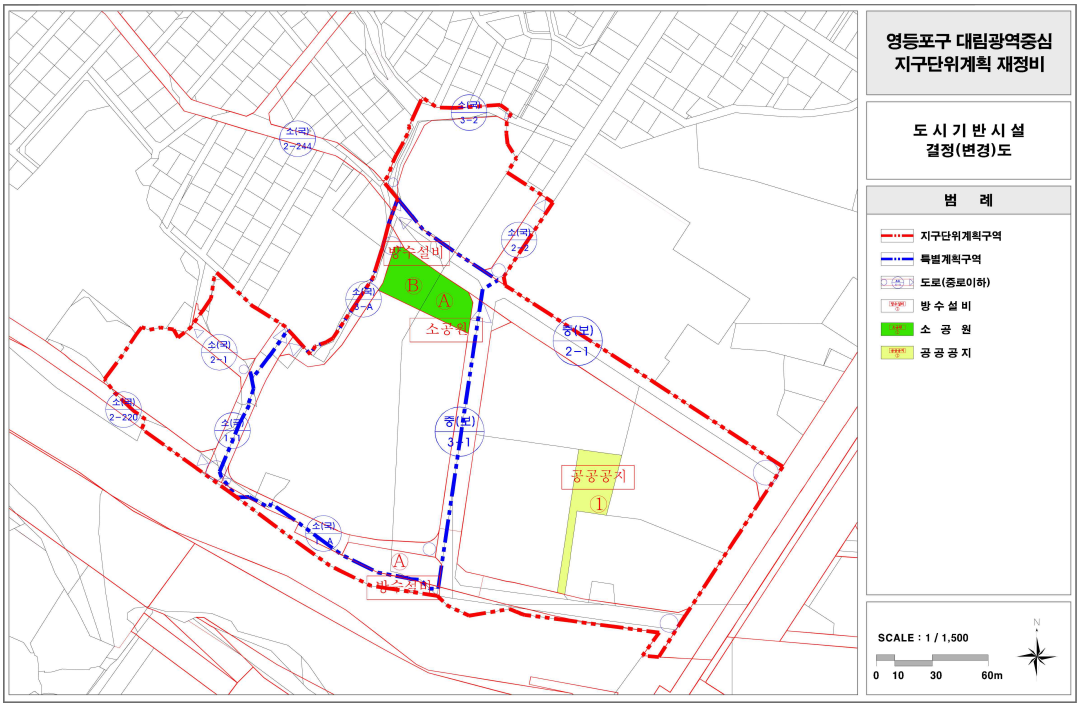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실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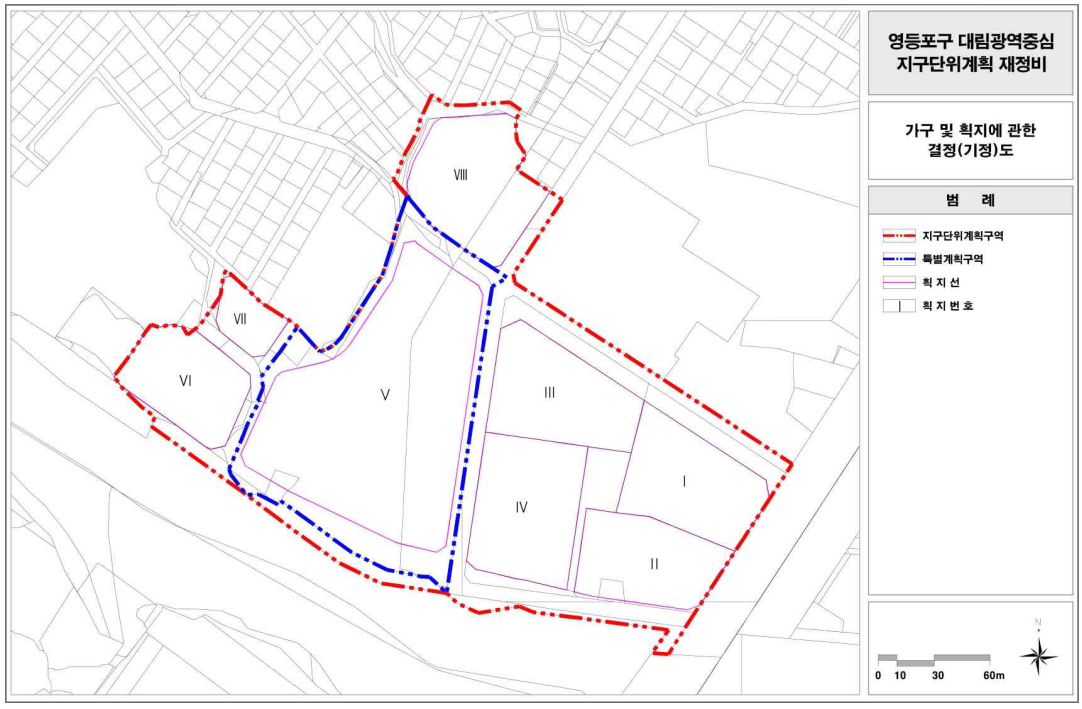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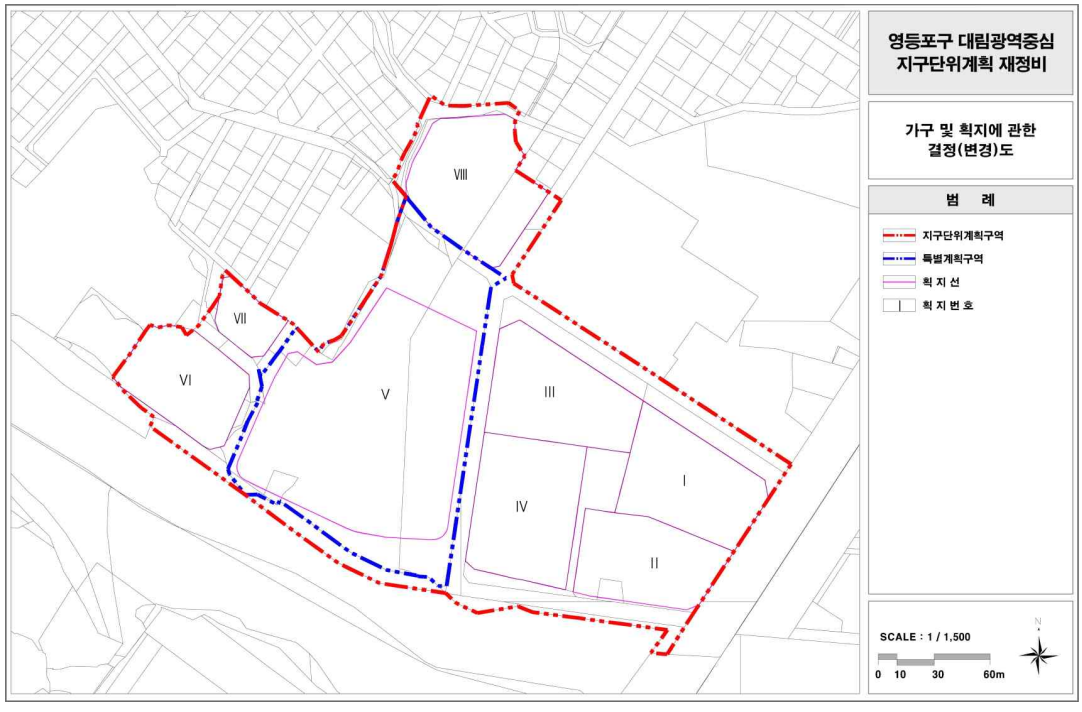


(이하여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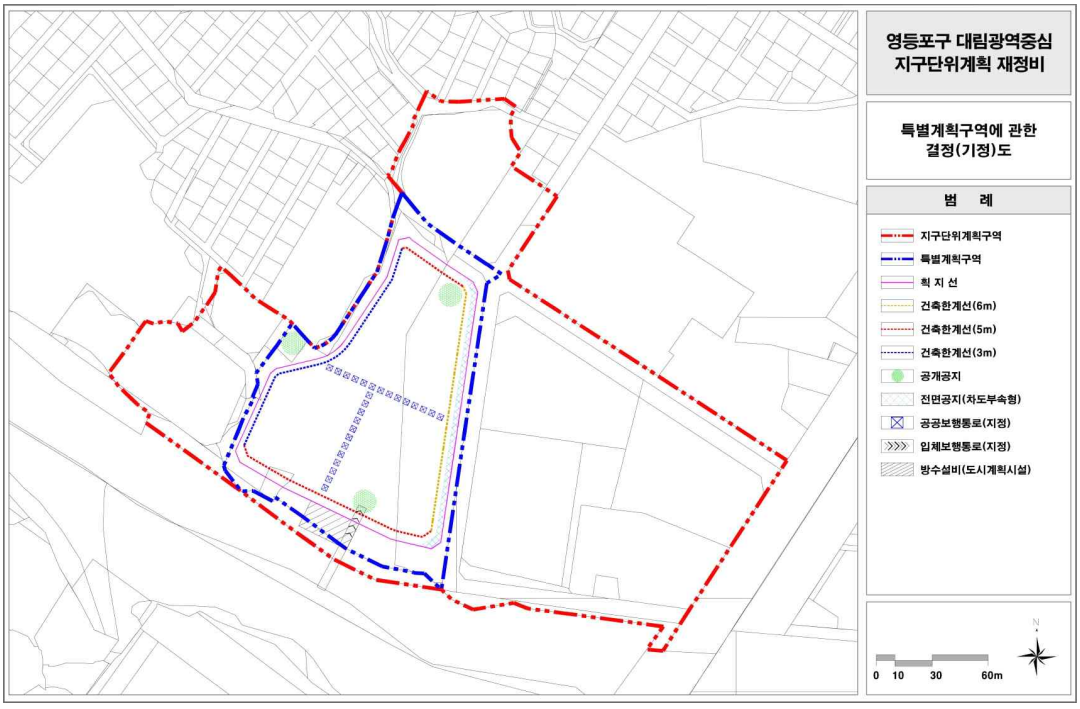
■ 가구 및 획지계획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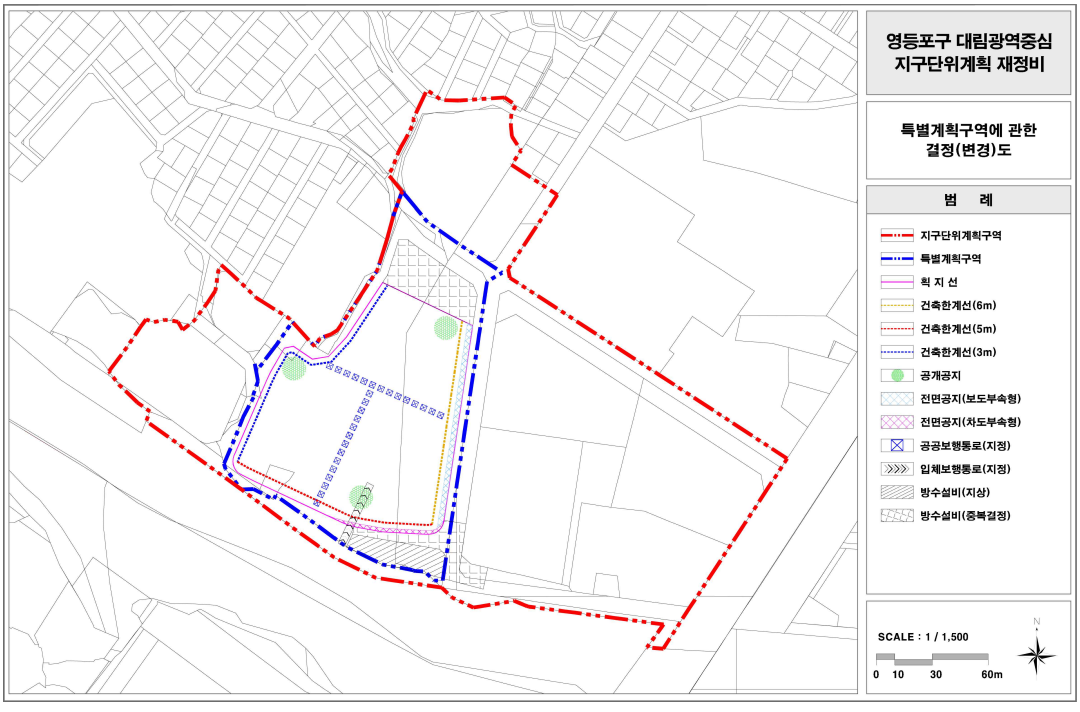
■ 가구 및 획지계획에 관한 결정(변경)도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기정)도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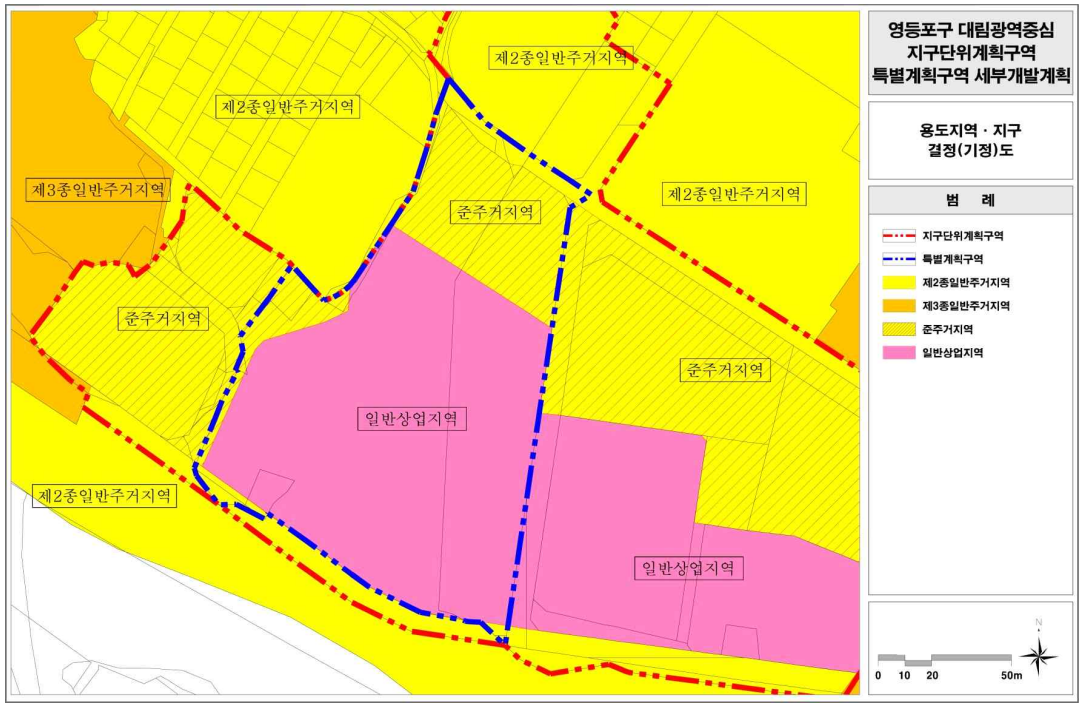
■ 특별계획구역 결정(기정)도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용도지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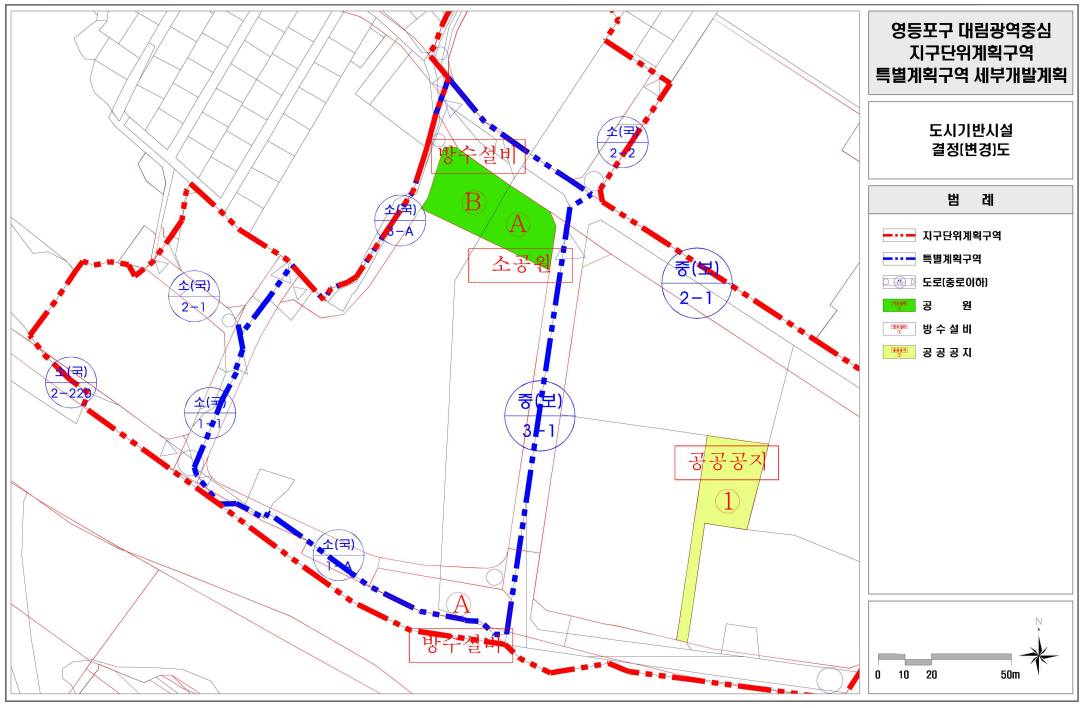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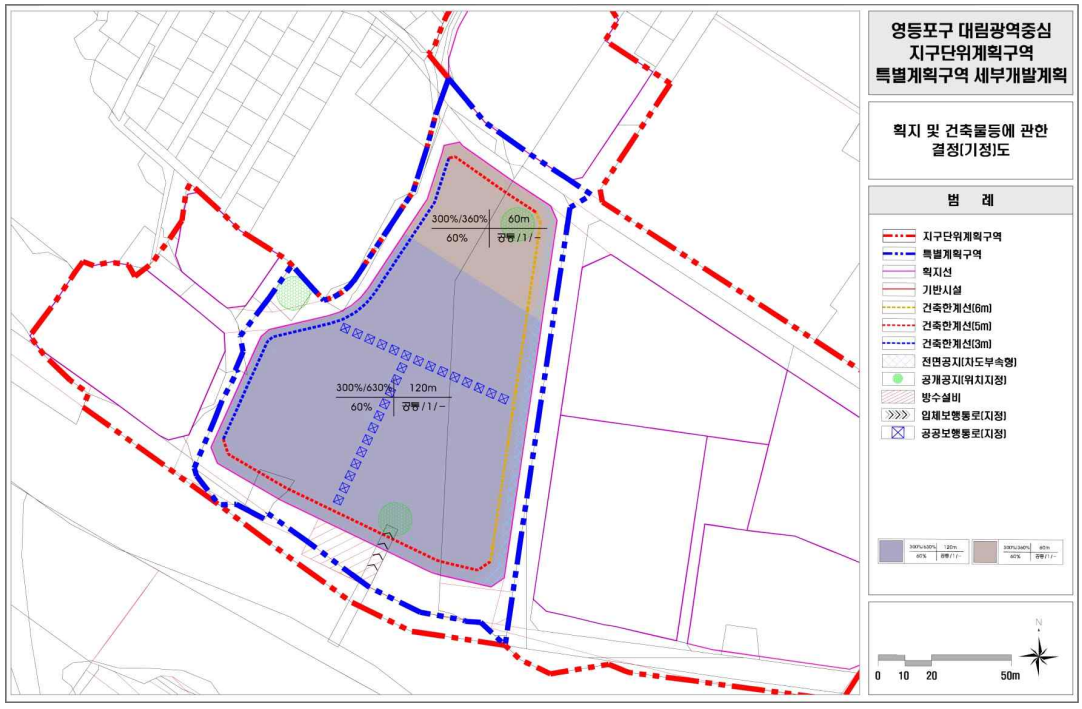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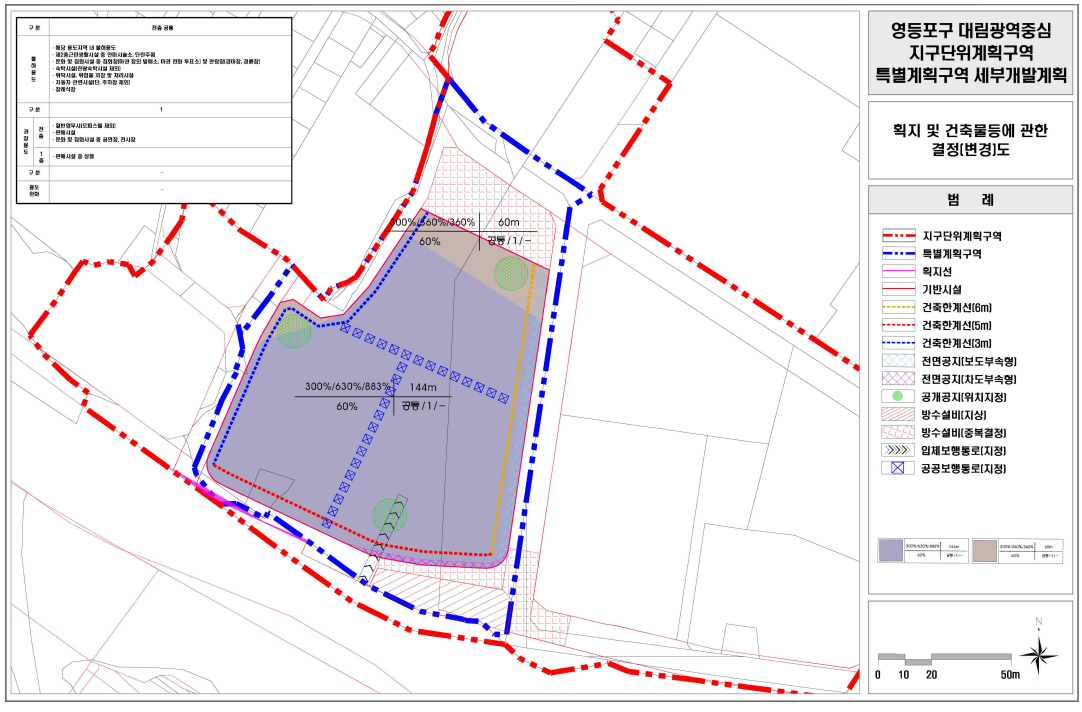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 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30호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 고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제2항 규정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해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조성대상 : 보행자우선도로 1개소

연번	자치구	도로명	폭원(m)	연장(m)
1	중랑구	동일로139길	10	120

2. 조성계획 : 따로 붙임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행자전거과(☎02-2133-24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동일로139길 일대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 1부

[붙임 1]

동일로139길 일대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

□ 사업개요 및 현황

○ 사업위치 : 동일로139길 일대 (중화동 307-15~중화동 307-39)

○ 사업기간 : 2024. 1. ~ 2024. 10.

○ 사업내용

- 측구 및 경계석 개량
- 스탬프 도막포장 L=120m, B=10m
- 지시표지 및 노면표시

○ 사 업 비 : 100백만원

○ 사업지 현황

- 동일로 및 중화역과 맞닿아있어 출·퇴근길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주변 도로에 비해 많으며, 향후 지역개발이 완료되면 통행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
- 양방향 보도신설 착공했으나, 다수인 민원(200명)에 의해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으로 사업내용 변경

□ 개선목표 및 범위

○ (경제적 효과) 보행량 증가로 인한 상권 활성화

○ (만족도) 안전성·편리성·쾌적성에 대한 주민만족도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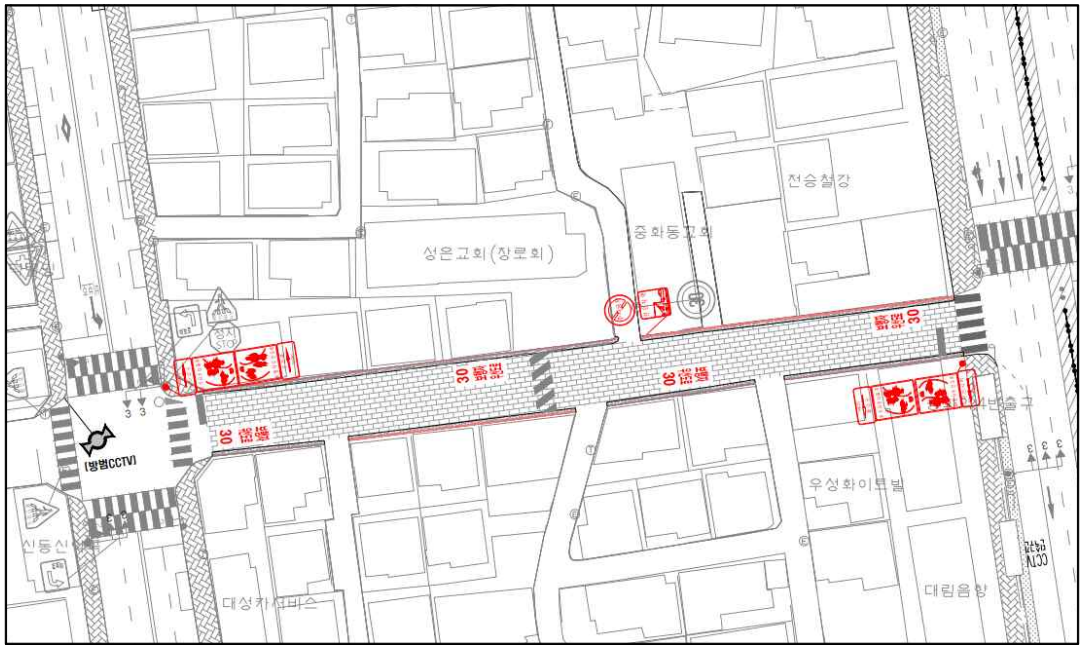
○ (안전성 측면) 보행자 우선의 도로 환경으로 보행안전 확보

□ 설계안

○ 설계내용

- 스탬프 도막포장(L=120m, B=10m)
- 보행자우선도로 교통표지판 2개소
- 보행자우선도로 노면표시

○ 설계도


성은교회(장로회)
중화동교회
전승철강
우성화이트빌
대림음향
대성카센터
방범CCTV

○ 조감도


김치삼
436-1638
노래
부동산

□ 시설협의 및 조치사항

○ 도시경관과

- 협의내용 : 도로 불법점용시설 철거 여부
- 조치사항 : 불법점용시설 계도조치 후 철거 완료

○ 교통행정과

- 협의내용 : 교통표지판 설치 요청
- 조치사항 : 경찰서 심의에 의한 보행자우선도로 교통표지판 2개소 및 주차금지, 견인지역 교통표지판 설치

○ 주차관리과

- 협의내용 : 불법 주·정차 차량 관련 협의
- 조치사항 :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시행

○ 중화2동 주민센터

- 협의내용 : 공사 관련 주민 안내
- 조치사항 : 공사 일정 홍보

○ 중랑경찰서

- 협의내용 : 교통규제심의 신청
- 조치사항 : 교통규제심의 가결(24.09.12.)

□ 향후 일정

○ 일정계획

- ’24. 09. : 보행자우선도로 중랑경찰서 심의 가결
- ’24. 09. : 세부절차 이행 (부서 협의 및 서울시 지정 절차 등)
- ’24. 10. : 공사시행 및 완료
- ’24. 10. : 성과평가 모니터링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31호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지정 고시되고, 제2007-177호(2007.06.07.)로 변경지정, 제2008-173호(2008.05.22.)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제2010-449호(2010.12.09.)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제2011-126호(2011.05.19.), 제2011-187호(2011.07.07.)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2-133호(2012.05.24.)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제2012-195호(2012.07.26.)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제2012-255호(2012.09.2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2-282호(2012.10.25.), 제2013-76호(2013.03.14.), 제2013-112호(2013.04.04.)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3-168호(2013.05.30.)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3-184호(2013.06.13.)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3-290호(2013.09.05.)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4-16호(2014.01.16.)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4-55호(2014.02.20.)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4-197호(2014. 05.22.)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4-217호(2014.06.12.)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4-299호(2014.08.28.)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4-445호(2014.12.18.)로 수색·증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6-126호(2016.04.28.)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제2016-134호(2016.05.04.), 제2016-165호(2016.06.16)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제2017-28호(2017.01.26.)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7-97호(2017.03.16.)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제2018-58호(2018.03.02.)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8-59호(2018.03.02.)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제2019-26호(2019.01.17.)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9-143호(2019.05.09.)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제2019-216호(2019.07.04.)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9-282호(2019.08.22.)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9-365호(2019.11.07.)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20-51호(2020.02.06.)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20-177호(2020.05.01.)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20-528호(2020.12.10.)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21-54호(2021.02.04.)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21-101호(2021.02.25.)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21-163호(2021.04.01.)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21-434호(2021.08.12.)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21-566호(2021.10.14.)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21-661호(2021.12.09.)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제2022-231호(2022.05.26.)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22-391호(2022.09.29.)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22-414호(2022.10.13.)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22-475호(2022.12.08.)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23-109호(2023.03.30)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23-116호(2023.04.06.), 제2024-38호(2024.01.18.)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제2024-173호(2024.04.04.)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24-485호(2024.10.1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된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5조제5항,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유형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수색 · 증산 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형	수색동 증산동	791,135.8	-	791,135.8	-

나.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변경없음)

○ 기준년도 : 2006년

○ 목포년도 : 2025년

다.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변경없음)

○ 서울 서북권의 수색 부도심으로서 위상제고와 함께 서북권 중심축의 전략적 거점지 조성 및 접근이 용이한 교통체계를 구축과 친환경 복합 도심형 주거단지 건설을 바탕으로 미래도시의 적합한 주거단지 조성과 다양한 친환경 어메니티 체험이 가능한 매력있는 도시로 조성

라.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변경)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경	변 경 후		
합 계		791,135.8	-	791,135.8	100.0	
주거용지	소 계	544,938.4	-	544,938.4	68.9	
	공동주택	475,688.8	-	475,688.8	60.1	
	상업용지	13,685.0	-	13,685.0	1.7	
	복합용지	33,853.4	-	33,853.4	4.3	
	유 치 원	2,273.8	-	2,273.8	0.3	
	종교용지	6,873.6	-	6,873.6	0.9	
	존 치	12,021.8	-	12,021.8	1.5	
	기타	542	-	542	0.1	
공공시설용지	소 계	246,197.4	-	246,197.4	31.1	
	도 로	110,272.8	감) 124.6	110,148.2	13.9	
	보행자도로	5,554.9	-	5,554.9	0.7	
	공 원	35,370.3	감) 2,236.5	33,133.8	4.2	
	녹 지	23,017.8	증) 2,361.1	25,378.9	3.2	
	광 장	1,001.0	-	1,001.0	0.1	
	전기공급설비	【1.4km중0.73km】		【1.4km중0.73km】	-	수색~향동
	공공청사	3,967.0	-	3,967.0	0.5	
	학 교	57,287.7	-	57,287.7	7.3	
	사회복지시설	4,292.5	-	4,292.5	0.5	
	도 서 관	3,801.8	-	3,801.8	0.5	
	문화시설	1,631.6	-	1,631.6	0.2	
	체육시설	(4,023.0)	-	(4,023.0)	-	복합용지내 복합화

※ 【 】는 중복결정 또는 지중시설임
※ ( )는 복합용지내 체육시설 복합화에 따른 대지지분(890㎡)과 부지환산면적(3,133㎡)의 합산 면적임
※ 수색11재정비촉진구역 해제(존치관리구역전환)에 따른 기존 토지이용계획(복합용지 및 도로)은 변경 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73호 및 제2024-485호 복합용지 면적 오기정정(34,169.4㎡→33,853.4㎡)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73호 및 제2024-485호 학교용지 면적 오기정정(56,971.7㎡→57,287.7㎡)

2) 인구주택수용계획 : 13,731호 / 37,422인 (변경없음)

구분		주택수(호)			인구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3,731	-	13,731	37,422	-	37,422	2.7인/세대 (2020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세대당 인구 적용)
촉진구역	소계	12,952	-	12,952	34,972	-	34,972	
	40㎡이하	1,088	-	1,088	2,938	-	2,938	
	40~50㎡	990	-	990	2,673	-	2,673	
	50~60㎡	3,689	-	3,689	9,961	-	9,961	
	60~85㎡	5,910	-	5,910	15,957	-	15,957	
	85㎡초과	1,275	-	1,275	3,443	-	3,443	
존치관리구역	공동주택	533	-	533	1,440	-	1,440	-
존치지역		246	-	246	1,010	-	1,010	-

3)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가) 교육시설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건축물의 범위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정	1	학교	초등학교	증산동 212일대	11,279.0	-	11,279.0	35% 이하	120% 이하	4층 높이완화 (4⇒5층)	서고제30호 (75.02.21)	증산초
기정	2	학교	중학교	증산동 207-11일대	14,924.0	-	14,924.0	35% 이하	120% 이하	4층 높이완화 (4⇒5층)	서고제50호 (82.02.03)	증산중
기정	3	학교	중학교	증산동 131-98일대	12,681.3	-	12,681.3	35% 이하	120% 이하	5층	서고 제2008-173호	연서중
기정	4	학교	초등학교	수색동 129일대	18,403.4 (316.0)	-	18,403.4 (316.0)	35% 이하	120% 이하	4층 높이완화 (4⇒5층)	서고제10호 (79.01.10)	수색초

※ ( )는 구역내 면적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73호 증산초 기정 면적 오기정정(3,795.7㎡→11,279.0㎡)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73호 수색초 기정 면적 오기정정(18,087.4㎡→18,403.4㎡)

나) 사회복지시설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사회복지시설	수색동 8-10대 일대	1,358.0	-	1,358.0	서울시고시 제2008-173호	
기정	2	사회복지시설	증산동 188-22대 일대	743.0	-	743.0	서울시고시 제2008-173호	
기정	3	사회복지시설	증산동 157-24대 일대	576.3	-	576.3	서울시고시 제2010-449호	
기정	5	사회복지시설	수색동 324-2대일대	269.6	-	269.6	서울시고시 제2016-134호	
기정	6	사회복지시설	수색동 321임 일대	447.5	-	447.5	서울시고시 제2016-165호	
기정	7	사회복지시설	수색동 354-10대 일대	898.1	-	898.1	서울시고시 제2016-165호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73호 사회복지시설7 기정 면적 오기정정(837.0㎡→898.1㎡)

다) 공공청사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공공청사	소방파출소	수색동 326-16대 일대	762.0	-	762.0	서고 제2008-173호	
기정	2	공공청사	-	증산동 186-11대, 186-11대 일대	657.0	-	657.0	-	환원 (2008.5.22.이전)
기정	3	공공청사	동사무소	수색동 363-12대 일대	950.0	-	950.0	서고 제2008-173호	
기정	6	공공청사	-	수색동 361-6대 일대	750.0	-	750.0	서고 제2016-134호	

라) 문화시설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변경	1	문화시설	수색동 358-10대 일대	1,631.6	-	1,631.6	서울시고시 제2016-165호	

마) 도서관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건축물의 범위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정	1	도서관	수색동 21-1 일대	3,801.8	-	3,801.8	60% 이하	200% 이하	-	서고 제2008-173호 (08.05.22)	

4) 공원 · 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변경)

구분	시설세분	시설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봉산근린공원		-	구산동 산136-5 일대	173,845.1 (지구내3,152.4)	-	173,845.1 (지구내3,152.4)	
생활권 공원	근린공원	1개소		18,194.0	-	18,194.0	
		3	증산동 207-8대 일대	18,194.0	-	18,194.0	
	어린이공원	3개소		5,038.1	-	5,038.1	
		1	수색동 135-3대 일대	1,502.0	-	1,502.0	
		3	증산동 171-10대 일대	1,503.0	-	1,503.0	
		4	증산동 131-142대 일대	2,033.1	-	2,033.1	
	문화공원	1개소		4,445.3	-	4,445.3	
		2	증산동 211-11대 일대	4,445.3	-	4,445.3	
	소공원	2개소		4,497.0	-	4,497.0	
		1	수색동 25-15대 일대	925.5	-	925.5	
		2	수색동 361-10 일대	3,571.5	-	3,571.5	
녹지	완충녹지	1개소		3,015.1	-	3,015.1	
		4	증산동 160-1대 일대	3,015.1	-	3,015.1	
	연결녹지	4개소		17,416.2	-	17,416.2	
		6	증산동 188-9대 일대	1,503.0	-	1,503.0	
		7	증산동 205-33대 일대	4,501.0	-	4,501.0	
		8	증산동 193-23대 일대	6,137.2	-	6,137.2	
		9	증산동 131-95대 일대	5,275.0	-	5,275.0	
	경관녹지	3개소		2,586.5	증) 2,361.1	4,947.6	
		5	수색동 321임 일대	2,586.5	증) 124.6	2,711.1	
		6	수색동 산13-14임 일대	-	증) 836.3	836.3	
		7	수색동 산17-6임 일대	-	증) 1,400.2	1,400.2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73호 봉산근린공원 면적 오기정정(173,888.6㎡→173,845.1㎡)

- 공원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	경관녹지	• 도시계획시설 면적 변경 2,586.5㎡ → 2,711.1㎡ : 증) 124.6㎡	• 토지이용 현황에 따라 면적 증가
6	경관녹지	• 도시계획시설 신설 0㎡ → 836.3㎡ : 증) 836.3㎡	• 공원 시설의 세분 "도시자연공원" 폐지로 기존 봉산도시자연공원이었던 해당 필지를 경관녹지로 신설하여 토지이용효율 증대
7	경관녹지	• 도시계획시설 신설 0㎡ → 1,400.2㎡ : 증) 1,400.2㎡	• 공원 시설의 세분 "도시자연공원" 폐지로 기존 봉산도시자연공원이었던 해당 필지를 경관녹지로 신설하여 토지이용효율 증대

5) 교통계획 : 변경없음

6) 경관계획 : 변경없음

7)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변경

가) 주택재개발사업부문 (변경없음)

구분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건폐율	계획용적률	높이(층수)		추진 단계	정비 유형	비고
							층수	최고층수(m)			
기정	21	수색동	341	7.0	60%	244.0%이하	15.1층	20층 (65m이하)	3	전면개발	수색13촉진
기정	22	수색동	115	6.6	50,60%	268.1%이하	19.9층	30층 (92m이하)	2	전면개발	수색6촉진
기정	23	수색동	412	3.1	60%	249.95%이하	17.9층	22층 (66m이하)	2	전면개발	수색7촉진
기정	24	수색동	16	3.0	60%	263.9%이하	18.7층	22층 (66m이하)	2	전면개발	수색8촉진
기정	25	수색동	30	3.6	9-1 50%	9-1 275.0%이하	25.4층	9-1 30층 (92m이하)	2	전면개발	수색9촉진
					9-2 60%	9-2 442.9%이하	-	9-2 22층 (85m이하)			
기정	29	수색동	361	6.1	60%	257.63%이하	18.5층	25층 (80m이하)	2	전면개발	수색4촉진
기정	30	증산동	216	7.9	2-1 2-2 2-3 50%	2-1 2-2 2-3 247.7%이하	22층	2-1 2-2 2-3 30층 (92m이하)	2	전면개발	증산2촉진
					2-4 60%	2-4 290.9%이하	-	2-4 25층 (90m이하)			
기정	31	증산동	205	17.2	60%	247.0%이하	18.1층	30층 (92m이하)	3	전면개발	증산4촉진
기정	32	증산동	157	11.3	60%	263.7%이하	19.7층	30층 (92m이하)	3	전면개발	증산5촉진

나) 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변경)

구분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건폐율	계획용적률	높이(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고
기정	1	수색동	366-11	0.4	60%	400%이하	24층(104m이하)	2	복합용도	

구분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건폐율	계획용적률	높이(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고
기정	2	수색동	106-1	0.4	60%	780%이하	35층(130m이하)	2	복합용도	
기정	3	수색동	102-20	0.3	60%	750%이하	35층(130m이하)	2	복합용도	
폐지	6	수색동	32-13	0.4	60%	760%이하	28층(110m이하)	2	복합용도	수색11 재정비촉진구역
기정	7	수색동	369-3	0.4	60%	760%이하	28층(110m이하)	2	복합용도	

※ 수색11재정비촉진구역 해제(존치관리구역 전환)에 따른 폐지

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변경)

구분	사업방식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총계			-	791,135.8	-	791,135.8	
재정비 촉진 구역	합계		-	682,864.5	-	682,864.5	
	주택 재개발	수색4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361-10일대	61,519.3	-	61,519.3	
		수색6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115-5일대	65,977.0	-	65,977.0	
		수색7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412일대	31,432.3	-	31,432.3	
		수색8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17-28일대	29,884.0	-	29,884.0	
		수색9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30-2일대	36,341.2	-	36,341.2	
		수색13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341-6일대	69,511.4	-	69,511.4	
		증산2재정비촉진구역	증산동216-10일대	78,727.2	-	78,727.2	
		증산4재정비촉진구역	증산동205-33일대	172,932.0	-	172,932.0	
		증산5재정비촉진구역	증산동157-34일대	112,804.2	-	112,804.2	
	도시환경 정비사업 및 시장정비 사업	수색1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366-11일대	4,422.0	-	4,422.0	
		수색2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367-6일대	5,026.0	-	5,026.0	시장정비사업
		수색3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106-1일대	3,704.0	-	3,704.0	
		수색5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102-20일대	2,961.0	-	2,961.0	

구분	사업방식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수색11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32-13일대	3,163.0	감) 3,163.0	-	수색11 존치관리구역 전환에 따른 폐지
		수색12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369-3일대	4,453.0	-	4,453.0	
존치관리구역	합계		-	108,278.2	-	108,278.2	
	지구단위계획	수색1존치관리구역	수색동160일대	52,343.0	-	52,343.0	
	존치관리	수색11존치관리구역		-	증) 3,163.0	3,163.0	신설
	존치	존치	-	55,935.2	-	55,935.2	존치건축물

※ 존치건축물 : 수색초, 증산초·중, 두산위브APT, 문영1차APT
※ 수색11재정비촉진구역→수색11존치관리구역 전환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 변경

가) 수색1~12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나) 수색11재정비촉진구역 : 폐지

※ 수색11재정비촉진구역→수색11존치관리구역 전환에 따른 폐지

다) 수색13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라) 증산2~5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마) 수색1존치관리구역 (변경없음)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 변경

구분	구역명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계획		비고
				기준	최대	평균/최고층수	최고높이(m)	
기정	수색1촉진구역	복합용도	60이하	353	400.0이하	-/24이하	104이하	
기정	수색2촉진구역	복합용도	60이하	-	-	-/-	-	
기정	수색3촉진구역	복합용도	60이하	600	780.0이하	-/35이하	130이하	
기정	수색4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이하	210	257.63이하	18.5이하/25이하	80이하	
기정	수색5촉진구역	복합용도	60이하	549	750.0이하	-/35이하	130이하	
기정	수색6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이하 60이하	228.1	268.1이하	19.9이하/30이하	92이하	

구분	구역명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계획		비고
					기준	최대	평균/최고층수	최고높이(m)	
기정	수색7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이하	210	249.95이하	17.9이하/22이하	66이하	
기정	수색8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이하	210	263.9이하	18.7이하/22이하	66이하	
기정	수색9 재정비 촉진구역	9-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이하	231.3	275.0이하	25.4이하/30이하	92이하	
		9-2	판매시설,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	60이하	286.7	442.9이하	-/22이하	85이하	
폐지	수색11촉진구역		복합용도	60이하	360.0	400.0이하	-/22이하	104이하	수색11 존치관리구역 전환에 따른 폐지
기정	수색12촉진구역		복합용도	60이하	553.0	760.0이하	-/28이하	110이하	
기정	수색13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이하	210	244.0이하	15.1이하/20이하	65이하	
기정	증산2 촉진구역	2-1 2-2 2-3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이하	210	247.7이하	22이하/30이하	92이하	
		2-4	판매시설,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	60이하	261.09	290.9이하	-/25이하	90이하	
기정	증산4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이하	210	247.0이하	18.1이하/30이하	92이하	
기정	증산5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이하	210	263.7이하	19.7이하/30이하	92이하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 변경

가) 촉진지구 기반시설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고
	기 정	변경	변 경 후	
소 계	246,739.4	-	246,739.4	
도 로	110,272.8	감) 124.6	110,148.2	
보행자도로	5,554.9	-	5,554.9	
공 원	35,370.3	감) 2,236.5	33,133.8	봉산근린공원 포함
녹 지	23,017.8	증) 2,361.1	25,378.9	8개소
광 장	1,001.0	-	1,001.0	2개소

구 분	면 적(㎡)			비고
	기 정	변경	변 경 후	
전기공급설비	【1.4km중0.73km】	-	【1.4km중0.73km】	수색~향동
변 전 소	542.0	-	542.0	
공공청사	3,967.0	-	3,967.0	5개소
학 교	57,287.7	-	57,287.7	4개소
사회복지시설	4,292.5	-	4,292.5	6개소
도 서 관	3,801.8	-	3,801.8	1개소
문화시설	1,631.6	-	1,631.6	1개소
체육시설	(4,023.0)	-	(4,023.0)	복합용지내 복합화

※ 【 】는 중복결정 또는 지중시설
※ ( )는 복합용지 내 체육시설 복합화에 따른 대지지분(890㎡)과 부지환산면적(3,133㎡)의 합산 면적

나) 구역별 기반시설 분담 (변경)

구분	구역명	구역면적 (㎡) A	계획기반시설 면적(㎡) ①	계획기반시설내 국공유지(㎡) ②	기존기반시설내 국공유지(㎡) ③	계획 기반시설중 유상매입시설 ④	순부담 면적(㎡) B=①-②-③-④	기반시설 분담률(%) B/A
기정	합계	682,857.6	184,711.1	42,340.4	61,768.1	-	88,879.00	13.0
변경		679,694.6	184,396.1	-	-	-	88,564.00	13.0
기정	수색1	4,422.0	1,162.0	354.0	371.0	-	437.0	9.9
기정	수색2	5,026.0	931.0	38.0	128.0	-	765.0	15.2
기정	수색3	3,704.0	1,342.0	768.0	18.0	-	556.0	15.0
기정	수색4	61,519.3	13,477.5	2,099.5	7,051.0	-	7,666.0	12.4
기정	수색5	2,961.0	1,366.0	444.0	468.0	-	454.0	15.3
기정	수색6	65,977.0	18,203.0	5,222.0	6,099.0	-	6,882.0	10.4
기정	수색7	31,432.3	6,063.1	1,963.0	-	-	4,100.1	13.0
기정	수색8	29,884.0	9,072.0	2,638.0	2,727.0	-	3,707.0	12.4
기정	수색9	36,341.2	9,107.8	1,023.6	1,729.0	-	6,355.2	17.5
폐지	수색11	3,163.0	315.0	-	-	-	315.0	9.95
기정	수색12	4,453.0	2,079.0	874.0	495.0	-	710.0	15.9
기정	수색13	69,511.4	14,748.3	2,626.0	7,698.0	-	9,361.7	13.4
기정	증산2	78,727.2	23,155.4	7,057.8	7,699.6	-	8,398.0	10.7
기정	증산4	172,932.0	51,957.0	10,812.0	16,710.0	-	24,435.0	14.1
기정	증산5	112,804.2	31,732.0	6,420.5	10,574.5	-	14,737.0	13.1

※ 수색11재정비촉진구역 해제(존치관리구역 전환) 시 기존 촉진구역 내 기반시설 계획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으로 환원하지 않고 유지함
※ 촉진구역별 기반시설 분담면적 산정 시 촉진지구 전체 기반시설 분담률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73호 수색13구역 계획기반시설면적 오기정정(14,432.3㎡→14,748.3㎡)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73호 수색13구역 계획기반시설내 국공유지면적 오기정정(2,375.0㎡→2,626.0㎡)

12) 공공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 변경

구분	구역명	공공주택 전용면적					비고
		소 계	40㎡이하	40~50㎡	50~60㎡	60~85㎡	
기정	합계	2,196	935	868	389	4	-
기정	수색1재정비촉진구역	-	-	-	-	-	도시환경정비
기정	수색2재정비촉진구역	-	-	-	-	-	시장정비사업
기정	수색3재정비촉진구역	-	-	-	-	-	도시환경정비사업
기정	수색4재정비촉진구역	203	85	83	35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정	수색5재정비촉진구역	-	-	-	-	-	도시환경정비사업
기정	수색6재정비촉진구역	208	88	97	23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정	수색7재정비촉진구역	116	49	49	18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정	수색8재정비촉진구역	99	40	40	19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정	수색9재정비촉진구역	135	57	54	20	4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폐지	수색11재정비촉진구역	-	-	-	-	-	도시환경정비사업
기정	수색12재정비촉진구역	-	-	-	-	-	도시환경정비사업
기정	수색13재정비촉진구역	300	140	112	48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정	증산2재정비촉진구역	237	114	99	24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정	증산4재정비촉진구역	595	228	228	139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정	증산5재정비촉진구역	303	134	106	63		주택재개발정비사업

13)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구분		사업기간			해당구역	비고
		추진시기 (추진위원회)	이주시기 (관리처분인가 예정)	입주시기		
기정	1단계	2008년	2015년	2019년	수색4촉진구역	(이주)
			2016년~2017년	2020년~2021년	수색6,9,증산2촉진구역	(감정평가)
				2022년	수색7촉진구역	(착공)
		2009년~2013년	2018년	2021년	증산5촉진구역	(사업시행인가)
기정	2단계	2008년	2018년 이후	2022년 이후	수색8,13촉진구역	(조합설립)
기정	3단계	2014년 이후	2018년 이후	-	증산4촉진구역	(추진위원회)

주1) 단계별 추진계획은 촉진구역에 대한 주민들의 사업추진의지에 따라 조정가능
주2) 일시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구청장이 각 단계의 총량 범위내에서 관리하고 이에 따른 사업기간의 변경 또는 해당구역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으로 함
주3) 구청장은 전세수요가 급등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역별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조정가능

14) 기타계획(방재계획, 정보화계획, 에너지순환계획, 자족성계획, 특성화계획, 여성친화적계획) (변경없음)

15) 광고물 관리계획 : 변경없음

16)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17)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 변경

가) 수색1~9 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나) 수색11재정비촉진구역 : 폐지

※ 수색11재정비촉진구역→수색11존치관리구역 전환에 따른 폐지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촉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폐지	수색11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수색동 32-13 일대	3,163.0	감) 3,163.0	-	존치관리구역 전환에 따른 폐지

(2) 정비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 수색11재정비촉진구역 해제(존치관리구역 전환)에 따른 기존 토지이용계획 (복합용지 및 도로)은 변경 없음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수색11재정비촉진구역 해제(존치관리구역 전환) 시 기존 촉진구역 내 기반시설 계획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으로 환원하지 않고 유지

(다) 건축물의 정비 · 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① 기존건축물의 정비 · 개량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정비계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폐지	수색11 재정비 촉진구역	3,163.0	계	2,848.0	수색동 32-13대	3	-	-	3	-	존치관리 구역 전환에 따른 폐지
			11-1	2,848.0							

②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평균층수/ 최고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폐지	수색11 재정비 촉진구역	3,163.0	계	2,845.0	수색동 32-13	11,537.12	복합용도	60% 이하	400% 이하	-/22이하 (104m이하)
			11-1	2,845.0						
폐지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해당사항 없음								
폐지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계획	• 수색로변 : 벽면지정선 5m, 고층부 건축한계선 11m(대지경계선 기준) • 15m도로변 : 건축한계선 10m • 보행자도로변 : 건축한계선 5m								

(라) 정비사업 시행계획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 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감 예상세대수	홍수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폐지	도시환경정비사업	-	-	-	-	-

(마)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	공공주택전용면적(㎡)					비고
		소계	40㎡이하	40~50㎡	50~60㎡	60~85㎡	
폐지	수색11	-	-	-	-	-	도시환경정비사업

※ 기존 수색11재정비촉진계획 상 임대주택 계획 없음

다) 수색12 재정비촉진구역 : 변경없음

라) 수색13 재정비촉진구역 : 변경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구분	재정비촉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수색13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 341번지 일원	69,511.4	-	69,511.4	-

(2) 정비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69,511.4	-	69,511.4	100.0	
정비기반시설등	소 계	14,748.3	-	14,748.3	21.2	
	도 로	6,632.1	감) 124.6	6,507.5	9.4	
	공 원	2,236.5	감) 2,236.5	-	-	
	녹 지	2,586.5	증) 2,361.1	4,947.6	7.1	
	사회복지시설	1,345.6	-	1,345.6	1.9	
	문화시설	1,631.6	-	1,631.6	2.3	
	학 교	316.0	-	316.0	0.5	
택지(획지)	소 계	54,763.1	-	54,763.1	78.8	
	13-1	54,763.1	-	54,763.1	78.8	공동주택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변경)

① 도로 (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위치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종점				
기정	중로	2	461	15~26	국지도로	733	수색동 325-21 일원	수색동 111-1 일원	일반도로	-	서고 제2008-173호	
변경	중로	2	461	15~26	국지도로	733	수색동 325-21 일원	수색동 111-1 일원	일반도로	-	서고 제2008-173호	일부구간변경
기정	중로	2	462	15	국지도로	484 (256)	수색동 358-3대 일원	수색동 136-50대 일원	일반도로	-	서고 제2008-173호	

※ ( )는 구역내 연장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2-461	중로 2-461	• 도로 일부구간 폭원 변경 폭원 : 26m → 24m	• 토지이용 현황에 따라 일부구간 폭원 조정

② 녹지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변경	5	녹지	경관 녹지	수색동 321임 일대	2,586.5	증) 124.6	2,711.1	서고제2016-165호	
신설	6	녹지	경관 녹지	수색동 산13-14임 일대	-	증) 836.3	836.3	-	
신설	7	녹지	경관 녹지	수색동 산17-6임 일대	-	증) 1,400.2	1,400.2	-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	경관녹지	• 도시계획시설 면적 변경 2,586.5㎡ → 2,711.1㎡ : 증) 124.6㎡	• 토지이용 현황에 따라 면적 증가
6	경관녹지	• 도시계획시설 신설 0㎡ → 836.3㎡ : 증) 836.3㎡	• 공원 시설의 세분 “도시자연공원” 폐지로 기존 봉산도시자연공원이었던 해당 필지를 경관녹지로 신설하여 토지이용효율 증대
7	경관녹지	• 도시계획시설 신설 0㎡ → 1,400.2㎡ : 증) 1,400.2㎡	• 공원 시설의 세분 “도시자연공원” 폐지로 기존 봉산도시자연공원이었던 해당 필지를 경관녹지로 신설하여 토지이용효율 증대

③ 사회복지시설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6	사회복지시설	수색동 321임 일대	447.5	-	447.5	서울시고시 제2016-165호	
기정	7	사회복지시설	수색동 354-10대 일대	898.1	-	898.1	서울시고시 제2016-165호	

④ 문화시설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변경	1	문화시설	수색동 358-10대 일대	1,631.6	-	1,631.6		

(다) 건축물의 정비 · 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변경없음)

① 기존건축물의 정비 · 개량계획 (변경없음)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정비계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신축	철거이주	
기정	수색13 재정비 촉진구역	69,511.4	계	54,763.1	수색동 341-6번지	272	-	-	272	-	
			13-1	54,763.1							

② 건축시설계획 (변경없음)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평균층수/ 최고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수색13 재정비촉진구역	69,511.4	계	54,763.1						
			13-1	54,763.1	수색동 341-6	133,621.96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 이하	244.0% 이하	15.1/20 (65m이하)

결정 구분		구 분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계	1,486	(100.0%)	-	1,486	(100.0%)
		전용면적 40㎡이하	219	(14.7%)	-	219	(14.7%)
		전용면적 40~50㎡	177	(11.9%)	-	177	(11.9%)
		전용면적 50~60㎡	484	(32.6%)	-	484	(32.6%)
		전용면적 60~85㎡	506	(34.1%)	-	506	(34.1%)
		전용면적 85㎡초과	100	(6.7%)	-	100	(6.7%)
		■주택의 규모별 건설계획 적용기준 •전체 세대수의 20%이상을 전용면적 60㎡이하로 건설 (서울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11조2호 기준준수) •전체 세대수의 60%이상을 전용면적 85㎡이하로 건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1항1호 기준준수)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기준용적률 상향으로 증가하는 세대수는 전용면적 60㎡이하로 건설하여야 함.					
기정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계획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3~6m					
기정	대지내 공지	•공동주택 대지 중앙부 폭 33.5m 건축한계선 부지를 공개공지로 조성(폐지되는 연결녹지 부지)					

(라)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없음)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감 예상세대수	홍수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주택재개발사업	-	주택재개발조합	-	-	-

(마)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분		획지면적(㎡)	연면적(㎡)	세대규모	세대수	비고
기정	계	54,763.1	20,180.55	계	300	20.1%(100%)
	13-1	54,763.1	20,180.55	전용면적 40㎡이하	140	9.4%(46.7%)
				전용면적 40~50㎡	112	7.5%(37.3%)
				전용면적 50~60㎡	48	3.2%(16.0%)
	적용기준	• 임대주택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이상 • 주거전용면적 40㎡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의 40%이상을 건설할 것 •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85㎡초과 40%이하로 건립				

다) 증산2~증산5 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라) 수색1 존치관리구역 (변경없음)

마) 증산2~5 재정비촉진구역 : 변경없음

바) 수색1 존치관리구역 : 변경없음

사) 수색11 존치관리구역 : 신설

(1) 구역면적 현황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교통시설(도로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위치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종점				
기정	중로	2	467	15	국지도로	619	수색동 145-2대 일원	수색동 218-8대 일원	일반도로	-	서고 제2008-173호	수색11 존치관리구역
기정	중로	2	468	15	국지도로	50	수색동 77-5대 일원	수색동 160-1대 일원	일반도로	-	서고 제2008-173호	수색11 존치관리구역

※ 존치관리구역 전환에 따른 기반시설 미환원, 기 결정사항 유지

– 공동개발 결정조서

가구 번호	획지 번호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필지	계		
A1	–	수색동 32-4	26.0	605.0	공동개발(권장)	단독개발이 불가능한 과소필지 (90㎡미만), 부정형 필지 등 소유자가 다른 필지 공동개발 권장
		수색동 32-6	579.0			
		수색동 77-21	19.0	180.0	공동개발(권장)	
		수색동 76-31	161.0			
		수색동 76-5	251.0	293.0	공동개발(권장)	
		수색동 76-1	42.0			

– 최대개발규모 결정조서 (해당사항 없음)

(4)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 권장용도 · 불허용도 결정조서

가구 번호	획지 번호	구분	권장용도	불허용도	비고
			A	A'	
A1	–	A/A'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도시가스 배관시설, 통신용 시설, 정수장, 양수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서커스장, 비디오물 감상실, 골프연습장, 청소년 게임제공 업소, 옥외철탑골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골프연습장	

※ 권장용도는 건축면적(주차장 제외)의 20% 이상 도입 시 인센티브 인정

(5) 건축물 밀도에 관한 결정조서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결정조서

구분			건폐율주1)	용적률			높이	용도지역	비고
가구	획지	용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주2)	상한용적률주3)			
A1	-	복합용지	60%	300% 이하	360% 이하	법적용적률 2배 이하	40m 이하	준주거지역	

주1) 건폐율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 적용
주2) 허용용적률=기준용적률+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의 합
주3) 상한용적률 산정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7조를 준수함
※ 상한용적률=허용용적률+(기준용적률×1.3×α×가중치) 이내
- α : 공공시설 제공 후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순부담:총기반시설 면적-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 / 공공시설 제공 후 대지면적
- 가중치 : 공공시설 제공부지의 용적률 / 사업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 제공부지 용적률(용도지역 변경 후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허용용적률) /사업부지의 용적률(용도지역 변경 후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허용용적률)
※ 역세권활성화 사업 등 개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추진 시 해당사업별 운영기준에 따른 용도지역, 용적률, 높이 기준 등을 적용함

■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및 운영기준

항 목	세 분		완화기준(지침)	비고
공동개발	자율적 공동개발	필지수	기준용적률×α	• 2개 필지 : α=0.05 • 3개 필지 : α=0.10 • 4개 필지 이상 : α=0.15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기준용적률× (권장용도 면적/연면적)×α	• α=0.05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 /대지면적×α}	• 필로티구조 : α=1.0 • 침상형구조 : α=2.0 • 개방형구조 : α=3.0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α	• α=0.7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α	• α=0.6
보행개선	가로지장물 지중화 또는 이전설치, 지하 연결통로 설치		기준용적률×α	• α=0.1

※ 역세권활성화 사업 등 개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추진 시, 해당사업별 운영기준에 따라 계획 내용이 바뀔 수 있음

(6) 건축물 배치에 관한 결정조서

■ 건축선 결정조서

구분	가구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A1	• 수색로변(남측)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결정도 참고
		• 중로 2-467(북측)		
		• 중로 2-476(동측)		

(7)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교통처리계획 결정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차량출입불허구간	• 간선부에서 대지로의 직접 차량진출입 원칙적 불허 • 일부 공동 차량진출입구간 설정	결정도 참고

18)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가) 재정비촉진지구 결정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수색 · 증산 재정비촉진지구	수색동 증산동	791,135.8	-	791,135.8	서고 제2008-173호 (2008.05.22.)

나) 용도지역 결정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791,135.8	-	791,135.8	100.0%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소계			776,436.5	-	776,436.5	98.1%	
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83,985.7	-	83,985.7	10.6%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49,765.5	-	149,765.5	19.0%	
		제2종일반주거지역	414,623.1	-	414,623.1	52.4%	
		제3종일반주거지역	74,583.1	-	74,583.1	9.4%	
	준주거지역		53,477.4	-	53,477.4	6.7%	
일반상업지역			14,701.0	-	14,701.0	1.9%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없음)

(1) 교통시설 (변경없음)

(가) 도로 (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위치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종점				
기정	대로	1	4	34~40	주간선도로	1,700	남가좌동 (사천교)	신도읍 강매리	일반도로	-	건고738호 (63.12.24)	
기정	중로	1	442	21	집분산도로	72	수색동 411-9도 일원	수색동 411-9도 일원	일반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1	443	18~21	집산도로	82	증산동 198-6구 일원	증산동 198-7구 일원	일반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1	444	10~21	집산도로	1,480	증산동 222-4대 일원	증산동 158-26대 일원	일반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1	445	21	집산도로	91	증산동 197-5도 일원	증산동 197-5도 일원	일반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1	446	9~21	국지도로	48	증산동 168-4대 일원	증산동 168-1대 일원	일반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1	447	10.5~21	집산도로	102	증산동 196-1도 일원	증산동 196-1도 일원	일반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구분	규모				기능	연장	위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2	61	15	보조간선 도로	5,615	갈현동 (신:388-1)	수색동 (신:109-1)	일반 도로	-	서고 2002-262호 (02.06.27)	
기정	중로	2	461	15~26	국지 도로	733	수색동 325-21대 일원	수색동 111-1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변경	중로	2	461	15~26	국지 도로	733	수색동 325-21대 일원	수색동 111-1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일부 구간 변경
기정	중로	2	462	15	국지 도로	484	수색동 358-3대 일원	수색동 136-50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63	15	국지 도로	202	수색동 115-11대 일원	수색동 136-11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64	15	국지 도로	212	수색동 160대 일원	수색동 165-1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65	15~21	국지 도로	57	수색동 101-7대 일원	수색동 160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66	15	국지 도로	481	수색동 172도 일원	수색동 28-1도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67	15	국지 도로	619	수색동 145-2대 일원	수색동 218-8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68	15	국지 도로	50	수색동 77-5대 일원	수색동 160-1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69	15	국지 도로	132	증산동 219-28대 일원	증산동 219-15대 일원	일반 도로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70	15	국지 도로	80	증산동 산21-3임 일원	증산동 206-4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71	11~15	국지 도로	91	증산동 197-18도 일원	증산동 174-1주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73	15	국지 도로	115	증산동 198-1구 일원	증산동 198-1구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75	15	국지 도로	41	수색동 32-34도 일원	수색동 217-32대 일원	보행자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76	15	국지 도로	44	수색동 76-1대 일원	수색동 32-6대 일원	보행자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3	458	12	국지 도로	27	증산동 217-4대 일원	증산동 271-1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3	459	12~15	국지 도로	104	증산동 233도 일원	증산동 233도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3	461	6~12	국지 도로	146	증산동 197-18도 일원	증산동 197-6도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3	463	12	국지 도로	170	증산동 197-6도 일원	증산동 197-6도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구분	규모				기능	연장	위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3	465	12	국지도로	215	증산동 200-1도 일원	증산동 197-23도 일원	일반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3	466	6~12	국지도로	283	증산동 197-5도 일원	증산동 197-1도 일원	일반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소로	1	1	10~15	국지도로	154	수색동 24-3대 일원	수색동 216-14대 일원	일반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소로	1	2	11	국지도로	115	증산동 254-1도 일원	증산동 201-7대 일원	일반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소로	1	3	6~10	특수도로	150	증산동 217-28대 일원	증산동 217-4대 일원	보행자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소로	1	4	10	특수도로	185	증산동 236도 일원	증산동 233도 일원	보행자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60	증산동 197-6도 일원	증산동 197-6도 일원	일반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소로	2	2	9	특수도로	49	수색동 102-20대 일원	수색동 104-1대 일원	보행자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6	수색동 129-4학 일원	수색동 129-4학 일원	일반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소로	3	2	7	특수도로	63	수색동 368-4대 일원	수색동 411-9도 일원	보행자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소로	3	4	4.5	특수도로	65	수색동 366-5대 일원	수색동 365-8대 일원	보행자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소로	3	5	6	국지도로	53	증산동 131-95대 일원	증산동 254-1도 일원	일반도로	-	서고 제2012-195호	
기정	소로	3	6	6~8	국지도로	185	수색동 153-1 일원	수색동 76-27 일원	일반도로	-	서고 제2002-262호	

※ 수색11재정비촉진구역 해제(존치관리구역 전환) 시 기존 촉진구역 내 기반시설 계획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으로 환원하지 않고 유지함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2-461	중로 2-461	• 도로 일부구간 폭원 변경 폭원 : 26m → 24m	• 토지이용 현황에 따라 일부구간 폭원 조정

(2) 공간시설 (변경없음)

(가) 공원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봉산근린공원	구산동 산136-5 일대	173,845.1 (지구내 3,152.4)	-	173,845.1 (지구내 3,152.4)	서고제513호 (83.09.29)	
기정	3	근린공원	증산동 207-8대 일대	18,194.0	-	18,194.0	서울시고시 제2008-173호	
기정	1	어린이공원	수색동 135-3대 일대	1,502.0	-	1,502.0	서울시고시 제2008-173호	
기정	3	어린이공원	증산동 171-10대 일대	1,503.0	-	1,503.0	서울시고시 제2008-173호	
기정	4	어린이공원	증산동 131-142대 일대	2,033.1	-	2,033.1	서울시고시 제2008-173호	
기정	2	문화공원	증산동 211-11대 일대	4,445.3	-	4,445.3	서울시고시 제2008-173호	
기정	1	소공원	수색동 25-15대 일대	925.5	-	925.5	서울시고시 제2008-173호	
기정	2	소공원	수색동 361-10 일대	3,571.5	-	3,571.5	서울시고시 제2016-134호	

(나) 녹지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 세분	시설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녹지	완충녹지		1개소		3,015.1	-	3,015.1	
			4	증산동 160-1대 일대	3,015.1	-	3,015.1	
	연결녹지		4개소		17,416.2	-	17,416.2	
			6	증산동 188-9대 일대	1,503.0	-	1,503.0	
			7	증산동 205-33대 일대	4,501.0	-	4,501.0	
			8	증산동 193-23대 일대	6,137.2	-	6,137.2	
			9	증산동 131-95대 일대	5,275.0	-	5,275.0	
	경관녹지		3개소		2,586.5	증) 2,361.1	4,947.6	
			5	수색동 321임 일대	2,586.5	증) 124.6	2,711.1	
			6	수색동 산13-14임 일대	-	증) 836.3	836.3	
			7	수색동 산17-6임 일대	-	증) 1,400.2	1,400.2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	경관녹지	• 도시계획시설 면적 변경 2,586.5㎡ → 2,711.1㎡ : 증) 124.6㎡	• 토지이용 현황에 따라 면적 증가
6	경관녹지	• 도시계획시설 신설 0㎡ → 836.3㎡ : 증) 836.3㎡	• 공원 시설의 세분 “도시자연공원” 폐지로 기존 봉산도시자연공원이었던 해당 필지를 경관녹지로 신설하여 토지이용효율 증대
7	경관녹지	• 도시계획시설 신설 0㎡ → 1,400.2㎡ : 증) 1,400.2㎡	• 공원 시설의 세분 “도시자연공원” 폐지로 기존 봉산도시자연공원이었던 해당 필지를 경관녹지로 신설하여 토지이용효율 증대

(다) 광장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	광장	수색동 122-2 일대	489	-	489	서고 제2008-173호	
기정	3	광장	수색동 131-1 일대	631	-	631	서고 제2008-173호	

(3) 유통 · 공급시설 (변경없음)

(가) 전기공급설비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연장(m)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1	전기공급 설비	은평구 수색동 18-2	고양시 향동동 142-4	-	L=1,400m	-	서고1992-151호 (92.05.16)	시계외구간 L=670m

(3) 공공 · 문화체육시설 (변경없음)

(가) 공공청사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공공청사	소방파출소	수색동 326-16대 일대	762.0	-	762.0	서고 제2008-173호	
기정	2	공공청사	-	증산동 186-11대, 186-11대 일대	657.0	-	657.0	-	환원 (2008.5.22.이전)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	공공청사	동사무소	수색동 363-12대 일대	950.0	-	950.0	서고 제2008-173호	
기정	6	공공청사	-	수색동 361-6대 일대	750.0	-	750.0	서고 제2016-134호	

(나) 문화시설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1	문화시설	수색동 358-10대 일대	1,631.6	-	1,631.6	서울시고시 제2016-165호	

(다) 학교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건축물의 범위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정	1	학교	초등 학교	증산동 212일대	11,279.0	-	11,279.0	35% 이하	120% 이하	4층 높이완화 (4⇒5층)	서고제30호 (75.02.21)	증산초
기정	2	학교	중학교	증산동 207-11일대	14,924.0	-	14,924.0	35% 이하	120% 이하	4층 높이완화 (4⇒5층)	서고제50호 (82.02.03)	증산중
기정	3	학교	중학교	증산동 131-98일대	12,681.3	-	12,681.3	35% 이하	120% 이하	5층	서고 제2008-173호	연서중
기정	4	학교	초등 학교	수색동 129일대	18,403.4 (316.0)	-	18,403.4 (316.0)	35% 이하	120% 이하	4층 높이완화 (4⇒5층)	서고제10호 (79.01.10)	수색초

※ ( )는 구역내 면적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73호 증산초 기정 면적 오기정정(3,795.7㎡→11,279.0㎡)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73호 수색초 기정 면적 오기정정(18,087.4㎡→18,403.4㎡)

(라) 도서관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건축물의 범위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정	1	도서관	수색동 21-1 일대	3,801.8	-	3,801.8	60% 이하	200% 이하	-	서고 제2008-173호 (08.05.22)	

(마) 사회복지시설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사회복지시설	수색동 8-10대 일대	1,358.0	-	1,358.0	서울시고시 제2008-173호	
기정	2	사회복지시설	증산동 188-22대 일대	743.0	-	743.0	서울시고시 제2008-173호	
기정	3	사회복지시설	증산동 157-24대 일대	576.3	-	576.3	서울시고시 제2010-449호	
기정	5	사회복지시설	수색동 324-2대일대	269.6	-	269.6	서울시고시 제2016-134호	
기정	6	사회복지시설	수색동 321임 일대	447.5	-	447.5	서울시고시 제2016-165호	
기정	7	사회복지시설	수색동 354-10대 일대	898.1	-	898.1	서울시고시 제2016-165호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73호 사회복지시설7 기정 면적 오기정정(837.0㎡→898.1㎡)

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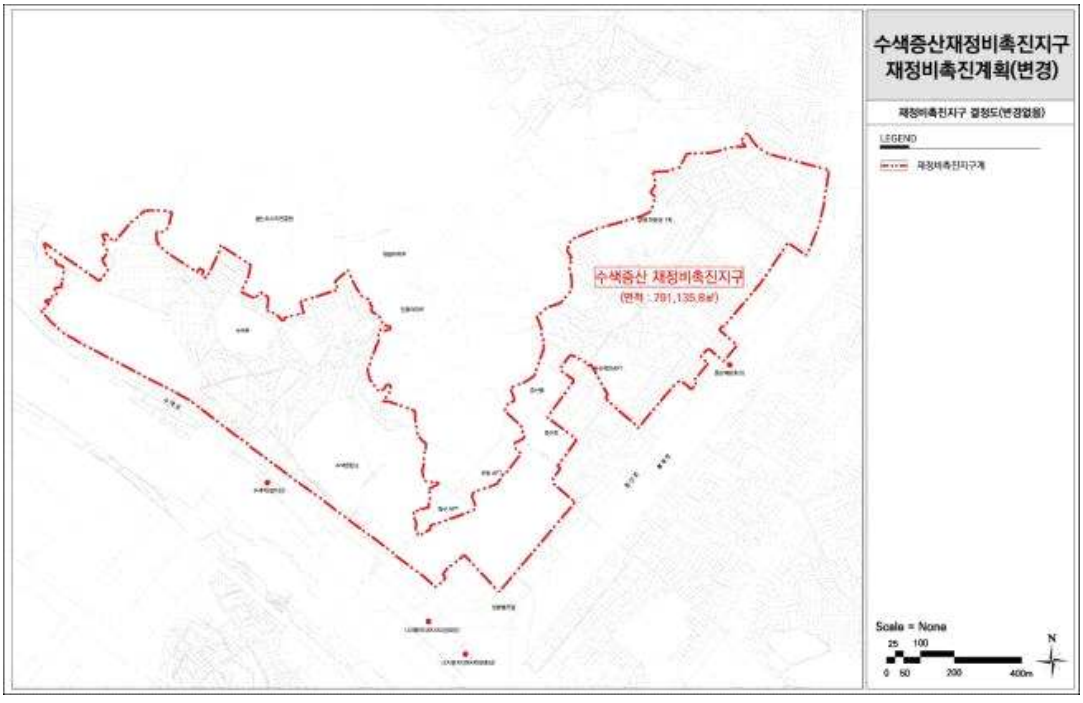
마) 수색1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없음)

마.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세부사항은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도서」에 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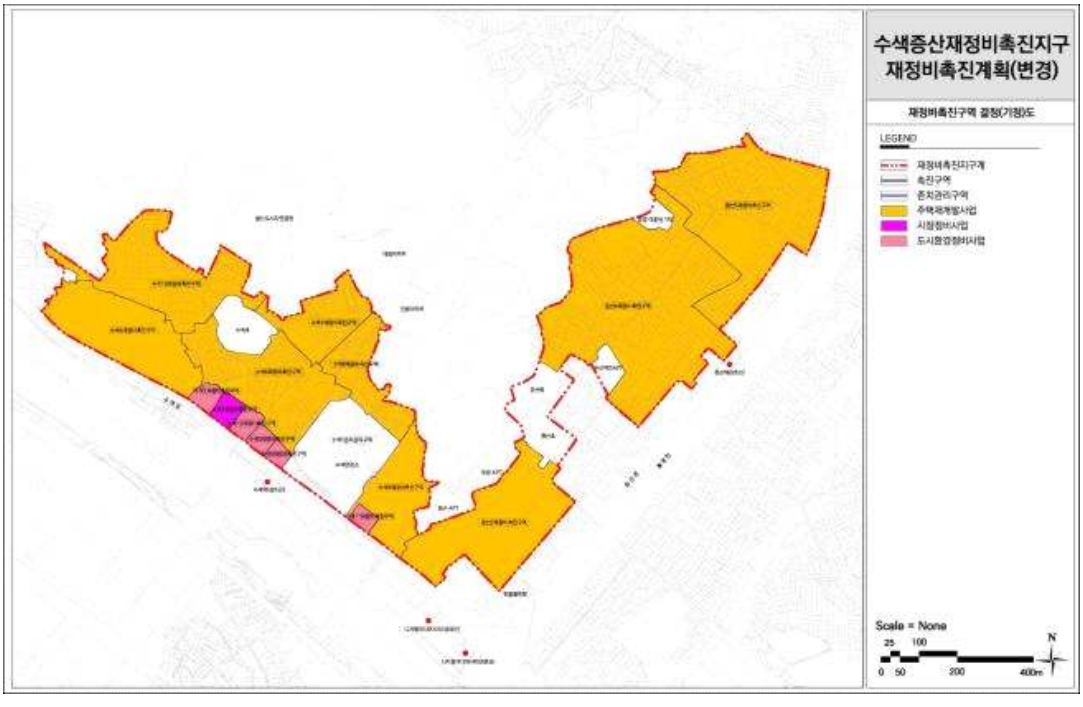
바.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서 참조
: 생략(비치한 도서와 같음)
※ 첨부된 “결정 및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실 건축기획관 재정비촉진과(☎ 02-2133-7222) 및 은평구 정비사업신속추진단(☎ 02-351-7482)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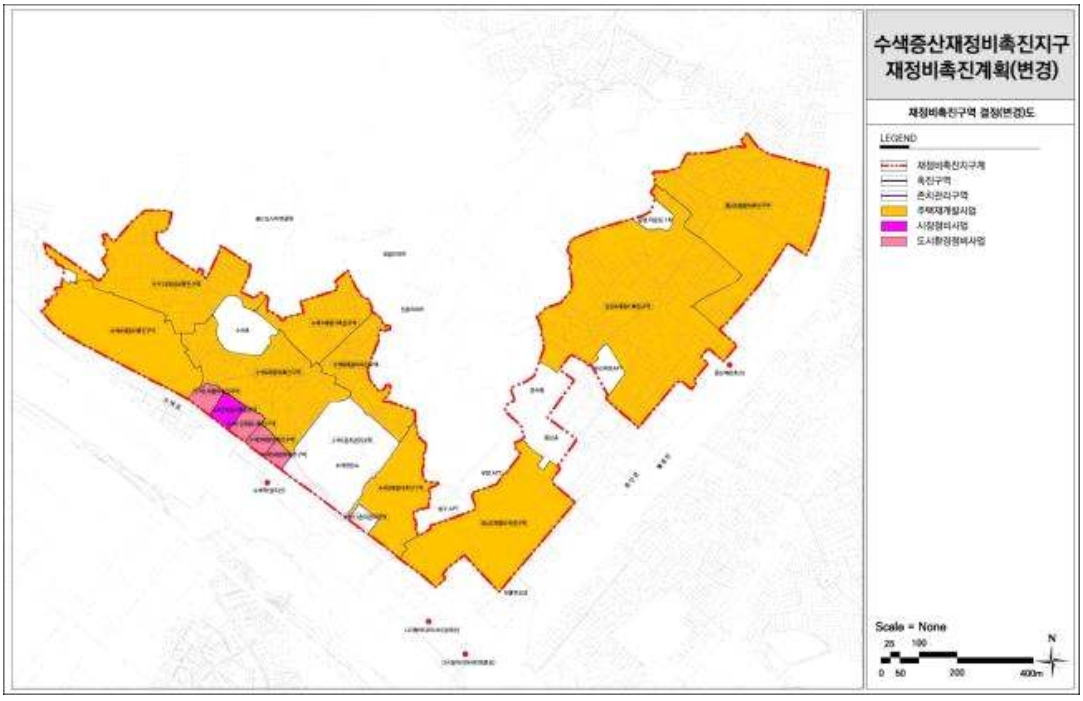
■ 수색 · 증산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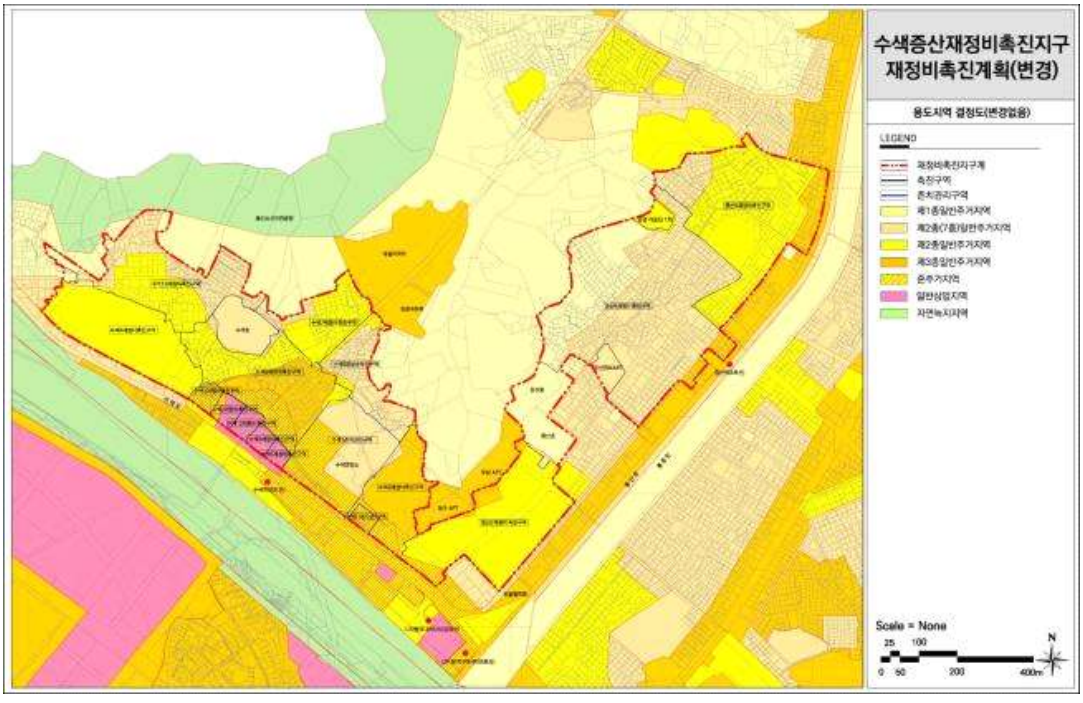
■ 수색 · 증산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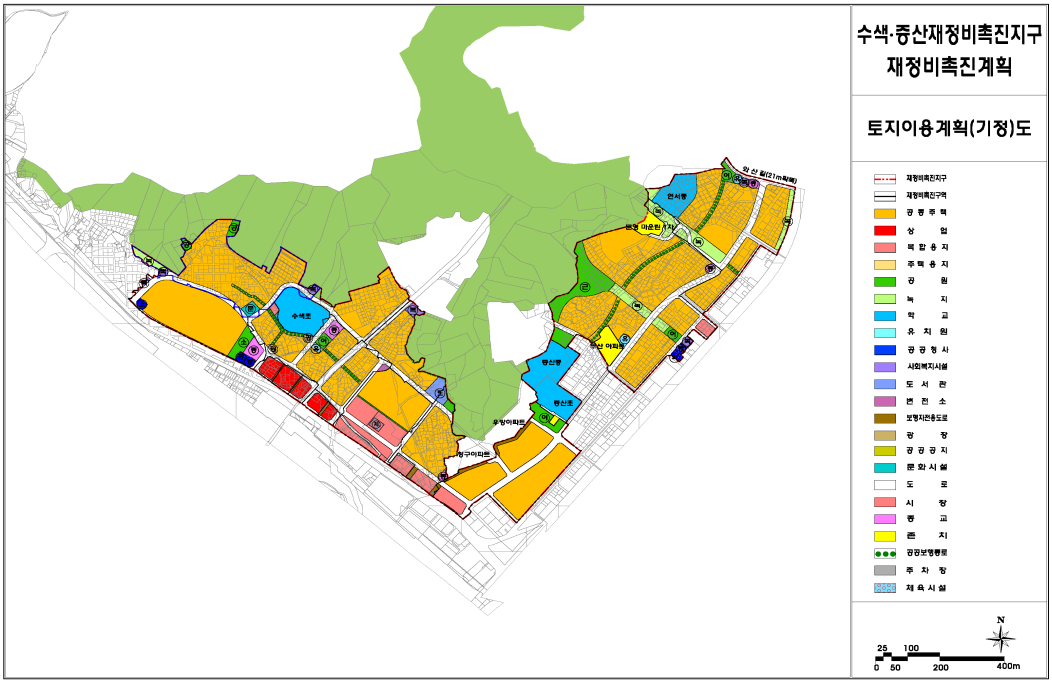
■ 수색 · 증산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 :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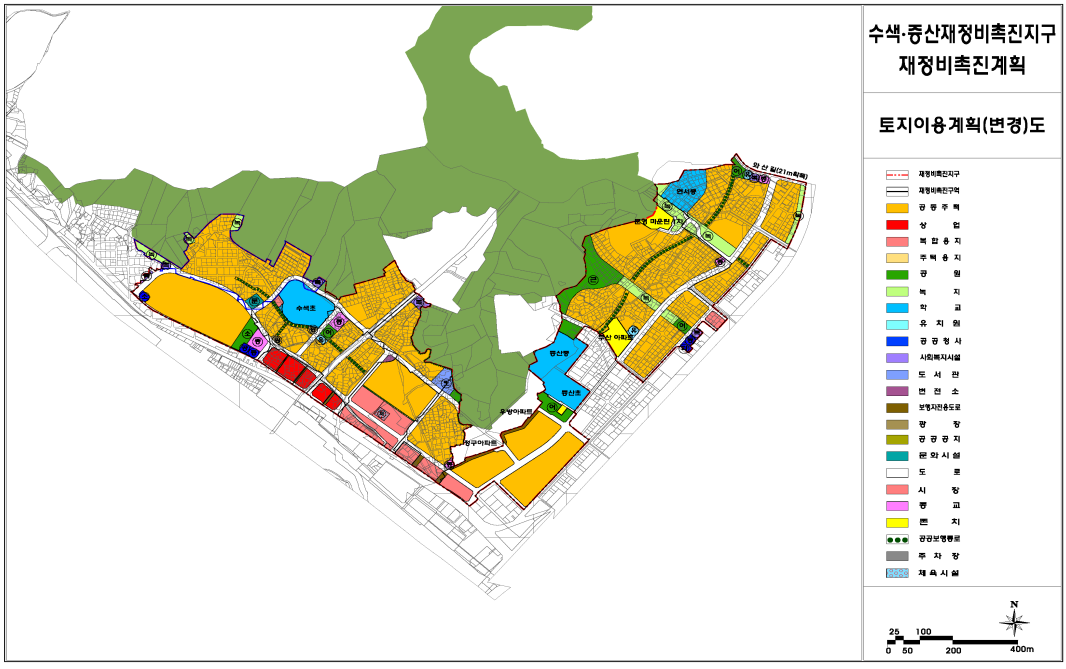
■ 수색 · 증산 재정비촉진지구 용도지역 결정도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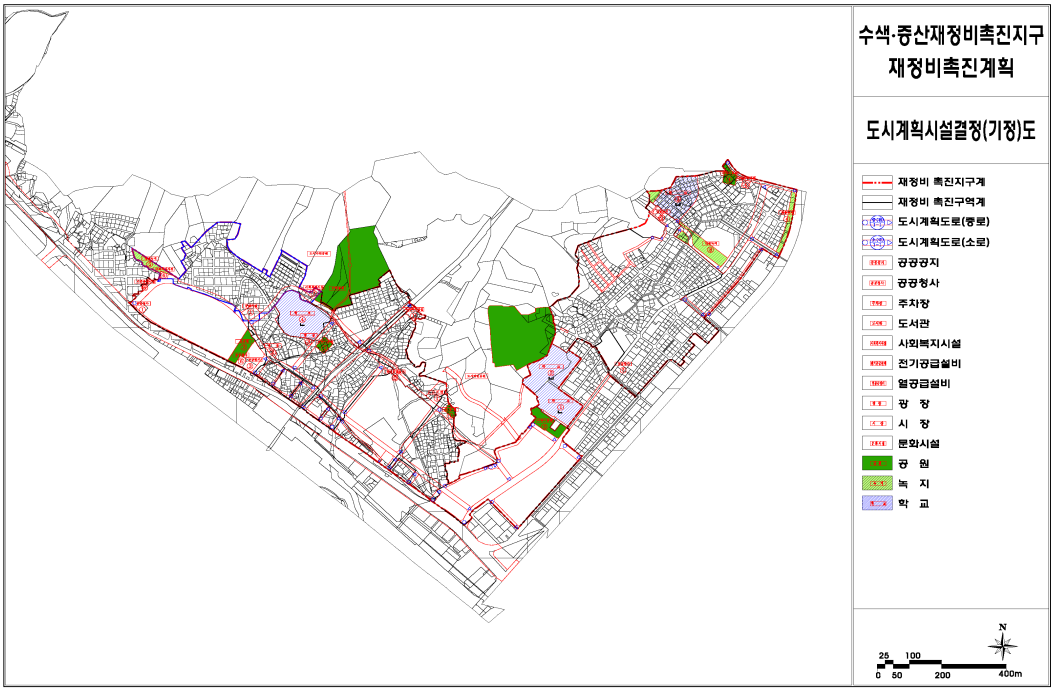
■ 수색 · 증산 재정비촉진지구 토지이용계획도 : 기정



■ 수색 · 증산재정비촉진지구 토지이용계획도 : 변경



■ 수색 · 증산재정비촉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 기정



■ 수색 · 증산재정비촉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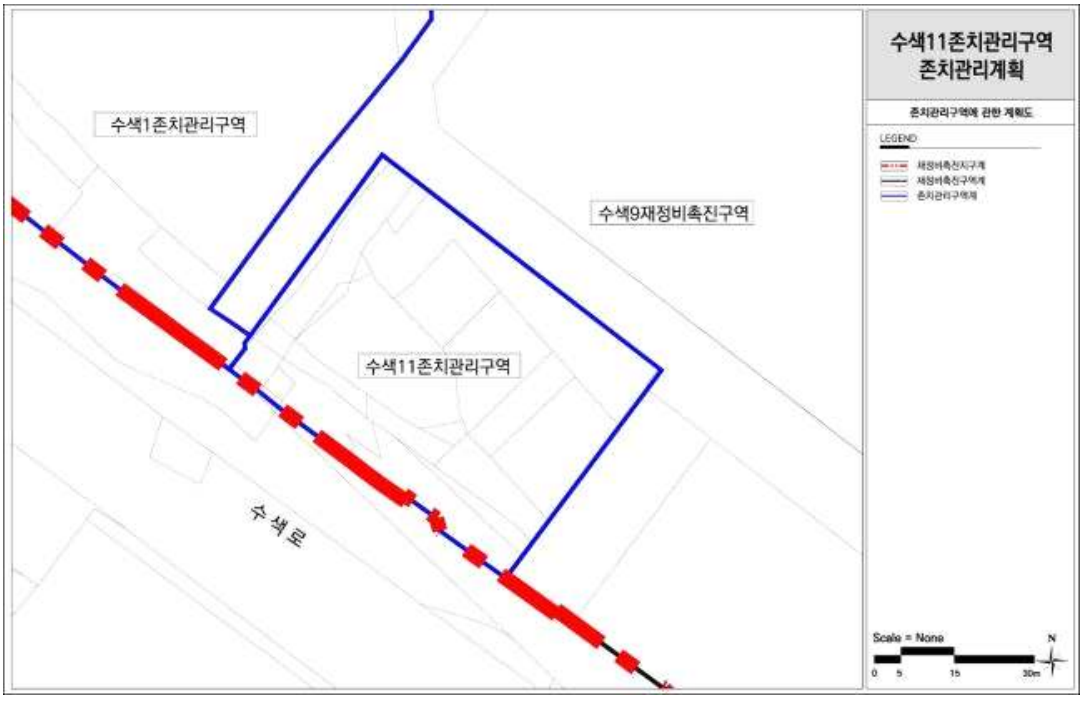
■ 수색11구역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 : 기정



■ 수색11구역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 :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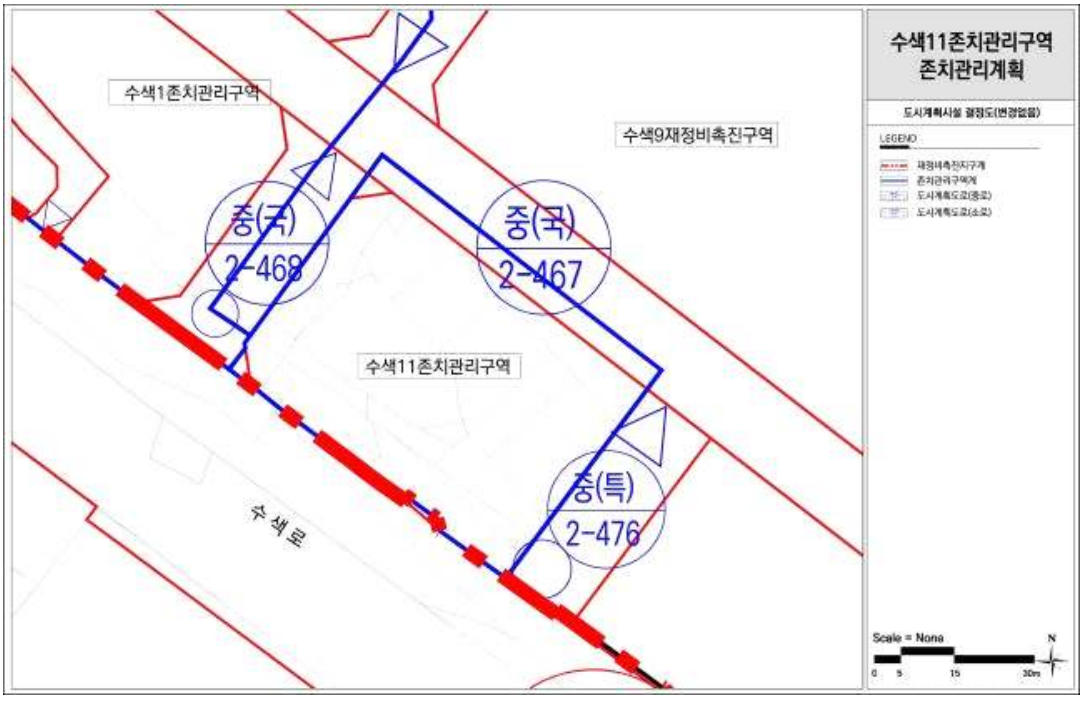
■ 수색11존치관리구역 결정도



■ 수색11존치관리구역 용도지역 결정도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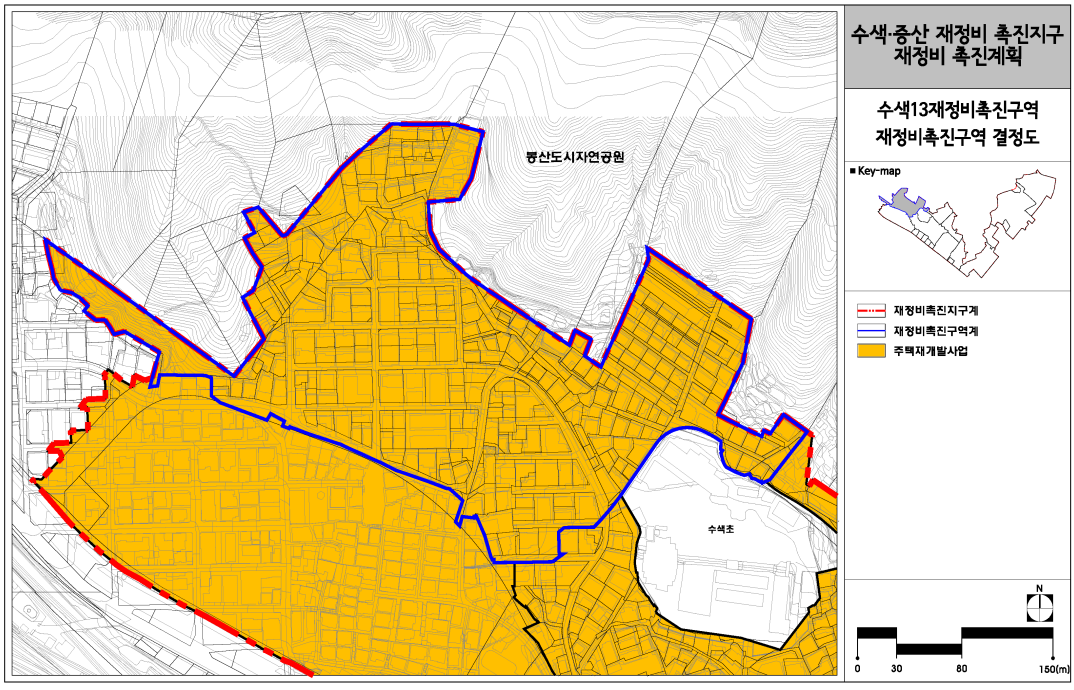
■ 수색11존치관리구역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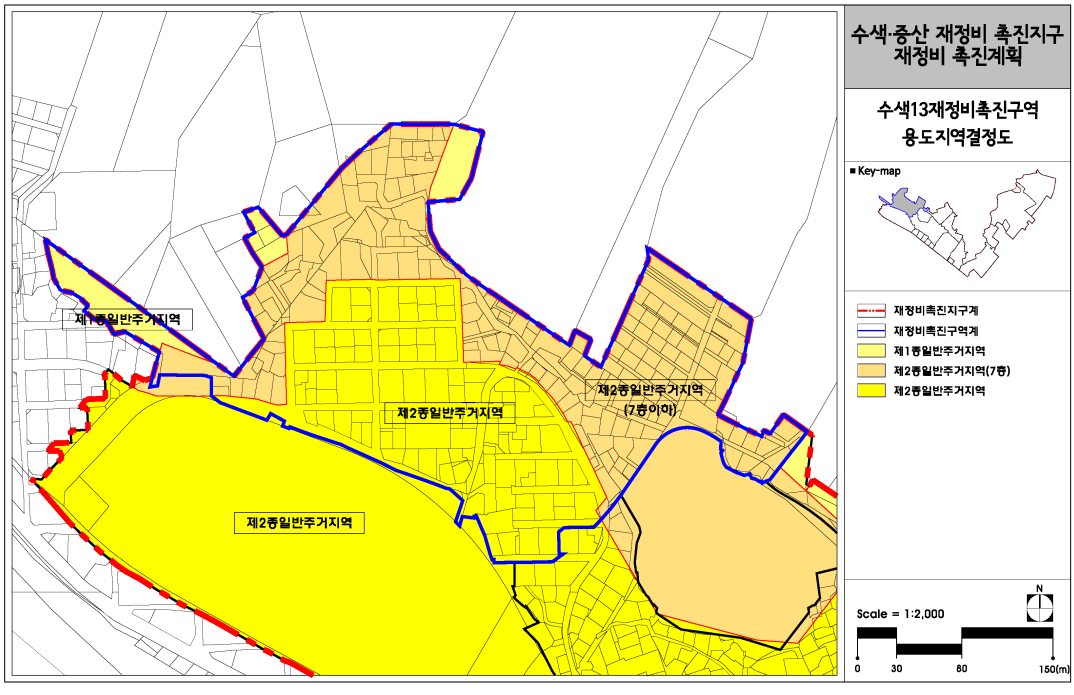
■ 수색11존치관리구역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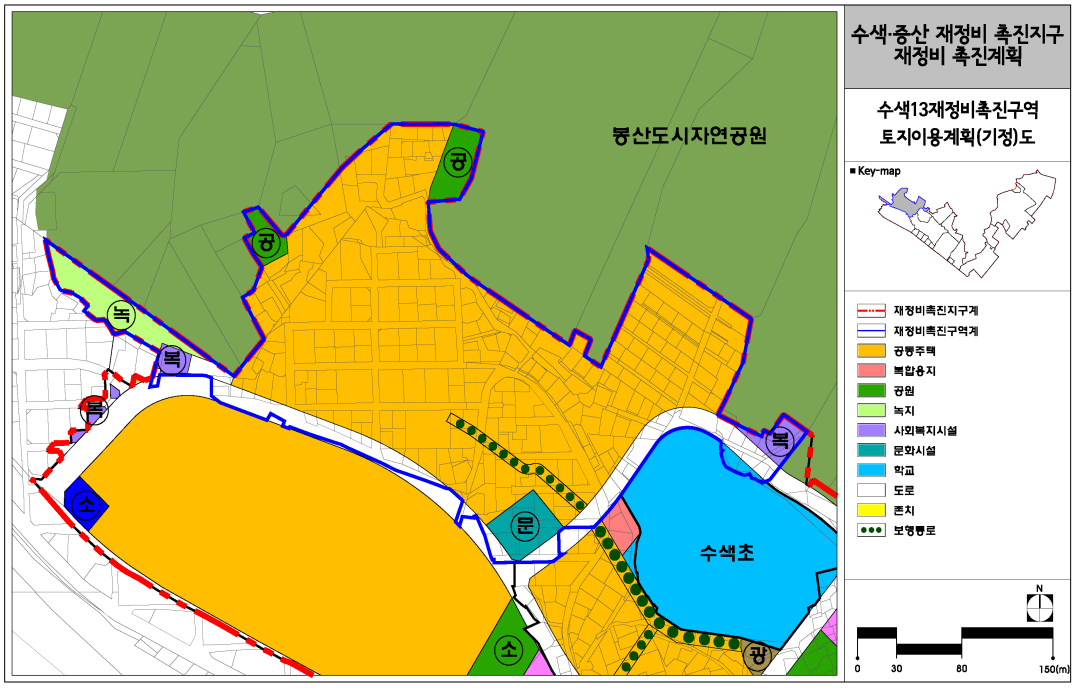
■수색13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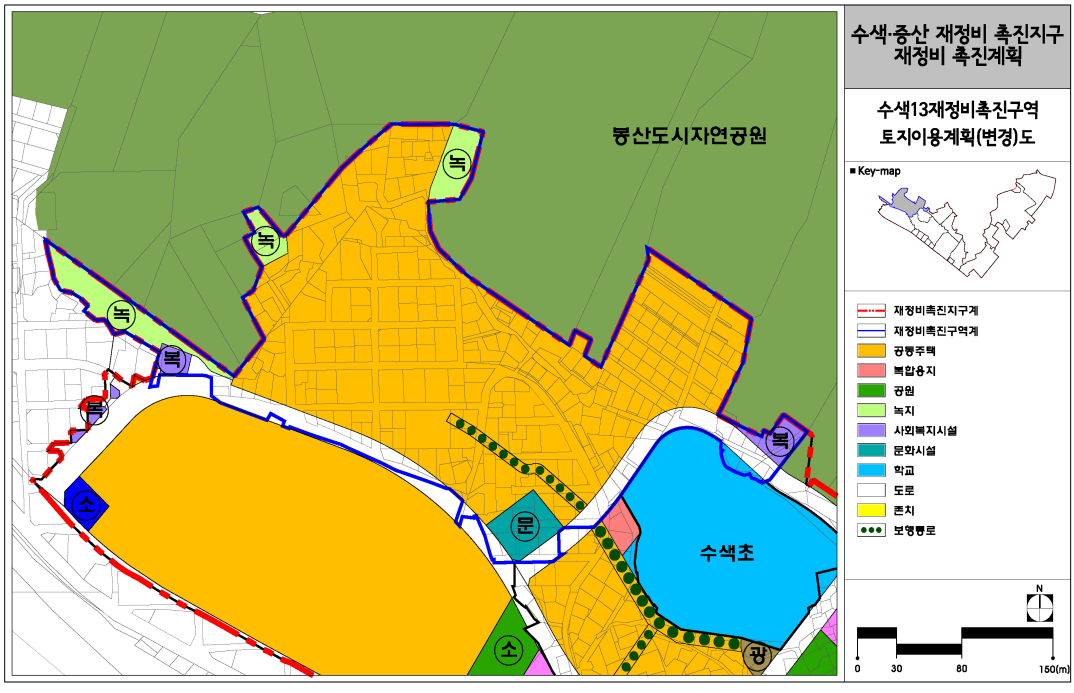
■수색13 용도지역 결정도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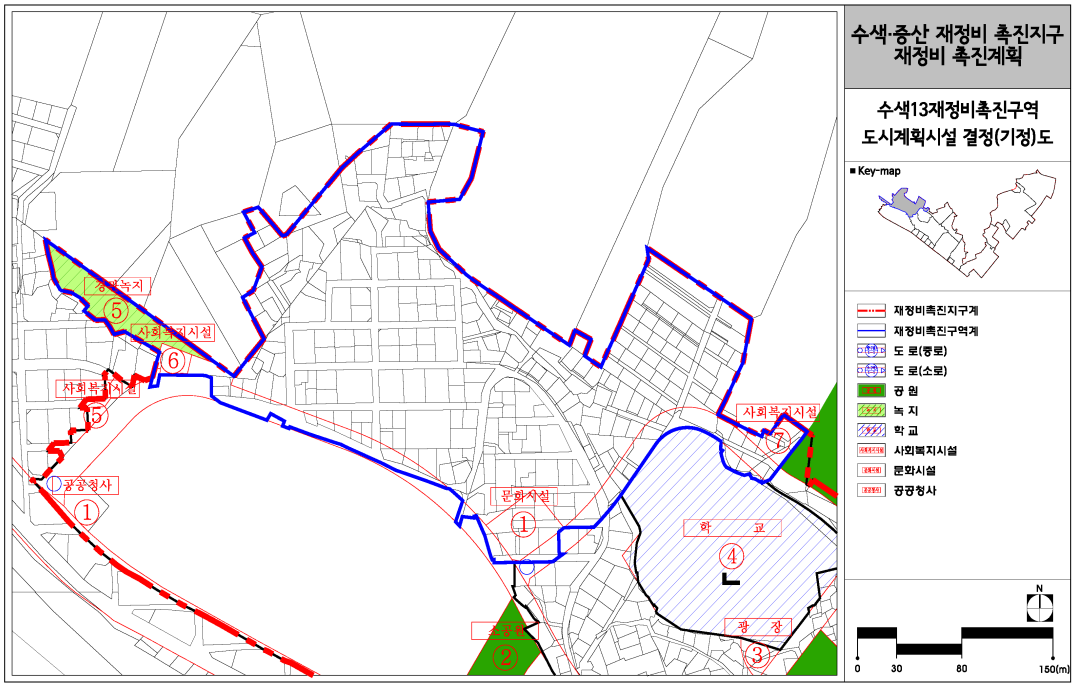
■수색13 토지이용계획도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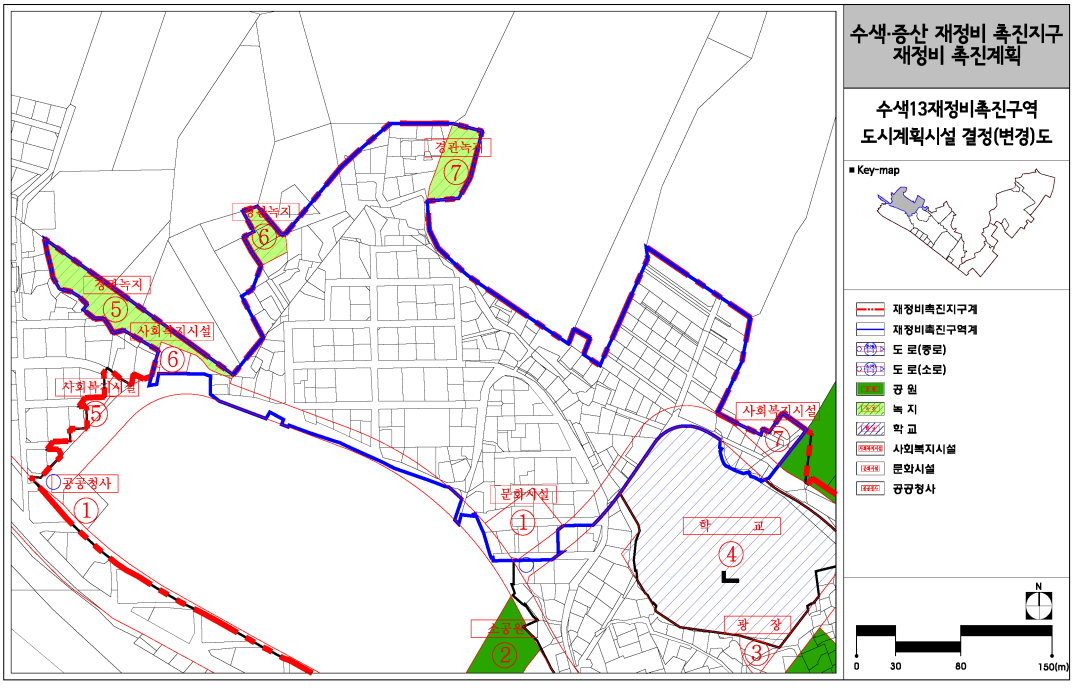
■수색13 토지이용계획도 : 변경



■수색13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 기정



■수색13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 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32호

도시철도 역명 제정 확정고시(안)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역명 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확정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도시철도 역명 제정(위례선 트램 7개역)

구 분	대상역	위 치	고시 역명
제정	101정거장	송파구 거여동 696-1	마 천 역
	102정거장	송파구 거여동 산64	북 위 례
	103정거장	송파구 거여동 산50	위 례 솔
	104정거장	송파구 거여동 산40	덕수고등학교
	105정거장	송파구 장지동 881-4	위례호수공원
	106정거장	송파구 장지동 893-2	위 례 별
	112정거장	송파구 장지동 601-3	복 정 역

붙임	위례선(트램) 노선도

□ 세부 노선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33호

24년 7차 모아타운 수시공모 대상지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 24년 제7차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공모 신청지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의2 제1항 및 제43조의4 제4항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을 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권리산정기준일 및 설정지역
   가. 대상지: ‘24년 7차 모아타운 대상지 수시공모 신청지역
   나. 위치 및 면적

연번	자치구	위 치	면 적(㎡)	권리산정기준일	비 고
1	강동구	천호동 145-11	57,536	‘24.08.12.	
2	구로구	개봉동 20	60,000	‘24.09.19.	
3	마포구	망원동 435	67,319	’ 24.09.30.	
4	마포구	망원동 432	68,691	’ 24.09.30.	
5	마포구	망원동 425	74,265	’ 24.09.30.	
6	강서구	등촌2동 574-6	68,147	‘24.09.27.	
7	강서구	화곡4동 464-15	76,150	‘24.09.27.	
8	강서구	화곡4동 812-12	64,974	‘24.09.27.	
9	강서구	화곡4동 815-1	74,957	‘24.09.27.	
10	강서구	화곡1동 422	45,718	‘24.09.27.	
11	강서구	화곡본동 98-88	3,557	‘24.09.27.	금회 고시
			53,298	’ 24.05.17.	‘24.7.18. 기 지정·고시
12	강서구	화곡본동 772	4,790	‘24.09.27.	금회 고시
			97,300	’ 24.05.17.	‘24.7.18. 기 지정·고시
13	중랑구	면목2동 137-49	48,212	‘24.09.30.	

연번	자치구	위 치	면 적(㎡)	권리산정기준일	비 고
14	동작구	사당동 300	39,713	'24.09.30.	
15	동작구	사당동 449	65,258	'24.09.30.	
16	강북구	수유동 141	14,318.3	'24.09.30.	금회 고시
			81,873	'23.11.30.	'23.11.30. 기 지정·고시
17	강북구	번동 469	99,462	'24.09.30.	
18	강북구	수유동 412-131	79,970	'24.09.30.	
19	강북구	수유동 31-10	65,961	'24.09.30.	
20	도봉구	도봉동 584-2	95,786	'24.09.25.	
21	양천구	신월2동 455-1	67,146	'24.09.25.	

○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날 아래 행위는 현금청산 대상임
(단, 권리산정기준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득했을 경우 분양 대상으로 인정함)

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 아울러,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였을 경우라도 개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관련 법률과 서울시 조례 규정에 충족되어야 분양대상이 될 수 있음

2. 지정 사유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투기목적으로 행해지는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분양사기 등 방지를 위하여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3.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의2 제1항 및 제43조의4 제4항 규정에 따름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하되,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 관리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되지 않거나,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4. 관계도면 : 붙임 참조

5. 안내사항

○ 본 모아타운 대상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 02-2133-8232~7)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 지역 내 모아주택/모아타운 관련 사업추진 등에 대한 문의 사항은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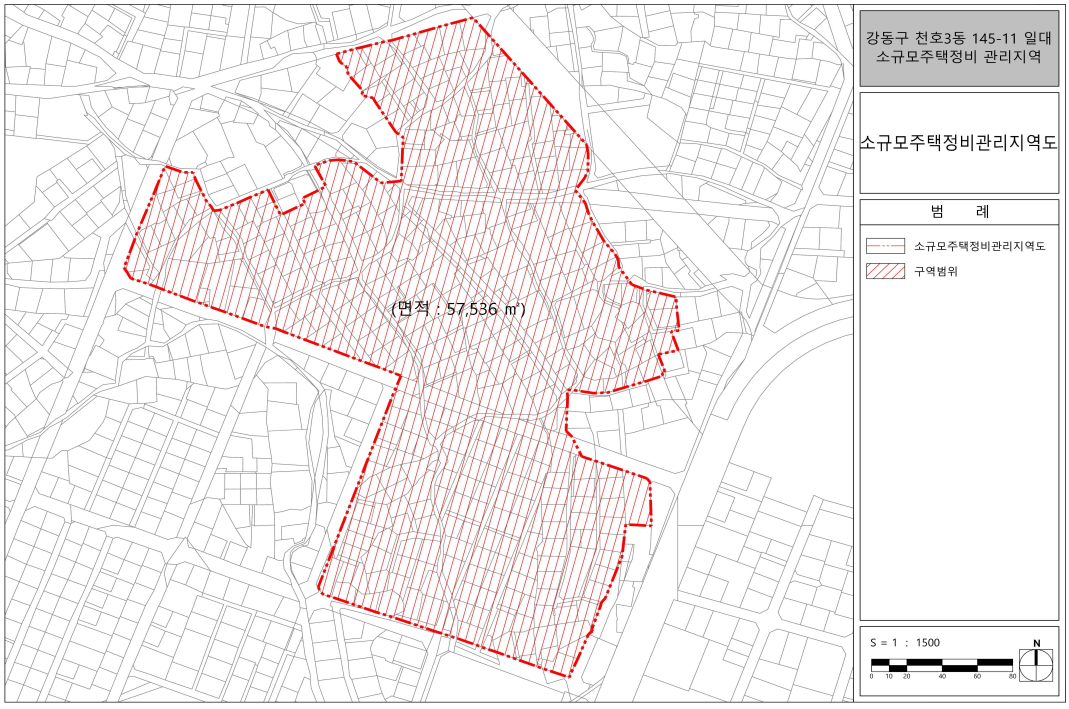
※ 본 고시는 향후 추진될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추진 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는 것이며 소유권 매매, 건축허가 행위 등을 제한하는 사항이 아님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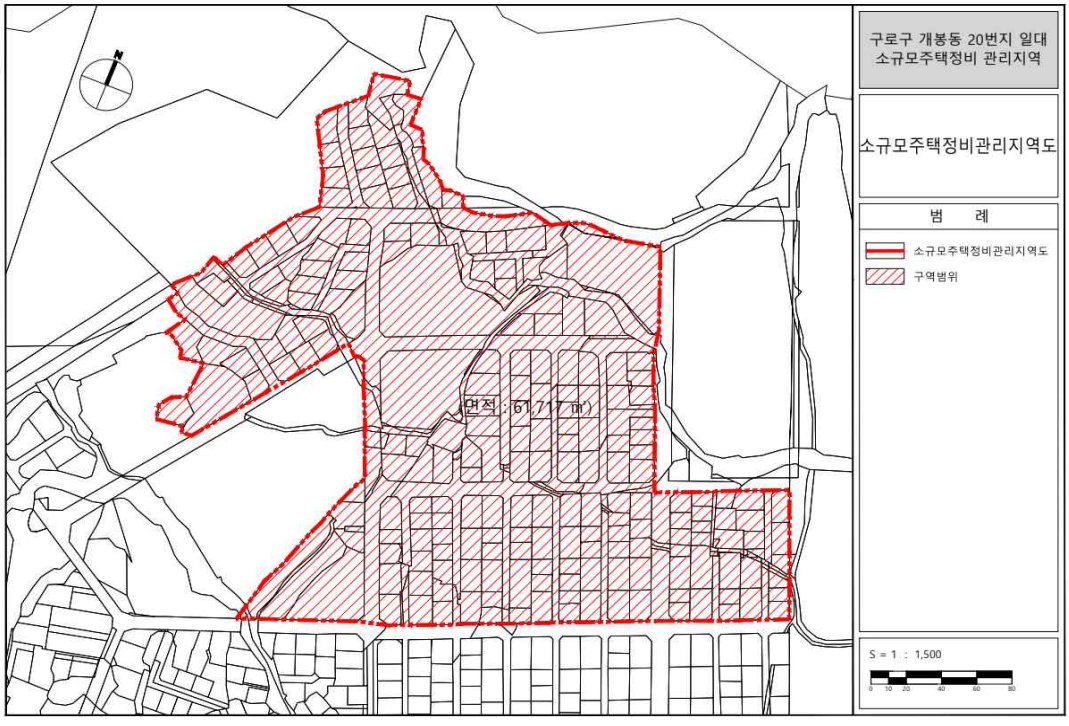
※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및 지정고시 시, 일부 면적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관계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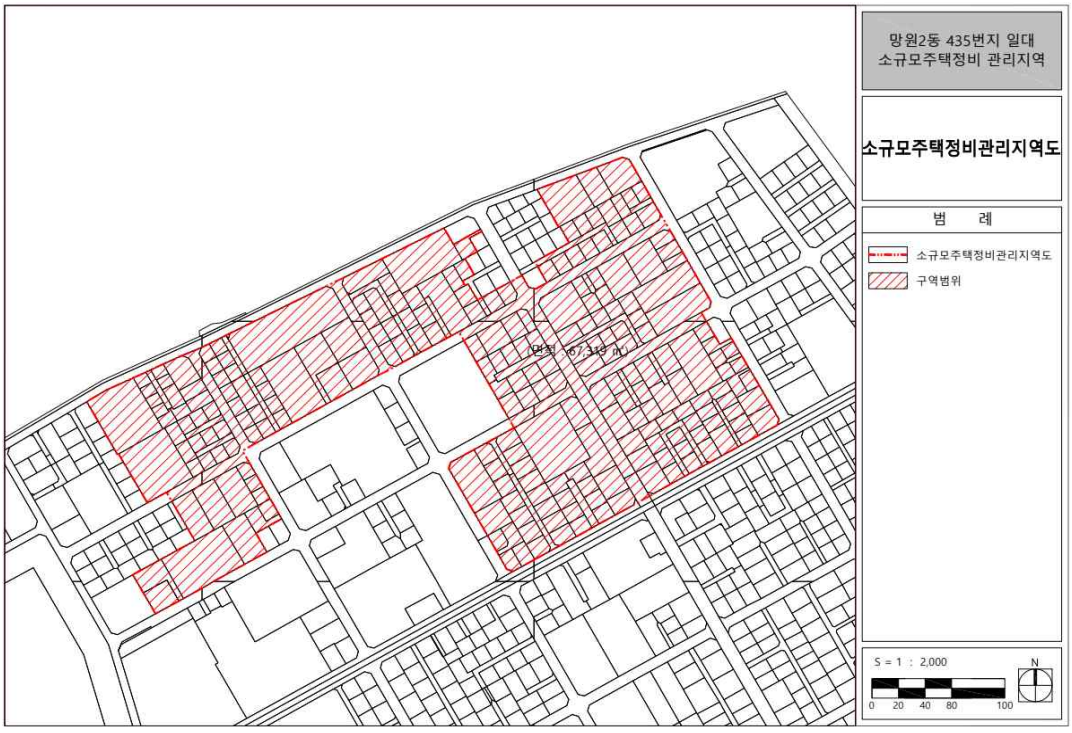
○ 강동구 천호동 145-11 일원



○ 구로구 개봉동 20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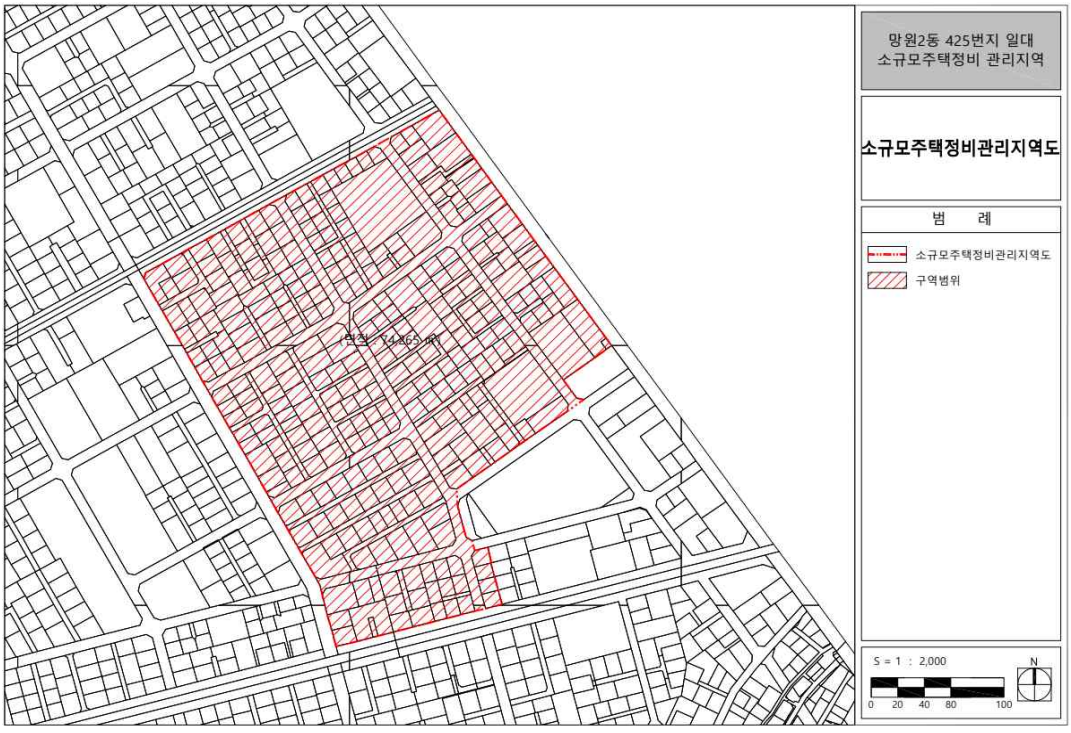
○ 마포구 망원동 435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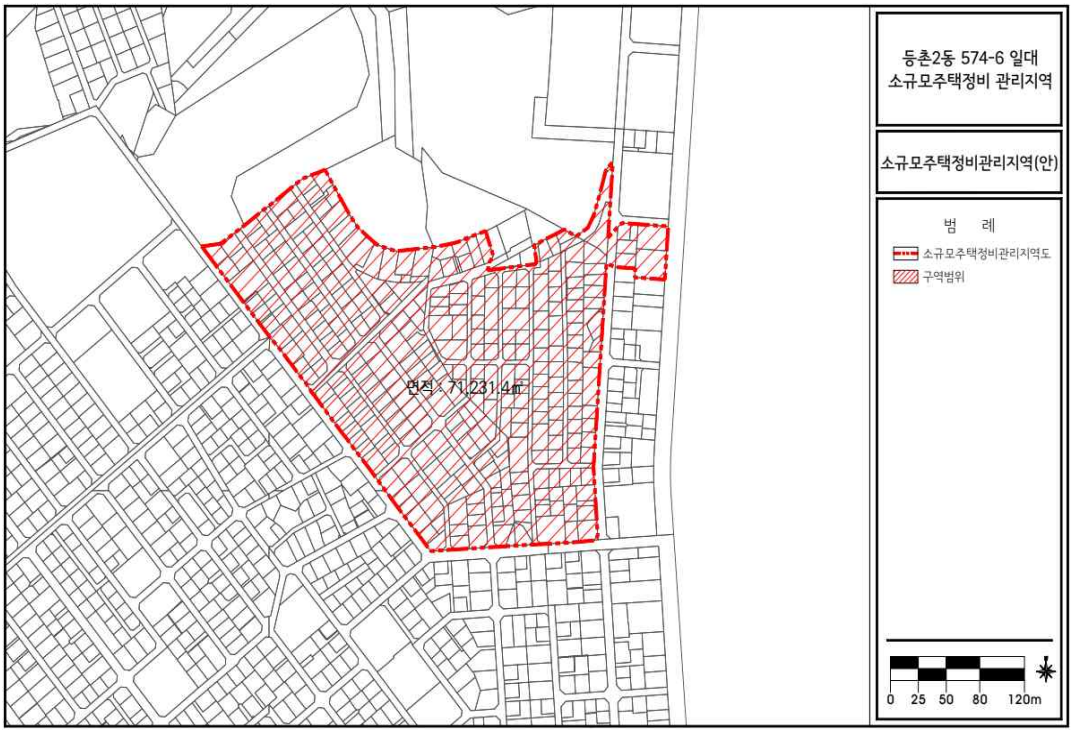
○ 마포구 망원동 432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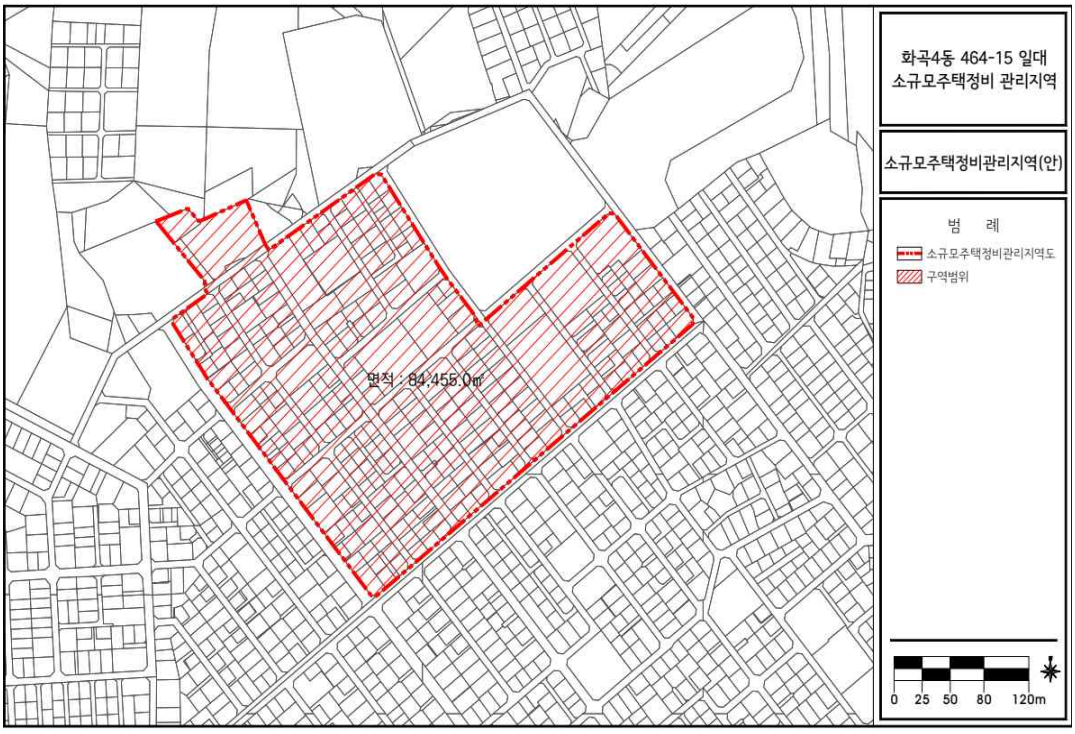
○ 마포구 망원동 425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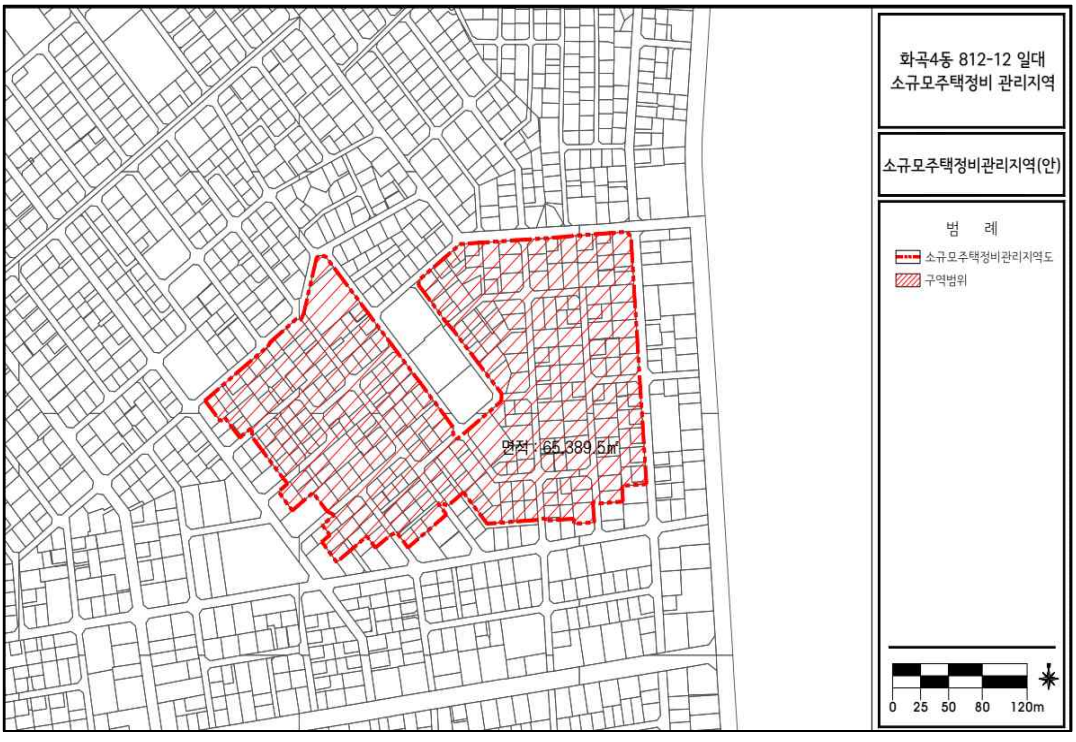
○ 강서구 등촌2동 574-6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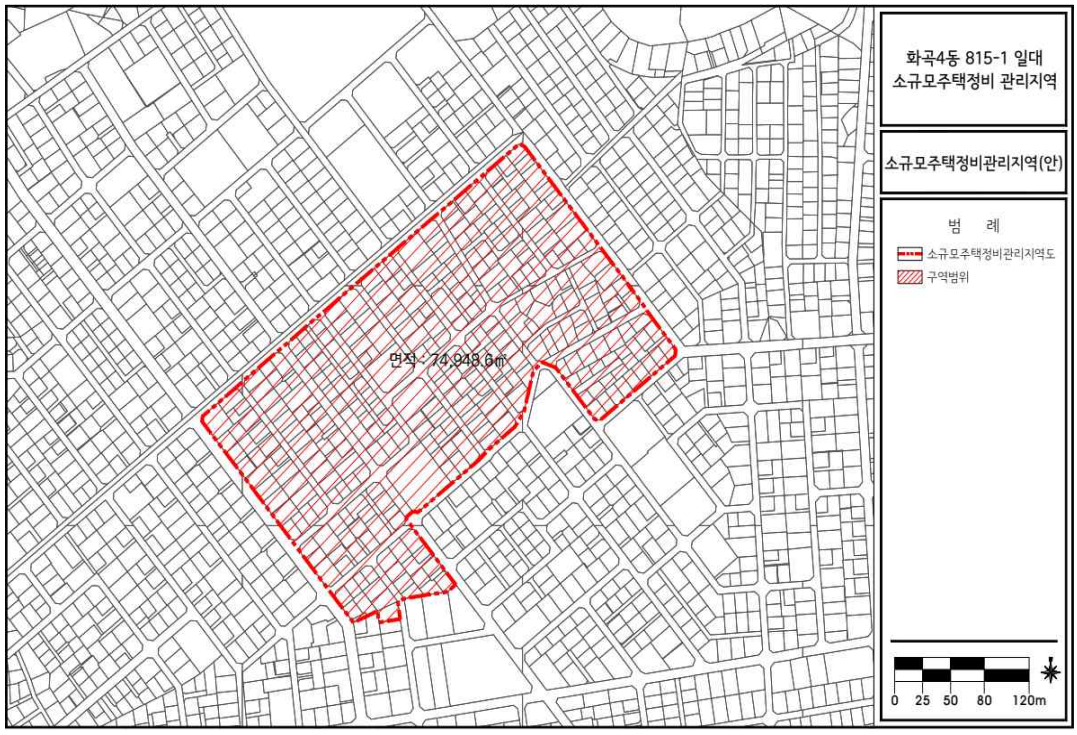
○ 강서구 화곡4동 464-15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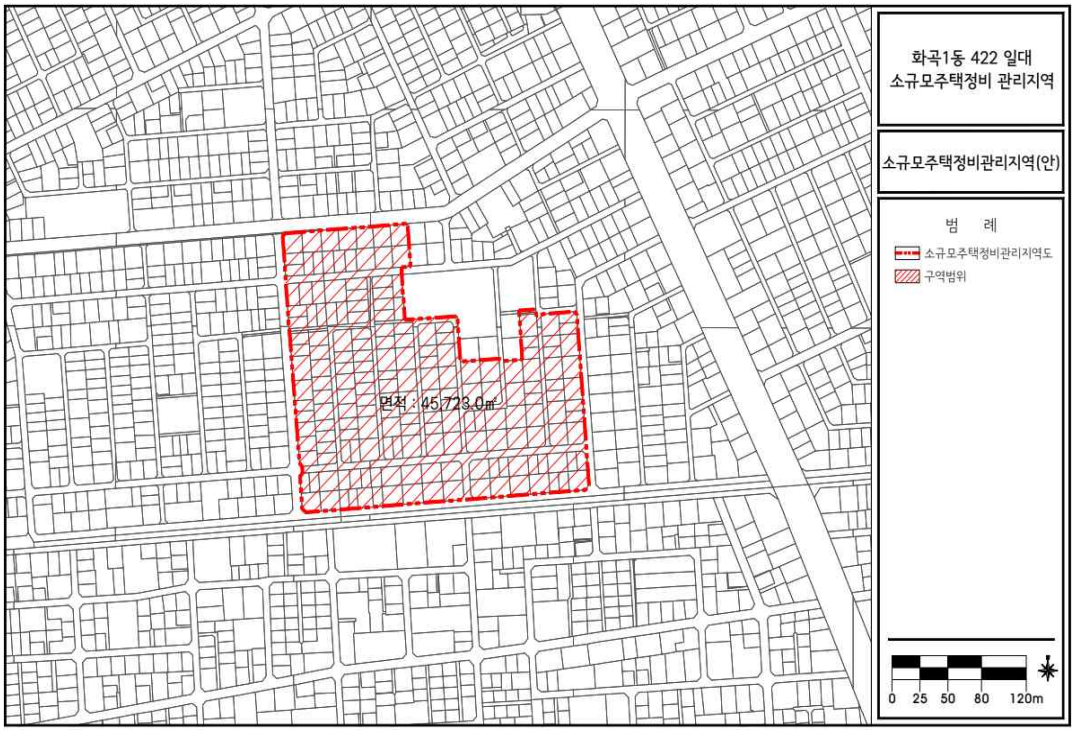
○ 강서구 화곡4동 812-12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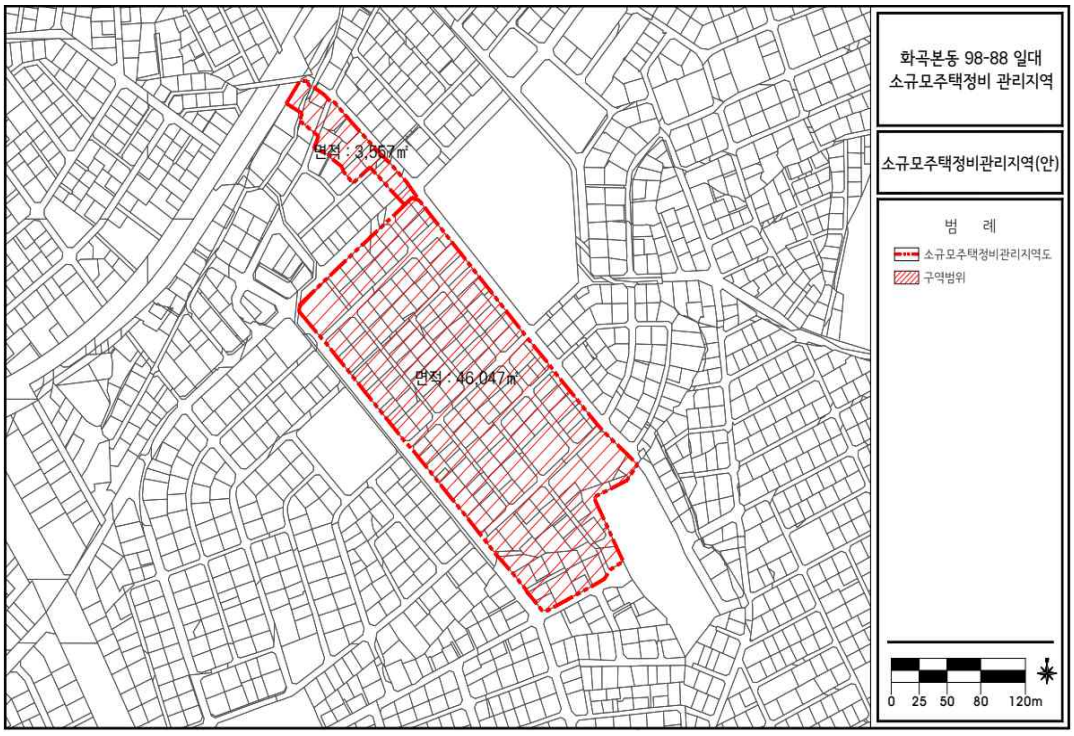
○ 강서구 화곡4동 815-1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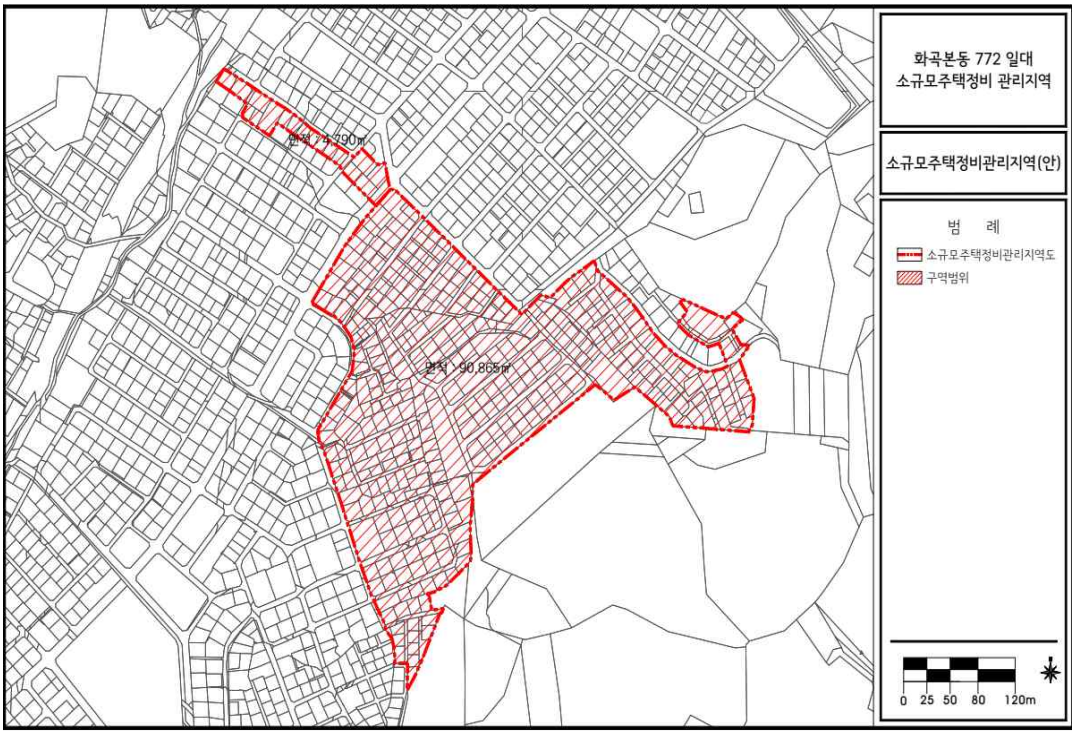
○ 강서구 화곡1동 422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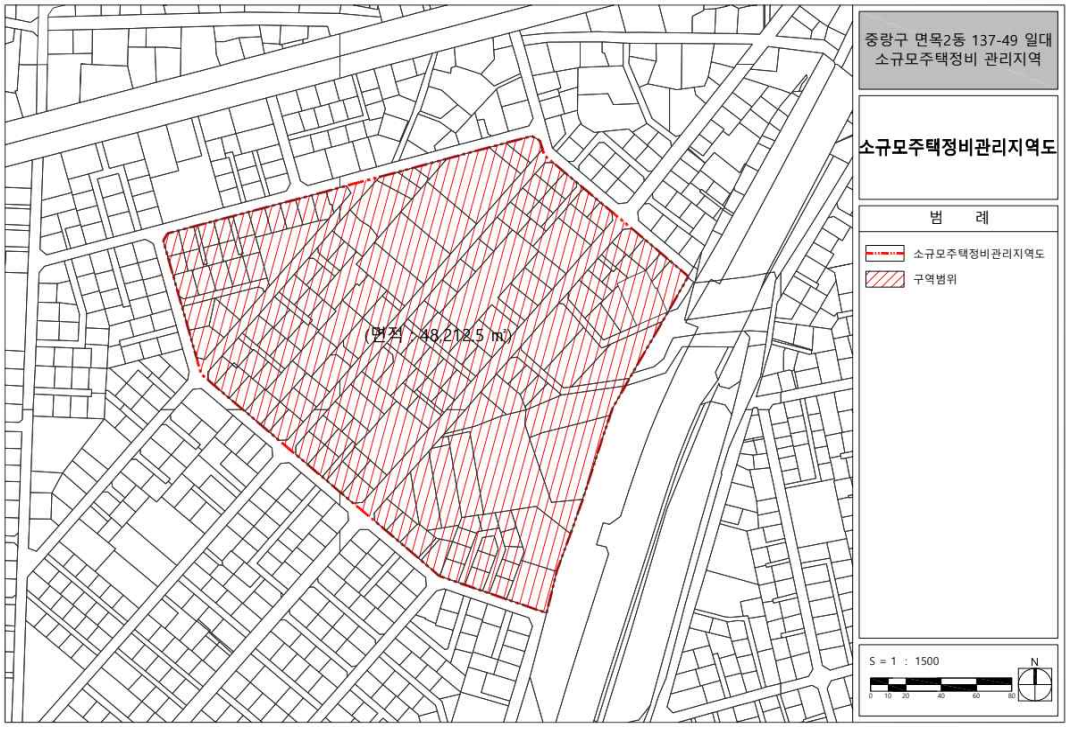
○ 강서구 화곡본동 98-88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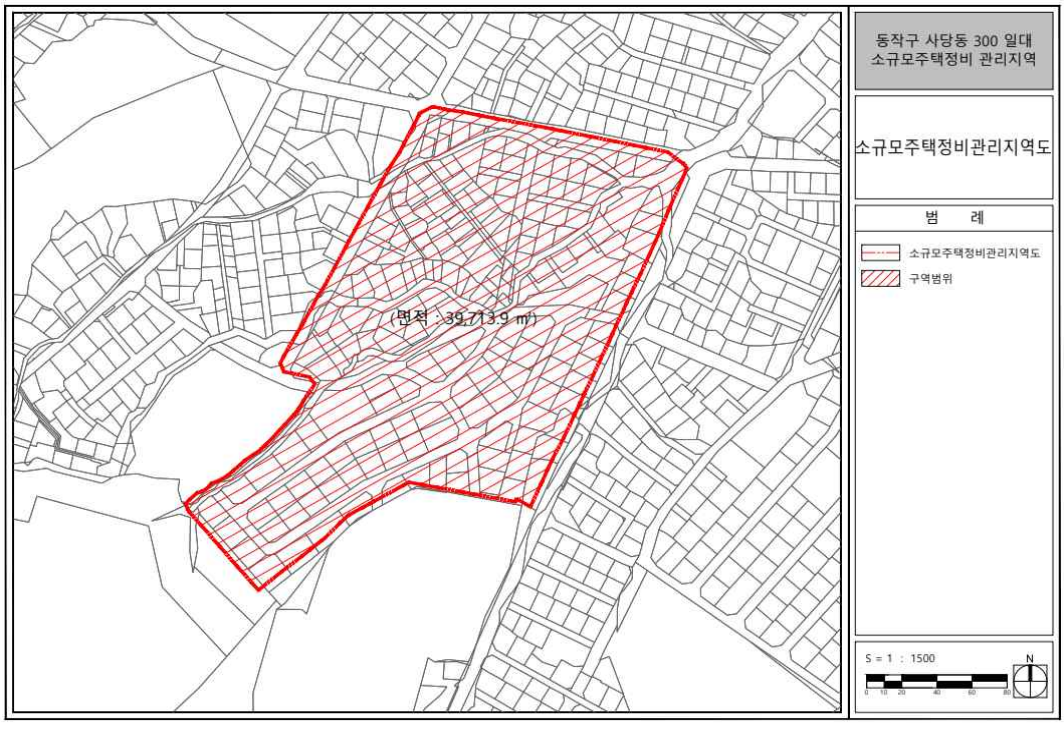
○ 강서구 화곡본동 772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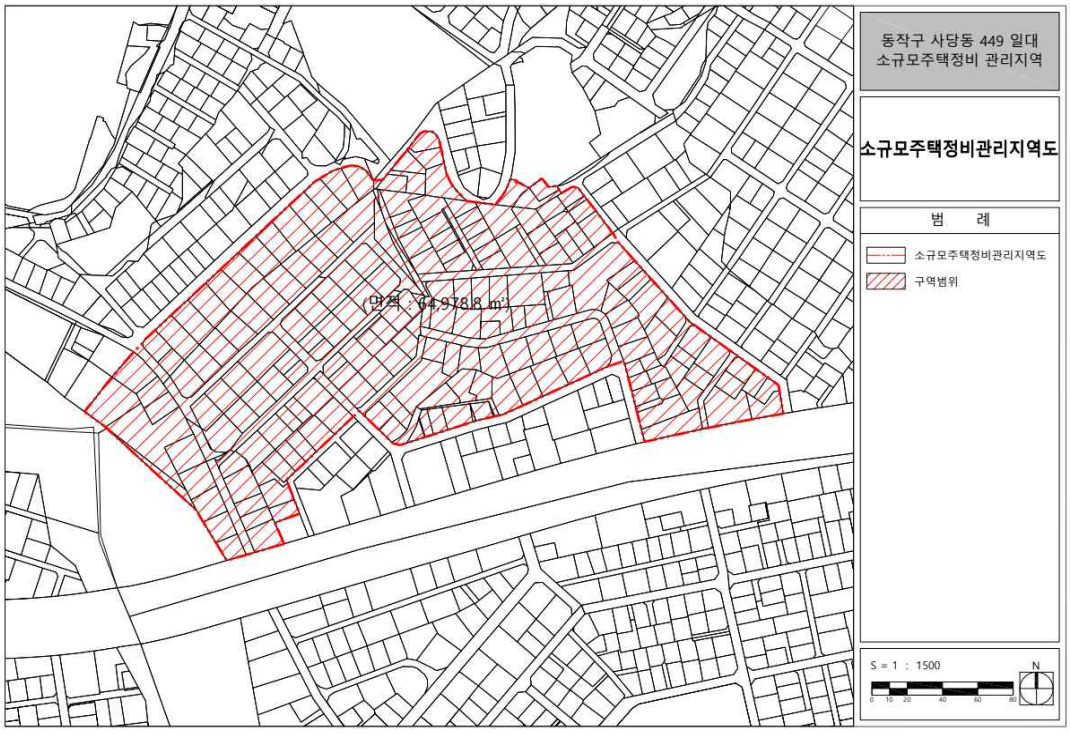
○ 중랑구 면목2동 137-49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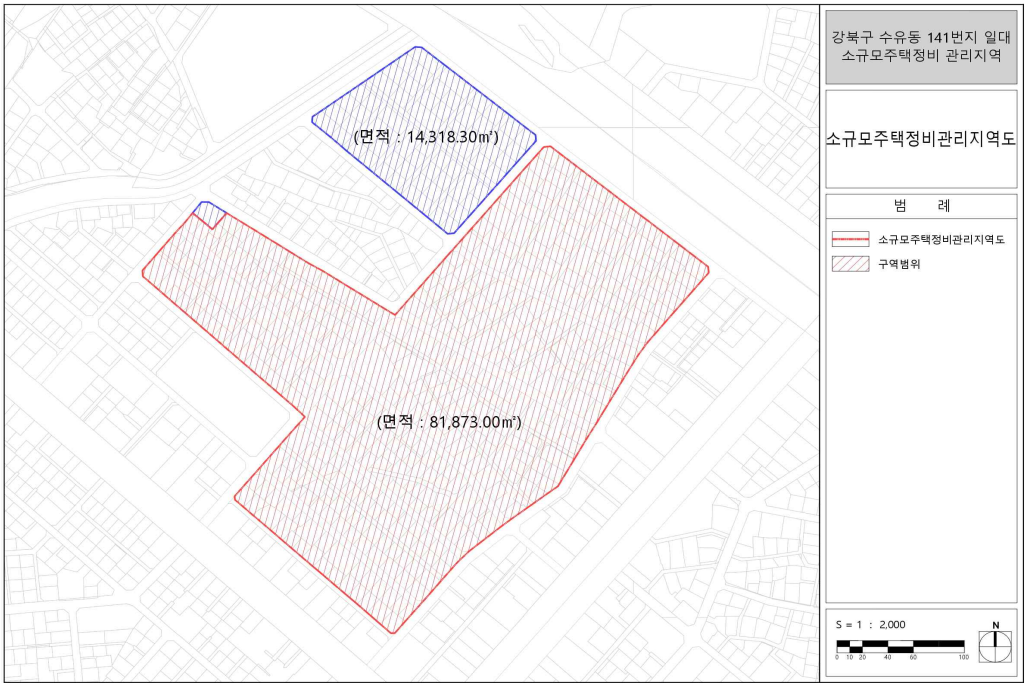
○ 동작구 사당동 300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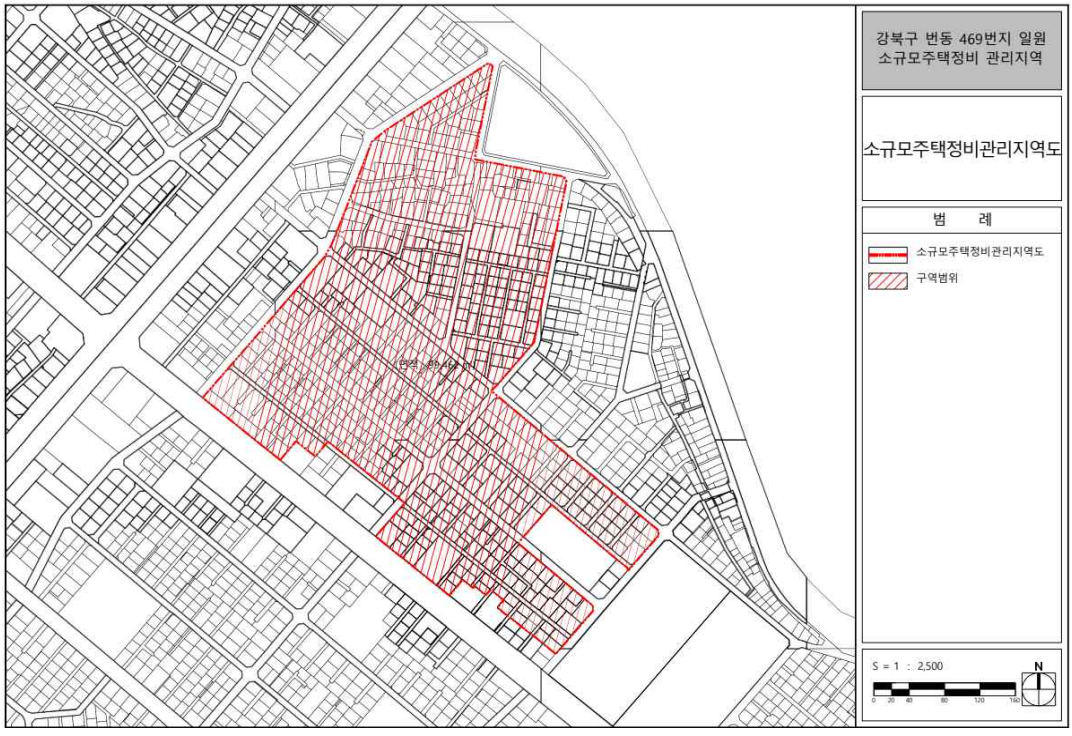
○ 동작구 사당동 449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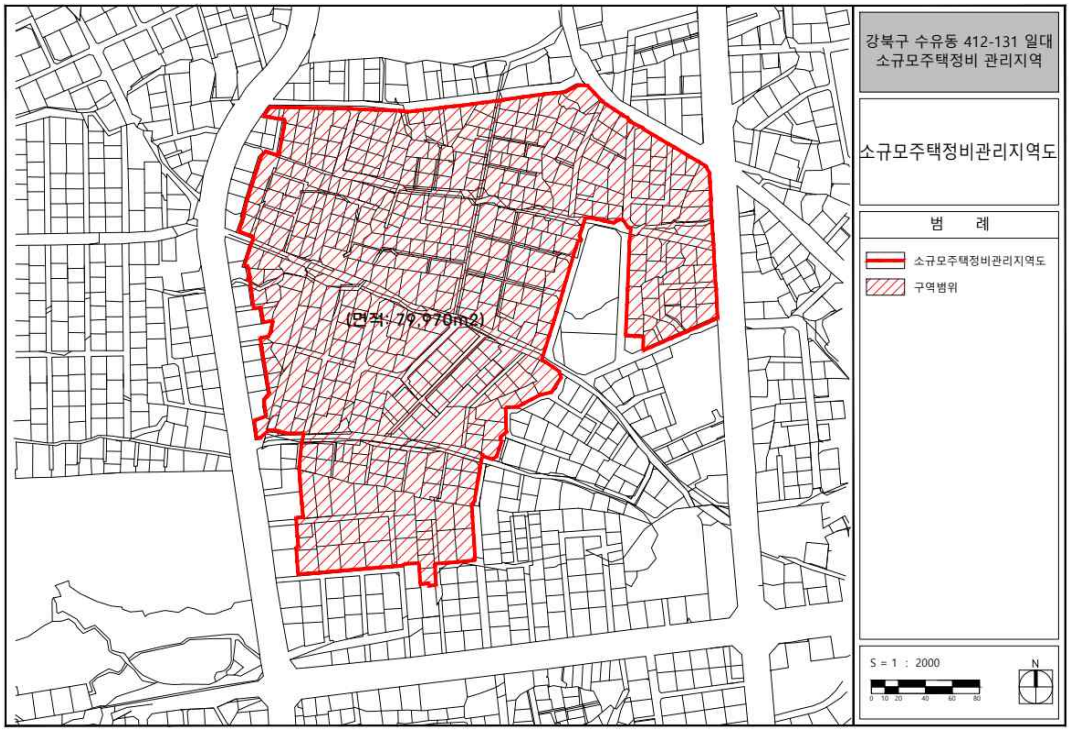
○ 강북구 수유동 141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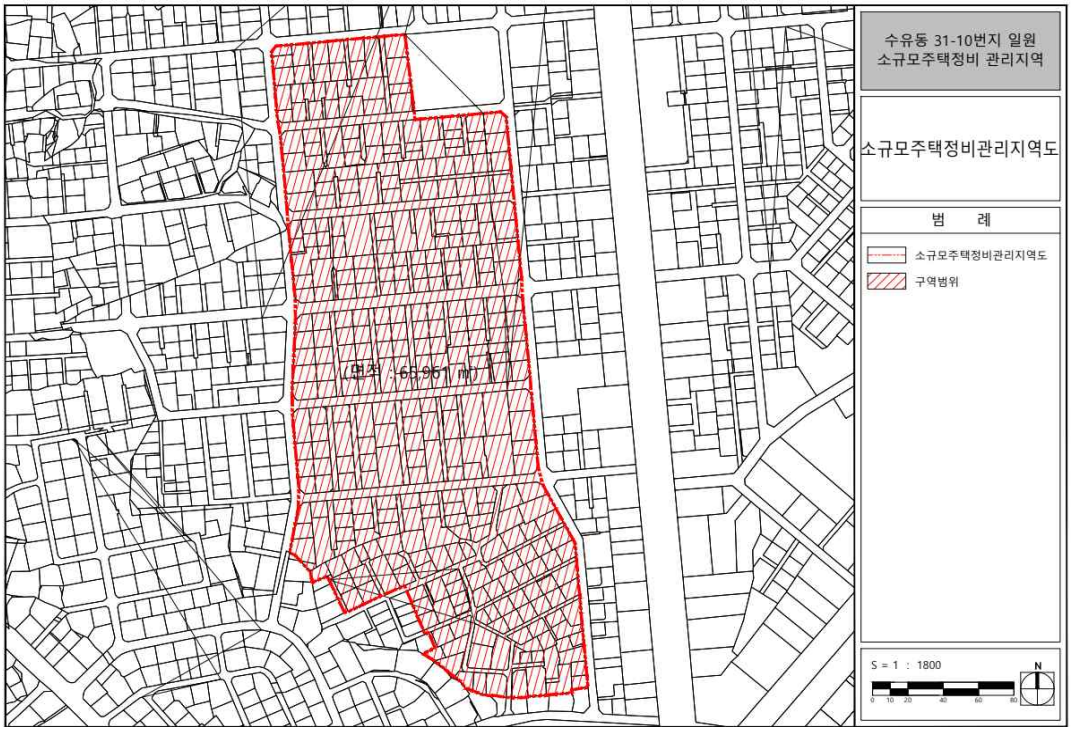
○ 강북구 번동 469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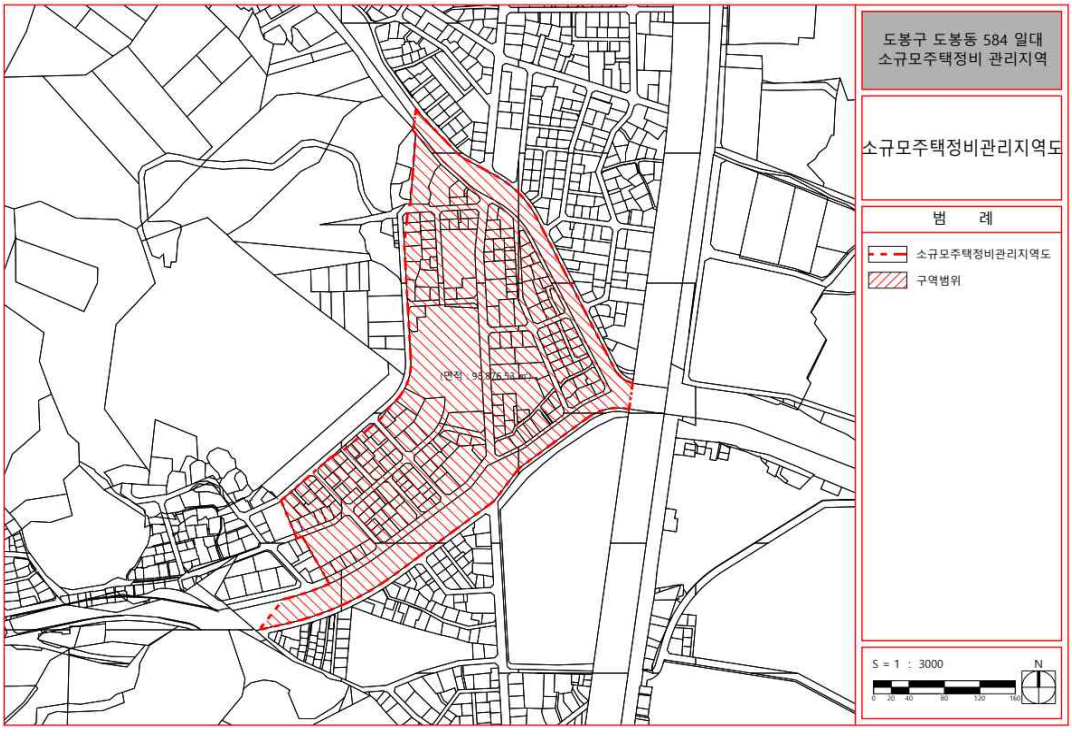
○ 강북구 수유동 412-131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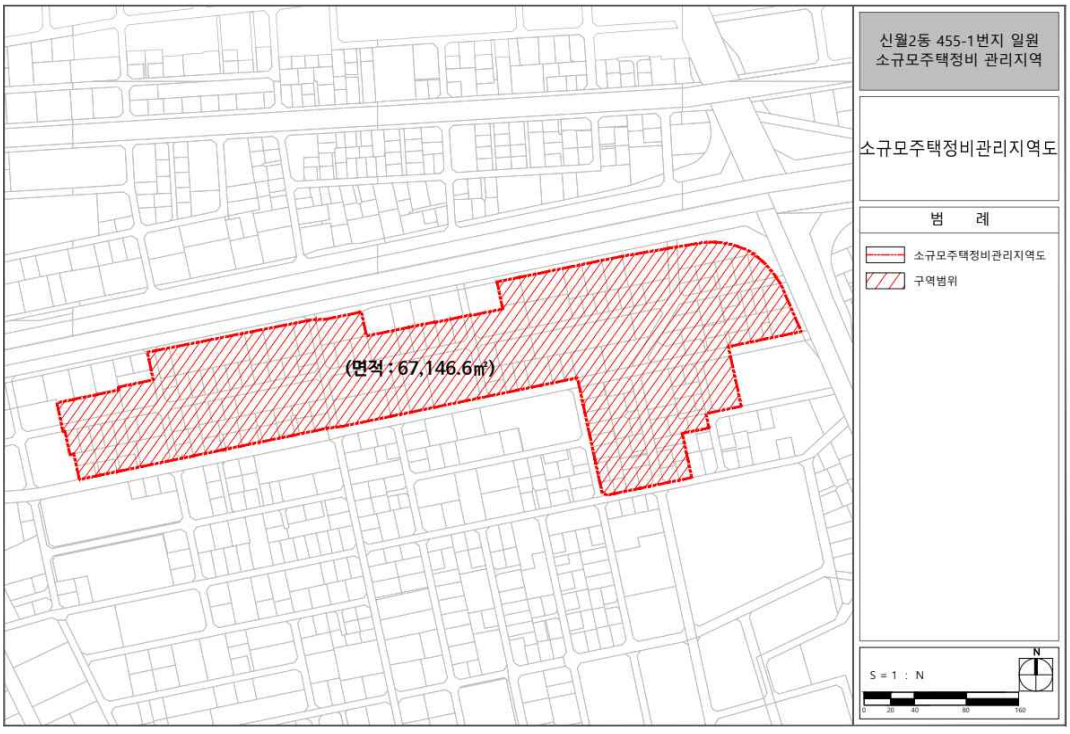
○ 강북구 수유동 31-10 일원



○ 도봉구 도봉동 584-2 일원



○ 양천구 신월2동 455-1 일원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35호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고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3항 규정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해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하고자 고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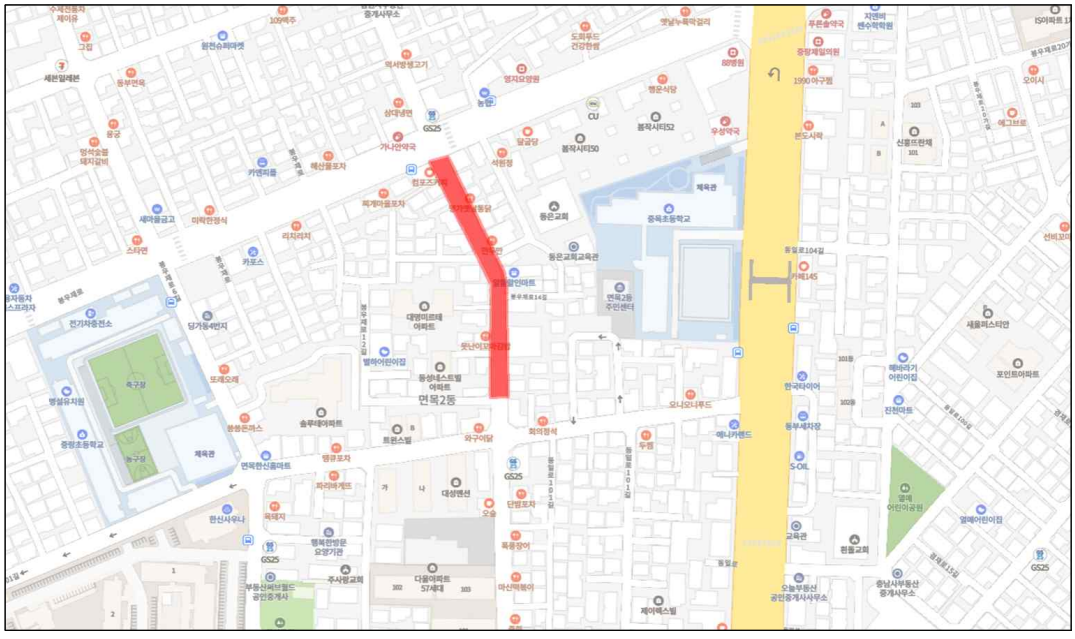
2024년 11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정대상 : 보행자우선도로 1개소

연번	자치구	도로명	폭원(m)	연장(m)
1	중랑구	봉우재로14길	10	165

2. 위치도

1) 봉우재로14길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37호

도시관리계획(등촌동 365-27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365-27번지 일대에 대하여 2024년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4.07.04.)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등촌동 365-27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도시관리계획(등촌동 365-27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	등촌동 365-27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강서구 등촌동 365-27번지 일원	-	증) 45,674.7	45,674.7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신설	강서구 등촌동 365-27번지 일원	45,674.7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16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조항에 의거, 단독주택 등 저층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주택단지 조성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주거지역	소 계	45,674.7	-	45,674.7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6,041.0	감) 4,793.6	1,247.4	2.7
	제2종일반주거지역	39,633.7	감) 35,067.4	4,566.3	10.0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39,861.0	39,861.0	87.3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변경	강서구 등촌동 365-27번지 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4,793.6	- 주택건설사업 시행 지역에 대해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35,067.4	

나. 용도지구

■ 시설보호지구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	시설보호지구	공항중요시설물 보호지구	공항로 일대	57,931,000 (45,674.7)	서고 제120호 ('77.4.22)	-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편입면적임

■ 경관지구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기정	-	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강서구 등촌동 366일원	123,316 (993.7)	-	-	건고235호 (77.12.3)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편입면적임

2.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	4~6	-	110	등촌동 365-105	등촌동 364-24	일반 도로	-	서고 제28호 (1978.08.25.)	-
폐지	소로	3	-	4~6	-	110	등촌동 365-105	등촌동 364-24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4	-	4	-	40	등촌동 364-134	등촌동 365-124	일반 도로	-	서고 제28호 (1978.08.25.)	-
폐지	소로	4	-	4	-	40	등촌동 364-134	등촌동 365-124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3	1	12	국지 도로	490	등촌동 510-13	등촌동 366-157	일반 도로	-	건고시-8호 (1968.1.23)	-
기정	중로	3	나	12~ 14	국지 도로	390 (51)	등촌동 365-115	화곡동 1129-4	일반 도로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변경	중로	3	1	12 ~20	국지도로	952 (160)	등촌동 510-13	화곡동 1129-4	일반 도로	-		
신설	중로	3	a	12	국지도로	50 (50)	등촌동 529-39	등촌동 529-16	일반 도로	-	-	-
신설	소로	2	1	8~10	국지도로	178 (178)	등촌동 614-6	등촌동 365-76	일반 도로	-	-	-
신설	소로	2	a	9	국지도로	145 (145)	등촌동 614-6	등촌동 614-7	일반 도로	-	-	-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연장임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3-	-	폐지	- 공동주택건립으로 인한 도로기능 상실
소로 4-	-	폐지	- 공동주택건립으로 인한 도로기능 상실
중로 3-1, 중로 3-나	중로 3-1	폭원 확장 및 연장 확대 (B=12m→12~20m, L=880m→952m)	-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를 위해 단절된 도로의 선형 연결 및 폭원 확장
-	중로 3-a	신설 (B=12m, L=50m)	- 원활한 교통환경을 위한 도로 신설
-	소로 2-1	신설 (B=8~10m, L=178m)	- 원활한 교통환경을 위한 도로 신설
-	소로 2-a	신설 (B=9m, L=145m)	- 원활한 교통환경을 위한 도로 신설

3. 공공기여계획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순부담율(%)	비 고
도 로	2,048.9	4.5	4개소 확폭 및 신규결정 : 4,820.0㎡ ※기존국공유지 제외 : 2,450.0㎡(강서구) ※중로3-a 순부담 면적 제외 : 321.1㎡
임대주택	2,027.2	4.4	부속토지 및 건축물 환산면적 포함 (41세대)
합 계	4,076.1	8.9	-

※ 건축설계 및 측량성과에 따라 면적 및 순부담율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설치면적에 대하여 대지 환산면적을 적용하여 기부채납하며, 건축물은 건축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준용함

3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1.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	40,854.7	①	등촌동 365-27번지 일원	40,854.7	공동주택 등

2. 건축물 용도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전 층	비 고
허용용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부대복리시설 포함)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외의 용도	-

3. 건축물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폐율 결정조서

구 분	건 폐 율	비 고
제1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제2종일반주거지역		

나. 용적률 결정조서

구 분	용 적 률			비 고
	기 준	허 용	상 한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 이하	150% 이하	200% 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185% 이하	196% 이하	243% 이하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및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발사업형 '6) 용적률계획' ①항, ②항 적용

■ 용적률 적용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 및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발사업형 '6) 용적률계획' ①항, ②항 적용

구 분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종→2종	2종7층→2종	가중평균 적용
획지면적	993.7㎡	4,793.6㎡	35,067.4㎡	39,861.0㎡
기준용적률	150%	150%	190%	185%
허용용적률	150%	170%	200%	196%
상한용적률	200%	200%	250%	243%

구 분			내 용
개발가능 용적률 산정(안)	제1종일반 주거지역		= 허용용적률+[허용용적률×{(1.3α토지×가중치)+1.0α건축물}] = 150%+[150%×(0×1)+0] = 150% 이하
	제2종일반 주거지역		= 허용용적률+[허용용적률×{(1.3α토지×가중치)+1.0α건축물}] = 196%+[196%×{(1.3×0.0923×1.0051)+(1.0×0.0139)}] = 222.3% 이하
		공공시설등 제공면적	• 임대주택 대지지분 : 1,493.0㎡ • 임대주택 환산부지 : 534.2㎡ (단위세대별 임대주택 연면적×공사비÷부지가액) - 공사비 : 「국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에서 부가가치세 면제 후 적용(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4호 (2023.2.1.) - 부지가액 : 인근 제2종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 단지(염창동 272-11번지) 개별공시지가(2022.4월 공시 기준)의 2배 적용) • 기반시설(도로) 순부담 면적 : 2,048.9㎡ (도로 계획면적 4,196.0㎡-신설 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988.9㎡-택지 내 용도폐지 되는 국·공유지 1,158.2㎡, 순부담 면적 산정 시 중로3-a 제외)

구 분			내 용
개발가능 용적률 산정(안) (계속)		α토지	= (도로 4,196.0㎡+임대주택 대지지분 1,493.0㎡-신설 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988.9㎡-택지 내 용도폐지 되는 국·공유지 1,158.2㎡) ÷ (대지면적(2종) 39,861.0㎡-임대주택 대지지분 1,493.0㎡) = 0.0923
		α건축물	= 임대주택 건축물 환산면적 534.2㎡÷(대지면적(2종) 39,861.0㎡-임대주택 대지지분 1,493.0㎡) = 0.0139
		가중치	= 공공시설(도로) 부지 용적률÷사업부지 용적률 = {(1종 253.7㎡×150%+2종7층 4,566.3㎡×200%)÷4,820.0}÷196% = 197%÷196% = 1.0051

다. 높이 결정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획 지①	최고높이 60m 이하(최고 21층 이하)	-
저층배치구간1)	8층 이하	결정도 참조

주1) 저층배치구간으로 지정된 부분에서는 8층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단, 주거동의 수평투영면적이 저층배치구간 내 50% 이상 포함 시에 한한다.

4.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가. 배치·형태·색채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배 치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물 주방향은 채광, 통풍 등을 고려하여 배치	-
형 태	• 건축물 외벽면의 외장, 재료, 색채에 있어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도록 권장	-
색 채	•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 지역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

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건축한계선	• 공원 및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6m • 도로변 : 3m • 자연경관지구 전체	결정도 참조

5. 인센티브 결정조서

구 분		계획내용	인센티브량	비 고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공공보행통로	2개소, 3,059.4㎡	13.85% → 10%	지역권 설정, 10%p 이내
	공개공지	275.9㎡	1.2%	5%p 이내
합계		10.0% + 1.2% = 11.2% → 11% 적용		

※ 공공보행통로 인센티브 산정을 위한 조성면적은 추후 지역권 설정을 통해 등기하는 면적만을 대상으로 하며, 공공보행통로의 조성 위치 및 범위는 결정도 및 지침을 고려하여 조성하도록 함(지역권 설정기간은 건축물의 존속기간으로 한정함)
※ 공개공지 조성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실내형 공개공지 포함)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전면공지	•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형태로 조성 - 24시간 상시 개방구조로 설치 - 폭 3m의 순수 보행공간을 연속된 형태로 조성 - 보행공간 포장은 내구성을 갖춘 투수성 재료를 사용	결정도 참조
공개공지	• 위치 : 결정도에 표시된 위치에 공개공지 조성 • 조성기준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에 따른 설치기준 준수하여 조성	결정도 참조

2. 대지내 통로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공공보행통로	• 생활공유가로에 대하여 공공보행통로 계획 - 24시간 상시 개방구조로 설치 - 폭 6m 이상의 순수 보행공간을 연속된 형태로 조성 - 필로티 구조로 설치할 경우 유효높이는 6m 이상 확보 - 보행공간 포장은 내구성을 갖춘 투수성 재료를 사용 - 지정된 위치(중심기준)에서 양측 10m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며, 단지 내 광장 등과 연계하여 설치	결정도 참조

Ⅱ. 기타사항

○ 2024년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

<금회 상정안에 구청장 수정가결 요청사항 및 다음 사항 반영>
- 향후 높이 계획이 20층 이하여도 공동위 의견으로 서울시 건축심의 절차 이행 권고
- 공공보행통로 계획은 향후 건축배치 및 차량진출입, 대상지 일대 보행동선 계획 등과 연계하여 위치 및 폭원 규모 등 재검토
- 서측 차량출입구 위치는 지형 및 경사, 안전 등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과 연계하여 조정 검토
  ※ 교통분석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주변 교통 연결, 기반시설 현황 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료 보완하여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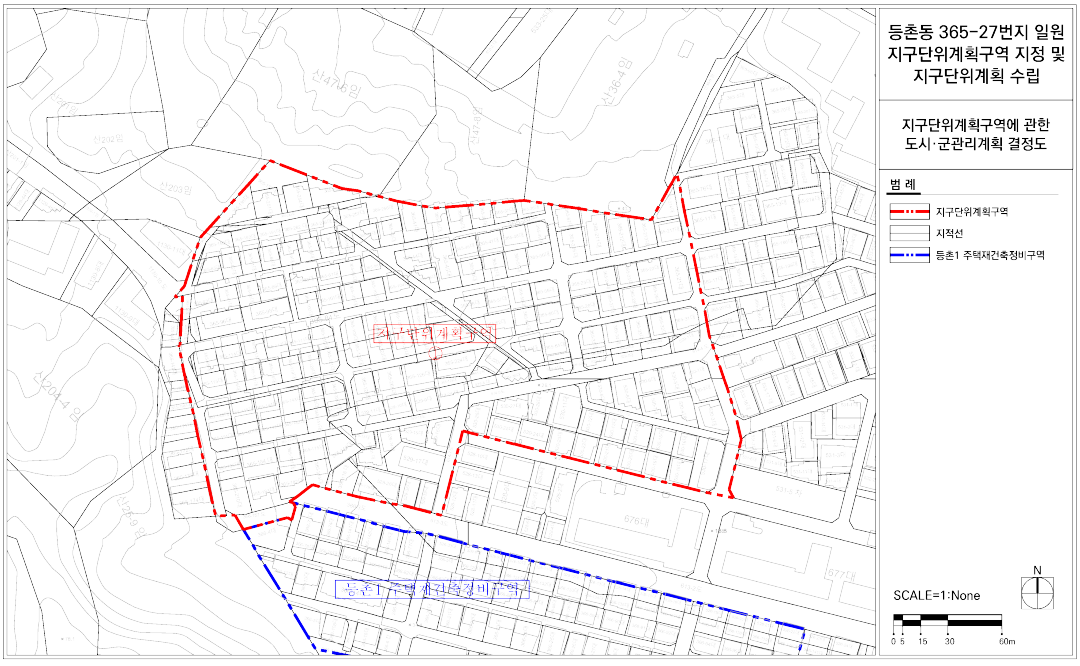
Ⅲ.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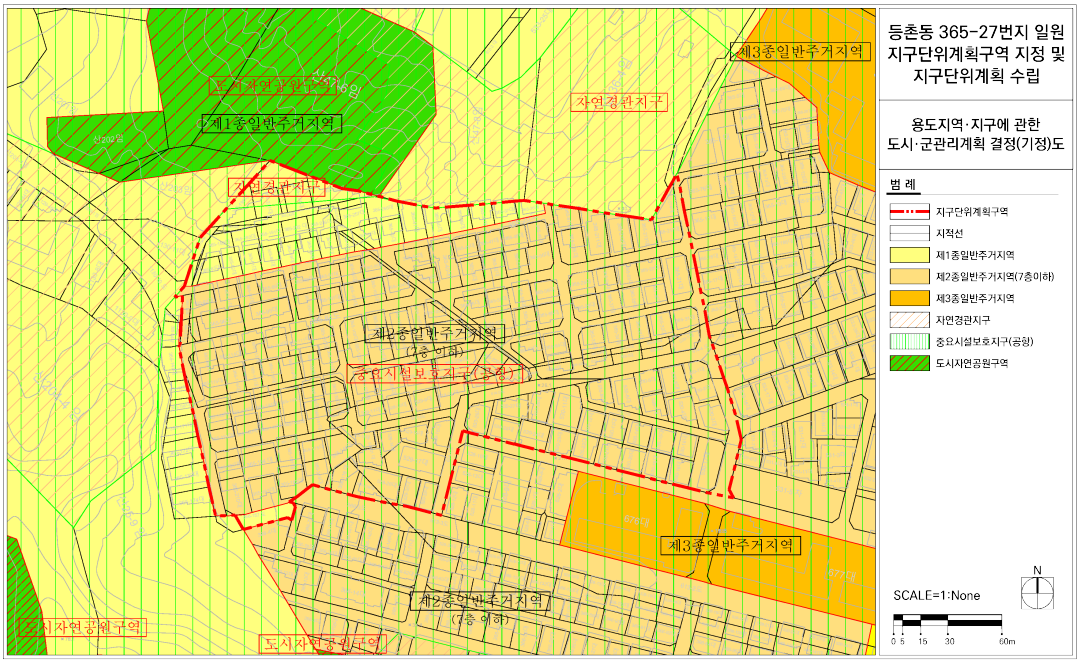
Ⅳ.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02-2133-7865) 및 강서구 도시계획과(☎02-2600-6844)에 비치·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 및 서울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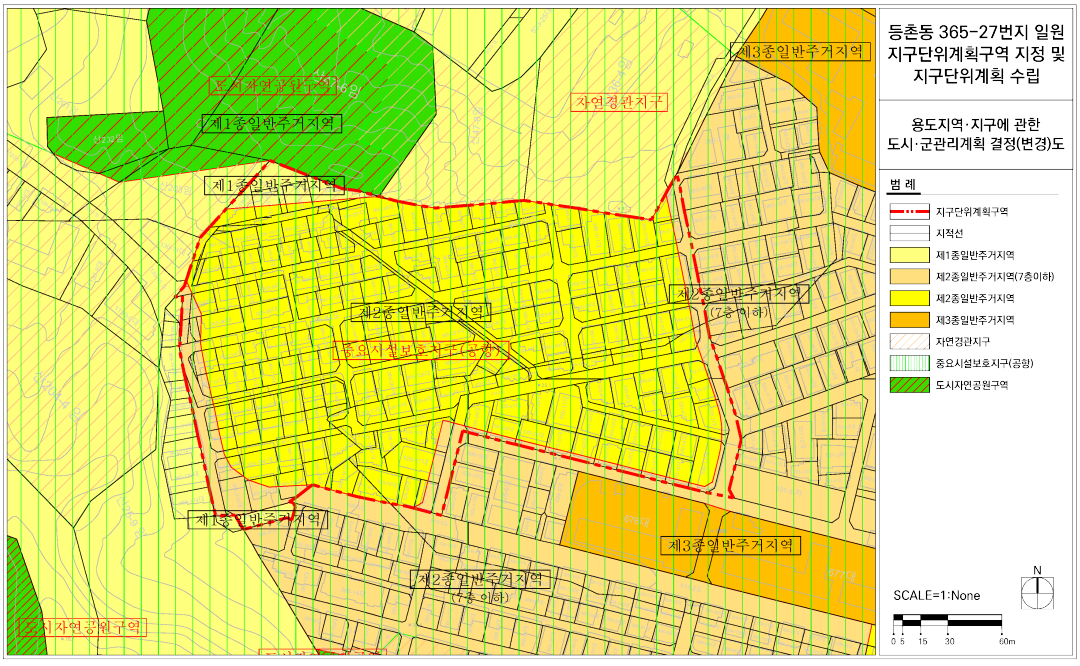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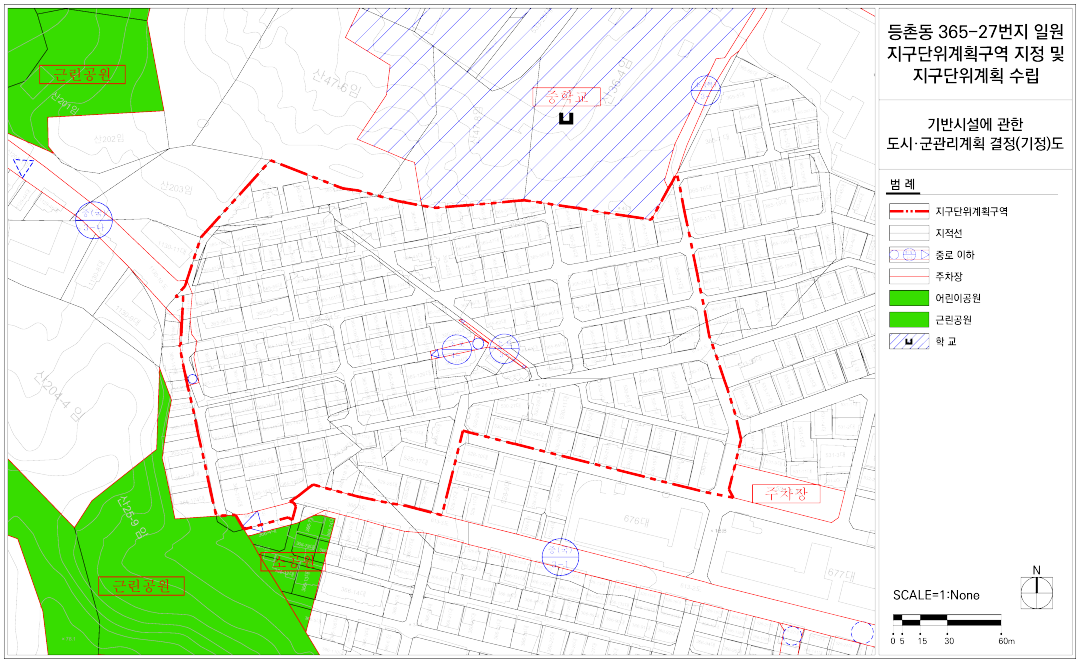
■ 용도지역 · 지구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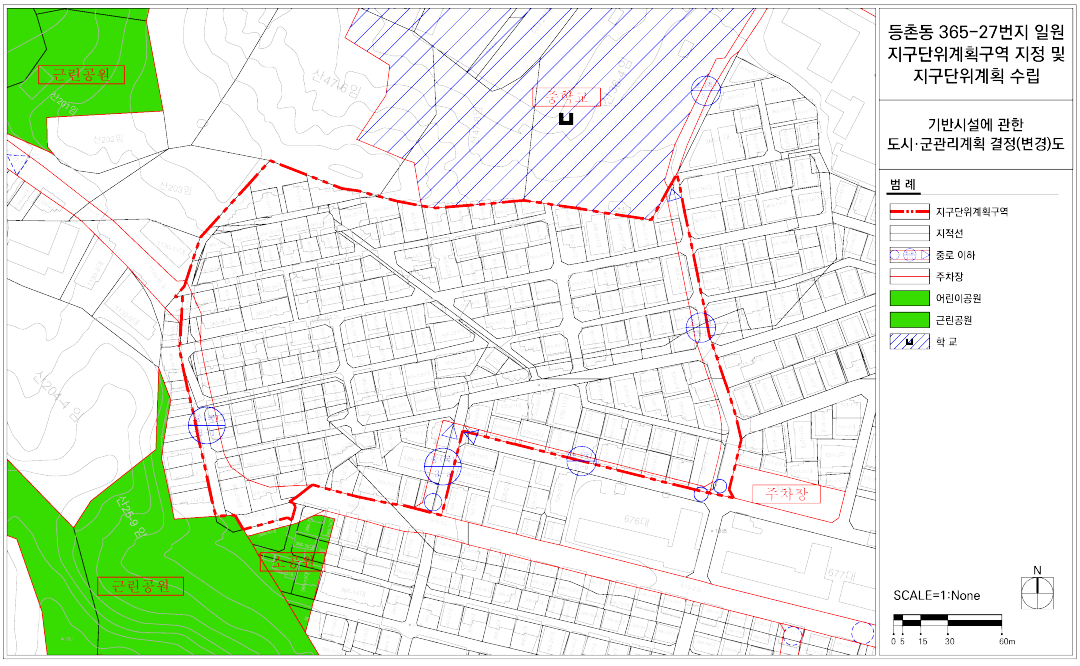
■ 용도지역 · 지구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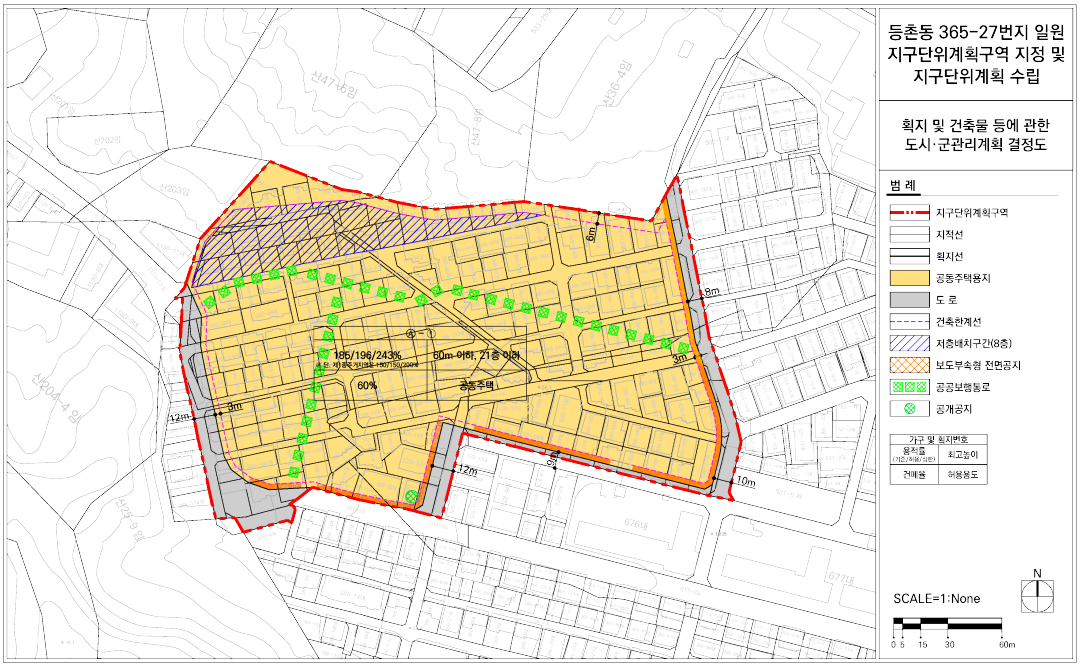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39호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제정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표준정관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3조에 따른 공공지원 대상 정비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별표 1을 참고하여 제4조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고 운용한다. (별표 각 조항의 주석("【주】" 로 표시)은 근거법령, 해당 조항이 지니는 의의와 성격, 실제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점 등을 설명한 것으로, 해당 주석을 참고하여 정관 조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
② 조합은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별표 2를 참고하여 제4조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고 운용한다.
③ 조합은 조합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정관을 작성·운용하여야 하며,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창립총회 또는 법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 정관은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한 조합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정관의 작성) ① 조합은 정관을 작성할 때 각 별표의 제7조, 제9조제4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5항부터 제8항, 제15조제6항, 제16조제9항·10항·제13항, 제20조제5항·제7항, 제24조제7항, 제25조제3항·제4항은 확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사업의 특성, 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정 또는 보완(조·항·호·목·별지 등의 추가)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정관의 규정을 확정·수정·보완 또는 추가하는 내용이 관계법령, 조례, 지침 및 국토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등 관련 행정기관의 처분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제4조(민법 등의 준용) ① 이 표준정관은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조합의 사업추진 및 운영에 관하여 법, 「민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관련 행정기관의 지침·고시 또는 유권해석 등에 따른다.
③ 법령 및 관련 기준의 개정으로 정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의 변경 전까지 개정된 법령 및 관련 기준을 따른다.

제5조(재검토기한) 서울특별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표준정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표준정관 시행 당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거나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 표준정관를 참고하여 조합 정관을 개정할 수 있다.

[별표 1]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재개발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별표 2]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별지 제1-1호서식]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예시) (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별지 제1-2호서식]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예시)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별지 제2호서식] 조합 업무분장(예시)
[별지 제3호서식] 조합원 변경신고서(예시)
[별지 제4-1호서식] 해외거주 조합원의 대리인 지정서(예시)
[별지 제4-2호서식] 법인인 조합원의 대리인 지정서(예시)
[별지 제4-3호서식] 총회출석 위임(예시)

[별표 1]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재개발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정관은 모든 조합원이 지켜야 할 조합의 내부 규범으로서 조합의 사업시행, 의사결정,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하여 조합이 관련법령 및 기준에 적법하게 사업을 안정적·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① 본 조합의 명칭은 ○○○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명칭은 ○○○ (주택정비형,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조합 업무규정) 조합 업무규정이란 총회에서 조합원의 의결로 제정하는 조합의 규정을 말하며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

1.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에 따라 작성된 "조합 행정업무규정"
2.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에 따라 작성된 "조합 예산·회계규정"
3.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선거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작성된 "조합 선거관리규정"
4.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을 참고하여 작성된 "조합 의사진행규정"

제4조(사업시행구역) 조합의 사업시행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으로서 서울특별시 ○○구 ○○동 000-00번지 외 ○○필지(이하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로 하고, 토지의 총면적은 00,000.00㎡(약 00,00평)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관련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편입 또는 제척되는 토지 등이 있거나, 기본계획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 지적측량 또는 착오의 발견 등에 따라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시행구역과 토지의 총면적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사무소) ①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구 ○○로 ○○ (○○동, ○○빌딩)에 둔다.
② 조합사무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전할 수 있으며, 사전에 제8조에 따라 조합원에게 조합사무소의 이전시기·주소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방법) ① 조합원은 소유한 토지, 건축물 또는 지상권을 조합에 현물로 출자하고, 조합은 법 제23조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② 조합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사업비 일부를 서울특별시(정비사업 융자금),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정한 시공자 · 설계자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 금융기관 기타 협력업체 또는 조합원 등으로부터 대여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조합은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사업기간) 조합의 사업기간은 조합설립등기일부터 제62조제2항제5호의 청산종결등기일까지로 한다.

제8조(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통지·공고방법) ① 조합은 조합원의 권리 · 의무에 관한 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합원에게 성실히 통지 ·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 · 공고 방법은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조합원에게 “등기우편등”(등기우편 및 기타 발송이 증명되는 우편이나 우체국택배 등 우편물의 안전한 송달을 보증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등기우편등이 반송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할 것. 다만, 조합원이 통지내용물을 직접 수령하기를 원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에게 직접 전달하고 해당 조합원으로부터 그 수령을 확인하는 서면을 받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주】 직접수령에 관하여는 최초 등기우편등의 발송부터 적용할 것인지, 추가 일반우편 발송에만 적용할 것인지는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이며, 직접수령이 가능한 내용물, 전달할 사람, 수령할 사람, 전달 · 수령장소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임.

2. 조합은 “게시판”(조합사무소 및 조합원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둔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게시판에 게시한 날부터 3월 이상 조합사무소에 관련서류와 도면 등을 비치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3. 해당 내용은 법 제119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구축·운영하는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정비사업 정보몽땅”이라고 한다)에도 공개할 것(조합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에의 게시 및 문자메세지 등의 발송을 병행 가능). 다만, 특정인의 권리에 관계되거나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요지만을 공개할 수 있다.

③ 제2항제1호의 등기우편등이 발송되고, 제2항제2호의 게시판에 공고가 있는 날부터 조합원에게 통지·공고된 것으로 본다.

【주】 그 밖에 주소 등 우편물송달장소의 신고의무, 그 불이행시의 효과 등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을 것임.

【주】 한편, 조합원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도 있을 것임

제9조(정관의 변경) ①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변경하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주】 법 제40조제4항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의원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도, 총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도 있을 것임

【주】 조합원 100인 이하의 조합이 대의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총회 의결로 하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총회 의결요건은 조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③ 정관 변경과 관련하여 조합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사람의 대표자는 소집요구서(변경 전·후 비교표 및 변경사유를 기재한 서면)를 작성하여 조합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합장은 소집요구 제출일로부터 ○일 이내에 정관변경(안)에 대한 안건 처리를 위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계획과 그 내용을 정비사업 정보몽땅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주】 조합장은 조합원 등에 의해 발의된 정관변경(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소집을 요구하는 사람의 대표자가 정관변경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려는 경우 제20조에 따라야 함

④ 조합은 정관변경에 대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거나 경미한 변경신고 수리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게시판에 공고하고, 변경전·후 비교표 및 변경된 정관 개정 전문을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 2 장 조 합 원

제10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조합원은 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지상권등의 권리는 민법에서 규정한 권리를 말한다. 다만,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무허가건축물로서 무허가건물확인원, 재산세과세대장 그 밖에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통하여 자기소유임을 입증하여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

【주1】 조례 제22조에서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의사 및 조합 실정을 고려하여 해당 조항 수정 가능

【주2】 특정무허가건축물의 소유권 입증을 위해 항측도, 측량성과도 또는 세금납부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정할 수 있음

③ 1인이 둘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수에 관계없이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1세대에 속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④ 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조합원이 하고, 조합의 처분, 법률행위 기타 행위는 그 대표조합원에게 한다.

【주】 그 밖에 대표조합원이 한 법률행위 기타 행위의 효력과 조합이 대표조합원에 대하여 한 처분 기타 행위의 효력이 수인에게 미치는지, 만일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않거나 선임하였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수인이 개별적으로 한 법률행위 기타 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볼지 등에 관하

여도 정할 수 있을 것임.

⑤ 양도·상속·증여 및 판결 등으로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이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이 변경된 것으로 보며, 새로운 조합원은 종전 조합원이 행하였거나 조합이 종전 조합원에게 행한 처분, 조합청산 시 권리·의무에 관한 범위 등을 포괄승계한다.

⑥ 사업시행구역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한 자라 하더라도 법 제39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법 제39조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주】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를 확인하여 제6항 작성

⑦ 조합원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즉시 상실한다.

⑧ 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서 정한 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같은 항 제4호에서 정한 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일 다음날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주】 조합이 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법 제7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자격을 다시 부여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제44조제2항 참조).

【주】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조합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다. 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손실보상 대상자는 아래와 같음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법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4. 법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제11조(조합원의 권리·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대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청구권
2. 총회의 출석권·발언권 및 의결권
3. 임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4. 대의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5. 손실보상 청구권
6. 정비사업비, 청산금,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한다)등의 비용납부 의무

【주】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현금청산자에 대한 조합원 지위 상실시점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용에 대해 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려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별도의 규정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임.

7. 이주 및 건축물 해체의 의무
8. 그 밖에 관련법령 및 이 정관, 총회 ·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의무

② 조합원의 권한은 평등하며 권한의 대리행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법 제45조제5

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조합원의 자격은 변동되지 아니한다.

【주】 위 규정은 법 제45조제5항에서 정한 “의결권”(단, 제3호의 경우는 다름)에만 국한된 규정임. 그 밖의 조합원의 권리를 대리인이 행사할 수 있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대리행사를 인정할 사정 내지 상황, 대리인의 자격(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특히 대리행사할 권한과 그 범위 등을 정할 수 있을 것임.

【주】 조합원 권한 대리 행사를 위한 별지 제4호서식 등의 위임장, 대리인 지정서 제출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법으로 규정한 사항 외에 대리인 지정서의 구체적인 첨부서류(해외거주자의 추가 필요서류,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지정서 제출 여부 및 제출서류) 및 그 효력 등을 정관으로 정하여 추후 관련 대리권의 다툼을 줄일 수 있을 것임 (이 경우, 제22조제5항과 일치시켜야하며, 해당 항을 준용할 수 있음)

③ 제10조제5항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조합원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조합원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조합원이 대표조합원, 대리인 또는 조합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인감 등을 변경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이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대항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주】 대표조합원 변경신고서, 대리인 변경신고서, 조합원정보 변경신고서 서식을 추가로 작성할 수 있을 것임.

【주】 조합원변경신고 등을 해태한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의 구체적인 내용과 변경신고 완료 전에 종전 조합원(대표조합원 또는 대리인)이 하거나 또는 종전 조합원(대표조합원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한 처분, 법률행위 기타 행위의 효력에 대해 정할 수 있을 것임. 변경 전 성명, 주소, 연락처 등에 대하여 한 처분, 법률행위 기타 행위의 효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임.

④ 조합원은 조합이 사업시행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조합의 승낙이 없는 한 이를 회수할 수 없다. 이 경우 조합은 요구서류에 대한 용도와 수량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합의 승낙이 없는 한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시공자 등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

제12조(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 ① 시공자의 선정·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취소는 법 제29조, 조례 제77조,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및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라야 한다.

【주】 법 제25조제1항제1호 및 조례 제73조에 의한 공동사업시행방식의 경우 서울특별시 고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을 따라야 할 것임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에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된 시공자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은 법 제45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주1】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제11조에 따라 조합은 현장설명회 시 공사도급계약서(안)을 포함한 공사도급계약서 작성에 대해 건설업자등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같은 기준 제7조에 따라 선정계획(안)에 대하여 공공지원자의 검토를 받은 후 대의원회에서 의결하여야 함

【 주2】 변경계약체결의 내용 중 조합의 금전적인 부담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사항(내역변경 또는 감액계약 등)에 대하여는 총회에서 대의원회 의결로 위임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정관에 관련내용을 명시해야 함 (이하 본 장에서 같다)

【주3】 공동사업시행방식의 경우 서울특별시고시「정비사업 표준 공동사업시행 협약서」적용을 원칙으로 함

③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는 법 제45조제7항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5조에 따라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여야 하며,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을 얻은 건설업자등을 시공자로 선정한다. 다만, 총회에 상정된 건설업자등의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최다득표한 건설업자등을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④ 시행령 제42조제2항제1의2호에 따른 시공자 선정 취소 또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시공자 선정 무효를 위한 총회 의결은 조합원 100분의 20 이상 직접 출석 및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주】 법 제45조 및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는 조합원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하며,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시공자 선정 무효를 위한 총회는 조합원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와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임.

⑤ 조합은 법 제29조의2 및 이 정관에 따른 공사비 검증요청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공자로부터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에 따른 공사비 검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검증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신청하고,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검증보고서는 총회에 공개하여야 하며, 변경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약 체결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주】 법 제29조2에 따른 공사비 검증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제8조의2(공사비 검증)에 시공자(수급인)이 공사비 검증에 필요한 서류를 조합(도급인)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사도급계약 체결 시 이 조항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아야 함. 또한, 시공자가 검증사유 제2호 및 제3호의 계약금액조정을 청구할 경우 공사비 검증에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 공사비 검증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것임

1.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검증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
2. 공사비의 증액 비율(당초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100분의 10 이상
 나.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100분의 5 이상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이후 공사비의 증액 비율(검증 당시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이 100분의 3 이상인 경우

⑥ 조합은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제4항에 따라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법 제72조에 따른 분양공고 전에 설계도면, 변경 전·후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 등 공사비 내역을 증빙하는 서류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증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⑦ 조합은 일반분양 후에 공사도급계약금액의 증가를 수반하는 설계변경을 하지 않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⑧ 조합은 최종 공사도급변경계약 및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위해 공사비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일 1년 전에 시공자에게 공사비 검증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등 해당 절차 이행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주】 조합은「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에 따른 입주자모집 공고에 명시된 입주예정일을 기준으로 입주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계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제13조(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 ① 설계자의 선정·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취소는 법 제29조, 조례 제77조,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및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추진위원회가 이 조항 본문에 따라 적법하게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설계자는 이 정관에 의해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설계자로 본다.

②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설계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계약내용에 따라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가 부여된다. 다만, 총회에 상정된 입찰참여자의 수가 3 이상인 경우 최다득표한 입찰참여자를 설계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1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계약) 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취소는 법 제29조, 조례 제77조,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및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하여 제1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설계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본다.

③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법 제106조제1항에 의해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업무계약의 해지여부에 관해서는 제106조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처분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업무의 계속수행에 대한 동의여부에 관해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주】 법 제106조 제5항 제1호, 제2호. 이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할 수 있으며, 100인 이하 조합으로서 대의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 의결로 결정

④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법 제106조제5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즉시 업무를 중지시키고 관련서류를 인계받아야 한다.

제 4 장 임원 등

제15조(임원) ① 조합에는 조합원으로서 법 제41조제1항에 의한 자격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1인
2. 감사 ◯인
3. 이사 ◯인

【주】 조합임원의 수는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한 범위(이사 3명 이상, 감사 1명 이상 3명 이하.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 5명 이상) 조합의 규모 등 실정을 고려하여 정함

【주】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감사의 경우에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이사의 경우에는 “3명(또는 5명) 이상 ○명 이하”로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는 선임, 보궐선임 또는 연임총회를 하면서 실제 몇 명을 선임할지 여부를 정해야 할 것이고, 그 결정주체,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위계에 맞춰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에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임.

② 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조합장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 조합장을 제외한 조합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대의원회가 이를 보궐선임한다.

【주】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조합임원은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한 자이거나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함. 다만, 조합장은 선임일로부터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 또는 영업을 하여야 함

③ 제2항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조합장을 제외한 조합임원의 입후보자가 선임 또는 보궐선임하려는 수 이하인 경우에는 득표수에 상관없이 모두 선임 또는 보궐선임된 것으로 보며, 조합장을 제외한 조합임원의 입후보자가 선임 또는 보궐선임하려는 임원 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선임 또는 보궐선임하려는 임원 수에 이르기까지 다득표순으로 선임할 수 있다.

【주】 상근이사를 둘 경우 총회에서 선출된 비상근이사들 중에서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선출할 수도 있지만, 총회에서 비상근이사와 구별하여 직접 선출할 수도 있는바, 그때에는 선출방법(특히 의결정족수)과 지위(상근이사만을 사임하고 평이사로 남을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정하여야 할 것임.

④ 조합장이 궐위되거나 이사 또는 감사의 수가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한 수에 미달된 경우 임원 선임(연임, 보궐선임 등)을 위한 조합장 직무대행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⑤ 조합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되,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조합임원의 임기는 조합설립등기일로부터 개시하며, 그 후임자의 임기는 선임된 날의 다음날부터 개시한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선임된 임원(조합장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주1】 법 제41조제3항에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주2】 연임의 기준 및 절차를 정관 또는 조합 선거관리규정에 상세히 규정할 수 있을 것임

⑥ 조합은 안정적인 조합 운영 및 조합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조합임원의 임기만료 전 새로운 임원의 선임 또는 연임 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기 만료 전 임원 선임 또는 연임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 기존 조합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등)

① 조합임원은 그 임기동안 또는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원의 권익 보호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조합장은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이사는 상근여부를 불문하고 조합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 상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합업무분장(표)에 따라 조합의 사무를 분장한다.

【주】「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별지 제3호서식의 '업무분장'을 정관의 별지 서식으로 추가하여 조합임원별 업무분장과 대직 체계를 정관으로 명시하도록 함

④ 감사는 조합의 사무 및 재산상태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하고 정기총회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하여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감사와 회계감사의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

⑤ 감사는 조합의 재산관리 또는 업무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의원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보고를 위한 대의원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의 요구에도 조합장이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직접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대의원회 의결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가 대의원회와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⑥ 감사는 제5항의 직무위배행위 등으로 인해 감사가 필요한 경우 조합임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감사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주】감사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

⑦ 감사는 조합장 또는 이사가 조합과 자기를 위한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에는 조합을 대표한다.

⑧ 조합장이 사임·해임·당연퇴임 등으로 인하여 궐위된 경우 상근이사 중 연장자(궐위 등으로 상근이사가 없는 경우 이사 중 연장자), 법원에서 파견된 직무대행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주】조합장 부재 시 조합의 업추무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직무대행체제를 조합 임원 구성 등 조합 실정에 맞도록 정하여 정관에 명시해야 함

⑨ 제8항에 따라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할 조합임원이 사임·해임·당연퇴임 등으로 부재한 경우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조합장 및 조합임원 선임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주】법 제49조에 따라「민법」제70조를 준용하여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음

⑩ 제8항 및 제9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선정한 전문조합관리인이 조합임원의 직무를 대행한다.

【주】법 제41조제5항은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일정기간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에 조합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⑪ 조합은 그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근하는 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상근임원의 선임, 업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조합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⑫ 조합임원은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조합·추진위원회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으며, 사업과 관련된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관련단체의 임원·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주】 이에 위반하여 임원 등을 겸하는 경우 그 겸하게 된 지위 중 어느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인지 정할 수 있을 것임.

⑬ 조합임원은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법 제115조 및 조례 제63조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선임일 직전 3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 교육이수여부는 그 증명서등을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공개하는 방법 등으로 확인할 수 있음

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등) ①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임원이 임기 중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또는 법 제41조제1항에서 정한 조합임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해임절차 없이 그 즉시 당연퇴임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④ 조합임원으로 선임된 후 그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까지 제18조제3항의 절차에 따라 그 자격과 직무수행을 정지할 수 있다.

【주】 이 규정을 둘 경우 무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대한 보상대책(상근의 경우 급여, 4대보험 등)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을 것임.

제18조(임원의 해임 등) ① 임원이 직무유기, 업무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을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법 또는 이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에게 총회의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주】 임원의 해임은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할 수도 있음.

② 조합임원이 자의로 사임한 경우, 제1항에 따라 해임된 경우 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당연퇴임한 경우에는 법, 이 정관 및 조합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임절차가 진행중인 임원이 해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임원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조합장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이 해임되는 경우에는 제16조제8항에 따른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조합장의 직무수행 정지 여부를 의결할 수 있다.

④ 조합장을 제외한 조합임원이 자의로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장에게 그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이를 이사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임의사를 표시한 해당 임원은 사임에 대한 이사회 의결이 있거나 후임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그 임기가 유지되는 것으

로 본다. 조합이사 전원이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대의원회”로 보며, 조합장은 이사회의 개최 없이 대의원회를 바로 소집할 수 있다.

【주】 임원이 사임한 경우, 대의원과 마찬가지로(제24조 제5항) 이사회의 의결이나 수리행위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수리행위가 종료되어 사임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직무를 정지시킬 실익이 있을 것임.

제19조(임직원의 보수 등) ① 조합은 상근임원 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원의 직무수행으로 발생되는 경비 등은 조합 행정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조합에 상근하는 유급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수, 채용방법, 보수 등 근무조건 기타 유급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제 5 장 조직 및 운영

제20조(총회의 설치) ① 조합에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조합장이 소집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1회,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 전에 개최하여 다음 회계연도의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월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변경할 수 있다.

【주】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 제19조 제1항은 “조합등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당해 연도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년도 동기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즉 당해 연도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성립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그런데 조합예산을 위한 임시총회를 잘 개최하지 않는 현실에서 정기총회마저 새 회계연도에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정기총회에서 예산이 의결될 때까지는 준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문제가 매번 발생함. 따라서 대한민국국회처럼 매번 개최하여야 하는 정기총회를 회계연도 개시 전에 개최하도록 하여 그때 예산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럼에도 부득이 해를 넘기는 경우에는 대의원회 의결로 준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주】 정기총회 개최를 연기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에 대해 별도로 정할 수 있을 것이며, 총회개최를 무기한 연기하거나 지체하지 않도록 연기 기간을 정관으로 제한하되, 「서울특별시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 제19조에 따라 준예산 적용가능 기간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최대 1년이므로 동일 회계연도 내에 반드시 정기총회가 개최되도록 정해야 함

④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로부터 2월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때
2.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때
3.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때

⑤ 제4항의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2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가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요구한 자의 대표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집한다.

⑥ 제2항부터 제4항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하거나 일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변경사유 등에 관하여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2항부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4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 장소 및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사업정보몽땅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며 각 조합원에게는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제7조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5호의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 회의개최 1개월 전에 법 제74조제5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⑧ 총회는 제7항에 의하여 통지한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⑨ 제4항에 따라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요구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조합은 법 제44조제2항 및 시행령 제41조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집을 요구한 자가 본인인지 확인하여야 하며, 소집요구에 따른 총회가 개의 정족수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요구 안건이 부결된 때에는 당해 조합원의 소집요구서 및 해당 총회에 제출된 서면의결서 등의 효력은 상실된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법 제45조 및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1. 정관의 변경(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법 또는 이 정관에서 총회의 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 이자율 및 상환방법
3.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4.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5. 시공자 · 설계자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 취소 및 변경
6.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및 변경(제74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선정 · 계약하는 감정평가법인 등은 제외한다),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및 변경의 위탁에 관한 사항
7.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임기중 궐위된 자를 보궐선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해임
8. 조합임원의 연임
9. 조합장의 보궐선임
10. 정비사업비의 변경
11.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12.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13.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14.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법 제5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시행령 제46조의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5.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행령 제61조의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6. 법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의 해산과 조합 해산시의 회계보고
17. 법 제89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 · 지급(분할징수 · 분할지급을 포함한다)

18. 법 제93조에 따른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19. 법 또는 이 정관에 따라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20. 그 밖에 법 또는 이 정관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

제22조(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는 법 또는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제21조제14호 및 제15호는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법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0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정관의 변경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④ 총회의 의결은 법 및 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 제45조제7항에 따라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을 위한 총회,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한 총회,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⑤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법 제4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출석으로 보며,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직접 출석으로 본다.

【주1】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대리인 지정서의 구체적인 첨부서류, 해외거주자의 추가 필요서류,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지정서 제출여부 등을 정할 수 있음

【주2】 필요한 경우 국토부 지침(‘23.7.20.)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전자적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

⑥ 조합은 서면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며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합원은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면결의서에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외에 제20조제7항에 따라 조합이 통지한 방법으로도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서면의결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거나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서면의결권의 행사기간
2. 서면결의서 제출장소 및 제출방법
3. 서면결의서 서식을 포함한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 안내

【주1】 법 제45조제6항에서 “조합은 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9항에서 “서면의결권 행사 및 본인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인확인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해당 내용을 조합원에게 안내해야 하며, 서면결의서와 특히 신분확인자료의 제출방법은 조합명의 또는 조합장 명의의 휴대폰, 이메일이나 팩스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

⑦ 조합원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때에는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가 표시된 서면결의서가 총회 전일까지 조합에 도착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은 총회 당일에 현장출석하여 투표개시 선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직접 또는 제5항에 따른 대리인을 통하여 서면결의서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철회하고 직접 투표할 수 있다.

⑧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5조제8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또는 시행령 제42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보며, 서면의결권 행사는 병행하지 아니한다.

⑨ 총회 소집결과 개의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재소집하여야 하며, 재소집의 경우에도 개의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대의원회로 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시행령 제4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총회운영 등) ① 총회는 이 정관 및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을 따라 운영하되, 별도의 조합 의사진행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총회 안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등 조합원이 아닌 자를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1. 조합직원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시공자·설계자 기타 협력업체의 임직원
3. 그 밖에 의장이 총회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발언·행동 등으로 총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4조(대의원회의 설치) ① 조합에는 대의원회를 둔다.

② 대의원의 수는 ○○인 이상 ○○인 이하로 한다.

【주1】 법 제46조에 따라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의 대의원회 설치는 의무이며, 대의원의 수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명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 가능)

【주2】 대의원의 수는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조합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대의원이 궐위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가급적 법 제46조제2항에서 정한 최소 대의원의 수보다 일정규모 이상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

③ 조합장은 대의원회 의장이 되며, 이 경우 조합장은 대의원으로 본다.

④ 대의원은 후보자 등록 공고일 현재 사업시행구역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년 이상 소유한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며, 대의원 구성 시 조합의 규모나 거주형태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이해관계가 수렴될 수 있도록 한다.

【주】 대의원의 피선거권 자격에 대하여 조합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⑤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은 대의원에 관하여 준용하며, 조합장이 아닌 조합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그 밖에 대의원의 선임 또는 궐위된 대의원의 보궐선임 방법 및 절차 등은 조합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⑥ 대의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5항을 준용한다.

⑦ 대의원이 자의로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장에게 그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이를 이사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사임의사를 표명한 대의원은 사임에 대한 이사회 의결이 있거나 후임 대의원이 선임될 때까지 그 임기가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주】대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임하여 조합운영 및 사업추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조합원에 부당한 손해를 끼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임 절차를 정관에 명시하여야 하며, 사임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재적 대의원 수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임.

⑧ 대의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연속으로 대의원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⑨ 제5항, 제7항 및 제8항의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5조(대의원회 개최) ① 대의원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 정관에 따라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경우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대의원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청구하는 때
2.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대의원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청구하는 때

【주】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라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요구하는 때 조합장은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해야 함

② 제1항의 경우 제20조제9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집청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14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지체없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소집을 청구한 사람의 대표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소집한다. 이 경우 감사 또는 소집을 청구한 사람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의원회 소집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대의원에게 통지하고, 정비사업 정보몽땅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상 시급히 대의원회 의결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에 통지하고 대의원회에서 안건상정 여부를 묻고 의결할 수 있다.

【주】 제20조제7항과 같은 형식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임.

【주】시행령 제44조제7항에 대의원회의 소집공고 내용은 정관으로 정해야 하며, 법 제46조에 따라 대의원의 의결방법 등은 시행령 제44조에서 정한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할 수 있음.

⑤ 제20조제8항은 대의원회에 준용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한 안건으로서 재적대의원 과반수가 직접 참석하고 직접 참석한 대의원 과반수가 그 채택에 동의한 안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대의원회 의결사항)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기 중 궐위된 임원(조합장은 제외) 및 대의원의 보궐선임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방법

3. 총회 상정을 위한 안건의 사전심의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4.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의 용역 계약(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업체의 선정은 제외)
5.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정관의 경미한 변경
6. 법 제50조제1항 단서 조항 및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7. 법 제74조제1항 단서 조항 및 시행령 제61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8. 조합 업무규정(행정업무규정·예산회계규정·선거관리규정 등)의 개정
9. 준공인가 후 소송 제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이 정관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

【주】법 제46조에 따라 대의원은 시행령 제43조에서 대의원회가 총회의 의결을 대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외 대의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을 조합원 의사를 고려하여 추가할 수 있을 것임

제27조(대의원회 의결방법) ① 대의원회는 법 및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2조제8항에 의하여 대의원회가 총회의 의결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주】시행령 제44조제8항에 따라 대의원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이상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적 대의원의 수가 법 제46조제2항에서 정한 최소 대의원 수(이하 “법정 최소 대의원 수”라 한다)에 미달되더라도 법정 최소 대의원 수의 4분의 3 이상인 경우에는 제26조제3호 중 총회상정을 위한 안건의 사전심의에 한하여 법정 최소 대의원 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대의원은 대리인을 통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서면으로 대의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주1】대의원회의 서면의결권 행사 가능여부 및 구체적인 행사 방법에 대해 조합 자체적으로 정해야 할 것임

【주2】조합 실정을 고려하여 대의원회 의결에 전자적 방법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의결권 행사 시에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 또는 아이피를 사용하게 하는 등 본인인증을 위한 적절한 방안이 담보되어야 함

④ 특정한 대의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그 대의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하며, 이사·감사는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의 설치) ① 조합에는 조합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조합장이 소집하며, 조합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일전에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으로 이사에 통지하고, 게시판 및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상 시급한 경우

에는 회의 개최 1일 전에 통지하고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주】 이사회의 사무, 사무처리 일정등을 고려하여 정기 이사회 개최일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임.

제29조(이사회의 사무)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집행한다.

1. 조합의 예산 및 통상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 및 대의원회의 상정안건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조합 업무규정 등의 제정 및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 또는 대의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집행 및 의결
5.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공람의견 심사
6. 주된 사무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에서 이사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7. 그 밖에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이사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의장인 조합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주】 총회장소나 일시 등의 변경을 위해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은 소모적이므로, 조합장에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범위를 정하여 위임함으로써 시간단축 및 비용절감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제30조(이사회의 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대리인 참석이 불가하며, 조합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주】 조합장이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개의 및 의결정족수에 산입하여야 하고, 의결권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것임.

② 특정 임원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경우 해당 임원은 그 안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주1】 이사회의 출석방법(서면 등), 출석인정여부 및 의결권 행사 방법에 대하여 조합실정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주2】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합원 의사를 고려하여 제28조제3항제2호의 총회 및 대의원회 상정안건 심의를 위한 이사회가 개의 정족수 부족으로 2회 이상 개최되지 못하는 경우 등에 한해 조합장이 직권으로 대의원회 또는 총회에 상정하여 조합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이 경우 조합장은 대의원회 또는 총회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항임을 보고하여야 함

제31조(감사의 이사회 출석권한 및 감사요청) 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② 이사회는 조합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에게 조합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의사록의 작성 및 관리) ① 조합임원(청산인을 포함한다)은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총회 또는 시행령 제94조제3항에서 정한 중

요한 회의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주】 시행령 제94조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중요한 회의”란 아래와 같다.

1. 용역 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및 업체 선정과 관련된 대의원회·이사회
2. 조합임원·대의원의 선임·해임·징계 및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자격에 관한 대의원회·이사회

②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속기사가 작성한 속기록 또는 의사록은 이를 법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사록으로 보며, 제1호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주요 논의내용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대의원 또는 이사 및 감사가 서명하여야 한다.

【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의사록 작성에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 별지 제15호 “의사록(예시)” 서식을 사용할 수 있음

2. 의사록은 회의개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게시하고 조합사무소에 비치하여 조합원등이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 운영지침」에 회의개최일로부터 15일 이내 의사록 등을 정보몽땅에 게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3. 그 밖에 의사록의 작성 및 관리는 법 및 이 정관등에 따른다.

제 6 장 재 정

제33조(조합의 회계) ① 조합의 회계는 매년 1월 1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당해연도는 조합설립등기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합의 예산·회계는 조합 예산·회계규정에 따르며, 조합 예산·회계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조례, 이 정관, 「중소기업회계기준」 등을 준용한다.

1. 예산의 편성과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2.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수입의 관리·징수방법 및 수납기관 등에 관한 사항
4. 지출의 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5. 계약 및 채무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회계문서와 장부에 관한 사항

③ 조합은 조합 예산·회계규정 별표 2의 회계처리규정 세칙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년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하거나 조합원에게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대의원회 의결을 받은 결산보고서는 의결 후 15일 이내에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공개하여야 하며, 3개월 이상 조합사무소에 비치하여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조합에 대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에 관하여는 법 제112조에 따른다.

⑤ 조합은 제4항에 의하여 실시한 회계감사 결과보고서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비

사업 정보몽땅에 공개하고, 3개월 이상 조합사무소에 비치하여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재원) ①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조달한다.

1. 조합원이 현물로 출자한 토지 및 건축물
2. 조합원이 납부하는 정비사업비 등 부과금
3. 건축물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의 분양 수입금
4. 조합이 금융기관 및 시공자 등으로부터 조달하는 차입금
5. 서울특별시장,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으로부터 조달하는 융자금
6. 대여금의 이자 및 연체료 등 수입금
7. 청산금
8. 그 밖에 조합재산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에 의한 수익금

② 조합이 자금을 차입한 때에는 자금을 차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금을 대여한 상대방, 차입일, 차입액, 이자율, 상환기한 및 상환방법을 기재한 자금차입계약서의 사본을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조합이 법 제95조제3항 및 조례 제5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로부터 사업비를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융자기간·상환방법·이율 등은 융자금 신청 당시의 「서울특별시 융자계획 공고」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른 융자를 받은 후 조합장이 변경될 경우 새로운 조합장은 융자신청 당시 융자원리금의 상환과 관련하여 연대보증하거나 담보 등을 제공한 전 조합장의 지위를 일괄 승계한다. 다만, 조합설립추진위원장에 대해서는 최초로 선임된 조합장이 이를 일괄 승계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융자를 받은 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 조합의 융자원리금 상환채무는 그 당시 조합원이 법 제74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가격에 대한 법 제74조제4항제1호에 따른 평가액(법 제74조제4항제1호에 따른 감정평가가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 추정분담금 검증 후 통지된 평가액)의 비율에 따라 이를 인수한다. 제4항에 따라 융자원리금을 지급한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그 인수비율에 따라 구상할 수 있다.

제35조(정비사업비의 부과 및 징수) ① 조합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공사비 등 사업에 소요되는 정비사업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비사업비는 총회 의결을 거쳐 부과할 수 있으며, 추후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위치·면적·이용상황·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평하게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납부기한 내에 정비사업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의 범위 내에서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정비사업비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주】 그 밖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현금청산자 또는 제명자에 대한 조합원 지위 상실시점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용에 대해 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려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부과의무의 발생시점, 부과할 정비사업비의 종류와 범위, 해당자에게 부과할 부과금의 액수와 그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임.

제 7 장 사 업 시 행

제36조(이주대책) ① 사업시행으로 주택 등 건축물이 해체되는 조합원은 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자신의 부담으로 이주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이주비의 대출을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조합이 직접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거나, 시공자와 약정을 체결하여 대출을 알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내의 소유 토지 또는 건축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이주비를 대출받은 조합원 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조합원은 대출받은 이주비를 “신축건축물등”(사업시행으로 건설되는 건축물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주 시까지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은 조합이 정하여 통지하는 이주기한 내에 해당 건축물에서 퇴거하여야 하며, 세입자 또는 임시거주자 등이 퇴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조합원은 본인 또는 세입자 등이 제4항의 이주기한 내에 해당 건축물에서 퇴거하지 아니하여 기존 주택 등의 해체지연 등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변상할 책임을 진다.
⑥ 제5항에 의하여 조합원이 변상할 손해금액과 징수방법 등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해당 조합원에게 부과한다. 해당 조합원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89조에 따른 해당 조합원의 청산금에 그 부과금과 연체료를 부가하여 징수하거나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⑦ 사업시행으로 해체되는 주택의 세입자는 조례 제27조 및 제46조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 규정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하여는 동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하며, 세부 사항은 관리처분계획기준에 따른다.
⑧ 이주비 지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합과 시공사 또는 금융기관 등과 정한 약정에 따르며, 이주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의원회에서 정하여 운영한다.

제37조(공가발생 시 안전조치 및 지장물 철거 등) ①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법 제5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범죄예방대책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는 공가(空家)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사업시행구역 내의 건축물 등을 해체할 수 있으며, 건축물 등을 해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체적인 해체계획에 관한 내용을 30일 전에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및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건축물을 해체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해체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로서의 권리 ·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④ 사업시행구역 내의 통신시설·전기시설·급수시설·도시가스시설 등 공급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물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해체기간 및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건축물관리법」제30조 및 제34조 등에 의한 건축물 및 공작물 해체의 허가(신고) 및 멸실신고는 이주완료 후 조합이 일괄 위임받아 처리하도록 한다.

제38조(손실보상) ① 사업시행을 위한 손실보상 기준 및 절차는 법 제73조 및 시행령 제54조에 따르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② 조합과 손실보상 대상자 간에 손실보상을 위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조합은 토지보상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한다.
③ 사업시행구역 내의 철거 또는 해체되는 일체의 지장물 중 등기 또는 행정기관의 공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지장물은 보상대상이 될 수 없다.

제3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조합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63조 및 제65조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법령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40조(재개발임대주택의 매각 등) ① 법 제79조제5항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은 시행령 제68조 및 조례 제41조, 제42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매각한다.
② 재개발임대주택의 공급대상자 결정(그 판단기준을 포함한다) 및 순위 등은 조례 제46조에 의한다. 다만, 조합은 재개발임대주택에 대한 임차인의 자격·선정방법·임대보증금·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 및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매각하도록 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계획은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로 확정한다.

제41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① 사업시행으로 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권리자가 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상 금전의 반환청구권을 조합에 행사하여 해당 금전을 지급한 조합은 해당 조합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구상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조합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 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상권·전세권설정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민법」 제280조·제281조 및 제312조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2조(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① 조합이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의 소재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때에는 그 소유자의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감정평가는 법 제74조제4항제1호를 준용한다.

제 8 장 관리처분계획

제43조(분양통지 및 공고 등)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법 제72조제1

항 각 호, 시행령 제59조제1항 각 호 및 조례 제3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시행령 제59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및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공고하여야 한다.

【주】 법 제72조제1항, 시행령 제59조제1항, 조례 제32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열거하는 방법으로 각 조합의 정관으로 정할 수 있음

제44조(분양신청 등) ① 분양신청기간은 전조에 따른 통지일 이후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 만료일부터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조합이 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받아 법 제73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

【주】 필요한 경우 안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관련 총회의 직접 참석비율 및 의결요건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을 것이며, 기존조합원과 차별되는 별도의 패널티를 적용할수도 있을것임

③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에 시행령 제59조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의 방법으로 분양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우편등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 이외에 분양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법령 및 조례에 따라 조합이 작성한 분양신청공고 및 분양신청 안내문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주】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 조합은 재당첨금지에 의한 분양신청 불가 사항을 명시할 수 있음

제45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시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손실보상 금액은 조합과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하며,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에 관하여는 토지보상법 제68조제1항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의 수용재결 신청 등은 법 제73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른다.

④ 조합원이 조합에서 통지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 규정을 준용한다.

⑤ 분양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 분양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조합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당 분양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6조(관리처분계획의 기준) ① 조합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법 제7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분양신청 결과를 토대로 법 제76조, 시행령 제63조, 조례 제36조 및 제38조, 국토교통부 및 서울특별시 고시 등 관련 규정, 지침을 준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관리처분계획 기준은 총회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인가·고시로

결정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시행령 제61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그 수리 완료로 결정된다.

③ 관리처분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조합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주】 아래 각 호의 사항은 법·시행령·조례에서 규정한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조합은 정관 작성 현재의 관련규정 원문을 확인하여야 함

1. 종전 토지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소유토지별 지적공부에 따를 것. 다만,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의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주】 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에 의한다.

2.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소유 건축물별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하되, 법령에 위반하여 건축된 부분의 면적은 제외할 것

【주】 조례 제34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정관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소유건축물별 건축물대장이 아닌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 의사 및 사업여건을 고려하여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무허가건축물 등에 해당 단서조항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임

3.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며, 소유권 취득일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할 것. 다만, 특정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구청장 등이 발행한 무허가건축물 확인원이나 그 밖에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주】 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에 의한다.

4.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 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할 것

5.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은 넓히거나 좁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할 것

6.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 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도록 할 것

7.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넓혀 토지를 갈음하여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할 것

8.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할 것

9. 제8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76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라 조례 제36조제2항제3호 단서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1주택을 각각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

10. 제8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76조제1항제7호나목에서 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

가. 근로자(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토지주택공사등

다.「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양수한 자

11. 조합원이 소유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의 범위 또는 조합원이 소유한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 내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매매, 증여 및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에는 제외한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주】 2주택공급 여부 및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주택의 분양가격에 대해 조합원의 의사 및 사업여건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정관으로 정하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으로 확정하여야 함

12.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지상권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분양하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의 분양대상자는 조례 제36조에 따를 것

13. 1필지의 대지 및 그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법 제79조제4항 전단에 따라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2인 이상에게 분양하는 때에는 기존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사업시행방식이 전환된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의 권리가액을 말한다. 이하 제16호에서 같다)과 시행령 제59조제4항 및 제62조제3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비율에 따라 분양할 것

14. 분양대상자가 공동으로 취득하게 되는 건축물의 공용부분은 각 권리자의 공유로 하되, 해당 공용부분에 대한 각 권리자의 지분비율은 그가 취득하게 되는 부분의 위치 및 바닥면적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할 것

15. 1필지의 대지 위에 2인 이상에게 분양될 건축물이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분양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대지소유권이 주어지도록 할 것(주택과 그 밖의 용도의 건축물이 함께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지지분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토지의 소유관계는 공유로 한다.

16.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공급순위는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고려하여 정하되, 그 구체적인 기준은 조례 제38조에 따를 것

17. 그 밖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기준으로 결정할 것

제47조(국·공유지의 점유연고권 인정기준 등) 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국·공유지의 점유연고권 및 점유연고권자는 조례 제34조에 따라 그 경계를 기준으로 실시한 지적측량성과에 따라 인정하고, 점유연고권이 인정된 국·공유지를 법 제98조제4항에 따라 우선 매각하는 기준은 조례 제55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유연고권자는 제44조제1항의 분양신청기간내에 점유·사용하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한 매수 의사를 조합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분양신청을 하여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을 하는 때까지 해당 국·공유지의 관리청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점유연고권자가 국·공유지에 대한 매수 포기 의사를 조합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까지 해당 국·공유지의 관리청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국·공유지는 조합이 매수하고 해당 조합원의 권리가액 산정시 제외한다. 점유연고권자와 국·공유지의 관리청이 체결한 매매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④ 국·공유지의 매수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조례 등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8조(토지 등의 평가 등) ①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및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 평가액은 법 제74조제4항제1호가목에 따라 ○○구청장이 선정·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49조(조합원 분양)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의 분양대상자와 분양기준은 관련법령, 조례 및 이 정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를 통하여 결정한다.

【주1】 조례 제22조제4호에 따른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한 분양권 부여에 관한 사항” 또는 제5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을 소유한 자 중 구청장이 선정한 자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에 관한 사항”을 조합의 실정에 맞게 정관으로 정하여야 함

【주2】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자에 관해 조례 제36조 규정을 준수여야 함

제50조(일반분양) ① 대지 및 건축물 중 제49조의 조합원 분양분과 제51조의 보류지를 제외한 잔여 대지 및 신축건축물등을 체비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체비지 중 신축건축물등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하여야 하며, 그 공급가격은 제48조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참작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1조(보류지) ① 조합은 분양대상자의 누락·착오 및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확보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공동주택 총 건립세대수의 1퍼센트 범위의 공동주택과 상가 등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일부를 보류지로 정할 수 있도록 할 것
2. 조합이 제1호에 따른 1퍼센트의 범위를 초과하여 보류지를 정하려면 구청장에게 그 사유 및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 인가를 받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보류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1. 분양대상의 누락·착오 및 소송 등에 따른 대상자 또는 조례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적격세입자에게 우선 처분할 것
2. 보류지의 분양가격은 법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를 것
3. 제1호에 따라 보류지를 처분한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 제40조에 따라 분양할 것

제52조(분양받을 권리의 양도 등) ① 조합원이 조합원의 자격이나 지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에게 제9조제4항과 제10조제3항의 내용을 설명·고지하여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조합원변경 신고 등이 있는 경우, 그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경미한 조합설립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3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등) ① 조합은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람 실시 전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61조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람기간 · 장소 등 공람계획에 관한 사항
2. 사업시행계획의 개요 및 관리처분계획(안)
3. 분양대상자별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과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추산가액
4. 그 밖에 조합원의 권리·의무와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

② 조합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조합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관리처분계획(안)에 관한 이의신청을 조합에 제출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조합원의 이의신청 내용을 이사회에서 검토하여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안)의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 결과를 해당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조합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안)을 수정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그 내용을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조합원의 동 · 호수추첨은 한국부동산원 등 추첨기관의 전산추첨을 원칙으로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주】조합의 사정상 부득이하게 제5항의 전산추첨이 불가할 경우를 대비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 수기 추첨 등의 방법을 할 수 있음’ 등을 추가하여 정할 수 있음

제54조(관리처분계획의 통지 등) ①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

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가. 일반 분양분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다. 임대주택

라. 그 밖에 부대시설·복리시설 등

3.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4.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②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양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관리처분계획(변경)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그 변경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5. 분양대상자별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과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추산가액

③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합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제 9 장 사업 완료조치

제55조(준공인가 및 입주통지 등) ① 조합이 ○○구청장으로부터 준공인가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과 입주기간을 조합원 등 분양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때에는 통지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유자별로 통지내용에 따라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류지 또는 일반분양분에 대해서는 조합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분양받은 자가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6조(이전고시 등) ① 조합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공사완료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 및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57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법 제87조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제58조(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 조합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제59조(청산금 및 청산기준 가격의 평가) ① 조합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여 제46조의 관리처분계획기준에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주】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을 정관등으로 정하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음

③ 조합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평가하는 경우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위치·용도·이용 상황·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④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및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법 제74조제4항제1호가목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주】 시행령 제76조제4항에 따라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건축물의 가격평가를 할 때 층별·위치별 가중치를 참작할 수 있음

⑤ 제4항의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산정을 위한 평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가산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 제95조에 따른 보조금은 공제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조사·측량·설계 및 감리에 소요된 비용
2. 공사비
3. 정비사업의 관리에 소요된 등기비용·인건비·통신비·사무용품비·이자 그 밖에 필요한 경비
4. 법 제95조에 따른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5.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등이 부담한 비용은 제외한다)
6. 안전진단의 실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회계감사, 감정평가, 그 밖에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등

【주】 시행령 제76조제3항제6호에 규정에 따라 “그 밖에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정관등에서 정한 비용”을 가산하는 항목에 포함할 수 있음

제60조(청산금의 징수방법) ①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주】 위탁에 앞서, 국토부표준정관처럼 ○회 이상 납부를 최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수 있음.

② 제59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한 때에는 조합은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③ 청산금을 지급(분할지급을 포함한다)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제61조(조합의 해산) ① 조합장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조합장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조합해산을 위한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주】조합의 해산절차에 대해서는 법 제8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에 따라야 하며, 같은 조문 제3항에 따라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을 의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청장이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③ 조합이 해산을 의결한 때에는 해산의결 당시 조합장이 대표청산인이 되고, 해산의결 당시의 이사는 청산인이 된다. 다만, 해산 총회에서 ○○구청장에게 대표청산인이 될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기로 의결한 경우 ○○구청장이 선정한 전문조합관리인을 대표청산인으로 할 수 있다.

【주】청산인이 될 자를 임원이 아니라 ‘이사회 구성원’으로 하여 감사가 집행기관인 청산인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을 것임.

④ 관계법령 및 이 정관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청산인의 임무 및 보수 등) ① 해산한 조합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② 청산인 전원으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청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다만, 청산위원회는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대표청산인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

1. 현존하는 조합의 사무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처분
4. 「민법」 제85조부터 제86조 규정에 따른 해산등기 및 해산신고
5. 「민법」 제94조 규정에 따른 청산종결의 등기 및 신고
6. 그 밖에 청산에 필요한 사항

③ 청산인의 권리・의무・보수 기타 청산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청산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청산위원회 의결사항 및 의결방법 등을 포함한다)은 제61조에 따른 해산 총회에서 미리 의결하여야 한다.

④ 「민법」 제84조에 따라 청산인을 해임할 중 중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해산의결 당시 조합원이었던 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법원에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3조(채무변제 및 잔여재산의 처분) 청산 종결 후 조합의 채무 및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 또는 해산총회 의결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산의결 당시의 조합원에게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부담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주】 해산의결 당시가 아니라 이전고시 당시를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임.

제64조(관계서류의 이관) 조합은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조례 제8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 10 장 보 칙

제65조(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사용) ① 조합임원(청산인을 포함한다) 및 직원은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 운영지침”에 따라, 해당 조합의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관리・담당한다.

② 조합은 관련법령, 조례, 이 정관 및 조합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자료 등을 공개・등록하고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6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① 조합임원 및 청산인은 법 제124조 각 호 및 시행령 제94조 각 호에서 공개하도록 규정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아래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해당 서류 또는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정비사업 정보몽땅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 정보몽땅 등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자료 중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1.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2. 설계자・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8의2. 법 제111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

9. 결산보고서
10.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11.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12.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13. 정비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14. 설계자·시공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15.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주】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및 시행령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대상이 되는 자료의 목록을 열거한 것이며, 조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

②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복사 방법 등을 시행령 제94조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이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주】 조합은 업무처리의 효율성 및 조합원의 편의를 위해 '정보공개 청구서' 서식을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음

④ 조합원이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법 제124조제4항 각 호를 포함한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제3항의 방법으로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조합장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열람·복사 방법 등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주】 열람·복사방법은 조합이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름

⑤ 제4항의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비용납부의 방법, 시기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제87조 및 조례 별표 4에 따른 자료공개에 따른 수수료 금액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⑥ 제4항에 따라 열람·복사를 요청한 조합원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7조(계약의 효력) 조합이 사업시행에 관하여 시공자 및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협력업체와 체결한 계약은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합원에게 효력을 갖는다.

제68조(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주민협의체) 행위의 효력) 조합설립인가일 전에 조합의 설립과 사업시행에 관하여 추진위원회(주민협의체)가 행한 행위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합이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69조(정관의 해석) 이 정관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일차적으로 이사회에서 해석하고, 그래도 이견이 있을 경우는 대의원회에서 해석한다.

제70조(분쟁 및 소송) ① 조합과 조합원간에 법률상 다툼이 있는 경우 소송관할 법원은 조합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② 조합은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기 전 법 제116조 및 제117조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주】 조합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고소·고발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실익이나 장단점 등에 관하여 비교·검토한 결과를 대의원회에 보고하도록 정할 수 있을 것임.

제71조(민법의 준용 등) ① 조합에 관하여는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민법」, 이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조합의 운영과 사업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련 행정기관의 지침·고시 또는 유권해석 등에 따른다.

③ 이 정관이 법 기타 관계법령 및 법 제1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제정하여 운용중인 공공지원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 정관의 변경절차에 관계없이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관계법령의 내용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 이 표준정관은 법·시행령·규칙 및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조합의 의무, 업무처리방법의 근거 조문 및 그 내용을 필요에 따라 최대한 상세히 기재하였으나, 오늘날 법령 등의 개정이 잦은 점을 고려하여 적법한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은 법 원문을 수시로 확인해야 함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정관은 조합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② 변경된 정관은 조합설립변경인가(신고)일을 기준으로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변경된 정관의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따른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정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표 2]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정관은 모든 조합원이 지켜야 할 조합의 내부 규범으로서 조합의 사업시행, 의사결정,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하여 조합이 관련법령 및 기준에 적법하게 사업을 안정적·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① 본 조합의 명칭은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명칭은 ○○아파트 재건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조합 업무규정) 조합 업무규정이란 총회에서 조합원의 의결로 제정하는 조합의 규정을 말하며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
1.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에 따라 작성된 "조합 행정업무규정"
2.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에 따라 작성된 "조합 예산·회계규정"
3.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선거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작성된 "조합 선거관리규정"
4.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을 참고하여 작성된 "조합 의사진행규정"

제4조(사업시행구역) 조합의 사업시행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으로서 서울특별시 ○○구 ○○동 000-00번지 외 ○○필지(이하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로 하고, 토지의 총면적은 00,000.00㎡(약 00,00평)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편입 또는 제척되는 토지 등이 있거나, 기본계획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 지적측량 또는 착오의 발견 등에 따라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시행구역과 토지의 총면적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사무소) ①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구 ○○로 ○○ (○○동, ○○빌딩)에 둔다.
② 조합사무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전할 수 있으며, 사전에 제8조에 따라 조합원에게 조합사무소의 이전시기·주소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방법) ① 조합원은 소유한 토지 및 건축물을 조합에 현물로 출자하고, 조합은 법 제23조제3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주】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피스텔의 연면

적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이어야 함

② 조합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사업비 일부를 서울특별시(정비사업 융자금),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정한 시공자 · 설계자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 금융기관 기타 협력업체 또는 조합원 등으로부터 대여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조합은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 법 제25조제2항에서 정한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⑤ 조합은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구분소유자가 있는 경우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구분소유자의 동의로 한다)를 얻어야 한다.

제7조(사업기간) 조합의 사업기간은 조합설립등기일부터 제58조제2항제5호의 청산종결등기일까지로 한다.

제8조(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통지·공고방법) ① 조합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합원에게 성실히 통지·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공고 방법은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조합원에게 “등기우편등”(등기우편 및 기타 발송이 증명되는 우편이나 우체국택배 등 우편물의 안전한 송달을 보증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등기우편등이 반송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할 것. 다만, 조합원이 통지내용물을 직접 수령하기를 원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에게 직접 전달하고 해당 조합원으로부터 그 수령을 확인하는 서면을 받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주】 직접수령에 관하여는 최초 등기우편등의 발송부터 적용할 것인지, 추가 일반우편 발송에만 적용할 것인지는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이며, 직접수령이 가능한 내용물, 전달할 사람, 수령할 사람, 전달·수령장소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임.

2. 조합은 “게시판”(조합사무소 및 조합원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둔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게시판에 게시한 날부터 3월 이상 조합사무소에 관련서류와 도면 등을 비치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3. 해당 내용은 법 제119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구축·운영하는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정비사업 정보몽땅”이라고 한다)에도 공개할 것(조합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에의 게시 및 문자메세지 등의 발송을 병행 가능) 다만, 특정인의 권리에 관계되거나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요지만을 공개할 수 있다.

③ 제2항제1호의 등기우편등이 발송되고, 제2항제2호의 게시판에 공고가 있는 날부터 조합원에게 통지·공고된 것으로 본다.

【주】 그 밖에 주소 등 우편물송달장소의 신고의무, 그 불이행시의 효과 등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을 것임.

【주】 한편, 조합원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도 있을 것임

제9조(정관의 변경) ①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변경하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주】 법 제40조제4항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의원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도, 총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도 있을 것임

【주】 조합원 100인 이하의 조합이 대의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총회 의결로 하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총회 의결요건은 조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③ 정관 변경과 관련하여 조합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사람의 대표자는 소집요구서(변경 전·후 비교표 및 변경사유를 기재한 서면)를 작성하여 조합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합장은 소집요구 제출일로부터 ○일 이내에 정관변경(안)에 대한 안건 처리를 위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계획과 그 내용을 정비사업 정보몽땅 및 게시판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주】 조합장은 조합원 등에 의해 발의된 정관변경(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소집을 요구하는 사람의 대표자가 정관변경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려는 경우 제20조에 따라야 함

④ 조합은 정관변경에 대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거나 경미한 변경신고 수리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게시판에 공고하고, 변경전·후 비교표 및 변경된 정관 개정 전문을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 2 장 조 합 원

제10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조합원은 법 제2조제9호나목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로 한다. 다만,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까지 조합설립동의서를 조합에 제출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1인이 둘 이상의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수에 관계없이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1세대에 속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조합원이 하고, 조합의 처분, 법률행위 기타 행위는 그 대표조합원에게 한다.

【주】 그 밖에 대표조합원이 한 법률행위 기타 행위의 효력과 조합이 대표조합원에 대하여 한 처분 기타 행위의 효력이 수인에게 미치는지, 만일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않거나 선임하였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수인이 개별적으로 한 법률행위 기타 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볼지 등에 관하여도 정할 수 있을 것임.

④ 양도·상속·증여 및 판결 등으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이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이 변경된 것으로 보며, 새로운 조합원은 종전 조합원이 행하였거나 조합이 종전 조합원에게 행한 처분, 조합청산 시 권리·의무에 관한 범위 등을 포괄승계한다.

⑤ 사업시행구역내의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양수한 자라 하더라도 법 제39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법 제39조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주】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를 확인하여 제5항 작성

⑥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무허가건축물로서 무허가건물확인원, 재산세과세대장 그 밖에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통하여 자기소유임을 입증하여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

【주】 법 제35조제4항(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 해당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특정무허가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소유한 자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내지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조례 제22조제2호).

⑦ 조합원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즉시 상실한다.

⑧ 법 제73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서 정한 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같은 항 제4호에서 정한 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일 다음날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주】조합이 법 제72조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법 제73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자격을 다시 부여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제43조제2항 참조).

【주】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조합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다. 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손실보상 대상자는 아래와 같음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법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4. 법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⑨ 조합원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법 또는 이 정관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명 전에 해당 조합원에 대해 청문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청문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제명된 조합원에 대해서는 제40조를 준용한다.

제11조(조합원의 권리·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대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청구권
2. 총회의 출석권·발언권 및 의결권
3. 임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4. 대의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5. 정비사업비, 청산금,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한다)등의 비용납부 의무

【주】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현금청산자에 대한 조합원 지위 상실 시점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용에 대해 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려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별도의 규정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임.

6. 이주 및 건축물 해체의 의무
7. 그 밖에 관련법령 및 이 정관, 총회 ·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의무

② 조합원의 권한은 평등하며 권한의 대리행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법 제45조제5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조합원의 자격은 변동되지 아니한다.

【주】 위 규정은 법 제45조제5항에서 정한 “의결권”(단, 제3호의 경우는 다름)에만 국한된 규정임. 그 밖의 조합원의 권리를 대리인이 행사할 수 있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대리행사를 인정할 사정 내지 상황, 대리인의 자격(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특히 대리행사할 권한과 그 범위 등을 정할 수 있을 것임.

【주】 조합원 권한 대리 행사를 위한 별지 제4호서식 등의 위임장, 대리인 지정서 제출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법으로 규정한 사항 외에 대리인 지정서의 구체적인 첨부서류(해외거주자의 추가 필요서류,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지정서 제출 여부 및 제출서류) 및 그 효력 등을 정관으로 정하여 추후 관련 대리권의 다툼을 줄일 수 있을 것임 (이 경우, 제22조제5항과 일치시켜야하며, 해당 항을 준용할 수 있음)

③ 제10조제4항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조합원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조합원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조합원이 대표조합원, 대리인 또는 조합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인감 등을 변경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이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대항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주】 대표조합원 변경신고서, 대리인 변경신고서, 조합원정보 변경신고서 서식을 추가로 작성할 수 있을 것임.

【주】 조합원변경신고 등을 해태한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의 구체적인 내용과 변경신고 완료 전에 종전 조합원(대표조합원 또는 대리인)이 하거나 또는 종전 조합원(대표조합원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한 처분, 법률행위 기타 행위의 효력에 대해 정할 수 있을 것임. 변경 전 성명, 주소, 연락처 등에 대하여 한 처분, 법률행위 기타 행위의 효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임.

④ 조합원은 조합이 사업시행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조합의 승낙이 없는 한 이를 회수할 수 없다. 이 경우 조합은 요구서류에 대한 용도와 수량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합의 승낙이 없는 한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시공자 등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

제12조(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 ① 시공자의 선정·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취소는 법 제29조, 조례 제77조,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및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라야 한다.

【주】 법 제25조제1항제1호 및 조례 제73조에 의한 공동사업시행방식의 경우 서울특별시 고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을 따라야 할 것임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에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된 시공자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은 법 제45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주1】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제11조에 따라 조합은 현장설명회 시 공사도급계약서(안)을 포함한 공사도급계약서 작성에 대해 건설업자등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같은 기준 제7조에 따라 선정계획(안)에 대하여 공공지원자의 검토를 받은 후 대의원회에서 의결하여야 함

【주2】 변경계약체결의 내용 중 조합의 금전적인 부담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사항(내역변경 또는 감액계약 등)에 대하여는 총회에서 대의원회 의결로 위임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정관에 관련내용을 명시해야 함 (이하 본 장에서 같다)

【주3】 공동사업시행방식의 경우 서울특별시 고시 「정비사업 표준 공동사업시행 협약서」 적용을 원칙으로 함

③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는 법 제45조제7항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5조에 따라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여야 하며,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을 얻은 건설업자등을 시공자로 선정한다. 다만, 총회에 상정된 건설업자등의 수가 3이상인 경우 최다득표한 건설업자등을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④ 시행령 제42조제2항제1의2호에 따른 시공자 선정 취소 또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시공자 선정 무효를 위한 총회 의결은 조합원 100분의 20 이상 직접 출석 및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주】 법 제45조 및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는 조합원 100분의 20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하며,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정 무효를 위한 총회는 조합원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와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임.

⑤ 조합은 법 제29조의2 및 이 정관에 따른 공사비 검증요청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공자로부터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기준」에 따른 공사비 검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검증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신청하고,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검증보고서는 총회에 공개하여야 하며, 변경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약 체결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주】 법 제29조2에 따른 공사비 검증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제8조의2(공사비 검증)에 시공자(수급인)이 공사비 검증에 필요한 서류를 조합(도급인)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사도급계약 체결 시 이 조항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아야 함. 또한, 시공자가 검증사유 제2호 및 제3호의 계약금액조정을 청구할 경우 공사비 검증에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 공사비 검증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것임

1.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검증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
2. 공사비의 증액 비율(당초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100분의 10 이상
 나.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100분의 5 이상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이후 공사비의 증액 비율(검증 당시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이 100분의 3 이상인 경우

⑥ 조합은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제4항에 따라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법 제72조에 따른 분양공고 전에 설계도면, 변경 전·후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 등 공사비 내역을 증빙하는 서류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증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⑦ 조합은 일반분양 후에 공사도급계약금액의 증가를 수반하는 설계변경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⑧ 조합은 최종 공사도급변경계약 및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위해 공사비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일 1년 전에 시공자에게 공사비 검증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등 해당 절차 이행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주】 조합은「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에 따른 입주자모집 공고에 명시된 입주예정일을 기준으로 입주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계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제13조(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 ① 설계자 선정·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취소는 법 제29조, 조례 제77조,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및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추진위원회가 이 조항 본문에 따라 적법하게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설계자는 이 정관에 의해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설계자로 본다.

②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설계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계약내용에 따라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가 부여된다. 다만, 총회에 상정된 입찰참여자의 수가 ○ 이상인 경우 최다득표한 입찰참여자를 설계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1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계약) 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취소는 법 제29조, 조례 제77조,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및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하여 제1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설계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본다.

③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법 제106조제1항에 의해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업무계약의 해지여부에 관해서는 제106조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처분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업무의 계속수행에 대한 동의여부에 관해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주】 법 제106조 제5항 제1호, 제2호. 이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할 수 있으며, 100인 이하 조합으로서 대의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 의결로 결정

④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법 제106조제5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즉시 업무를 중지시키고 관련서류를 인계받아야 한다.

제 4 장 임원 등

제15조(임원) ① 조합에는 조합원으로서 법 제41조제1항에 의한 자격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1인
2. 감사 ○인
3. 이사 ○인

【주】 조합임원의 수는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한 범위(이사 3명 이상, 감사 1명 이상 3명 이하.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 5명 이상) 조합의 규모 등 실정을 고려하여 정함

【주】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감사의 경우에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이사의 경우에는 “3명(또는 5명) 이상 ○명 이하”로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는 선임, 보궐선임 또는 연임 총회를 하면서 실제 몇 명을 선임할지 여부를 정해야 할 것이고, 그 결정주체,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위계에 맞춰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에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임.

② 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조합장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 조합장을 제외한 조합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대의원회가 이를 보궐선임한다.

【주】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조합임원은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한 자이거나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함. 다만, 조합장은 선임일로부터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 또는 영업을 하여야 함

③ 제2항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조합장을 제외한 조합임원의 입후보자가 선임 또는 보궐선임하려는 수 이하인 경우에는 득표수에 상관없이 모두 선임 또는 보궐선임된 것으로 보며, 조합장을 제외한 조합임원의 입후보자가 선임 또는 보궐선임하려는 임원 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선임 또는 보궐선임하려는 임원 수에 이르기까지 다득표순으로 선임할 수 있다.

【주】 상근이사를 둘 경우 총회에서 선출된 비상근이사들 중에서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선출할 수도 있지만, 총회에서 비상근이사와 구별하여 직접 선출할 수도 있는바, 그때에는 선출방법(특히 의결정족수)과 지위(상근이사만을 사임하고 평이사로 남을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정하여야 할 것임.

④ 조합장이 궐위되거나 이사 또는 감사의 수가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한 수에 미달된 경우 임원 선임(연임, 보궐선임, 등)을 위한 조합장 직무대행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⑤ 조합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되,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조합임원의 임기는 조합설립등기일로부터 개시하며, 그 후임자의 임기는 선임된 날의 다음날부터 개시한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선임

된 임원(조합장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주1】 법 제41조제3항에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주2】 연임의 기준 및 절차를 정관 또는 조합 선거관리규정에 상세히 규정할 수 있을 것임

⑥ 조합은 안정적인 조합 운영 및 조합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조합임원의 임기만료 전 새로운 임원의 선임 또는 연임 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기 만료 전 임원 선임 또는 연임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 기존 조합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등)

① 조합임원은 그 임기동안 또는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원의 권익 보호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조합장은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이사는 상근여부를 불문하고 조합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 상정된 사항을 심의 · 의결하며, 이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합업무분장(표)에 따라 조합의 사무를 분장한다.

【주】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별지 제3호서식의 “업무분장”을 정관의 별지 서식으로 추가하여 조합임원별 업무분장과 대직 체계를 정관으로 명시하도록 함

④ 감사는 조합의 사무 및 재산상태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하고 정기총회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하여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 감사와 회계감사의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

⑤ 감사는 조합의 재산관리 또는 업무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의원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보고를 위한 대의원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의 요구에도 조합장이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직접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대의원회 의결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가 대의원회와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⑥ 감사는 제5항의 직무위배행위 등으로 인해 감사가 필요한 경우 조합임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감사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주】 감사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

⑦ 감사는 조합장 또는 이사가 조합과 자기를 위한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에는 조합을 대표한다.

⑧ 조합장이 사임, 해임, 당연퇴임 등으로 인하여 궐위된 경우 상근이사 중 연장자(궐위 등으로 상근이사가 없는 경우 이사 중 연장자), 법원에서 파견된 직무대행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주】 조합장 부재 시 조합의 업추무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직무대행체제를 조합 임원 구성 등 조합 실정에 맞도록 정하여 정관에 명시해야 함

⑨ 제8항에 따라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할 조합임원이 사임 · 해임 · 당연퇴임 등으로 부재한 경우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조합장 및 조합임원 선임을 위한 총

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주】 법 제49조에 따라 「민법」 제70조를 준용하여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음

⑩ 제8항 및 제9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선정한 전문조합관리인이 조합임원의 직무를 대행한다.

【주】 법 제41조제5항은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일정기간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에 조합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⑪ 조합은 그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근하는 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상근임원의 선임, 업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조합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⑫ 조합임원은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조합·추진위원회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으며, 사업과 관련된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관련단체의 임원·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주】 이에 위반하여 임원 등을 겸하는 경우 그 겸하게 된 지위 중 어느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인지 정할 수 있을 것임.

⑬ 조합임원은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법 제115조 및 조례 제63조에 따른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선임일 직전 3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 교육이수여부는 그 증명서등을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공개하는 방법 등으로 확인할 수 있음

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등) ①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임원이 임기 중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또는 법 제41조제1항에서 정한 조합임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해임절차 없이 그 즉시 당연퇴임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④ 조합임원으로 선임된 후 그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까지 제18조제3항의 절차에 따라 그 자격과 직무수행을 정지할 수 있다.

【주】 이 규정을 둘 경우 무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대한 보상대책(상근의 경우 급여, 4대보험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제18조(임원의 해임 등) ① 임원이 직무유기, 업무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을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법 또는 이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에게 총회의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주】 임원의 해임은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할 수도 있음.

② 조합임원이 자의로 사임한 경우, 제1항에 따라 해임된 경우 또는 제17조 제2항에 따라 당연퇴임한 경우에는 법, 이 정관 및 조합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임절차가 진행중인 임원이 해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임원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조합장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이 해임되는 경우에는 제16조제8항에 따른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조합장의 직무수행 정지 여부를 의결할 수 있다.

④ 조합장을 제외한 조합임원이 자의로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장에게 그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이를 이사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임의사를 표시한 해당 임원은 사임에 대한 이사회 의결이 있거나 후임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그 임기가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조합이사 전원이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대의원회”로 보며, 조합장은 이사회의 개최 없이 대의원회를 바로 소집할 수 있다.

【주】 임원이 사임한 경우, 대의원과 마찬가지로(제24조 제5항) 이사회의 의결이나 수리행위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수리행위가 종료되어 사임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직무를 정지시킬 실익이 있을 것임.

제19조(임직원의 보수 등) ① 조합은 상근임원 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원의 직무수행으로 발생되는 경비 등은 조합 행정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조합에 상근하는 유급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수, 채용방법, 보수 등 근무조건 기타 유급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제 5 장 조직 및 운영

제20조(총회의 설치) ① 조합에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조합장이 소집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1회,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 전에 개최하여 다음 회계연도의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월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변경할 수 있다.

【주】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 제19조 제1항은 “조합등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당해 연도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년도 동기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즉 당해 연도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성립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그런데 조합예산을 위한 임시총회를 잘 개최하지 않는 현실에서 정기총회마저 새 회계연도에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정기총회에서 예산이 의결될 때까지는 준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문제가 매번 발생함. 따라서 대한민국국회처럼 매번 개최하여야 하는 정기총회를 회계연도 개시 전에 개최하도록 하여 그때 예산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럼에도 부득이 해를 넘기는 경우에는 대의원회 의결로 준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

람직함.

【주】 정기총회 개최를 연기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에 대해 별도로 정할 수 있을 것이며, 총회개최를 무기한 연기하거나 지체하지 않도록 연기 기간을 정관으로 제한하되,, 「서울특별시 조합 등 표준 예산 · 회계규정」 제19조에 따라 준예산 적용가능 기간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최대 1년이므로 동일 회계연도 내에 반드시 정기총회가 개최되도록 정해야 함

④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로부터 2월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때
2.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때
3.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임원의 권리 · 의무 · 보수 · 선임방법 ·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때

⑤ 제4항의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2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가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요구한 자의 대표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집한다.

⑥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하거나 일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변경사유 등에 관하여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2항부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4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 장소 및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사업정보몽땅 및 게시판등에 게시하여야 하며 각 조합원에게는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제7조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5호의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 회의개최 1개월 전에 법 제74조제5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⑧ 총회는 제7항에 의하여 통지한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⑨ 제4항에 따라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요구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조합은 법 제44조제2항 및 시행령 제41조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집을 요구한 자가 본인인지 확인하여야 하며, 소집요구에 따른 총회가 개의 정족수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요구 안건이 부결된 때에는 당해 조합원의 소집요구서 및 해당 총회에 제출된 서면의결서 등의 효력은 상실된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법 제45조 및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1. 정관의 변경(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법 또는 이 정관에서 총회의 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 이자율 및 상환방법
3.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4.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5. 시공자 · 설계자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 취소 및 변경
6.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및 변경(제74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선정 · 계약하는 감정평가법인

등은 제외한다),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및 변경의 위탁에 관한 사항
7.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임기중 궐위된 자를 보궐선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해임
8. 조합임원의 연임
9. 조합장의 보궐선임
10. 정비사업비의 변경
11.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12.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13.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14.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법 제5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시행령 제46조의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5.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행령 제61조의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6. 법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의 해산과 조합 해산시의 회계보고
17. 법 제89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지급(분할징수·분할지급을 포함한다)
18. 법 제93조에 따른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19. 법 또는 이 정관에 따라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20. 그 밖에 법 또는 이 정관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

제22조(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는 법 또는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제21조제14호 및 제15호는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법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0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정관의 변경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④ 총회의 의결은 법 및 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 제45조제7항에 따라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을 위한 총회,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한 총회,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⑤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법 제4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출석으로 보며,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직접 출석으로 본다.
【주1】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대리인 지정서의 구체적인 첨부서류, 해외거주자의 추가 필요서류,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지정서 제출여부 등을 정할 수 있음
【주2】 필요한 경우 국토부 지침(23.7.20.)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전자적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

⑥ 조합은 서면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며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합원은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면결의서에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외에 제20조제7항에 따라 조합이 통지한 방법으로도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서면의결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거나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서면의결권의 행사기간
2. 서면결의서 제출장소 및 제출방법
3. 서면결의서 서식을 포함한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 안내

【주】법 제45조제6항에서 “조합은 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9항에서 “서면의결권 행사 및 본인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인확인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해당 내용을 조합원에게 안내해야 하며, 서면결의서와 특히 신분확인자료의 제출방법은 조합명의 또는 조합장 명의의 휴대폰, 이메일이나 팩스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

⑦ 조합원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때에는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가 표시된 서면결의서가 총회 전일까지 조합에 도착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은 총회 당일에 현장출석하여 투표개시 선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직접 또는 제5항에 따른 대리인을 통하여 서면결의서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철회하고 직접 투표할 수 있다.

⑧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5조제8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또는 시행령 제42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보며, 서면의결권 행사는 병행하지 아니한다.

⑨ 총회 소집결과 개의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재소집하여야 하며, 재소집의 경우에도 개의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대의원회로 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시행령 제4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총회운영 등) ① 총회는 이 정관 및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을 따라 운영하되, 별도의 조합 의사진행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총회 안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등 조합원이 아닌 자를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1. 조합직원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시공자·설계자 기타 협력업체의 임직원
3. 그 밖에 의장이 총회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발언·행동 등으로 총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4조(대의원회의 설치) ① 조합에는 대의원회를 둔다.

② 대의원의 수는 ○○인이상 ○○인 이하로 한다.

【주1】법 제46조에 따라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의 대의원회 설치는 의무이며, 대의

원의 수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명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 가능)

【주2】 대의원의 수는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조합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대의원이 궐위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가급적 법 제46조제2항에서 정한 최소 대의원의 수보다 일정규모 이상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

③ 조합장은 대의원회 의장이 되며, 이 경우 조합장은 대의원으로 본다.

④ 대의원은 후보자 등록 공고일 현재 사업시행구역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년 이상 소유한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며, 대의원 구성 시 조합의 규모나 거주형태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이해관계가 수렴될 수 있도록 한다.

【주】 대의원의 피선거권 자격에 대하여 조합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⑤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은 대의원에 관하여 준용하며, 조합장이 아닌 조합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그 밖에 대의원의 선임 또는 궐위된 대의원의 보궐선임 방법 및 절차 등은 조합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⑥ 대의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는 제15조 제5항을 준용한다.

⑦ 대의원이 자의로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장에게 그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이를 이사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사임의사를 표명한 대의원은 사임에 대한 이사회 의결이 있거나 후임 대의원이 선임될 때까지 그 임기가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주】 대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임하여 조합운영 및 사업추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조합원에 부당한 손해를 끼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임 절차를 정관에 명시하여야 하며, 사임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재적 대의원 수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임.

⑧ 대의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연속으로 대의원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⑨ 제5항, 제7항 및 제8항의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5조(대의원회 개최) ① 대의원회는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 정관에 따라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경우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대의원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청구하는 때
2.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대의원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청구하는 때

【주】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라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요구하는 때 조합장은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해야 함

② 제1항의 경우 제20조제9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집청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14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지체없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소집을 청구한 사람의 대표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소집한다. 이 경우 감사 또는 소집을 청구한 사람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의원회 소집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대의원

에게 통지하고, 정비사업 정보몽땅 및 게시판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상 시급히 대의원회 의결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에 통지하고 대의원회에서 안건상정 여부를 묻고 의결할 수 있다.

【주】 제20조제7항과 같은 형식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임.

【주】시행령 제44조제7항에 대의원회의 소집공고 내용은 정관으로 정해야 하며, 법 제46조에 따라 대의원의 의결방법 등은 시행령 제44조에서 정한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할 수 있음

⑤ 제20조제8항은 대의원회에 준용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한 안건으로서 재적대의원 과반수가 직접 참석하고 직접 참석한 대의원 과반수가 그 채택에 동의한 안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대의원회 의결사항)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기 중 궐위된 임원(조합장은 제외) 및 대의원의 보궐선임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방법
3. 총회 상정을 위한 안건의 사전심의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4.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의 용역 계약(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업체의 선정은 제외)
5.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정관의 경미한 변경
6. 법 제50조제1항 단서 조항 및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7. 법 제74조제1항 단서 조항 및 시행령 제61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8. 조합 업무규정(행정업무규정·예산회계규정·선거관리규정 등)의 개정
9. 준공인가 후 소송 제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이 정관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

【주】법 제46조에 따라 대의원은 시행령 제43조에서 대의원회가 총회의 의결을 대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외 대의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을 조합원 의사를 고려하여 추가할 수 있을 것임

제27조(대의원회 의결방법) ① 대의원회는 법 및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2조제8항에 의하여 대의원회가 총회의 의결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주】시행령 제44조제8항에 따라 대의원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이상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적 대의원의 수가 법 제46조제2항에서 정한 최소 대의원 수(이하 “법정 최소 대의원 수”라 한다)에 미달되더라도 법정 최소 대의원 수의 4분의 3 이상인 경우에는 제26조제3호 중 총회상정을 위한 안건의 사전심의에 한하여 법정 최소 대의원 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대의원은 대리인을 통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서면으로 대의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주1】대의원회의 서면의결권 행사 가능여부 및 구체적인 행사 방법에 대해 조합 자체적으로

정해야 할 것임

【주2】 조합 실정을 고려하여 대의원회 의결에 전자적방법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나, 전자적방법을 위한 의결권 행사 시에는 본인명의의 휴대폰 또는 아이피를 사용하게 하는 등 본인인증을 위한 적절한 방안이 담보되어야 함

④ 특정한 대의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그 대의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하며, 이사·감사는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의 설치) ① 조합에는 조합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조합장이 소집하며, 조합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일전에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으로 이사에 통지하고, 게시판 및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상 시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에 통지하고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주】 이사회의 사무, 사무처리 일정등을 고려하여 정기 이사회 개최일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임

제29조(이사회의 사무)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집행한다.

1. 조합의 예산 및 통상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 및 대의원회의 상정안건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조합 업무규정 등의 제정 및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 또는 대의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집행 및 의결
5.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공람의견 심사
6. 주된 사무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에서 이사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7. 그 밖에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이사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의장인 조합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주】 총회장소나 일시 등의 변경을 위해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은 소모적이므로, 조합장에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범위를 정하여 위임함으로써 시간단축 및 비용절감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제30조(이사회의 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대리인 참석이 불가하며, 조합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주】 조합장이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개의 및 의결정족수에 산입하여야 하고, 의결권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것임.

② 특정 임원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경우 해당 임원은 그 안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주1】 이사회의 출석방법(서면 등), 출석인정여부 및 의결권 행사 방법에 대하여 조합실정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주2】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합원 의사를 고려하여 제28조제3항 제2호의 총회 및 대의원회 상정안건 심의를 위한 이사회가 개의 정족수 부족으로 2회 이상 개최되지 못하는 경우 등에 한해 조합장이 직권으로 대의원회 또는 총회에 상정하여 조합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이 경우 조합장은 대의원회 또는 총회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항임을 보고하여야 함

제31조(감사의 이사회 출석권한 및 감사요청) 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② 이사회는 조합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에게 조합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의사록의 작성 및 관리) ① 조합임원(청산인을 포함한다)은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총회 또는 시행령 제94조제3항에서 정한 중요한 회의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주】 시행령 제94조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중요한 회의'란 아래와 같다.

1. 용역 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및 업체 선정과 관련된 대의원회·이사회
2. 조합임원·대의원의 선임·해임·징계 및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자격에 관한 대의원회·이사회

②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속기사가 작성한 속기록 또는 의사록은 이를 법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사록으로 보며, 제1호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주요 논의내용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대의원 또는 이사 및 감사가 서명하여야 한다.

【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의사록 작성에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 별지 제15호 "의사록(예시)" 서식을 사용할 수 있음

2. 의사록은 회의개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게시하고 조합사무소에 비치하여 조합원등이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 운영지침」에 회의개최일로부터 15일 이내 의사록 등을 정보몽땅에 게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3. 그 밖에 의사록의 작성 및 관리는 법 및 이 정관등에 따른다.

제 6 장 재 정

제33조(조합의 회계) ① 조합의 회계는 매년 1월 1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당해연도는 조합설립등기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합의 예산·회계는 조합 예산·회계규정에 따르며, 조합 예산·회계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조례, 이 정관, 「중소기업회계기준」 등을 준용한다.

1. 예산의 편성과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2. 세입 · 세출예산서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수입의 관리 · 징수방법 및 수납기관 등에 관한 사항
4. 지출의 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5. 계약 및 채무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회계문서와 장부에 관한 사항

③ 조합은 조합 예산 · 회계규정 별표 2 회계처리규정 세칙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년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총회에 보고하거나 조합원에게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대의원회 의결을 받은 결산보고서는 의결 후 15일 이내에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공개하여야 하며, 3개월 이상 조합사무소에 비치하여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조합에 대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에 관하여는 법 제112조에 따른다.

⑤ 조합은 제4항에 의하여 실시한 회계감사 결과보고서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공개하고, 3개월 이상 조합사무소에 비치하여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재원) ①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조달한다.

1. 조합원이 현물로 출자한 토지 및 건축물
2. 조합원이 납부하는 정비사업비 등 부과금
3. 건축물 및 부대시설 · 복리시설의 분양 수입금
4. 조합이 금융기관 및 시공자 등으로부터 조달하는 차입금
5. 서울특별시장,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으로부터 조달하는 융자금
6. 대여금의 이자 및 연체료 등 수입금
7. 청산금
8. 그 밖에 조합재산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에 의한 수익금

② 조합이 자금을 차입한 때에는 자금을 차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금을 대여한 상대방, 차입일, 차입액, 이자율, 상환기한 및 상환방법을 기재한 자금차입계약서의 사본을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조합이 법 제95조제3항 및 조례 제5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로부터 사업비를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융자기간 · 상환방법 · 이율 등은 융자금 신청 당시의 「서울특별시 융자계획 공고」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른 융자를 받은 후 조합장이 변경될 경우 새로운 조합장은 융자신청 당시 융자원리금의 상환과 관련하여 연대보증하거나 담보 등을 제공한 전 조합장의 지위를 일괄 승계한다. 다만, 조합설립추진위원장에 대해서는 최초로 선임된 조합장이 이를 일괄 승계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융자를 받은 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 조합의 융자원리금 상환채무는 그 당시 조합원이 법 제74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가격에 대한 법 제74조제4항제1호에 따른 평가액(법 제74조제4항제1호에 따른 감정평가가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 추정분담금 검증 후 통지된 평가액)의 비율에 따라 이를 인수한다. 제4항에 따라 융자원리금을 지급한 조합

장은 조합원들에게 그 인수비율에 따라 구상할 수 있다.

제35조(정비사업비의 부과 및 징수) ① 조합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공사비 등 사업에 소요되는 정비사업비를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비사업비는 총회 의결을 거쳐 부과할 수 있으며, 추후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위치·면적·이용상황·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평하게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납부기한 내에 정비사업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의 범위 내에서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정비사업비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주】 그 밖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현금청산자 또는 제명자에 대한 조합원 지위 상실시점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용에 대해 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려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부과의무의 발생시점, 부과할 정비사업비의 종류와 범위, 해당자에게 부과할 부과금의 액수와 그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임.

제 7 장 사 업 시 행

제36조(이주대책) ① 사업시행으로 주택 등 건축물이 해체되는 조합원은 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자신의 부담으로 이주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이주비의 대출을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조합이 직접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거나, 시공자와 약정을 체결하여 대출을 알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 내의 소유토지 또는 건축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이주비를 대출받은 조합원 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조합원은 대출받은 이주비를 “신축건축물등”(사업시행으로 건설되는 건축물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주 시까지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은 조합이 정하여 통지하는 이주기한 내에 해당 건축물에서 퇴거하여야 하며, 세입자 또는 임시거주자 등이 퇴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조합원은 본인 또는 세입자 등이 제4항의 이주기한 내에 해당 건축물에서 퇴거하지 아니하여 기존 주택 등의 해체지연 등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변상할 책임을 진다.
⑥ 제5항에 의하여 조합원이 변상할 손해금액과 징수방법 등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해당 조합원에게 부과한다. 해당 조합원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89조에 따른 해당 조합원의 청산금에 그 부과금과 연체료를 부가하여 징수하거나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⑦ 이주비 지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합과 시공사 또는 금융기관 등과 정한 약정에 따르며, 이주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의원회에서 정하여 운영한다.

제36조의2(신탁등기 등)
①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합원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 조합이 정하여 통지한 기간 내에 조합원의 소유로 되어 있는 사업시행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등에 대하여

조합에 신탁등기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탁등기를 이행치 않을 경우 조합은 신탁등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신탁된 조합원의 재산권을 재건축사업시행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 및 관리 · 처분하여야 하며, 권리이전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신탁을 해지하여 신탁재산을 당해 조합원에게 반환하여 주어야 하며, 당해 조합원으로부터 주택 및 부속 토지 등을 매입하여 새로이 조합원이 된 자는 소유권 이전 후 즉시 신탁하여야 한다.

③ 법 제86조의 이전고시에 따른 신탁종료, 권리관계 등 신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신탁계약과 신탁원부에 정한다.

【주】신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택하지 않을 수 있음.

제37조(공가발생 시 안전조치 및 지장물 철거 등) ①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법 제52조 제1항제5호에 따른 범죄예방대책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는 공가(空家)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사업시행구역 내의 건축물 등을 해체할 수 있으며, 건축물 등을 해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체적인 해체계획에 관한 내용을 30일 전에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및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건축물을 해체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해체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로서의 권리 ·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④ 사업시행구역 내의 통신시설·전기시설·급수시설·도시가스시설 등 공급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물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해체기간 및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건축물관리법」제30조 및 제34조 등에 의한 건축물 및 공작물 해체의 허가(신고) 및 멸실신고는 이주완료 후 조합이 일괄 위임받아 처리하도록 한다.

제38조(보상의 예외 등) 사업시행구역 내의 철거 또는 해체되는 일체의 지장물 중 등기 또는 행정기관의 공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지장물은 보상대상이 될 수 없다.

제39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① 사업시행으로 지상권 ·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권리자가 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상 금전의 반환청구권을 조합에 행사하여 해당 금전을 지급한 조합은 해당 조합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구상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조합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 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상권 ·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민법」 제280조 · 제281조 및 제312조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조(매도청구 등) 조합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법 제64조에 따라 사업시행구역내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41조(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① 조합이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의 소재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때에는 그 소유자의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조합원 전체의 공동소유인 토지 또는 건축물은 조합 소유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조합 소유로 보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감정평가는 법 제74조제4항제1호를 준용한다.

제 8 장 관리처분계획

제42조(분양통지 및 공고 등)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법 제72조제1항 각 호, 시행령 제59조제1항 각 호 및 조례 제3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시행령 제59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및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공고하여야 한다.
【주】법 제72조제1항, 시행령 제59조제1항, 조례 제32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열거하는 방법으로 각 조합의 정관으로 정할 수 있음

제43조(분양신청 등) 분양신청기간은 전조에 따른 통지일 이후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 만료일부터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조합이 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받아 법 제73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
【주】필요한 경우 안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관련 총회의 직접 참석비율 및 의결요건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을 것이며, 기존조합원과 차별되는 별도의 패널티를 적용할 수도 있을것임
③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에 시행령 제59조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의 방법으로 분양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우편등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 이외에 분양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법령 및 조례에 따라 조합이 작성한 분양신청공고 및 분양신청 안내문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주】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 조합은 재당첨금지에 의한 분양신청 불가 사항을 명시할 수 있음

제44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

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시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조합이 제기하는 매도청구에 관하여는 법 제73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른다.

③ 조합원이 조합에서 통지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 규정을 준용한다.

④ 분양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 분양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조합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당 분양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5조(관리처분계획의 기준) ① 조합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법 제7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분양신청 결과를 토대로 법 제76조, 시행령 제63조, 국토교통부 및 서울특별시 고시 등 관련 규정, 지침을 준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관리처분계획 기준은 총회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인가·고시로 결정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시행령 제61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그 수리 완료로 결정된다.

③ 관리처분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조합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주】 아래 각 호의 사항은 법·시행령·조례에서 규정한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조합은 정관 작성 현재의 관련규정 원문을 확인하여야 함

1. 종전 토지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소유토지별 지적공부에 따를 것. 다만,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의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주】 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에 의한다.

2.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소유 건축물별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하되, 법령에 위반하여 건축된 부분의 면적은 제외할 것.

【주】 조례 제34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정관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소유건축물별 건축물대장이 아닌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 의사 및 사업여건을 고려하여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무허가건축물 등에 해당 단서조항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임

3.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며, 소유권 취득일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할 것. 다만, 특정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구청장 등이 발행한 무허가건축물 확인원이나 그 밖에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4.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 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할 것

5.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

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할 것. 다만, 법 제76조제1항제7호나목에서 정한 1) 또는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6. 조합원이 소유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의 범위 또는 조합원이 소유한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 내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매매, 증여 및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에는 제외한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주】 2주택공급 여부 및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주택의 분양가격에 대해 조합원의 의사 및 사업여건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정관으로 정하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으로 확정하여야 함

7. 분양대상자가 공동으로 취득하게 되는 건축물의 공용부분은 각 권리자의 공유로 하되, 해당 공용부분에 대한 각 권리자의 지분비율은 그가 취득하게 되는 부분의 위치 및 바닥면적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할 것

8. 1필지의 대지 위에 2인 이상에게 분양될 건축물이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분양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대지소유권이 주어지도록 할 것(주택과 그 밖의 용도의 건축물이 함께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지지분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토지의 소유관계는 공유로 한다.

9. 부대시설·복리시설(부속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는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공급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소유자에게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가. 새로운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존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가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총회에서 정하는 비율(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로 한다)을 곱한 가액 이상일 것

나. 기존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가액에서 새로 공급받는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추산액을 뺀 금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총회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

다. 새로 건설한 부대시설·복리시설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보다 클 것

11. 그 밖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법령 및 조례 등에 의거하여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기준으로 결정할 것

【주】 그 밖에 해당 조합의 사정(예를 들어 상가독립정산제를 채택한 경우 등)에 따라 국토부 표준정관에 나오는 관리처분계획 기준 등을 참고하여 법 및 이 정관에 위반되지 않는 기준을 추가하여 규정할 수 있을 것임.

제46조(보류지) 조합은 분양대상의 누락,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과 소송 등의 사유로 향후 추가분양이 예상되는 경우 분양하는 공동주택 총 건립세대수의 ○% 이내와 부

대복리시설의 일부를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주】 보류지 확보비율 및 처분기준에 대하여 조례 제44조를 준용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

제47조(분양받을 권리의 양도 등) ① 조합원이 조합원의 자격이나 지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에게 제9조제4항과 제10조제3항의 내용을 설명·고지하여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조합원변경 신고 등이 있는 경우, 그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경미한 조합설립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등) ① 조합은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람 실시 전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61조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람기간·장소 등 공람계획에 관한 사항
2. 사업시행계획의 개요 및 관리처분계획(안)
3. 분양대상자별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과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추산가액
4. 그 밖에 조합원의 권리·의무와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

② 조합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조합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관리처분계획(안)에 관한 이의신청을 조합에 제출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조합원의 이의신청 내용을 이사회에서 검토하여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안)의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 결과를 해당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조합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안)을 수정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그 내용을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조합원의 동·호수추첨은 한국부동산원 등 추첨기관의 전산추첨을 원칙으로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49조(관리처분계획의 통지 등) ①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가. 일반 분양분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다. 임대주택
라. 그 밖에 부대시설·복리시설 등
3.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4.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②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양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관리처분계획(변경)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그 변경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5. 분양대상자별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과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추산가액
③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조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토지 등의 평가 등) ①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및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은 ○○구청장이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과 조합총회의 의결로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 9 장 사업 완료조치

제51조(준공인가 및 입주통지 등) ① 조합이 ○○구청장으로부터 준공인가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과 입주기간을 조합원 등 분양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때에는 통지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유자별로 통지내용에 따라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류지 또는 일반분양분에 대해서는 조합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분양받은 자가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2조(이전고시 등) ① 조합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공사완료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

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 및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53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법 제87조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제54조(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 조합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제55조(청산금 및 청산기준 가격의 평가) ① 조합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여 제46조의 관리처분계획기준에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주】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을 정관등으로 정하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음

③ 조합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평가하는 경우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위치·용도·이용 상황·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④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및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이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 또는 총회 의결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74조제4항제1호나목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주】 시행령 제76조제4항에 따라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건축물의 가격평가를 할 때 층별·위치별 가중치를 참작할 수 있음

⑤ 제4항의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산정을 위한 평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가산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 제95조에 따른 보조금은 공제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조사·측량·설계 및 감리에 소요된 비용
2. 공사비
3. 정비사업의 관리에 소요된 등기비용·인건비·통신비·사무용품비·이자 그 밖에 필요한 경비

4. 법 제95조에 따른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5.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등이 부담한 비용은 제외한다)
6. 안전진단의 실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회계감사, 감정평가, 그 밖에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등

【주】 시행령 제76조제3항제6호에 규정에 따라 "그 밖에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정관등에서 정한 비용"을 가산하는 항목에 포함할 수 있음

제56조(청산금의 징수방법) ①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주】 위탁에 앞서, 국토부표준정관처럼 ○회 이상 납부를 최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수 있음.

② 제55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한 때에는 조합은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③ 청산금을 지급(분할지급을 포함한다)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제57조(조합의 해산) ① 조합장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조합장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조합해산을 위한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주】조합의 해산절차에 대해서는 법 제8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에 따라야 하며, 같은 조문 제3항에 따라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을 의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청장이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③ 조합이 해산을 의결한 때에는 해산의결 당시 조합장이 대표청산인이 되고, 해산의결 당시의 이사는 청산인이 된다. 다만, 해산 총회에서 ○○구청장에게 대표청산인이 될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기로 의결한 경우 ○○구청장이 선정한 전문조합관리인을 대표청산인으로 할 수 있다.

【주】청산인이 될 자를 임원이 아니라 '이사회 구성원'으로 하여 감사가 집행기관인 청산인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을 것임.

④ 관계법령 및 이 정관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58조(청산인의 임무 및 보수 등) ① 해산한 조합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② 청산인 전원으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청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다만, 청산위원회는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대표청산인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

1. 현존하는 조합의 사무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처분
4.「민법」 제85조부터 제86조 규정에 따른 해산등기 및 해산신고
5.「민법」 제94조 규정에 따른 청산종결의 등기 및 신고
6. 그 밖에 청산에 필요한 사항

③ 청산인의 권리·의무·보수 기타 청산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청산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청산위원회 의결사항 및 의결방법 등을 포함한다)은 제57조에 따른 해산 총회에서 미리 의결하여야 한다.

④ 「민법」제84조에 따라 청산인을 해임할 중 중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해산의결 당시 조합원이었던 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법원에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제59조(채무변제 및 잔여재산의 처분) 청산 종결 후 조합의 채무 및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 또는 해산총회 의결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산의결 당시의 조합원에게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부담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제60조(관계서류의 이관) 조합은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조례 제8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 10 장 보 칙

제61조(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사용) ① 조합임원(청산인을 포함한다) 및 직원은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 운영지침”에 따라, 해당 조합의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관리·담당한다.

② 조합은 관련법령, 조례, 이 정관 및 조합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자료 등을 공개·등록하고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2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조합임원 및 청산인은 법 제124조 각 호 및 시행령 제94조 각 호에서 공개하도록 규정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아래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해당 서류 또는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정비사업 정보몽땅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 정보몽땅 등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자료 중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1.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2. 설계자·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8의2. 법 제111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
9. 결산보고서
10.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11.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12.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13. 정비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14. 설계자·시공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15.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주】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및 시행령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대상이 되는 자료의 목록을 열거한 것이며, 조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

②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복사 방법 등을 시행령 제94조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이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주】 조합은 업무처리의 효율성 및 조합원의 편의를 위해 '정보공개 청구서' 서식을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음

④ 조합원이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법 제124조제4항 각 호를 포함한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제3항의 방법으로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조합장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열람·복사 방법 등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주】 열람·복사방법은 조합이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름

⑤ 제4항의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비용납부의 방법, 시기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제87조 및 조례 별표 4에 따른 자료공개에 따른 수수료 금액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⑥ 제4항에 따라 열람·복사를 요청한 조합원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3조(계약의 효력) 조합이 사업시행에 관하여 시공자 및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협력업체와 체결한 계약은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합원에게 효력을 갖는다.

제64조(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주민협의체) 행위의 효력) 조합설립인가일 전에 조합의 설립과 사업시행에 관하여 추진위원회(주민협의체)가 행한 행위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합이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65조(정관의 해석) 이 정관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일차적으로 이사회에서 해석하고, 그래도 이견이 있을 경우는 대의원회에서 해석한다.

제66조(분쟁 및 소송) ① 조합과 조합원간에 법률상 다툼이 있는 경우 소송관할 법원은 조합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② 조합은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기 전 법 제116조 및 제117조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주】 조합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고소·고발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실익이나 장단점 등에 관하여 비교·검토한 결과를 대의원회에 보고하도록 정할 수 있을 것임.

제67조(민법의 준용 등) ① 조합에 관하여는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민법」, 이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조합의 운영과 사업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련 행정기관의 지침·고시 또는 유권해석 등에 따른다.

③ 이 정관이 법 기타 관계법령 및 법 제1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제정하여 운용중인 공공지원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변경되어야 할 경우 정관의 변경절차에 관계없이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관계법령의 내용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 이 표준정관은 법·시행령·규칙 및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조합의 의무, 업무처리방법의 근거 조문 및 그 내용을 필요에 따라 최대한 상세히 기재하였으나, 오늘날 법령 등의 개정이 잦은 점을 고려하여 적법한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은 법 원문을 수시로 확인해야 함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정관은 조합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② 변경된 정관은 조합설립변경인가(신고)일을 기준으로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변경된 정관의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따른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정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지 제1-1호 서식]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예시) [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

□ 소유권 현황

토 지	④ 소 재 지 (공유 여부)	⑤ 면적 (㎡)
	(계 필지)	
	( )	
	( )	
	( )	
건축물	⑥ 소 재 지 (허가 유무)	⑦ 동 수
	( )	
	( )	
	( )	

상기 소유 물건의 공동소유자는 ○○○을 대표조합원으로 선임하고 ○○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관련된 소유자로서의 법률행위는 대표소유자가 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 대표자 (선임수락자)
성 명: (자필서명 및 지장날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 위임자 (위임동의자)
① 성 명: (자필서명 및 지장날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② 성 명: (자필서명 및 지장날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③ 성 명: (자필서명 및 지장날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④ 성 명: (자필서명 및 지장날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 첨부 : 대표자 및 위임자 전원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각 1부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귀중

[별지 제1-2호 서식]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예시)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

□ 소유권 현황

소유권 위치	서울특별시 ○○구 ○○로 00 (○○동, ○○○아파트) 동 호 / 상가 동 호		
등 기 상 건축물지분(면적)	㎡	등 기 상 대지지분(면적)	㎡

상기 소유 물건의 공동소유자는 ○○○을 대표조합원으로 선임하고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관련된 소유자로서의 법률행위는 대표소유자가 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 대표자 (선임수락자)
성 명: (자필서명 및 지장날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 위임자 (위임동의자)
① 성 명: (자필서명 및 지장날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② 성 명: (자필서명 및 지장날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③ 성 명: (자필서명 및 지장날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④ 성 명: (자필서명 및 지장날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 첨부 : 대표자 및 위임자 전원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각 1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귀중

[별지 제2호 서식] 조합 업무분장 [예시]

○○○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업무분장

(20 . . .)

결재			

구 분	성 명	분장 업무	대 직
		○	
		○	
		○	
		○	

○○○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

[별지 제3호 서식] 조합원 변경신고서 [예시]

조합원 변경 신고서

■ 소유물건 소재지 : 서울시 ○○구 ○○동 00-00번지 / 동 호

변경후 조합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e-mail	
변경전 조합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상기 물건소재지의 새로운 소유자(매매, 상속, 증여)로 조합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며, 조합이 상기 주소 및 연락처로 각종 공고 및 통지를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_____(자필서명)

■ 첨부 : 1. 소유물건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
2. 신청인(새로운 조합원)의 주민등록등본 1부
3. 신청인(새로운 조합원)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1부

○○○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귀중

[별지 제4-1호 서식] 해외거주 조합원의 대리인 지정서 (예시)

대리인 지정서

■ 소유물건 소재지 : 서울시 ○○구 ○○동 00-00번지 / 동 호

신 청 인 (위임하는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e-mail	
대 리 인 (위임받는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상기 신청인 본인은 해외에 거주하는 바, ○○○ 재○○사업과 관련된 법률행위를 행함에 상기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조합원으로서의 법률이 정한 권한을 대리인이 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감날인)

■ 첨부 : 1.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 확인용) **사본 각 1부**
2.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1부**
3. 신청인의 **해외거주사실 증명서 1부**

○○○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귀중

[별지 제4-2호 서식] 법인인 조합원의 대리인 지정서 (예시)

대리인 지정서

■ 소유물건 소재지 : 서울시 ○○구 ○○동 00-00번지 / 동 호

신 청 인 (위임하는 자)	상 호		법 인 등록번호	
	소 재 지			
	연 락 처			
대 리 인 (위임받는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법인과의 관계	

상기 신청인 법인인 조합원은 ○○○ 재○○사업과 관련된 법률행위를 행함에 상기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조합원으로서의 법률이 정한 권한을 대리인이 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법인인감날인)

■ 첨부 : 1. 법인인감증명서 1부
2. 법인과 대리인과의 관계증명서 1부
3.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

○○○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귀중

[별지 제4-3호 서식] 총회 출석 위임장 (예시)

총회 출석 위임장

■ 소유물건 소재지 : 서울시 ○○구 ○○동 00-00번지 / 동 호

신 청 인 (위임하는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대 리 인 (위임받는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상기 신청인 본인은 00년 00월 00일 00시 개최예정인 ○○○재○○정비사업조합 ○○총회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으므로 상기 대리인에게 ○○총회의 참석 및 의결권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지장날인)

■ 첨부 : 1.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 확인용) **사본 1부**
2.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 확인용) **사본 1부**
3.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대리인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중 성년자

○○○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귀중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979호

2024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공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1항의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제 운영과 관련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공표 절차에 따라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대상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도개요

○ 추진대상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안전관리 업무 이행 실태가 우수하여 아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대상

○ 인정요건

–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 · 건축 · 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원업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 갱신 대상은 공표일 기준으로 2년임.

2. 인정 공표 대상(신규) : 총 19개소

연번	업종	대상명	영업주	주소	관할
1	산후조리원	라솜 산후조리원 창경궁지점	김희진	종로구 율곡로 174	종로
2	산후조리원	와튼젤리 산후조리원	이경숙	중구 중림로 31	중부
3	일반음식점	설빙 회기점	김영진	동대문구 회기로 193	동대문

연번	업종	대상명	영업주	주소	관할
4	휴게음식점	스타벅스코리아 성신여대점	㈜스타벅스 코리아	성북구 동소문로24길 12	성북
5	일반음식점	투썸플레이스 내방역점	투썸플레이스㈜	서초구 서초대로 99	서초
6	휴게음식점	설빙 가양점	오성균	강서구 양천로 504	강서
7	휴게음식점	투썸플레이스 암사역점	문영주	강동구 올림픽로 778	강동
8	영화상영관	메가박스 중앙㈜ 홍대지점	홍정인, 남용석	마포구 양화로147	마포
9	휴게음식점	투썸플레이스 도봉산입구점	김영성	도봉구 도봉산4가길 13-11	도봉
10	스크린골프	SG스크린골프 구로역점	김영숙	구로구 경인로 584	구로
11	휴게음식점	스타벅스 태릉입구DT점	㈜스타벅스 코리아	노원구 화랑로 469	노원
12	일반음식점	TGI프라이데이 롯데백화점 잠실점	윤나라	송파구 올림픽로 240	송파
13	일반음식점	창고43 목동점	송호섭	양천구 목동서로 159-1	양천
14	휴게음식점	스타벅스 중화역점	㈜SCK컴퍼니	중랑구 봉화산로 35	중랑
15	일반음식점	차이30	박정일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동작
16	휴게음식점	더테이스터블㈜ 백양로플라자점	한화푸드테크	서대문구 연세로 50	서대문
17	휴게음식점	투썸플레이스 수유사거리점	김예진	강북구 도봉로 295	강북
18	휴게음식점	투썸플레이스 서울숲역점	투썸플레이스 주식회사	성동구 왕십리로 58	성동
19	휴게음식점	투썸플레이스 석수역점	고선희	금천구 시흥동 979-4	금천

3. 인정 공표 대상(갱신) : 총 42개소

연번	업종	대상명	영업주	주소	관할
1	영화상영관	CGV명동	정슬기	중구 명동길 14	중부
2	휴게음식점	엔제리너스커피 명동점	임아름	중구 명동3길 10	중부
3	일반음식점	라구뜨	최종문	광진구 능동로 90	광진

연번	업종	대상명	영업주	주소	관할
4	휴게음식점	스타벅스커피 광나루점	이석구	광진구 아차산로 607	광진
5	일반음식점	깐부치킨 서여의도점	조정숙	영등포구 국제대로74길 10	영등포
6	휴게음식점	스타벅스 국회대로점	㈜스타벅스 커피코리아	영등포구 국제대로 786	영등포
7	일반음식점	매드포갈릭 현대미아점	윤나라	성북구 동소문로 315	성북
8	목욕장업	오라카이 청계산호텔 사우나	금보개발㈜	서초구 청계산로9길 1-7	서초
9	일반음식점	골든서울호텔점	고성춘	강서구 공항대로 663	강서
10	영화상영관	롯데시네마 김포공항점	최병환	강서구 하늘길 38	강서
11	일반음식점	T.G.I.F롯데백화점 김포공항점	㈜엠에프지코리아 윤다예	강서구 하늘길 38	강서
12	영화상영관	메가박스 마곡	홍정인	강서구 공항대로 247	강서
13	휴게음식점	맥도날드 우장산DT점	㈜고고스우장산(고현동)	강서구 강서로 216	강서
14	휴게음식점	수요일	정옥윤	강동구 동남로 891	강동
15	일반음식점	배꼽집	㈜배꼽 에프엔비 배꼽집 류나영	마포구 월드컵북로54길 17	마포
16	휴게음식점	㈜스타벅스 상암사보이시티점	㈜에스씨케이컴퍼니 손정현	마포구월드컵북로54길17	마포
17	휴게음식점	㈜스타벅스 서강대흥역점	㈜에스씨케이컴퍼니 손정현	마포구 백범로89	마포
18	목욕장	스탠포드코리아㈜ 휘트니스센터	권중갑	마포구 월드컵북로58길15	마포
19	휴게음식점	롯데시네마 합정점	최병환	마포구 양화로 45	마포
20	휴게음식점	스타벅스쌍문역점	장동욱	도봉구 도봉로 480	도봉
21	휴게음식점	투썸플레이스 창동이마트점	박영기	도봉구 노해로65길 14-3	도봉
22	휴게음식점	스타벅스 창동이마트점	오인희	도봉구 노해로65길 4	도봉
23	영화상영관	CGV구로10	허민회	구로구 구로중앙로 152	구로
24	일반음식점	실크로드	송희순	구로구 경인로 398	구로
25	일반음식점	이춘복참치 신도림디큐브시티	이춘복	구로구 경인로 662	구로

연번	업종	대상명	영업주	주소	관할
26	산후조리원	(주)맘스퀘어	문용배	구로구 경인로 240	구로
27	영화상영관	롯데시네마 신도림	최병환	구로구 경인로 662	구로
28	가상체험체육시설(스크린골프연습장)	태영스크린골프	박상규	구로구 경인로59길 8	구로
29	휴게음식점	이디야 성공회대점	유채영	구로구 연동로 312	구로
30	고시원업	대학고시텔	최봉은	구로구 안양천로537가길 42-0	구로
31	영화상영관	롯데시네마 노원수락산역	김진환	노원구 동일로 1660	노원
32	휴게음식점	롯데리아 잠실롯데월드몰	㈜롯데리아	송파구 올림픽로 300	송파
33	휴게음식점	김영모제과점	김영모	송파구 올림픽로 300	송파
34	가상체험체육시설(스크린골프연습장)	세븐골프	최장수	중랑구 신내로21길 6	중랑
35	학원	시사YBM어학원	민선식	서대문구 신촌로 113	서대문
36	학원	위즈빌어학원	㈜더에듀케이션	서대문구 연희로 188	서대문
37	영화상영관	CGV 미아점	최병환	강북구 도봉로 34	강북
38	휴게음식점	맥도날드 미아DT점	엔토니노리스마티네즈	강북구 삼양로 158	강북
39	고시원업	세명고시원(수유동)	김영복	강북구 한천로140길 46	강북
40	휴게음식점	스타벅스 뚝섬역점	㈜스타벅스코리아	성동구 아차산로 42	성동
41	영화상영관	롯데시네마 가산디지털	최병환	금천구 가산동 60-8	금천
42	일반음식점	카페 베로나	권의철	금천구 가산동 547-63	금천

4. 공표일 : 2024. 11. 9.(토)

5. 인정기간 : 2024. 11. 9. ~ 2026. 11. 8.(2년 간)

6. 문의처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02-3706-1525)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987호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1회차 위반 경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2,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등에 의해 1회차 위반 경고안내 후, 송달불능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1회차 위반 경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법 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
3. 공시송달내용(총2건)
   경고 대상차량 차주분께서는 본 고지일로부터 2024년 11월 29일(금)까지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2024년 11월 29일(금)이후에는 위반시 월 1회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저공해조치(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 조기폐차)를 완료하거나, 저공해조치 유예신청을 하여 차량운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고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순번	차량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1	90라1437	용*용역(주)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4-09-13 12:01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석근리 139-7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2	10라4506	윤*기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4-09-14 15:32	광진02_천호대로(군자교)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4. 공 고 기 간 : 공고일(서울시 시보 게재일)로부터 14일간
5. 의견제출 안내
   가. 의견제출 기한 : 2024년 11월 29일(금)
   나. 본 경고조치 안내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으로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2층, 대기정책과(운행차관리팀)
      - 담당 : 김석근(Tel 02-2133-3659)

붙임 : 의견 제출서(서식)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		
2. 당 사 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핸드폰번호 - (010-9615-3659)로 사진파일 문자접수 가능합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988호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2,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등에 의해 과태료 사전통지 후, 송달불능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법 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

3. 공시송달내용(총19건)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1	01모1993	㈜*엔에스씨오알피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4-09-08 14:24	인천광역시 선학별빛도서관 앞 4차로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200,000원 (160,000)원
2	01오4661	이*호,김*란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4-09-10 14:50	용산02_강변북로(구리) 2차로	〃	〃
3	27너7522	권*만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4-09-10 05:40	동작01_노량진역(노량진로) 2차로	〃	〃
4	82루6153	김*태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4-09-13 21:27	경기도 수원시 LG전자베스트샵(수원방면) 4차선	〃	〃
5	01버6507	김*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4-09-17 16:01	중랑01_북부간선도로 3차로	〃	〃
6	05머3355	정*철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09-18 11:46	중랑01_북부간선도로 1차로	〃	〃
7	08부3876	박*숙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4-09-18 14:12	구로06_개봉교후방 1차로	〃	〃
8	75부3592	김*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4-09-22 16:33	구로06_개봉교후방 1차로	〃	〃
9	01버3680	강*수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4-09-24 13:09	노원02_덕릉로(당고개) 1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10	서울73라5614	㈜*모스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09-24 02:36	영등포03_서울교(경인로) 2차로	〃	〃
11	80무9392	윤*영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4-09-25 15:47	광진01_동일로(군자교 지하차도) 2차로	〃	〃
12	01보6885	㈜이*인터내셔널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4-09-26 09:10	은평02_통일로 2차로	〃	〃
13	28부5917	임*기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4-09-28 01:22	광진03_워커힐(아차산로) 2차로	〃	〃
14	91나7401	CHA*DHRY SAJID SALEEM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4-09-28 15:34	인천광역시 천상교앞 계양구 서운동 143-22(1차로)	〃	〃
15	서울55마1932	정*수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4-09-28 21:51	용산02_강변북로(구리) 4차로	〃	〃
16	04더8181	주-한*에이치에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4-09-29 12:18	중랑01_북부간선도로 3차로	〃	〃
17	02도1970	현*캐피탈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2024-09-30 13:56	인천광역시 운연사거리 1차로	〃	〃
18	05우8927	채*훈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4-09-30 20:47	강동06_천호역(천호대로) 3차로	〃	〃
19	34어5114	정*석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4-09-30 14:45	강남08_수서IC 4차로	〃	〃

4. 공고 기간 : 공고일(서울시 시보 게재일)로부터 14일간

5. 의견제출 안내

가. 의견제출 기한 : 2024년 11월 29일(금)

나. 본 사전통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으로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2층, 대기정책과(운행차관리팀)
- 담당 : 김석근(Tel 02-2133-3659)

붙임 : 의견 제출서(서식)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2. 당 사 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핸드폰번호 :(010-9615-3659)로 사진파일을 문자 접수하셔도 됩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989호

종합건설사업자 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있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처분사전 통지(청문실시통지)를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 등으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이사불명,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4.11.7. ~ 2024.11.21.(14일간)
2. 처분 사전통지 사항

업 체 명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위반내용	예정된 처분내용	청문실시		처분 근거
				일시 및 장소	주재자	
프르미건설㈜ (안원근)	건축 공사업 01-5251	지방자치단체장의 관허 사업 제한 요구 o 총 체납액 : 45,703,270원 o 총 체불건수 : 11건 o 관허사업 제한 요구기관 : 서초구 세무관리과	영업정지	2024.11.29.(금) 10:00 건설혁신과 청문실	주무관 홍혜나	법 제83조 제11호

3.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19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995호

시립장사시설 관리비 및 재사용료 독촉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에 따라 부과한 장사시설 사용료(관리비, 재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미납한 사용자에게 독촉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불능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 고 명 : 시립장사시설 관리비 및 재사용료 독촉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1. 7. ~ 2024. 11. 20. (14일간)

3. 안내사항
   - 납부기한 : 2024. 11. 30.
   - 공고대상자는 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등)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설공단 추모시설운영처 운영팀(031-960-02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고대상 : 따로붙임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안함번호 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1	봉안	19940701-007	11-18-09922	권봉진	권*덕	2024-09-27 11:55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충남 서산시 충의로	100,000
2	봉안	19940707-006	11-18-10057	김춘자	김*화	2024-09-27 10:57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경기 파주시 금정로	100,000
3	봉안	19940709-003	12-20-13411	박은식	박*희	2024-09-30 11:26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도봉구 마들로	100,000
4	봉안	19940719-002	11-18-10020	한승태	한*국	2024-09-30 12:53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56길	100,000
5	봉안	19940723-004	11-18-10031	임을순	한*우	2024-09-30 10:57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부천시 오정로232번길	180,000
6	봉안	19940724-002	11-18-10038	김광선	김*훈	2024-09-30 10:28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인천 연수구 새말로	100,000
7	봉안	19940728-004	12-05-05111	최월순	김*성	2024-09-26 11:44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 서대문구 증가로17길	100,000
8	봉안	19990701-019	51-01-00067	최광균	최*현	2024-09-27 11:41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양주시 가래비길	180,000
9	봉안	19990701-026	51-01-00073	김정엽	김*준	2024-09-30 10:04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인천 남동구 소래역로	180,000
10	봉안	19990701-027	51-01-00074	박남출	김*호	2024-09-30 14:11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부산 북구 의성로74번길	100,000
11	봉안	19990702-019	51-01-00098	서청천	서*용	2024-09-30 12:38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강서구 까치산로14길	100,000
12	봉안	19990704-009	51-01-00123	안영순	문*현	2024-09-30 11:1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은평구 은평터널로5길	180,000
13	봉안	19990704-026	51-01-00140	노진희	노*권	2024-09-30 09:3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인천 부평구 체육관로	180,000
14	봉안	19990704-027	51-01-00141	이상훈	김*자	2024-09-30 11:06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안천4길	50,000
15	봉안	19990705-020	51-01-00161	최석삼	임*분	2024-09-30 11:52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광진구 군자동	100,000
16	봉안	19990706-029	51-01-00194	김석현	김*영	2024-09-30 11:44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인천 연수구 신송로118번길	180,000
17	봉안	19990707-009	51-01-00204	추천엽	이*만	2024-09-30 08:56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북로8길	100,000
18	봉안	19990708-003	51-01-00224	탁양진	탁*승	2024-09-30 11:39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의정부시 효자로	100,000
19	봉안	19990708-008	51-01-00229	김하지	이*일	2024-09-27 11:43	미배달 주소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경기 김포시 은행영사정로	100,000
20	봉안	19990709-003	51-01-00250	김양심	박*수	2024-09-30 10:32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 노원구 월계4동	25,000
21	봉안	19990710-006	51-01-00277	김판례	고*성	2024-09-30 10:19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100,000
22	봉안	19990710-013	51-01-00283	임찬보	임*환	2024-09-30 12:54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성동구 금호동1가	100,000
23	봉안	19990710-015	51-01-00285	이용자	최*학	2024-09-30 13:1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의정부시 가능2동	180,000
24	봉안	19990713-016	51-01-00340	이태식	김*례	2024-09-30 12:08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은평구 갈현로	100,000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안함번호 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25	봉안	19990714-015	51-01-00359	유막동	유*한	2024-09-30 11:38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신화아파트	180,000
26	봉안	19990715-004	51-01-00366	조영미	조*식	2024-09-30 13:23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금천구 독산로82가길	100,000
27	봉안	19990715-017	51-01-00379	권순배	권*영	2024-09-30 11:39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인천 남동구 장승남로	180,000
28	봉안	19990715-019	51-01-00381	정준학	정*수	2024-09-30 10:53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양천구 가로공원로71길	25,000
29	봉안	19990716-021	51-01-00405	김수배	김*기	2024-09-30 12:09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강동구 천중로	180,000
30	봉안	19990718-001	51-01-00430	유칠용	유*일	2024-09-30 12:04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강서구 강서로47길	100,000
31	봉안	19990718-005	51-01-00434	조용구	조*희	2024-09-30 12:41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안산시 상록구 안산대학로	180,000
32	봉안	19990721-009	51-01-00505	이용봉	이*택	2024-09-30 11:51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노원구 월계2동	100,000
33	봉안	19990723-009	51-01-00551	차용재	배*현	2024-09-27 11:06	미배달 이사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경기 화성시 동탄대로12길	100,000
34	봉안	19990723-012	51-01-00554	박수형	박*규	2024-09-30 09:27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180,000
35	봉안	19990723-017	51-01-00558	황순애	염*현	2024-09-30 08:31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180,000
36	봉안	19990724-010	51-01-00574	김춘희	이*호	2024-09-30 11:3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721번길	180,000
37	봉안	19990724-011	51-01-00575	김귀원	안*섭	2024-09-30 10:16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금천구 금하로	180,000
38	봉안	19990724-020	51-01-00584	박상용	박*근	2024-09-30 09:2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평택시 은실5길	180,000
39	봉안	19990724-032	51-01-00591	두지언	두*기	2024-09-27 10:03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남양주시 창현로	100,000
40	봉안	19990726-012	51-01-00627	이장룡	이*석	2024-09-27 11:47	미배달 이사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경남 남해군 화전로122번길	100,000
41	봉안	19990726-030	51-01-00640	김옥	최*호	2024-09-30 14:2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노원구 동일로180길	100,000
42	봉안	19990727-007	51-01-00650	안미령	안*호	2024-09-30 11:21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동작구 사당로2차길	25,000
43	봉안	19990727-009	51-01-00652	김점순	곽*현	2024-09-30 09:34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은평구 은평터널로7길	100,000
44	봉안	19990727-013	51-01-00656	곽금자	김*민	2024-09-30 11:35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관악구 난곡로	100,000
45	봉안	19990728-005	51-01-00664	서병천	서*석	2024-09-27 12:26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경기 연천군 첫마을길	100,000
46	봉안	19990729-005	51-01-00690	박태하	박*준	2024-09-27 10:03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시흥시 대골길	100,000
47	봉안	19990729-016	51-01-00700	최영덕	조*희	2024-09-30 10:54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100,000
48	봉안	19990729-025	51-01-00706	최근식	최*국	2024-09-30 14:24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마포구 독막로	100,000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안함번호 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49	봉안	19990730-017	51-01-00727	유상훈	최*연	2024-09-30 12:2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강서구 강서로17가길	100,000
50	봉안	19990730-021	51-01-00731	최원익	최*호	2024-09-27 10:24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인천 서구 서곶로	180,000
51	봉안	19990731-001	51-01-00748	허봉국	허*식	2024-09-30 14:48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성북구 안암로9길	100,000
52	봉안	19990731-007	51-01-00754	윤명숙	민*술	2024-09-27 11:12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충북 충주시 창현로	180,000
53	봉안	19990731-010	51-01-00757	이복덕	강*원	2024-09-27 10:43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 송파구 오금로61길	100,000
54	봉안	19990731-012	51-01-00759	전홍철	오*업	2024-09-30 11:36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로	100,000
55	봉안	20010519-049	63-01-18945	황경활	황*일	2024-09-30 14:58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64길	200,000
56	봉안	20040701-001	73-04-23777	김근순	최*학	2024-09-30 09:4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일봉로	75,000
57	봉안	20040703-001	73-04-23782	박경임	김*복	2024-09-30 10:56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75,000
58	봉안	20040706-004	73-04-23795	박용희	주*배	2024-09-27 15:10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경기 포천시 너삐기길	75,000
59	봉안	20040708-002	73-04-23801	장춘분	정*의	2024-09-27 10:16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 동작구 흑석한강로	75,000
60	봉안	20040709-002	73-04-23803	김정중	김*규	2024-09-30 09:35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양주시 고암동	75,000
61	봉안	20040717-011	73-04-23825	한세경	우*희	2024-09-30 09:57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75,000
62	봉안	20040721-002	73-04-23836	이애순	김*래	2024-09-30 12:36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강남구 역삼로	75,000
63	봉안	20040723-001	73-04-23843	임창식	유*선	2024-09-30 10:05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파주시 와석순환로	75,000
64	봉안	20040731-004	73-04-23865	김덕기	김*기	2024-09-30 13:36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75,000
65	봉안	20061225-002	66-01-31250	민영숙	이*석	2024-09-30 11:13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중랑구 용마공원로	75,000
66	봉안	20090701-007	71-08-06091	나영례	박*숙	2024-09-27 14:34	미배달 주소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 은평구 응암로9길	75,000
67	봉안	20090701-009	71-08-06103	민병철	민*기	2024-09-30 15:1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시흥시 연성로	75,000
68	봉안	20090702-009	71-08-06132	이봉용	이*기	2024-09-30 12:33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중랑구 겸재로50나길	100,000
69	봉안	20090704-007	71-08-06208	이택룡	주*영	2024-09-30 12:38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강서구 가양2동 가양4단지아파트	75,000
70	봉안	20090709-006	72-09-06366	한미자	정*영	2024-09-30 11:18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강원 춘천시 효평길	75,000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안함번호 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71	봉안	20090712-007	72-09-06516	김애주	양*수	2024-09-27 12:19	미배달 주소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	75,000
72	봉안	20090718-005	72-09-06823	홍금덕	김*곤	2024-09-30 11:08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2로	75,000
73	봉안	20090718-009	72-09-06842	정명구	정*근	2024-09-30 11:43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부산 남구 진남로206번길	75,000
74	봉안	20090721-001	72-09-06907	김순남	오*일	2024-09-27 10:17	미배달 주소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 중구 창경궁로	75,000
75	봉안	20090721-007	72-09-06947	한광수	한*현	2024-09-27 09:27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 중랑구 중랑역로3다길	75,000
76	봉안	20090722-005	72-09-07031	이남길	이*숙	2024-09-30 14:21	미배달 이사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인계로	75,000
77	봉안	20090729-006	72-10-07366	한창식	전*식	2024-09-30 12:47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262번길	75,000
78	봉안	20090730-004	72-10-07404	김미선	임*현	2024-09-30 11:18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44길	75,000
79	봉안	20090915-006	63-01-20389	차인진	차*희	2024-09-30 10:23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강서구 화곡로63가길	75,000
80	봉안	20140701-001	63-01-21472	서용현	서*수	2024-09-30 09:27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양주시 고암길	25,000
81	봉안	20140706-001	63-01-22050	서경필	서*훈	2024-09-27 12:01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 마포구 신수로	25,000
82	봉안	20140709-003	63-01-22205	이귀섭	서*현	2024-09-30 12:26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강서구 강서로17가길	25,000
83	봉안	20140718-004	63-01-23152	이순덕	한*우	2024-09-27 09:05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파주시 금빛로	25,000
84	봉안	20140723-006	63-01-24129	김소복	박*학	2024-09-27 11:45	미배달 주소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25,000
85	봉안	20140725-001	63-01-24301	김성근	김*근	2024-09-30 11:03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금천구 탑골로11길	25,000
86	봉안	20140725-002	63-01-24305	이영숙	최*화	2024-09-30 13:46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두정로	25,000
87	봉안	20140728-007	63-01-24461	김덕진	김*은	2024-09-30 10:42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97길	25,000
88	봉안	20190707-004	71-04-02479	안점례	안*빈	2024-10-04 10:15	미배달 기타(반송함)(반송불요, 1개월 보관)	경기도 파주시 한울로	25,000
89	봉안	20190710-002	71-06-03995	양갑순	정*수	2024-09-27 11:40	미배달 이사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경기 가평군 자라목6길	25,000
90	봉안	20190711-002	71-07-04507	이순옥	이*호	2024-09-30 10:32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도 파주시 동산2길	25,000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안함번호 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91	봉안	20190717-001	72-09-07262	이병철	이*문	2024-09-27 12:46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도 구리시 아치울길3번길	25,000
92	봉안	20190718-008	72-11-09027	최효규	최*준	2024-09-30 10:24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25,000
93	봉안	20190721-003	72-15-12110	이대식	이*욱	2024-09-27 10:22	미배달 주소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월동로	25,000
94	봉안	20190723-008	72-16-13502	김홍배	김*정	2024-09-27 09:03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25,000
95	봉안	20190727-006	73-02-16846	최재용	최*희	2024-09-30 11:57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87길	25,000
96	봉안	20190729-001	73-02-17612	황금출	이*수	2024-09-27 13:15	미배달 주소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양천로537가길	25,000
97	분묘	19940701-008	2010162	김예수	김*철	2024-09-27 11:43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군포시 번영로	228,250
98	분묘	19940705-006	19010344	이호영	이*준	2024-09-30 11:17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도 화성시 동탄중앙로	181,500
99	분묘	19940705-007	19010345	이계향	이*우	2024-09-30 10:43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181,500
100	분묘	19940706-006	19010350	이옥점	이*봉	2024-09-30 10:21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인천 남동구 앵고개로815번길	181,500
101	분묘	19940706-008	19010352	진인규	진*운	2024-09-30 09:59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경기 하남시 풍산동	181,500
102	분묘	19940706-009	19010355	김금동	이*자	2024-09-30 14:16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로	181,500
103	분묘	19940709-006	19010368	서순덕	박*수	2024-09-30 14:47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헌길	181,500
104	분묘	19940711-009	19010386	이종대	이*재	2024-09-27 12:17	미배달 주소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 도봉구 쌍문3동	181,500
105	분묘	19940712-010	19010389	주신일	주*태	2024-09-30 13:06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서초구 잠원동	181,500
106	분묘	19940712-013	19010395	최학도	최*숙	2024-09-30 09:07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광주시 새오개길	181,500
107	분묘	19940713-006	19010396	박종영	권*수	2024-09-30 11:47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원로82번길	181,500
108	분묘	19940713-007	2010166	박형섭	박*대	2024-09-30 12:58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771번길	228,250
109	분묘	19940715-009	19010405	김인숙	노*환	2024-09-30 12:16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울산 동구 화잠2길	181,500
110	분묘	19940718-008	19010417	한상철	한*섭	2024-09-30 09:58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안산시상록구 성포동	181,500
111	분묘	19940718-009	19010418	유재진	장*아	2024-09-30 11:29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종로구 숭인동	181,500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안함번호 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112	분묘	19940718-010	2047202	조용철	조*아	2024-09-30 13:50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23길	181,500
113	분묘	19940720-006	19010427	유맹호	정*오	2024-09-30 12:31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고양시 덕양구 덕수천1로	181,500
114	분묘	19940722-006	19010452	김정석	김*규	2024-09-30 11:0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27가길	181,500
115	분묘	19940723-005	19010451	박금녀	이*열	2024-09-27 10:43	미배달 주소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 마포구 상암동	181,500
116	분묘	19940723-007	19010454	송일여	안*숙	2024-09-27 11:45	미배달 이사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 중랑구 동일로124길	181,500
117	분묘	19940724-001	19010455	한용희	한*규	2024-09-30 11:28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노첨길36번길	181,500
118	분묘	19940725-003	19010460	김종인	김*대	2024-09-30 13:08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181,500
119	분묘	19940727-008	19010481	이양재	이*한	2024-09-27 12:47	미배달 주소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 강서구 방화동	181,500
120	분묘	19940727-011	19010484	윤병인	방*식	2024-09-27 10:07	미배달 이사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천서로	181,500
121	분묘	19940727-012	19010485	홍성준	홍*길	2024-09-30 13:09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 중구 신당동	181,500
122	분묘	19940729-003	19010501	허택호	허*록	2024-09-30 09:31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181,500
123	분묘	19990703-002	18190088	유경옥	윤*선	2024-09-30 10:01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울산 동구 봉수로	137,500
124	분묘	20140730-001	2004083	우정희	송*식	2024-09-30 10:46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인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228,250
125	분묘	19660922-008	102161	김만수	김*수	2024-09-27 10:39	미배달 이사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69번길	235,060
126	분묘	19680601-019	300786	배병길	배*무	2024-09-30 10:44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노원구 덕릉로82길	141,600
127	분묘	19710725-005	500512	유삼동	유*석	2024-09-30 13:54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도봉구 우이천로6길	280,370
128	분묘	19750614-003	501274	옥연광	김*수	2024-09-30 09:2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35길	141,600
129	분묘	19760319-003	601165	강양운	강*완	2024-09-27 10:35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불요)	경기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96번길	235,060
130	분묘	19880101-004	203904	최옥순	박*운	2024-10-02 18:22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화성시 남양성지로	280,370
131	분묘	19900119-010	2045014	김귀량	김*주	2024-09-30 10:5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곡로33번길	767,75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998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로 신규 등록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 환경컨설팅회사 신규 등록 내역

연번	상 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영업소 소재지
1	㈜고도엔바	제6110000-20-2024-00017호	’24.10.15.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3, 대청타워 1046호
2	동서씨엔씨㈜	제6110000-20-2024-00018호	’24.10.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 W동 1509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3002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에 따라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서를 소유자의 등본상 주소지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보관기관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2. 법적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체납 및 압류내역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과 목	납 기	횟수	금 액
033358608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931-2 401호	상하수도 요금	21.08~’ 24.06	16회	1,784,190원

   나. 압류내역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건소유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주 소		
부동산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931-2 401호	김○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931-2 401호	1,784,190원	2024년 10월14일

4. 공고기간 : 2024. 11. 7. ~ 2024. 11. 21.(14일간)
5. 안내사항
   ○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이 공고문에 대해 의견제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동 법 제27조에 따라 공고기간 내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 혹은 유선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의견제출기관: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 기타 문의사항은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02-3146-38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3004호

종합건설사업자 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있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처분사전 통지(청문실시통지)를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 등으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이사불명,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4.11.7. ~ 2024.11.21.(14일간)
2. 처분 사전통지 사항

업 체 명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재지	위반내용	예정된 처분내용	청문실시		처분 근거
					일시 및 장소	주재자	
㈜영성종합건설 (홍종배)	건축 공사업 01-478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5 , 707호(제일빌딩)	○ 건설업 등록기준(보증가능금액) 미달 - 담보권 실행으로 보증가능금액 실효(2024.8.6.)	영업정지	2024.11.29.(금) 11:00 건설혁신과 청문실	주무관 홍혜나	법 제83조 제3호

3.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19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3010호

도시계획시설(시장)사업 공사완료 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68호(2010.5.6.)로 도시계획시설(시장)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46호(2010.7.1)로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12호(2020.10.08.)로 도시계획시설(시장)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600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시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시장)사업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시장)
 나. 사업의 명칭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2단계(채소2동 건립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사업단계		1단계 (완료)	2-1단계 (완료)	2-2단계 (금회)	2-4단계 (완료)	2-5단계 (완료)	2-3단계 (예정)	3-1단계 (예정)	3-2단계 (예정)	2-6단계 (예정)	3-3단계 (예정)
대지면적		531,830.00㎡									
건축면적	기정	29,435.12㎡	33,853.75㎡ (4,418.63㎡)	76,667.07㎡ (42,813.32㎡)	77,387.01㎡ (719.94㎡)	78,399.12㎡ (1,012.11㎡)	105,111.59㎡ (26,712.47㎡)	105,111.59㎡ (0.00㎡)	165,949.15㎡ (60,837.56㎡)	165,949.15㎡ (0.00㎡)	227,130.35㎡ (61,181.20㎡)
	변경	29,435.12㎡	33,853.75㎡ (4,418.63㎡)	76,667.07㎡ (42,813.32㎡)	77,387.01㎡ (719.94㎡)	78,399.12㎡ (1,012.11㎡)	105,111.59㎡ (26,712.47㎡)	105,111.59㎡ (0.00㎡)	165,949.15㎡ (60,837.56㎡)	165,949.15㎡ (0.00㎡)	227,130.35㎡ (61,181.20㎡)
	증감	-	-	-	-	-	-	-	-	-	-
연면적	기정	212,913.35㎡	218,258.86㎡ (5,666.13㎡)	275,325.86㎡ (57,067.00㎡)	278,275.42㎡ (2,949.56㎡)	280,407.21㎡ (2,131.79㎡)	348,422.25㎡ (68,015.04㎡)	348,422.25㎡ (0.00㎡)	438,824.51㎡ (90,402.26㎡)	443,945.51㎡ (5,090.00㎡)	533,630.91㎡ (89,716.40㎡)
	변경	212,913.35㎡	218,258.86㎡ (5,666.13㎡)	275,325.86㎡ (57,067.00㎡)	278,275.42㎡ (2,949.56㎡)	280,407.21㎡ (2,131.79㎡)	348,422.25㎡ (68,015.04㎡)	348,422.25㎡ (0.00㎡)	438,824.51㎡ (90,402.26㎡)	443,945.51㎡ (5,090.00㎡)	533,630.91㎡ (89,716.40㎡)
	증감		-	-	-	-	-	-	-	-	-
층수		지하3층 /지상18층	지상3층	지하1층 /지상3층	지하1층 /지상5층	지상3층	지하1층/ 지상4층	지하1층/ 지상5층	지하1층/ 지상3층	지하1층	지하1층/ 지상3층
공사기간	기정	2011년~ 2015년	2013년~ 2014년	2020년~ 2023년	2021년~ 2024년	2023년~ 2024년	2024년~ 2027년	2024년 ~2027년	2024년~ 2027년	2027년 ~2031년	2027년 ~2031년

사업단계		1단계 (완료)	2-1단계 (완료)	2-2단계 (금회)	2-4단계 (완료)	2-5단계 (완료)	2-3단계 (예정)	3-1단계 (예정)	3-2단계 (예정)	2-6단계 (예정)	3-3단계 (예정)
	변경			2020년~ 2024년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대표 문영표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5. 사업 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4.10.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민생노동국 농수산유통과(☎2133-4465)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3014호

도시관리계획(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2024.11.8. ~ 2024.11.21.)

나.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공간본부 도시관리과 (☎02-2133-8397)
- 강남구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02-3423-6118)

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일원동 일원	1,335,246.0	-	1,335,246.0	-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 게재 생략
※ 세부 구역의 범위, 계획 등은 열람장소 비치 도서 및 도면으로 갈음

라. 관계도서 :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마.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서울소식→공고→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에서도 확인 가능)
- 본 계획(안)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추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2133-83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3018호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 송달

서울시는「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제6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 [별표1의2]의 규정에 위반되어 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기한 내에 변경 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가맹본부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이 반송됨에 따라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시송달 대상

연번	수취인명 (대표자)	등록위반 영업표지	주소	부과 예정액(원)	위반연도	반송사유
1	㈜건담 (김OO)	배배꼬, 파이브센소커피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동로 21-20, - 이하 생략 -	2,000,000	2024	폐문부재
2	㈜대단한에프앤비 (채OO)	대단한 갈비	인천광역시 서구 크리스탈로74번길 - 이하 생략 -	2,000,000	2024	수취인부재
3	㈜더이룸에프앤씨 (전OO)	성수옥아궁지, 성수옥솟대해장국	경기도 의정부시 전좌로 4, - 이하 생략 -	2,000,000	2024	폐문부재
4	㈜마마에프앤비 (김OO)	조미료를넣지않은참마마된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883, - 이하 생략 -	2,000,000	2024	기타
5	(주)미각(황OO)	미각양꼬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지곡로3길 22, - 이하 생략 -	2,000,000	2024	폐문부재
6	㈜미라클버즈 (現(주)로보셰프) (이OO)	곱가앤곱도리탕, 영웅갈비찜, 냉면대첩, 김치찜대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92길 40, - 이하 생략 -	2,000,000	2024	기타
7	㈜봉원에프앤비 (정OO)	명동할머니국수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112, - 이하 생략 -	2,000,000	2024	기타
8	㈜비브이씨 (선OO)	카페쿠바노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19길 38, - 이하 생략 -	1,000,000	2024	기타
9	(주)샐러드로우앤트라타(김OO)	샐러드로우앤트라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341, - 이하 생략 -	2,000,000	2024	기타
10	㈜수코팩토리 (이OO)	매우좋은아침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35, - 이하 생략 -	2,000,000	2024	기타
11	㈜씨디씨 (정OO)	마라하오, 포샵	경기도 김포시 걸포1로 40, - 이하 생략 -	2,000,000	2024	폐문부재
12	㈜어깨동무컴퍼니 (조OO)	사계절카레, 데이스트오브비엣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1길 - 이하 생략 -	2,000,000	2024	기타
13	㈜에듀바움 (홍OO)	체리힐 아카데미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69, - 이하 생략 -	2,000,000	2024	이사불명

연번	수취인명 (대표자)	등록위반 영업표지	주소	부과 예정액(원)	위반연도	반송사유
14	㈜온라인헌터킹 (이OO)	아이언문PC방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138길 12, - 이하 생략 -	2,000,000	2024	기타
15	㈜일가브라더스 (한OO)	돈전쟁, 북촌삼대갈비, 오늘쉐프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로 149, - 이하 생략 -	2,000,000	2024	기타
16	(주)정인(최OO)	수셰프치킨, 수카페2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197번길 113-3, - 이하 생략 -	2,000,000	2024	폐문부재
17	㈜청년에프앤비 (이OO)	청년컵밥, 미카코카레, 청년곱창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58길 19, - 이하 생략 -	2,000,000	2024	기타
18	(주)펜톤(이OO)	리라김밥, 3일국밥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56-8, - 이하 생략 -	2,000,000	2024	기타
19	또올래곱창송파본점 (정OO)	또올래곱창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6길 22, - 이하 생략 -	2,000,000	2024	기타
20	루이파트너스 (이OO)	타이지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로 85-2, - 이하 생략 -	2,000,000	2024	기타
21	모두의피자(이OO)	모두의피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중앙25길 7-1, - 이하 생략 -	2,000,000	2024	기타
22	보금(김OO)	리가든다옴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9길 28, - 이하 생략 -	2,000,000	2024	기타
23	이브이파킹서비스(주) (윤OO, 이OO)	이브이피에스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287-19, - 이하 생략 -	2,000,000	2024	수취인불명
24	젤리푸드(주) (성OO, 민OO)	젤리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39길 88, - 이하 생략 -	2,000,000	2024	이사불명
25	㈜프로위드(최OO)	하키하키, 한라도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337번길 9, - 이하 생략 -	2,000,000	2024	수취인불명

2. 공시송달 기간: 2024. 11. 7. ~ 11. 21.(15일간)

3. 송달내용: 2024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4. 의견제출

가. 기 간: 2024. 11. 22. ~ 2024. 12. 5.(14일간)

※ 제출기간 내에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고지된 금액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나. 위 기간 내에 과태료 감경 및 면제 관련 (시식1)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울시 공정경제과 공정거래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제출처 및 제출방법

- 제 출 처: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공정경제과 공정거래팀)
- 제출방법: 우편(등기), 방문, 이메일(jdw10004ok@seoul.go.kr)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공정경제과(02-2133-535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체납 시 불이익 】

❖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부과,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60개월 한도)이 부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른 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로서 감치

과태료 납부관련 유의사항 안내

본 과태료는「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감경규정 등이 적용되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기변경 기한 내 접수한 가맹본부 경우 통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시스템 전산 오류로 정기변경을 했음에도 조회가 되지 않아 과태료 사전고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정기변경 기한 내 정기변경 접수를 완료한 가맹본부는 접수번호 및 접수일자를 회신해 주시면 사전통지 대상 제외가 가능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을 폐업처리하실 경우 과태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 가맹사업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가맹본부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폐업신고 후 관련 서류(폐업사실 증명원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정보공개서 신청시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폐업신고하여야 면제가 가능합니다.

3. 의견제출 기간 내 자진납부 할 경우 예정금액의 20% 감액 가능합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 예정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가 종료되며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자진납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예정금액이 확정되어 과태료 부과 고지됩니다.

4. 의견제출 기간 내 감경 관련 자료 제출 시 추가 감면 가능합니다.
   - 과태료 감면은 관련법에 따라 기준금액에서 최대 50%까지 감면 받으실 수 있으며 감면 기준 및 제출방법은 뒤쪽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정금액이 100만원(자진납부 시 80만원)으로 통지된 가맹본부는 최대 감경비율이 적용되었으므로 추가 감면이 불가능 합니다.

※ 과태료 부과 관련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공정경제과 정다운 주무관(02-2133-5403, jdw10004ok@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감경

○ 과태료 감경기준 (최대 50%까지 적용 가능)

(단위: %)

감경기준	확인방법	감경비율
1.「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법령별 증명서(확인서)	50%
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의견제출서 중소기업확인서 ※ 발급문의: 국번없이 1357	20%
3.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 ① 변경등록기한 후 3개월 이내 변경등록(자진취소 포함)을 이행 ② 변경등록기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변경등록(자진취소 포함)을 이행	기한 도과 후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자진취소 포함)을 접수한 경우 기한에 따라 감면 조치	30% (3개월↓) 20% (6개월↓)
4.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해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가맹점 수가 5개 미만 ② 가맹점 수가 5개 이상 10개 이하	확인서 및 가맹점 리스트(22년 말 기준) ※ 가맹본부와 계약한 가맹점 수를 기준으로 감면 조치	30% (5개↓) 20% (10개↓)

□ 의견제출 방법

○ 의견서 제출은 우편(등기), 방문, 이메일로 가능

– 의견제출서는 공통사항이며, 의견제출서 양식의 날인은 해당 정보공개서 등록시 제출한 인감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도 함께 제출)

의견제출 내용	공통제출	개별제출
폐업	의견제출서(서식1) 및 인감증명서	폐업사실 증명원
중소기업 감면		중소기업확인서
법위반 시정 노력		의견제출서 4번 의견란에 접수번호 및 일자 기재
위반행위 정도 동기 결과 등 인정필요		확인서(서식2) 및 가맹점목록

※ 의견서, 증빙서류 등 송부하실 우편주소, 이메일 등은 사전통지서 참조

– 서식1 –

예정된 정보공개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서

1. 제출자 일반현황

○ 상 호 :
(대 표 자) :

○ 영 업 표 지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법인사업자일 경우)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개인사업자일 경우) :

○ 주 소 :

○ 연 락 처 :

2. 과태료 부과통지금액: 금 원(₩)

3. 위반행위 내용: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의무 위반

4. 정보공개서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의견

–

근거자료 :

(별지 작성 및 첨부 가능)

상기와 같이 정보공개서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 . . .

대표자 (회사명) (직책) (성명) (인)

서울특별시장 귀중

– 서식1(예시) –

예정된 정보공개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서

1. 제출자 일반현황

○ 상 호 : *주식회사 0000*
(대 표 자) : *홍 길 동*

○ 영 업 표 지 : *가맹사업시스템에 등록된 브랜드명 기재*

○ 사업자등록번호 : *정보공개서 등록 시 기재한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법인등록번호, 법인사업자일 경우)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개인사업자일 경우) :

○ 주 소 :

○ 연 락 처 :

2. 과태료 부과통지금액: 금 원(₩)

3. 위반행위 내용: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의무 위반

4. 정보공개서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의견

– *폐업에 따른 면제요청, 중소기업 감면요청, 정기변경 기한준수(접수번호 및 일자), 법위반 정도, 동기, 결과 등 인정필요(가맹점 수), 기타사유 등 선택하여 기재*

근거자료 : *폐업사실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등 근거자료 기재 후 사본제출*

(별지 작성 및 첨부 가능)

상기와 같이 정보공개서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 . . .

대표자 (회사명) (직책) (성명) (인)

서울특별시장 귀중

– 서식2 –

확 인 서

☞ 2023 12. 31. 당시 운영 중인
가맹본부 ( )의
가맹점수는 ( )개임을 확인합니다.

☞ 첨부서류 1. 가맹점 목록

2024년 월 일

가맹본부(상호) :
영업표지(브랜드) :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연락처(휴대폰번호) :
대표이사 : (인)

※ *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도장 날인 후 인감증명서 첨부*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인감 날인 후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서울특별시장 귀중

■ 가맹점 목록 (서식2의 첨부자료)

번호	가맹점명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계약체결일
1					
2					
3					
4					
5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3021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 내역(10월)

연번	등록 번호	등록 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1	204063	'24. 10. 30.	주식회사 심플키 박성철 (110111-5828087)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738, 406, 407, 408호(염창동)
2	204062	'24. 10. 22.	블랙썬더 주식회사 권혜진 (110111-8420666)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2길 21, 4층 442호 (방배동)
3	204061	'24. 10. 22.	주식회사 젠솔소프트 양오준 (110111-3021162)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9길 38, 에이스테크노타워III 601호 (구로동)
4	204060	'24. 10. 16.	주식회사 천명소프트 이종훈 (110111-3850066)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32, 갑을그레이트밸리 제비-1501호, 제비-1502호, 제비-1503호 15층 (가산동)
5	204059	'24. 10. 15.	주식회사 해피링크 류재순 (110111-6374758)	서울시 구로구 공원로 41, 707호 (구로동, 현대파크빌)
6	204058	'24. 10. 10.	주식회사 시너지온 (SYNERGION Co., LTD.) 이학수 (110111-9045356)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1, 큐브힐 7층 (서초동)
7	204057	'24. 10. 02.	주식회사 마이헨지 안민영 (110111-6480448)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우림라이온스밸리 비동 307호 (가산동)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공사업등록의 신청 등)

3.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과 ☎ 02-2133-1867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3023호

회계직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 제7조 및 제9조 규정에 의거 회계 직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같은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직인 등록 및 폐기 사유 : ’ 24. 7. 1.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2.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 및 폐기 내용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 등록 및 폐기 일자	비고
상암정보운영과	서울특별시 데이터센터 상암정보운영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X1.8㎝		2024.7.1.	등록
상암정보운영과	서울특별시 데이터센터 상암정보운영과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X1.8㎝		2024.7.1.	등록
상암정보운영과	서울특별시 데이터센터 클라우드센터운영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X1.8㎝		2024.7.1.	폐기
상암정보운영과	서울특별시 데이터센터 클라우드센터운영과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X1.8㎝		2024.7.1.	폐기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3026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 공시송달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를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압류 내역

연번	대상자		체납 내역	압류 물건	압류일
	상호(대표자)	주소			
1	(주)에이티 (박*용)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23, 606호(가산동)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체납 체납액: 1,750,000원	자동차 354루 5869	2024. 9. 9.
2	한선전자통신(주) (박*권)	서울특별시 강동구 진황도로 18, 142호(천호동)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체납 체납액: 1,750,000원	자동차 99우 9996	2024. 9. 9.

※ 체납액은 2024. 11. 7.기준이며, 가산금 등으로 실제 체납금액은 다를 수 있음.

4. 공고기간: 2024. 11. 7. ~ 2024. 11. 21.(15일간)

5. 문의사항: 서울특별시 정보통신과(☎ 02-2133-2897)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3027호

공인등록(청인) 공고

서울특별시공인조례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의거하여, 공인 등록(청인)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공인등록(청인)

○ 공인등록 사유 : 2023. 4. 7.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의2 (임용 심사위원회), 별지 제1호 서식 신설에 따른 공인등록

○ 최초 사용일자 : 2024.12.01

○ 공인등록 내용

공 인 명	규 격	인 영	전자이미지 인영
영등포소방서소방고무원임용위원회인	3.6㎝×3.6㎝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3030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전용차로의 설치),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의 규정에 따라 전용차로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고지분 중 미납된 과태료에 대해 지방세징수법 제32조(독촉 및 최고)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0조(독촉장) 규정에 따라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부재, 이사, 주소불명, 수취거부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의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도로교통법 제161조, 및 시행령 제88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정○봉 등 1002명
4. 공고기간 : 2024. 11. 7. ~ 2024. 11. 21.
   - 공고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서울특별시청 주차계획과 교통지도단속반 과태료과징팀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 농협, 전국 우체국 및 전국 편의점(세븐일레븐, GS25, CU, 바이더웨이), 무인 수납기(은행 및 각 구청) 등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삼성, 현대, 우리BC, 롯데, 외환) 납부는 편의점 및 무인 수납기에서만 가능합니다.
5. 압류예고 안내
   과태료 미납 시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및 국세징수법 제4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납부의무자)의 재산(자동차, 부동산, 예금 등)을 압류 합니다.
   -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단속자료 확인 : 서울특별시 교통위반단속조회
     (http://cartax.seoul.go.kr)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청 주차계획과 과태료과징팀(☎ 02-2133-4570~7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독촉)

연번	차량 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1	201어65**	정*봉	전라남도 해남군	2024-01-11 10:13	뱅뱅사거리~우성아파트앞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2700
2	260모95**	나*스*	충청남도 아산시	2024-01-17 14:46	반포IC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3	143하16**	(*)*8*컴*니	경기도 남양주시	2024-02-02 16:07	논현역~반포역	전용차로 위반	52700
4	서울31바29**	서*원	경기도 의정부시	2024-02-15 16:14	한남ic~반포ic	전용차로 위반	52700
5	43누33**	김*홍	충청남도 아산시	2024-02-16 18:47	성산2교~마포구청역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2700
6	35조08**	H*N*I*	서울특별시	2024-02-20 17:49	양재ic~서초ic	전용차로 위반	52700
7	116하16**	A*A*E*I*O*A*M*D*	인천광역시	2024-02-21 14:23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8	116하16**	A*A*E*I*O*A*M*D*	인천광역시	2024-02-21 14:24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9	서울31아41**	정*원	서울특별시	2024-03-09 08:33	금융감독원앞 도로우회전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10	19우73**	임*순	경기도 부천시	2024-03-10 12:39	마포대교교차로~서울교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11	64로88**	주*회*엘*이*	대전광역시	2024-03-12 08:53	장지교교차로~장지역	전용차로 위반	52700
12	101호68**	(*)*이*케*그*	경기도 용인시	2024-03-13 16:24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2700
13	194호90**	최*영	경기도 성남시	2024-03-13 18:25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14	10호89**	레*포*퍼*	서울특별시	2024-03-14 11:05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2700
15	156허35**	Y*N*D*N*K*I	서울특별시	2024-03-15 17:19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2700
16	24허86**	김*곤	경기도 김포시	2024-03-15 18:15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2700
17	195하77**	농*회*법*초*주*회*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2024-03-16 12:29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18	149호59**	김*현	경기도 남양주시	2024-03-16 13:56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19	133하68**	박*진	인천광역시	2024-03-16 19:19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20	125호45**	레*포*퍼*	서울특별시	2024-03-16 19:43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21	29호29**	박*욱	경기도 파주시	2024-03-17 22:23	홍은동 북한산 더샵아파트(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22	165호89**	(*)*플*스	서울특별시	2024-03-18 09:0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23	104하70**	심*철	서울특별시	2024-03-18 12:57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24	377두29**	주*회*미*어*레*	서울특별시	2024-03-19 20:20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2700
25	08로67**	안*모	경기도 남양주시	2024-03-19 20:21	공릉동 삼육에코팜센터(구리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26	194하74**	박*선	경기도 용인시	2024-03-20 09:46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연번	차량 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27	153호86**	(*)*커	경기도 이천시	2024-03-20 10:56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28	149허79**	이*현	서울특별시	2024-03-20 18:41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2700
29	298주25**	김*자	광주광역시	2024-03-21 17:04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2700
30	40거78**	서*영	서울특별시	2024-03-21 19:19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31	161허86**	서*준	충청남도 천안시	2024-03-21 19:58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32	152호37**	(*)*결*합*설	서울특별시	2024-03-22 07:4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33	50보15**	S*A*J*N*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2024-03-22 09:11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1-5	전용차로 위반	52700
34	104하15**	옥*호	경기도 의정부시	2024-03-22 20:07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2700
35	131버55**	전*미	인천광역시	2024-03-23 12:31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2700
36	190호17**	서*래	서울특별시	2024-03-23 18:16	종로4가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37	47호02**	김*택	서울특별시	2024-03-24 06:07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38	206소83**	천*순	인천광역시	2024-03-25 07:25	개화동로(김포공항방면)	전용차로 위반	52700
39	140하73**	필*리*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2024-03-25 15:57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2700
40	23머97**	박*현	울산광역시	2024-03-25 17:1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41	23머97**	박*현	울산광역시	2024-03-26 13:52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42	172호68**	현*교*아	서울특별시	2024-03-26 15:31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2700
43	156호24**	황*호	경기도 남양주시	2024-03-27 09:33	공릉동 문정왕후릉(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44	15하75**	이*주	전라남도 함평군	2024-03-27 14:06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45	24우46**	최*화	경기도 의정부시	2024-03-27 20:13	노원구민회관교차로~하계역	전용차로 위반	52700
46	서울31바81**	이*오	경기도 고양시	2024-03-28 07:47	반포IC~서초IC	전용차로 위반	52700
47	188거73**	허*회	경기도 수원시	2024-03-28 17:23	한남ic~잠원ic	전용차로 위반	52700
48	160하21**	장*	서울특별시	2024-03-28 17:25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2700
49	18호42**	김*희	서울특별시	2024-03-28 18:48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50	16두30**	(*)*스*반	서울특별시	2024-03-28 20:5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51	839거50**	강*현	서울특별시	2024-03-29 09:26	서울 송파구 잠실동 261	전용차로 위반	52700
52	92너02**	임*주	서울특별시	2024-03-29 16:07	LBA삼성부동산앞	전용차로 위반	52700

연번	차량 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53	151누18**	(*)*앤*	경기도 김포시	2024-03-29 17:39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54	183러37**	(*)*비*경*비*설*트	경기도 광명시	2024-03-29 18:3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55	133하57**	이*옥	경기도 성남시	2024-03-29 18:57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56	140하96**	주*회*엘*스*산*발	서울특별시	2024-03-30 00:00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57	143하55**	안*자	서울특별시	2024-03-30 11:25	통일로 현대오일뱅크앞	전용차로 위반	52700
58	34호22**	강*민	서울특별시	2024-03-31 11:44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59	732어26**	주*회*유*환*산*	서울특별시	2024-03-31 12:09	금천폭포공원~박미삼거리	전용차로 위반	63240
60	125호68**	이*진	서울특별시	2024-03-31 18:52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61	63다76**	육*일	서울특별시	2024-04-01 00:38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62	23고24**	E*A*O*G*Y*A*N*M*T*U*O*I*H	경상남도 거제시	2024-04-01 09:16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63	03로22**	천*동	서울특별시	2024-04-01 09:29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2700
64	94부60**	박*해	경기도 양주시	2024-04-01 09:32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2700
65	05나63**	원*광	서울특별시	2024-04-01 09:34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2700
66	24가38**	D*S*N*Y*K*I*U*U*R*B*T*	충청북도 음성군	2024-04-01 12:21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67	24가38**	D*S*N*Y*K*I*U*U*R*B*T*	충청북도 음성군	2024-04-01 12:22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68	서울금천아48**	최*태	서울특별시	2024-04-01 14:24	종각역~종로2가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42160
69	314나61**	이*식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2024-04-01 16:16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2700
70	194호43**	Z*E*G*A*	서울특별시	2024-04-01 17:24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느산부인과	전용차로 위반	52700
71	53노01**	박*연	서울특별시	2024-04-01 17:2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72	92너02**	임*주	서울특별시	2024-04-01 17:38	LBA삼성부동산앞	전용차로 위반	52700
73	140호40**	(*)*이*썬*우*	대구광역시	2024-04-01 17:5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74	66구79**	이*태	서울특별시	2024-04-01 19:00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2700
75	806나85**	(*)*리*퍼*쳐	경기도 김포시	2024-04-01 19:1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76	234나36**	양*재	서울특별시	2024-04-01 19:14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77	49저26**	전*양	서울특별시	2024-04-01 19:29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2700

연번	차량 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78	149허68**	김*진	서울특별시	2024-04-01 20:34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79	경기37바42**	이*래	경기도 광명시	2024-04-01 20:36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2700
80	149허68**	김*진	서울특별시	2024-04-01 20:37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81	140로69**	이*령	서울특별시	2024-04-02 00:52	고척동 구로성심병원 버스정류소(시내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82	42저68**	최*재	경기도 김포시	2024-04-02 06:41	도림교	전용차로 위반	52700
83	03도76**	유*자	서울특별시	2024-04-02 07:43	은평지문교~구파발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2700
84	268주50**	김*자	경기도 양주시	2024-04-02 07:50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85	50어06**	이*희	경기도 성남시	2024-04-02 08:01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86	361라20**	김*연	서울특별시	2024-04-02 09:11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2700
87	45가87**	안*식	경기도 수원시	2024-04-02 11:24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88	96구89**	안*희	경기도 양평군	2024-04-02 11:43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89	304고87**	김*임	서울특별시	2024-04-02 13:1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90	149허69**	주*회*쏘*	경기도 수원시	2024-04-02 13:40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91	111무39**	주*회*플*어*	서울특별시	2024-04-02 13:40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2700
92	64하03**	주*회*팀*레*티*	서울특별시	2024-04-02 14:40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21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2700
93	45소72**	김*화	경기도 남양주시	2024-04-02 15:53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94	21어03**	J*N*O*G*U*	서울특별시	2024-04-02 17:18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2700
95	77더54**	장*균	경기도 평택시	2024-04-02 17:32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63240
96	169하13**	손*주	서울특별시	2024-04-02 17:32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2700
97	60도84**	최*두	충청북도 증평군	2024-04-02 17:54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2700
98	42머05**	박*웅	경상북도 경산시	2024-04-02 17:59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99	42머05**	박*웅	경상북도 경산시	2024-04-02 18:00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100	42머05**	박*웅	경상북도 경산시	2024-04-02 18:01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101	92너02**	임*주	서울특별시	2024-04-02 18:06	LBA삼성부동산앞	전용차로 위반	52700
102	서울54너29**	조*서	서울특별시	2024-04-02 18:06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느산부인과	전용차로 위반	52700
103	194호36**	(*)*다	경기도 화성시	2024-04-02 18:08	공릉동 문정왕후릉(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연번	차량 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104	212구96**	주*회*다*디*인	서울특별시	2024-04-02 18:34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105	30조58**	(*)*탑	서울특별시	2024-04-02 18:4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106	269마65**	장*솔	서울특별시	2024-04-02 18:5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107	68조84**	C*T*S*A*H*R*D*N*E*	경기도 남양주시	2024-04-02 19:21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2700
108	32부95**	김*식	서울특별시	2024-04-02 19:32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109	08두09**	농*회*법*주*회*누*바*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2024-04-02 19:44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110	149조36**	N*R*L*A*E*A*I*T*M*H*N*O*	경기도 안성시	2024-04-02 19:47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111	154저29**	심*섭	서울특별시	2024-04-02 20:19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2700
112	46머95**	주*회*초*	경기도 용인시	2024-04-03 06:37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113	서울06너55**	(*)*이*이*이*씨	인천광역시	2024-04-03 07:43	올림픽대교남단교차로~성내교	전용차로 위반	63240
114	94부60**	박*해	경기도 양주시	2024-04-03 08:24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2700
115	87더71**	박*배	서울특별시	2024-04-03 08:41	공릉동 문정왕후릉(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116	811러61**	정*화	경상남도 진주시	2024-04-03 09:54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117	41머38**	(*)*원*이*제*	서울특별시	2024-04-03 10:1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118	345머80**	유*준	경기도 파주시	2024-04-03 10:54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119	824거40**	유*일	경기도 포천시	2024-04-03 11:52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120	257우12**	배*희	경기도 남양주시	2024-04-03 12:12	한양아파트앞사거리~성수대교남단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121	96로05**	박*도	경기도 남양주시	2024-04-03 13:36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느산부인과	전용차로 위반	52700
122	12누44**	주*회*모*죤*레*	경기도 양평군	2024-04-03 15:02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2700
123	16조64**	서*렌*(*)	서울특별시	2024-04-03 16:4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124	92너02**	임*주	서울특별시	2024-04-03 17:41	모래내우체국앞교차로~북가좌초교 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2700
125	61다30**	임*옥	서울특별시	2024-04-03 18:12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2700
126	01더20**	김*경	경기도 남양주시	2024-04-03 18:28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2700
127	서울80배68**	심*보	서울특별시	2024-04-03 19:19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연번	차량 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128	29머61**	주*회*포*엔*	전라남도 목포시	2024-04-03 20:4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129	40다11**	기*호	서울특별시	2024-04-03 21:13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130	149허57**	박*우	대전광역시	2024-04-04 06:09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2700
131	125호25**	박*근	서울특별시	2024-04-04 08:11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132	40거78**	서*영	서울특별시	2024-04-04 08:18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133	194나55**	김*웅	서울특별시	2024-04-04 08:29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2700
134	846고32**	백*종	경기도 남양주시	2024-04-04 08:29	공릉동 문정왕후릉(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135	150수58**	최*미	인천광역시	2024-04-04 09:4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136	248더25**	전*현	경기도 화성시	2024-04-04 09:4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137	93고48**	이*영	인천광역시	2024-04-04 10:23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138	93고48**	이*영	인천광역시	2024-04-04 10:25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139	26거72**	주*회*대*씨*씨	서울특별시	2024-04-04 13:4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140	14구71**	한*희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024-04-04 14:40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141	29도54**	(*)*스*블*	경기도 남양주시	2024-04-04 15:09	사당IC교~사당역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2700
142	56호93**	이*민	서울특별시	2024-04-04 17:31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2700
143	06모75**	하*훈	서울특별시	2024-04-04 17:49	공릉동 문정왕후릉(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144	66무31**	이*규	서울특별시	2024-04-04 18:28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145	16머41**	김*미	충청남도 천안시	2024-04-04 18:41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2700
146	208구88**	김*수	경기도 의정부시	2024-04-04 18:41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147	178허57**	주*회*신*벤*투*	서울특별시	2024-04-04 19:05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148	27노94**	Z*K*R*V*A*R*M	경기도 화성시	2024-04-04 19:21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149	15우79**	김*수	경기도 남양주시	2024-04-04 19:34	공릉동 삼육에코팜센터(구리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150	181노68**	이*숙	경기도 남양주시	2024-04-04 20:18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2700
151	149호84**	주*회*팔*트*	서울특별시	2024-04-04 20:30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2700
152	215무56**	주*회*세*	인천광역시	2024-04-05 01:01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153	300두21**	윤*나	서울특별시	2024-04-05 08:32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2700

연번	차량 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154	03로22**	천*동	서울특별시	2024-04-05 09:20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2700
155	719다50**	이*생	서울특별시	2024-04-05 10:03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3 (여의도동)	전용차로 위반	63240
156	322나45**	박*우	울산광역시	2024-04-05 10:1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157	142머96**	이*희	인천광역시	2024-04-05 11:07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2700
158	서울83고99**	방*학	서울특별시	2024-04-05 11:11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159	34소36**	주*회*비*씨*드	서울특별시	2024-04-05 14:11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2700
160	221하21**	주*회*그*드*종	서울특별시	2024-04-05 17:0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161	08호25**	김*열	서울특별시	2024-04-05 17:23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2700
162	92너02**	임*주	서울특별시	2024-04-05 17:35	중앙근린공원~북가좌초교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2700
163	56나58**	김*용	경기도 군포시	2024-04-05 17:46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2700
164	32구10**	W*N*X*D*N*	광주광역시	2024-04-05 17:54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165	76너80**	F*N*S*E*G*A*	경기도 시흥시	2024-04-05 18:15	올림픽회관교차로~올림픽대교남단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63240
166	160허59**	한*여*프*골*투*주*회*	서울특별시	2024-04-05 19:16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2700
167	31라06**	(*)*성*이*	경기도 포천시	2024-04-05 19:39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168	42거09**	조*래	서울특별시	2024-04-05 19:45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2700
169	87우35**	(*)*호*우*	경기도 의왕시	2024-04-05 19:5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170	18머18**	(*)*인*영*	인천광역시	2024-04-05 19:56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171	172호82**	주*회*위*케*	서울특별시	2024-04-05 20:05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2700
172	서울32자61**	조*철	서울특별시	2024-04-05 20:09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2700
173	125호86**	한*우	서울특별시	2024-04-05 20:29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2700
174	16모23**	주*회*영*산*	서울특별시	2024-04-05 20:4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175	231다81**	L*A*E*S*N*R	경기도 안산시	2024-04-06 10:40	광장사거리~천호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2700
176	149주51**	강*아	경기도 안성시	2024-04-06 12:35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177	59서02**	(*)*도*텍	경기도 광주시	2024-04-06 14:17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178	47고48**	김*우	경상남도 거제시	2024-04-06 20:25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179	47고48**	김*우	경상남도 거제시	2024-04-06 20:28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연번	차량 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180	126저46**	(*)*임*	서울특별시	2024-04-06 21:05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181	40로21**	주*회*성*준*브*	경기도 성남시	2024-04-06 22:24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2700
182	49가30**	박*기	경기도 성남시	2024-04-07 01:18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2700
183	242노45**	김*영	경상남도 창원시	2024-04-07 07:26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184	64버26**	윤*진	서울특별시	2024-04-07 09:12	YBM빌딩	전용차로 위반	52700
185	39고88**	박*호	경기도 광주시	2024-04-07 18:02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186	39고88**	박*호	경기도 광주시	2024-04-07 18:03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187	367버61**	주*회*피*스*러*	서울특별시	2024-04-08 01:02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2700
188	312소97**	T*N*O*T*H*	충청북도 청주시	2024-04-08 01:53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189	66허06**	사*법*한*기*개*협*	서울특별시	2024-04-08 08:04	천호대교~광장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2700
190	201노19**	Z*A*M*I*U*	경기도 안양시	2024-04-08 09:42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191	45무70**	오*식	서울특별시	2024-04-08 09:42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192	157머50**	김*숙	충청북도 청주시	2024-04-08 10:39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193	60수84**	주*회*청*	경기도 광주시	2024-04-08 11:10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194	371구46**	김*희	서울특별시	2024-04-08 11:29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195	47부30**	허*가*프*비*식*사	경기도 안산시	2024-04-08 12:34	반포3동주민센터교차로~신동초교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196	146두22**	L*V*N*G*I	경기도 김포시	2024-04-08 13:47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197	08도14**	농*회*법*평*메*아*랜*주*회*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2024-04-08 16:34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198	839거50**	강*현	서울특별시	2024-04-08 16:40	서울 송파구 잠실동 261	전용차로 위반	52700
199	56우78**	김*민	전라남도 무안군	2024-04-08 17:28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200	92너02**	임*주	서울특별시	2024-04-08 17:35	모래네우체국~북가좌초교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2700
201	311로99**	홍*정	서울특별시	2024-04-08 17:47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202	38허56**	조*태	경기도 남양주시	2024-04-08 19:01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2700
203	126버86**	이*주	서울특별시	2024-04-08 19:22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2700
204	110조76**	J*N*A*O*G	서울특별시	2024-04-08 19:31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2700
205	117구88**	김*령	서울특별시	2024-04-08 20:18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2700

연번	차량 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206	33구53**	(*)*려*프*스	경기도 양주시	2024-04-09 08:07	공릉동 문정왕후릉(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207	006다62**	주*회*자*과*람*	경기도 김포시	2024-04-09 08:47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63240
208	06서75**	김*욱	충청남도 천안시	2024-04-09 09:14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209	146누11**	양*람	부산광역시	2024-04-09 09:27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2700
210	07마17**	(*)*씨*씨	서울특별시	2024-04-09 09:56	수색동 경의중앙선 수색역1번출구 공영주차장	전용차로 위반	52700
211	89로24**	주*회*플*이*코*레*션	서울특별시	2024-04-09 10:11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212	서울중타80**	장*경	서울특별시	2024-04-09 10:19	투썸플레이스 종각역	전용차로 위반	42160
213	서울영등포아13**	홍*기	서울특별시	2024-04-09 10:20	종로2가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42160
214	서울강북타51**	이*림	서울특별시	2024-04-09 10:20	종로2가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42160
215	31두89**	S*E*M*K*A*M*D*V*I *O*B*K*I*O*I*D*N*G	경기도 의정부시	2024-04-09 10:36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216	156허25**	황*영	부산광역시	2024-04-09 13:10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217	21보32**	황*호	전라남도 영광군	2024-04-09 14:08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218	57소47**	노*길	서울특별시	2024-04-09 15:52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2700
219	43노07**	조*제	경상남도 하동군	2024-04-09 16:07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220	56다56**	행*한*상*식*사	경기도 의정부시	2024-04-09 17:11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2700
221	90오04**	김*준	서울특별시	2024-04-09 17:15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222	서울86자44**	유*모	서울특별시	2024-04-09 17:31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느산부인과	전용차로 위반	52700
223	56우93**	김*현	서울특별시	2024-04-09 17:41	공릉동 문정왕후릉(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224	02너54**	김*희	서울특별시	2024-04-09 17:55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225	04더18**	김*희	경기도 안산시	2024-04-09 18:0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226	50라56**	최*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024-04-09 18:11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227	서울32바82**	정*	경기도 광주시	2024-04-09 18:17	성내교	전용차로 위반	52700
228	72루56**	구*모	서울특별시	2024-04-09 18:18	성내교	전용차로 위반	63240
229	40오05**	박*희	인천광역시	2024-04-09 18:19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230	21거02**	L*U*I*O*U*	서울특별시	2024-04-09 19:00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2700
231	13나71**	L*H*I*A*	충청북도 음성군	2024-04-09 19:03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전용차로 위반	52700
232	282모55**	정*용	경기도 시흥시	2024-04-09 19:14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2700

연번	차량 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233	02러22**	Z*A*G*O*G*E*	서울특별시	2024-04-09 19:32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2700
234	41노97**	조*주	서울특별시	2024-04-09 19:5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235	서울35바81**	김*욱	서울특별시	2024-04-09 20:04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2700
236	345주66**	주*희*더*빌*지	충청남도 당진시	2024-04-09 20:30	홍은동 북한산 더샵아파트(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237	339라12**	김*열	경상북도 김천시	2024-04-09 23:00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느산부인과	전용차로 위반	52700
238	816누42**	김*영	충청남도 예산군	2024-04-10 05:35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239	213소59**	D*N*C*O*U*N*	경기도 시흥시	2024-04-10 09:52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240	충남92자64**	이*형	충청남도 예산군	2024-04-10 11:23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느산부인과	전용차로 위반	52700
241	05수68**	O*E*D*V*T*A*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2024-04-10 12:02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242	56노91**	J*M*E*F*K*R*D*I*U*T*M*V*C*	경기도 광주시	2024-04-10 12:24	종로2가교차로~종로1가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243	93두08**	주*희*두*이*씨	경기도 화성시	2024-04-10 16:12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244	12누34**	김*식	경기도 용인시	2024-04-10 19:47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245	49너93**	K*R*A*K*L*V*V*Z	광주광역시	2024-04-10 20:05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246	130호68**	이*희	울산광역시	2024-04-11 02:50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247	03도76**	유*자	서울특별시	2024-04-11 07:48	은평뉴타운10단지~구파발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2700
248	서울81배20**	심*선	서울특별시	2024-04-11 08:23	육사야구장~화랑대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2700
249	174하73**	정*나	서울특별시	2024-04-11 08:36	용화여자고등학교~노원역	전용차로 위반	52700
250	81부59**	오*범	인천광역시	2024-04-11 09:3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251	81부59**	오*범	인천광역시	2024-04-11 09:4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252	11거55**	장*옥	경상북도 포항시	2024-04-11 09:51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253	11거55**	장*옥	경상북도 포항시	2024-04-11 09:52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254	24러35**	정*성	경기도 양평군	2024-04-11 10:47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255	서울80자65**	서*석	서울특별시	2024-04-11 11:55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256	17누79**	김*정	서울특별시	2024-04-11 12:4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257	46거73**	최*석	서울특별시	2024-04-11 16:39	반포IC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연번	차량 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258	190하63**	(*)*지*개*탈	서울특별시	2024-04-11 16:49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2700
259	127가59**	(*)*스*림*리*(*x*r*m*K*r*a*o*,*t*.*	서울특별시	2024-04-11 17:1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260	48라43**	(*)*리*윈	인천광역시	2024-04-11 17:20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2700
261	서울32사30**	정*진	서울특별시	2024-04-11 17:3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262	194하15**	송*산*개*주*회*	서울특별시	2024-04-11 17:37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263	서울83사12**	정*규	서울특별시	2024-04-11 17:42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264	80러67**	김*섭	서울특별시	2024-04-11 17:56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265	57저56**	앨*스*홈*주*	서울특별시	2024-04-11 18:46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266	92너02**	임*주	서울특별시	2024-04-11 19:57	LBA삼성부동산앞	전용차로 위반	52700
267	81오81**	(*)*로*트	경기도 안양시	2024-04-11 21:06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268	295너43**	주*회*제*엠*이*학*	서울특별시	2024-04-12 08:35	태릉~화랑대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2700
269	88보43**	주*회*이*시*템	울산광역시	2024-04-12 08:45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270	52두24**	김*길	경기도 의정부시	2024-04-12 08:49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2700
271	52소40**	김*상	서울특별시	2024-04-12 12:01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272	25보96**	(*)*앤*이*	경기도 고양시	2024-04-12 14:10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273	서울38아62**	나*근	서울특별시	2024-04-12 14:20	압구정로데오역~성수대교남단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274	71고93**	주*회*아*그*슈*렌	서울특별시	2024-04-12 14:50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63240
275	199머17**	김*건	서울특별시	2024-04-12 15:12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2700
276	04더18**	김*희	경기도 안산시	2024-04-12 17:2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277	202도97**	주*회*루*아*퍼*	서울특별시	2024-04-12 17:25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2700
278	92너02**	임*주	서울특별시	2024-04-12 17:39	중앙근린공원~북가좌초교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2700
279	296나28**	이*규	충청남도 당진시	2024-04-12 17:50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280	23조06**	한*덕	서울특별시	2024-04-12 17:54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281	220호77**	(*)*지*시*템*	서울특별시	2024-04-12 18:14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282	84부08**	김*욱	인천광역시	2024-04-12 18:31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2700
283	64나07**	이*녕	경기도 의정부시	2024-04-12 18:46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284	26보22**	한*지	서울특별시	2024-04-12 19:40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285	68러02**	이*근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2024-04-13 04:02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연번	차량 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286	170하80**	예*회*역*합*발*로*트*식*사	경기도 용인시	2024-04-13 04:20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287	06서75**	김*욱	충청남도 천안시	2024-04-13 09:35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288	06서75**	김*욱	충청남도 천안시	2024-04-13 09:36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289	26소93**	이*재	서울특별시	2024-04-13 11:44	경찰청앞교차로~서울역	전용차로 위반	52700
290	177오87**	O*A*R*V*H*N	경기도 용인시	2024-04-13 12:35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291	186두79**	이*영	경기도 안산시	2024-04-13 13:44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292	186두79**	이*영	경기도 안산시	2024-04-13 13:45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293	186두79**	이*영	경기도 안산시	2024-04-13 13:46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294	116수81**	P*N*A*A	인천광역시	2024-04-13 14:13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295	58라33**	송*나	서울특별시	2024-04-13 14:38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296	35조08**	H*N*I*	서울특별시	2024-04-13 14:45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297	35조08**	H*N*I*	서울특별시	2024-04-13 14:46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298	35조08**	H*N*I*	서울특별시	2024-04-13 14:47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299	17누86**	정*석	서울특별시	2024-04-13 18:02	신반포로 반포우체국	전용차로 위반	52700
300	01너39**	서*상	서울특별시	2024-04-13 19:56	상봉동 중랑역 가나안교회 건너편 GS25상봉사랑점	전용차로 위반	52700
301	177도23**	L*U*U*H*N	경기도 수원시	2024-04-14 10:23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302	177도23**	L*U*U*H*N	경기도 수원시	2024-04-14 10:24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303	34서93**	B*Y*R*A*M*R*A*A*G*L*N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024-04-14 11:14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304	11로46**	A*I*O*O*I*M*K*K*M*V*C*	경상북도 고령군	2024-04-14 11:23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305	20라78**	신*연	서울특별시	2024-04-14 12:12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6 (여의도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306	서울금천차69**	P*A*N*N*H*	경기도 안양시	2024-04-14 13:35	말미사거리~시흥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42160
307	13라05**	(*)*라*기*리	서울특별시	2024-04-14 15:55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308	35더73**	D*A*R*A*K*A*	경기도 시흥시	2024-04-15 03:36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309	23머77**	이*애	서울특별시	2024-04-15 08:50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310	146호13**	이*윤	인천광역시	2024-04-15 08:59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2700
311	경기90자45**	대*특*운*(*)	경기도 안성시	2024-04-15 09:42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2700

연번	차량 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312	104호71**	이*욱	인천광역시	2024-04-15 10:17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2700
313	125호26**	L*W*N*H*U	서울특별시	2024-04-15 10:22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2700
314	839거50**	강*현	서울특별시	2024-04-15 11:10	서울 송파구 잠실동 261	전용차로 위반	52700
315	365너35**	서*희	서울특별시	2024-04-15 11:21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316	154주27**	L*L*H*A	충청북도 청주시	2024-04-15 11:29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317	143모95**	젤*피*엔*테*먼*	서울특별시	2024-04-15 13:08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2700
318	69다91**	조*철	광주광역시	2024-04-15 13:40	상봉동 중랑역 가나안교회 건너편 GS25상봉사랑점	전용차로 위반	52700
319	45부32**	김*영	서울특별시	2024-04-15 14:02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320	197호74**	박*신	서울특별시	2024-04-15 16:16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321	223구29**	이*엽	경상북도 포항시	2024-04-15 17:17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2700
322	64라22**	최*오	서울특별시	2024-04-15 17:20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323	56너87**	A*A*Z*O*N*R*O*	경상남도 창원시	2024-04-15 17:24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324	56너87**	A*A*Z*O*N*R*O*	경상남도 창원시	2024-04-15 17:25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325	34호86**	서*리	경기도 의정부시	2024-04-15 17:2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326	92너02**	임*주	서울특별시	2024-04-15 17:56	서울모래네우체국~행복가득요양원	전용차로 위반	52700
327	210가74**	양*윤	경기도 구리시	2024-04-15 17:58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328	30나40**	황*욱	부산광역시	2024-04-15 19:16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329	11부52**	한*민	인천광역시	2024-04-15 20:45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2700
330	03오65**	황*석	경상남도 함안군	2024-04-16 07:27	고촌ic~개화교	전용차로 위반	52700
331	03소90**	(*)*경	경기도 남양주시	2024-04-16 08:5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332	825러15**	유*	경기도 평택시	2024-04-16 12:49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333	49호82**	주*희*코*아*로*스	경기도 하남시	2024-04-16 15:02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2700
334	125호74**	엄*현	충청남도 아산시	2024-04-16 15:49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2700
335	25오34**	주*희*태*종*건*	경기도 오산시	2024-04-16 17:06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336	53버22**	M*O*A*M*D*A*L*J*I*M*H*A*Z*Y	충청남도 아산시	2024-04-16 17:49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2700
337	47우79**	손*희	서울특별시	2024-04-16 18:17	공릉동 문정왕후릉(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338	57소03**	김*웅	서울특별시	2024-04-16 18:59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339	257오85**	Z*A*G*O*G*I*G	경기도 안산시	2024-04-16 19:34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전용차로 위반	52700

연번	차량 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340	340고79**	이*훈	서울특별시	2024-04-16 20:10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2700
341	34부70**	주*회*대*콘*롤	경기도 고양시	2024-04-16 20:16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342	356더80**	사*훈	서울특별시	2024-04-16 20:45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2700
343	125호48**	권*성	경상북도 예천군	2024-04-16 23:44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344	11하13**	천*섭	서울특별시	2024-04-17 00:09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345	26보52**	박*율	경상남도 밀양시	2024-04-17 07:35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346	81오51**	양*선	경기도 성남시	2024-04-17 07:3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347	80오32**	길*현	서울특별시	2024-04-17 07:52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348	234다57**	양*선	경기도 광주시	2024-04-17 07:52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349	13버96**	명*지	경기도 의정부시	2024-04-17 08:21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2700
350	179더16**	김*규	서울특별시	2024-04-17 09:30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351	23라86**	한*온*인*걸*컨*팅*터*주*	서울특별시	2024-04-17 12:53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2700
352	49호29**	이*카	인천광역시	2024-04-17 14:02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353	04로21**	S*F*R*V*D*H*M*H*H*A*U*L*	서울특별시	2024-04-17 17:11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2700
354	04더18**	김*희	경기도 안산시	2024-04-17 17:1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355	127가59**	(*)*스*림*리*(*x*r*m*K*r*a*o*,*t*.*	서울특별시	2024-04-17 17:3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356	경기82바64**	주*프*시*주*	경기도 김포시	2024-04-17 17:3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357	08머92**	주*회*프*임*전*업	경상북도 성주군	2024-04-17 18:11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358	36나65**	김*현	서울특별시	2024-04-17 18:37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359	194하23**	이*원	서울특별시	2024-04-17 20:22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360	25로59**	최*훈	서울특별시	2024-04-17 20:33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2700
361	22하12**	서*종	경기도 안산시	2024-04-18 07:49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2700
362	29하51**	김*원	서울특별시	2024-04-18 09:2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363	165호30**	박*정	인천광역시	2024-04-18 09:31	공릉동 문정왕후릉(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364	85서56**	진*무	인천광역시	2024-04-18 09:47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365	123두47**	H*M*N*R*	경기도 안산시	2024-04-18 10:20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연번	차량 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366	47루01**	김*유	경기도 평택시	2024-04-18 10:55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367	191허69**	라*바*오*(*)	서울특별시	2024-04-18 11:1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368	서울31자53**	노*성	서울특별시	2024-04-18 12:56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369	서울31사30**	강*균	서울특별시	2024-04-18 15:34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370	384더15**	(*)*지*조*일*씨*옘	서울특별시	2024-04-18 15:37	양재IC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371	384더15**	(*)*지*조*일*씨*옘	서울특별시	2024-04-18 15:38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372	384더15**	(*)*지*조*일*씨*옘	서울특별시	2024-04-18 15:39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373	155호47**	박*규	서울특별시	2024-04-18 16:15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3 (여의도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374	160서60**	오*호	대구광역시	2024-04-18 17:08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느산부인과	전용차로 위반	52700
375	172어23**	김*길	경기도 남양주시	2024-04-18 17:1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376	239어47**	주*회*위*컴*니	경기도 파주시	2024-04-18 17:51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2700
377	10버74**	김*슬	서울특별시	2024-04-18 17:52	공릉동 삼육에코팜센터(구리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378	193하60**	이*석	서울특별시	2024-04-18 17:55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379	365구62**	(*)*현*킹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2024-04-18 18:06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380	25오34**	주*회*태*종*건*	경기도 오산시	2024-04-18 18:12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381	25오34**	주*회*태*종*건*	경기도 오산시	2024-04-18 18:15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382	59더16**	윤*희	서울특별시	2024-04-18 18:25	노원구민회관교차로~하계역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383	66라84**	정*숙	경기도 남양주시	2024-04-18 18:3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384	80수61**	강*구	경기도 성남시	2024-04-18 19:51	공릉동 문정왕후릉(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385	15더73**	(*)*텍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024-04-18 19:5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386	11조39**	대*에*지*라*(*)	경기도 양주시	2024-04-18 19:58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387	175허44**	(*)*이*디*	경기도 성남시	2024-04-18 19:58	공릉동 문정왕후릉(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388	51노75**	신*범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2024-04-19 06:39	상봉동 중랑역 가나안교회 건너편 GS25상봉사랑점	전용차로 위반	52700
389	38보47**	권*호	서울특별시	2024-04-19 08:09	신촌로246-2아현역방향 월드펫동물종합병원앞	전용차로 위반	52700

연번	차량 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390	02다84**	김*은	경기도 안양시	2024-04-19 11:06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2700
391	201우22**	L*M*I*O*E*	충청남도 아산시	2024-04-19 14:06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392	201우22**	L*M*I*O*E*	충청남도 아산시	2024-04-19 14:08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393	89부08**	김*원	경기도 이천시	2024-04-19 16:50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394	04두11**	최*길	경기도 부천시	2024-04-19 18:01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395	30너55**	최*성	서울특별시	2024-04-19 18:09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396	126하50**	유*정	경기도 남양주시	2024-04-19 18:10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2700
397	서울31바60**	이*갑	서울특별시	2024-04-19 18:18	올림픽회관교차로~올림픽대교남단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398	128하53**	백*귀	인천광역시	2024-04-19 19:2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399	24호28**	이*수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24-04-19 19:25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2700
400	197보20**	김*호	서울특별시	2024-04-19 19:29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401	35부52**	강*연	서울특별시	2024-04-19 20:34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2700
402	194하23**	이*원	서울특별시	2024-04-19 20:39	공릉동 문정왕후릉(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403	30조58**	(*)*탑	서울특별시	2024-04-20 08:25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2700
404	25고07**	L*Z*I*H*N*	경기도 안성시	2024-04-20 10:55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405	712하10**	장*석	경기도 구리시	2024-04-20 12:16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63240
406	43러75**	Q*X*A*O*J*N*V*U*H*M*A*K*D*R*Y*E*U*L	충청남도 천안시	2024-04-20 12:21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407	38다72**	변*민	서울특별시	2024-04-20 13:13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2700
408	49주80**	서*석	서울특별시	2024-04-20 14:53	홍제동 홍제삼거리 중앙정류소(시내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409	373조51**	정*일	서울특별시	2024-04-20 15:33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410	12누79**	이*연	대구광역시	2024-04-20 17:47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411	250버85**	최*범	충청북도 음성군	2024-04-21 00:37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412	241도47**	김*현	인천광역시	2024-04-21 03:00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전용차로 위반	52700
413	109호31**	전*대	서울특별시	2024-04-21 10:56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414	109호31**	전*대	서울특별시	2024-04-21 10:57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연번	차량 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415	183조27**	J*N*H*N*	경기도 안산시	2024-04-21 12:02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416	183조27**	J*N*H*N*	경기도 안산시	2024-04-21 12:03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417	12누79**	이*연	대구광역시	2024-04-21 14:33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418	12누79**	이*연	대구광역시	2024-04-21 14:34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419	12누79**	이*연	대구광역시	2024-04-21 14:35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420	191마82**	정*주	인천광역시	2024-04-21 15:29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421	191마82**	정*주	인천광역시	2024-04-21 15:30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422	191마82**	정*주	인천광역시	2024-04-21 15:59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423	191마82**	정*주	인천광역시	2024-04-21 16:00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424	55우40**	윤*석	서울특별시	2024-04-21 20:20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425	372머72**	김*민	서울특별시	2024-04-21 21:21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426	61허09**	이*진	서울특별시	2024-04-21 23:54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427	38보47**	권*호	서울특별시	2024-04-22 08:06	이대역~아현역	전용차로 위반	52700
428	12오36**	문*복	서울특별시	2024-04-22 08:51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429	125호96**	송*준	서울특별시	2024-04-22 09:16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2700
430	50가83**	김*철	경기도 성남시	2024-04-22 09:20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2700
431	153하89**	박*희	경기도 수원시	2024-04-22 13:1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432	경기91아48**	박*화	경기도 성남시	2024-04-22 14:29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2700
433	339오86**	박*식	경기도 성남시	2024-04-22 15:57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2700
434	17하22**	주*회*쏘*	대전광역시	2024-04-22 16:06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전용차로 위반	52700
435	286구37**	조*임	경기도 의정부시	2024-04-22 16:31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느산부인과	전용차로 위반	52700
436	135로85**	N*D*I*R*I	인천광역시	2024-04-22 19:19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437	806어68**	이*식*주*회*	경기도 남양주시	2024-04-22 20:22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438	133가91**	신*정	서울특별시	2024-04-23 07:26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0 (여의도동, 대교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2700
439	95주44**	백*선	서울특별시	2024-04-23 07:3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440	69노47**	(*)*인*발*스*	서울특별시	2024-04-23 07:36	군자역~아차산역	전용차로 위반	52700
441	115호43**	주*회*중*렌*카	서울특별시	2024-04-23 07:4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442	84두31**	정*환	경기도 부천시	2024-04-23 08:1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연번	차량 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443	82부09**	유*회*호*푸*	서울특별시	2024-04-23 08:5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444	95주78**	(*)*5*어*럴	서울특별시	2024-04-23 08:53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445	41수82**	채*희	인천광역시	2024-04-23 09:16	송파대로 구 장미아파트앞	전용차로 위반	52700
446	95너05**	(*)*이*이*지*어*	경기도 평택시	2024-04-23 09:29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2700
447	12다04**	이*운	충청북도 충주시	2024-04-23 09:33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448	62저93**	주*에*씨*코*아	서울특별시	2024-04-23 09:50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449	43오87**	서*민	충청남도 예산군	2024-04-23 09:58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450	66더91**	(*)*천*통	서울특별시	2024-04-23 12:2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451	37주61**	김*숙	서울특별시	2024-04-23 12:24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452	25머59**	김*실	서울특별시	2024-04-23 14:3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453	63버71**	임*희	경기도 광명시	2024-04-23 17:23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454	153호50**	뮤*오*램*식*사	경기도 성남시	2024-04-23 17:41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2700
455	199하22**	Z*E*G*A*Y*N*	경기도 오산시	2024-04-23 17:49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2700
456	175머58**	남*주*회*	서울특별시	2024-04-23 18:3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457	64보75**	문*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2024-04-23 19:25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458	인천30바32**	박*남	인천광역시	2024-04-23 19:27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2700
459	94어27**	김*태	경기도 의왕시	2024-04-23 19:33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460	209무23**	주*회*가*무*공*	서울특별시	2024-04-23 19:45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461	33허50**	김*중	경기도 수원시	2024-04-23 19:46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2700
462	34부70**	주*회*대*콘*롤	경기도 고양시	2024-04-23 20:16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463	95주78**	(*)*5*어*럴	서울특별시	2024-04-24 09:07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464	09오46**	이*실	서울특별시	2024-04-24 09:37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2700
465	244오70**	P*T*H*W*W*T	경기도 고양시	2024-04-24 14:13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2700
466	57러32**	김*육	경기도 부천시	2024-04-24 16:15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3	전용차로 위반	52700
467	138고65**	김*헌	서울특별시	2024-04-24 18:26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468	08두09**	농*회*법*주*회*누*바*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2024-04-24 18:35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연번	차량 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469	188도80**	조*	서울특별시	2024-04-24 18:41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470	59모80**	최*호	경기도 시흥시	2024-04-24 19:06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471	18가13**	이*연	경기도 파주시	2024-04-24 19:28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472	02두23**	강*석	경기도 여주시	2024-04-24 19:33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2700
473	45버26**	송*은	서울특별시	2024-04-25 06:27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2700
474	38어57**	이*민	서울특별시	2024-04-25 07:15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475	39다06**	J*N*H*N*N*N	경기도 시흥시	2024-04-25 07:27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476	117러21**	이*수	경기도 의정부시	2024-04-25 08:29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477	12다04**	이*운	충청북도 충주시	2024-04-25 09:07	공릉동 문정왕후릉(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478	02고29**	박*홍	서울특별시	2024-04-25 10:39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479	15오15**	조*희	서울특별시	2024-04-25 11:35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2700
480	247러11**	노*래	충청남도 천안시	2024-04-25 12:52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481	101하86**	주*회*우*렌*카	서울특별시	2024-04-25 13:4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482	53조66**	(*)*나*앤*	부산광역시	2024-04-25 14:38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2700
483	183너61**	이*식	경기도 용인시	2024-04-25 15:27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484	183너61**	이*식	경기도 용인시	2024-04-25 15:28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485	175머58**	남*주*회*	서울특별시	2024-04-25 15:39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486	02두06**	J*N*O*G*A*	경기도 수원시	2024-04-25 17:40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487	381루25**	티*스*코*레*션*식*사	서울특별시	2024-04-25 18:2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488	45머36**	김*호	서울특별시	2024-04-25 18:31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2700
489	68도26**	주*회*월*메*앤*티	서울특별시	2024-04-25 18:4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490	247러11**	노*래	충청남도 천안시	2024-04-25 19:45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491	168어57**	주*회*문*인	서울특별시	2024-04-25 20:1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492	서울32바43**	김*균	경기도 성남시	2024-04-25 20:39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493	33가06**	김*순	경기도 의정부시	2024-04-26 07:18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494	165허46**	김*현	경기도 안산시	2024-04-26 07:22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495	322우61**	심*수	서울특별시	2024-04-26 08:4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496	75도92**	대*예*교*로*동*교*	경기도 안양시	2024-04-26 10:16	서울 종로구 세종로 1-63	전용차로 위반	63240
497	89부40**	김*식	경기도 포천시	2024-04-26 10:52	잠실대교남단교차로~잠실역	전용차로 위반	52700

연번	차량 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498	125호54**	강*민	서울특별시	2024-04-26 12:57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499	125호54**	강*민	서울특별시	2024-04-26 12:58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500	125호54**	강*민	서울특별시	2024-04-26 12:59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501	190우13**	노*희	경기도 고양시	2024-04-26 16:3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502	33너77**	박*선	인천광역시	2024-04-26 17:28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2700
503	04더18**	김*희	경기도 안산시	2024-04-26 17:3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504	329부26**	김*원	서울특별시	2024-04-26 18:05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2700
505	22모45**	이*영	서울특별시	2024-04-26 18:14	생태공원앞	전용차로 위반	52700
506	85소06**	김*원	서울특별시	2024-04-26 19:29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2700
507	07호63**	권*준	충청남도 천안시	2024-04-26 20:39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508	167호24**	신*환	경기도 부천시	2024-04-26 20:5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509	152나54**	N*K*Z*T*M*E	경기도 수원시	2024-04-27 05:24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510	348두21**	정*복	인천광역시	2024-04-27 05:58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511	247너52**	S*I*U*K*R*A*R*B*	서울특별시	2024-04-27 09:14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512	182루18**	한*옥	충청남도 천안시	2024-04-27 09:25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513	101호94**	(*)*앤*이*	서울특별시	2024-04-27 10:46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514	101호94**	(*)*앤*이*	서울특별시	2024-04-27 10:47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515	176저12**	A*A*M*T*V*A*H*D*R	세종특별자치시	2024-04-27 14:24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516	171호60**	이*호	충청남도 천안시	2024-04-27 16:31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517	171호60**	이*호	충청남도 천안시	2024-04-27 16:32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518	171호60**	이*호	충청남도 천안시	2024-04-27 16:33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519	176저12**	A*A*M*T*V*A*H*D*R	세종특별자치시	2024-04-27 16:56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520	37다18**	D*U*L*S*K*R*T*N*A*I*H	경기도 동두천시	2024-04-27 18:51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521	37다18**	D*U*L*S*K*R*T*N*A*I*H	경기도 동두천시	2024-04-27 18:52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522	64무17**	Z*U*A*A*A*O*R*S*E*	인천광역시	2024-04-28 00:20	홍은동 북한산 더샵아파트(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523	130호32**	주*리*통*식*사	경기도 안산시	2024-04-28 01:38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연번	차량 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524	06수91**	케*카*식*사*상*용*	광주광역시	2024-04-28 04:41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525	30노96**	G*N*E*F*Z*I*D*N*I*S*O*O*I*H	경기도 안산시	2024-04-28 09:26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526	30노96**	G*N*E*F*Z*I*D*N*I*S*O*O*I*H	경기도 안산시	2024-04-28 09:27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527	30노96**	G*N*E*F*Z*I*D*N*I*S*O*O*I*H	경기도 안산시	2024-04-28 09:28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528	39루27**	황*규	경기도 의정부시	2024-04-28 13:03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느산부인과	전용차로 위반	52700
529	서울31바31**	김*준	서울특별시	2024-04-28 19:25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530	30무27**	주*회*종*3*닷*	서울특별시	2024-04-28 22:35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531	35러20**	K*A*A*K*D*I	경기도 화성시	2024-04-29 01:59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532	823무76**	유*재	서울특별시	2024-04-29 07:29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533	170허20**	정*원	서울특별시	2024-04-29 07:42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534	106호57**	안*원	인천광역시	2024-04-29 07:49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2700
535	62두83**	김*환	서울특별시	2024-04-29 08:12	염창역~양화교	전용차로 위반	52700
536	57러32**	김*육	경기도 부천시	2024-04-29 09:1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	전용차로 위반	52700
537	12다04**	이*운	충청북도 충주시	2024-04-29 09:25	공릉동 문정왕후릉(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538	322우61**	심*수	서울특별시	2024-04-29 09:4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539	05루31**	전*석	인천광역시	2024-04-29 15:19	압구정역교차로~현대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2700
540	46무31**	안*규	인천광역시	2024-04-29 18:18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2700
541	42러95**	주*회*세*론*타	경기도 여주시	2024-04-29 18:54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542	29고26**	김*	경기도 성남시	2024-04-29 19:53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2700
543	27마06**	명*호	서울특별시	2024-04-29 20:48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544	26거17**	함*옥	경기도 양주시	2024-04-29 20:48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2700
545	42부60**	T*U*A*U*G	경기도 평택시	2024-04-30 14:01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546	87마99**	해*루*드*식*사	서울특별시	2024-04-30 14:41	압구정역교차로~현대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2700
547	143서68**	주*회*더*도*	경기도 파주시	2024-04-30 14:46	압구정역교차로~현대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2700
548	서울36바20**	장*석	서울특별시	2024-04-30 16:43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2700

연번	차량 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549	273보84**	김*	서울특별시	2024-04-30 17:17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2700
550	41로98**	(*)*간*움	경기도 남양주시	2024-04-30 17:22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551	04더18**	김*희	경기도 안산시	2024-04-30 17:2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552	경기98바68**	정*균	경기도 안양시	2024-04-30 17:28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63240
553	104하91**	이*미	경기도 동두천시	2024-04-30 17:52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2700
554	83오15**	유*용	대구광역시	2024-04-30 19:00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555	50부82**	S*W*D*N*O*A*E*A* M*D*O*A*E*	서울특별시	2024-04-30 19:28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556	03부21**	김*희	경기도 성남시	2024-04-30 19:30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557	50부82**	S*W*D*N*O*A*E*A* M*D*O*A*E*	서울특별시	2024-04-30 19:33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558	04오64**	최*운	경기도 의정부시	2024-04-30 19:40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559	23하28**	송*희	서울특별시	2024-04-30 19:41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2700
560	24소62**	원*준	서울특별시	2024-04-30 20:27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2700
561	249러52**	최*호	서울특별시	2024-05-01 01:24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2700
562	160하60**	김*국	서울특별시	2024-05-01 02:11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563	서울32사27**	한*은	경기도 수원시	2024-05-01 07:28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564	서울31바66**	강*태	서울특별시	2024-05-01 07:39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2700
565	87우65**	(*)*동*드	서울특별시	2024-05-01 08:3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566	63머84**	이*희	경기도 파주시	2024-05-01 08:40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567	35오81**	백*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2024-05-01 08:55	공릉동 삼육에코팜센터(구리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568	03라61**	양*모	경기도 남양주시	2024-05-01 09:09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2700
569	68로93**	이*혜	서울특별시	2024-05-01 09:13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2700
570	66도86**	박*분	서울특별시	2024-05-01 09:23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571	서울32사27**	한*은	경기도 수원시	2024-05-01 09:24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2700
572	인천99아82**	윤*수	인천광역시	2024-05-01 09:30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63240
573	서울31자77**	전*식	서울특별시	2024-05-01 09:43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574	156하14**	은*용	서울특별시	2024-05-01 11:00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연번	차량 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575	156하14**	은*용	서울특별시	2024-05-01 11:02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576	135가41**	전*영	경기도 평택시	2024-05-01 11:50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577	61마19**	김*훈	경기도 안산시	2024-05-01 13:50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578	358라53**	박*서	인천광역시	2024-05-01 15:33	서울 송파구 잠실동 261	전용차로 위반	52700
579	04더18**	김*희	경기도 안산시	2024-05-01 17:2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580	46저80**	이*현	경기도 부천시	2024-05-01 17:32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581	서울31자79**	오*석	경기도 의정부시	2024-05-01 17:41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느산부인과	전용차로 위반	52700
582	300보84**	김*갑	서울특별시	2024-05-01 18:05	공릉동 문정왕후릉(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583	194하23**	이*원	서울특별시	2024-05-01 18:29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584	05두21**	주*회*도*이*씨	경기도 구리시	2024-05-01 18:46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585	26고22**	김*	경상남도 진주시	2024-05-01 18:5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586	136너77**	이*열	서울특별시	2024-05-01 18:59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2700
587	56무55**	안*웅	경기도 남양주시	2024-05-01 19:04	공릉동 문정왕후릉(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588	20루27**	박*관	서울특별시	2024-05-01 19:22	공릉동 목예원(구리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589	156호84**	주*회*레*상*	서울특별시	2024-05-01 19:49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590	34호87**	용*덕	서울특별시	2024-05-01 20:03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591	162다98**	이*아	서울특별시	2024-05-01 20:09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2700
592	114두48**	김*진	경기도 동두천시	2024-05-01 20:13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593	19보09**	유*선	경기도 수원시	2024-05-01 20:30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2700
594	124저53**	김*훈	서울특별시	2024-05-02 07:02	사당IC~사당역	전용차로 위반	52700
595	83너84**	(*)*렌*리*일	서울특별시	2024-05-02 07:16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2700
596	26구73**	이*훈	서울특별시	2024-05-02 07:21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2700
597	93더54**	정*영	인천광역시	2024-05-02 07:22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598	63오07**	최*재	서울특별시	2024-05-02 07:3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599	802보40**	주*회*한*약*생*공*	경기도 안산시	2024-05-02 07:47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2700
600	서울80배42**	김*웅	경기도 구리시	2024-05-02 08:11	내곡IC~염곡IC	전용차로 위반	52700
601	807주21**	J*A*G*A*Z*U	경기도 파주시	2024-05-02 08:22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602	47서27**	임*훈	서울특별시	2024-05-02 08:4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연번	차량 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603	38루07**	윤*수	경기도 포천시	2024-05-02 08:57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2700
604	28무94**	노*숙	경기도 의정부시	2024-05-02 09:20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605	006가90**	이*복	인천광역시	2024-05-02 09:22	개화사거리~김포공항입구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63240
606	70다91**	이*정	서울특별시	2024-05-02 09:25	내곡IC~염곡IC	전용차로 위반	63240
607	57러32**	김*육	경기도 부천시	2024-05-02 09:3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	전용차로 위반	52700
608	114두48**	김*진	경기도 동두천시	2024-05-02 09:38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2700
609	837수62**	이*대	서울특별시	2024-05-02 09:38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2700
610	서울84자65**	이*천	서울특별시	2024-05-02 11:38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2700
611	24나62**	전*오	경기도 수원시	2024-05-02 11:41	수유사거리~미아역	전용차로 위반	52700
612	15모96**	농*회*법*(*)*수*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2024-05-02 12:09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613	63러93**	민*식	경기도 남양주시	2024-05-02 13:30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2700
614	101하72**	S*N*A*	경기도 용인시	2024-05-02 13:37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615	101하72**	S*N*A*	경기도 용인시	2024-05-02 13:40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616	08버50**	(*)*드*사*들	경기도 동두천시	2024-05-02 14:45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617	816구74**	국*공*공*야*생*질*관*팀	서울특별시	2024-05-02 15:08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618	80부23**	(*)*국*알*	서울특별시	2024-05-02 17:20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619	46머28**	이*훈	경기도 고양시	2024-05-02 17:29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2700
620	04더18**	김*희	경기도 안산시	2024-05-02 17:3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621	87우70**	김*수	경기도 양주시	2024-05-02 17:46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2700
622	87우70**	김*수	경기도 양주시	2024-05-02 17:48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623	07다27**	최*윤	서울특별시	2024-05-02 17:56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624	320오78**	이*선	서울특별시	2024-05-02 18:14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625	167허77**	김*정	서울특별시	2024-05-02 18:56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626	08두09**	농*회*법*주*회*누*바*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2024-05-02 19:05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627	166호73**	드*엔*니*링	서울특별시	2024-05-02 19:14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628	23하28**	송*희	서울특별시	2024-05-02 19:47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2700
629	154도57**	김*화	경기도 화성시	2024-05-02 19:51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2700
630	서울32바82**	정*	경기도 광주시	2024-05-02 20:4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연번	차량 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631	86두27**	남*지호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2024-05-03 07:17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632	800무80**	정*기	경기도 시흥시	2024-05-03 07:3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633	101하72**	S*N*A*	경기도 용인시	2024-05-03 08:17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634	101하72**	S*N*A*	경기도 용인시	2024-05-03 08:18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635	837수62**	이*대	서울특별시	2024-05-03 09:38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2700
636	18누03**	김*진	경기도 광주시	2024-05-03 11:18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637	31서98**	김*철	서울특별시	2024-05-03 11:23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2700
638	서울31바29**	서*원	경기도 의정부시	2024-05-03 14:37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2700
639	서울87자62**	이*백	서울특별시	2024-05-03 15:19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640	143거32**	우*명	경상북도 영천시	2024-05-03 15:23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641	84고53**	권*택	경기도 안양시	2024-05-03 16:17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2700
642	28오29**	창*시*트*주*	서울특별시	2024-05-03 16:23	현대백화점~현대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2700
643	경기92바81**	김*환	충청남도 아산시	2024-05-03 16:25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644	31거70**	안*희	서울특별시	2024-05-03 17:22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2700
645	179저29**	김*환	서울특별시	2024-05-03 17:29	현대백화점~현대고등학교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646	21루85**	이*희	서울특별시	2024-05-03 17:32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2700
647	83너84**	(*)*렌*리*일	서울특별시	2024-05-03 17:39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2700
648	61더04**	송*문	서울특별시	2024-05-03 17:42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649	49누93**	김*규	서울특별시	2024-05-03 17:5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650	807보57**	윤*철	서울특별시	2024-05-03 18:04	올림픽회관교차로~올림픽대교남단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651	232모38**	새*토*보*(*)	서울특별시	2024-05-03 18:08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2700
652	345나69**	문*모	서울특별시	2024-05-03 18:11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2700
653	90고23**	주*희*창*패*리	서울특별시	2024-05-03 18:22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2700
654	83구45**	박*진	경기도 성남시	2024-05-03 18:25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2700
655	139소67**	송*라	서울특별시	2024-05-03 18:4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연번	차량 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656	126저69**	남*권	인천광역시	2024-05-03 18:5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657	143거32**	우*명	경상북도 영천시	2024-05-03 19:00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658	06부84**	임*인	전라남도 영암군	2024-05-03 19:33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659	40버28**	소*석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2024-05-03 19:41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2700
660	53모63**	Y*N*K*A*G*H*N*	경기도 부천시	2024-05-03 19:4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661	28머39**	박*자	서울특별시	2024-05-03 20:05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2700
662	47누42**	김*표	서울특별시	2024-05-03 20:16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2700
663	160도23**	정*환	경기도 안산시	2024-05-03 20:19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2700
664	서울31자90**	이*종	경기도 남양주시	2024-05-04 00:50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665	93로64**	양*일	경기도 남양주시	2024-05-04 04:21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666	23오54**	이*수	서울특별시	2024-05-04 07:38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전용차로 위반	52700
667	146우54**	박*은	서울특별시	2024-05-04 10:22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668	61버30**	송*수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24-05-04 12:10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669	서울강서카63**	이*호	서울특별시	2024-05-04 13:07	서대문역교차로~서울금화초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42160
670	721어94**	오*현	서울특별시	2024-05-04 13:49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전용차로 위반	63240
671	183너61**	이*식	경기도 용인시	2024-05-04 14:34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672	83너84**	(*)*렌*리*일	서울특별시	2024-05-04 14:56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673	83너84**	(*)*렌*리*일	서울특별시	2024-05-04 14:58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674	143나95**	김*록	경기도 오산시	2024-05-04 15:16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675	143나95**	김*록	경기도 오산시	2024-05-04 15:17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676	143나95**	김*록	경기도 오산시	2024-05-04 15:18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677	101수73**	김*복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024-05-04 15:30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678	67나91**	G*Y*P*V*H*K*R*K*	인천광역시	2024-05-04 16:11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679	67나91**	G*Y*P*V*H*K*R*K*	인천광역시	2024-05-04 16:13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680	281고63**	김*식	충청남도 천안시	2024-05-04 19:25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연번	차량 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681	26루26**	주*회*커*타	서울특별시	2024-05-04 19:42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682	178구63**	J*N*I*N*U*	경기도 부천시	2024-05-05 12:21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683	83가88**	구*식	서울특별시	2024-05-05 17:07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684	274수31**	최*호	충청남도 아산시	2024-05-05 17:26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685	92두93**	주*회*경*편*나*농*농*회*법*	경기도 포천시	2024-05-05 18:00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686	23누86**	(*)*로*터***품**	대전광역시	2024-05-05 18:45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687	33루97**	M*L*L*	서울특별시	2024-05-05 19:08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688	76어71**	천*성	서울특별시	2024-05-05 19:31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63240
689	34부23**	임*명	경기도 시흥시	2024-05-05 20:28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느산부인과	전용차로 위반	52700
690	65너08**	양*중	충청북도 청주시	2024-05-05 23:06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2700
691	80부69**	주*회*아*인*크*자*	서울특별시	2024-05-06 06:32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692	13러99**	신*석*(*)	경기도 양주시	2024-05-06 11:41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693	13저55**	(*)*이*엑*	서울특별시	2024-05-06 11:49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694	07너20**	G*E*G*H*I*T*P*E*H*I	경기도 평택시	2024-05-06 12:42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695	56너87**	A*A*Z*O*N*R*O*	경상남도 창원시	2024-05-06 13:04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696	56너87**	A*A*Z*O*N*R*O*	경상남도 창원시	2024-05-06 13:06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697	56너87**	A*A*Z*O*N*R*O*	경상남도 창원시	2024-05-06 16:01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698	10우28**	김*미	울산광역시	2024-05-06 17:04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699	10우28**	김*미	울산광역시	2024-05-06 17:06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700	35소77**	주*회*장*	서울특별시	2024-05-06 19:39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701	25서11**	오*선	서울특별시	2024-05-07 00:00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702	43머30**	김*의	서울특별시	2024-05-07 09:43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2700
703	서울32사88**	김*태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2024-05-07 10:00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전용차로 위반	52700
704	156하14**	은*용	서울특별시	2024-05-07 13:24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연번	차량 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705	301다73**	주*희*청*차*대	경기도 광주시	2024-05-07 13:51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2700
706	156하44**	설*애*식*사	경기도 광주시	2024-05-07 14:04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707	64러53**	(*)*이*	서울특별시	2024-05-07 14:41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708	64러53**	(*)*이*	서울특별시	2024-05-07 14:42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709	67거97**	윤*호	서울특별시	2024-05-07 15:07	압구정역~현대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2700
710	02조24**	(*)*진*드	경기도 화성시	2024-05-07 15:08	압구정역~현대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2700
711	143나95**	김*록	경기도 오산시	2024-05-07 17:09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712	143나95**	김*록	경기도 오산시	2024-05-07 17:11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713	47도31**	주*회*미*팜	경상북도 문경시	2024-05-07 17:15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714	242도57**	N*N*H*N*A*	경기도 부천시	2024-05-07 17:23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2700
715	338더31**	J*N*O*G*H*	인천광역시	2024-05-07 17:53	압구정로데오역~성수대교남단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716	42모20**	(*)*엔*컵*니	서울특별시	2024-05-07 18:2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717	18두22**	오*종	서울특별시	2024-05-07 18:53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2700
718	17거24**	이*형	경기도 양주시	2024-05-07 18:55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2700
719	46거74**	김*희	서울특별시	2024-05-07 19:02	여의도선착장교차로~수정아파트앞	전용차로 위반	52700
720	26도94**	주*회*에*디*시*템	서울특별시	2024-05-07 19:17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721	15오51**	조*호	부산광역시	2024-05-07 19:2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722	인천99아36**	최*훈	인천광역시	2024-05-07 19:25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63240
723	경기98사78**	최*호	경기도 고양시	2024-05-07 19:45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63240
724	174저20**	한*철	서울특별시	2024-05-07 19:46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725	34부70**	주*회*대*콘*롤	경기도 고양시	2024-05-07 19:48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726	156하14**	은*용	서울특별시	2024-05-07 19:52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727	156하14**	은*용	서울특별시	2024-05-07 19:55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728	317버77**	농*회*법*주*회*삼*바*오*	경기도 김포시	2024-05-07 20:39	공릉동 문정왕후릉(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729	341머88**	정*g*b*설*주*	서울특별시	2024-05-07 20:49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2700
730	145거25**	김*숙	경기도 광명시	2024-05-07 22:18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전용차로 위반	52700
731	80오32**	길*현	서울특별시	2024-05-08 07:15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연번	차량 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732	108조26**	(*)*프*이*서*원	서울특별시	2024-05-08 07:31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3 (여의도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733	09너01**	박*규	서울특별시	2024-05-08 07:32	강남소방서 앞	전용차로 위반	52700
734	213버14**	주*회*웰*커*니*이*	서울특별시	2024-05-08 07:3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735	184라95**	주*회*에*씨*스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2024-05-08 08:54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736	108조26**	(*)*프*이*서*원	서울특별시	2024-05-08 08:56	수정아파트앞	전용차로 위반	52700
737	67루39**	홍*수	서울특별시	2024-05-08 09:13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2700
738	경기06모54**	순*환*개*(*)	경기도 시흥시	2024-05-08 09:20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63240
739	57러32**	김*육	경기도 부천시	2024-05-08 09:56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	전용차로 위반	52700
740	71거50**	C*O*P*E*R*M	경기도 의정부시	2024-05-08 10:37	상봉삼거리	전용차로 위반	63240
741	136노36**	L*C*U*G*A*G	충청남도 보령시	2024-05-08 12:5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	전용차로 위반	52700
742	255무94**	J*N*U*J*E	경기도 안산시	2024-05-08 13:50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743	38마93**	박*호	인천광역시	2024-05-08 13:51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느산부인과	전용차로 위반	52700
744	255무94**	J*N*U*J*E	경기도 안산시	2024-05-08 13:52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745	36다20**	유*만	경기도 의정부시	2024-05-08 14:37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746	38더90**	정*	경기도 파주시	2024-05-08 17:17	여의도동 여의도 하이투자증권	전용차로 위반	52700
747	105하68**	김*영	경기도 고양시	2024-05-08 17:28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2700
748	17무42**	김*문	서울특별시	2024-05-08 17:28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749	155서19**	윤*심	서울특별시	2024-05-08 17:43	올림픽회관교차로~올림픽대교남단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750	143더88**	김*국	서울특별시	2024-05-08 17:43	올림픽회관교차로~올림픽대교남단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751	62주05**	유*민	경기도 의정부시	2024-05-08 18:20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752	320오78**	이*선	서울특별시	2024-05-08 18:20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753	53더99**	김*수	서울특별시	2024-05-08 18:35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2700
754	05두03**	김*정	경기도 수원시	2024-05-08 19:00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2700
755	50다01**	주*회*인*빌*퍼*	서울특별시	2024-05-08 19:18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756	46거74**	김*희	서울특별시	2024-05-08 19:18	여의도선착장교차로~수정아파트앞	전용차로 위반	52700
757	203누26**	한*정	서울특별시	2024-05-08 19:45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758	373가65**	주*회*경*토*개*	서울특별시	2024-05-08 19:46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연번	차량 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759	50서32**	이*근	경기도 수원시	2024-05-08 19:51	공릉동 삼육에코팜센터(구리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760	134루27**	오*근	경기도 안산시	2024-05-08 20:13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2700
761	806저16**	주*회*신*글*벌*드*비*	서울특별시	2024-05-09 07:34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2700
762	320머88**	임*성	서울특별시	2024-05-09 09:10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763	90마42**	이*민	경기도 김포시	2024-05-09 09:17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2700
764	49러49**	이*도	경상북도 구미시	2024-05-09 09:38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2700
765	37다18**	D*U*L*S*K*R*T*N*A*I*H	경기도 동두천시	2024-05-09 10:06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766	18모19**	임*탁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2024-05-09 10:32	강남소방서앞	전용차로 위반	52700
767	372우20**	우*화	경기도 구리시	2024-05-09 12:1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768	47고17**	문*태	경기도 수원시	2024-05-09 12:30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769	96버50**	문*성	서울특별시	2024-05-09 12:41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2700
770	92거69**	곽*희	서울특별시	2024-05-09 12:46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여의도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771	57어49**	F*X*,*O*I*A*R	경상북도 칠곡군	2024-05-09 13:58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772	57어49**	F*X*,*O*I*A*R	경상북도 칠곡군	2024-05-09 13:59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773	서울31아21**	김*근	인천광역시	2024-05-09 14:2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774	24루56**	최*결	서울특별시	2024-05-09 14:57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2700
775	187고49**	김*연	경기도 구리시	2024-05-09 17:3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776	47머81**	김*희	서울특별시	2024-05-09 17:36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2700
777	58오43**	김*현	경기도 양주시	2024-05-09 18:01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2700
778	66무95**	오*웅	서울특별시	2024-05-09 18:13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779	127가59**	(*)*스*림*리*(*x*r*m*K*r*a*o*,*t*.*	서울특별시	2024-05-09 18:2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780	12라05**	최*주	서울특별시	2024-05-09 18:47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2700
781	66수90**	T*O*G*R*L*O*D	경기도 양주시	2024-05-09 18:47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2700
782	352라45**	민*수	서울특별시	2024-05-09 19:2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783	58가54**	신*준	서울특별시	2024-05-09 19:51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2700
784	52루80**	(*)*드*리*	서울특별시	2024-05-09 19:56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2700

연번	차량 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785	52소20**	알*스*설*식*사	경기도 파주시	2024-05-09 20:07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2700
786	88너38**	(*)*국*합*설	경기도 남양주시	2024-05-09 20:33	공릉동 문정왕후릉(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787	39주84**	N*R*A*O*S*N*H*R	인천광역시	2024-05-09 21:33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788	181러21**	안*규	경기도 수원시	2024-05-10 07:36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789	84모89**	윤*노	충청남도 서천군	2024-05-10 07:44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790	17주31**	박*필	경기도 광주시	2024-05-10 08:4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791	58보73**	노*선	경기도 성남시	2024-05-10 09:43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2700
792	55더90**	농*회*법*동*주*회*	울산광역시	2024-05-10 10:39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793	36가55**	(*)*강*크	경기도 광명시	2024-05-10 11:51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7 (여의도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794	179다42**	김*	경기도 안산시	2024-05-10 12:14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795	70저97**	정*환	서울특별시	2024-05-10 13:48	강서구청입구교차로~등촌역	전용차로 위반	63240
796	87더09**	윤*현	경기도 의정부시	2024-05-10 14:25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797	66구05**	남*순	서울특별시	2024-05-10 14:56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798	04더18**	김*희	경기도 안산시	2024-05-10 17:3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799	04수33**	최*숙	경기도 파주시	2024-05-10 17:53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800	04수33**	최*숙	경기도 파주시	2024-05-10 17:55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801	65도74**	주*회*대*건*사*무*	서울특별시	2024-05-10 17:5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802	110버20**	임*완	충청남도 천안시	2024-05-10 17:59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2700
803	227구56**	장*관	경기도 안양시	2024-05-10 18:15	성내교	전용차로 위반	52700
804	236구56**	(*)*앤*리	경기도 안산시	2024-05-10 18:45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2700
805	56누29**	장*정	서울특별시	2024-05-10 18:51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2700
806	249수74**	주*식	서울특별시	2024-05-10 19:25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807	303어22**	홍*일	경기도 구리시	2024-05-10 19:43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808	서울81배15**	임*준	서울특별시	2024-05-10 20:13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809	57모84**	이*용	경기도 성남시	2024-05-10 20:5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810	08소75**	조*래	경기도 안양시	2024-05-10 20:56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느산부인과	전용차로 위반	52700

연번	차량 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811	14가90**	임*엽	서울특별시	2024-05-11 05:22	논현역~반포역	전용차로 위반	52700
812	48누87**	C*R*O*C*U*T*A*D*E*N*E*	경기도 평택시	2024-05-11 09:21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813	113도73**	김*경	부산광역시	2024-05-11 09:22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814	59누54**	이*환	경기도 광명시	2024-05-11 14:29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815	58노38**	손*순	경기도 시흥시	2024-05-11 16:39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전용차로 위반	52700
816	112수33**	황*돈	서울특별시	2024-05-11 17:05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817	09구12**	안*철	부산광역시	2024-05-11 21:19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818	24우56**	임*정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2024-05-12 09:14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819	308두46**	박*후	서울특별시	2024-05-12 09:24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820	143나95**	김*록	경기도 오산시	2024-05-12 14:54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821	143나95**	김*록	경기도 오산시	2024-05-12 14:56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822	26다73**	조*희	경기도 광주시	2024-05-12 20:32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823	06하71**	윤*영	광주광역시	2024-05-12 22:04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824	132조27**	김*진	경기도 안성시	2024-05-13 00:38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825	141소41**	김*혜	인천광역시	2024-05-13 04:10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826	경기94자19**	이*자	경기도 용인시	2024-05-13 07:30	대치역~도곡역	전용차로 위반	52700
827	57러32**	김*육	경기도 부천시	2024-05-13 09:17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	전용차로 위반	52700
828	32수49**	(*)*앤*락	경기도 성남시	2024-05-13 09:50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829	59더47**	안*영	경기도 남양주시	2024-05-13 12:5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830	10소55**	세*피*디*주*	대전광역시	2024-05-13 15:36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2700
831	140더41**	이*호	전라남도 목포시	2024-05-13 16:08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2700
832	25오34**	주*회*태*종*건*	경기도 오산시	2024-05-13 16:09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833	25오34**	주*회*태*종*건*	경기도 오산시	2024-05-13 16:10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834	143구63**	C*I*I*N*J*N	인천광역시	2024-05-13 16:26	청량리역~경동시장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2700
835	306마32**	장*순	경기도 양주시	2024-05-13 17:36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2700
836	56구21**	김*숙	서울특별시	2024-05-13 18:57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연번	차량 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837	13너37**	(*)*강*이*	경기도 남양주시	2024-05-13 18:58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2700
838	157하52**	이*호	인천광역시	2024-05-13 19:26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839	42보76**	이*헌	경기도 안양시	2024-05-13 19:30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2700
840	50주10**	채*현	인천광역시	2024-05-13 19:34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841	42보76**	이*헌	경기도 안양시	2024-05-13 19:37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2700
842	135루11**	송*영	인천광역시	2024-05-13 19:40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2700
843	63수97**	박*재	경기도 양평군	2024-05-13 19:41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2700
844	298조26**	강*애	인천광역시	2024-05-13 20:0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845	04보52**	이*수	경기도 동두천시	2024-05-14 04:09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846	280고14**	서*솔	서울특별시	2024-05-14 07:2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847	68누97**	차*욱	서울특별시	2024-05-14 07:30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848	86도23**	J*A*G*A*Z*U	경기도 파주시	2024-05-14 07:38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849	85서82**	주*회*주*	서울특별시	2024-05-14 08:1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850	351오94**	이*수	경기도 파주시	2024-05-14 08:28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851	152우29**	S*N*X*E*H*	경기도 안양시	2024-05-14 08:53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852	06어61**	박*순	서울특별시	2024-05-14 08:56	공릉동 목예원(구리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853	12조45**	홍*봉	서울특별시	2024-05-14 08:5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854	14두69**	염*정	서울특별시	2024-05-14 09:30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2700
855	22도84**	(*)*온*에*	경기도 파주시	2024-05-14 14:35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2700
856	394보84**	최*석	서울특별시	2024-05-14 14:57	압구정역~현대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2700
857	27구55**	고*희	경기도 고양시	2024-05-14 15:00	압구정역~현대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2700
858	59라29**	예*에*에*(*)	경기도 광주시	2024-05-14 15:45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2700
859	377부75**	강*엽	경기도 용인시	2024-05-14 15:5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860	123두47**	H*M*N*R*	경기도 안산시	2024-05-14 16:31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2700
861	31조11**	윤*현	서울특별시	2024-05-14 16:5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862	223고22**	(*)*민	충청북도 음성군	2024-05-14 17:1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863	28고01**	김*훈	서울특별시	2024-05-14 17:31	온수골사거리~노원역	전용차로 위반	52700
864	65도74**	주*회*대*건*사*무*	서울특별시	2024-05-14 17:3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연번	차량 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865	34다12**	박*민	서울특별시	2024-05-14 17:40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2700
866	전북84사84**	이*흥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2024-05-14 18:2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867	82러44**	부*우	서울특별시	2024-05-14 18:3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868	58거72**	유*오	서울특별시	2024-05-14 18:32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2700
869	49나92**	주*회*한*경*지*연*소	서울특별시	2024-05-14 18:50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2700
870	43도35**	박*석	전라남도 순천시	2024-05-14 19:54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2700
871	27어69**	김*자	경기도 포천시	2024-05-14 20:04	공릉동 문정왕후릉(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872	52루48**	송*순	서울특별시	2024-05-14 20:07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873	07라30**	주*달	서울특별시	2024-05-14 20:24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2700
874	332저27**	다*울*동*합	광주광역시	2024-05-14 22:20	홍은동 북한산 더샵아파트(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875	21로51**	박*섭	경기도 화성시	2024-05-14 23:06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876	89루92**	박*일	서울특별시	2024-05-15 03:27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2700
877	09나49**	유*진	세종특별자치시	2024-05-15 09:43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878	09나49**	유*진	세종특별자치시	2024-05-15 09:45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879	59루24**	V*R*C*M*S*A*A	울산광역시	2024-05-15 13:31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880	190도72**	C*I*O*G*U*	충청남도 아산시	2024-05-15 14:12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881	378소24**	박*란	서울특별시	2024-05-15 23:12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882	20버11**	이*호	서울특별시	2024-05-15 23:42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전용차로 위반	52700
883	20모75**	S*A*I*V*Z*M*E*	서울특별시	2024-05-16 00:00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884	68누97**	차*욱	서울특별시	2024-05-16 07:36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885	81조08**	(*)*구	서울특별시	2024-05-16 07:52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2700
886	336루98**	이*민	경기도 안산시	2024-05-16 08:04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887	336루98**	이*민	경기도 안산시	2024-05-16 08:06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888	86고26**	정*진	경기도 고양시	2024-05-16 08:45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2700
889	88노11**	(*)*해*업	서울특별시	2024-05-16 08:58	공릉동 삼육에코팜센터(구리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890	서울31사58**	박*호	서울특별시	2024-05-16 09: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전용차로 위반	52700

연번	차량 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891	10라59**	이*희	서울특별시	2024-05-16 12:32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892	183수57**	이*석	서울특별시	2024-05-16 14:22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2700
893	48거07**	이*수	경기도 화성시	2024-05-16 14:58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894	49두78**	김*희	서울특별시	2024-05-16 15:39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895	347조75**	주*회*에*이*디*인	서울특별시	2024-05-16 15:55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896	311러52**	한*곤	서울특별시	2024-05-16 16:04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2700
897	25오34**	주*회*태*종*건*	경기도 오산시	2024-05-16 17:02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898	92구19**	주*회*마*틴*트	경기도 안산시	2024-05-16 17:14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899	253거80**	황*화	인천광역시	2024-05-16 17:3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900	19소48**	지*윤	서울특별시	2024-05-16 17:58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901	27마08**	석*이	서울특별시	2024-05-16 18:2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902	213소59**	D*N*C*O*U*N*	경기도 시흥시	2024-05-16 19:3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903	82거70**	박*복	서울특별시	2024-05-16 19:49	공릉동 문정왕후릉(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904	52소20**	알*스*설*식*사	경기도 파주시	2024-05-16 20:15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2700
905	238마34**	김*종	서울특별시	2024-05-16 20:45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2700
906	343루41**	김*돈	경기도 광주시	2024-05-16 21:13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907	서울32사69**	김*택	경기도 김포시	2024-05-16 21:38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908	20무20**	C*O*J*N*T*A*	서울특별시	2024-05-16 21:42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2700
909	64로26**	황*찬	경기도 성남시	2024-05-16 23:23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2700
910	56수35**	황*경	경기도 수원시	2024-05-17 09:49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911	68거83**	김*정	서울특별시	2024-05-17 09:52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912	194하84**	(*)*건*스*	경상북도 구미시	2024-05-17 11:58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913	237모14**	박*리	서울특별시	2024-05-17 12:2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914	142어71**	류*영	인천광역시	2024-05-17 16:06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915	01소45**	최*원	서울특별시	2024-05-17 17:4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연번	차량 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916	299너27**	심*연	인천광역시	2024-05-17 19:14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917	50너43**	윤*옥	경기도 용인시	2024-05-18 09:10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918	06두04**	이*우	경기도 안산시	2024-05-20 08:38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919	06두04**	이*우	경기도 안산시	2024-05-20 08:39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920	경기92배18**	이*주	경기도 광주시	2024-05-20 09:4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921	382나69**	김*현	경기도 광주시	2024-05-20 15:37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2700
922	58부85**	김*성	서울특별시	2024-05-20 18:02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2700
923	09버32**	노*철	서울특별시	2024-05-20 18:03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924	66구79**	이*태	서울특별시	2024-05-21 07:36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925	13다02**	임*옥	경기도 남양주시	2024-05-21 07:58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926	91러19**	엄*훈	경기도 남양주시	2024-05-21 09:0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927	362도14**	김*성	서울특별시	2024-05-21 11:33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2700
928	58부30**	신*혜	세종특별자치시	2024-05-21 12:37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	전용차로 위반	52700
929	80도47**	(*)*자*로*	경기도 의정부시	2024-05-21 13:59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2700
930	87두04**	태*이*씨*주*	경기도 남양주시	2024-05-21 17:5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931	333너60**	이*연	대전광역시	2024-05-21 18:20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932	36우75**	정*용	경기도 고양시	2024-05-21 18:2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933	서울32아12**	진*수	서울특별시	2024-05-21 20:40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934	서울38아38**	김*환	경기도 양주시	2024-05-22 05:31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2700
935	58더20**	김*주	서울특별시	2024-05-22 17:15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936	266어22**	장*자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2024-05-22 17:37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2700
937	50서15**	최*주	서울특별시	2024-05-22 18:17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938	73버94**	신*욱	경기도 안양시	2024-05-23 07:15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63240
939	32부66**	김*진	경기도 시흥시	2024-05-23 18:03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2700
940	817구42**	주*회*에*에*컴*니	경상남도 창원시	2024-05-23 18:07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941	36다20**	김*대	경기도 남양주시	2024-05-23 19:08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2700
942	69부51**	하*규	서울특별시	2024-05-24 09:25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943	115버71**	송*형	서울특별시	2024-05-24 09:30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2700

연번	차량 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944	서울31사42**	김*협	서울특별시	2024-05-24 15:30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2700
945	105어39**	형*미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024-05-24 17:39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946	14러27**	박*원	경기도 남양주시	2024-05-24 18:11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947	서울31자68**	박*철	서울특별시	2024-05-24 18:15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2700
948	16두31**	최*하	경기도 화성시	2024-05-24 19:37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949	08오29**	윤*호	경기도 광주시	2024-05-25 06:56	남산1호터널~퇴계로2가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950	165로69**	L*L*N*Z*U	경기도 시흥시	2024-05-27 07:27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951	94어47**	이*생	경기도 수원시	2024-05-27 08:50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952	54오17**	신*철	인천광역시	2024-05-27 08:50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953	92수05**	홍*표	서울특별시	2024-05-28 08:41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전용차로 위반	52700
954	70소34**	박*일	경기도 용인시	2024-05-28 17:35	대치역~학여울역	전용차로 위반	63240
955	54거59**	인*정	서울특별시	2024-05-28 18:34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956	84부03**	곽*환	서울특별시	2024-05-29 09:2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957	128버79**	석*호	서울특별시	2024-05-29 13:32	홍은사거리~홍제역	전용차로 위반	52700
958	30고55**	이*형	충청남도 천안시	2024-05-29 15:07	영천동 영천시장 중앙정류소(시내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959	817구42**	주*희*에*에*컴*니	경상남도 창원시	2024-05-29 18:45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960	49오92**	김*	서울특별시	2024-05-29 20:40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2700
961	경기91바29**	이*상	경기도 용인시	2024-05-30 07:4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962	15오16**	양*원	서울특별시	2024-05-30 09:0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963	815누72**	최*근	경기도 화성시	2024-05-30 15:37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964	17나04**	이*수	서울특별시	2024-05-30 17:08	서울 송파구 잠실동 261	전용차로 위반	52700
965	56고17**	김*현	경기도 의정부시	2024-05-30 18:21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2700
966	45러59**	김*지	서울특별시	2024-05-30 18:3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967	812우46**	문*환	서울특별시	2024-05-30 19:09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2700
968	06어15**	김*영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024-05-30 20:31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969	01거29**	백*렬	서울특별시	2024-05-31 13:05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연번	차량 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970	92가02**	김*일	경기도 의정부시	2024-05-31 19:05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971	57모03**	박*수	서울특별시	2024-05-31 19:24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2700
972	37고03**	최*영	서울특별시	2024-06-01 01:33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전용차로 위반	52700
973	66더24**	김*진	인천광역시	2024-06-01 08:25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여의도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974	315보43**	류*성	서울특별시	2024-06-01 20:14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975	18오38**	송*승	인천광역시	2024-06-02 02:33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2700
976	서울31사49**	정*용	서울특별시	2024-06-02 16:21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2700
977	58러33**	송*나	서울특별시	2024-06-02 16:23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978	12버44**	이*민	경기도 파주시	2024-06-02 17:22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2700
979	27러87**	민*선	경기도 성남시	2024-06-03 10:20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2700
980	22구28**	R*K*I*O*D*L*O*B*K*A*I*J*N*G*I	경기도 화성시	2024-06-03 10:52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2700
981	19너46**	정*채	경기도 의정부시	2024-06-03 20:2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982	90로14**	최*우	서울특별시	2024-06-03 20:27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983	30고08**	전*군	경기도 고양시	2024-06-04 07:58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984	23조06**	한*덕	서울특별시	2024-06-04 08:17	애오개역~마포대교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985	154로77**	이*희	인천광역시	2024-06-04 08:30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986	375가97**	이*완	서울특별시	2024-06-04 08:35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2700
987	63오22**	이*천	경기도 연천군	2024-06-04 09:08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2700
988	50다19**	김*영	서울특별시	2024-06-04 13:36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989	69도96**	남*연	서울특별시	2024-06-04 17:14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2700
990	05나55**	임*일	서울특별시	2024-06-04 18:5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2700
991	27어36**	조*영	서울특별시	2024-06-04 19:53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2700
992	70나59**	윤*의	인천광역시	2024-06-04 23:02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느산부인과	전용차로 위반	63240
993	333가73**	이*훈	경기도 오산시	2024-06-05 17:35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2700
994	13거86**	강*원	경기도 고양시	2024-06-05 18:43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995	69더67**	노*용	서울특별시	2024-06-05 18:46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996	48주30**	전*영	경기도 용인시	2024-06-05 19:20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2700
997	290오13**	김*흥	충청북도 청주시	2024-06-05 19:20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2700

연번	차량 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998	90도80**	김*원	서울특별시	2024-06-05 20:10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2700
999	237ㅎ88**	강*종	서울특별시	2024-06-05 20:11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2700
1000	27어36**	조*영	서울특별시	2024-06-05 20:11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2700
1001	02노70**	정*준	서울특별시	2024-06-05 20:22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1002	272두29**	윤*명	경기도 의정부시	2024-06-05 20:47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270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3034호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수취인 불명, 이사,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 송달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30조(자동차 운행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자동차의 운행의 제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지방세기본법 제31조(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같은 법 제33조(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4.11.7.~2024.11.21.
5. 공고내용
   가. 이의제기기간 :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까지
   나. 이의제기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서식은 별첨 '이의제기 작성예시' 참조), 의견제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교통지도단속반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 이의제기 접수처 및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접수처)
   - 주　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4층 주차계획과 교통지도단속반 과태료과징팀)
   - 전화번호 : 02-2133-4621~4622
   (이의제기 방법)
   - 팩스 제출 : 02-2133-1446
   - 이메일 제출 : green5@seoul.go.kr
   - 인터넷 제출 : https://oksign.seoul.go.kr
6. 유의사항
   - 공고대상자는 납부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3%의 가산금이 발생하고 매 1개월이 경과 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의 중가산금이 가산되며, 아울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재산에 대한 압류 등)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납부기한 : 2024.12.31.
  - 공고대상자는 서울특별시청 주차계획과 교통지도단속반에서 고지서(가상계좌)를 발부받아 은행(인터넷뱅킹 포함),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기) 등으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납부 : https://etax.seoul.go.kr. (*공인인증서 필요, 신용카드 납부가능)

  ※ 납부기한, 체납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교통지도단속반(☎02-2133-4621~46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주요 이의제기 대상 및 이의제기 작성서식 1부.

순번	상태	수취인주민번호	성명	발송지	주소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구분	과세번호	차량번호	과세금액	부과일자	납기일자	단속일	단속장소
1	부과	731020-*******	진*호	충청북도	청주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4-09	수시분	000575	77*3943	100,000	2024-09-06	2024-10-31	2024-07-25	반얀트리(장충단로, 진입)
2	부과	520411-*******	박*만	경상남도	남해군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4-09	수시분	000572	21*7915	100,000	2024-09-06	2024-10-31	2024-07-17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3	부과	600325-*******	서*석	대구광역시	군위군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4-09	수시분	000579	53*4713	100,000	2024-09-06	2024-10-31	2024-07-29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퇴계로, 진입)
4	부과	560117-*******	오*근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4-09	수시분	000533	서울*8로5617	100,000	2024-09-06	2024-10-31	2024-05-08	반얀트리(장충단로, 진입)
5	부과	671010-*******	김*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4-09	수시분	000542	04*6820	200,000	2024-09-06	2024-10-31	2024-05-15	경희궁(새문안로)
6	부과	680610-*******	함*옥	서울특별시	중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4-09	수시분	000547	01*4449	200,000	2024-09-06	2024-10-31	2024-05-18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7	부과	561027-*******	최*국	경기도	김포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4-09	수시분	000531	89*2425	200,000	2024-09-06	2024-10-31	2024-05-02	장충체육관(동호로, 진입)
8	부과	131111-*******	주*회사 흑*전자	경기도	평택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4-09	수시분	000532	94*7108	100,000	2024-09-06	2024-10-31	2024-05-07	반얀트리(장충단로, 진입)
9	부과	671111-*******	정*공	광주광역시	북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4-09	수시분	000540	10*7655	100,000	2024-09-06	2024-10-31	2024-05-12	경희궁(새문안로)
10	부과	106861-****	(*)훼*리종합건설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4-09	수시분	000554	91*4743	100,000	2024-09-06	2024-10-31	2024-05-22	장충체육관(동호로, 진입)
11	부과	680610-*******	함*옥	서울특별시	중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4-09	수시분	000555	01*4449	200,000	2024-09-06	2024-10-31	2024-05-23	숭례문 서측(세종대로, 진입)
12	부과	921226-*******	정*규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4-09	수시분	000535	71*7279	100,000	2024-09-06	2024-10-31	2024-05-08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13	부과	106861-****	(*)훼*리종합건설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4-09	수시분	000541	91*4743	100,000	2024-09-06	2024-10-31	2024-05-14	장충체육관(동호로, 진입)

순번	상태	수취인주민번호	성명	발송지	주소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구분	과세번호	차량번호	과세금액	부과일자	납기일자	단속일	단속장소
14	부과	040519-*******	F*IZULLAYEV ZHAMSHIDDIN	충청북도	청주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4-09	수시분	000543	90*5391	100,000	2024-09-06	2024-10-31	2024-05-17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15	부과	891008-*******	김*민	경기도	김포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4-09	수시분	000544	91*8538	200,000	2024-09-06	2024-10-31	2024-05-17	자하문터널 남측(자하문로)
16	부과	560117-*******	오*근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4-09	수시분	000545	서울*8로5617	100,000	2024-09-06	2024-10-31	2024-05-17	반얀트리(장충단로, 진입)
17	부과	710921-*******	채*영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4-09	수시분	000546	86*6711	100,000	2024-09-06	2024-10-31	2024-05-18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18	부과	610221-*******	심*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4-09	수시분	000550	43*3307	100,000	2024-09-06	2024-10-31	2024-05-20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지로, 진입)
19	부과	680521-*******	전*영	경상남도	창녕군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4-09	수시분	000552	52*9574	100,000	2024-09-06	2024-10-31	2024-05-21	숭례문 서측(세종대로, 진입)
20	부과	730314-*******	윤*환	대구광역시	북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4-09	수시분	000553	80*7116	200,000	2024-09-06	2024-10-31	2024-05-21	백범광장(소월로3길)
21	부과	780212-*******	박*철	경기도	양주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4-09	수시분	000536	14*9217	100,000	2024-09-06	2024-10-31	2024-05-10	자하문터널 남측(자하문로)
22	부과	590419-*******	윤*일	경기도	시흥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4-09	수시분	000538	69*6101	100,000	2024-09-06	2024-10-31	2024-05-11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23	부과	890112-*******	E*DENEBAATAR ENKHTUVSHIN	인천광역시	부평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4-09	수시분	000539	67*7367	100,000	2024-09-06	2024-10-31	2024-05-11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24	부과	671111-*******	정*공	광주광역시	북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4-09	수시분	000548	10*7655	200,000	2024-09-06	2024-10-31	2024-05-19	경희궁(새문안로)
25	부과	600110-*******	김*례	전라남도	완도군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4-09	수시분	000537	92*3032	100,000	2024-09-06	2024-10-31	2024-05-10	남산2호터널 북측(녹사평대로58길)

순번	상태	수취인주민번호	성명	발송지	주소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구분	과세번호	차량번호	과세금액	부과일자	납기일자	단속일	단속장소
26	부과	810221-*******	박*하	충청남도	천안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4-09	수시분	000556	93*9986	200,000	2024-09-06	2024-10-31	2024-05-25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27	부과	671010-*******	김*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4-09	수시분	000557	04*6820	200,000	2024-09-06	2024-10-31	2024-05-25	흥인지문(종로, 진입)
28	부과	690325-*******	박*봉	경기도	남양주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4-09	수시분	000558	89*3994	200,000	2024-09-06	2024-10-31	2024-05-29	장충체육관(동호로, 진입)
29	부과	761127-*******	한*희	충청남도	천안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4-09	수시분	000559	82*3912	100,000	2024-09-06	2024-10-31	2024-05-30	숭례문 서측(세종대로, 진입)
30	부과	761127-*******	한*희	충청남도	천안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4-09	수시분	000560	95*9824	200,000	2024-09-06	2024-10-31	2024-05-31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31	부과	590220-*******	이*연	경기도	가평군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4-09	수시분	000566	92*2234	100,000	2024-09-06	2024-10-31	2024-07-05	숭례문 서측(세종대로, 진입)
32	부과	540817-*******	김*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4-09	수시분	000568	57*6249	100,000	2024-09-06	2024-10-31	2024-07-10	경희궁(새문안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 안내

□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행정청(서울시 주차계획과 교통지도단속반)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이의제기 신청서는 당사자 주소지의 관할법원으로 이송되며, 관련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8조에 의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습니다.

○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당사자에게 그 처리사실을 통보해 드립니다.

□ 제출서류

○ 이의제기 신청서(아래붙임), 과태료고지서, 이의제기 관련 적법·타당성을 증명할만한 자료

□ 제출방법

○ 우편(등기), 팩스, 이메일을 통해 제출 가능합니다. 다만, 팩스로 접수하신 민원인께서는 반드시 접수여부를 유선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주소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1동 4층 주차계획과 교통지도단속반(과태료과징팀)
- 팩스번호 : 02-2133-1446, 전화번호 : 02-2133-4621~2
- Email 주소 : green5@seoul.go.kr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 위반 과태료 처분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table>
<tr><td rowspan="2">신 청 인</td><td>성 명
※ 법인일 경우 법인명 또는 사업자명</td><td></td><td>주 민 번 호
※ 법인일 경우 법인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2">(Email)</td><td>연락처</td><td></td></tr>
<tr><td rowspan="2">위반차량</td><td>차량번호</td><td></td><td>차 종</td><td colspan="2"></td></tr>
<tr><td>소 유 자</td><td colspan="4">(신청인과의 관계)</td></tr>
<tr><td rowspan="3">과 태 료
처 분</td><td>처분근거</td><td colspan="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 시행령 제48조,시행규칙 제7조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458호(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공고)</td></tr>
<tr><td>납부번호
(부과일자)</td><td>(년 월 일)</td><td>과태료 금액</td><td colspan="2"></td></tr>
<tr><td>위반일시</td><td></td><td>처분사유</td><td colspan="2">서울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td></tr>
<tr><td>과 태 료
처 분
불복사유</td><td colspan="5">※ 내용이 많을 경우 요약 기재후 별지에 작성

※ 증빙자료 1. 과태료 부과 고지서
2. 이의제기에 대한 증빙자료 등</td></tr>
</table>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제외)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동의함 □ 동의안함 □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3035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전용차로의 설치) 및 제160조 제3항에 따라 전용차로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서(의견진술)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부재, 이사,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및 제160조 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강○자 등 1,278명
4. 공고기간 : 2024. 11. 7. ~ 2024. 11. 21.
5. 의견제출 안내
   가. 의견제출 기한 : 2024. 11. 7. ~ 2024. 11. 21.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시 증빙서류와 함께 인터넷(http://cartax.seoul.go.kr)또는 서울특별시 교통지도단속반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감경(50%)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동명의 및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의견제출처
   - 주 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4층 교통지도단속반 과태료과징팀
   - 전화번호 : 02-2133-4570~79 팩스번호 : 02-2133-4904
   ※ 서울시 교통위반단속조회(http://cartax.seoul.go.kr)에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붙임 :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의견제출 대상 및 의견진술서 작성예시. 1부.

공시송달 사전통지서 명단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역	잔액
1	172하98**	강*자	서울특별시	2024-05-14 15:21	압구정역~현대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2	02하85**	정*원	경기도 성남시	2024-07-08 09:57	서초IC~반포IC	전용차로 위반	50000
3	152호84**	(*)*노*와*	경기도 김포시	2024-07-08 13:48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수정아파트 앞)	전용차로 위반	50000
4	150다83**	주*회*슬*우*티*직*카*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2024-07-21 10:19	경부 서초IC~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5	181무22**	은*앵*(*)	서울특별시	2024-08-06 17:54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6	114머16**	은*피*에*이*식*사	경기도 포천시	2024-08-07 18:47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7	270소57**	(*)*정*피*스*업	경기도 평택시	2024-08-09 17:2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8	93조09**	주*회*더*	서울특별시	2024-08-11 12:30	응암역~구산역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9	192하62**	주*회*건*서*지*	서울특별시	2024-08-12 07:30	내곡IC~어린이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10	360무94**	아*에*동*(*)	서울특별시	2024-08-14 17:39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0000
11	125호86**	한*우	서울특별시	2024-08-16 17:22	서울 노원구 공릉동 363-1	전용차로 위반	50000
12	161하87**	이*영	서울특별시	2024-08-18 15:18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느산부인과	전용차로 위반	50000
13	321누58**	김*수	서울특별시	2024-08-19 06:45	미아역~삼양입구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0000
14	191하16**	김*훈	서울특별시	2024-08-19 09:00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15	37호73**	강*종	경기도 동두천시	2024-08-19 17:28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6	143호87**	(*)*은*엔*터*인*트	서울특별시	2024-08-19 19:06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17	193호91**	주*회*우*테*	서울특별시	2024-08-19 19:11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18	199다10**	이*영	서울특별시	2024-08-20 00:10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19	190호48**	웹*시*앤*스*식*사	서울특별시	2024-08-20 09:55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전용차로 위반	50000
20	220호82**	주*회*예*뮤*케*션*	경기도 용인시	2024-08-21 07:12	내곡IC~염곡IC	전용차로 위반	50000
21	43두30**	비*이*셋*식*사	경기도 남양주시	2024-08-21 19:14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2	126하29**	리*스*성*주*	경기도 남양주시	2024-08-22 07:28	개화동로(김포공항방면)	전용차로 위반	50000
23	106호31**	권*도	경기도 남양주시	2024-08-22 09:2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역	잔액
24	67모17**	최*규	경기도 김포시	2024-08-22 14:43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	전용차로 위반	50000
25	49호56**	최*원	서울특별시	2024-08-22 18:2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6	152호48**	송*중	서울특별시	2024-08-23 08:00	동산육교~은평뉴타운	전용차로 위반	50000
27	006마61**	주*회*마*틴*발	경기도 화성시	2024-08-23 08:34	남태령고개~사당역	전용차로 위반	60000
28	192호71**	남*주옥	서울특별시	2024-08-23 09:08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0000
29	03조22**	이*진	서울특별시	2024-08-23 10:11	양화대교~양화대교남단	전용차로 위반	50000
30	152하14**	(*)*리*러*건*사*무*	서울특별시	2024-08-23 11:20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31	101호45**	홍*훈	경기도 안양시	2024-08-23 15:38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0000
32	176호74**	유*희	경기도 수원시	2024-08-24 07:20	해모로아파트앞	전용차로 위반	50000
33	228호17**	이*주	서울특별시	2024-08-24 11:13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4	47로02**	이*복	경기도 고양시	2024-08-24 13:02	연신내역~구산역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35	서울은평파70**	고*민	서울특별시	2024-08-24 16:54	박석고개교차로~연신내역	전용차로 위반	40000
36	101호20**	오*현	서울특별시	2024-08-25 06:43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0000
37	97노99**	서*환	서울특별시	2024-08-25 07:08	해모로아파트앞	전용차로 위반	50000
38	137보86**	주*회*이*종*주*	경기도 수원시	2024-08-25 07:23	오현로 167주변	전용차로 위반	50000
39	176호74**	유*희	경기도 수원시	2024-08-25 07:23	오현로 169주변	전용차로 위반	50000
40	156호48**	(*)*앤*홀*스	서울특별시	2024-08-26 08:13	대치역~도곡역	전용차로 위반	50000
41	142호30**	(*)*호*	서울특별시	2024-08-26 09:50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2	193하54**	송*범	서울특별시	2024-08-26 10:18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43	196호63**	정*원	경기도 화성시	2024-08-26 17:51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4	196호63**	정*원	경기도 화성시	2024-08-26 17:52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5	228호17**	이*주	서울특별시	2024-08-26 17:52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6	390거64**	(*)*랜*엠	경기도 남양주시	2024-08-26 19:52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7	167호60**	백*민	서울특별시	2024-08-26 20:28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48	101하91**	한*엽	경기도 고양시	2024-08-27 08:36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9	128하83**	남*미	경기도 의정부시	2024-08-27 08:40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역	잔액
50	256저99**	더*7*퍼*트*퍼*주*회*	경기도 양주시	2024-08-27 09:59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51	서울31아82**	전*석	경기도 파주시	2024-08-27 12:08	반포역~주홍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52	34호44**	이*인	경기도 가평군	2024-08-27 12:17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53	140하72**	황*석	서울특별시	2024-08-27 13:55	종합운동장사거리~잠실새내역	전용차로 위반	50000
54	서울중타27**	김*기	서울특별시	2024-08-27 14:21	길음역교차로~미아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40000
55	03하65**	김*민	인천광역시	2024-08-27 17:37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56	177하82**	스*츠*팩*미*드*국*점	서울특별시	2024-08-27 18:38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파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57	78마22**	김*중	서울특별시	2024-08-28 10:22	천호대교~천호역	전용차로 위반	60000
58	경기78사97**	(*)*양*속*광	경기도 파주시	2024-08-28 10:23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전용차로 위반	60000
59	29호01**	(*)*야*코*아*헬*케*	서울특별시	2024-08-28 11:17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0000
60	177호56**	유*현	경기도 남양주시	2024-08-28 13:01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61	175호19**	주*회*에*앤*블*	경기도 시흥시	2024-08-28 13:45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62	193하28**	주*회*마*띵*	대전광역시	2024-08-28 15:53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63	230서76**	이*철	경기도 의정부시	2024-08-28 18:23	서울역~숙대입구역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64	101허46**	최*영	서울특별시	2024-08-28 20:13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65	292머23**	(*)*젠*더*	서울특별시	2024-08-28 20:3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66	10호23**	안*기	경기도 수원시	2024-08-29 07:57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0000
67	153호99**	B*I*H*H*N*H*Y*N	서울특별시	2024-08-29 08:5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68	175호19**	주*회*에*앤*블*	경기도 시흥시	2024-08-29 15:58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69	128호53**	정*학	충청남도 당진시	2024-08-29 16:56	홍은동 북한산 더샵아파트(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70	대구80자84**	김*석	대구광역시	2024-08-30 07:47	여의도공원맞은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71	전남85바18**	유*회*천*물*	전라남도 고흥군	2024-08-30 07:47	여의도공원맞은편	전용차로 위반	60000
72	175모40**	임*옥	서울특별시	2024-08-30 08:17	천호대교(광장동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73	서울31사27**	백*현	경기도 남양주시	2024-08-30 08:27	태릉~화랑대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역	잔액
74	208마25**	김*연	서울특별시	2024-08-30 12:18	한양아파트앞사거리~성수대교남단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75	서울91자78**	정*철	서울특별시	2024-08-30 13:08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전용차로 위반	50000
76	372러35**	주*회*더*에*치*딩*대*	서울특별시	2024-08-30 16:07	압구정역교차로~현대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77	서울31사97**	손*현	서울특별시	2024-08-30 17:44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30 (신사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78	66루61**	(*)*프*카*더*트*	서울특별시	2024-08-30 18:34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79	207무72**	(*)*오*커*니*이*즈	서울특별시	2024-08-31 08:02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80	157허20**	명*오	서울특별시	2024-08-31 10:18	잠원로 한신종합상가 세븐일레븐편의점	전용차로 위반	50000
81	서울중파17**	박*선	서울특별시	2024-08-31 11:41	흥인지문교차로~종로5가역	전용차로 위반	40000
82	367수88**	(*)*훈*설	서울특별시	2024-08-31 14:48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83	140오64**	(*)*해*업	서울특별시	2024-08-31 17:28	주홍교~반포역	전용차로 위반	50000
84	71소65**	김*주	서울특별시	2024-08-31 20:42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 위반	60000
85	69루96**	N*U*N*A*A*	서울특별시	2024-09-01 10:52	종로2가 스타벅스 종각점	전용차로 위반	50000
86	172호98**	대*토*(*)	울산 울주군	2024-09-01 17:46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87	139누67**	S*I*A*E*A*D*R*B*R*O*I*H	경기도 안산시	2024-09-02 01:09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88	16소14**	신*철	대전광역시	2024-09-02 06:12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89	71우16**	J*N*E*C*E*G	경기도 수원시	2024-09-02 06:15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60000
90	190부43**	이*숙	충청남도 보령시	2024-09-02 07:27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91	190부43**	이*숙	충청남도 보령시	2024-09-02 07:28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92	경기92자90**	이*례	경기도 포천시	2024-09-02 07:30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93	93루42**	국*완	서울특별시	2024-09-02 07:30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94	서울31사63**	조*연	서울특별시	2024-09-02 07:35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95	34부73**	박*준	경기도 고양시	2024-09-02 07:47	개화교~개화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0000
96	17노07**	공*린	서울특별시	2024-09-02 07:5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97	46오06**	김*경	경기도 하남시	2024-09-02 07:5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98	17수65**	홍*석	서울특별시	2024-09-02 08:26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역	잔액
99	87수26**	김*규	서울특별시	2024-09-02 08:4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00	176부61**	최*채	서울특별시	2024-09-02 09:02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101	39노46**	남*현	경기도 용인시	2024-09-02 09:2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02	47저25**	박*규	경상북도 포항시	2024-09-02 09:20	장지교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103	178저94**	주*회*영*사*박	서울특별시	2024-09-02 09:2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04	53부62**	(*)*흥*앤*	경기도 동두천시	2024-09-02 09:28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05	23무85**	강*희	서울특별시	2024-09-02 09:33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06	805조72**	서*준	경기도 남양주시	2024-09-02 09:39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07	서울89자31**	권*채	서울특별시	2024-09-02 09:43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08	288누25**	김*자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2024-09-02 09:49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09	59가71**	황*현숙	서울특별시	2024-09-02 09:49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110	51부55**	유*종	서울특별시	2024-09-02 09:4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11	124마42**	김*호	충청남도 아산시	2024-09-02 09:51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12	124마42**	김*호	충청남도 아산시	2024-09-02 09:52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13	서울84자98**	차*균	서울특별시	2024-09-02 10:00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0000
114	05두08**	P*A*T*E*G*C	경기도 포천시	2024-09-02 10:32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15	89노66**	유*기	서울특별시	2024-09-02 12:26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0000
116	24조73**	H*W*I*S*J*S*U*L*E	대구광역시	2024-09-02 13:20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17	24조73**	H*W*I*S*J*S*U*L*E	대구광역시	2024-09-02 13:22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18	126버86**	이*주	서울특별시	2024-09-02 13:23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19	363우53**	이*용	서울특별시	2024-09-02 14:17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0000
120	39구66**	안*숙	경기도 남양주시	2024-09-02 14:28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0000
121	서울32사65**	남*동	서울특별시	2024-09-02 14:34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0000
122	서울32자58**	신*철	경기도 의정부시	2024-09-02 14:39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123	65소79**	조*협	서울특별시	2024-09-02 15:20	상봉동 중랑역 가나안교회 건너편 GS25상봉사랑점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역	잔액
124	310마65**	L*J*N	서울특별시	2024-09-02 15:20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125	22더33**	양*영	서울특별시	2024-09-02 15:5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26	88무05**	(*)*호*크	서울특별시	2024-09-02 16:15	압구정로데오역~성수대교남단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127	391나36**	김*화	서울특별시	2024-09-02 17:09	고속터미널역~고속터미널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128	서울33바62**	스*일*시*식*사	서울특별시	2024-09-02 17:2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29	20다36**	한*희	서울특별시	2024-09-02 17:38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130	103주10**	장*윤	서울특별시	2024-09-02 17:40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31	서울31사16**	이*현	서울특별시	2024-09-02 17:52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32	26소13**	나*관	서울특별시	2024-09-02 18:17	시흥대로 박미삼거리 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133	134호24**	주*회*하*카*H*I*A*C*.*t*)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2024-09-02 18:4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34	802루98**	김*섭	경기도 의정부시	2024-09-02 18:52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135	51저52**	N*U*E*V*E*T*N	충청남도 천안시	2024-09-02 19:01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36	63누07**	김*미	경기도 남양주시	2024-09-02 19:03	공릉동 목예원(구리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137	02버37**	유*경	인천광역시	2024-09-02 19:0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38	11너61**	박*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24-09-02 19:24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139	51버75**	이*식	서울특별시	2024-09-02 19:35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140	06부76**	V*N*A*T*E*E*M*N*H*R*E*E	전라남도 해남군	2024-09-02 19:35	공릉동 목예원(구리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141	서울85두28**	안*수	서울특별시	2024-09-02 20:1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142	258무61**	김*안	경기도 안양시	2024-09-02 20:38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143	50더84**	L*G*A*G*I*	경기도 수원시	2024-09-03 05:26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144	82부34**	김*란	경기도 안산시	2024-09-03 07:21	종로2가 스타벅스 종각점	전용차로 위반	50000
145	152루41**	정*진	광주광역시	2024-09-03 07:41	영등포역교차로~영등포고가차도	전용차로 위반	50000
146	40부22**	김*원	경기도 파주시	2024-09-03 07:44	동산육교~은평뉴타운10단지	전용차로 위반	50000
147	서울83사24**	홍*기	경기도 하남시	2024-09-03 07:5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48	83소07**	T*A*R*N*S*U	서울특별시	2024-09-03 08:1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역	잔액
149	286머39**	이*선	서울특별시	2024-09-03 08:1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50	서울32사99**	지*설	서울특별시	2024-09-03 08:36	성내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151	40두83**	주*회*티*페*스	경기도 하남시	2024-09-03 08:45	올림픽회관교차로~성내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152	241거88**	주*회*해*파*너*	경기도 성남시	2024-09-03 08:54	복정역~장지교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153	80조29**	안*모	서울특별시	2024-09-03 09:11	개화교~개화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0000
154	38머01**	김*자	경기도 양주시	2024-09-03 09:14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55	서울32자12**	이*삼	경기도 의정부시	2024-09-03 09:19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156	370오78**	주*회*어*즈	충청남도 천안시	2024-09-03 09:41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157	46구70**	한*자	경기도 동두천시	2024-09-03 09:43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158	236버20**	박*순	경기도 구리시	2024-09-03 09:48	공릉동 문정왕후릉(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159	79소87**	서*현	서울특별시	2024-09-03 09:50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60000
160	23두21**	조*희	대구광역시	2024-09-03 09:54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161	239구46**	박*환	경기도 용인시	2024-09-03 10:46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62	서울80배58**	황*규	경기도 광주시	2024-09-03 11:44	잠원동성당	전용차로 위반	50000
163	서울84자22**	김*덕	경기도 하남시	2024-09-03 11:49	한신상가	전용차로 위반	50000
164	50우22**	주*회*세*티*엔	경기도 군포시	2024-09-03 13:1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65	231어95**	M*B*E*S*I*A	인천광역시	2024-09-03 14:09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66	56노88**	김*만	충청남도 서산시	2024-09-03 14:22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167	240어14**	서*열	경기도 남양주시	2024-09-03 16:1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68	177머82**	김*훈	서울특별시	2024-09-03 16:35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169	30조58**	(*)*탑	서울특별시	2024-09-03 17:1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70	86무08**	장*식	경기도 파주시	2024-09-03 17:11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171	374주74**	주*회*제*앤*	서울특별시	2024-09-03 17:15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72	15서84**	김*형	서울특별시	2024-09-03 17:1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73	325조10**	M*I*I*A*G	서울특별시	2024-09-03 17:2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174	43모83**	한*한	서울특별시	2024-09-03 17:22	압구정역교차로~현대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175	81가19**	이*태	인천광역시	2024-09-03 17:24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역	잔액
176	21고20**	성*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2024-09-03 17:25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77	397저52**	홍*주	서울특별시	2024-09-03 17:3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78	41머50**	주*회*위*스	서울특별시	2024-09-03 17:4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79	64수18**	정*원	서울특별시	2024-09-03 17:46	고속터미널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180	32나79**	박*수	인천광역시	2024-09-03 17:46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0000
181	42고98**	주*회*케*비*스*	경기도 군포시	2024-09-03 17:51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182	69머83**	박*호	서울특별시	2024-09-03 17:53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183	12머61**	오*건	서울특별시	2024-09-03 18:02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84	서울31아60**	박*필	서울특별시	2024-09-03 18:20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185	141저20**	김*윤	서울특별시	2024-09-03 18:2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86	41거13**	이*운	서울특별시	2024-09-03 18:24	시흥대로 대림사거리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187	252거96**	(*)*성*퍼*	서울특별시	2024-09-03 18:31	공릉동 문정왕후릉(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188	67수08**	김*규	서울특별시	2024-09-03 18:32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0000
189	39보51**	주*회*제*아*메*컬	경기도 하남시	2024-09-03 18:45	공릉동 문정왕후릉(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190	289마65**	주*회*에*플*아*에*	경기도 하남시	2024-09-03 18:4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91	233너27**	이*선	서울특별시	2024-09-03 18:52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192	16구35**	오*수	경기도 구리시	2024-09-03 19:06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193	63너82**	오*진	서울특별시	2024-09-03 20:0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94	서울32바97**	임*환	서울특별시	2024-09-03 20:1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95	280두54**	장*영	서울특별시	2024-09-03 20:16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196	서울32바78**	배*현	서울특별시	2024-09-03 20:21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97	10로20**	이*택	인천광역시	2024-09-03 20:22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198	43저43**	주*회*마*하	서울특별시	2024-09-03 20:30	광장아파트앞	전용차로 위반	50000
199	84저69**	조*석	경상북도 김천시	2024-09-03 20:45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200	서울31자20**	이*성	경기도 광주시	2024-09-03 21:37	헌릉로 헌릉IC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역	잔액
201	54모91**	S*A*B*Z*U*A*M*D	인천광역시	2024-09-04 00:35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0000
202	43저43**	주*회*마*하	서울특별시	2024-09-04 07:02	윤중초교앞교차로~여의도역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203	272고95**	주*회*선*에*앤*	서울특별시	2024-09-04 07:1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04	376너92**	조*호	서울특별시	2024-09-04 07:15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05	서울35바55**	이*용	서울특별시	2024-09-04 07:22	몽촌토성역~송파구청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206	107도30**	이*일	서울특별시	2024-09-04 07:36	대치역~도곡역	전용차로 위반	50000
207	11저78**	김*석	서울특별시	2024-09-04 08:06	천호대교~광장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0000
208	194부68**	원*삼	인천광역시	2024-09-04 08:11	개화교~개화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0000
209	89어64**	유*신	서울특별시	2024-09-04 08:13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10	80서05**	이*임	경기도 용인시	2024-09-04 08:1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11	167루76**	송*진	서울특별시	2024-09-04 08:18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12	35주74**	이*안	경기도 하남시	2024-09-04 08:35	온수골사거리~노원역	전용차로 위반	50000
213	88다06**	기*정	서울특별시	2024-09-04 08:46	공릉동 문정왕후릉(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214	186부92**	주*회*튜*퍼*이*	서울특별시	2024-09-04 08:56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215	802루15**	조*길순	경상남도 거제시	2024-09-04 09:04	공릉동 삼육에코팜센터(구리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216	경기34바48**	노*남	경기도 의정부시	2024-09-04 09:13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0000
217	서울31바86**	서*석	서울특별시	2024-09-04 09:4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18	15거91**	최*수	서울특별시	2024-09-04 10:38	잠실새내역~종합운동장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0000
219	32누89**	주*회*엠*래*츠	경기도 하남시	2024-09-04 10:48	강남소방서 앞	전용차로 위반	50000
220	166루52**	이*희	경기도 의정부시	2024-09-04 10:56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221	87고88**	주*회*인*어*크	경기도 김포시	2024-09-04 11:35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22	87고88**	주*회*인*어*크	경기도 김포시	2024-09-04 11:37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23	60나92**	김*봉	서울특별시	2024-09-04 11:57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0000
224	62나80**	김*식	경기도 광주시	2024-09-04 12:12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25	46도50**	V*C*N*B*N*	충청남도 천안시	2024-09-04 12:24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역	잔액
226	60부50**	Z*N*U*K*N*I*O*I*O*G*S*N*	서울특별시	2024-09-04 12:26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227	인천81바38**	백*실	인천광역시	2024-09-04 12:59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28	381루25**	티*스*코*레*션*식*사	서울특별시	2024-09-04 13:0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29	89구97**	김*인	서울특별시	2024-09-04 13:30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3 (여의도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30	719가22**	송*화	경기도 김포시	2024-09-04 13:40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10 (여의도동, 미성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60000
231	50서37**	윤*식	서울특별시	2024-09-04 14:1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32	10마43**	주*회*사*드*더*	서울특별시	2024-09-04 14:2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33	90누65**	주*회*에*라*프*런*	서울특별시	2024-09-04 14:22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234	279수56**	박*철	경기도 안산시	2024-09-04 14:3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35	126서60**	천*숙	경기도 양주시	2024-09-04 15:33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0000
236	201모40**	이*훈	경기도 부천시	2024-09-04 16:4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37	09가86**	안*로	부산광역시	2024-09-04 16:48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38	394수72**	서*훈	서울특별시	2024-09-04 17:10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39	25오34**	주*회*태*종*건*	경기도 오산시	2024-09-04 17:16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40	42수52**	위*스*산*용*식*사	서울특별시	2024-09-04 17:2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41	167로69**	주*회*가*씨*티	경기도 양주시	2024-09-04 17:21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42	서울31바64**	양*호	서울특별시	2024-09-04 17:3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43	50소49**	권*희	서울특별시	2024-09-04 17:3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44	30고49**	주*회*체*월*인*스*먼*	서울특별시	2024-09-04 17:4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45	서울31아65**	조*우	서울특별시	2024-09-04 17:42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246	90로20**	권*구	서울특별시	2024-09-04 17:59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247	56저71**	이*자	서울특별시	2024-09-04 18:0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역	잔액
248	33더77**	조*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2024-09-04 18:09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49	서울31아81**	한*영	경기도 의정부시	2024-09-04 18:14	동일로(중계역3번출구_)중계역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250	42라02**	박*식	서울특별시	2024-09-04 18:18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51	49소01**	김*규	서울특별시	2024-09-04 18:18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52	서울32자51**	박*복	서울특별시	2024-09-04 18:20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253	43거88**	(*)*프*	서울특별시	2024-09-04 18:45	공릉동 문정왕후릉(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254	서울32아16**	김*기	서울특별시	2024-09-04 18:4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55	82도35**	윤*영	서울특별시	2024-09-04 18:51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56	32머64**	김*섭	경기도 부천시	2024-09-04 19:00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57	51수01**	김*욱	서울특별시	2024-09-04 19:02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258	11더04**	홍*	서울특별시	2024-09-04 19:0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59	36두65**	김*진	서울특별시	2024-09-04 19:1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260	20러66**	박*훈	세종특별자치시	2024-09-04 19:16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261	83머45**	최*영	경기도 의정부시	2024-09-04 19:34	공릉동 목예원(구리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262	10도39**	Q*A*Z*A*G*H*N	경기도 오산시	2024-09-04 19:42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263	17라72**	성*재	경기도 안산시	2024-09-04 19:46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64	서울31아19**	민*선	경기도 의정부시	2024-09-04 20:10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265	15고57**	신*숙	경기도 성남시	2024-09-04 20:12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66	247서82**	한*영	충청남도 서산시	2024-09-04 20:15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267	69거72**	박*두	서울특별시	2024-09-04 20:26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268	64로76**	한*철	서울특별시	2024-09-04 20:30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0000
269	354로91**	김*민	서울특별시	2024-09-04 20:3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70	106도56**	고*잇*리*주*회*	경기도 고양시	2024-09-04 20:4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271	서울31사61**	고*식	경기도 시흥시	2024-09-04 20:4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72	서울32바98**	김*선	서울특별시	2024-09-04 20:48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73	75루94**	이*희	서울특별시	2024-09-04 20:5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6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역	잔액
274	42로99**	박*숙	전라남도 목포시	2024-09-04 23:53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275	127부93**	이*순	서울특별시	2024-09-05 05:21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전용차로 위반	50000
276	175허72**	(*)*일*트*	인천광역시	2024-09-05 07:24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77	175허72**	(*)*일*트*	인천광역시	2024-09-05 07:25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78	294노26**	C*E*E*G*U	경기도 안산시	2024-09-05 07:29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279	서울32자21**	이*호	서울특별시	2024-09-05 07:33	국립현충원교차로~흑석역	전용차로 위반	50000
280	서울46더46**	차*숙	서울특별시	2024-09-05 08:01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81	경기84배24**	김*규	경기도 의정부시	2024-09-05 08:04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282	08다95**	N*U*E*T*U*N*G*A*G	서울특별시	2024-09-05 08:40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283	서울70자28**	주*회*제*엠*틴	서울특별시	2024-09-05 08:40	올림픽대교남단교차로~성내교	전용차로 위반	60000
284	서울32사74**	정*성	서울특별시	2024-09-05 08:40	올림픽대교남단교차로~성내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285	서울31바68**	김*곤	서울특별시	2024-09-05 09:04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286	305라28**	현*라	경기도 시흥시	2024-09-05 09:04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287	83수43**	김*영	경기도 광주시	2024-09-05 09:2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88	97수68**	강*천	경기도 성남시	2024-09-05 09:2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89	서울31사43**	박*진	서울특별시	2024-09-05 09:45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90	97너03**	정*진	서울특별시	2024-09-05 09:4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91	경기81자86**	최*희	경기도 성남시	2024-09-05 09:4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92	231조12**	정*숙	광주광역시	2024-09-05 09:59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93	180조36**	J*N*E*M*N*	서울특별시	2024-09-05 10:22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94	서울32아13**	장*호	서울특별시	2024-09-05 10:46	미아역~삼영입구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0000
295	52주04**	백*재	경기도 광주시	2024-09-05 12:38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0000
296	53노34**	문*회	경기도 고양시	2024-09-05 12:5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97	325조10**	이*홍	서울특별시	2024-09-05 13:29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0000
298	67가21**	(*)*경*틸	경기도 안산시	2024-09-05 14:34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0000
299	345서90**	강*균	경기도 평택시	2024-09-05 14:40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00	168로53**	이*희	서울특별시	2024-09-05 14:47	압구정역교차로~가로수길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역	잔액
301	138머82**	메*슨*패*언*식*사	서울특별시	2024-09-05 14:47	한양아파트앞사거리~성수대교남단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302	37라08**	동*벽*(*)	서울특별시	2024-09-05 14:49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303	02로11**	(*)*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2024-09-05 15:15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304	서울91자55**	이*순	서울특별시	2024-09-05 15:33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0000
305	57러32**	김*육	경기도 부천시	2024-09-05 15:45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	전용차로 위반	50000
306	276저68**	이*소*(*)	경기도 화성시	2024-09-05 16:21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0000
307	307누82**	정*순	서울특별시	2024-09-05 16:51	고속버스터미널앞	전용차로 위반	50000
308	330저35**	(*)*이*테*	충청남도 당진시	2024-09-05 16:51	고속버스터미널앞	전용차로 위반	50000
309	27모20**	H*N*I*F*N*	경기도 수원시	2024-09-05 17:02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10	27모20**	H*N*I*F*N*	경기도 수원시	2024-09-05 17:03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11	서울84자11**	강*식	서울특별시	2024-09-05 17:1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12	25오34**	주*회*태*종*건*	경기도 오산시	2024-09-05 17:16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13	32가07**	김*환	서울특별시	2024-09-05 17:26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314	257루98**	이*희	서울특별시	2024-09-05 17:2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15	101도79**	조*이	서울특별시	2024-09-05 17:3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16	157나14**	최*숙	충청남도 당진시	2024-09-05 17:4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17	48버89**	주*회*원*웍*피*	서울특별시	2024-09-05 17:59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318	814주28**	김*지	경기도 평택시	2024-09-05 18:04	양재전화국교차로~매봉역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319	01버12**	임*자	서울특별시	2024-09-05 18:07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320	234로91**	주*욱	서울특별시	2024-09-05 18:08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321	11버61**	박*걸	경기도 남양주시	2024-09-05 18:10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22	65저85**	김*성	서울특별시	2024-09-05 19:09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23	83머45**	최*영	경기도 의정부시	2024-09-05 19:17	공릉동 목예원(구리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324	서울32아23**	이*세	인천광역시	2024-09-05 20:04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325	19러87**	홍*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2024-09-05 20:16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역	잔액
326	서울31아84**	전*성	서울특별시	2024-09-05 20:29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327	65라26**	주*회*에*디*이*	서울특별시	2024-09-05 20:36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328	63조23**	강*희	경기도 고양시	2024-09-05 20:41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329	194머17**	정*우	서울특별시	2024-09-05 20:50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30	경기65바63**	강*구	경기도 용인시	2024-09-06 05:21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331	27라53**	최*호	서울특별시	2024-09-06 07:44	내곡교~어린이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332	19서76**	(*)*시*라	서울특별시	2024-09-06 08:12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333	19부90**	김*경	서울특별시	2024-09-06 08:12	천호대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334	141무31**	반*호	경기도 안산시	2024-09-06 08:38	한양아파트앞사거리~성수대교남단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335	11서09**	송*환	경기도 안산시	2024-09-06 08:50	홍은동 북한산 더샵아파트(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336	88다06**	기*정	서울특별시	2024-09-06 08:58	공릉동 문정왕후릉(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337	서울32아31**	최*배	서울특별시	2024-09-06 09:00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338	52소83**	한*덕	서울특별시	2024-09-06 09:01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39	32로49**	김*흠	서울특별시	2024-09-06 09:0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40	109너35**	전*연	경기도 양주시	2024-09-06 09:27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41	175저86**	이*득	서울특별시	2024-09-06 09:37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42	45오13**	강*현	인천광역시	2024-09-06 10:19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43	49도35**	전*성	서울특별시	2024-09-06 10:3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44	충남87아18**	표*철	충청남도 논산시	2024-09-06 10:57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45	29고20**	(*)*반*머*	서울특별시	2024-09-06 11:31	삼성역~휘문고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0000
346	131조77**	주*회*라*	서울특별시	2024-09-06 12:32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47	53저49**	김*수	경기도 수원시	2024-09-06 13:10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48	24루81**	이*오	서울특별시	2024-09-06 14:01	국제금융로7길	전용차로 위반	50000
349	89구97**	김*인	서울특별시	2024-09-06 14:03	국제금융로7길	전용차로 위반	50000
350	34거17**	정*희	서울특별시	2024-09-06 14:06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0000
351	122오72**	최*영	서울특별시	2024-09-06 14:32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352	24누51**	주*회*성*기*	경기도 연천군	2024-09-06 15:39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역	잔액
353	66모99**	손*란	서울특별시	2024-09-06 15:43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느산부인과	전용차로 위반	50000
354	36조80**	김*오	서울특별시	2024-09-06 15:5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55	90모74**	주*회*온*	경기도 안산시	2024-09-06 15:54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56	90모74**	주*회*온*	경기도 안산시	2024-09-06 15:56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57	390러35**	이*은	서울특별시	2024-09-06 15:58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0000
358	16마90**	권*노	서울특별시	2024-09-06 16:00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59	25오34**	주*회*태*종*건*	경기도 오산시	2024-09-06 16:22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60	71더38**	L*Q*N*Z*U	경기도 수원시	2024-09-06 16:48	압구정역교차로~현대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60000
361	29저74**	장*영	인천광역시	2024-09-06 16:51	압구정역교차로~가로수길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362	160수98**	전*석	경기도 화성시	2024-09-06 16:52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63	02거08**	정*영	서울특별시	2024-09-06 16:53	압구정역~성수대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364	14너49**	백*현	서울특별시	2024-09-06 16:56	상봉동 중랑역 가나안교회 건너편 GS25상봉사랑점	전용차로 위반	50000
365	서울31사64**	나*석	서울특별시	2024-09-06 17:1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66	311수72**	장*선	서울특별시	2024-09-06 17:1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367	150조76**	유*순	서울특별시	2024-09-06 17:12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68	11라26**	오*래	서울특별시	2024-09-06 17:12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369	서울32바19**	박*호	서울특별시	2024-09-06 17:22	압구정역교차로~가로수길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370	서울32자60**	하*운	서울특별시	2024-09-06 17:24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71	서울31자37**	두*성	서울특별시	2024-09-06 17:2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72	서울32아24**	오*욱	서울특별시	2024-09-06 17:37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73	50어88**	성*연	서울특별시	2024-09-06 17:47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74	37거69**	양*주	경상북도 포항시	2024-09-06 17:5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75	63구08**	정*수	서울특별시	2024-09-06 18:04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376	서울32아46**	홍*도	경기도 구리시	2024-09-06 18:16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느산부인과	전용차로 위반	50000
377	225러19**	주*회*신*상*	경기도 구리시	2024-09-06 18:17	태릉~화랑대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0000
378	69더93**	정*남	서울특별시	2024-09-06 18:21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역	잔액
379	10부28**	최*혁	서울특별시	2024-09-06 18:23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80	222저53**	이*호	서울특별시	2024-09-06 18:31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381	127가59**	(*)*스*림*리*(*x*r*m*K*r*a*0*,*t*.*	서울특별시	2024-09-06 18:48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82	30조58**	(*)*탑	서울특별시	2024-09-06 18:5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83	83머45**	최*영	경기도 의정부시	2024-09-06 19:12	공릉동 목예원(구리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384	46루16**	황*태	인천광역시	2024-09-06 19:16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385	63버27**	송*솔	경기도 파주시	2024-09-06 19:20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386	244다42**	신*민	서울특별시	2024-09-06 19:26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387	경기34바12**	의*은*합*회*	경기도 의정부시	2024-09-06 19:44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388	48조95**	유*경	인천광역시	2024-09-06 19:47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389	36마04**	윤*광	서울특별시	2024-09-06 19:50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390	130머41**	인*광역시자율방범연합회	인천광역시	2024-09-06 19:50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391	서울31바80**	정*원	경기도 의정부시	2024-09-06 19:53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92	52수77**	이*성	서울특별시	2024-09-06 19:55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93	41모87**	안*화	경기도 용인시	2024-09-06 19:56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94	42무87**	김*기	경기도 양평군	2024-09-06 19:56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2 (여의도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95	서울31자64**	진*열	서울특별시	2024-09-06 19:5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96	106루75**	주*회*메*스*	경기도 의왕시	2024-09-06 20:04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2 (여의도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97	서울32자24**	이*선	서울특별시	2024-09-06 20:05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98	123부60**	박*영	인천광역시	2024-09-06 20:05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99	서울32바55**	김*식	서울특별시	2024-09-06 20:2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00	115누59**	김*우	경기도 양주시	2024-09-06 20:23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401	27러44**	서*옥	경기도 용인시	2024-09-06 20:32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402	36거42**	(*)*이*컴	서울특별시	2024-09-06 20:38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03	서울36바13**	박*창	서울특별시	2024-09-07 02:50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0000
404	48나95**	김*석	인천광역시	2024-09-07 04:56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역	잔액
405	304수48**	이*에*.*(*)	경기도 파주시	2024-09-07 07:51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06	178러13**	고*혜	대전광역시	2024-09-07 09:02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07	185버87**	L*U*O*G*I*	서울특별시	2024-09-07 09:02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08	185버87**	L*U*O*G*I*	서울특별시	2024-09-07 09:03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09	185어32**	조*래	서울특별시	2024-09-07 09:10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0000
410	147나21**	김*균	충청남도 아산시	2024-09-07 10:21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411	150주67**	이*찬	울산광역시	2024-09-07 11:26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12	172하29**	이*이*프*주*회*	인천광역시	2024-09-07 11:53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13	305러52**	서*두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2024-09-07 11:53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14	172하29**	이*이*프*주*회*	인천광역시	2024-09-07 11:54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15	185버87**	L*U*O*G*I*	서울특별시	2024-09-07 12:04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16	185버87**	L*U*O*G*I*	서울특별시	2024-09-07 12:05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17	07두03**	박*호	인천광역시	2024-09-07 12:36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18	69도18**	양*영	광주광역시	2024-09-07 12:40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19	46더94**	박*애	경기도 성남시	2024-09-07 13:17	장지역~ 복정역	전용차로 위반	50000
420	19모99**	W*Z*E*G*I	경기도 김포시	2024-09-07 13:58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전용차로 위반	50000
421	125루52**	박*수	경기도 화성시	2024-09-07 14:54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22	79노57**	L*G*A*G*A*	서울특별시	2024-09-07 16:33	천호대교(광장동방향)	전용차로 위반	60000
423	서울31아40**	최*영	경기도 양주시	2024-09-07 17:04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424	325다32**	양*호	인천광역시	2024-09-07 17:32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425	31구36**	영*리*유*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24-09-07 17:42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26	31구36**	영*리*유*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24-09-07 17:43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27	62서57**	안*룡	경기도 안산시	2024-09-07 18:15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28	62서57**	안*룡	경기도 안산시	2024-09-07 18:17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29	62서57**	안*룡	경기도 안산시	2024-09-07 18:18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역	잔액
430	123러28**	이*하	서울특별시	2024-09-07 19:36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31	50두68**	안*배	서울특별시	2024-09-07 19:40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느산부인과	전용차로 위반	50000
432	169조20**	(*)*우	광주광역시	2024-09-07 20:20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전용차로 위반	50000
433	31조78**	김*정	서울특별시	2024-09-08 00:16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느산부인과	전용차로 위반	50000
434	07저07**	A*C*U*X*A*G	경기도 수원시	2024-09-08 07:30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전용차로 위반	50000
435	92저67**	김*근	경기도 성남시	2024-09-08 09:12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436	25너10**	윤*청	서울특별시	2024-09-08 11:48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437	46구73**	브*인*럼*트*트*즈*주*	서울특별시	2024-09-08 11:51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38	391우61**	황*호	경기도 구리시	2024-09-08 13:05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439	22너28**	J*N*I*G*H*N*	인천광역시	2024-09-08 17:00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40	309모79**	신*창	경기도 안양시	2024-09-08 18:01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441	38버04**	정*산*주*회*	부산광역시	2024-09-08 20:49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느산부인과	전용차로 위반	50000
442	서울32사82**	이*희	서울특별시	2024-09-08 23:12	홍대입구역사거리~서교동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0000

공시송달 사전통지서 명단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역	잔액
1	52허04**	(*)*알*이*트*스	서울특별시	2024-07-12 17:02	서초ic~반포ic	전용차로 위반	50000
2	82오66**	김*한	경기도 부천시	2024-07-26 19:35	수정아파트앞	전용차로 위반	50000
3	335다32**	홍*호	경기도 의왕시	2024-07-30 16:08	경부고속도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4	서울31아85**	임*오	서울특별시	2024-08-03 20:43	한국거래소교차로~여의나루역	전용차로 위반	50000
5	171다18**	P*R*J*H*S*N*H*	서울특별시	2024-08-06 08:19	서초IC~반포IC	전용차로 위반	50000
6	31구88**	지*피*엠*식*사	경기도 수원시	2024-08-06 15:06	여의2교~국회의사당앞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7	06라31**	안*옥	서울특별시	2024-08-07 11:29	천호대교~천호역	전용차로 위반	50000
8	82조66**	황*	서울특별시	2024-08-08 17:24	은천삼거리~봉천로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0000
9	101하27**	류*현	서울특별시	2024-08-24 19:47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10	195호43**	베*토*리*유*책*회*	서울특별시	2024-08-26 08:4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1	59너04**	주*회*메*웍*	서울특별시	2024-08-26 17:18	박미삼거리~시흥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0000
12	191허81**	이*숙	경기도 안양시	2024-08-27 09:26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13	198루43**	주*회*라*강*피*커*니*이*	서울특별시	2024-08-28 09:58	이대역~아현역	전용차로 위반	50000
14	169하81**	충*복*관*신*	서울특별시	2024-08-28 17:4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5	190호15**	(*)*원*속	서울특별시	2024-08-28 18:00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16	191허67**	주*회*틀	서울특별시	2024-08-28 19:14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17	304조67**	최*열	서울특별시	2024-08-29 13:34	윤중중학교~수정아파트앞	전용차로 위반	50000
18	15우11**	사*법*산*약*식*협*	서울특별시	2024-08-30 13:05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19	192하23**	(*)*스*이*주*개*	광주광역시	2024-08-30 17:49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여의도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0	192허66**	(*)*이*에*아*엑*	서울특별시	2024-08-30 19:44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21	115러53**	주*회*드*독*심*양*터	서울특별시	2024-08-31 16:17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2	167하84**	백*배	서울특별시	2024-09-01 10:16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 위반	50000
23	167하84**	백*배	서울특별시	2024-09-01 15:55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 위반	50000
24	19부98**	(*)*신	경기도 고양시	2024-09-02 08:12	연신내역~구산역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역	잔액
25	174호66**	오*석	서울특별시	2024-09-02 19:48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6	171하41**	장*윤	서울특별시	2024-09-02 20:19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27	126호13**	고*영	서울특별시	2024-09-03 08:45	올림픽회관교차로~성내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28	194보13**	주*회*더*큐	경기도 포천시	2024-09-03 09:22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29	332두29**	유*나	경기도 고양시	2024-09-03 17:3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0	195호41**	(*)*진*스*스	서울특별시	2024-09-04 07:51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31	120가98**	아*콘	서울특별시	2024-09-04 10:03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2	171하29**	김*원	서울특별시	2024-09-05 08:0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3	194보13**	주*회*더*큐	경기도 포천시	2024-09-05 09:18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34	173다91**	이*자	서울특별시	2024-09-05 17:50	고속터미널역~고속터미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35	152버87**	주*회*가*대*	서울특별시	2024-09-05 18:05	압구정로데오역~성수대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36	171하12**	(*)*미*앤*	서울특별시	2024-09-06 07:47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0000
37	222호55**	주*회*세*	서울특별시	2024-09-06 08:0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8	경기82바47**	성*철	경기도 부천시	2024-09-06 09:44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전용차로 위반	50000
39	109무62**	강*은	서울특별시	2024-09-06 15:36	압구정역~현대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40	200라22**	김*형	서울특별시	2024-09-06 19:2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1	서울32바54**	신*석	서울특별시	2024-09-07 11:06	국제금융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42	368보11**	송*주	서울특별시	2024-09-07 12:33	의사당대로 의원회관앞	전용차로 위반	50000
43	57부08**	김*환	서울특별시	2024-09-08 13:30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 위반	50000
44	22더35**	김*일	서울특별시	2024-09-09 02:11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0000
45	83보62**	주*회*대*종*관*	서울특별시	2024-09-09 07:1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6	81우77**	정*곤	경기도 광주시	2024-09-09 07:1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7	82고47**	(*)*온*드*	서울특별시	2024-09-09 07:43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8	05머83**	T*A*V*A*I*L*V*L*K*A*D*O*I*H	충청남도 천안시	2024-09-09 07:59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9	176주92**	김*호	경기도 양주시	2024-09-09 07:59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50	05머83**	T*A*V*A*I*L*V*L*K*A*D*O*I*H	충청남도 천안시	2024-09-09 08:02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역	잔액
51	90모74**	주*회*온*	경기도 안산시	2024-09-09 08:07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52	37루49**	조*문	서울특별시	2024-09-09 08:07	천호대교~광나루역	전용차로 위반	50000
53	11두67**	진*미	서울특별시	2024-09-09 08:34	대치역~도곡역	전용차로 위반	50000
54	서울31자82**	최*수	서울특별시	2024-09-09 08:34	금천구청입구교차로~말미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0000
55	서울98바99**	최*래	서울특별시	2024-09-09 08:38	도곡역교차로~매봉터널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60000
56	807러29**	이*만	서울특별시	2024-09-09 08:42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57	서울31자74**	김*대	경기도 용인시	2024-09-09 08:45	헌릉로 염곡사거리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58	343보52**	박*원	서울특별시	2024-09-09 08:4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59	서울31바47**	이*영	서울특별시	2024-09-09 08:47	헌릉로 염곡사거리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60	14주88**	박*진	서울특별시	2024-09-09 08:53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61	11수50**	조*집	서울특별시	2024-09-09 08:59	개화동로(김포공항방면)	전용차로 위반	50000
62	272너35**	람*안가아날로우피	경기도 의정부시	2024-09-09 09:19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63	서울31바72**	배*진	서울특별시	2024-09-09 09:4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64	84어16**	조*석	경기도 부천시	2024-09-09 09:59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0000
65	282저52**	김*현	경기도 용인시	2024-09-09 10:00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66	282저52**	김*현	경기도 용인시	2024-09-09 10:02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67	342고22**	신*용	서울특별시	2024-09-09 10:03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68	342누50**	조*수	서울특별시	2024-09-09 10:16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69	141구30**	임*혁	인천광역시	2024-09-09 10:42	영등포고가차도~영등포역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70	41너35**	강*구	서울특별시	2024-09-09 10:4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71	89도75**	최*순	서울특별시	2024-09-09 11:07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15 (여의도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72	390우93**	(*)*성*전*설	서울특별시	2024-09-09 11:16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73	81더60**	(*)*성*전*설	서울특별시	2024-09-09 11:30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74	390우93**	(*)*성*전*설	서울특별시	2024-09-09 11:30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75	85도78**	주*회*태*안*건*	서울특별시	2024-09-09 11:30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76	37서77**	김*빈	서울특별시	2024-09-09 12:02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77	37서77**	김*빈	서울특별시	2024-09-09 12:03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역	잔액
78	282저52**	김*현	경기도 용인시	2024-09-09 12:34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79	282저52**	김*현	경기도 용인시	2024-09-09 12:35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80	20버13**	신*빈	경기도 시흥시	2024-09-09 12:36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81	54머15**	손*웅	경기도 의정부시	2024-09-09 13:15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82	97버03**	이*순	경기도 과천시	2024-09-09 13:17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83	60가30**	박*영	경기도 용인시	2024-09-09 13:51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84	259로67**	주*회*나*이*지	서울특별시	2024-09-09 14:14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85	259로67**	주*회*나*이*지	서울특별시	2024-09-09 14:15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86	196무39**	주*회*코*스*어	경기도 성남시	2024-09-09 14:17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0000
87	58너44**	박*용	서울특별시	2024-09-09 14:27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전용차로 위반	50000
88	04로76**	권*건	경기도 수원시	2024-09-09 15:10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0000
89	63무63**	박*수	서울특별시	2024-09-09 15:42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90	152조36**	박*영	서울특별시	2024-09-09 17:08	강서구 방화동 651-1	전용차로 위반	50000
91	57나75**	이*희	경상북도 포항시	2024-09-09 17:08	강서구 방화동 651-1	전용차로 위반	50000
92	서울32아37**	조*환	서울특별시	2024-09-09 17:0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93	22구71**	정*택	경기도 안산시	2024-09-09 17:36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94	183저62**	김*원	서울특별시	2024-09-09 17:38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95	29모95**	D*L*B*Y*V*A*A*Z*A*	충청남도 부여군	2024-09-09 17:40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96	47저78**	강*	서울특별시	2024-09-09 17:4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97	서울구로파22**	L*Y*N*O*G	서울특별시	2024-09-09 18:04	봉천중앙시장앞	전용차로 위반	40000
98	47도08**	파*아*로*미*주*회*	서울특별시	2024-09-09 18:09	올림픽회관교차로~올림픽대교남단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99	49구99**	조*삼	충청남도 논산시	2024-09-09 18:11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100	42구75**	박*양	경기도 용인시	2024-09-09 18:14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01	40머44**	더*컴*식*사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2024-09-09 18:16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102	42구75**	박*양	경기도 용인시	2024-09-09 18:16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03	42구75**	박*양	경기도 용인시	2024-09-09 18:18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역	잔액
104	58러08**	주*회*조*무*	경기도 의정부시	2024-09-09 18:23	육사야구장~화랑대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0000
105	36누78**	김*국	서울특별시	2024-09-09 18:23	육사야구장~화랑대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0000
106	125가91**	이*덕	서울특별시	2024-09-09 18:2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07	42구75**	박*양	경기도 용인시	2024-09-09 18:30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108	14서74**	서*원	서울특별시	2024-09-09 18:40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109	19마95**	구*철	서울특별시	2024-09-09 18:5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10	366조10**	(*)*일*션	경기도 안산시	2024-09-09 18:53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111	30조58**	(*)*탑	서울특별시	2024-09-09 19:0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12	83머45**	최*영	경기도 의정부시	2024-09-09 19:20	공릉동 목예원(구리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113	36버65**	이*근	경기도 성남시	2024-09-09 19:2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14	92거26**	신*봉	경기도 양주시	2024-09-09 19:22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60000
115	328거80**	김*미	경상북도 영천시	2024-09-09 19:23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116	21어11**	Y*N*H*N*H*N	경기도 부천시	2024-09-09 19:26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전용차로 위반	50000
117	서울31바25**	이*상	경기도 광주시	2024-09-09 19:37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118	50나14**	대*홀*스*식*사	경기도 안산시	2024-09-09 19:41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19	50나14**	대*홀*스*식*사	경기도 안산시	2024-09-09 19:42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20	57소53**	최*호	경기도 의정부시	2024-09-09 19:43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121	100모47**	신*우	경기도 이천시	2024-09-09 19:49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122	35머93**	황*미	경상남도 통영시	2024-09-09 19:50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123	184보85**	(*)*건*통*컴	경기도 광주시	2024-09-09 20:08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24	66구81**	박*우	서울특별시	2024-09-09 21:46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125	27주57**	정*현	광주광역시	2024-09-09 23:03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126	서울31바31**	정*두	서울특별시	2024-09-10 06:59	미아사거리방향 이마트앞	전용차로 위반	50000
127	서울86자96**	전*기	서울특별시	2024-09-10 07:09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0000
128	269소16**	박*우	경기도 하남시	2024-09-10 07:15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129	51보51**	김*현	경기도 고양시	2024-09-10 08:18	동산육교~은평뉴타운10단지	전용차로 위반	50000
130	40조68**	권*화	서울특별시	2024-09-10 08:2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역	잔액
131	88더94**	이*석	서울특별시	2024-09-10 08:2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32	85노22**	M*N*E*G*Y*E*I*S*V*C*	인천광역시	2024-09-10 08:22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33	서울32자22**	김*훈	서울특별시	2024-09-10 08:25	천호대교~광나루역	전용차로 위반	50000
134	86거36**	(*)*당*병	서울특별시	2024-09-10 08:45	천호대교~천호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0000
135	83무62**	김*준	경기도 의정부시	2024-09-10 08:50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36	85수13**	주*회*지*창*시*템	서울특별시	2024-09-10 08:53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37	62버01**	김*형	서울특별시	2024-09-10 08:55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138	46어55**	이*연	서울특별시	2024-09-10 09:00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139	333도21**	미*엘*씨*식*사	서울특별시	2024-09-10 09:04	복정역~장지교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140	330무94**	김*연	인천광역시	2024-09-10 09:1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41	13마37**	이*현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2024-09-10 09:20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42	09보26**	이*성	서울특별시	2024-09-10 09:35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43	34노94**	여*준	서울특별시	2024-09-10 09:46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144	90로48**	최*선	서울특별시	2024-09-10 09:4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45	313누33**	황*택	경기도 용인시	2024-09-10 10:09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46	29오55**	박*우	경기도 남양주시	2024-09-10 10:1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47	30가18**	이*집	경기도 고양시	2024-09-10 10:58	경문고교교차로~총신대입구역(이수)	전용차로 위반	50000
148	006가98**	강*구	경기도 양주시	2024-09-10 11:57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60000
149	813로96**	주*회*삼*건*	경기도 시흥시	2024-09-10 12:02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150	서울31사82**	이*덕	경기도 남양주시	2024-09-10 12:08	삼성교~종합운동장역	전용차로 위반	50000
151	178무88**	박*혜	경기도 수원시	2024-09-10 14:01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52	178무88**	박*혜	경기도 수원시	2024-09-10 14:03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53	110서59**	L*Z*E*U*	서울특별시	2024-09-10 14:04	종로2가 스타벅스 종각점	전용차로 위반	50000
154	191버70**	X*A*L*N*G*O	서울특별시	2024-09-10 14:17	압구정역~현대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155	서울31자25**	최*훈	서울특별시	2024-09-10 14:17	압구정역~현대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156	22무43**	윤*웅	서울특별시	2024-09-10 14:17	압구정역~현대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역	잔액
157	서울31바55**	이*재	경기도 안산시	2024-09-10 14:19	압구정역~현대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158	72하57**	이*이*프*(*)	인천광역시	2024-09-10 14:54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느산부인과	전용차로 위반	60000
159	280나85**	A*D*H*A*I*O*A*M*D*A*A*M*H*M*E*K*A*	대전광역시	2024-09-10 14:56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60	117우55**	정*태	충청남도 천안시	2024-09-10 15:14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61	36러67**	정*신	경기도 성남시	2024-09-10 16:05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62	34어17**	K*H*A*T*O*Y*E*D*N*N*	서울특별시	2024-09-10 16:08	삼각지역~신용산역	전용차로 위반	50000
163	49다61**	함*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2024-09-10 16:2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64	01머05**	고*효	경기도 평택시	2024-09-10 16:22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165	서울32사55**	김*호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2024-09-10 16:56	한양아파트앞사거리~성수대교남단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166	40러43**	진*정	서울특별시	2024-09-10 17:18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167	83거80**	주*희*다*스*이*	서울특별시	2024-09-10 17:18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168	서울32자57**	장*섭	서울특별시	2024-09-10 17:1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69	92다52**	한*배	경기도 의정부시	2024-09-10 17:19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170	27도65**	상*건*주*회*	서울특별시	2024-09-10 17:28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느산부인과	전용차로 위반	50000
171	05부89**	임*	경기도 평택시	2024-09-10 17:3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72	69노93**	(*)*매*	경기도 의왕시	2024-09-10 17:38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173	86로48**	심*미	서울특별시	2024-09-10 17:40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174	13다02**	서*덕	서울특별시	2024-09-10 17:41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175	162노36**	이*봉	서울특별시	2024-09-10 17:46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176	102노26**	Q*A*M*I*I*G	서울특별시	2024-09-10 17:46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177	294수39**	조*향	경기도 남양주시	2024-09-10 17:46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178	68버76**	김*한	서울특별시	2024-09-10 17:51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179	293다65**	김*국	서울특별시	2024-09-10 17:5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80	38거27**	장*	서울특별시	2024-09-10 17:5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81	845로51**	(*)*공	경기도 고양시	2024-09-10 17:53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역	잔액
182	205모32**	송*연	경기도 김포시	2024-09-10 18:07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183	54조15**	이*도	서울특별시	2024-09-10 18:1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84	26로17**	신*상	서울특별시	2024-09-10 18:26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185	108라60**	드*잉*터*인*트*식*사	서울특별시	2024-09-10 18:3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86	245로42**	(*)*오*택	경기도 안양시	2024-09-10 18:40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87	07모85**	안*순	경기도 고양시	2024-09-10 18:4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88	30조58**	(*)*탑	서울특별시	2024-09-10 18:4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89	68로02**	김*오	인천광역시	2024-09-10 18:51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190	261어71**	박*은	서울특별시	2024-09-10 19:02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191	58머32**	윤*태	서울특별시	2024-09-10 19:05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192	08조67**	임*준	전라남도 순천시	2024-09-10 19:22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93	82러92**	박*희	인천광역시	2024-09-10 19:52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94	97라03**	탁*석	경기도 의정부시	2024-09-10 20:05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195	306어79**	조*구	충청남도 천안시	2024-09-10 20:12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96	306어79**	조*구	충청남도 천안시	2024-09-10 20:13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97	서울31사79**	현*재	서울특별시	2024-09-10 20:33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98	270루98**	최*웅	서울특별시	2024-09-10 20:36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199	25서64**	이*희	서울특별시	2024-09-10 20:36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200	17거78**	김*원	서울특별시	2024-09-10 20:40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01	83소08**	주*회*상*산*개*	광주광역시	2024-09-10 20:44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202	60도81**	V*T*I*A*	서울특별시	2024-09-10 21:33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0000
203	395누50**	J*N*I*G*H*N	서울특별시	2024-09-11 07:14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04	395누50**	J*N*I*G*H*N	서울특별시	2024-09-11 07:15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05	395누50**	J*N*I*G*H*N	서울특별시	2024-09-11 07:16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06	27고07**	(*)*원*역	서울특별시	2024-09-11 07:22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07	27고07**	(*)*원*역	서울특별시	2024-09-11 07:23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08	15나71**	주*회*세*	경기도 용인시	2024-09-11 07:3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역	잔액
209	52라11**	정*길	서울특별시	2024-09-11 07:58	국립현충원교차로~흑석역	전용차로 위반	50000
210	59거05**	강*규	서울특별시	2024-09-11 08:08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211	280조18**	이*숙	경기도 남양주시	2024-09-11 08:09	태릉~화랑대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0000
212	60구10**	양*후	경기도 의정부시	2024-09-11 08:13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213	177서19**	박*람	서울특별시	2024-09-11 08:2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14	151거97**	마*순	경기도 의정부시	2024-09-11 08:43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15	324구37**	주*회*연*개*	경기도 용인시	2024-09-11 08:50	대치역~도곡역	전용차로 위반	50000
216	75보74**	장*석	경기도 고양시	2024-09-11 08:55	수색동 경의중앙선 수색역1번출구 공영주차장	전용차로 위반	60000
217	27다74**	주*회*코*스*산*	서울특별시	2024-09-11 09:1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18	45두64**	주*회*해*	경기도 양평군	2024-09-11 09:12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219	53주76**	송*범	서울특별시	2024-09-11 09:14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20	06버38**	주*회*바*엔	서울특별시	2024-09-11 09:16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21	49노64**	J*A*G*E*G*U*	서울특별시	2024-09-11 09:35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222	64거68**	정*재	경기도 용인시	2024-09-11 09:36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223	97다79**	주*회*신*환*	경기도 성남시	2024-09-11 09:41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60000
224	131로68**	H*N*Z*E*I	경기도 용인시	2024-09-11 10:16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25	131로68**	H*N*Z*E*I	경기도 용인시	2024-09-11 10:17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26	131로68**	H*N*Z*E*I	경기도 용인시	2024-09-11 10:18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27	서울32자43**	이*욱	서울특별시	2024-09-11 11:0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28	47거64**	(*)*도*앤*	서울특별시	2024-09-11 12:05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229	395누50**	J*N*I*G*H*N	서울특별시	2024-09-11 12:41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30	20도36**	Y*N*I*H*N	충청남도 천안시	2024-09-11 14:04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31	53머80**	권*진	서울특별시	2024-09-11 14:46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232	28가57**	L*A*G*O*G*H*	서울특별시	2024-09-11 14:54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0000
233	서울38아44**	김*수	경기도 고양시	2024-09-11 14:58	강남소방서앞	전용차로 위반	50000
234	50마58**	우*옥	경기도 하남시	2024-09-11 15:57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0000
235	경기76사39**	(*)*보*광	경기도 여주시	2024-09-11 16:21	서울 송파구 잠실동 20	전용차로 위반	6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역	잔액
236	809수79**	(*)*가*주	경기도 광주시	2024-09-11 16:28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237	180버94**	구*모	경기도 오산시	2024-09-11 16:49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38	07거08**	황*원	서울특별시	2024-09-11 17:08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39	07거08**	황*원	서울특별시	2024-09-11 17:10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40	289소57**	길*혁	경기도 안산시	2024-09-11 17:15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41	50어96**	이*천	서울특별시	2024-09-11 17:15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242	11러71**	최*식	서울특별시	2024-09-11 17:19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243	42무60**	김*덕	경기도 남양주시	2024-09-11 17:19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244	76보75**	조*환	서울특별시	2024-09-11 17:20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60000
245	152루92**	주*회*바*가*	서울특별시	2024-09-11 17:26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246	708저74**	서*민	서울특별시	2024-09-11 17:27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60000
247	04수21**	배*우	경기도 고양시	2024-09-11 17:29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248	708저74**	서*민	서울특별시	2024-09-11 17:30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60000
249	62보94**	주*회*코*아*	서울특별시	2024-09-11 17:33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250	59무10**	(*)*당	서울특별시	2024-09-11 17:43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251	152두64**	엔*이*농*개*탈*식*사	경기도 평택시	2024-09-11 17:49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252	159조68**	정*헌	경기도 남양주시	2024-09-11 17:57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0000
253	56두99**	맹*례	서울특별시	2024-09-11 18:00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254	159조68**	정*헌	경기도 남양주시	2024-09-11 18:0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55	64저57**	김*애	서울특별시	2024-09-11 18:01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56	서울32사43**	한*훈	서울특별시	2024-09-11 18:06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57	64보28**	채*섭	서울특별시	2024-09-11 18:20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258	173가17**	김*숙	서울특별시	2024-09-11 18:20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259	127가59**	(*)*스*림*리*(*x*r*m*K*r*a*o*,*t*.*	서울특별시	2024-09-11 18:2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60	803서49**	주*회*비*스	경상북도 포항시	2024-09-11 18:39	공릉동 삼육에코팜센터(구리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역	잔액
261	46거22**	농*회*법*주*회*그*투*	경기도 하남시	2024-09-11 18:4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62	24도94**	(*)*성*엔*	경기도 여주시	2024-09-11 19:16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263	29더69**	주*회*대*에*아*	서울특별시	2024-09-11 19:19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264	47주69**	김*숙	경기도 동두천시	2024-09-11 19:42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265	183어72**	주*회*에*피*	경기도 의정부시	2024-09-11 19:54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266	67가19**	주*회*더*스*설*	서울특별시	2024-09-11 20:1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67	101하41**	뉴*한*트*(*)	서울특별시	2024-09-11 20:2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68	35거39**	B*S*W*K*R*A*R*T*V*B*H*D*R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2024-09-12 02:26	무학동 독립문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269	49조74**	진*득	경기도 성남시	2024-09-12 07:3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70	126저36**	고*지	대구광역시	2024-09-12 07:46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271	63서35**	이*호	인천광역시	2024-09-12 07:58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272	서울31바72**	윤*한	서울특별시	2024-09-12 08:12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73	149수82**	홍*미	경기도 안산시	2024-09-12 08:15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74	311가16**	강*일	서울특별시	2024-09-12 08:1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75	28우40**	이*연	서울특별시	2024-09-12 08:18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276	서울31사97**	김*천	경기도 양주시	2024-09-12 08:18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77	89어64**	유*신	서울특별시	2024-09-12 08:23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78	37거59**	이*우	서울특별시	2024-09-12 08:25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279	95부71**	나*수	경기도 하남시	2024-09-12 08:25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0000
280	80머65**	김*근	경기도 과천시	2024-09-12 08:25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81	182오88**	(*)*울*너*	서울특별시	2024-09-12 08:28	공릉동 문정왕후릉(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282	77더03**	김*래	서울특별시	2024-09-12 08:3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60000
283	801더10**	최*호	경기도 파주시	2024-09-12 08:43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0000
284	15노47**	Z*E*G*A*R*N*	경기도 의정부시	2024-09-12 08:44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285	15라95**	구*리	서울특별시	2024-09-12 08:55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286	서울31아22**	김*수	서울특별시	2024-09-12 09:0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역	잔액
287	서울91자53**	라*구	서울특별시	2024-09-12 09:06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288	03모96**	한*창	서울특별시	2024-09-12 09:1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89	35도50**	허*욱	경기도 하남시	2024-09-12 09:30	공릉동 문정왕후릉(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290	서울32자13**	김*년	서울특별시	2024-09-12 09:31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291	131무31**	이*웅	경기도 고양시	2024-09-12 09:4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92	33보24**	이*형	서울특별시	2024-09-12 09:47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293	서울31자24**	박*수	경기도 성남시	2024-09-12 09:4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94	40루10**	신*현	경기도 시흥시	2024-09-12 09:52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95	40루10**	신*현	경기도 시흥시	2024-09-12 09:54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96	69고05**	T*R*R*V*S*A*	경기도 안성시	2024-09-12 09:57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97	33서87**	주*회*티*아*홀*스*룹	서울특별시	2024-09-12 10:18	무학동 독립문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298	18누94**	양*찬	서울특별시	2024-09-12 11:39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여의도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99	97노72**	(*)*보*메*칼	서울특별시	2024-09-12 12:15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00	41도21**	전*연	경기도 성남시	2024-09-12 13:22	봉천로사거리~은천삼거리	전용차로 위반	50000
301	349로34**	L*H*A*U*N	경기도 시흥시	2024-09-12 13:23	봉천로사거리~은천삼거리	전용차로 위반	50000
302	268라12**	주*회*홈*스	서울특별시	2024-09-12 13:2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03	82주92**	이*기	서울특별시	2024-09-12 13:24	봉천로사거리~은천삼거리	전용차로 위반	50000
304	308마57**	김*용	서울특별시	2024-09-12 13:49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0000
305	69마42**	신*을	경기도 화성시	2024-09-12 14:43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306	274어87**	김*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2024-09-12 14:52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307	95러01**	이*휘	경기도 성남시	2024-09-12 15:06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0000
308	175호52**	푸*솔*광*주*	인천광역시	2024-09-12 15:30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09	175호52**	푸*솔*광*주*	인천광역시	2024-09-12 15:32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10	280부59**	R*U*Y*N*S*O	서울특별시	2024-09-12 15:34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311	24다08**	박*호	서울특별시	2024-09-12 16:11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12	24다08**	박*호	서울특별시	2024-09-12 16:12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역	잔액
313	199모97**	신*자	인천광역시	2024-09-12 16:19	압구정로데오역~성수대교남단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314	111어81**	(*)*빙*코*아	경기도 화성시	2024-09-12 16:25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15	111어81**	(*)*빙*코*아	경기도 화성시	2024-09-12 16:26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16	111어81**	(*)*빙*코*아	경기도 화성시	2024-09-12 16:27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17	17보03**	이*형	서울특별시	2024-09-12 16:51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0000
318	24도94**	(*)*성*엔*	경기도 여주시	2024-09-12 17:01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319	06주36**	채*정	경기도 고양시	2024-09-12 17:02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320	334오77**	신*철	서울특별시	2024-09-12 17:12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21	56무54**	이*영	서울특별시	2024-09-12 17:12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22	40조59**	김*복	서울특별시	2024-09-12 17:21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23	서울38아70**	이*열	서울특별시	2024-09-12 17:2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24	41무17**	(*)*쿠*카*스	서울특별시	2024-09-12 17:27	강남소방서앞	전용차로 위반	50000
325	159더16**	권*자	경기도 안성시	2024-09-12 17:3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26	148너86**	주*회*와*지*코*아	서울특별시	2024-09-12 17:3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27	91부70**	김*일	경기도 남양주시	2024-09-12 17:33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328	55두77**	박*수	경기도 김포시	2024-09-12 17:33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329	22나41**	임*식	경기도 의정부시	2024-09-12 17:49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330	83거80**	주*회*다*스*이*	서울특별시	2024-09-12 17:58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331	153무39**	여*은	경기도 시흥시	2024-09-12 17:58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32	경기88바98**	이*택	경기도 파주시	2024-09-12 17:5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33	15저14**	김*원	서울특별시	2024-09-12 18:07	상봉동 중랑역 가나안교회 건너편 GS25상봉사랑점	전용차로 위반	50000
334	90모04**	조*동	경기도 하남시	2024-09-12 18:1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35	27모55**	이*학	충청북도 충주시	2024-09-12 18:17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336	89보11**	고*규	경기도 과천시	2024-09-12 18:24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느산부인과	전용차로 위반	50000
337	67보09**	이*섭	경기도 광주시	2024-09-12 18:26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38	59너87**	(*)*더*티*	서울특별시	2024-09-12 18:26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39	67보09**	이*섭	경기도 광주시	2024-09-12 18:28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역	잔액
340	228서50**	황*원	서울특별시	2024-09-12 18:28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41	233너27**	이*선	서울특별시	2024-09-12 18:34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342	233너27**	이*선	서울특별시	2024-09-12 18:36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43	83소08**	주*회*상*산*개*	광주광역시	2024-09-12 19:13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344	51러27**	오*환	경기도 남양주시	2024-09-12 19:14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45	61모75**	서*오	경기도 양주시	2024-09-12 19:18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346	132서10**	박*리	서울특별시	2024-09-12 19:30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47	54두54**	편*택	경기도 의정부시	2024-09-12 19:33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348	64도49**	(*)*이*가	서울특별시	2024-09-12 19:46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349	227러11**	C*I*I*G*I*N	경기도 파주시	2024-09-12 19:51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350	서울32아26**	이*현	경기도 남양주시	2024-09-12 20:06	올림픽로 강동구청역8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351	서울32사72**	이*모	경기도 의정부시	2024-09-12 20:13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352	61서72**	최*영	서울특별시	2024-09-12 20:16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353	251저76**	최*희	경기도 안양시	2024-09-12 20:28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354	160어72**	허*용	부산광역시	2024-09-12 20:32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355	22다63**	박*호	서울특별시	2024-09-12 20:34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전용차로 위반	50000
356	20라89**	박*혁	서울특별시	2024-09-12 20:35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57	258무61**	김*안	경기도 안양시	2024-09-12 20:47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358	충남82아12**	류*승	충청남도 보령시	2024-09-12 23:34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공시송달 사전통지서 명단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역	잔액
1	50수97**	김*관	인천광역시	2024-08-06 11:25	여의도동 윤중초교앞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2	153루33**	우*근	서울특별시	2024-08-15 10:16	상봉삼거리~망우역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3	12무61**	(*)*진	경기도 안양시	2024-08-18 18:15	박미삼거리~기아대교앞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4	166저77**	이*현	서울특별시	2024-08-19 08:45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5	256마32**	(*)*이*이*	서울특별시	2024-08-20 17:54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6	194하65**	(*)*록*스*	경기도 남양주시	2024-08-20 18:59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7	176호76**	최*미	서울특별시	2024-08-21 07:35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396	전용차로 위반	50000
8	71하25**	(*)*일*크*	경기도 안양시	2024-08-22 10:5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6	전용차로 위반	60000
9	166저77**	이*현	서울특별시	2024-08-22 16:40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0	50구40**	자*사*주*	서울특별시	2024-08-23 17:1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1	161호49**	이*윤	경기도 안성시	2024-08-26 10:23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2	125호86**	김*호	서울특별시	2024-08-27 09:11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13	133하17**	이*민	경기도 남양주시	2024-08-27 09:18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4	133하17**	이*민	경기도 남양주시	2024-08-27 09:19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5	170허84**	라*바*오*(*)	서울특별시	2024-08-29 08:20	개화교~개화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0000
16	161호49**	이*윤	경기도 안성시	2024-08-29 13:22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7	155호36**	한*호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2024-08-30 09:23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 위반	50000
18	109허69**	김*호	서울특별시	2024-08-30 12:04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18 (여의도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9	20호62**	정*용	서울특별시	2024-09-02 08:49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 (여의도동, 광장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20	232마81**	장*규	경기도 성남시	2024-09-02 09:06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21	161호49**	이*윤	경기도 안성시	2024-09-02 11:03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2	161호49**	이*윤	경기도 안성시	2024-09-02 11:04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3	02호36**	이*규	경기도 양주시	2024-09-02 15:05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역	잔액
24	161호49**	이*윤	경기도 안성시	2024-09-02 15:44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5	141허11**	주*회*지*에*엠	서울특별시	2024-09-02 15:53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6	서울36바21**	김*선	경기도 남양주시	2024-09-02 19:27	청량리역~경동시장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0000
27	353다73**	(*)*십*점*그*픽*	서울특별시	2024-09-03 07:42	현대백화점~현대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28	35마73**	(*)*블*지*비	서울특별시	2024-09-03 09:32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29	191하79**	(*)*민*행	서울특별시	2024-09-04 08:15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30	394부26**	임*정	서울특별시	2024-09-04 08:39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31	169호86**	서*축*농*노*진*점	서울특별시	2024-09-04 16:4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2	126호73**	(*)*앤*이*	서울특별시	2024-09-04 18:23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33	221호48**	이*운	경기도 평택시	2024-09-05 10:55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4	228호17**	이*주	서울특별시	2024-09-05 13:25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5	서울88바34**	최*구	서울특별시	2024-09-06 16:29	천호대교남단~광장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0000
36	24호15**	신*정	서울특별시	2024-09-06 18:1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37	161호29**	고*혁	경기도 오산시	2024-09-07 11:52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8	서울31바28**	박*상	서울특별시	2024-09-07 12:07	구산역~연신내역	전용차로 위반	50000
39	162누99**	김*윤	서울특별시	2024-09-07 17:37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40	68호08**	(*)*르*	서울특별시	2024-09-09 09:30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0000
41	247노18**	임*애	경기도 부천시	2024-09-09 13:19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2	194보13**	주*회*더*큐	경기도 포천시	2024-09-10 09:33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43	130호80**	김*자	충청남도 천안시	2024-09-10 09:47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4	804어52**	윤*영	경기도 수원시	2024-09-10 17:4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5	100나37**	최*민	충청남도 서산시	2024-09-10 19:54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6	172호48**	경*동*대*광*전*식*사	경상북도 경주시	2024-09-10 20:4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7	서울31사52**	정*성	서울특별시	2024-09-11 08:10	월계1교교차로~하계5단지6단지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48	서울32자60**	김*의	서울특별시	2024-09-11 08:48	내곡교~어린이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역	잔액
49	130하23**	설*수	서울특별시	2024-09-11 12:59	상봉동 중랑역 가나안교회 건너편 GS25상봉사랑점	전용차로 위반	50000
50	126하22**	(*)*나*엔*테*먼*	서울특별시	2024-09-11 17:34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51	149호36**	주*회*지*기*개*	서울특별시	2024-09-11 18:56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52	27오92**	박*한	서울특별시	2024-09-12 08:04	종로2가 보원빌딩	전용차로 위반	50000
53	160하58**	주*회*아*	서울특별시	2024-09-12 08:15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54	34조55**	정*관	경기도 의정부시	2024-09-12 08:39	온수골사거리~용화여고	전용차로 위반	50000
55	60다87**	도*미	경기도 의정부시	2024-09-12 08:56	월계1교교차로~하계5단지6단지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56	42버86**	주*회*우*이*씨	경기도 구리시	2024-09-12 09:10	육사야구장~화랑대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0000
57	228호17**	이*주	서울특별시	2024-09-12 11:16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58	228머72**	(*)*루*키*츠*축*사*소	서울특별시	2024-09-12 13:42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59	162러70**	(*)*에*셀	서울특별시	2024-09-12 14:03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0000
60	224호18**	권*주	경기도 화성시	2024-09-12 14:47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61	224호18**	권*주	경기도 화성시	2024-09-12 14:48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62	서울86자14**	조*욱	경기도 하남시	2024-09-12 16:01	영등포구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앞	전용차로 위반	50000
63	221하67**	한*진	경기도 남양주시	2024-09-12 16:11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0000
64	222하26**	영*농*품*식*사	전라남도 영암군	2024-09-12 17:24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65	222하26**	영*농*품*식*사	전라남도 영암군	2024-09-12 17:25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66	222하26**	영*농*품*식*사	전라남도 영암군	2024-09-12 17:26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67	221주58**	주*회*케*투*업*발	서울특별시	2024-09-12 17:3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68	142부34**	(*)*이*에*글*벌	서울특별시	2024-09-12 17:52	봉천중앙시장	전용차로 위반	50000
69	51라84**	주*회*에*씨*퍼*	서울특별시	2024-09-12 19:50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70	85가07**	서*근	경기도 성남시	2024-09-13 07:3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71	250소73**	곽*웅	서울특별시	2024-09-13 07:41	대치역~도곡역	전용차로 위반	50000
72	377거80**	이*자	서울특별시	2024-09-13 07:5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73	54부43**	윤*하	서울특별시	2024-09-13 08:12	신반포로 계성초교앞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역	잔액
74	서울32사55**	박*오	경기도 의정부시	2024-09-13 08:29	온수골사거리~노원역	전용차로 위반	50000
75	238라77**	박*규	경기도 용인시	2024-09-13 08:29	내곡IC~염곡IC	전용차로 위반	50000
76	54머97**	(*)*소*어	충청남도 서산시	2024-09-13 08:38	잠원로반포3동사무소 한신공영건물앞	전용차로 위반	50000
77	23다87**	엄*규	경기도 의정부시	2024-09-13 08:39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78	61러37**	유*회*니*	경기도 오산시	2024-09-13 08:45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 (여의도동, 광장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79	42저09**	노*자	경기도 양주시	2024-09-13 08:45	용화여고~상계역	전용차로 위반	50000
80	52수05**	조*경	서울특별시	2024-09-13 08:47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81	89주24**	권*수	경기도 성남시	2024-09-13 08:4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82	133고23**	주*회*제*영*퍼*	경기도 군포시	2024-09-13 09:01	복정역~장지교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83	64오37**	이*호	충청남도 홍성군	2024-09-13 09:1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84	391고55**	손*나	서울특별시	2024-09-13 09:13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85	251주33**	수*리항	서울특별시	2024-09-13 09:14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86	251주33**	수*리항	서울특별시	2024-09-13 09:16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87	서울32아44**	공*식	경기도 남양주시	2024-09-13 09:17	상계백병원교차로~중계역	전용차로 위반	50000
88	809루54**	이*재	서울특별시	2024-09-13 09:32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89	29우95**	이*재	서울특별시	2024-09-13 09:4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90	50오37**	박*길	서울특별시	2024-09-13 09:46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91	01보06**	주*홍	경기도 부천시	2024-09-13 09:48	백석초등학교앞	전용차로 위반	50000
92	175호52**	푸*솔*광*주*	인천광역시	2024-09-13 10:38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93	175호52**	푸*솔*광*주*	인천광역시	2024-09-13 10:39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94	41주06**	M*S*O*V*S*O*D*H*N	충청북도 충주시	2024-09-13 10:51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95	51두26**	김*진	경기도 안성시	2024-09-13 13:16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96	50도36**	이*호	서울특별시	2024-09-13 14:00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 위반	50000
97	194고32**	오*숙	서울특별시	2024-09-13 14:1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98	서울31아55**	류*선	경기도 용인시	2024-09-13 15:05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역	잔액
99	138모96**	김*란	경기도 양평군	2024-09-13 15:08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00	156버94**	박*억	경기도 수원시	2024-09-13 15:43	고척동 구로성심병원 버스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101	182나63**	C*I*I*H*	서울특별시	2024-09-13 15:4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02	서울31아53**	안*준	서울특별시	2024-09-13 15:55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103	02러72**	L*K*A*N*A*D*Y	경기도 용인시	2024-09-13 16:00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04	서울31자59**	이*규	서울특별시	2024-09-13 16:01	신반포역~고속버스터미널	전용차로 위반	50000
105	02러72**	L*K*A*N*A*D*Y	경기도 용인시	2024-09-13 16:01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06	서울32사98**	하*호	서울특별시	2024-09-13 16:10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107	25무43**	(*)*알*미*트*이*	인천광역시	2024-09-13 16:11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08	373저92**	J*N*I*U*	경기도 시흥시	2024-09-13 16:12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09	373저92**	J*N*I*U*	경기도 시흥시	2024-09-13 16:13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10	373저92**	J*N*I*U*	경기도 시흥시	2024-09-13 16:14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11	93루05**	박*용	서울특별시	2024-09-13 16:14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112	104보45**	황*서	전라남도 순천시	2024-09-13 16:23	상봉동 중랑역 가나안교회 건너편 GS25상봉사랑점	전용차로 위반	50000
113	56모89**	조*준	서울특별시	2024-09-13 16:30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114	42조58**	이*희	경기도 남양주시	2024-09-13 16:3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15	서울31바68**	윤*관	경기도 남양주시	2024-09-13 16:45	압구정로데오역~성수대교남단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116	93루42**	국*완	서울특별시	2024-09-13 17:11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117	128무48**	G*O*E*T*I	서울특별시	2024-09-13 17:1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18	64누93**	김*순	경기도 부천시	2024-09-13 17:14	개화동로(김포공항방면)	전용차로 위반	50000
119	119부20**	김*옥	서울특별시	2024-09-13 17:1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20	84고58**	김*철	서울특별시	2024-09-13 17:15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121	52고47**	남*연	서울특별시	2024-09-13 17:15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122	357나28**	김*영	경기도 안양시	2024-09-13 17:15	개화동로(김포공항방면)	전용차로 위반	50000
123	56로21**	임*식	서울특별시	2024-09-13 17:16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역	잔액
124	01모66**	주*회*바*	충청남도 서산시	2024-09-13 17:1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25	09저17**	조*행	경기도 안산시	2024-09-13 17:18	봉천고개~은천삼거리	전용차로 위반	50000
126	85모19**	정*길	서울특별시	2024-09-13 17:18	공릉동 문정왕후릉(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127	57어07**	이*달	서울특별시	2024-09-13 17:18	봉천고개~은천삼거리	전용차로 위반	50000
128	경기45바49**	전*범	경기도 파주시	2024-09-13 17:18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129	29나60**	(*)*진*앤*	서울특별시	2024-09-13 17:18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130	서울31사48**	주*진	서울특별시	2024-09-13 17:18	봉천중앙시장앞	전용차로 위반	50000
131	서울32바29**	김*강	서울특별시	2024-09-13 17:22	김포공항입구교차로~송정역	전용차로 위반	50000
132	131라21**	전*석	서울특별시	2024-09-13 17:34	고척동 구로성심병원 버스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133	284저35**	조*호	서울특별시	2024-09-13 17:51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34	32우32**	박*형	부산광역시	2024-09-13 17:52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35	289우45**	S*L*I*J*	경기도 남양주시	2024-09-13 17:59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136	65거14**	주*운	서울특별시	2024-09-13 18:09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137	63도52**	변*환	경기도 남양주시	2024-09-13 18:28	공릉동 삼육에코팜센터(구리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138	32소90**	주*회*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2024-09-13 18:43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39	96어09**	정*일	경기도 시흥시	2024-09-13 18:53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140	29러04**	송*종	인천광역시	2024-09-13 19:03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141	49어77**	나*철	경기도 수원시	2024-09-13 19:13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142	165모16**	이*민	서울특별시	2024-09-13 19:18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143	224라22**	김*현	서울특별시	2024-09-13 19:33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144	40마90**	조*구	서울특별시	2024-09-13 19:34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145	34너01**	강*명	인천광역시	2024-09-13 19:38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46	310저68**	김*형	서울특별시	2024-09-13 19:47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147	36어18**	박*애	경기도 화성시	2024-09-13 20:04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148	서울32자22**	김*한	서울특별시	2024-09-13 20:1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49	236부42**	황*균	서울특별시	2024-09-13 20:19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역	잔액
150	398조18**	이*윤	부산광역시	2024-09-13 20:30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151	서울32자37**	최*진	서울특별시	2024-09-13 20:48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0000
152	03소42**	임*호	인천광역시	2024-09-13 20:48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153	46로71**	김*자	서울특별시	2024-09-13 20:49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154	68도04**	김*현	경기도 고양시	2024-09-14 01:21	고척동 구로성심병원 버스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155	94무38**	최*자	서울특별시	2024-09-14 07:11	오현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156	175노84**	유*주	경기도 수원시	2024-09-14 10:24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57	47다58**	권*기	서울특별시	2024-09-14 11:18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158	130너12**	최*혜	경기도 안산시	2024-09-14 11:27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59	31도46**	박*미	서울특별시	2024-09-14 12:08	서울 서대문구 거북골로 178-1 (북가좌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60	37다07**	박*민	대전광역시	2024-09-14 13:43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61	37다07**	박*민	대전광역시	2024-09-14 13:44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62	서울은평파71**	김*찬	서울특별시	2024-09-14 15:22	용산역앞교차로~전자상가입구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40000
163	278조83**	신*찬	경기도 남양주시	2024-09-14 16:33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164	87주50**	이*진	경기도 남양주시	2024-09-14 16:58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165	49구11**	황*분	서울특별시	2024-09-14 19:49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66	38로96**	안*희	서울특별시	2024-09-14 20:59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0000
167	49나46**	장*진	경기도 수원시	2024-09-14 21:26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68	15부21**	장*화	서울특별시	2024-09-14 21:27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69	15부21**	장*화	서울특별시	2024-09-14 21:28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70	경기32바45**	성*배	경기도 평택시	2024-09-14 22:02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71	45고78**	김*범	서울특별시	2024-09-14 22:08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72	30머13**	백*호	서울특별시	2024-09-14 22:18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73	54노91**	정*숙	대구광역시	2024-09-14 22:24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74	32주85**	송*영	경상남도 통영시	2024-09-14 22:40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역	잔액
175	서울31자71**	윤*권	경기도 파주시	2024-09-14 22:41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76	50너86**	윤*미	경기도 용인시	2024-09-14 22:53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77	131라62**	U*A*O*A*A*D*Z*F*R*I*I	충청남도 천안시	2024-09-14 23:09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78	52로13**	T*O*V*L*R*Y	경기도 안산시	2024-09-14 23:13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79	서울31바57**	김*철	경기도 고양시	2024-09-14 23:16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80	08두88**	강*화	서울특별시	2024-09-14 23:17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81	08두88**	강*화	서울특별시	2024-09-14 23:19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82	57도27**	김*종	서울특별시	2024-09-14 23:20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83	59고14**	서*환	경기도 고양시	2024-09-14 23:24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84	01조03**	박*영	서울특별시	2024-09-14 23:34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85	111보36**	동*아*티*식*사	충청남도 천안시	2024-09-14 23:36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86	27오96**	김*곤	경기도 고양시	2024-09-14 23:41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87	07고66**	전*안	서울특별시	2024-09-14 23:41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88	27오96**	김*곤	경기도 고양시	2024-09-14 23:42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89	서울31자34**	김*원	서울특별시	2024-09-14 23:48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90	06나87**	마*주	서울특별시	2024-09-14 23:50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91	55너20**	정*현	경기도 광주시	2024-09-15 00:04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92	33부94**	김*기	대구광역시	2024-09-15 00:11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93	68누08**	박*호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2024-09-15 00:12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94	35서59**	엘*웍*주*회*	서울특별시	2024-09-15 00:17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95	62조86**	Y*K*B*V*H*K*R*Y*R*A*H*I*O*U*L*	경기도 용인시	2024-09-15 00:19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96	54머23**	A*S*T*V*L*X*Y	서울특별시	2024-09-15 00:20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97	52나68**	양*헌	경기도 용인시	2024-09-15 00:21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98	43루18**	최*	서울특별시	2024-09-15 00:40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99	160오79**	박*옥	서울특별시	2024-09-15 00:45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역	잔액
200	153더73**	한*섭	경기도 수원시	2024-09-15 00:51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01	90거88**	방*태	서울특별시	2024-09-15 10:13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0000
202	183주99**	김*윤	경기도 용인시	2024-09-15 10:27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03	183주99**	김*윤	경기도 용인시	2024-09-15 10:28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04	328도22**	최*용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24-09-15 11:51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205	176노43**	정*희	인천광역시	2024-09-15 12:46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0000
206	53소66**	김*숙	인천광역시	2024-09-15 13:40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07	55고44**	최*문	경상남도 진주시	2024-09-15 17:25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208	58노06**	김*호	부산광역시	2024-09-15 18:13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느산부인과	전용차로 위반	50000
209	61버68**	(*)*려*엔*	광주광역시	2024-09-15 18:16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10	21두94**	박*일	서울특별시	2024-09-15 18:34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0000
211	251주33**	수*리항	서울특별시	2024-09-15 19:09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12	251주33**	수*리항	서울특별시	2024-09-15 19:11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13	59모63**	김*구	경기도 평택시	2024-09-15 21:01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14	서울38아34**	박*학	서울특별시	2024-09-15 21:38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15	13러67**	C*E*M*N	충청남도 당진시	2024-09-15 21:46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16	30구12**	송*규	경기도 광주시	2024-09-15 21:49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17	357오62**	백*경	경기도 화성시	2024-09-15 22:00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18	357오62**	백*경	경기도 화성시	2024-09-15 22:01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19	245주66**	J*N*H*N*X*U	경기도 오산시	2024-09-15 22:33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20	31러06**	남*희	경기도 용인시	2024-09-15 22:54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21	260구21**	김*돈	경기도 평택시	2024-09-15 22:59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22	51부96**	김*혜	경기도 용인시	2024-09-15 23:03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23	64가25**	두*알*지*식*사	경기도 성남시	2024-09-15 23:04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24	803보26**	(*)*이*래*	경기도 고양시	2024-09-15 23:05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역	잔액
225	경기31바35**	신*운*(*)	경기도 수원시	2024-09-15 23:08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26	03주43**	강*	서울특별시	2024-09-15 23:18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27	55저08**	서*성	경기도 화성시	2024-09-15 23:19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28	227라78**	강*성	경기도 안산시	2024-09-15 23:33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29	38모44**	승*철*주*회*	경기도 수원시	2024-09-15 23:56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30	38모44**	승*철*주*회*	경기도 수원시	2024-09-15 23:57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31	서울31바20**	류*현	경기도 의왕시	2024-09-16 00:07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32	서울31자89**	김*범	경기도 안양시	2024-09-16 00:16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33	64저08**	박*규	서울특별시	2024-09-16 00:16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34	57두95**	박*철	경기도 고양시	2024-09-16 00:17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35	285너35**	주*회*제*릭*	서울특별시	2024-09-16 00:24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36	서울32사16**	박*근	서울특별시	2024-09-16 00:25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37	23고71**	유*수	경기도 파주시	2024-09-16 00:33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38	47소77**	목*호	경기도 수원시	2024-09-16 00:36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39	62보06**	백*산	서울특별시	2024-09-16 00:38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40	30구12**	송*규	경기도 광주시	2024-09-16 00:42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41	06도45**	이*용	서울특별시	2024-09-16 00:43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42	30구12**	송*규	경기도 광주시	2024-09-16 00:43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43	06도45**	이*용	서울특별시	2024-09-16 00:44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44	54라23**	박*배	경기도 평택시	2024-09-16 00:50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45	서울31아65**	박*식	경기도 의정부시	2024-09-16 00:50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46	10노86**	W*Q*N*H*I	서울특별시	2024-09-16 08:22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0000
247	183저77**	주*회*자*	서울특별시	2024-09-16 10:44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48	303노18**	W*N*U*J*N	경기도 안성시	2024-09-16 12:44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49	14어95**	B*R*H*N*V*K*M*D*U*A*A*A*U*L*	경상남도 창원시	2024-09-16 12:44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50	68도01**	황*리	경상남도 진주시	2024-09-16 13:11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역	잔액
251	258무61**	김*주	경기도 안양시	2024-09-16 13:12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52	68도01**	황*리	경상남도 진주시	2024-09-16 13:13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53	68도01**	황*리	경상남도 진주시	2024-09-16 13:30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254	150조85**	김*양	인천광역시	2024-09-16 14:31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55	96조75**	류*곤	경기도 양평군	2024-09-16 14:35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느산부인과	전용차로 위반	50000
256	104하84**	(*)*터*라*즈*로*	서울특별시	2024-09-16 14:47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257	14어95**	B*R*H*N*V*K*M*D*U*A*A*A*U*L*	경상남도 창원시	2024-09-16 15:19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58	14어95**	B*R*H*N*V*K*M*D*U*A*A*A*U*L*	경상남도 창원시	2024-09-16 15:20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59	52두66**	M*M*R*Z*K*V*A*D*R*E*	경기도 평택시	2024-09-16 15:36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60	25수68**	최*호	울산광역시	2024-09-16 15:36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61	05러79**	김*희	경기도 남양주시	2024-09-16 20:47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느산부인과	전용차로 위반	50000
262	08라01**	박*용	서울특별시	2024-09-16 21:15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63	67조36**	Z*A*G*U*	서울특별시	2024-09-16 21:41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64	67조36**	Z*A*G*U*	서울특별시	2024-09-16 21:43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65	27루09**	정*석	서울특별시	2024-09-16 21:52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66	170조53**	정*채	서울특별시	2024-09-16 22:04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67	12누77**	한*노	전라남도 순천시	2024-09-16 22:26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68	324고71**	유*열	경기도 시흥시	2024-09-16 22:52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269	49더40**	D*K*T*Y*V*G*R	경기도 안산시	2024-09-16 22:57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270	65서79**	허*현	경기도 화성시	2024-09-16 23:00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71	65서79**	허*현	경기도 화성시	2024-09-16 23:01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72	111다10**	H*A*G*A*A*H	경기도 화성시	2024-09-16 23:01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273	서울31아84**	박*섭	서울특별시	2024-09-17 00:20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74	28모58**	이*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2024-09-17 00:26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역	잔액
275	300우53**	김*훈	전라남도 목포시	2024-09-17 00:45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76	48루24**	서*택	경기도 남양주시	2024-09-17 00:45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77	97소63**	김*훈	서울특별시	2024-09-17 07:07	번동초교~해모로아파트앞	전용차로 위반	50000
278	33나08**	한*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2024-09-17 07:08	오현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279	11고80**	추*정	인천광역시	2024-09-17 07:08	번동초교~해모로아파트앞	전용차로 위반	50000
280	365무29**	김*철	광주광역시	2024-09-17 07:17	번동초등학교~해모로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281	173가66**	박*진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2024-09-17 07:25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82	116도65**	황*란	경기도 남양주시	2024-09-17 07:27	오현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283	20소90**	사*법*국*수*스*연*회	경기도 양평군	2024-09-17 07:45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84	265더15**	조*숙	인천광역시	2024-09-17 08:24	홍은동 북한산 더샵아파트(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285	136두96**	정*자	경기도 시흥시	2024-09-17 09:08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전용차로 위반	50000
286	33거78**	김*환	경기도 수원시	2024-09-17 09:23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287	12오38**	최*섭	세종특별자치시	2024-09-17 10:21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0000
288	138오55**	김*화	경기도 성남시	2024-09-17 10:41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89	97서07**	N*R*N*E*E*J*M*Y*N	경기도 고양시	2024-09-17 10:49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90	97오01**	J*N*I*G*H*N*	경기도 화성시	2024-09-17 11:24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91	316소40**	전*곤	충청남도 공주시	2024-09-17 11:33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92	19오06**	임*빈	서울특별시	2024-09-17 11:56	고척동 구로성심병원 버스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293	20러53**	문*홍	경기도 안산시	2024-09-17 13:06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294	67도75**	박*경	경기도 수원시	2024-09-17 14:39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0000
295	서울광진자51**	김*배	서울특별시	2024-09-17 14:51	서울신답초교~동대문구청교차로방향	전용차로 위반	40000
296	89나62**	H*M*O*D*I*A*R*Z*A*A*D*L*A*I	인천광역시	2024-09-17 18:16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97	128호50**	(*)*일*트*	인천광역시	2024-09-17 19:07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역	잔액
298	128호50**	(*)*일*트*	인천광역시	2024-09-17 19:09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99	386거56**	S*L*A*B*O*L*Y*	경기도 평택시	2024-09-17 21:24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00	335더72**	원*영	서울특별시	2024-09-17 21:41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01	29무31**	최*	경기도 고양시	2024-09-17 23:41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02	서울31자13**	배*식	서울특별시	2024-09-17 23:49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03	17서93**	K*A*I*B*E*Z*F*R*E*A*I*B*E*I*H	인천광역시	2024-09-17 23:58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04	37오91**	김*우	경기도 안산시	2024-09-17 23:59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05	57고32**	곽*환	경기도 평택시	2024-09-18 00:08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06	40보31**	C*I*H*N*I	충청북도 청주시	2024-09-18 00:09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07	40보31**	C*I*H*N*I	충청북도 청주시	2024-09-18 00:10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08	27주06**	김*구	경기도 안산시	2024-09-18 00:10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09	서울31바95**	임*윤	서울특별시	2024-09-18 00:10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10	서울31바95**	임*윤	서울특별시	2024-09-18 00:11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11	36머71**	R*I*S*N*V*A*M*N	경상남도 밀양시	2024-09-18 00:12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12	64라28**	박*승	경기도 광주시	2024-09-18 00:15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13	20나89**	H*N*E*Z*E	충청남도 천안시	2024-09-18 00:26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14	149나38**	올*온*식*사	서울특별시	2024-09-18 00:34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15	57소18**	대*건*물*(*)	인천광역시	2024-09-18 00:45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16	52도94**	이*일	서울특별시	2024-09-18 02:09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0000
317	47누56**	김*일	서울특별시	2024-09-18 07:08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느산부인과	전용차로 위반	50000
318	46수01**	송*민	경기도 파주시	2024-09-18 07:20	번동초등학교~해모로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319	16나67**	A*R*S*A*A*S*O*O*I*H	충청남도 당진시	2024-09-18 08:36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20	145거66**	S*N*T*O	경상남도 김해시	2024-09-18 10:06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21	145거66**	S*N*T*O	경상남도 김해시	2024-09-18 10:08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22	59너84**	이*노	서울특별시	2024-09-18 11:37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역	잔액
323	59너84**	이*노	서울특별시	2024-09-18 11:39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24	서울32사90**	윤*언	경기도 부천시	2024-09-18 14:16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 위반	50000
325	38부31**	D*V*O*O*E*A*B*R*I*S*O*U*L*	충청남도 아산시	2024-09-18 14:17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26	335더96**	L*L*N*Z*E	경기도 평택시	2024-09-18 16:08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27	335더96**	L*L*N*Z*E	경기도 평택시	2024-09-18 16:11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28	서울31아12**	조*상	경기도 안양시	2024-09-18 16:33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느산부인과	전용차로 위반	50000
329	344고14**	주*회*라*팜	경기도 김포시	2024-09-18 18:35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전용차로 위반	50000
330	39버03**	J*N*E*G*I*	경기도 고양시	2024-09-18 20:23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31	39버03**	J*N*E*G*I*	경기도 고양시	2024-09-18 20:24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32	209누52**	김*우	부산광역시	2024-09-18 20:28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33	22무53**	주*회*해*	울산광역시	2024-09-18 21:11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34	89누49**	최*식	서울특별시	2024-09-18 21:52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35	63나79**	임*택	서울특별시	2024-09-18 22:19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36	35러47**	심*환	경기도 평택시	2024-09-18 22:25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37	178도31**	김*영	서울특별시	2024-09-18 23:34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38	180라38**	박*	서울특별시	2024-09-18 23:35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39	63주61**	유*오	경기도 화성시	2024-09-18 23:45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40	27더08**	(*)*식*장*	서울특별시	2024-09-18 23:54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41	27더08**	(*)*식*장*	서울특별시	2024-09-18 23:55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42	362무62**	백*효	경기도 용인시	2024-09-18 23:56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43	24루21**	전*식	서울특별시	2024-09-19 00:14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44	서울38아84**	정*철	서울특별시	2024-09-19 00:20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45	45다92**	진*	경기도 용인시	2024-09-19 00:29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46	37로49**	강*규	대전광역시	2024-09-19 00:36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47	서울32사31**	신*수	서울특별시	2024-09-19 00:48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48	12거24**	맹*숙	서울특별시	2024-09-19 00:50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역	잔액
349	273오62**	S*E*C*A*G*A*	서울특별시	2024-09-19 04:32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0000
350	272어47**	오*영	경기도 수원시	2024-09-19 07:16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51	13부03**	(*)*성*이*디	경기도 고양시	2024-09-19 07:1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52	94너65**	금*광	경기도 시흥시	2024-09-19 07:53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전용차로 위반	50000
353	71구79**	조*자	서울특별시	2024-09-19 08:35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60000
354	279너52**	임*희	서울특별시	2024-09-19 08:3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55	89부44**	김*열	경기도 안양시	2024-09-19 08:39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356	59조11**	문*호	서울특별시	2024-09-19 08:44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357	서울32자28**	정*화	경기도 광주시	2024-09-19 08:49	복정역~장지역	전용차로 위반	50000
358	103서41**	김*찬	경기도 의왕시	2024-09-19 08:49	복정역~장지역	전용차로 위반	50000
359	171거90**	김*택	경기도 성남시	2024-09-19 08:49	복정역~장지역	전용차로 위반	50000
360	115하21**	(*)*타*트*	충청북도 청주시	2024-09-19 09:20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361	40어55**	주*회*명*전*	경기도 화성시	2024-09-19 09:24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362	서울31바67**	김*휘	서울특별시	2024-09-19 09:24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363	경기84배13**	안*섭	경기도 의정부시	2024-09-19 09:4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364	29저59**	임*선	서울특별시	2024-09-19 09:44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365	390우93**	(*)*성*전*설	서울특별시	2024-09-19 10:11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66	390우93**	(*)*성*전*설	서울특별시	2024-09-19 10:36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67	81더60**	(*)*성*전*설	서울특별시	2024-09-19 10:36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68	32러97**	백*인	경기도 하남시	2024-09-19 11:05	올림픽로 서경빌딩	전용차로 위반	50000
369	27라56**	H*N*U*I*	경기도 오산시	2024-09-19 12:20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70	20고31**	고*국	서울특별시	2024-09-19 12:24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371	95머05**	황*영	경기도 김포시	2024-09-19 13:00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72	95머05**	황*영	경기도 김포시	2024-09-19 13:02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73	89로66**	김*배	경기도 이천시	2024-09-19 13:48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역	잔액
374	서울38아53**	김*헌	서울특별시	2024-09-19 14:03	윤중중학교앞	전용차로 위반	50000
375	03우42**	주*회*도*디*이*	경기도 광주시	2024-09-19 14:56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376	227로28**	서*교	서울특별시	2024-09-19 15:26	사당역~이수역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0000
377	서울32사71**	문*호	서울특별시	2024-09-19 15:57	청량리역 1번출구앞	전용차로 위반	50000
378	160거74**	안*민	서울특별시	2024-09-19 17:20	방화동 651-1	전용차로 위반	50000
379	서울31사59**	이*식	경기도 구리시	2024-09-19 17:2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80	87가06**	주*회*마*틴*트	경기도 안산시	2024-09-19 17:37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381	80누13**	(*)*스*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024-09-19 17:50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0000
382	68노01**	정*열	인천광역시	2024-09-19 18:19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383	15소35**	김*철	인천광역시	2024-09-19 18:30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0000
384	230저53**	조*률	서울특별시	2024-09-19 18:5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85	241나69**	주*회*지*이*씨	서울특별시	2024-09-19 18:55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86	52부19**	이*숙	서울특별시	2024-09-19 18:57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387	09거07**	고*만	서울특별시	2024-09-19 19:06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388	서울31사87**	한*희	경기도 양주시	2024-09-19 19:13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389	서울31사87**	한*희	경기도 양주시	2024-09-19 19:14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90	서울32아22**	박*홍	서울특별시	2024-09-19 19:29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91	86노87**	반*욱	경기도 의정부시	2024-09-19 19:41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0000
392	서울35바53**	이*우	경기도 안양시	2024-09-19 19:42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393	42오83**	박*동	경기도 안양시	2024-09-19 19:54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394	183주52**	J*N*E*Y*N	경기도 시흥시	2024-09-19 20:04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395	60주23**	(*)*로*오*텍	광주광역시	2024-09-19 20:18	노원구민회관교차로~중계근린공원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396	374거31**	에*치*지*주*회*	경기도 양주시	2024-09-19 20:21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97	139소66**	김*석	서울특별시	2024-09-19 20:25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398	68더17**	이*남	서울특별시	2024-09-19 20:28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역	잔액
399	31우94**	이*순	서울특별시	2024-09-19 20:31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00	86러93**	주*회*동*	경기도 남양주시	2024-09-19 20:48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01	42러67**	정*수	대구광역시	2024-09-19 23:43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전용차로 위반	50000
402	122오15**	홍*식	경기도 안산시	2024-09-20 04:59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403	29버22**	윤*자	서울특별시	2024-09-20 07:35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404	80도34**	주*회*지*창*시*템	서울특별시	2024-09-20 07:41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05	86다69**	박*수	서울특별시	2024-09-20 07:54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06	59주69**	이*환	서울특별시	2024-09-20 07:54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407	57머95**	추*은	경기도 고양시	2024-09-20 08:22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408	63오25**	P*A*L*N*F*N	경기도 의정부시	2024-09-20 08:58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09	35고62**	이*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2024-09-20 08:58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410	83수76**	송*길	서울특별시	2024-09-20 09:0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11	서울81배71**	김*형	서울특별시	2024-09-20 09:04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412	57러32**	김*육	경기도 부천시	2024-09-20 09:39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	전용차로 위반	50000
413	03버39**	박*길	서울특별시	2024-09-20 10:29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0000
414	81오89**	김*석	서울특별시	2024-09-20 10:29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0000
415	809주26**	민*만	경기도 동두천시	2024-09-20 10:33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0000
416	113어23**	L*N*U*Z*E	경기도 안양시	2024-09-20 10:53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417	51구54**	김*영	경상북도 칠곡군	2024-09-20 10:55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18	서울31자36**	최*태	서울특별시	2024-09-20 11:00	압구정로 한양3차아파트앞	전용차로 위반	50000
419	397보68**	양*현	경기도 수원시	2024-09-20 12:21	은천삼거리~서울대입구역	전용차로 위반	50000
420	82저35**	(*)*성*경*제	서울특별시	2024-09-20 12:39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21	33나16**	P*A*G*A*G*I*	서울특별시	2024-09-20 13:04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422	31보73**	강*호	경기도 남양주시	2024-09-20 14:05	상봉동 중랑역 가나안교회 건너편 GS25상봉사랑점	전용차로 위반	50000
423	15구17**	이*연	서울특별시	2024-09-20 15:01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역	잔액
424	22구75**	최*윤	서울특별시	2024-09-20 15:55	서울 관악구 봉천동 1693-39	전용차로 위반	50000
425	85부06**	김*창	서울특별시	2024-09-20 16:06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426	14우96**	김*기	경기도 남양주시	2024-09-20 16:15	상봉동 중랑역 가나안교회 건너편 GS25상봉사랑점	전용차로 위반	50000
427	377머88**	오*선	서울특별시	2024-09-20 16:50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0000
428	136노36**	L*C*U*G*A*G	충청남도 보령시	2024-09-20 17:04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	전용차로 위반	50000
429	169노60**	김*대	서울특별시	2024-09-20 17:27	공릉동 목예원(구리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430	41너02**	(*)*울*로*홀*스	서울특별시	2024-09-20 17:3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31	288저68**	정*호	경기도 시흥시	2024-09-20 17:38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432	156무30**	고*순	서울특별시	2024-09-20 17:40	뱅뱅사거리~우성아파트앞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0000
433	73라48**	이*주	서울특별시	2024-09-20 18:0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60000
434	서울31사51**	강*구	서울특별시	2024-09-20 18:25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435	64고02**	김*자	서울특별시	2024-09-20 18:26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436	서울32바33**	배*철	경기도 김포시	2024-09-20 18:28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437	09노42**	김*언	전라남도 장성군	2024-09-20 18:28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438	381루25**	티*스*코*레*션*식*사	서울특별시	2024-09-20 18:3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39	서울31아37**	김*진	서울특별시	2024-09-20 18:31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440	95거29**	양*승	서울특별시	2024-09-20 18:34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441	47너37**	김*숙	인천광역시	2024-09-20 18:38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442	서울31사60**	이*광	서울특별시	2024-09-20 18:54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43	25오34**	주*회*태*종*건*	경기도 오산시	2024-09-20 19:10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44	19우98**	김*욱	서울특별시	2024-09-20 19:12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45	227무54**	주*회*투*코*아	경기도 평택시	2024-09-20 19:16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446	58러99**	윤*석	경상남도 양산시	2024-09-20 19:3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47	34조57**	이*섭	서울특별시	2024-09-20 19:41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역	잔액
448	서울85자90**	정*춘	서울특별시	2024-09-20 19:46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49	236나61**	김*일	서울특별시	2024-09-20 19:4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50	39버12**	김*석	충청남도 아산시	2024-09-20 19:56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51	서울32자21**	강*준	서울특별시	2024-09-20 19:58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452	서울31아11**	이*준	서울특별시	2024-09-20 20:02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453	11모21**	강*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2024-09-20 20:04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54	178러61**	P*A*L*N*G*O	인천광역시	2024-09-20 20:07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455	서울32사70**	강*원	서울특별시	2024-09-20 20:14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56	63누04**	강*수	경기도 구리시	2024-09-20 20:23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457	서울35바64**	김*상	서울특별시	2024-09-20 20:2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58	05누80**	남*혜자	대전광역시	2024-09-20 20:30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459	서울31사78**	이*진	인천광역시	2024-09-20 20:36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460	243로83**	주*회*조*건*육	서울특별시	2024-09-20 20:38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61	66고43**	전*석	인천광역시	2024-09-20 21:56	말죽거리공원사거리~ 양재역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462	서울32사72**	박*귀	서울특별시	2024-09-21 01:35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463	14거73**	주*회*제*옘*프	경기도 오산시	2024-09-21 06:03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464	27두25**	M*N*Z*E*	충청남도 천안시	2024-09-21 11:42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65	71주44**	유*식	서울특별시	2024-09-21 12:12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60000
466	136도48**	B*L*A*S*M*U*S*D*O*T*E*E*	경기도 시흥시	2024-09-21 15:21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67	12무74**	지*민	서울특별시	2024-09-21 16:08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68	12무74**	지*민	서울특별시	2024-09-21 16:09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69	67마85**	주*회*피*씨*리*	경기도 용인시	2024-09-21 18:14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70	133저70**	이*모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2024-09-21 18:30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느산부인과	전용차로 위반	50000
471	서울31자45**	이*일	경기도 남양주시	2024-09-21 20:16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느산부인과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역	잔액
472	47도53**	장*호	서울특별시	2024-09-21 21:24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느산부인과	전용차로 위반	50000
473	경기92바68**	이*만	경기도 평택시	2024-09-22 11:36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0000
474	70소81**	(*)*성	경기도 성남시	2024-09-22 13:53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 위반	60000
475	67보53**	서*원	인천광역시	2024-09-22 15:29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76	199누99**	구*이반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24-09-22 19:59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77	72두26**	노*남	서울특별시	2024-09-22 19:59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60000
478	65러29**	주*회*오*가*앤*	세종특별자치시	2024-09-22 22:09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과태료 부과처분 관련 의견제출서 제출 안내

- 귀하의 차량이 전용차로 통행 위반으로 단속되어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임을 통지하며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요의견제출 대상(**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준거**)

구 분	증 빙 서 류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기관장확인서(해당 기관 공문)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공사계약서, 기관장 확인서(해당 기관 공문)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병명이 기재된 응급환자 진료확인서(의료기관 발행)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기관장확인서(해당 기관 공문)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 가능한 증빙서류

- 의견제출서는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여 의견제출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의견을 심의하여 결과를 별도 통보하여드립니다.
- 의견제출서는 앞면의 우편물 발송기관 주소 또는 팩스로 발송하거나,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팩스 제출 시 수신여부 확인)
-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https://cartax.seoul.go.kr)를 통해서 방문 없이 의견제출서를 바로 작성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의견제출 항목은 증빙서류의 적정여부 및 관련 법에 의한 운전자 의무(조치)사항 이행여부도 심의대상이 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3급), 미성년자는 의견 제출기한 내에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과태료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동차 공동명의자 중 일부만 감경대상인 경우,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과태료 감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의견제출서 작성 서식(예시)

의 견 제 출 서

차 량 번 호	위 반 일 시	위 반 장 소
○○가○○○○	○○○○년 ○○월 ○○일 ○○시 ○○분	○○로 ○○길 ○○주변 ○○○○앞

- 제출의견 기재 : (단속된 사안 및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 제출자 성명 : ○○○ - 제출자 주소 : ○○시 ○○구 ○○로 ○○, **상세주소 입력** - 제출자 전화번호 : ○○○-○○○○-○○○○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납부 안내

-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면 앞면에 기재된 입금계좌 또는 은행 창구·ATM기, 이택스(https://etax.seoul.go.kr)에서 의견 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해당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부과된 과태료는 납부기한 경과시 첫달에 3%의 가산금이 붙고 이후 1개월마다 1.2% 가산금이 60개월 동안 가산되어 최고 75%까지 가산된 과태료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차 종	이 륜 자 동 차	승 용 자 동 차	승 합 자 동 차
과태료	40,000원	50,000원	60,000원
체납시 최대 과태료	70,000원	87,500원	105,000원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임대자동차 운행자정보 제출 안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 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자동차만을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에 임대한 자동차의 운행자 정보를 과태료 부과기관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 문서24(https://docu.gdoc.go.kr)를 통해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차량임대계약서 사본, 기타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면허증 사본 등)
- 의견진술 기한까지 자동차 운행자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차 대여사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3036호

도시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하수도(하수종말처리장)]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108호(1975.6.23.)호로 결정되고, 건설부고시 제54호(1984.2.24.)로 인가된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 실시계획(변경) 작성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에 비치되었으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하오니 본 열람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02-2133-38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사업내용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3길 64 (중랑물재생센터)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환경기초시설[하수도(하수종말처리장)]
   - 명 칭 :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2-1단계)
3. 사업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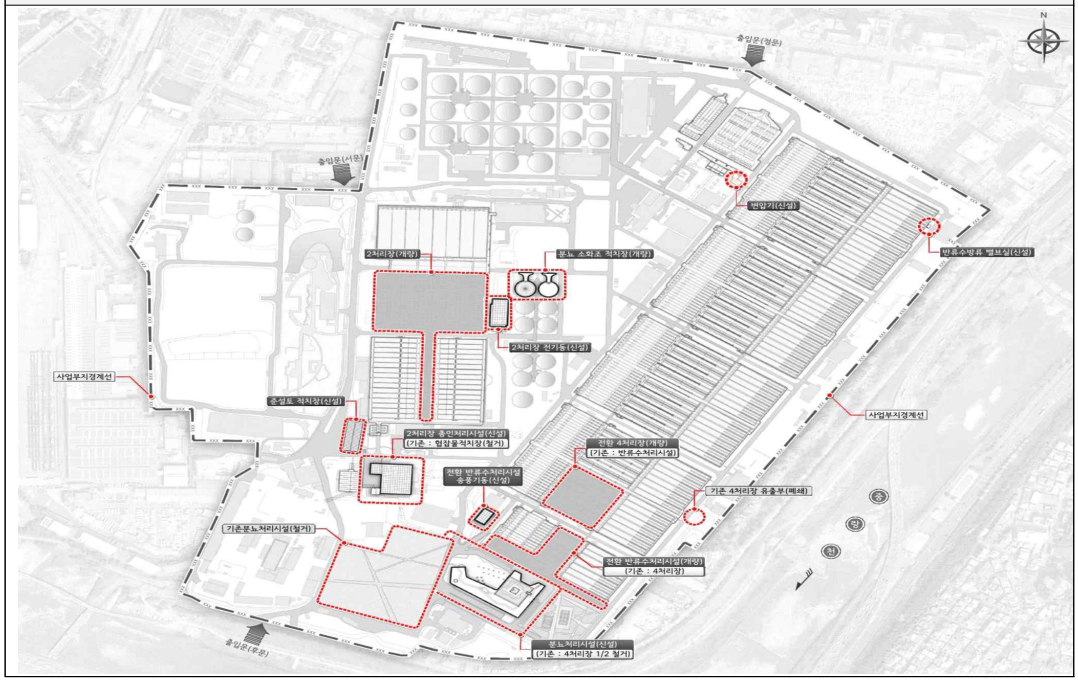
구 분	개 량			신 설			철 거
	2처리장	전환 4처리장	전환 반류수 처리시설	총인 및 소독시설	적치장	탈취기	기존 건축물 철거
당 초	25만㎥/일	10만㎥/일	2.82만㎥/일	-	1,500㎡	400㎥/분	6,034.88㎡
변 경	37만㎥/일	11.5만㎥/일	4.1만㎥/일	25.2만㎥/일	1,820㎡	6,010㎥/분	-
기 타	-	기존 반류수 처리시설 개량	기존 4처리장 개량	-	기존시설 이설 및 신설	기존시설 이설 및 신설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24년 12월 ~ 2032년 10월
6.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02-2133-3823)
7.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Ⅱ.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별첨
Ⅲ. 지장물(건축물)조서 : 별첨

참고사항. 시설물 계획평면도

시설물 계획 평면도



참고사항.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이력사항

구 분	고시번호	부지면적 (토지형질변경)
최초결정고시	건설부고시 108호(' 75.6.23.)	441,313㎡
시설확장	건설부고시 84호(' 83.3.14.)	730,955㎡
하수처리 용량증설	서울특별시고시 제48호(' 93.02.)	800,804㎡
폐기물처리시설 신설	서울특별시고시 제326호(' 01.10.15.)	794,493㎡ (감 6,311)
공공청사 신설	서울특별시고시 제377호(' 03.11.9.)	782,593㎡ (감 11,900)
하수종말처리시설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55호(' 10.2.25.)	784,434㎡ (감 1,841)
재활용시설 신설	서울특별시고시 제153호(' 14.4.24.)	766,728㎡ (감 14,314)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3044호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제29조 제3항에 따라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를 처리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폐업 신고사항

신 고 인					변 경 내 역		
연번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구분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1	짱가 인셀덤	서울 후 제1360호	장은미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45길 27, 11동 703호(방배동, 삼호아파트)	소재지 ('24.10.8.)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205, 6+동 지하1층 2호 (잠원동, 반포쇼핑타운)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45길 27, 11동 703호 (방배동, 삼호아파트)
2	마마제인 (Mama Jane)	서울 후 제2600호	한정규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1203호 (공덕동, 롯데캐슬 프레지던트 A)	소재지 ('24.8.26.)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 142, 4층 402호(노고산동, 신촌GNP, NINE)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1203호 (공덕동, 롯데캐슬 프레지던트 A)
3	인셀덤 흥인동점	서울 후 제2823호	이춘염	서울시 중구 다산로47길 21, 2층 201호(흥인동)	소재지 ('24.9.26.)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47길 21, 2층 (흥인동)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47길 21, 2층 201호(흥인동)
4	더뷰티 (The Beauty)	서울 후 제2908호	최미영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34나길 36, 101호(방배동, 신호나이스아파트)	소재지 ('24.10.16)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로 41-1, B동 102호 (영화동, 명륜빌라)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34나길 36, 101호(방배동, 신호나이스아파트)
5	더차밍 인셀덤	서울 후 제2572호	박덕경	서울시 강남구 자곡로3길 21, 501동 327호(자곡동, 엘에이치강남힐스테이트)	폐업 ('24.10.18)		
6	주식회사 에코프렌	서울 제928호	맹상열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15, 3층 (서초동, 서초중앙빌딩)	폐업 ('24.10.22.)		
7	㈜오휘구로 디지털점	서울 후 제617호	손영숙	서울시 관악구 조원로 11, 2층(신림동, 상승빌딩)	폐업 ('24.10.30.)		
8	유니베라 대림대리점	서울 후 제408호	박경자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 153(대림동)	폐업 ('24.10.3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민원담당관(☎ 02-2133-7917) 또는 공정경제과(☎ 02-2133-53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3045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3조에 따라 조합 설립인가 취소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고 조합 사업장폐쇄 및 대표자 연락두절,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인해 우편송달이 불가한 조합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에 따라 청문조서의 열람·확인 관련 사항을 통지하오니 희망하시는 청문 당사자(대표자)께서는 기한 내 청문조서를 열람·확인 및 정정 신청바랍니다.

2024년 11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청문 당사자(조합)

연번	인가번호	조합명	조합 소재지	대표자	청문사유
1	서울특별시 제2004-3호	다모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205, 3층(원효로2가, 고당빌딩)	김종성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정지
2	서울특별시 제2012-9호	휴먼의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113, 2층 1호	백난미	

2.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5층 공정경제과

3. 열람·확인 및 정정기간 : 2024. 11. 29.(금)까지

4. 관련법령
   ㅇ 「행정절차법」 제34조(청문조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청문조서의 열람 등)

5.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정경제과(담당자 ☎02-2133-536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 <개정 2022. 7. 11.>

청문조서 정정요구서

예정된 처분의 제목		
청문조서 열람확인의 일시 및 장소		
당사자	성 명(명칭)	
	주 소	
청문조서의 정정대상 내용		
정정 요구의 내용		
기 타		

「행정절차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청문조서의 정정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당사자등 성명 (서명 또는 인)

※ 행정청에 문서로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3047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 · 양수 및 법인합병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양도 · 양수 및 법인합병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보통신공사업의 양도 · 양수 및 법인합병 등록 내역(10월)

연번	구분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등록일자	비고
1	양도인	112643	경림이엔씨(주) 정은희 160111-0252330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36번길 21-8, 비동 706호(다산동, 트윈타워)	'24. 10. 23.	분할합병
	양수인	-	주식회사 일조이에스 박상권 110111-4329143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69-23, 가산모비우스타워 공장동 1101-9호, 비202-19호 (가산동)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7조(공사업의 양도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공사업 양도의 신청 등)

3.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과 ☎ 02-2133-1867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3049호

공인등록(청인) 공고

서울특별시공인조례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의거하여, 공인 등록(청인)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공인등록(청인)

○ 공인등록 사유 : 소방공무원 임용령(22조의 2 임용심사위원회), 개정에따른 청인 등록

○ 최초 사용일자 : 2024.12.01

○ 공인등록 내용

공 인 명	규 격	인 영	전자이미지 인영
강동소방서임용심사위원회인	3.6㎝×3.6㎝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3057호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예고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8조 내지 제12조 규정에 따라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 본 사업은 기존 사업시행자와의 실시협약 중도해지에 따라 새로운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임
○ 사업구간 :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북한산우이역)~동대문구 신설동(신설동역)
- 본선 11.4km, 정거장 13개소, 차량기지 1개소
○ 사업기간 : 실시협약 체결 시 ~ 2047.9.1.
○ 사업방식 : BTO-MCC(최소비용보전방식)
○ 총민간투자비 : 2.805억 원
※ 실제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날짜에 따라 변동 가능

2. 주요 내용
○ 본 사업 추진계획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 : 2024.12월(예정)
- 실시협약 체결 : 2024.12월(예정)
○ 실시협약안 : 붙임

3. 의견 제출
○ 이 실시협약 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11.2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도시철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철도과(전화 : 02-2133-4357, FAX : 02-2133-1076, E-mail : sugarpoint24@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의 대한 의견(구체적 이유 포함)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처
- 우편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과(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E-mail : sugarpoint24@seoul.go.kr
※ 우편은 2024.11.27.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붙임 실시협약안 1부. 끝.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SEOUL MY SOUL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실 시 협 약 (안)

2024. 12. 00.

서 울 특 별 시

우이신설도시철도 주식회사

목 차

전 문

제 1 장 총 칙 ····· 1
제 1 조 (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 ····· 1
제 2 조 (정의) ····· 1
제 3 조 (문서의 우선순위) ····· 12
제 4 조 (협약의 해석) ····· 13

제 2 장 기본약정 ····· 14
제 5 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 14
제 6 조 (사업시행자의 권리) ····· 14
제 7 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 15
제 8 조 (소유권 귀속 및 협약기간) ····· 16
제 9 조 (관리운영권 설정 및 법적효과) ····· 16
제 10 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등) ····· 17
제 11 조 (총민간투자비 및 주무관청의 지급사항) ····· 17
제 12 조 (관리운영위탁계약) ····· 18
제 13 조 (협약의 성실이행) ····· 19

제 3 장 관리운영 ·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 20

제 14 조 (관리운영비) ····· 20

제 14 조의 2 (관리운영비의 재산정) ····· 21

제 14 조의 3 (관리운영비 외의 추가 비용 요구) ····· 23

제 15 조 (관리운영 ·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 및 보고) ····· 24

제 16 조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계획) ····· 26

제 17 조 (인계인수) ····· 27

제 18 조 (노후시설에 대한 대체투자) ····· 29

제 19 조 (비상대응계획 및 안전관리규정) ····· 31

제 20 조 (철도안전관리체계 등) ····· 31

제 21 조 (보험가입) ····· 32

제 22 조 (운영실적의 제출) ····· 33

제 23 조 (우이신설 연장구간의 운영) ····· 33

제 24 조 (지체상금) ····· 34

제 4 장 재원의 조달 및 자금재조달 ····· 34

제 25 조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 ····· 34

제 26 조 (초기운영비) ····· 35

제 27 조 (자금재조달) ····· 35

제 28 조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 ····· 36

제 5 장 수익률 및 운영수입에 관한 사항 ····· 37

제 29 조 (사업수익률) ····· 37

제 30 조 (운임의 결정 및 징수) ····· 38

제 31 조 (운임의 정산) ····· 39

제 32 조 (부속사업) ····· 39

제 33 조 (부대사업) ····· 40

제 6 장 주무관청의 지원에 관한 사항 ····· 41

제 34 조 (주무관청의 비용보전) ····· 41

제 35 조 (비용보전금액의 청구 및 지급) ····· 41

제 36 조 (초과수입의 환수 및 사용) ····· 42

제 37 조 (총민간투자비의 조기 지급 및 상각) ····· 43

제 38 조 (행정적 지원) ····· 44

제 39 조 (사업부지의 점유권) ····· 44

제 7 장 권리의 처분 및 변경 ····· 45

제 40 조 (권리 · 의무의 양도 및 담보의 제공) ····· 45

제 41 조 (출자자 및 출자지분의 변경) ····· 46

제 8 장 주무관청의 감독에 관한 사항 ····· 46

제 42 조 (주무관청의 감독 · 명령) ····· 46

제 43 조 (시의회 보고 등) ····· 48

제 9 장 성과의 점검 · 평가에 관한 사항 ····· 48

제 44 조 (성과의 측정 · 보고) ····· 48

제 45 조 (성과의 점검) ····· 49

제 46 조 (성과의 평가) ····· 50

제 47 조 (성과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 50

제 10 장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 ····· 52

제 48 조 (위험배분의 원칙) ····· 52

제 49 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 52

제 50 조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 53

제 51 조 (불가항력사유 및 그 처리) ····· 54

제 52 조 (불가항력사유로 인한 청구 및 이의신청) ····· 56

제 11 장 협약의 종료 ····· 58
제 53 조 (기간만료로 인한 협약의 종료) ····· 58
제 54 조 (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 ····· 60
제 55 조 (기간만료 또는 중도해지에 따른 일반규정) ····· 62
제 56 조 (해지시지급금) ····· 64
제 57 조 (해지시지급금의 지급) ····· 65
제 58 조 (매수청구권) ····· 66
제 59 조 (기간만료, 중도해지 및 매수청구시 선관의무) ····· 67
제 60 조 (지연이자) ····· 67
제 61 조 (상계) ····· 67

제 12 장 분쟁의 해결 ····· 68
제 62 조 (분쟁의 해결) ····· 68
제 63 조 (분쟁금액) ····· 68
제 64 조 (중재) ····· 69

제 13 장 기타사항 ····· 69
제 65 조 (민원처리) ····· 69
제 66 조 (협약의 변경) ····· 70

제 67 조 (협약의 수익자) ····· 71
제 68 조 (지식재산의 취득 및 사용) ····· 71
제 69 조 (회계장부 · 재무보고서와 기록유지) ····· 72
제 70 조 (수요활성화 노력) ····· 73
제 71 조 (자금차입 등과 관련한 주무관청의 협조) ····· 73
제 72 조 (주무관청의 협약준수 의무) ····· 74
제 73 조 (일부무효) ····· 74
제 74 조 (완전합의) ····· 74
제 75 조 (비밀유지) ····· 75
제 76 조 (준거법) ····· 76
제 77 조 (통지) ····· 76
제 78 조 (언어) ····· 77
제 79 조 (협약의 효력) ····· 77

부 록

부록 1. 본 사업의 개요 ····· 80
부록 2. 출자자 ····· 81
부록 3. 총민간투자비 ····· 82
부록 4. 관리운영비 ····· 85

부록 5. 대체투자 ····· 86
부록 6. 보험가입 ····· 91
부록 7. 부속사업 ····· 92
부록 8. 해지시지급금 ····· 93
부록 9. 재무모델 ····· 94
부록 10. 성과요구수준서 ····· 95
부록 11.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요령 ····· 111
부록 12. 초기운영비 ····· 114

전 문

1. 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를 포함하며, 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와 우이신설경전철 주식회사(이하 “기존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서울 동북부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민간투자사업을 통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2009. 4.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 실시협약」(이하 “기존 실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9. 2. 우이신설선을 개통하였다.

2. 이후 기존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은 사업재구조화를 추진하였으나 그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이에 2023. 3. 16. 주무관청이 신규 사업시행자와 신규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날 기존 실시협약을 해지하되 2024. 6. 30.까지 신규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기존 실시협약을 2024. 7. 1.자에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는 합의를 하였으며, 그 합의에 따라 2024. 7. 1. 기존 실시협약은 해지되었다.

3. 주무관청은 신규 사업시행자의 모집을 위해, 2023. 12. 7.자로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고, 본 사업에 대해 2024. 4. 18.자로 우이신설도시철도 주식회사(이하 “사업시행자”라 하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를 통칭하는 경우 “협약당사자들”, 개별로 칭하는 경우 “협약당사자”라 한다)를 본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을 진행하여 본 실시협약의 체결에 이르렀다.

4.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및 사업시행자의 출자(예정)자들은 본 사업의 공공성을 깊이 인식하고 상호 신뢰의 바탕 위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2024. O. O자로 다음과 같이 실시협약(이하 “본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

① 본 협약은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에 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사업의 범위, 본 사업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부록 1. 본 사업의 개요]와 같다.

제2조 (정의)

본 협약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월 : 어느 역월의 특정 일자에 시작하여 해당 역월의 그 숫자의 상응일자에 종료하는 기간을 말함. 다만, 해당 역월에 숫자상으로 상응하는 날이 없는 경우 위 기간은 해당 역월의 최종일에 끝나는 것으로 함. 개월의 산정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표준시를 기준으로 함.

2. 경미한 사업 : 민간투자법 제14조 제4항의 단서에 따라 주무관청이 인정한 사업을 말함.

3. 계열회사 : 사업시행자 또는 그 지분을 소유한 자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의한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다

만, 대한민국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의 국외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4. 관계기관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제세공과금 부과 등 행정절차 또는 행정규제의 방식으로 사업시행자의 업무수행에 합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를 의미함.

5. 관리운영권 :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으로 정한 기간 동안 본 사업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고 유지·관리하여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민간투자법 제26조에 의한 권리를 말함.

6.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민간투자법 제26조 및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운영하면서 시설사용자로부터 운임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함.

7.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계획 :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계획을 말함.

8. 관리운영비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대수선(본조 제15호의 대체투자 제외), 차량의 유지·관리 및 안전운행을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 유지관리비, 제경비 등으로서, [부록 4. 관리운영비]에 기재된 금액을 말함.

9. 관리운영수탁자 : 사업시행자로부터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자를 말함.

10. 관리운영위탁계약 :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수탁자에게 본 사업시설의 관

리운영 및 유지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11. 금융약정 : 총민간투자비 등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주단과 체결한 자금차입계약을 말하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자금차입계약의 변경계약이나 자금차입계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자금차입계약을 포함함.

12. 기준이자율 : 그 산정시점(기준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할 기간의 기산일을 의미한다)의 직전 1개월 동안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신용평가등급 AA-인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의 최종호가 유통수익률을 산술평균한 율을 말함. 다만,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함. 만약, 신용등급이 AA-인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이 고시되지 않는 경우 차하위등급의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이 고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만기가 3년 이상인 회사채 중 3년에 가장 가까운 만기를 가진 회사채의 유통수익률로 대체함. 만약,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을 기준이자율로 사용하며,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협약 제12장(분쟁의 해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함.

13. 대주(단) : 금융약정상의 당사자가 되거나 권리를 가지는 금융회사 등을 말하며, 그로부터 금융약정에 따른 대출채권을 양수하고 이에 수반하여 금융약정상 대주로서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와, 재무적 투자자 중 대출을 하는 재무적 투자자를 포함함.

14. 대지급(금) :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설정 받기 위하여 주무관청이 기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해지시지급금

중 일부를 주무관청을 대신하여 기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대지급이라 하고, 그 대지급하는 금원을 대지급금이라고 함.

15. 대체투자 : 일상적인 점검, 정비, 보수, 보강이 아닌,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과 철도시설물에 대한 재투자로서,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의 시설물 및 장비의 규모 및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대체투자 계획을 수립한 후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받은 재투자를 말하며, 그 범위는 [부록 5. 대체투자]로 정하는 바와 같음.

16. 도시철도법 : 대한민국 법률 제19987호, (2024. 1. 9.) 도시철도법을 의미하며, 그 개정의 경우를 포함함.

17. 매수청구권 : 민간투자법 제59조(매수청구권의 인정)에 따른 매수청구권을 말함.

18. 민간투자법 : 대한민국 법률 제20409호(2024. 3. 2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말하며, 그 개정의 경우를 포함함.

19.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민간투자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협약체결일 이전 가장 최근에 기획재정부가 공고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말하며, 그 개정 및 타 법령으로 대체되는 경우를 포함함.

20.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 민간투자법 제44조의3에 따른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를 말함.

21. 반기 : 해당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 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22. 법령 : 본 사업과 관련된 대한민국정부의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말함.

23. 법령 등 : 법령 및 협약체결일 현재 효력을 가지는 본 사업 관련된 정부의 고시, 지침, 훈령, 계획 및 서울특별시의 조례 및 자치법규, 기타 지침 등을 말함.

24. 보조금 : 민간투자법 제53조 및 관련 법령 등과 본 협약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무상환의 보조금을 말함.

25. 본 사업 : 본 협약에서 제시하는 우이-신설 도시철도 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을 말하며, 본 협약 제1조(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에 의하여 특정된 본 사업시설의 운영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을 말함.

26. 본 사업부지 : 본 협약에서 특정되는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부지(토지, 공유수면, 수로, 지표, 지상 및 지하를 포함함.)를 말함.

27. 본 사업시설 : 본 협약에서 제시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우이-신설 도시철도 시설 일체를 말하며, 그 상세 내역은 [부록 1. 본 사업의 개요]에 기재된 바와 같음.

28. 본 협약 :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에 사업시행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실시협약으로, 본 실시협약(부록 포함)을 말하며, 그 수정, 변경, 개정된 내용을 포함함.

29. 부대사업 : 민간투자법 제2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사용자의 편익증진에 연관되고 본 사업의 시행지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을 말함.

30. 부대사업수입 : 사업시행자가 부대사업을 통하여 얻는 수입을 말함.

31. 부속사업 : 철도시설의 운영사업 외에 본 사업시설을 활용하여 일반사용자를 대상으로 시설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비 중 일부를 회수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하며, 민간투자법 제1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업을 포함함.

32. 부속사업수입 : 사업시행자가 부속사업을 통하여 얻는 수입을 말함.

33. 부속시설 : 본 사업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되는 시설로서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주무관청에 귀속되는 시설을 말함.

34. 분기 : 해당연도의 1월 1일부터 3월 31일 또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 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 또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35. 비용보전금액 : 운영기간 중 실제 운영수입이 본 협약상 관리운영비에 미달하는 경우 주무관청이 그 부족분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36. 사업계획서 : 본 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신청자가 본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단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등의 제반 서류를 말함.

37. 사업수익률 : 총민간투자비에 대한 수익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금리를 말함.

38. 사업시행자 : 민간투자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주무관청과 본 협약을 체

결하여 본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함.

39. 소비자물가지수 : 통계청이 통계청 홈페이지의 국가통계포털을 통하여 공표하는 지수로서 당해 시점이 포함된 월의 전 도시 소비자 물가지수를 말함. (통계청이 지수 산정방식을 개편하는 경우, 개편 시점이 속하는 기간부터 개편된 지수를 적용함.) 전 도시 소비자 물가지수가 현재의 방식으로 더이상 공시되지 않는 경우 협약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다른 지수로 대체함.

40.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 : 2023년 1월 1일의 소비자물가지수를 100으로 하고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의 계산기준이 되는 시점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비교 환산하여 산출한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분을 말함.

41. 영업일 : 대한민국 은행(들)이 일반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함.

42. 외화 : 해당시점의 원화를 제외한 대한민국의 법령이 인정하는 외국의 통화를 말함.

43. 운영개시기한일 : 협약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말함. 단, 제24조(지체상금)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을 말함.

44. 운영개시일 : 관리운영권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의 시설물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고, 도시철도 운송사업 면허 취득 및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등 관계법령에 따른 운영관련 절차를 완료한 후, 영업운전을 실제로 개시하는 날을 말함.

45.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가)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시설

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과 (나) 총민간투자비 지급 및 상각 예정 잔액이 0원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을 말함.

46. 운영수입 : 사업시행자에게 발생하는 본 사업시설의 사용자들로부터 받는 운임수입, 부속사업수입,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합의한 부대사업수입(있는 경우), 초과운영수입을 당해 분기 이후 분기에 관하여 발생할 비용보전금액의 이행에 충당하기로 한 경우 초과 운영수입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수입, 보험금 중 보험의 목적으로 충당하고 남은 금액 및 그 밖에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얻은 모든 수입을 말함.

47. 운영연도 : 운영기간 중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다만, 최초 운영연도는 운영개시일로부터 당해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최종 운영연도는 협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협약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함.

48. 운임 :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부속사업을 위한 시설은 제외한다)의 사용자에게 징수하는 금전적 대가를 말함.

49. 운임수입 : 본 사업 운영에 따라 운행하는 차량을 이용하는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운임에 따른 수입을 말함. 사업시행자가 징수하는 운임의 총액에서 제3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수료나 비용(연락운임정산금, 교통카드 정산수수료 등)은 제외함.

50. 유지보수 : 본 사업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원활한 교통과 시설물 사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본래의 정상적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보수하며, 시간경과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의미하며, 대체

투자는 제외함.

51. 인 · 허가 등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요구되어 정부, 주무관청 그 밖의 관계기관이 행하는 허가, 동의, 인가, 승인, 승낙 등을 말함.

52. 자금재조달 : 본 협약(변경실시협약 포함)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출자자 지분, 자본구조,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정의된 바와 같음.

53.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 : 민간투자법령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공표하는 자금재조달에 관련된 세부사항들에 대한 지침을 말함.

54.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 사업시행자가 자금재조달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대이익증가분을 주무관청과 일정비율로 공유하는 것을 말하며, 그 정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정의된 바와 같음.

55. 자금차입 :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에 필요한 타인자본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행위를 말함.

56. 자기자본(출자금) :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에 필요한 납입자본금으로 출자한 자기자본 납입액에서 유상감자 금액을 제외한 순액(출자금 납입액 잔존가액)을 말함.

57. 재무적 투자자 : 배당과 원리금 수익을 목적으로 본 사업에 투자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함.

가. 기관투자자 : 민간투자법 제2조 제17호 각 목에 따른 자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에 따른 기금운용법인

나. 기설립 집합투자기구(민간투자법에 따른 투융자회사 및 투융자신탁을 포함함)

다. 설립예정 집합투자기구(민간투자법에 따른 투융자회사 및 투융자신탁을 포함함)

58. 재정지원 :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법 제53조에 따라 본 사업을 위하여 제공하는 보조금 또는 장기대부를 말함.

59. 전문기관 : 어떤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 전문성(이하 “전문성”이라 한다)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으로서,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함. 단, 관련 법령 등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출연 또는 보조받아 설립된 기관 또는 법인이나, 해당 업무에 관련된 법률에 근거하여 인증 등을 받은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함.

60. 제세공과금 : 관련 법령에 따라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 공과금과 각종 부담금을 말함.

61. 주무관청 : 본 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서울특별시장(권한을 위임받은 자 포함)을 말함.

62. 지식재산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이용권한을 부여받은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라이선스 및 기타 모든 지식 재산을 의미함.

63. 지장물 : 본 사업시설의 운영 등의 시행을 방해 또는 지연시키는 유형물

로서 수중, 지상 또는 지하의 유형물을 말함.

64. 차량 : 운행에 소요되는 열차(예비편성, 예비품, 시험기 포함)를 말함.

65. 초기운영비 : 본 사업 초기 운영안정화를 위해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합의하여 정한 금원을 말함.

66. 총민간투자비 : 본 사업의 관리운영권 설정의 조건으로 사업시행자가 기존 사업시행자에게 대지급하는 금액으로 제11조(총민간투자비 및 주무관청의 지급사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말함.

67. 총민간투자비에 대한 수익금 : 총민간투자비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직전 분기 말까지 지급 및 상각되고 남은 총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을 당해 분기의 초일부터 당해 분기의 말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곱한 금액을 말함. 다만, 협약체결일이 속하는 분기에는 협약체결일부터 당해 분기 말일까지의 기간 동안, 관리운영권 만료일(해지일)이 속하는 분기에는 당해 분기의 초일부터 관리운영권 만료일(해지일)까지의 기간 동안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함.

68. 총민간투자비 지급 및 상각 예정액 : 어느 특정 분기의 직전 분기 말의 총민간투자비에서 해당 분기에 지급 및 상각되어야 할 금액을 말함.

69. 출자자 :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출자하는 당사자를 말하며, 최초 출자자 및 그의 적법한 포괄승계인 및 특정승계인을 포함함

70.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기산하여 (가)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과 (나) 총민간투자비 지급 및 상각 예정 잔액이 0원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을 말함.

71. 협약당사자(들) : 본 협약의 당사자로서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를 말함.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를 통칭하는 경우 “협약당사자들”, 개별로 칭하는 경우 “협약당사자”라 함.

72. 협약체결일 : 본 협약의 체결일을 말함.

73. 후순위 주주차입금 : 회사가 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지급불능 등 파산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당해 후순위차입금 이외의 다른 모든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본 사업의 출자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이나 회사채 등을 말함.

제3조 (문서의 우선순위)

① 본 협약과 본 협약에서 언급된 기타 서류들은 본 협약에 달리 표시되지 않는 한 본 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그 전에 협약당사자간에 이루어진 모든 의사표시 또는 합의에 우선한다.

② 본 협약과 본 협약에서 언급된 기타 계약이나 서류들 사이에 상충되는 내용이 존재하는 경우, 본 협약의 내용이 우선한다.

③ 본 협약을 구성하는 문서들의 해석상 모호함 또는 불일치 점이 있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이러한 모호함 또는 불일치점을 협의에 의해 해결한다.

1. 민간투자법
2. 민간투자법 시행령
3. 시설사업기본계획

4.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4조 (협약의 해석)

문맥상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협약은 다음 각 항을 기준으로 해석된다.

① 본 협약상 모든 계약 및 협약에 대한 언급은 그의 수정 및 변경을 포함한다. 본 협약상 법령 등에 대한 언급은 본 협약체결일 현재 효력을 가지는 법령 등을 말하며, 그 개정 및 타 법령 등으로 대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본 협약상 단수 형태의 언급에는 복수 형태의 언급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③ 본 협약을 해석할 때 각 조항의 표제는 편의상 기재한 것일 뿐이어서, 계약의 일부가 아니며 해석상 기준이 될 수 없다.

④ 본 협약상 “포함한다” 및 “포함하여”는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않음”으로 해석한다.

⑤ “등”이라 함은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또한 “유사한” 또는 “관련되는 사항”을 포함한다.

⑥ 본 협약에서 조, 항, 호, 표, 별표, 부록 또는 별첨이 언급될 때에는, 명백히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본 협약에 들어 있는 조, 항, 호, 표, 별표, 부록 또는 별첨을 의미한다.

⑦ 협약당사자, 채권금융기관, 기타 본 협약상 어느 당사자에 대한 언급은 그들의 승계인 또는 양수인을 포함한다.

⑧ 본 협약상 주무관청에 대한 언급은 주무관청이 그 권한을 하부 행정기관 또는 제3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 그 권한을 수임 또는 수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제 2 장 기 본 약 정

제5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동법 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본 협약에 따라 우이신설도시철도 주식회사를 본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

제6조 (사업시행자의 권리)

① 주무관청은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및 권한과 권리를 설정, 부여한다.

1.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2. 본 협약 및 관리운영권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무상사용·수익. 다만, 공익적 목적 등의 사유로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명시된 용도를 제외하고는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3. 본 협약과 관리운영권에 따른 운임의 부과·징수를 위한 권리

4. 본 사업시설을 이용한 부대·부속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
5. 그 밖에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

②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와 본 협약, 민간투자법령 및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무관청은 협약기간 동안 위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시행자의 지위, 권리 및 권한을 취소, 철회, 박탈, 제한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제7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과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본 협약이 정한 바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책무를 지며,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자금조달, 기타 본 협약의 이행 등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 협약에서 규정한 위험을 부담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 제시한 채권금융기관등의 대출의향서 또는 조건부 대출확약서를 본 협약 체결 이후 1개월 이내까지 대출약정서로 변경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경우 운영개시기한일을 도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제출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사업을 본 협약에 따라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운영기간 동안 특정인에 대하여 본 사업시설의 이용을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다.

제8조 (소유권 귀속 및 협약기간)

① 주무관청은 본 사업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

② 협약기간은 제2조(정의)에서 정의한 바와 같으며,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은 협약기간의 만료 전 운영기간 연장 및 그에 따른 제반 사업시행조건에 대하여 상호 협의할 수 있다.

제9조 (관리운영권 설정 및 법적효과)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기존 사업시행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민간투자법 제26조의 준공으로 보아 그 지급일에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을 설정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위 제1항에 따른 해지시지급금 대지급을 이유로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구상권,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하게 되는 기타 일체의 민법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③ 사업시행자는 위 제1항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되는 본 협약상의 관리운영권이 위 제2항의 민법상의 청구권에 갈음하여 설정되는 것임을 인지하고 동의하며,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상의 관리운영권을 통해 본 협약상의 권리에 따른 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하더라도, 위 제2항의 민법상의 청구권에 기해 주무관청에 동 가액을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등)

①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제9조(관리운영권 설정 및 법적효과)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관리운영권을 설정한 날부터 2047년 9월 1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② 본 협약이 중도해지되거나 매수청구에 따라 매수되는 경우 또는 협약기간 만료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에 따라 가지는 관리운영권은 소멸한다.

③ 본 협약이 중도해지되거나 매수청구에 따라 매수되는 경우 또는 협약기간 만료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의 권리, 권한과 시설 자산(설비 및 지식재산 포함)의 귀속은 본 협약 제11장(협약의 종료)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총민간투자비 및 주무관청의 지급사항)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의 총민간투자비에 해당하는 금이천팔백오억원(₩280,500,000,000원)을 조달하여, 운영개시기한일을 도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주무관청과 별도 협의하여 정하는 날에 기존 사업시행자에게 대지급해야 한다. 단, 협약체결일과 실제 대지급일의 차이로 인하여 위 금액은 변동될 수 있고, 이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제66조(협약의 변경) 제2항에 따라 별도의 변경협약 체결 없이 [부록 3. 총민간투자비]만을 변경한다.

② 매 분기말 총민간투자비의 지급 및 상각 예정 잔액을 포함한 총민간투자비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3. 총민간투자비]에 기재된 바와 같다.

③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운영기간 중 매분기 말에 [부록 3. 총민간투자비]에 기재된 총민간투자비 지급 및 상각 예정액과 총민간투자비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한다.

④ 주무관청이 제3항에 따른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지급금에 대하여 지급기한 익일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사업수익률에 연 1.0%를 가산한 비율로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제12조 (관리운영위탁계약)

①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받아 본 사업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를 관리운영수탁자에게 위탁하는 관리운영위탁계약을 체결·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즉시 체결결과 및 증빙자료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운영위탁계약은 본 협약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 비하여 주무관청과 본 사업시설의 사용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부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단계에서 직접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받은 출자자 또는 전문운영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법인과 관리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관리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할 자 또는 관리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한 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뒤에 변경할 수 있다.

④ 협약당사자들은 관리운영위탁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의 만료일로부터 최소한 1년 이전부터 관리운영위탁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 이후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의 위탁에 관한 사항(새로운 관리운영수탁자의 선임을 포함한다)을 상호 성실하게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위탁계약의 체결 또는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를 관리운영수탁자가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관련 법령 및 본 협약상의 의무, 채무 또는 책임으로부터 면제 또는 감경되지 않는다.

⑥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위탁계약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에게 추가비용의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의사결정 또는 관리운영수탁자에 대한 권리 행사(해지권 행사를 포함한다)나 지시를 할 수 없고, 주무관청은 이를 위반한 의사결정 또는 권리 행사나 지시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얻어야 한다.

⑦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수탁자로 하여금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등 기타 관련 법령 및 본 협약을 준수하게 하여야 하며, 불가항력 상황 등에 대비하여 가입한 보험을 유지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협약의 성실이행)

①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령 등을 준수하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제 3 장 관리운영 ·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제14조 (관리운영비)

① 본 협약에 따라 사업운영비로 인정되는 관리운영비는 [부록 4. 관리운영비]에 기재된 바와 같다. 단, 협약체결일과 실제 대지급일의 차이로 인하여 위 금액은 변동될 수 있고, 이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제66조(협약의 변경) 제2항에 따라 별도의 변경협약 체결 없이 [부록 4. 관리운영비]만을 변경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비를 그 사용 용도에 부합하게 지출하여야 하되,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경영목적에 따라 자율적으로 본 협약으로 정한 관리운영비 범위 내에서 항목별 비용을 상호 전용하거나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관리운영비 지출에 관하여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가 실제로 지출한 관리운영비가 본 협약에서 확정된 관리운영비를 초과하더라도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에 그 초과된 금액의 보전을 요구할 수 없으며, 주무관청은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업무가 감소됨이 없이 효율적인 경영 등으로 본 협약에서 확정된 관리운영비에 미달하는 지출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미달된 금액의 환수를 요구하지 않기

로 한다.

제14조의 2 (관리운영비의 재산정)

① 협약당사자들은 운영개시일로부터 매 5년마다 실제 관리운영비 집행현황을 확인·점검하여 본 협약 상 관리운영비의 규모를 재산정(운영기간 전체)한다.

② 제1항의 재산정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운영개시일로부터 매 5년이 되는 날의 12개월 전까지 다음 5년 동안의 예상 관리운영비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주무관청은 그동안의 관리운영비 사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거래내역 등 지출 및 집행 내역, 실적을 확인하는 데 있어 필요한 일체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명령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리운영비 사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결과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하여 지출할 필요가 없는 비용 등을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부적정한 집행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 5년 동안의 관리운영비를 확정함에 있어 그러한 요소를 반영한다.

④ 주무관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리운영비 사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고 다음 5년 동안의 관리운영비를 재산정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수탁자의 거래내역 등 지출 및 집행 내역, 실적을 확인하는 데 있어 필요한 일체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명령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운영수탁자로부터 해당 자료 등을 제출 받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주무관청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운영비 재산정 및 점검 시 사업시행자의 부실 또는 부당 집행·관리운영으로 인해 안전진단 및 긴급유지보수, 그 밖의 비용 등이 소요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은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한다.

⑥ 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라 관리운영비의 재산정 등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협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검토결과에 따라 관리운영비를 재산정하거나 제5항에 따른 비용 등을 결정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분담비율은 협약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하고, 사업시행자는 이전 관리운영위탁계약의 만료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이전의 관리운영비를 임시로 집행하되, 임시로 집행된 관리운영비와 변경된 관리운영비의 차액을 정산하기로 한다.

⑦ 주무관청이 재정지원금과 운영수입의 합리적 사용·처리 여부 및 그 적정성 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 및 관리운영수탁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 및 관리운영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점검 및 검사의 실시 또는 필요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관리운영수탁자가 해당 요구에 성실히 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⑧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이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에 따라 효율적인 지방보조금의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사업시행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동의하여야 하고, 관리운영수탁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운영수탁자가 동의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⑨ 주무관청은 본 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운영수탁자가 제공한 자료 또는 정보 등에 대해서 제75조(비밀유지)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제14조의 3 (관리운영비 외의 추가 비용 요구)

① 본 협약 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에게 그에 따라 추가 또는 증가되는 비용을 관리운영비와의 별도로 지급해 줄 것을 필요한 증빙을 갖추어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시설운영 및 정책환경 등의 변화 또는 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운영수탁자의 업무가 감소되거나 기존 관리운영비의 절감요인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추가 또는 증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본 항 본문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주무관청의 요구, 환승역사시설물 이용료의 결정 및 변경 또는 법령의 변경(제정과 개정 포함)으로 인하여 기존 관리운영비가 증가되거나 사업시행자의 업무가 새롭게 추가되는 경우
2.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에 따른 관리운영비로 수행하기로 예정된 업무 이외의 업무로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업무가 추가되는 경우

② 제1항의 요청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으며, 주무관청이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제1항의 요청을 승인한 경우 해당 비용을 관리운영비와 별도로 지급한다. 다만, 불가항력사유의 경우에는 제51조(불가항력사유 및 그 처리)에 따라 주무관청이 부담하기로 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리운영비와 별도로 지급한다.

③ 주무관청이 제2항의 합리적 판단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운영수탁자에게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명령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4조의2(관리운영비의 재산정)를 준용한다.

제15조 (관리운영 ·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 및 보고)

① 사업시행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본 사업시설에 사용되는 시설물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본 사업시설의 사용자들에게 안전과 편의가 최대한 도모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본 사업시설이 대중교통으로서의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법령 또는 본 협약에 따른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법령 또는 본 협약에 따른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가 이루어질 때까지 해당 미이행 업무에 관한 관리운영비를 차감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도시철도법과 철도안전법 등 본 사업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계획에 따라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협약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매 사업연도 2월 말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실적, 부속사업 실적, 부대사업 실적 등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도시철도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본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자료를 제출 및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본 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주무관청은 해당분기 관리운영비의 일부를 지급유보할 수 있다.

⑤ 주무관청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본 사업시설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안전성 검토 등을 시행하게 하거나 긴급유지보수를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조치를 즉시 실시하여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경우 또는 그 이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중 통상적인 관리운영 내역에 포함되는 비용은 관리운영비에 포함하되, 그 밖에 통상적인 관리운영 범위를 벗어난 특별한 비용은 주무관청이 관리운영비 외의 방법으로 별도 부담한다. 이 경우 통상적인 관리운영 범위에 대한 해석에 있어, 본 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본 협약,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계획, 철도안전관리체계 등 본 사업에 관련된 제반 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의 해석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선정한 제3의 전문기관의 판단에 따르기로 한다.

⑦ 사업시행자가 제16조(관리운영 및 유지보수계획)에 따른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계획을 위반하여 주무관청이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기능유지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부실 또는 부당하게 관리운영하거나 관리운영비를 집행한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보수 등을 이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이

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⑧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에 대한 예방정비와 사후정비를 수행해야 하며, 운행장애나 고장 등 사고발생시 즉시 대응(수리, 복구, 교체, 안전조치 등)하고 주무관청에 사고경위 및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계획)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운영개시기한일 20일 전까지 초기안정화 방안을 포함하여 영업운전 계획, 효율적인 종합관제실 운영방안, 차량 및 시설물 유지보수 계획, 이용자 편익, 환경 및 안전관리 등 본 사업시설에 대한 최초 운영연도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연도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계획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주무관청은 그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제출받은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계획의 승인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8조(노후시설에 대한 대체투자), 제19조(비상대응계획 및 안전관리규정) 및 제20조(철도안전관리체계 등)에 따라 수립된 안전관리 계획의 구체적인 이행사항, 제4장(재원의 조달 및 자금재조달)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가 제2항 전단에 따른 제출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2항 후단에 따른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최선의 주의를 다하여 그 요구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 주무관청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제2항에 따라 승인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변경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그 변경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제14조의 3(관리운영비 외의 추가 비용 요구)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7조 (인계인수)

① 사업시행자는 기존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의 인계인수를 위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 등에 따른 성능평가 및 정밀진단에 준하여 실시한 점검 및 실사 결과를 존중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주무관청은 기존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시행자가 인계인수를 개시하기 전까지 제1항의 점검 및 실사 결과에 따라 본 사업시설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리 및 보수 등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의 체결 후 지체 없이 본 사업시설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인계인수 대상 목록 및 처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확정한다. 단, 본 협약의 체결 시까지 기존 사업시행자의 수리 및 보수 등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 협약 체결 시까지의 수리 및 보수 등의 상황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인계인수 대상 목록 및 처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잠정적으로 정한 후, 수리 및 보수 등이 완료되는 시점에 확정한다.

④ 사업시행자가 제3항에 따라 확정 또는 잠정된 인계인수서에 따라 본 사업시설을 인수하고 그 인수를 위한 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업시행자의 수리 및 보수 등이 미흡 또는 불충분하거나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수리 및 보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에 대하여 필요한 증빙을 갖추어 기존 사업시행자의 수리 및 보수 등의 결과에 대한 이의를 통지하고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정상적인 기능유지와 관련이 없는 시간 경과에 따른 통상적인 마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이 설정되기 전까지 제4항에 따른 이의 통지 및 확인 요청을 할 수 있고, 주무관청은 그 통지 및 요청받은 내용을 기존 사업시행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기존 사업시행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에게 본 사업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이 설정된 이후에 발생하였거나 발견하는 본 사업시설의 하자, 불량, 고장 등 수리 및 보수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처리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운영권이 설정된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그 수리 및 보수 등에 관한 비용과 책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수리 및 보수 등은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우선 실시하되, 대규모의 수리 및 보수 등이 필요하여 과도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그 비용의 부담 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과 책임의 분담 등에 대해서는 주무관청과 합의하여 정한 시설물 안전진단기관의 검증 결과 또는 제12장(분쟁의 해결)에 따라 정산 및 처리하고, 이 경우 그 시설물 안전진단기관의 검증 또는 제12장(분쟁의 해결)에 따른 정산 및 처리 과정에서의 증명책임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제18조 (노후시설에 대한 대체투자)

① 본 사업과 관련한 노후시설에 대한 대체투자 범위는 [부록 5. 대체투자]에서 정하는 바와 같고, 그 대체투자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대체투자비”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의 관리운영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체투자비는 주무관청이 부담하되,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준하여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하에 대체투자를 실시한다. 단,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직접 대체투자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6조(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계획)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을 때, 신의와 성실의 자세로 전체 운영기간에 대한 대체투자 장기계획(대체투자의 필요성 및 산출근거, 예산 수준 등을 포함함)을 함께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운영개시 이후 매년 2분기 종료일 전까지 신의와 성실의 자세로 대체투자 중기계획(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에 대한 대체투자 계획을 말하며, 당해 연도를 포함한 직전 5개년도 대체투자 집행현황 및 다음 5개년도 집행계획을 포함함) 및 대체투자 단기계획(다음 연도 대체투자 필요성 및 산출근거, 전년도 및 당해 연도 대체투자 집행현황 및 다음 연도 집행계획을 포함함)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대체투자 계획(장기, 중기, 단기 모두 포함)의 작성을 소홀히 또는 부실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책

임을 부담하고, 그 대체투자 계획(장기, 중기, 단기 모두 포함)을 작성할 때 본 협약 [부록 5. 대체투자]에 따라 정해진 대체투자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대체투자비의 증액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에게 그 대체투자비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증액 요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그 증액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증액 여부를 승인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주무관청의 비용으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증액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주무관청이 대체투자비를 지급하면서 대체투자를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그 대체투자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발생한 사고 및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그 책임을 부담한다.

⑧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지급받은 대체투자비를 별도 계좌에 관리하여야 하고,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대체투자비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 없이 양도나 담보제공 등의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주무관청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대체투자비에 대하여 질권 설정 등 자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⑨ 사업시행자는 대체투자비 집행잔액(낙찰차액 포함) 및 발생이자액과 그 잔액 및 이자액의 발생원인 등을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액을 모두 주무관청에 반환하여야 한다. 단,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반환금 상당액을 제34조(주무관청의 비용보전)에 따른 비용보전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제19조 (비상대응계획 및 안전관리규정)

① 사업시행자는 철도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철도안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철도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정부 등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주무관청은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관련 행정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2조(관리운영위탁계약)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를 관리운영수탁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관리운영수탁자로 하여금 위 제1항에 따른 비상대응계획과 철도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위 제12조(관리운영위탁계약) 제1항의 관리운영위탁계약의 체결을 이유로 위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무로부터 면제 또는 감경되지 아니한다.

제20조 (철도안전관리체계 등)

① 사업시행자는 철도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비용으로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자신은 물론 관리운영수탁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철도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인력, 시설, 차량, 장비, 운영절차, 교육훈련 및 비상대응계획 등 철도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유기적 체계(이하 "철도안전관리체계"라 한다)를 갖추어 관계기관으로부터 이를 승인받아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승인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자신은 물론 관리운영 수탁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에 발생한 제반 사고를 철도안전법 등 관련 법령, 철도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및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본 항에 따른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제21조 (보험가입)

① 사업시행자는 협약기간 동안 발생 가능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및 [부록 5.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이들 보험이 협약기간 동안에 유효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위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계획 및 보험조건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보험계약의 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를 주무관청에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위 제1항에 따른 보험을 적기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 가입 후 10일 이내에 보험증권의 사본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매 사업연도 1월 31일까지 보험이 유지되고 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경우 7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동 청구를 제기한 경우 동 청구서의 사본을 7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가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보험금 수령내역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보험금은 당해 보험사고의 치유를 위

하여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이 때 사업시행자는 그 사용내역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가 위 제1항에 따른 보험을 그 정한 조건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본 협약에 따른 보험 관련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본 사업의 복구비용 등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제22조 (운영실적의 제출)

사업시행자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당해 사업연도의 운영실적, 부속사업, 본 사업시설의 유지보수실적 등을 주무관청에 서면 제출하여야 하며, 도시철도법 등 관계법령 및 규정, 서울특별시 조례 등 자치법규, 본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3조 (우이신설 연장구간의 운영)

①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이 본 사업시설의 연장구간(우이~방학 등) 운영 등을 요청하는 경우, 그 연장구간(우이~방학 등) 구간을 포함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그 세부적인 운영조건 등은 상호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시 km당 관리운영비 등 주요 운영조건은 본 협약에 따른 기존 구간과 동등 수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제반 사정의 변화로 인해 km당 관리운영비 등 주요 운영조건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주무관청은 본 사업시설의 노선 연장사업(우이~방학 등) 운영에 있어 사업조건 검토 등 노선 연장 운영 실행에 필요한 자료 등에 대해 사업시행자에

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24조 (지체상금)

①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당사자 간 합의한 운영개시기한일까지 운영개시를 하지 못할 경우, 운영개시기한일의 다음날부터 실제 운영개시일까지의 지체일수에 대하여 총민간투자비의 10%에 사업수익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주무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운영개시기한일은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경우 연장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위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운영개시일이 속한 월의 익월 말까지 주무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4 장 재원의 조달 및 자금재조달

제25조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

①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여야 하며, 본 협약 체결 이후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자본비율을 총민간투자비 지급 및 상각 예정 잔액의 1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받아 금융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본 사업의 총민간투자비 조달을 위한 차입금을 조달한다. 단, 후순위 주주차입금의 설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할 경우 주무관청에게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한 금융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포함한 담보약정에 관한 제반서류들을 제출하고, 주무관청이 이를 검토한 결과 본 협약이 정한 바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근저당권 설정을 승인한다.

제26조 (초기운영비)

① 주무관청은 본 사업 초기 운영안정화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부록 12. 초기운영비]에 따라 요청한 초기운영비 및 자금조달수수료를 본 협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의 초기운영비를 운영 첫 분기에 대한 비용보전금액 지급 시 공제하여 지급한다.

제27조 (자금재조달)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체결 이후 자금재조달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자금재조달과 관련된 계획을 주무관청에 사전통보하고 수시로 자금재조달 진행과정을 보고 및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자금재조달 여건 발생 여부를 1년 단위로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보고 내용 및 절차 등은 자금재조달에 관

한 세부 요령에 따른다.

③ 주무관청은 본 협약체결일 이후 금융약정 체결 당시보다 더 좋은 조건의 자금재조달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자금재조달을 추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자금재조달 요청 절차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에 따르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소명되지 않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위 제3항의 전단에 따른 주무관청의 요청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금재조달을 장기간 지연하여 금융약정의 체결이 지체된 경우, 자금재조달 이익 산정의 기준시점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⑤ 사업시행자는 공정한 시장가격 및 조건에 따라 자금재조달을 추진하여야 하며, 운영기간 중 자본구조 변경 시에는 사업시행자의 자기자본비율은 자금재조달 당시 감사보고서상 총민간투자비 지급 및 상각 예정 잔액의 1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⑥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자금재조달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업시행조건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본 협약을 변경하기로 한다.

⑦ 주무관청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자금재조달과 관련한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

① 자금재조달이 이루어지는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에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기로 하며, 협약당사자간 이익공유는 전체 공유이

익 100 중 주무관청측 95, 사업시행자측 5의 비율로 한다.

② 자금재조달의 범위, 자금재조달 이익공유의 요건, 이익의 산정방법 및 기준시점, 이익의 사용처 및 사용시점 등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근거한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에서 규정한 자금재조달 관련 세부지침 및 조건에 따른다.

③ 주무관청은 자금재조달에 따른 주무관청측 공유이익을 제37조(총민간투자비의 조기 지급 및 상각)에 따른 조기 지급 및 상각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관계법령 등에 따른 전문기관에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 5 장 수익률 및 운영수입에 관한 사항

제29조 (사업수익률)

① 사업수익률은 총민간투자비에 대한 수익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금리로서, 총민간투자비에 적용되는 고정수익률과 변동수익률을 50:50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비율로 하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위 제1항의 고정수익률은 연 *.**%를 운영기간 동안 고정하여 적용한다.

③ 위 제1항의 변동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서 발표하는

최종호가수익률 상 1년 만기 국고채권을 협약체결일 직전 과거 5영업일 평균값(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둘째자리까지 표기)에 가산금리 연 *.**%를 더하여 산정된 금리를 말하며, 1년마다 기준금리를 재산정하여 적용한다.

제30조 (운임의 결정 및 징수)

① 주무관청은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체계 및 운영방법, 다른 대중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운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조정된 운임이 본 사업시설 및 수도권 통합요금체계에 적용되도록 연락운송기관 협의, AFC 시스템 변경 등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본 사업시설의 사용자로부터 민간투자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징수할 수 있는 운임의 범위 내에서 주무관청이 통보하는 운임을 부과·징수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해당 운임을 지급하지 않고 무단으로 본 사업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철도사업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운임과 주무관청의 다른 유사 도시철도운영 기관이 적용하고 있는 부가금 비율에 준하는 범위 내의 부가운임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수도권 대중교통 운송기관들과의 연계 승차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은 이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매월 본 사업시설의 이용량, 운임수입 기타 운영실적에 관

한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위 제5항의 조사가 끝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위 제6항의 조사 결과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은 전문기관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 (운임의 정산)

수도권 도시철도 구간 연락운송에 따라 발생하는 운임수입은 수도권 대중교통요금 정산체계를 따라 정산하도록 한다. 이 때의 운임수입은 본 협약 제2조(정의)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징수하는 운임의 총액에서 제3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수료나 비용(연락운임정산금, 교통카드 정산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32조 (부속사업)

① 사업시행자는 협약기간 동안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얻어 부속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단, 부속사업은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행한다.

② 주무관청은 협약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부속사업을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③ 본 사업시설 중 부속시설로 추진되는 시설종류, 부속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의 내용, 소요비용, 예상수입, 사업추진 방법, 사업수입으로 인정될 부속사업의 수입금액 등은 [부록 7. 부속사업]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④ 협약당사자들은 제14조의 2(관리운영비의 재산정)에 따라 관리운영비를 재산정할 때 상호 합의하여 제3항 및 [부록 7. 부속사업]에서 정한 부속사업의 내용, 소요비용, 예상수입, 사업추진 방법, 사업수입으로 인정될 부속사업의 수입금액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33조 (부대사업)

① 사업시행자는 협약기간 동안 본 협약과 관련한 부대사업을 발굴 ·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무관청과 사전 협의해야 하며,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얻어 민간투자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협약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부대사업을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③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부대사업의 시행과 그 수익의 처리 방법 등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별도로 합의하는 바에 따른다.

④ 협약당사자는 위 제1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본 협약을 변경하도록 한다.

제 6 장 주무관청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34조 (주무관청의 비용보전)

① 주무관청은 본 협약에 따라 분기별로 비용보전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미 발생된 주무관청의 비용보전금액 지급의무는 협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협약이 해지되더라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 어느 분기 동안 사업시행자가 실제 수령한 운영수입이 협약상 당해 분기의 관리운영비에 미달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그 부족 금액을 보조금 또는 금전대여의 방법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의, 본 협약상 관리운영비는 불변가격 기준일로부터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한 경상금액을 말한다.

제35조 (비용보전금액의 청구 및 지급)

① 사업시행자는 협약기간 동안 매분기의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분기의 운영수입 및 관리운영비의 구체적인 내용을 첨부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위 기간 내에 당해 분기에 관한 비용보전금액(있는 경우)을 주무관청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위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청구를 수령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비용보전금액을 확정하고, 다음 분기 마지막 월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비용보전금액의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주무관청은 그 다음 도래하는 영업일까지 확정된 비용보전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이 비용보전금액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비용보전금액의 지급의무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3개월(본 협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본 협약의 만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기관에게 비용보전금액을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비용보전금액에 대한 검증 결과 정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음 사업연도의 2분기에 관한 비용보전금액을 확정할 때(본 협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검증자료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에 정산한다.

④ 주무관청이 비용보전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그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미지급액을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사업수익률로 일할 계산하여 산정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6조 (초과수입의 환수 및 사용)

① 어느 분기 동안 사업시행자가 실제 수령한 운영수입이 협약상 당해 분기의 관리운영비를 초과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초과분을 환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는 (가) 사업시행자가 초과분 발생 분기의 다음 분기까지 주무관청에 직접 지급하는 방법 또는 (나) 초과분 발생 분기의 다음 분기에 발생하는 비용보전금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다) 그 초과분만큼 제37조(총민간투자비의 조기 지급 및 상각)에 따라 총민간투자비의 일부를 조기에 지급·상각한 것으로 처리하는 방법 중 주무관청이 결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7조 (총민간투자비의 조기 지급 및 상각)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총민간투자비의 일부를 조기에 지급하고 상각할 수 있다.

1. 주무관청은 금융약정에 따른 매 이자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조기에 지급하고자 하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주무관청은 조기에 지급하고자 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비용보전금액을 지급하는 날(비용보전금액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분기의 말일로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제1호에 따라 통지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본 조에 따라 주무관청이 총민간투자비의 일부를 조기 지급 및 상각함에 따른 자금조달조건의 변경(출자자의 변경은 해당하지 않음)은 제27조(자금재조달)에 따른 자금재조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지급한 금액만큼 [부록 3. 총민간투자비]에 기재된 마지막 분기의 총민간투자비 지급 및 상각 예정액부터 역순으로 지급 및 상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되, 조기에 지급된 총민간투자비 부분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부터 총민간투자비에 대한 수익금이 발생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부록 3. 총민간투자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제66조(협약의 변경) 제2항에 따라 별도의 변경협약 체결 없이 [부록 3. 총민간투자비]만을 변경한다.

⑤ 본 조에 따른 조기 지급 및 상각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에 상응하여 관리운영권 기간이 단축되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 등록 변경을 통해 그 단축된 기간을 등록한다. 이 경우 그 조기 지급 및 상각으

로 총민간투자비 지급 및 상각 예정 잔액이 0원이 되면 사업시행자의 관리운영권은 소멸되고, 사업시행자의 권리, 권한과 시설, 자산(설비 및 지식재산 포함)의 귀속은 본 협약 제11장(협약의 종료)의 규정에 따른다.

제38조 (행정적 지원)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인·허가 등 관계기관에 대한 제반 절차를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② 주무관청은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에 관련하여 요구되는 행정적 절차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성실한 자세로 협의에 임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적절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제39조 (사업부지의 점유권)

① 주무관청은 본 사업의 제16조(관리운영 및 유지보수계획)에 따른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부지를 무상으로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주무관청이 공용 또는 공공용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본 사업부지를 사용하고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본 사업부지를 무상으로 사용 및 수익하는데 있어 어떠한 법적, 사실적 부담, 제약이 있는지 사전에 법률실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실사결과 관련된 법적, 사실적 하자를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전체 협약기간 동안 본 사업부지를 소유하며 본 협약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사업부지, 이의 일부 또는 이에 대한 권리를 양도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본 사업부지의 양수인으로부터 본 사업부지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위 제1항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의 확약서 또는 합의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의 기간만료 또는 중도 해지 등으로 본 협약이 종료되는 경우 지체 없이 본 사업부지의 점유를 주무관청에 반환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명시된 용도를 제외하고는 주무관청의 승인이 없는 한 어떠한 다른 목적으로도 본 사업부지를 사용할 수 없다.

제 7 장 권리의 처분 및 변경

제40조 (권리 · 의무의 양도 및 담보의 제공)

① 민간투자법 또는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 없이 본 협약에 따른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채권 금융기관 등에게 본 협약, 관리운영권, 동산, 수입, 은행계좌, 지식 재산 또는 기타 권리 및 자산을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본 협약상 권리 및 관리운영권에 대한 담보설정을 위하여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32조(부속사업)의 부속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탁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 (출자자 및 출자지분의 변경)

① 사업시행자인 우이신설도시철도 주식회사의 출자자 구성 및 그 지분율은 [부록 2. 출자자]와 같다.

② 사업시행자는 전체 출자지분 중 100분의 5 이상의 출자지분을 소유한 출자자가 출자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계열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출자자 전체를 단일출자자로 보며, 본 조에서 이하 같다)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무관청은 위 사전 승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 여부와 내용을 요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전체 출자지분 중 100분의 5 미만의 출자지분을 소유한 출자자(또는 제2항에서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출자자를 제외한 출자자가) 그 출자지분을 변경하는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을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8 장 주무관청의 감독에 관한 사항

제42조 (주무관청의 감독 · 명령)

①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및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본 사업의 정상

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제46조 및 제47조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동 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때의 취소 처분 중 사업자 지정 취소는 본 협약의 해지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며 그 경우 별도의 해지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③ 주무관청이 제49조(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로 인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사업시행자의 업무 감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위탁 등을 통한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의 조력을 받게 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우선 부담한 그 비용은 제14조의 3(관리운영비 외의 추가 비용 요구)에 따라 관리운영비 외의 추가 비용으로 지급한다.

④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주무관청의 감독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정하는 철도사고 등(철도사고, 철도준사고, 운행장애를 포함한다)이 발생하여 본 사업의 정상적인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수탁자의 변경 등 필요한 안전관리 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사업시행자는 시설물의 운영개시 이후 도시철도의 운영, 시설물의 유지관

리와 관련하여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도시철도 운영 및 안전관리 사항
2. 도시철도 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상사고, 안전사고, 사회적 사건(언론, 방송, 인터넷 언론 등으로 보도되는 사건)이 발생되는 경우 조사 및 조치(전동차 운행 포함) 사항
3. 국경일, 공휴일, 대규모 국내외 행사 개최시 전동차 운행 사항
4. 기타 도시철도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쌍방의 협조가 특별히 필요한 사항

제43조 (시의회 보고 등)

①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의회에 직접 출석 또는 서면으로 업무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요청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증인요청 등 협조요청을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임해야 한다.

제 9 장 성과의 점검 · 평가에 관한 사항

제44조 (성과의 측정 · 보고)

① 사업시행자는 매 사업연도마다 [부록 10. 성과요구수준서] 및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계획에 입각하여 본 사업시설과 차량의 유지보수상태 및 서비스 수준을 스스로 측정한 다음, 그 측정결과를 반영한 사업연도별 성과측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1월 말까지 사업연도별 성과측

정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성과의 측정에 대한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으며, 위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결과를 제출받거나 확인하였다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의 성과측정 결과에 따른 책임이 감경 또는 면제되지 않는다.

③ 위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이 제출하여야 하는 성과측정보고서 작성요령, 서식은 협약 체결 이후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제45조 (성과의 점검)

① 주무관청은 제44조(성과의 측정 · 보고)의 성과측정보고서를 토대로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차량의 유지관리 및 안전운행 성과수준을 확인하고, 성과수준이 [부록 10. 성과요구수준서] 에서 제시하는 요구수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시정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단, 그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완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기간) 이내 시정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성과수준 확인과 성과이행상황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순회, 업무감시, 사업시행자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 요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이를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른 성과 확인 또는 점검 등의 이유로 본 사업시설 및 차량 등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제46조 (성과의 평가)

① 주무관청은 [부록 11.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요령]에 따라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성과를 평가한다.

② 성과평가위원회는 사업시행자의 제44조(성과의 측정 · 보고) 제1항의 성과의 측정 · 보고 및 주무관청의 제45조(성과의 점검) 제2항의 성과이행상황 점검결과 등을 토대로 하여 [부록 10. 성과요구수준서]에서 규정한 안전성, 시민편의성, 운영효율성, 공공성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제44조(성과의 측정 · 보고) 제2항에 따른 사업연도별 성과측정보고서를 제출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전연도의 성과를 평가한다. 단, 성과평가 기간을 연장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성과평가위원회는 사업시행자에게 성과평가 기간 연장을 통보한 후 성과평가 기간을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성과의 평가항목과 기준은 [부록 10. 성과요구수준서]에서 제시한 내용에 따른다. 단, 국토교통부의 「철도 안전관리 수준평가」 및 「대중교통운영기관 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기준 변경, 본 사업시설과 관련한 철도 운영환경의 변화, 주무관청의 정책적 요구 등 성과평가 항목과 기준을 변경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성과의 평가항목과 기준은 협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47조 (성과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① [부록 10. 성과요구수준서]에 따른 직전연도의 성과평가 결과가 85점 미만일 경우, 주무관청은 [부록 10. 성과요구수준서]에서 정하는 조치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본 협약에 의해 산정된 해당연도의 관리운영비를 차감하거나 해당 연도의 비용보전금액의 지급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 이때,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관리운영비 부족 등의 문제는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제44조(성과의 측정 · 보고)의 성과측정보고서에 고의에 의한 허위기재가 있는 것이 판명될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이 지급해야 하는 비용보전금액 중 감액될 수 있었던 비용보전금액의 2배를 주무관청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부록 10. 성과요구수준서]의 평가점수를 85점 미만으로 평가받을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계획의 개선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과 합의한 개선계획에 따라 개선을 하여야 한다.

④ 성과평가결과 사업시행자가 연속 3개 연도 이상 연속하여 85점 미만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주무관청은 제12조(관리운영위탁계약)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계약을 요구하거나 수임자 또는 수탁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성과평가 결과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연도에 85점 미만으로 평가를 받아 해당연도의 관리운영비가 감액된 후 차기 사업연도에 85점 이상으로 평가점수를 받아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수준을 회복한 경우, [부록 10. 성과요구수준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은 전년도 감액된 비용보전금액의 일부를 추가로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⑥ 주무관청은 서비스 성과평가 결과를 매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 10 장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

제48조 (위험배분의 원칙)

①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은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불가항력사유로 구분한다.

②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은 당해 위험 발생에 귀책사유가 있는 협약당사자가 부담한다.

③ 불가항력사유로 인한 위험의 경우 1차적으로는 관련 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하며, 보험으로 처리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51조(불가항력사유 및 그 처리)에 따라 처리한다.

④ 귀책사유가 어느 협약당사자에게 있는지 불명확한 경우, 당해 사유의 발생이 어느 협약당사자의 행위 또는 권한 및 지배범위에 근접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협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위험분담비율을 결정하기로 한다.

제49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들은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보나, 이들 사유에 한정되지 않는다.

1.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또는 본 협약에 정한 사항들을 위반하거나, 민간투자법 제46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에 따른 주무관청의 처분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사업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실질적으로 중단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법원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사업시행자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 및 청산을 결정한 경우
5. 주무관청의 귀책사유나 불가항력 사유 이외의 사유로 본 사업을 위한 재원(자기자본 및 차입금)의 조달·투입이 실현되지 않음으로 인해 본 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개시기한일까지 운영개시를 하지 못하는 경우
7. 기타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과 서면 합의하여 이행하기로 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단, 사업시행자가 대체방안을 마련하고 주무관청이 승인을 얻은 후 이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업시행자의 손실, 관리운영비의 증가, 운영수입의 감소, 기타 손실 등 추가비용과 손실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부담한다. 다만, 경미한 위반으로 발생한 사항으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위반사항을 자신의 비용으로 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본 항 본문의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50조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들은 주무관청의 귀책사유로 보나, 이들 사유에 한정되지 않는다.

1.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나 불가항력 사유 또는 민간투자법 제47조(공익을 위한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이 본 사업시설, 본 사업시행권, 관리운영권, 사업시행자의 주식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몰수하거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2. 주무관청이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을 지급기한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
3. 본 사업과 관련된 주무관청의 행정처리 지연 등 주무관청이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에 정한 주무관청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이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업시행자의 손실, 관리운영비의 증가, 운영수입의 감소, 기타 손실 등 추가비용과 손실에 대해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하기로 한다. 이 경우, 협약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보상액을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협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선정된 전문기관이 산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그 전문기관 용역 비용은 협약당사자간 50:50의 비율로 분담한다.

제51조 (불가항력사유 및 그 처리)

① 불가항력사유란 협약당사자 어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서 협약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나 사유(또는 그러한 상황이나 사유의 결합)를 말하며, 비정치적 불가항력사유와 정치적 불가항력사유로 구분한다. 불가항력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본 협약에 따른 어떠한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주무관청이나 사업시행자는 누구도 본 협약상의 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되지 아니한다.

② 협약기간 중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불가항력 사유로서 비정치적 불가항

력 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이하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 홍수, 해일, 화재, 화산폭발, 산사태, 태풍, 비행기충돌 등으로 인한 재해
2. 전국적 또는 사회산업 전반의 파업
3. 국가신용도, 이자율, 환율 등의 급격한 변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동, 본 사업환경의 급격한 변경으로 금융약정의 체결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수익성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4. 본 협약 제65조(민원처리)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의 귀책이 아닌 민원으로 인하여 본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본 사업수익성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5.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 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기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정책의 변경 및 관계법령 등의 제개정 등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직접적이고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6. 제3항의 불가항력 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로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유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

③ 협약기간 중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불가항력 사유로서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이하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쟁 또는 사변, 적국의 침공행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2. 핵폐기물, 화학 또는 방사능에 의한 부지의 오염
3. 폭동, 테러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4. 환전 및 해외송금 통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④ 불가항력사유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비용(사업시설의 복구비용 포함)은 우선적으로 제21조(보험가입)에 따라 가입된 보험으로부터 지급되는 보험금

으로 처리하며, 보험 가입의 대상이 아니거나 보험으로 보전되지 아니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비정치적 불가항력사유로 말미암아 발생된 비용(변동비성격의 미발생 관리운영비 등을 고려) 중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주무관청은 실제 발생한 비용의 80%를 부담한다.
2. 정치적 불가항력사유로 말미암아 발생된 비용(변동비성격의 미발생 관리운영비 등을 고려) 중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주무관청은 실제 발생한 비용의 90%를 부담한다.
3. 위 제1호 및 제2호에서의 보험은 본 협약에서 정한 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수령할 보험금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실제 수령한 보험금이 보험계약 당시의 수령 가능한 보험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하지 않는다.

⑤ 불가항력 사유의 처리에 있어 주무관청 부담분에 관하여는, 협약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조정 등을 통하여 주무관청의 부담분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다.

⑥ 불가항력사유의 발생이 협약당사자들 상호간 인정되거나 인정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 협약당사자들은 불가항력사유 및 그 처리를 위하여 즉시 그 피해에 대하여 논의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치유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본 사업시설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52조 (불가항력사유로 인한 청구 및 이의신청)

①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으로 본 협약에 따른 의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

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영향을 받은 협약당사자는 그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상대방에게 해당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불가항력 사유의 영향을 받은 자는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을 통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두 번째 통지(불가항력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를 하여야 한다. 두 번째 서면통지에는 불가항력에 관한 자세한 내용, 영향을 받은 협약당사자의 책임에 대한 예비적 평가내용, 의무불이행 추정기간, 가능한 치유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③ 협약당사자는 위 제1항 및 위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통지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인 경우에는 통지가능시점에 통지지연사유를 포함하여 불가항력 사유 발생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을 서면으로 통지를 받은 협약당사자가 통지된 불가항력 사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불가항력 사유 발생에 대한 두 번째 서면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이의제기 사유와 근거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불가항력 분쟁을 통지하여야 하며,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을 두 번째 서면으로 통지 받은 협약당사자가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제기한 이의를 철회하는 경우, 상대방의 불가항력 사유 발생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단, 이의를 철회하지 않은 경우 협약당사자들은 이의제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불가항력 사유의 인정 여부에 대한 이견을 해소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로 한다.

⑤ 협약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 발생의 합법성이 인정되거나 인정된 것으로 간주된 후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에 불가항력 사유 및 그 영향과 이로

인해 사업시행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그리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 사업의 진행 또는 본 사업시설의 운영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의하도록 하고, 불가항력 사유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단, 협약당사자들은 위 협의를 개시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협약당사자 모두에게 합리적으로 만족스러운 결론을 도출하기로 한다.

⑥ 협약당사자가 불가항력의 영향을 받은 경우 불가항력 사유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계속적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1 장 협약의 종료

제53조 (기간만료로 인한 협약의 종료)

① 본 협약은 제54조(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에 따라 해지되지 않는 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만료일에 종료된다.

② 본 협약이 위 제1항에 따라 종료되는 경우 제6조(사업시행자의 권리) 및 제7조(사업시행자의 의무)에 따라 부여된 사업시행자의 관리운영권 등 권리와 의무는 소멸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협약기간 만료 3년 전에 서면으로 협약기간의 연장을 주무관청에게 신청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협약기간 동안 협약당사자들의 권리의무는 협약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체결된 협약에 따르기로 한다.

③ 본 협약이 위 제1항에 따라 종료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협약기간이 연장된 경

우에도 제2호에서 정한 사항은 연장되기 전 협약기간 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원활한 인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협약기간의 만료일 4년 전에 주무관청 또는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설점검을 실시하고, 시설점검 결과 수리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통상적인 마모는 제외한다)에는 협약기간의 만료일 6개월 전까지 그 수리 또는 보수를 완료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완료에 대한 확인을 받고,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을 주무관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인계시점까지 수리 또는 보수가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이행되지 않을 합리적인 우려가 있는 경우, 주무관청은 사전에 이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유보하는 방식으로 유치할 수 있고, 인계시점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 또는 상계할 수 있다.
2. 사업시행자는 협약기간이 만료되면 본 사업시설의 운영설비 및 시설운영과 관련된 각종 자료, 상표권 등의 자산을 주무관청에 무상으로 인계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는 협약기간의 만료일 6개월 전 주무관청이 정하는 기간 동안 주무관청의 비용으로 주무관청 또는 주무관청이 선정한 관리운영자에게 본 사업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이 본 협약 종료에 대비하여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본 사업시설에 대한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관리이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가 위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함으로 말미암아 주무관청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54조 (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

① 주무관청에 의한 해지 :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또는 관리운영권의 말소 등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민간투자법 제46조(법령위반등에 대한 처분)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 또는 본 협약에 정한 사항들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3. 제49조(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4. 제49조(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운영개시기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원조달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5.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사업시설의 운영을 1개월 이상 중단하는 경우
6. 자금조달 및 자금재조달 또는 양도 및 담보 제공과 관련한 사업시행자의 반복적인 위반이 있고,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여 본 사업의 정상적 추진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7. 민간투자법 제47조(공익을 위한 처분) 제1항 제1호, 제2호에 정한 사유의 발생 등 주무관청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의 해지시지급금은 주무관청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시지급금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② 사업시행자에 의한 해지 :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50조(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50조(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제1항 제2호,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사유가 6개월 이상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주무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협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
4. 기타 본 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서면통지를 받고도 주무관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자가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통지를 발송한 경우, 주무관청이 그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그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③ 기타 사유로 인한 해지 : 제51조(불가항력사유 및 그 처리)에 정한 불가항력사유가 발생하여 협의를 개시하였음에도 그 협의개시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협약당사자는 본 조에 따라 상대방 협약당사자에게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본 조에 따라 협약당사자가 본 협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협약당사자가 문제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명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본 협약을 해지하는 자가 부담한다.

⑤ 본 조에 따라 해지권을 갖는 협약당사자(이하 “해지권자”라 한다)는 본 조에서 정한 본 협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지사유의 발생사실과 90일 이내의 기간(이하 “치유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당해 사유의 치유를 요구하거나 치유를 위한 협의를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치유기간 내에 당해 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하거나 치유를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해지권자는 상대방 협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해지의 효력은 해지통지의 도달로써 발생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변경에 관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해

지권자는 해지통지를 유보한다.

⑥ 운영기간 중 본 협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로서 주무관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 또는 본 사업의 승계인이 본 사업시설 및 운영을 인수할 때까지 주무관청의 관리 하에 본 사업시설을 계속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본 사업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운영비용 및 유지보수비용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조건은 협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⑦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된 본 협약의 해지에 관한 권리와는 별도로,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 제59조(매수청구권)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에 매수청구를 한 경우 주무관청의 매수청구인정 통지가 사업시행자에게 도달한 날에 본 협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⑧ 본 조에도 불구하고, 협약당사자의 매수청구권의 실행 또는 협약의 중도해지는 그에 앞서 위험의 치유 및 대체사업자 선정 등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전제로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본 협약을 해지하는 자가 부담한다.

⑨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본 사업시설에 대한 점검 및 실사를 시행하고 이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리, 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단, 정상적인 기능유지와 관련 없는 시간적 통상적 마모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5조 (기간만료 또는 중도해지에 따른 일반규정)

① 협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본 사업시설 및 관리운영의 원만한 인계를 위하여 주무관청 및 본 사업을 인수할 자에게 협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협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주무관청은 본 사업시설의 건설, 운영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모든 비품, 구조물, 설비, 고정 및 이동식 설비, 전기설비,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타 모든 동산과 예비부품 재고를 포함하여 사업시행자가 소유한 자산 및 본 사업시설의 설계, 공사, 운영 및 관리 또는 해지 직전 운임의 부과 및 징수 등과 관련하여 체결 또는 사용 중인 사업시행자의 모든 권리 및 자산을 무상으로 취득, 인수한다.

③ 협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문서 및 기록, 시공도면,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계획, 관리운영수탁자가 본 사업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기록한 문서, 도면 등 일체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문서 및 기록 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권리 및 자산의 인계와 제3항의 기록 및 문서 일체의 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그로 말미암아 주무관청이 입은 증명된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또는 환수)한다.

⑤ 협약기간의 만료 또는 본 협약의 해지는 협약기간의 만료일 또는 본 협약의 해지일 현재 본 협약에 따라 기 발생한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6조 (해지시지급금)

① 본 협약 제54조(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에 따라 본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주무관청은 본 협약 해지 시까지 발생한 비용보전금액과 별도로 [부록 8. 해지시지급금]에서 정하는 해지시지급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② 협약당사자들은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부록 8. 해지시지급금]에 명기된 방법에 따라 해지시지급금의 금액을 확정하고, 주무관청은 확정일로부터 제57조(해지시지급금의 지급)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한다.

③ 위 제2항에 따라 해지시지급금의 확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협약당사자들은 위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상호 합의로 지정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해지시지급금을 산정하도록 한다. 전문기관을 선정한 경우 그 비용은 귀책사유가 있는 협약당사자가 전액 부담(불가항력 사유의 경우 동등하게 분담)하며, 협약당사자들 사이에 전문기관의 지정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62조(분쟁의 해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지시지급금을 결정한다.

④ 본 협약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해지시지급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

1. 본 협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 등에 관하여 어떠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동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 사업시설의 복구에 투입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는 경우 동 보유금액 상당을 공제한다. 다만, 본 협약에서 정한 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수령 가능한 보험금을 기준으로 한다.

2. 본 협약이 해지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채권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채무를 주무관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면책적으로 인수하거나 제3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면책적으로 인수하게 한 경우 주무관청 또는 제3자가 면책적으로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제57조 (해지시지급금의 지급)

① 주무관청은 본 협약 제56조(해지시지급금)에 따라 산출된 해지시지급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금융약정에 따라 조달한 금액 중 해지일 현재 미상환원리금이 있을 경우 주무관청은 이를 금융약정(들)상 정당한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해지시지급금을 지급받기 전이라도 주무관청이 요청하는 시기에 본 사업시설 등 본 사업 관련 주무관청이 요구한 일체의 설비나 권리 등을 이전하기로 한다.

②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본 사업시설 등 본 사업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이 요구한 일체의 설비나 권리 등을 이전받은 날부터 다음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미지급 해지시지급금에 대하여 그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기준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주무관청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지되는 경우: 30일 이내
2. 불가항력사유로 인하여 해지되는 경우: 60일 이내
3. 사업시행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지되는 경우: 90일 이내

③ 주무관청의 귀책사유로 본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의 해지시지급금은 주무

관청이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액을 포함한 금액이며, 사업시행자는 해지시지급금을 지급받는 외에 주무관청에게 본 사업의 중도해지로 인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위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주무관청은 관련 법령상 또는 달리 가질 수 있는 상계권에 추가하여 본 협약상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액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한 후 상계할 수 있다.

제58조 (매수청구권)

①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 사업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가 불가능한 경우, 동법 시행령 제40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주무관청에 본 사업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6개월 이상 본 사업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거나 본 사업시설의 보수비용 또는 재시공비가 원래 총민간투자비의 50%를 넘은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본 협약에서 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행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사유 발생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여 본 사업시설의 운영이 6개월 이상 지연 또는 중단된 경우
3. 그 밖에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의 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본 협약에서 정한 요건이 발생한 경우

② 사업시행자가 행사한 매수청구를 주무관청이 인정하여 그 인정사실을 통지한 문서가 사업시행자에게 도달한 날 본 협약은 해지된다.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매수청구가 인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가액의 수액, 지급시기, 지급방법을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한다. 단, 매수금액은 매수청구의 사유에 따라 제56조(해지시지급금) 및 [부록 7. 해지시지급금]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59조 (기간만료, 중도해지 및 매수청구시 선관의무)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상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만료, 본 협약의 중도해지 또는 매수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시설에 대하여 본 협약상 의무 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원만한 이전 및 인계인수를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0조 (지연이자)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이 정한 기한 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 중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지급기한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 동안 기준이자율로 일할 계산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제61조 (상계)

주무관청은 관련 법령상 또는 달리 가질 수 있는 상계권에 추가하여, 협약당사자 사이의 합의 및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회수 또는 지급받을 금액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사업시행자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할 수 있다.

제 12 장 분쟁의 해결

제62조 (분쟁의 해결)

① 협약당사자들은 본 협약으로부터 또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의 또는 분쟁(이하 "분쟁"이라고 한다)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② 위 제1항에 의한 협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본 협약에 따른 전문기관의 검토 및 산정, 판단, 결정 등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해결한다.

③ 협약당사자들이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민간투자법에서 정한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회부하기로 별도로 합의하는 경우, 민간투자법에서 정한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따르기로 한다.

제63조 (분쟁금액)

① 협약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본 협약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된 금원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이의를 제기한 협약당사자는 이의가 없는 금원을 지급하고, 분쟁의 해결 시까지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② 분쟁의 해결 시까지 보류된 모든 금원 중 이의가 있는 부분에 관하여는,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당해 금원이 그러한 금원에 대한 이의가 없었더라면 지급되었을 일자로부터 실제 지급일 전일까지 기준이자

율로 계산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4조 (중재)

① 협약당사자는 중재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 중재법 및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되도록 합의할 수 있다

② 중재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한국어이며, 중재부의 구성, 중재인의 선임 및 중재 절차에 관하여는 상사중재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령 등에 따른다.

③ 중재판정은 특별한 항소 수단에 따르지 않고 협약당사자에게 궁극적인 구속력이 있다. 이에 대하여 협약당사자는 법원이나 달리 관할을 가지는 사법당국에 대한 여하한 형태의 항소나 상환청구권을 배제하며 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

제 13 장 기타사항

제65조 (민원처리)

①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음, 악취, 진동, 분진, 교통장애, 기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본 사업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은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며, 이에 대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운영민원에 대한 사전 예방책을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계획에 포함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제3자의 민원 또는 청구를 접수한 경우 성실한 자세로 그 민원 또는 청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요청하는 경우 민원해결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제3자의 민원 또는 청구를 처리할 때 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민원처리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의 민원처리 시간 및 위 제4항에 따른 만족도 조사 결과는 제46조(성과의 평가)에 따라 성과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제66조 (협약의 변경)

① 본 협약은 협약당사자들 모두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서면 약정에 의해서만 변경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 체결 이후에 확정 또는 조정되도록 예정된 내용이 본 협약에 따라 결정되고 협약당사자가 이를 확인하는 때에 별도의 변경협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그 결정된 내용으로 본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 체결 이후 대중교통 요금 체계의 개편, 신교통카드시스템 등 제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대방 협약당사자에게 본 협약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협약의 변경 여부는 협약당사자들이 협의하여 결정하

되, 민간투자법의 취지와 본 협약에 보장된 사업시행자의 사업성 확보여부 및 본 협약에 규정된 협약당사자간의 위험배분 원칙이 유지될 수 있게 되었는가의 여부를 고려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67조 (협약의 수익자)

본 협약은 협약당사자와 그 승계인 또는 본 협약상 허용된 양수인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본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협약당사자와 그 승계인 또는 본 협약상 허용된 양수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취지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68조 (지식재산의 취득 및 사용)

① 사업시행자가 협약기간 동안 취득한 지식재산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명의로 등록한다.

② 주무관청이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협약기간 동안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지식재산을 법령상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복사, 재생, 수정, 번역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하며, 관리운영수탁자로 하여금 관리운영위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사, 재생, 수정, 번역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운영수탁자는 이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본 사업시설을 운영하는 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③ 협약기간의 만료 또는 본 협약의 중도해지 시 사업시행자는 협약기간 동안 획득 및 소유한 지식재산권을 주무관청에 무상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또한, 협약기간의 만료 또는 본 협약의 해지 시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수탁자로 하여금 관리운영위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영수탁자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지식재산을 주무관청에게 이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식재산이 제3자에게 귀속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이 위 제2항과 제3항의 목적을 위하여 지식재산을 복사, 재생, 수정, 번역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제3자로부터 허용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⑤ 주무관청은 지식재산에 관하여 엄격하게 비밀이 유지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그 전부나 일부를 본 협약 상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제69조 (회계장부 · 재무보고서와 기록유지)

① 사업시행자는 관련 법령 및 대한민국의 승인된 회계원칙에 따라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독립적인 회계법인을 선임하여 자신의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를 매년 감사하게 하고, 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 유지보수에 관한 모든 기록을 작성 및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이 본 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요청할 경우 제3항

에 따른 기록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해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0조 (수요활성화 노력)

①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은 우이-신설 도시철도 경량전철의 수요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이 수요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이에 적극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홍보활동, 부정승차 방지 등 본 사업의 수입증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운임수입 및 부속사업수입 등 운영수입 증대를 위한 창의적인 방안을 주무관청에게 제안할 수 있다.

제71조 (자금차입 등과 관련한 주무관청의 협조)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 수행에 있어 국내외 금융기관을 주간사로 하는 대주단과 사업시행자 간에 체결된 금융약정에 따라 자금차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동 자금차입이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성공에 불가결한 요소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② 주무관청은 대주단이자 자금 관리를 위하여 본 사업의 관리운영권에 대한 담보 등을 설정할 경우 대주단과 사업시행자간의 관리운영권 담보계약 등을 인정해 준다.

③ 사업시행자는 대주단과의 금융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금융약정 상의 채무불이행 사유 발생 등으로 대주단이 담보권 등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대주단의 이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중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주단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대리금융기관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72조 (주무관청의 협약준수 의무)

주무관청은 본 협약이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짐을 확인함과 아울러 본 협약과 관련한 소송의 당사자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또한, 주무관청은 그 자산이나 그 수입에 대한 소송, 집행, 가처분이나 기타 법적 절차에 있어서 본 협약에 따른 주무관청의 의무에 관하여 통치행위 등을 이유로 면책주장이나 항변을 하지 않기로 하며 이는 취소할 수 없다.

제73조 (일부무효)

관할 법률상 본 협약의 특정 규정의 위법, 무효나 집행 불가능은 그 범위 내에서만 그 관할에서의 유효성, 적법성이나 집행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며, 기타 다른 관할 법률에서의 또는 본 협약 상 타 규정의 적법성, 유효성 또는 집행가능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4조 (완전합의)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본 협약과 본 협약에 따라 협약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된 서면 약정들은 협약당사자들 사이의 완전한 합의임을 확인하며, 본 협약의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협약당사자들 사이의 모든 의사표시 또는 합의에 우선한다.

제75조 (비밀유지)

① 협약당사자들은 본 협약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언제라도 그리고 본 협약의 해지나 종료 이후 5년 동안은 본 협약의 조건과 본 협약을 수행하면서 얻어진 정보를 보관(사업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하며 비밀로 유지하고, 상대방 협약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자에게도 동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 위 제1항에 의한 제한은 아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협약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현재 또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공지의 사실이 된 정보의 공개
2. 상대방 협약당사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획득하지 않고 협약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의 공개
3. 법령에 의하여 그 공개가 요구되어지는 정보의 공개
4. 중재, 재판 또는 행정절차에 따른 정보의 공개
5. 정보공개 당사자의 법률자문,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③ 협약당사자는 선의의 경우에는 비밀유지의무를 조건으로 다음의 자에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국회, 시의회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협약당사자를 대리하거나 자문하는 자
3. 협약당사자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관 및 그 자문인

4. 본 협약에 언급된 보험증서 또는 보험제안서 상 보험자
5. 관리운영수탁자, 사업시행자의 수급인, 수임자 및 이들의 하수급인
6. 기타 주무관청이 본 사업과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관계기관

④ 위 제3항의 공개는 협약당사자가 본 협약이나 본 협약에 따른 기타 계약을 이행, 준수하고 본 협약상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집행하는데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제76조 (준거법)

본 협약은 대한민국 법에 의거하여 규율되고 해석된다.

제77조 (통지)

① 본 협약 상의 통지나 문서의 송달은 다음의 주소 또는 협약당사자가 지정하는 주소로 하여야 한다.

1. 주무관청에 대한 통지
   - 주소 :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6층 도시철도과
   - 수신 : 서울특별시장(도시철도과장)
   - 전화 :
   - 팩스 :
2. 사업시행자에 대한 통지
   - 주소 :
   - 수신 ;
   - 전화 :
   - 팩스 :

② 협약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그 변경된 주소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 통지는 통지의 접수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③ 본 협약 상의 통지는 우편인 경우 직접 당해 주소에 송달된 때, 팩스에 의한 경우에는 전송 확인이 발송되는 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단, 통지가 송달된 날이 영업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통지는 다음 영업일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8조 (언어)

① 본 협약은 한글본으로 작성되며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한다.

② 외자조달 필요성에 의해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한국어와 영문본을 병행 작성하여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경우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79조 (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은 그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② 본 협약은 본문과 부록으로 구성되며, 부록은 본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당사자들은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서울특별시	우이신설도시철도 주식회사
시장 오 세 훈 (인)	대표이사 ○ ○ ○ (인)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실 시 협 약 부 록(안)

2024. 12. 00.

부록 1. 본 사업의 개요

1. 사업명 : 우이-신설 도시설도(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 우이신설도시철도 주식회사
3. 사업추진방식 : 민간투자법 제4조 제5호에 의한 최소비용보전 (BTO-MCC: Minimum Cost Compensation)방식
4. 사업기간 : 운영개시일 ~ 2047년 9월 1일
5. 사업구간 : 북한산우이 ~ 신설동(환승역사 3개소)
6. 사업규모 : 총 연장 11.4km, 정거장 13개소, 차량기지 1개소 종합관제실 1개소
7. 총민간투자비 : 2,805억원
8. 운행차량 : 현대로템 경량알루미늄차체 직류차량 (철제탄성차륜, 전기동차, 무인경전철방식)
9. 보유대수 : 18편성 36차량(2량 1편성)
10. 영업시간 : 평일 5:30분~익일 1:00(19시간 30분) 주말 및 공휴일 5:30~24:00(18시간 30분)
11. 운행횟수 : 평일 516회/일, 주말 및 공휴일 424회/일
12. 운행간격 : 첨두시 2분 53초~3분, 기타 4분~12분

부록 2. 출자자

주 주 명	출자지분율	비 고
합 계	100.00%	

주) 우선주 : 이익배당 우선주, 의결권 없음

부록 3. 총민간투자비

* 총민간투자비 금액 : 280,500,000,000원 (단위 : 원)

사업 연도	분기	총민간투자비 지급 및 상각 예정액			총민간투자비 지급 및 상각 예정 잔액	총민간투자비에 대한 수익금
		고정분	변동분	소계		
2024	1분기말					
	2분기말					
	3분기말					
	4분기말					
	소계					
2025	1분기말					
	2분기말					
	3분기말					
	4분기말					
	소계					
2026	1분기말					
	2분기말					
	3분기말					
	4분기말					
	소계					
2027	1분기말					
	2분기말					
	3분기말					
	4분기말					
	소계					
2028	1분기말					
	2분기말					
	3분기말					
	4분기말					
	소계					
2029	1분기말					
	2분기말					
	3분기말					
	4분기말					
	소계					
2030	1분기말					
	2분기말					
	3분기말					
	4분기말					
	소계					
2031	1분기말					
	2분기말					
	3분기말					
	4분기말					
	소계					
2032	1분기말					
	2분기말					
	3분기말					

사업 연도	분기	총민간투자비 지급 및 상각 예정액			총민간투자비 지급 및 상각 예정 잔액	총민간투자비에 대한 수익금
		고정분	변동분	소계		
	4분기말					
	소계					
2033	1분기말					
	2분기말					
	3분기말					
	4분기말					
	소계					
2034	1분기말					
	2분기말					
	3분기말					
	4분기말					
	소계					
2035	1분기말					
	2분기말					
	3분기말					
	4분기말					
	소계					
2036	1분기말					
	2분기말					
	3분기말					
	4분기말					
	소계					
2037	1분기말					
	2분기말					
	3분기말					
	4분기말					
	소계					
2038	1분기말					
	2분기말					
	3분기말					
	4분기말					
	소계					
2039	1분기말					
	2분기말					
	3분기말					
	4분기말					
	소계					
2040	1분기말					
	2분기말					
	3분기말					
	4분기말					
	소계					
2041	1분기말					
	2분기말					
	3분기말					
	4분기말					

사업 연도	분기	총민간투자비 지급 및 상각 예정액			총민간투자비 지급 및 상각 예정 잔액	총민간투자비에 대한 수익금
		고정분	변동분	소계		
	소계					
2042	1분기말					
	2분기말					
	3분기말					
	4분기말					
	소계					
2043	1분기말					
	2분기말					
	3분기말					
	4분기말					
	소계					
2044	1분기말					
	2분기말					
	3분기말					
	4분기말					
	소계					
2045	1분기말					
	2분기말					
	3분기말					
	4분기말					
	소계					
2046	1분기말					
	2분기말					
	3분기말					
	4분기말					
	소계					
2047	1분기말					
	2분기말					
	3분기말					
	소계					
합계						

주1) 총민간투자비 지급 및 상각 예정액은 2025. 1. 1.부터 3개월(분기) 단위로 산정된 것임.

주2) 총민간투자비에 대한 수익금은 직전 분기의 말일 총민간투자비에 대하여 총민간투자비 사업수익률로 당해 분기의 초일부터 당해 분기의 말일까지 일할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위 금액은 고정수익률 연 [2.85]%, 변동수익률은 기준금리 [2.85]%에 가산금리 [0.60]%를 더한 연 [3.45]%로 가정하여 총민간투자비 사업수익률 연 [3.1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추후 제29조(사업수익률)에 따른 총민간투자비 사업수익률 변동에 따라 변경됨.

부록 4. 관리운영비

(단위 : 백만원)

사업연도	관리운영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2044					
2045					
2046					
2047					
합 계					

주1) 관리운영비는 2023. 1. 1. 불변가격 기준임.

주2) 매 1년 동안의 관리운영비(경상 관리운영비)는 당해 연도 직전 연도말까지의 소비자 물가지수변동분에 따라 조정함.

주3) 항목별 운영비 금액은 [부록 9. 재무모델]에서 정한 바와 같음.

부록 5. 대체투자

1. 본 사업시설에 관한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의 대체투자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기타 구체적인 조건은 필요시마다 협약당사자들이 합의하는 바에 따른다.

항 목	업 무 범 위	
	사업시행자	주무관청
대체투자 계획	•계획 수립(장기, 중기, 단기) 및 필요비용 산출 •대체투자 필요성 입증	•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승인 •필요 행정절차 지원
대체투자 예산편성	•관련 자료의 적시 제출	•예산편성 추진
대체투자 집행	1) 주무관청이 집행하는 경우 •협조 · 지원 2) 주무관청의 집행 지시 하에 사업시행자가 집행하는 경우 •시기, 운용목적에 맞는 대체투자 집행	1) 주무관청이 집행하는 경우 •시기, 운용목적에 맞는 대체투자 집행 2) 주무관청의 집행 지시 하에 사업시행자가 집행하는 경우 •비용 지원
대체투자 관리 · 감독 ※주무관청의 집행 지시 하에 사업시행자가 집행하는 경우에 한함	•대체투자 집행현황 제출 •관리 · 감독을 위한 본 사업시설 출입 및 자료제출 요구 등 관련 업무 협조	•관리 · 감독 •성과평가

2. 협약당사자는 대체투자에 관한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이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3. 분야별 대체투자비

(단위 : 백만원)

항 목			금액
분 야	세부 항목		총액
기계			
건축			
궤도			

항 목			금액
전기			
신호			

항 목			금액
통신			
차량			
분야별 대체투자비 합계			

[연도별 대체투자비]

(단위 : 백만원)

구분	합 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대체투자비									
기계									
건축									
궤도									
전기									
신호									
통신									
차량									

구분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대체투자비									
기계									
건축									
궤도									
전기									
신호									
통신									
차량									

구분	2041	2042	2043	2044	2045	2046	2047
대체투자비							
기계							
건축							
궤도							
전기							
신호							
통신							
차량							

주1) 대체투자비는 2023. 1. 1. 불변가격 기준임.

주2) 항목 및 연도별 대체투자비 금액은 [부록 9. 재무모델]에서 정한 바와 같음.

주3) 연도별 대체투자비 금액은 당해 연도 직전 연도말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적용함

부록 6. 보험가입

1. 사업시행자가 협약기간 동안 가입하고 유지하여야 할 보험은 다음과 같다.

보험의 종류	보험 대상
완성공사물보험	완성 토목 공사물
동산종합보험과 기관기계보험 또는 패키지 보험	경량전철 차량 본체 및 운영시스템
기업휴지보험	시설물에 대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영 불가시 수익손실
영업배상책임보험	제3자에게 사고로 발생한 대인 및 대물 손해배상
사용자배상책임보험	임직원의 업무상 상해 또는 재해 관련 배상책임
테러보험	전동차 및 역사의 테러사고로 인한 재물손해

2. 협약기간 중 법령의 변경, 특정 보험종목의 소멸, 특정 보험의 취득이 불가한 경우, 사회 환경의 변화 또는 보다 향상된 보험 등이 발생할 경우 등 보험을 변경하여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협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부록 7. 부속사업

1. 사업시행자는 협약기간 동안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의 부속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매점, 신문 등 가판대, 각종 자동판매기 등
   2) 통신, 휴식시설, 요식업, 소매점 등
   3) 차량 및 역사 내 광고사업
   4) 기타 편의시설

2. 사업시행자가 부속사업을 시행한 결과, 부속사업의 실제 순이익이 아래의 추정 순이익 기준치에 미달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하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이익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50:50의 비율로 공유함.

□ 부속사업 추정 순이익

(단위 : 원)

사업연도	추정 순이익	사업연도	추정 순이익
2025		2037	
2026		2038	
2027		2039	
2028		2040	
2029		2041	
2030		2042	
2031		2043	
2032		2044	
2033		2045	
2034		2046	
2035		2047	
2036			

주1) 부속사업 추정 순이익은 2023. 1. 1. 불변가격 기준이며, 실제 예상수입액(경상 예상수입액) 산정 시, 불변가격 기준일로부터 당해 연도 직전 연도말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하여 산출함.

주2) 부속사업 추정 순이익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부록 8. 해지시지급금

1. 주무관청에 의하여 해지되는 경우(사업시행자 의무불이행 사유에 의한 해지)
 : 총민간투자비에서 납입자본금을 공제한 금액을 관리운영권 부여일부터 해지일까지 정액법으로 상각한 잔액(A)

2.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해지되는 경우(주무관청 의무불이행 사유에 의한 해지)
 : 총민간투자비를 관리운영권 부여일부터 해지일까지 정액법으로 상각한 잔액(B)

3. 불가항력사유로 인하여 해지되는 경우
 1) 정치적 불가항력사유로 인하여 해지되는 경우 : A + (B-A)×⅔

 2) 비정치적 불가항력사유로 인하여 해지되는 경우 : A + (B-A)×⅓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별표 4]의 BTL 해지시지급금 중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해지' 경우를 준용

4. 해지시지급금을 산정함에 있어 주무관청이 제37조(총민간투자비 상환예정액의 조기상각)에 따라 조기 지급한 총민간투자비 상환예정액은 정액법 상각 잔액에서 제외한다.

부록 9. 재무모델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의 재무모델을 본 협약 체결 시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첨부 : 재무모델(CD, USB) 각 1식

부록 10. 성과요구수준서

Ⅰ.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부문 성과요구수준서

1. 일반사항

1.1. 목적

본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부문 성과요구수준은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련된 제반 요구 수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절차

1) 사업시행자는 동 성과요구수준을 토대로 하여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2)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부문 성과요구수준에서 요구하는 제반시설 및 설비의 유지관리·점검·보수보강·개량 등은 관련 법규 등 제반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3.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1.3.1. 시설운영계획

1) 역사시설 및 환승체계
   가) 기능 및 시설기준이 적합하고 사용자 편익을 증진시키는 역사시설 및 환승체계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환승시 사용자 동선 고려여부(최단동선고려)
      ② 사용자 편의시설 구축여부 및 관련법규 준수여부(E/S, E/V, 비상인터콤, 장애인 편의시설 등)
      ③ 환승역 연계노선 환승안내에 필요한 고객 안내 설비 구축여부(환승안내 PI, 음성유도기, 환승승객 혼잡방지를 위한 표지 및 안전시설물 등)
      ④ 지하공간 공기질 유지관리와 소독 및 방역을 포함한 역사청결 유지계획
      ⑤ 승강기, 승강장 안전문 등 사용자 편의, 안전설비 장애 발생 시 조치 및 대응계획
   나) 열차운영상 요구되는 기능을 만족하는 설비구축(신호, 통신, 관제, 역무자동화)
2) 차량기지 운영계획
   가) 차량기지(강북구 삼양동 181길 17)는 우이-신설 도시철도에 운행될 차량의 경정비 및 유치를 위한 차량기지로 한다. 단, 차량의 중정비는 별도의 시설 또는 자체 차량기지를 이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
   나) 검수정보 시스템*은 통합정보시스템과의 호환 등에 문제가 없도록 개발·구축하여야 한다.

* 검수정보 시스템 : 차량기지 내에 입고하여 검수 받은 차량에 대한 정보관리시스템으로 차량에 대한 정비, 수리내역 등 일체를 관리하는 프로그램 또는 설비

다) 차량기지 내 시설물 보안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출입자 통제 및 선로출입 절차수립 등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운임의 징수 및 정산체계

가) 현재 수도권에서 운영되고 있는 통합환승할인제 시스템과 다음 항목에 대한 호환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① 운임제도 및 운임징수방안

② 환승에 따른 운임징수 및 정산방안

③ 기후동행카드, 15분 재승차 등 서울시 운임정책에 따른 신규 제도 도입 등

4) 피난 및 방재 운영계획

가) 비상시 정거장 또는 터널에서 승객들의 피난동선 및 방재계획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정거장 또는 터널의 안전요원 및 일반승객 피난동선 운영체계

② 정거장 또는 터널의 방재계획 운영체계

나) 응급복구용 기구 및 자재 등의 정비 보관계획

5) 종합관제실 구성 및 운영

가) 구성 : 24시간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교대근무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평상시 및 이례사항 발생 시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나) 주무관청과 정보공유 : 종합관제실은 평상시 및 이례사항 발생 시에 주무관청과의 정보공유 및 상황전파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6) 운영기술이전 및 교육훈련 계획

가) 관제를 포함한 분야별 운영기술이전 및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개시 이전 교육을 완료하여야 한다.

① 분야별 운영기술이전계획 수립

② 교육훈련계획 수립

③ 교육훈련장비의 구축

7) 열차운영계획

가) 시간대별 차량편성, 배차간격 등 운영계획

① 수송수요, 영업시간, 혼잡도, 수송력 등의 수송계획

② 기본운전성능, 열차운전성능해석, 차량소요편성 및 차량수의 열차운용계획

나) 열차운영조직의 효율성

① 열차 운영조직의 규모, 인력채용계획, 업무분장 및 직급, 기능별 배분

② 열차운영계획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조직운영계획

1.3.2.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1) 차량 및 본 사업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계획
2) 유지보수에 따른 사용자 불편 저감대책의 수립
3) 본 도시철도 운영에 관련된 모든 법령 기준에 맞는 안전점검(일상점검, 수시점검 등) 계획
4) 토목, 건축, 전기, 신호, 통신, 차량 등 분야별 정기점검 및 일상점검 기준 설정 및 계획
5) 안전관리대책 및 긴급보수계획
6) 운영기간 중 효율적인 차량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인원 및 장비보유
7) 운영기간 중 효율적인 차량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연도별 유지관리예산계획에 대한 산출근거 및 관련 자료
8) 토목, 건축, 전기, 신호, 통신, 차량 등의 유지보수 항목 비용산출
9) 터널 내 환기시설 운영계획 및 분진 제거 계획
10) 운영기간 중 보험가입계획
11) 기타 본 도시철도 운영에 관련된 모든 법령에서 정한 계획 등의 수립

1.3.3. 운영기간 중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계획
1) 운영 중의 안전관리(긴급재난 · 구난계획) 계획
가) 수해, 붕괴 등 긴급상황 발생시 처리대책(운전사고 등의 보고체계 포함) 및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재대책 및 재해대책 조직구성
나) 천재지변 및 운행 중 화재, 운행정지 및 기타 비상사태에 대비한 승객 대피계획, 사고처리 및 긴급복구 등의 계획
다) 안전관리체계, 비상대응계획, 규정 및 매뉴얼 등을 종합시험운행 전까지 마련
라) 도시철도 범죄(무차별범죄 등), 테러, 사고 관련 대응 매뉴얼 및 특별안전대책의 수립
2) 운영기간 중 환경관리계획
- 운영 중 방진 방음 등과 관련된 환경관리 대책(소음 및 진동 저감장치 설치 및 관리계획, 오·폐수 처리계획, 터널 및 정거장 미세먼지 관리 대책 등)

2. 운영

사업시행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의성을 발휘하여 열차운영계획과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2.1. 역무운영계획

2.1.1. 운임체계
운임체계 및 운임징수 시스템은 기존 수도권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와 연계가 가능한 시스

템이어야 한다.

2.1.2. 역사의 운영 및 서비스 제공

본 사업구간의 역사 운영 및 서비스 제공은 사업시행자가 주관하며, 해당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매표 및 수입금관리, 출 · 개찰 감시, 승객안내 등
2) 구내시설(AFC, 방송설비, 화재감시설비, 공조, 위생, 승강, 환기, 전기설비 및 각종 부착물 등)의 감시 및 제어
3) 이례사항 발생 시 긴급조치, 복구 및 처리

2.1.3. 역무인원계획

사업시행자는 역무인원계획 시 관련법령 및 유급휴가 등을 고려한 인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2. 안전 및 방재계획

2.2.1. 안전교육

1) 사업시행자는 이용 승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직원에게 안전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는 운영기간 중 발생 가능한 비상상황에 대해 모의 대응·훈련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는 운영기간 중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이용 승객에게 시스템 사용과 관련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2.2. 방재계획

1) 대피시설
 가) 본선 및 역사에는 방재시설을 설치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나) 침수방지시설, 침입방지시설, 방화· 방재를 위한 설비, 제연설비, 물을 사용하는 소화설비, 유도등, 비상조명등 등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관련법령에 따르고, 비상구급장비 및 물품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2) 역사/본선 화재 및 방재계획을 작성하고 직원 및 승객에 충분한 방재훈련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3) 필요할 경우 안전은 시스템화하도록 하고 응급처치, 긴급출동차량 동선확보, 소방 및 화재, 주변 범죄예방 등에 대한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화재 등 긴급 시에는 적절한 초기 대응 조치를 취하고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특히, 보유 리튬배터리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며, 전용 소화설비를 마련하여 신

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화재 안전 점검이 정기적으로 시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결과 및 조치가 기록 · 관리되어야 한다.

가) 화재경보 시스템 및 산업기준과 관계 법령에 따른 화재 통제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 · 보수가 시행되어야 한다.

나) 시설의 오작동 발생 시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문제점을 찾아 수리하여야 한다.

다) “화재안전규정(Fire Regulations)” 등 화재 대피절차를 도입하여 이를 문서화 및 적용하여 점검일정을 명시하여야 한다.

2.3. 차량 및 열차운영계획

2.3.1. 다음과 같은 기술적 검토를 수행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1) 차량편성, 차량소요편성 수(예비차량 포함), 차종별 승차정원 및 만차인원, 최대수용능력, 열차 혼잡도
2) 최대축중, 열차관성중량, 주행저항, 차종별 계획중량, 최대점착 계수
3) 성능 최고속도, 운행최고속도
4) 기동가속도 및 일정가속 속도범위, 제동종류별 최대감속도
5) 정상기동가능 최급구배 및 가동조건, 열차시격, 적용규격, 차량운전모드
6) 소음, 진동대책
7) 기존 지하철 이용승객, 본 노선이용 예상승객 및 운영측면에서의 분석 및 환승노선 등 관련된 타 운영기관의 요구사항 분석내용(개략적 수요 검토로 족함)
8) 시스템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방안
9) 승강장 안전문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확보 및 고장시 제어방안
10) 운전패턴에서 상 · 하선별, 구간별 주행시간, 부하전류
11) 견인전동기 전류 실효치, 가선전류 실효치, 표정속도, 회복여유율
12) 전력회생율, 단위소비 전력량
13) 견인력 계산서 및 견인력-속도표
14) 제동력 계산서 및 제동력-속도표
15) 회생제동 소멸속도
16) 가선전압 최대, 최소 조건에서의 견인력-속도표, 제동력-속도표
17) 최소운전시격 산출 곡선
18) 차량성능(가 · 감속도, 제한속도, 최고속도 등), 신호시스템(폐색분할), 시설물 계획(배선, 회차시설) 등 열차운행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최적화된 열차운행 시뮬레이션
19) 상업운행에 적용 가능한 열차운행 DIA, 열차지연이 발생하지 않고 상업운전에 적합한 구간별 운행시간 산출, 정차 시간계획

20) 차량기지내 입환작업시의 운영계획
21) 본선운행, 회차선에서의 회차시 장애 발생 등으로 정상적인 열차운행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열차운행계획(고장조치계획 포함)

2.4. 민원대응계획

2.4.1. 다음과 같은 민원대응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본 사업과 관련한 소음, 악취, 진동, 분진, 교통장애, 기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본 사업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고, 이에 대해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2) 운영민원에 대한 사전 예방책을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계획에 포함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제3자의 민원 또는 청구를 처리할 때 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민원처리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유지관리

1)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에 대한 건축, 토목, 궤도, 선로변 방호설비, 전력·전차선, 신호 및 통신설비, 역무자동화 설비 등 제반시설의 유지보수를 수행한다.

2) 사업시행자는 다음의 각 분야에 대해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사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상적 또는 정기적으로 시설물의 상태를 조사하고, 손상부위에 대한 보수 및 보완조치를 취하여 정상상태로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가. 토목 분야
나. 궤도 분야
다. 건축 분야
라. 건축설비 분야
마. 전차선 및 전력 분야
바. 신호제어설비 분야
사. 통신설비 분야
아. 교통약자 편의시설 분야
자. 관제 분야

차. 차량 및 검수설비 분야
카. 부속시설관리 분야

3) 사업시행자는 유지보수 종사자 안전확보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대피로, 점검통로, 비탈면 접근계단, 비상통로 등이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사업시행자는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 조직, 인원 및 장비를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불필요한 낭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사업시행자는 노후화된 시설 또는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해체/폐기하고 부지를 최대한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해체계획을 정하고 주무관청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6) 사업시행자는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비품 확보 및 이례사항 발생 시 열차운행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정 비상복구자재를 적정한 위치 및 장소에 구비하여야 하며, 비상복구자재 및 예비품은 항상 정상상태로 관리하여 신속 교체 등 적절히 대응하도록 한다.
7) 기타 본 도시철도 운영에 관련된 모든 법령에서 정한 계획 등을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Ⅱ. 성과의 점검 및 평가부문 성과요구수준서

1. 성과평가의 목표

성과평가는 해당 사업의 성과를 “안전성”, “시민편의성”, “운영효율성”, “공공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와 개선을 거쳐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시행한다.

1) 안전성 : 해당 민간투자철도사업의 운영이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 협약으로 정한 성과요구수준을 충족하여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 및 평가

2) 시민편의성 : 해당 민간투자철도사업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사용자 관점에서 어느 정도의 만족감을 주는지, 열차 및 역사내 쾌적성에 대해 확인 및 평가

3) 운영효율성 : 해당 민간투자철도사업의 비용집행, 조직운영이 계획한 바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및 평가

4) 공공성 : 해당 사업시행자가 평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이행노력은 물론 공공서비스 이행을 위한 제반노력을 시행하는지에 대한 확인 및 평가

2.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1) 주무관청은 본 협약 제46조(성과의 평가)에 따른 성과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매 사업연도 종료 후 차년도 1월말까지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되, 필요시 성과평가위원회 운영 및 제반 사항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2) 성과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장 1명과 본 사업시설의 주무관청 소속 2명, 사업시행자측 2명, 관련 분야 전문가 8명을 포함하여 13명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3) 평가위원장은 주무관청이 선임한다.

4) 성과평가위원회 구성 및 성과평가를 위해 필요한 비용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담 기준은 [부록 11.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요령]에 따라 적용한다.

5)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요령은 [부록 11.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요령]과 같다.

3.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1) “안전성” 평가지표는 사고, 안전투자, 안전관리에 대한 평가로 국토교통부가 시행하고 있는「철도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결과를 수용하여 평가지표로 산정한다. 단, 안전성숙도 평가결과는 “운영효율성” 지표에서 활용함에 따라 본 지표에서는 제외한다.

2) “시민편의성”은 고객만족도, 열차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 이용환경의 쾌적성 등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이 중 고객만족도 조사는 국토교통부가 격년으로 시행하고 있는「대중교통운영기관 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활용한다. 평가결과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년도 결과를 준용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3) “운영효율성”은 운영비 집행,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계획 이행여부 및 관리조직 운영 적정성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국토교통부가 시행하고 있는「철도 안전관리 수준평가」중 안전성숙도 평가결과를 적용한다.

4) “공공성”은 운영 성과평가 결과의 이행여부, 재정절감 노력, 사회공헌활동 등 민자도시철도 서비스의 공공성 확립을 위한 평가지표로, 정성평가를 기준으로 수행한다.

<성과평가 지표별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평가지표	세부 평가항목	배점	기준	비고
합 계			100		
안전성 (35)	사고지표	철도교통사고/안전사고/운행장애/사상자	19	정량	철도 안전관리 수준평가 (운영자 기준, 국토교통부) 결과 활용 (안전성숙도 제외, 환산 적용)
	안전투자	안전투자 집행실적 달성률/매출액 대비 안전투자 예산 비율	8		
	안전관리	정기검사	8		
시민 편의성 (30)	고객만족도 조사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편리성, 환경성, 안전성, 정보제공 등)	6	정량	대중교통 운영기관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국토교통부) 결과 활용
	민원처리 대응	민원처리 신속성 / 민원처리 지연건수 / 민원처리 만족도	4	정량	
	신뢰성	열차 운행 정시율	12	정량	
	쾌적성	첨두시 열차 평균 혼잡도 평점, 혼잡도 개선노력	5	정량/정성	출근 첨두시
		열차/역사내 공기질 오염도 측정결과, 공기질 개선노력	3	정량/정성	

기준	평가지표	세부 평가항목	배점	기준	비고
운영 효율성 (25)	운영비 집행	운영비 집행률	4	정량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계획 이행여부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계획 이행여부	8	정성	
	대체투자비 집행 적정성	대체투자 집행 적정성	5	정성	
	관리조직 운영 적정성	안전관리시스템/열차운행체계/유지관리체계/경영진 운영 적정성	8	정량/ 정성	철도 안전관리 수준평가 (운영자 기준, 국토교통부) 결과 중 안전성 숙도 결과 활용
공공성 (10)	평가결과 개선 이행여부	평가결과 개선 이행여부	5	정량	
	재정절감 노력	재정절감 이행 노력	4	정성	
	사회공헌활동	사회공헌활동	1	정성	
가감점	가점	·전년도 국토교통부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최고 등급을 받은 경우 ·철도안전·서비스 향상을 위한 우수 시책 적용 시 ·무장애(철도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행장애), 무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따른 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에 따른 중대재해)인 경우	건별2 건별1 건별2	정량/ 정성	
	감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5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감독명령을 받은 경우(의무 미이행 또는 유지관리 소홀 등 부정적인 사유에 한함) · 관련 법령 위반사항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존 발생한 운행(경미)장애 관련 사업시행자의 재발방지대책에도 불구하고 동 대책을 이행하지 아	건별 1 건별 1 건별 2 건별 3 건별 1	정량	

기준	평가지표	세부 평가항목	배점	기준	비고
		니하여 동일한 원인으로 재발한 경우			

가) 안전성 평가지표

-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안전성숙도 제외)를 본 평가 배점에 맞게 환산 적용

기준	평가지표	세부 평가항목	국토교통부 평가 배점	본 평가 환산 배점
안전성	소 계		70	35
	사고지표	철도교통사고/안전사고/운행장애/사상자	35	19
	안전투자	안전투자 집행실적 달성율/매출액 대비 안전투자 예산 비율	20	8
	안전관리	정기검사	15	8

※ ‘사고지표’의 경우 운영개시일 이후의 발생 건부터 적용함

나) 시민 편의성 평가지표

- (고객만족도 조사) 국토교통부에서 격년으로 시행하는 「대중교통 운영기관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를 본 평가 배점에 맞게 환산 적용

기준	평가지표	세부 평가항목	국토교통부 평가 배점	본 평가 환산 배점
시민 편의성	고객만족도 조사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편리성, 환경성, 안전성, 정보제공 등)	20	6

- (민원처리 대응) 홈페이지, 유무선을 통해 접수된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 접수 후 처리까지 소요시간, 지연건수, 처리된 민원에 대한 만족도 결과를 평가

· 민원의 접수 경로는 인터넷(홈페이지, 앱), 국민신문고, 전화(교통정보센터, 대표전화), 방문, 문서접수(우편, FAX) 등으로 분류

· 민원처리 일시는 최종 답변일시로 보며, 민원인에게 최종 답변하거나 민원 처리한 일시

· 민원처리 경과 일수는 ‘일’로 계산하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정기일에서 제외

※ 단,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민원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① 본 사업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이 아닌 경우

② 악의적으로 민원을 상습 제기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③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가 민원을 제기한 경우
④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

· **민원처리 신속성 (1점)**
- 민원관리 대상건수 자료를 기준으로 민원 접수 후 처리까지 소요시간 평가

민원처리 신속성(시간) = Σ(민원처리 소요시간) / 건수 × 배점

배점기준(시간)	40시간 이하	40시간 이상 50시간 미만	50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60시간 이상 70시간 미만	70시간 이상
점 수	1	0.8	0.6	0.4	0.2

· **민원처리 지연 건수 (1점)**
- 민원관리 대상건수 자료를 기준으로 민원 접수일로부터 7일 이후 처리 건수 평가

민원처리 지연비율 = 민원처리 지연건수/전체 민원건수, 비율에 따른 부여점수 ×배점

지연비율	2% 미만	2% 이상 5% 미만	5% 이상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점 수	1	0.8	0.6	0.4	0.2

· **민원처리 만족도 (2점)**
-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 민원인의 만족도 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값을 정량화하여 제시

민원처리 만족도 = {Σ(민원처리 만족도 점수) / 건수} / 7 × 배점

척 도	매우만족	만족	다소만족	보통	다소 불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점 수	7	6	5	4	3	2	1

- (신뢰성) 열차운행 정시율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지연 시간을 계획된 배차간격의 2배까지를 허용 가능한 오차범위로 하고 초과 시 열차지연으로 판단하여 평가에 반영
  · 열차 정시율 95%를 만족하지 못하는 일수에 따라 배점을 적용하며, 정시율 수준에 따라 감점 적용
  ※ 단,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열차 지연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① 천재지변이나 선로 투신, 승객 구호 활동 등의 외부 요인
  ② 지상교통 마비 또는 타 호선 장애로 인한 일시적인 승객 폭주로 인한 지연
  ③ 열차 또는 역사, 시설물 범죄 발생으로 인한 지연

④ 열차운행 지장을 초래하는 집회 및 시위 등으로 인한 지연
⑤ 기타 사업시행자가 통제 불가능한 사유로서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경우

· **열차 정시율 = 기준시간 이내 도착 열차수 / 총 열차 운행편수 (단위:%)**
- 중정비 및 대수선 기간으로 예비차량이 부족한 경우는 이를 고려하여 평가함
- 열차 정시율은 '일'단위로 산정

· **열차 정시율 기준치 미달일수에 따른 배점 (12점)**

미달일수	5일 미만	5~9일	10~14일	15~19일	20일 이상
점 수	12	8	6	4	2

· **열차 정시율 수준에 따른 감점**

정시율	85% 이상 95%미만	75% 이상 85% 미만	75%미만
점 수	-1	-2	-3

- (첨두시 열차 평균 혼잡도) 최고 혼잡구간의 1시간 열차내 혼잡도를 산정하여 정량평가, 혼잡도 완화를 위한 사업시행자의 노력을 정성평가
· 아래 혼잡도 평점 산식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되,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반영

· 혼잡도 평점 (정량 2점) = {50 + (평균 혼잡도 - 최고목표 혼잡도) / (최저목표 혼잡도- 최고목표 혼잡도) × 50} / 100 × 배점
- 열차 혼잡도 산정기준 : 최고 혼잡구간에 대한 1시간(평일 07:30~08:30) 열차내 혼잡도(편도방향)
- 혼잡도 = 실제 탑승인원(명) / 열차탑승기준인원(명)
- 평균 혼잡도 = Σ(최고 혼잡구간 운행열차 혼잡도) / 운행열차수
※ 최고 목표 혼잡도 : 190%, 최저 목표 혼잡도 : 150%

· **열차 혼잡도 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기준 (정성 3점)**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점 수	3	2	1
판단기준	주요역 안내요원 배치 열차내 수요 분산 등 혼잡관리 정책 추진여부	주요역 안내요원 배치	-

- (역사 내 공기질) 측정 대상 역사는 주요 환승역의 승강장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 협의를 통해 결정
· 평가는 5종 오염물질에 대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모두 만족 시 만점을 부여하되, 단 1종이라도 불만족 항목 발생 시 점수 미부여

· 역사내 공기질 오염도 = Σ(측정 결과에 따른 배점) / 측정 역사수 × 배점
- 측정위치 : 승강장
- 공기질 측정 시료채취 지점 수 : 다중이용시설 연면적에 따라 최소 시료 채취지점 수
(10,000㎡이하 : 2개소, 10,000~20,000㎡ : 3개소, 20,000㎡ 이상 : 4개소)

· **역사 내 공기질 측정 결과 배점 적용 (정량 2점)**

구 분	5종 오염물질 유지기준 모두 만족 시	5종 오염물질 유지기준 불만족 항목 발생 시
점 수	2	-

· 역사 내 공기질 측정 기준

오염물질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하이드	일산화탄소
유지기준	100㎍/㎥ 이하	50㎍/㎥이하	1,000ppm 이하	100㎍/㎥이하	10ppm이하

· 역사 내 공기질 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기준 **(정성 1점)**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점 수	1	0.5	-
판단기준	공기청정시설 설치 등 개선 노력	역사 내 혼잡관리/환기관리	-

다) 운영 효율성 평가지표

- (운영비 집행) 협약상 운영비용 대비 실제 집행한 관리운영 목적의 운영비용 집행률 적용

집행률	100%	95% 이상 100% 미만	90% 이상 95% 미만	85% 이상 90% 미만	85% 미만
점 수	4	3	2	1	-

-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계획 이행 여부) 계획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계획의 이행상태를 정성평가를 통해 적정성 평가

구 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 수	8	7	6	5	4

- (대체투자비 집행 적정성) 대체투자계획 수립의 적정성, 예산 확보, 대체투자비 적기투입 및 집행, 이행실적 등을 종합 고려하여 평가

· 대체투자비 집행 적정성(정성5점)

구 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 수	5.0	4.5	4.0	2.0	-

- (관리조직 운영 적정성) 국토교통부 「철도 안전관리 수준평가」 중 안전성숙도 항목 결과를 본 평가 배점에 맞게 환산 적용

구 분	세부 평가항목	국토교통부 평가배점	본 평가 환산 배점
관리조직 운영 적정성	소 계	30	8
	안전관리시스템	10	2
	열차운행체계	6	2
	유지관리체계	6	2
	경영진	8	2

라) 공공성 평가지표

- (평가결과 개선 이행여부) 전년도 성과평가 지적사항 등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개선 이행실적을 정량적으로 평가 (정량5점)

구 분	조치완료 (100%)	부분조치				미조치
		9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90% 미만	50% 이상 75% 미만	25% 이상 50% 미만	
점 수	5	4	3	2	1	-

- (재정절감 노력) 주무관청 재정절감, 이익공유, 수요 증대, 부속사업수입 증대 노력 등을 정성적으로 평가

· 재정절감 이행 노력(정성 4점)

구 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 수	4.0	3.5	3.0	1.0	-

- (사회공헌활동)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 공헌 등 사업시행자의 노력 정성평가(정성 1점)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점 수	1.0	0.5	-

4.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1)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로 관리운영비를 조정한다.
- 패널티 : 해당연도의 관리운영비의 일정비율 차감
- 인센티브 : 해당연도의 관리운영비의 일정비율 추가인정

※ 단, 패널티 및 인센티브 금액의 최소·최대 한도 설정을 통해 운영안정성 및 재정 추가확보 부담을 방지하되, 해당연도 확보된 예산한도 이내에서 시행한다.
- 최소한도 : 해당연도 관리운영비의 97.5%
- 최대한도 : 해당연도 관리운영비의 100~102.5% (확보 예산한도 내)

<평가 기준별 점수에 따른 관리운영비 조정>

평가점수	60점 미만	60점 이상 ~ 70점 미만	70점 이상 ~ 80점 미만	80점 이상 ~ 85점 미만	85점 이상 ~ 95점 미만	95점 이상
해당연도 관리운영비 차감률	2.5%	2%	1.5%	1%	0%	
해당연도 관리운영비 추가인정률						0~2.5%

2) 이 때, 차감/추가인정이 있을 경우 차감률/추가인정률을 해당연도의 관리운영비에 곱하여 산출한 총 차감/추가인정금액을 1/4씩 4분기에 나누어 비용보전금액 지급시 기준으로 삼는다.

① (N-1)년도의 점수가 80점, N년도의 관리운영비가 200억 원인 경우

⇒ 차감률이 1%이므로, 200억 원 × 1% = 2억 원을 4분기에 나누어 각 분기에 5,000만 원씩 차감하여 관리운영비를 인정한다.

② (N-1)년도의 점수가 95점, N년도의 관리운영비가 200억 원인 경우

⇒ 예산확보 범위에 따라 최대 2.5%인 경우를 상정시, 200억원 × 2.5% = 5억원을 4분기에 나누어 각 분기에 1.25억원 씩 추가로 관리운영비를 인정한다.

3) 주무관청은 성과평가 결과가 85점 미만인 평가대상 기관에 대해서는 미흡 사항에 대해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계획의 개선계획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80점 미만인 평가대상 기관에 대해서는 필요시 철도안전관리체계 검사, 정밀안전진단 등 필요한 검사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부록 11.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요령

제1조 (목적)

본 요령은 운영기간 동안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본 협약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의 의무 및 서비스 제공수준에 대한 성과점검 및 확인, 그 결과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평가
2. 본 사업시설에 대한 안전성, 시민편의성, 운영효율성, 공공성, 그리고 가감점에 관한 사항 평가
3. 사업시행자의 성과 관련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평가
4. 본 협약 또는 주무관청이 위원회가 수행하도록 위임한 업무

제3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평가위원장 1명과 본 사업시설의 주무관청 소속 2명, 사업시행자측 2명, 관련 분야 전문가 8명을 포함하여 13명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주무관청 선임 : 평가위원장(1명), 주무관청 소속(2명), 관련분야 전문가(4명)

③ 사업시행자측 선임 : 사업시행자측(2명), 관련분야 전문가(4명)

④ 평가위원의 자격

1. 주무관청의 경우는, 6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부장급 이상
2. 사업시행자의 경우는 부장 이상
3. 관련분야 전문가의 경우는, 1) 철도관련분야 박사, 2) 철도관련 분야 기술사, 3) 법인회사의 임원으로 10년 이상 철도관련 경력이 있는 자, 4)철도관련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로, 각 분야(토목, 건축, 소방, 신호제어, 정보통신, 차량 등)를 감안하여 선임하되, 각 선임주체(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를 말하며, 이하 ‘선임주체’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한다.

가. 선임 당시 또는 최근 3년 이내 각 선임주체의 소속 직원 및 계열사 직원(소속 · 계열사 직원이었던 자)

나. 각 선임주체의 주식, 채권 또는 자본금을 2%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

다. 기타 각 선임주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해당 단체

의 직원으로 근무한 자 포함)

⑤ 모든 평가위원은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허위평가 및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평가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정평가각서에는 “허위평가 및 부정행위 발생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주무관청 소속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간사는 성과평가를 위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성과평가를 수행하지 않는다.

제5조 (비용의 부담)

① 성과평가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한 평가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수당 · 여비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평가위원이나 공무원인 관계전문가가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평가준비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되, 성과평가위원회 개최비 및 평가위원 수당은 주무관청이 부담한다.

제6조 (회의)

① 평가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개별 평가위원이 평가한 결과가 주무관청의 관리운영비 조정 결정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실제 수행한 성과평가절차가 본 협약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전체 성과평가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이 결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성과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본 협약의 체결 시 예상하지 못했던 사유로 인해 “성과요구수준서의 성과평가체계”에서 제시된 평가항목 또는 기준 중에서 일부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내용에 한하여 전체 평가위원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로 그 평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 평가위원 등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수행업무를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위원장이 평가위원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요령의 효력은 본 협약의 체결과 동시에 발생하며 본 협약의 종료와 함께 소멸한다.

부록 12. 초기운영비

초기운영비의 항목과 금액은 아래와 같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초기운영비		비 고
	불변가격	경상금액	
인 건 비			
제 경 비			
보 험 료			
자 금 조 달 수 수 료			
합 계			

주1) 불변가격은 2023. 1. 1. 기준 금액이며, 경상금액은 당해 연도 직전 연도말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에 따라 조정함.

주2) 항목별 금액은 [부록 9. 재무모델]에서 정한 바와 같음.

구 고 시

◈ 도봉구고시 제2024-91호

도시관리계획(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00호(2022. 9. 29.)로 결정(변경) 고시된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도 봉 구 청 장

가. 결정(변경) 취지
- A-10 가구 내 도봉로변 건축물 배치 계획 변경을 통해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나. 도시관리계획(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건축물 배치 · 형태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건축선 결정(변경) 조서
■ 건축물의 건축선 결정(변경) 조서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적용기준	비고
기정	건축지정선	도봉로	• 가로활성화를 위한 건축지정선 지정	• 저층부(1~3층) 건축지정선 3m	
	건축한계선	방학로, 마들로	• 보행편의를 위해 건축선 후퇴	• 건축한계선 3~5m	
		구청사 남측	• 구청사부지와 인접블록간 선적 공개공지 조성	• 건축한계선 5m	
		이면부	• 차량 및 보행의 서비스활동 제고	• 건축한계선 1~4m	
		보차혼용통로 지정구역	• 보차혼용통로 공간 확보	• 건축한계선 6m	
변경	건축지정선	도봉로	• 가로활성화를 위한 건축지정선 지정	• 저층부(1~3층) 건축지정선 3m	A-10 가구 제외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적용기준	비고
	건축한계선	도봉로	• 가로 미관 증진 및 보행공간 확보	• 건축한계선 3m	A-10 가구
		방학로, 마들로	• 보행편의를 위해 건축선 후퇴	• 건축한계선 3~5m	
		구청사 남측	• 구청사부지와 인접블록간 선적 공개공지 조성	• 건축한계선 5m	
		이면부	• 차량 및 보행의 서비스활동 제고	• 건축한계선 1~4m	
		보차혼용통로 지정구역	• 보차혼용통로 공간 확보	• 건축한계선 6m	

■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건축한계선	• A-10 가구 내 도봉로변 건축지정선을 건축한계선으로 변경	• 가로 미관 증진 및 보행공간 확보를 위한 건축물 배치 계획 변경

나) 대지 내 공지 및 가로 통로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대지 내 공지 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계획내용	적용구역	비고
기정	전면공지	간선 도로변 (도봉로)	• 건축지정선에 의한 전면공지 • 간선도로변 미관증진 및 보행공간 확보 • 접하는 보도와 단차를 없애고,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 • 통행방해물의 설치 금지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지정선 3m 보도부속형으로 조성
		그 외	•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 • 보·차도와 접하는 곳은 단차를 없애고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한 구조로 설치 • 주차장, 통행방해물의 설치 금지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보도부속형으로 조성
			•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 • 차량통행이 원활한 구조로 설치	• 방학동 713-10, 713-44, 713-11번지 도봉로150바길 변 • 방학동 716-2번지 도봉로 150다길 변	차도부속형으로 조성
			•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	• 방학동 715-9번지	건축한계선 4m 중

구분			계획내용	적용구역	비고
			•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원활한 구조로 설치	도봉로150바길 변 • 방학동 717, 718-30, 718-5번지 도봉로150다길 변	도로변으로 2m 차도부속형, 나머지 2m는 보도부속형으로 조성
변경	전면공지	간선 도로변 (도봉로)	• 건축지정선 및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 • 간선도로변 미관증진 및 보행공간 확보 • 접하는 보도와 단차를 없애고,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 • 통행방해물의 설치 금지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지정선 및 건축한계선 3m 보도부속형으로 조성
		그 외	•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 • 보·차도와 접하는 곳은 단차를 없애고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한 구조로 설치 • 주차장, 통행방해물의 설치 금지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보도부속형으로 조성
			•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 • 차량통행이 원활한 구조로 설치	• 방학동 713-10, 713-44, 713-11번지 도봉로150바길 변 • 방학동 716-2번지 도봉로150다길 변	차도부속형으로 조성
			•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 •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원활한 구조로 설치	• 방학동 715-9번지 도봉로150바길 변 • 방학동 717, 718-30, 718-5번지 도봉로150다길 변	건축한계선 4m 중 도로변으로 2m 차도부속형, 나머지 2m는 보도부속형으로 조성

■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전면공지	• 간선도로변(도봉로)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 조성	• A-10 가구 내 도봉로변 건축지정선을 건축한계선으로 변경

다. 관계도서 :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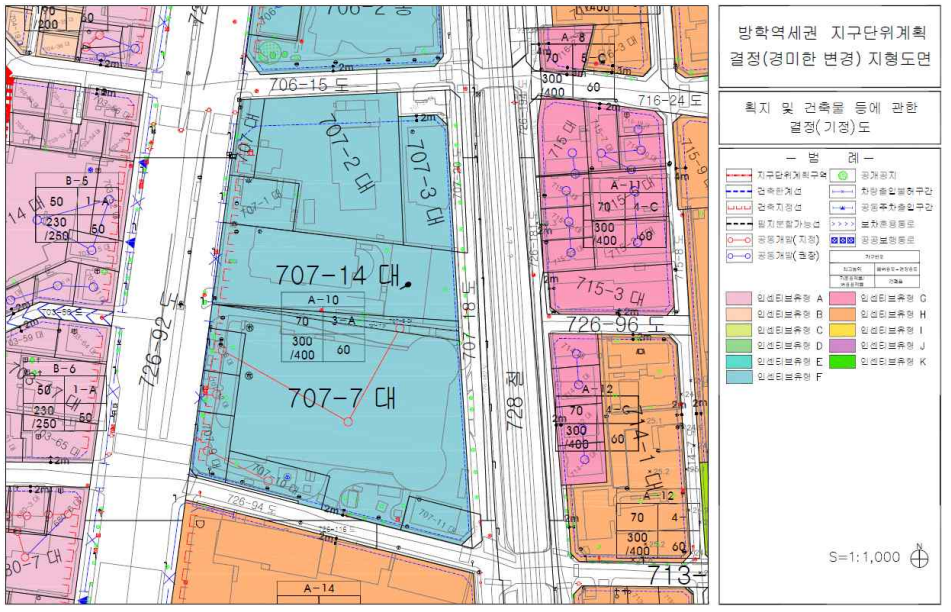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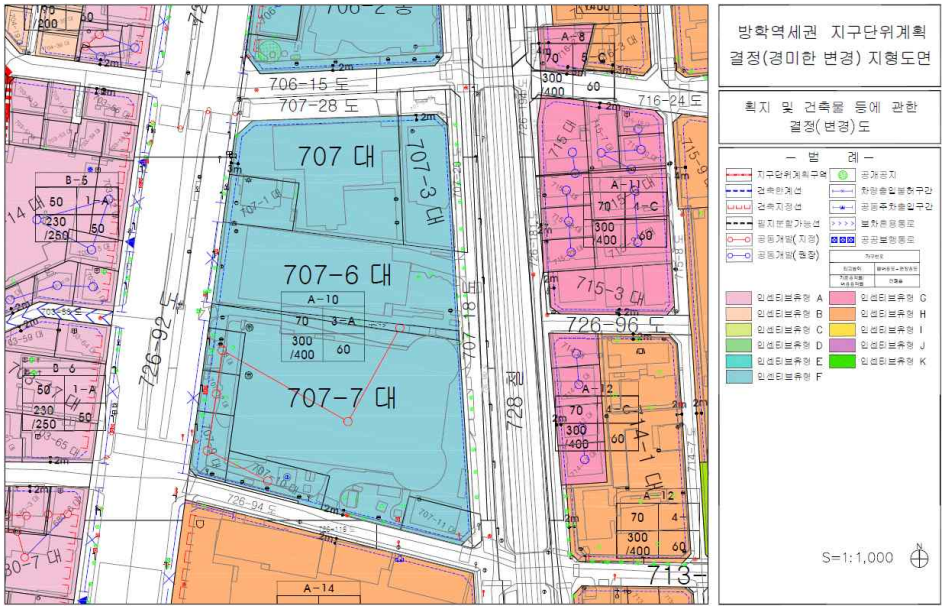
※ 붙임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라. 주민들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계획과(☎02-2091-3563)에 관계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위치 : 방학동 707-1번지 일대)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기정	
변경	

※ 금회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는 A-10 가구에 대한 변경임

◈ 강서구고시 제2024-98호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344호(1995. 12. 6.)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된 강서구 외발산동 427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도시계획과(☎ 02-2600-66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7일

강 서 구 청 장

Ⅰ. 사업내용

1.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외발산동 427번지 일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나. 사업의 명칭: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사업
3. 사업규모
   가. 면　　적: 248,243.3㎡
   나. 사업내용: 지상1층 주차 톨게이트 부스 증축사업
      - 연면적 5.28㎡(1개소당 연면적 2.64㎡)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서울특별시농수산물식품공사(분사무소)
   나.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산동40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인가일로부터 2024년 11월 29일까지

Ⅱ.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자 주소
1	외발산동	427	대지	172,821.4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산로 40
2	외발산동	427-1	대지	10,000.0			
3	외발산동	427-2	대지	3,879.3			
4	외발산동	427-4	대지	2,030.0			
5	외발산동	427-5	대지	415.80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자 주소
6	외발산동	427-6	대지	818.50			
7	외발산동	427-7	대지	277.30			
8	외발산동	427-9	공원	950.80			
9	외발산동	427-11	공원	2,525.50			
10	외발산동	427-12	공원	9,942.20			
11	외발산동	427-13	대지	6,818.50			
12	외발산동	427-15	도로	20.1			
13	외발산동	427-17	대지	2,532.50			
	계			213,031.9			

Ⅲ. 위치도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강서구고시 제2024-99호

도시관리계획(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71호(2023.06.29.)로 결정된 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7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강 서 구 청 장

1.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조서

○ 가구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가구번호	지 번	면 적(㎡)	계획내용		비고
			기 정	변 경	
A2 공원연접부 (유통상가)	화곡동 844-5	1,002.8	단독개발	공동개발(지정)	
	화곡동 844-6	243.6	단독개발		

2. 지구단위계획 결정도(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고시 관련 세부내용은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강서구 도시계획과(☏2600-6544)에 관련 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구로구고시 제2024-196호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일부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일부실효)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구 로 구 청 장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일부실효) 조서

연번	구분	규모				기능	기점	종점	최초결정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1	기정	광로	2	95	33~52	주간선	구로동 552-102	신도림동 (광3-2)	서고제2000-78호 (2000.4.3.)	
	변경	광로	2	95	33~52	주간선	구로동 552-102	신도림동 (광3-2)	서고제2000-78호 (2000.4.3.)	미집행구간 제척
2	기정	소로	1	29	10	국지	신도림동 425-19	신도림동 629-2	서고제2000-319호 (2000.11.10.)	
	변경	소로	1	29	10	국지	신도림동 425-19	신도림동 629-2	서고제2000-319호 (2000.11.10.)	미집행구간 제척

2. 실효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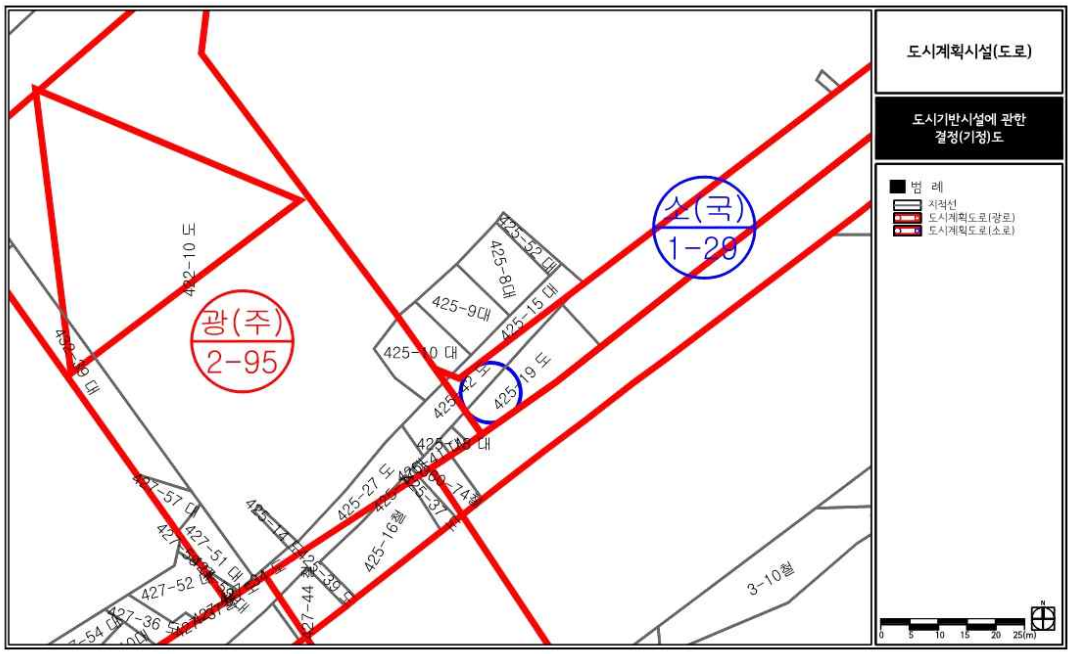
3. 지형도면 : 붙임 참고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및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고시관련 세부내용은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구로구청 도시계획과(☎860-2956)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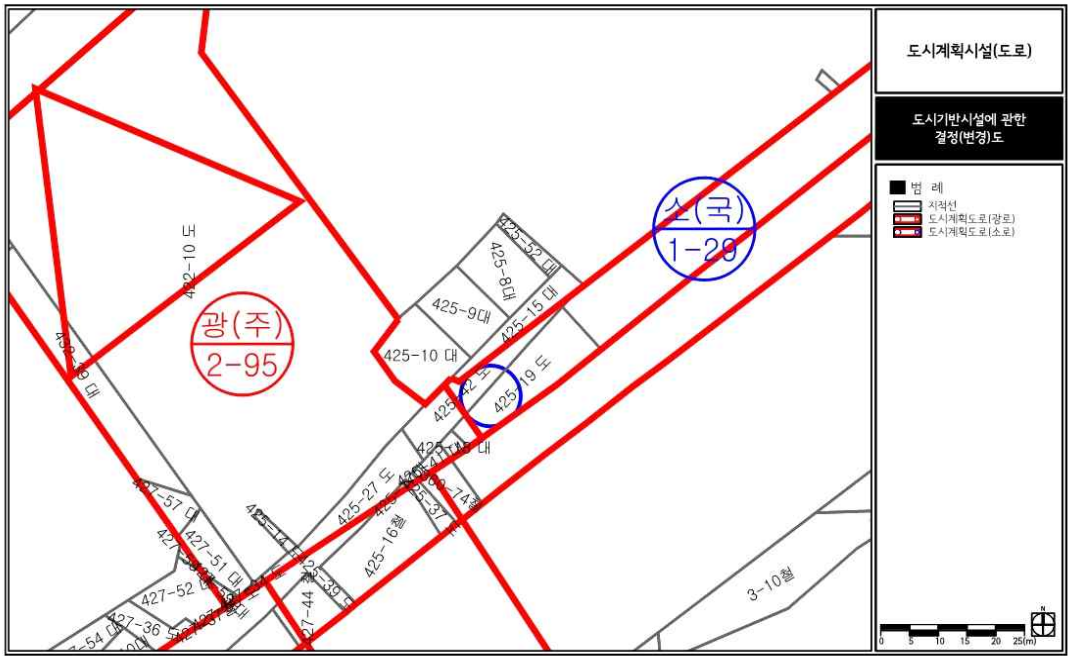
[붙임]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일부실효) 지형도면 고시

– 기정



– 변경



◈ 동작구고시 제2024-129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 실효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1-149호(2021.7.8.)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되고, 동작구고시 제2021-269호(2021.11.11.) 및 제2022-46호(2022.3.10.)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된 "용양봉저정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의 실시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실효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동 작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46-1외 3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 명 칭 : 용양봉저정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

다. 사업규모
- 규 모 : 699.1㎡
- 용 도 : 공공공지

라. 사업시행자
- 성 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바. 사업기간 : 실시계획 인가일 ~ 2023. 5. 31.
사. 실효일자 : 2023. 6. 1.
아. 실효사유 : 사업시행기간 도과에 따른 효력 상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소유자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1	본동 46-1	대지	366.4	366.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	366.4/366.4				사용
2	본동 46-2	대지	140	140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동작구	140/140				사용
3	본동 46-3	대지	129.7	129.7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	129.7/129.7				사용
4	본동 9-74	대지	63	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동작구	63/63				사용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	이용현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본동 9-8 (제1호)	건물 (1층)	연와조	39.7	상가	서울시 구로구 개봉로○○길 ○○○	김○숙				
2	본동 9-8 (제2호)	건물 (1층)	연와조	29.8	창고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	장○상				
3	본동 9-8 (제3호)	건물 (1층)	연와조	25.6	창고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	장○상				
4	본동 9-8 (제4호)	건물 (1층)	연와조	29	상가	서울시 구로구 부일로○○길 ○○○	김○숙				
5	본동 9-8 (제5호)	건물 (1층)	연와조	14.5	창고	서울시 동작구 매봉로 ○○○	윤○연				
6	본동 9-8 (제6호)	건물 (2층)	연와조	144.7	상가	서울시 동작구 매봉로 ○○○	윤○림, 송○선				
7	본동 9-30 (제2호)	건물 (1층)	세멘부럭조	34.1	주거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	고○자				
8	본동 9-30 (제2호)	건물 (2층)	세멘부럭조	36.5	주거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	고○자				
9	본동 9-30 (제1호)	건물 (1층)	목조	75.4	주거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	고○자				
10	본동 9-30 (제1호)	건물 (2층)	목조	51.1	주거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	고○자				
11	본동 9	건물 (1층)	철근조	117	주거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	이○수				기존무허가 건물
12	본동 9	건물 (2층)	철근조	117	주거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	이○수				기존무허가 건물

영 업 권 조 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상호	영업권의 종류	영 업 주		이해관계인			비 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및내용	
1	본동 9-8 (제1호)	지상1층	한강손칼국수	한식점업	서울시 구로구 개봉로○○길 ○○○	김○숙				
2	본동 9-8 (제2호) 본동 9-8 (제3호)	지상1층	광수농수산	소매업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	김○수				
3	본동 9-8 (제4호) 본동 9-8 (제5호)	지상1층	웰빙낚시	자유업	서울시 구로구 부일로○○길 ○○○	이○호				
4	본동 9-8 (제6호)	지상2층	셈수학	출판업	서울시 동작구 매봉로 ○○○	송○선				
5	본동 9-8 (제6호)	지상2층	(사)전국주산수학 암산교육회	사무실	서울시 동작구 매봉로 ○○○	윤○림				
6	본동 9-30 (제2호)	지상1층	일신전자	임가공업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	최○영				

◈ 강남구고시 제2024-2518호

도시관리계획(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80호(2016. 9. 8.)로 결정(변경) 고시된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1-1번지 외 1필지에 대한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강 남 구 청 장

1. 결정(변경)취지

○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기타 사항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결정(경미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 삼성동 161-1번지 및 삼성동 161-2번지 앞 차량진출입구 위치 변경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변경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건축물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변경
  - 대지내 공지 및 통로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 교통처리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변경
  - 환경친화요소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변경사유서

변경 내용	변경 사유
· 기존 차량진출입구 위치 변경	· 삼성동 161-1 번지 및 161-2번지 앞 차량진출입구 상 버스정류장 등 지장물로 인하여 실제적인 차량진출입이 불가함에 따라 기존 차량진출입구 위치 변경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인센ㅌ티브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변경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기정)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변경)



4. 관계서류는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도시계획과(☎ 3423-611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 강동구고시 제2024-175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공공공지)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건설부 고시 198호(1971.04.0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135호(2013.05.02.)『강동구 둔촌1동 170-1일대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 -23호(2015.01.22.)『강동구 둔촌1동 170-1일대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강동구 고시 제2023-92호(2023.06.07.)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된, 다음과 같은 도시계획시설(도로, 공공공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가. 도로

   - 광로 1-22(강동대로), 광로1-28(양재대로), 중로 1-210(양재대로84 · 88길), 중로 2-106(풍성로), 소로 3-1(신설도로)

   나. 공공공지

   - 공공공지③. 공공공지④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강 동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170-1 일원

1) 광로 1-22(강동대로) 강동구 둔촌동 522-13 일원
2) 광로 1-28(양재대로) 강동구 둔촌동 520-1 일원
3) 중로 1-210(양재대로84 · 88길) 강동구 둔촌동 170-1 일원
4) 중로 2-106(풍성로) 강동구 둔촌동 520-1 일원
5) 소로 3-1(신설도로) 강동구 둔촌동 180-1 일원
6) 공공공지③ 강동구 둔촌동 170-1 일원
7) 공공공지④ 강동구 둔촌동 174-1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공공공지) 사업
2) 사업의 명칭: 둔촌주공(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 설치 · 정비 · 개량 사업

다. 사업내용

1) 규모 및 내용

- 광로 1-22 (규모) 20,213.0㎡, (내용) 정비기반시설(도로) 개량
- 광로 1-28 (규모) 17,206.9㎡, (내용) 정비기반시설(도로) 확장 및 개량
- 중로 1-210 (규모) 14,476.8㎡, (내용) 정비기반시설(도로) 확장
- 중로 2-106 (규모) 14,932.9㎡, (내용) 정비기반시설(도로) 확장
- 소로 3-1 (규모) 1,627.4㎡, (내용) 정비기반시설(도로) 설치
- 공공공지③ (규모) 2,385.6㎡, (내용) 식재, 시설물·구조물 설치 및 포장 공사
- 공공공지④ (규모) 715.9㎡, (내용) 식재, 시설물·구조물 설치 및 포장 공사

2) 사업대상

- 도로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광로	1	22	70-90	주 간선도로	2,500 (654)	둔촌동 514	둔촌동 대로 3-69	일반 도로	건고198호 (1971.4.7.)
광로	1	28	50~53	주 간선도로	13,250 (245)	천호동 103광장	과천시계	일반 도로	서고406호 ('84.2.14)
중로	1	210	24~25	국지도로	587 (587)	광로2-28 둔촌동 522-5	광로2-28 둔촌동 522-1	일반 도로	건고74호 ('79.3.8)
중로	2	106	15~23.5	보조 간선도로	3,000 (720)	풍납동 214-6	둔촌동 대로 3-69	일반 도로	건고198호 ('71.4.7)
소로	3	1	6	국지도로	272 (272)	둔촌동 114	둔촌동 202-3	일반 도로	서고135호 ('13.5.2)

주) ()는 정비구역 해당사항

- 공공공지

시설명	연번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공공공지	③	둔촌동 170-1	2,385.6	서고135호 ('13.5.2)
공공공지	④	둔촌동 174-1	715.9	서고135호 ('13.5.2)

라.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사업시행자: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박승환)

2) 주 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355, 오스카상가 3층 316호

마. 사업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1) 도로

- 광로 1-22(강동대로), 중로 1-210(양재대로84·88길), 중로 2-106(풍성로), 소로 3-1(신설도로)

: 인가고시일 ~ 2024. 12. 31.(변경없음)

- 광로1-28(양재대로)

: (기정)인가고시일 ~ 2024. 12. 31. (변경)인가고시일 ~ 2025.03.31.

나. 공공공지

- 공공공지③

: (기정)인가고시일 ~ 2024. 12. 31. (변경)인가고시일 ~ 2025.03.31.

- 공공공지④

: 인가고시일 ~ 2024. 12. 31.(변경없음)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물건의 소재 및 지목, 지적,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붙 임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되어 공사완료 공고를 한 때에는 근저당권 등 말소 후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강동구 및 서울특별시)에 무상으로 귀속

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동구청(재건축재개발과 ☎ 02-3425-598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토 지 조 서

□ 광로 1-22(강동대로)

번호	행정구역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구	동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계			15필지		45,686.6	20,213.0						
1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50-30	도로	8,547.7	623.0	서울특별시					
2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522-13	도로	2,478.4	1,220.0	서울특별시					
3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543-26	도로	2,778.5	2,772.0	서울특별시					
4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534-3	도로	488.0	488.0	서울특별시					
5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533-5	도로	489.0	489.0	서울특별시					
6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359-1	도로	420.0	420.0	서울특별시					
7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322-1	도로	435.0	435.0	서울특별시					
8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337	도로	3,764.0	3,764.0	서울특별시					
9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359-9	도로	72.0	72.0	서울특별시					
10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344	도로	1,440.0	1,440.0	서울특별시					
11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359-8	도로	122.0	122.0	서울특별시					
12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359-2	도로	140.0	140.0	서울특별시					
13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357-1	도로	2,496.0	2,496.0	서울특별시					
14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359-19	도로	149.0	149.0	서울특별시					
15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227-7	수도용지	21,867.0	5,583.0	서울특별시					

□ 광로 1-28(양재대로)

번호	행정구역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구	동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계			18필지		190,452.0	17,206.9						
1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520-1	도로	3,935.0	744.0	서울특별시					
2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520-8	도로	951.9	42.0	서울특별시					
3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529-8	도로	9.0	9.0	서울특별시					
4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170-1	대지	112,101.1	444.0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355, 316호				
5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529-7	도로	3,902.5	1,084.0	서울특별시					
6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540-4	도로	3,912.0	1,098.0	서울특별시					
7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522-2	도로	2,182.6	93.0	서울특별시					
8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172-1	대지	25,455.4	309.0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355, 316호				
9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541-6	도로	3,910.7	1,249.0	서울특별시					
10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543-14	도로	3,909.3	3,909.3	서울특별시					
11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522-7	도로	1,858.6	1,858.6	서울특별시					
12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522-13	도로	2,478.4	1,259.0	서울특별시					
13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543-26	도로	2,778.5	6.0	서울특별시					
14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50-43	도로	4,183.7	253.0	서울특별시					
15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50-44	도로	2,609.9	2,417.0	서울특별시					
16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50-28	도로	6,678.3	815.0	강동구					
17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50-30	도로	8,542.7	1,574.0	서울특별시					
18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49-22	도로	1,052.4	43.0	서울특별시					

□ 중로 1-210(양재대로84 · 88길)

번호	행정구역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구	동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계			11필지		355,263.4	14,476.8						
1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170-1	대지	112,101.1	504.7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355, 316호				
2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522-2	도로	2,182.6	2,089.2	서울특별시					
3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171	도로	1,344.8	1,344.5	강동구					
4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172-1	대지	25,455.4	1,378.0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355, 316호				
5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175-3	도로	1,810.6	1,810.6	강동구					
6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176-1	대지	110,449.2	1,747.2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355, 316호				
7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175-2	도로	1,939.1	1,939.1	강동구					
8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172-5	대지	1,004.3	25.2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355, 316호				
9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173	도로	1,295.0	1,295.0	강동구					
10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522-5	도로	2,185.9	2,185.9	서울특별시					
11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174-1	대지	95,495.6	157.4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355, 316호				

□ 중로 2-106(풍성로)

번호	행정구역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구	동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계			9필지		260,335.0	14,932.9						

번호	행정구역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구	동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520-1	도로	3,935.0	791.0	서울특별시					
2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520-7	도로	3,650.0	1,679.9	강동구					
3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511-6	도로	503.0	374.4	국토교통부					
4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422-5	전	13.0	13.0	대한주택공사					
5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162-7	도로	15.0	15.0	강동구					
6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161-3	도로	1,801.0	809.3	서울특별시					
7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112-5	도로	12,459.0	3,983.9	강동구					
8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170-1	대지	112,101.1	4,744.1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355, 316호				
9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180-1	대지	125,858.0	2,522.3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355, 316호				

□ 소로 3-1(신설도로)

번호	행정구역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구	동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계			1필지		125,858.0	1,627.4						
1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180-1	대지	125,858.0	1,627.4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355, 316호				

□ 공공공지

번호	행정구역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구	동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계			2필지		207,596.7	3,101.5						
1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170-1	대지	112,101.1	2,385.6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355, 316호				
2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174-1	대지	95,495.6	715.9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355, 316호				

◈ 강동구고시 제2024-181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135호(2013.05.02.)『강동구 둔촌1동 170-1일대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 -23호(2015.01.22.)『강동구 둔촌1동 170-1일대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강동구 고시 제2023-43호(2023.03.15.)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명일로(중로 2-102)에 대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강 동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170-1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2) 사업의 명칭: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중로 2-102)
다. 사업내용
  1) 규모 및 내용: (규모) 18,862.0㎡, (내용) 정비기반시설(도로) 확장 공사
  2) 사업대상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중로	2	102	15~23.5	보조간선 도로	4,000 (893)	명일동 중로3-63	둔촌동 광로1-22	일반 도로	()는 정비구역내 해당사항임

라.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사업시행자: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박승환)
  2) 주 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355, 오스카상가 3층 316호
마. 사업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기 정) 인가고시일 ~ 2024. 10. 31.
  - (변 경) 인가고시일 ~ 2024. 11. 25.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물건의 소재 및 지목, 지적,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붙 임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되어 공사완료 공고를 한 때에는 근저당권 등 말소 후 강동구에 무상으로 귀속
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동구청(재건축재개발과 ☎ 02-3425-598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토 지 조 서

번호	행정구역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구	동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계			12필지		524,355.4	18,862.0						
1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177-1	도	1,387.4	1,387.4	국유지	기획재정부				
2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180-1	대	125,858.4	1,098.0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355, 316호				
3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177-2	도	11,491.1	11,491.1	공유지	강동구				
4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179	도	6,955.8	115.0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355, 316호				
5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178	대	48,803.7	621.0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355, 316호				
6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177-3	도	373.0	373.0	공유지	강동구				
7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177-4	도	245.1	245.1	공유지	강동구				
8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170-1	대	112,101.1	930.0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355, 316호				
9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175-1	도	6,100.3	106.0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355, 316호				
10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176-1	대	110,449.2	1,170.0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355, 316호				
11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175-4	도	5,094.9	29.0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355, 316호				
12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174-1	대	95,495.4	1,296.4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355, 316호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 실시계획인가
[변 경] 신 청 서

명일로(중2-102호)

2024.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목 차

1. 실시계획인가(변경) 신청서

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변경없음)

3. 공사설계도서(변경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5.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변경없음)

6.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용도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해당없음)

7.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변경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해당없음)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제4항에 따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청취 결과(해당없음)

1. 실시계획인가(변경) 신청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2. 1. 21.>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변경)신청서

※ 뒤쪽에 신청안내를 참고하시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개월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대표자 성명)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 박승환	생년월일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1355, 3층(성내동,오스카상가) (전화번호: 02-473-0220)	
	법인명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법인등록번호 202-82-08708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1355, 3층(성내동,오스카상가) (전화번호: 02-473-0220)	

신청내용

사업명칭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중로2-102호)				
사업목적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반영하여 내부도로 및 외부도로를 확·포장하여 지역주민의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				
사업위치	강동구 둔촌1동 170-1 일원		사업면적		18,862.0㎡
시행방법	민간시행		시행기간 (변경)	당초	인가일로부터~2024.10.31
				변경	인가일로부터~2024.11.25
토지이용현황(㎡)	지목별	합계	도로		대지
	면적	18,862.0	13,746.6		5,115.4
토지이용계획(㎡)	용도별	도시지역			
	면적	18,862.0㎡			
기반시설계획	시설별	도로			
	개요	L = 0.9㎞, B = 20~23.5m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가를 신청합니다.

2024 년 10 월 일

신청인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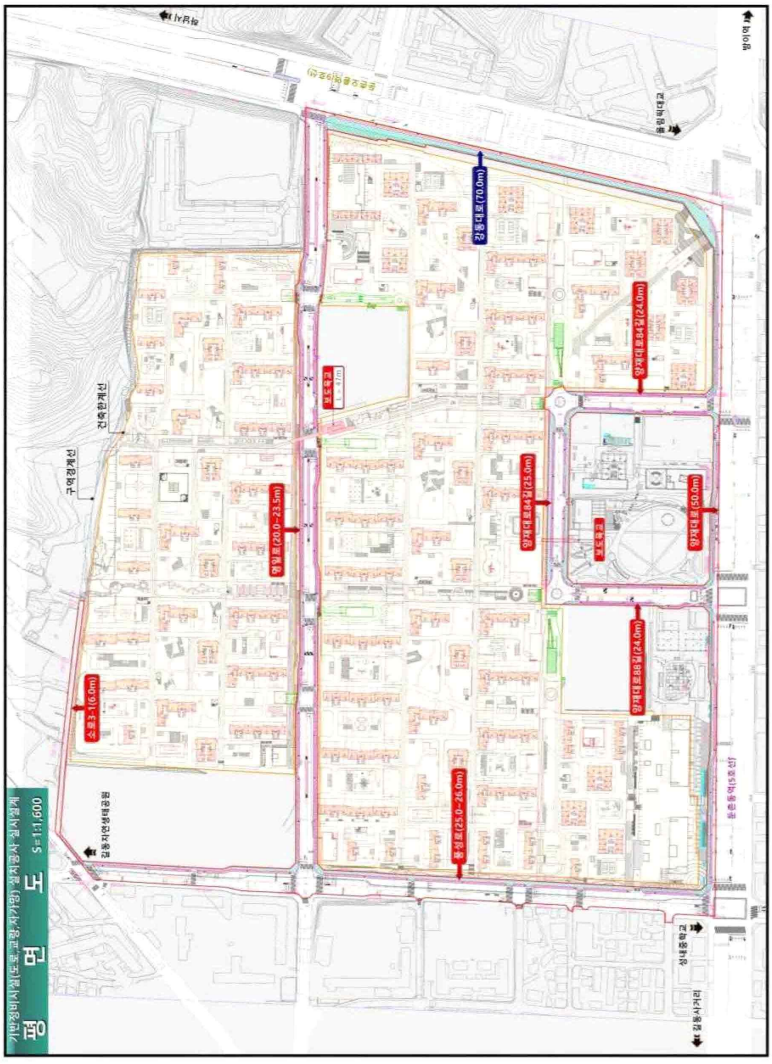
강동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변경없음)

- 위치도


평 면 도
S=1:1,600
강동대로(70.0m)
양재대로84길(24.0m)
양재대로(50.0m)
양재대로88길(24.0m)
올림픽로(25.0~26.0m)
소로3-1(6.0m)
명일로(20.0~23.5m)
보도육교
보도육교
건축한계선
구역경계선
강동지역생태공원
올림픽대로
상일동IC
강동나들목
상일동역
명일역

- 사업계획서(변경)

사 업 계 획 서

1. 사업목적(변경없음)
   -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반영하여 내부도로 및 외부도로를 확·포장하여 지역주민의 쾌적한 도로 환경 제공

2. 사업시행지(변경없음)
   - 서울시 강동구 둔촌1동 170-1번지 일대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사업의종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명　　칭 : 둔촌주공아파트 주택건축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중로2-102호)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355, 3층(성내동,오스카상가)
   - 사업시행자의 명칭 :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박승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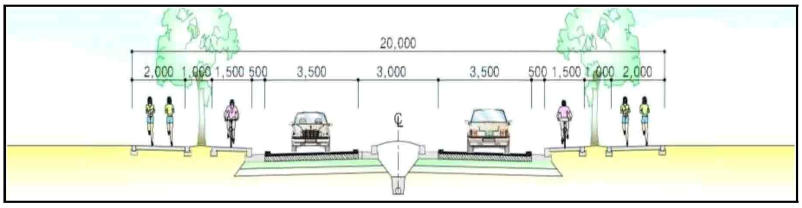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초 : 인가일로부터 ~2024.10.31.
   - 변경 : 인가일로부터 ~2024.11.25.

6. 사업 면적(변경없음)
   - 명일로 : 18,862.0㎡

7. 자금조달계획(변경없음)
   - 자금투자계획 : 219억원 (공사비 219억원)
   - 재원 조달계획 : 공사비 민간조합 100%

8. 시설물 설치계획(변경없음)
   - 연　장 : L= 0.9㎞
   - 노선폭 : B=20.0m~23.5m

• 표준횡단면도



• 세부개요

공 종			단위	공 사 량	비 고
토 공	흙 깎 기	계	㎥	64,138	
		토 사	㎥	64,138	
		리 핑 암	㎥	-	
		발 파 암	㎥	-	
	흙 쌓 기	계	㎥		
		노 상	㎥	5,189	
		노 체	㎥	4,717	
		비 다 짐	㎥	-	
	사 토		㎥	55,586	
배수공	횡 배 수 관		m	1,806	흄 관
	암 거	수 로	m	120	
		통 로	m	-	
교량공	교 량		개소	1	보 도 육 교
터널공	터 널		개소/m	-	
포장공	보 조 기 층		㎡	6,898	
	기 층		a	130	
	표 층	T = 5 c m	a	132	
		T = 1 0 c m	a	21	고원식횡단보도
	칼 라 아 스 콘	T = 7 c m	a	385	
부대공	방 호 울 타 리		m	197	차 선 분 리 대
	가 드 휀 스		m	1,514	자 전 거 휀 스
	방 음 벽		m	-	
	교 통 표 지 판		개소	70	
	안 내 표 지 판		개소	4	

3. 공사설계도서(변경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편 입 집 계 표

Project: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구 분			합 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비고
용도지역구분	합 계		12	18,862.0	1	1,387.4	3	12,109.2	8	5,365.4	
	도시지역	소 계	12	18,862.0	1	1,387.4	3	12,109.2	8	5,365.4	
		주거지역	12	18,862.0	1	1,387.4	3	12,109.2	8	5,365.4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소 계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지목구분	합 계		12	18,862.0	1	1,387.4	3	12,109.2	8	5,365.4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지		5	5,115.4					5	5,115.4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7	13,746.6	1	1,387.4	3	12,109.2	3	250.0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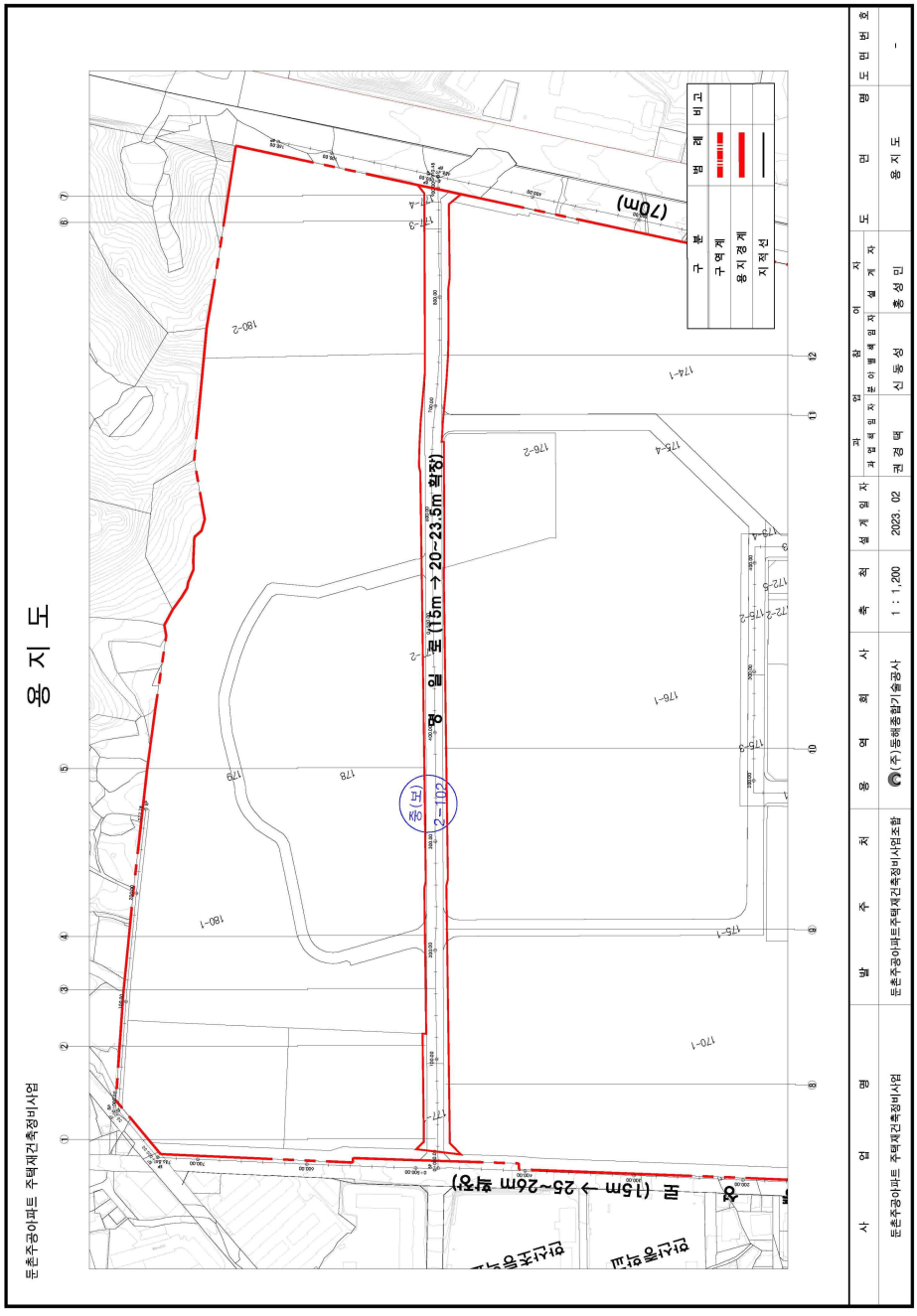
편 입 용 지 조 서

Project: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Pole No.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합 계			524,355.4	18,862.0						
1	177-1	도	1,387.4	1,387.4	국유지	기획재정부				
2	180-1	대	125,858.4	1,098.0	둔촌주공아파트주택건축정비사업조합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355 316호 (성내동)				
3	177-2	도	11,491.1	11,491.1	공유지	강동구				
4	179	도	6,955.8	115.0	둔촌주공아파트주택건축정비사업조합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355 316호 (성내동)				
5	178	대	48,803.7	621.0	둔촌주공아파트주택건축정비사업조합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355 316호 (성내동)				
6	177-3	도	373.0	373.0	공유지	강동구				
7	177-4	도	245.1	245.1	공유지	강동구				
8	170-1	대	112,101.1	930.0	둔촌주공아파트주택건축정비사업조합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355 316호 (성내동)				
9	175-1	도	6,100.3	106.0	둔촌주공아파트주택건축정비사업조합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355 316호 (성내동)				
10	176-1	대	110,449.2	1,170.0	둔촌주공아파트주택건축정비사업조합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355 316호 (성내동)				
11	175-4	도	5,094.9	29.0	둔촌주공아파트주택건축정비사업조합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355 316호 (성내동)				
12	174-1	대	95,495.4	1,296.4	둔촌주공아파트주택건축정비사업조합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355 316호 (성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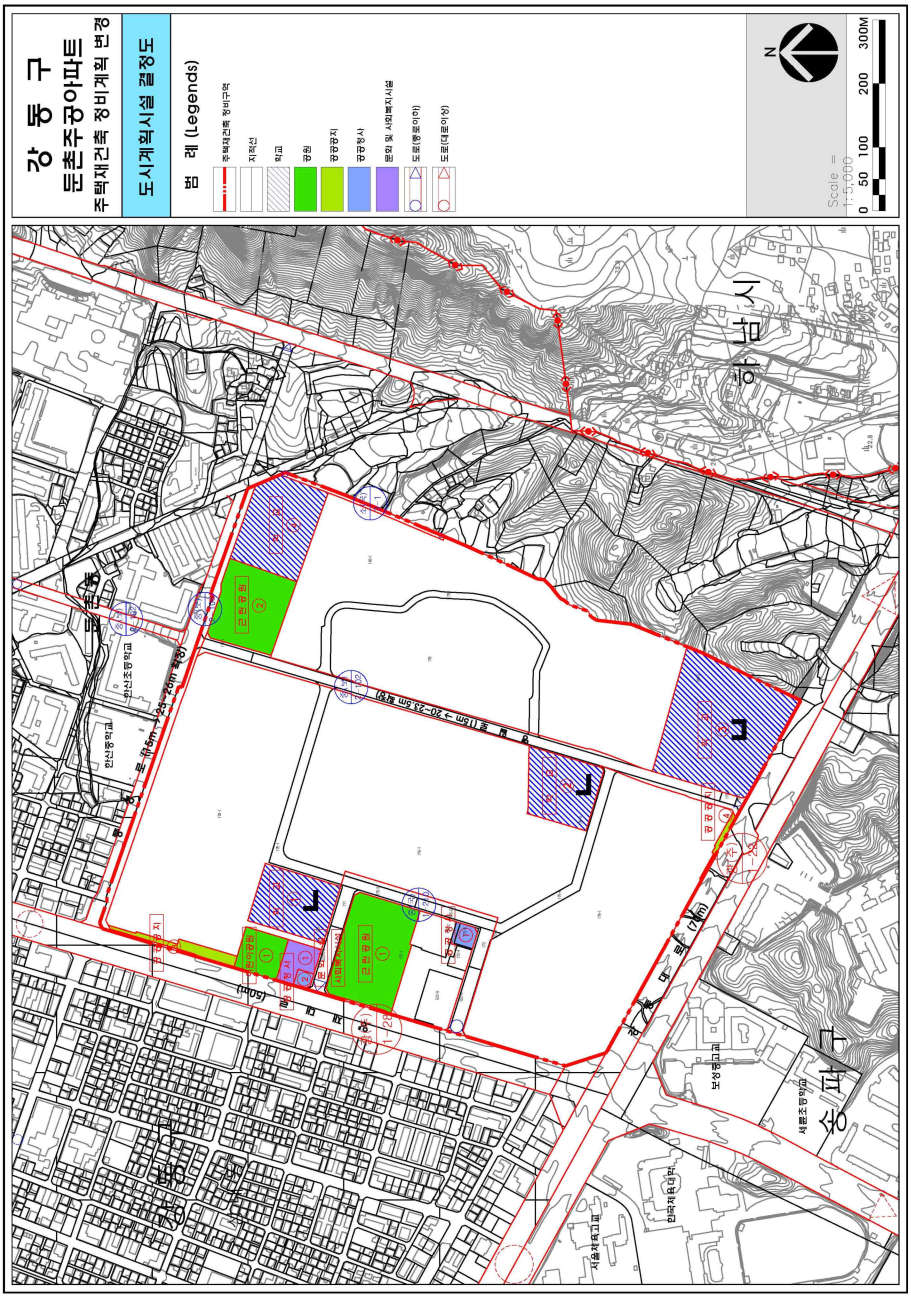
5.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변경없음)


용 지 도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 분 범 례 비 고
구 역 계
용 지 경 계
지 적 선
(70m)
왕 복 (15m → 20~23.5m 확장)
(보) 2-102
왕 복 (15m → 25~26m 확장)
사 업 명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발 주 처 둔촌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용 역 회 사 (주)종해종합기술공사
축 척 1 : 1,200
설 계 일 자 2023. 02
과 업 책 임 자 권 경 덕
과 업 참 여 이 하 분 담 자 신 동 성
설 계 자 홍 성 민
도 면 명 용 지 도
도 면 번 호 -

6.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용도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해당없음]

7.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변경없음)


강 동 구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범 례 (Legends)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하신
학교
광장
공원
공공청사
문화 및 사회복지시설
도로(중로이하)
도로(대로이상)
N
Scale = 1:5,000
0 50 100 200 300M
시 흥 동
구 천 호 동
둔촌주공아파트
둔촌초등학교
한산중학교
한산중학교
보성중고교
서울체육고교
서울조원학교
한국자유총연맹
대로 2류 (50m)
중로 1류 (30~23.5m 확장)
중로 1류 (15m~23.5m 확장)
J
J
J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중로2-102호)

1) 교통시설

(1) 도로

(가) 도로결정 조서

구분	규 모				사용 형태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02	15~ 23.5	일반 도로	보조 간선도로	4,000 (893)	명일로 중로3-63	둔촌동 광로1-22	-	건고198호 (71.4.7)	명일로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변경없음)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제4항에 따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청취 결과(해당없음)

구 공 고

◈ 중구공고 제2024-1054호

도시관리계획(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394호(2019.12.05.)로 구역 및 계획이 결정된 「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7일
중 구 청 장

○ 공 고 명 : 도시관리계획(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열람공고
○ 열람기간 : 2024.11.7. ~ 2024.11.21. (14일간)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정비과
(☎02-3396-5953 / FAX : 02-3396-8772, 전자우편 : yejoo@junggu.seoul.kr)
○ 열람사항 : 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도서
○ 열람내용
1) 도시관리계획(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구역	중구 광희동, 장충동, 신당동 일대	402,328	증)5,001㎡	407,329㎡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 게재생략(열람도서 비치 도서로 갈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 게재생략(열람도서 비치 도서로 갈음)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 게재생략(열람도서 비치 도서로 갈음)
[5] 적용의 완화에 관한 결정(변경) : 게재생략(열람도서 비치 도서로 갈음)
[6]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 게재생략(열람도서 비치 도서로 갈음)
[7]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변경) : 게재생략(열람도서 비치 도서로 갈음)

○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도서로 갈음)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열람내용은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추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도심정비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산구공고 제2024-1369호

버들개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142호(2006. 4. 20.)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127호(2016. 4. 21.)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되고, 용산구 고시 제2016-99호(2016. 9. 9.)로 공원조성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버들개문화공원에 대하여 기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용 산 구 청 장

1. 도시계획시설(공원)명 : 버들개문화공원
2.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94번지 일원
3. 면　　적 : 17,635.3㎡
4. 조성계획 변경(안) : 열람도서 참조
5.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6. 열람기간 : 시보 게재일로부터 14일간
7. 열람장소 : 용산구청 공원녹지과(☏ 02-2199-7603)
8. 공고방법 : 서울시보 및 용산구 홈페이지 게재
9. 본 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공원녹지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공원녹지과(☏ 02-2199-76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들개문화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 (위치 : 용산구 한강로3가 98-4번지 일대)

구 분		변 경 전(문화공원)						변 경 후(문화공원)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동수 (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17,635.30	9,507.54				291	17,635.30	9,367.35				308	시설면적 감 140.19 (증 21기)
기반시설	소 계	6,904.45	6,904.45					6,848.45	6,848.45					감 56.00
	도로	5,485.45	5,485.45					5,429.45	5,429.45					감 56.00
	광장	1,419.00	1,419.00					1,419.00	1,419.00					증감 없음
조 경 시 설		740.92	740.92					731.61	731.61					감 9.31
휴 양 시 설		1,862.17	1,862.17				108	1,787.29	1,787.29				125	감 74.88 (증 21기)
유 희 시 설														
운 동 시 설														
관 리 시 설							183						183	증감 없음
녹 지 및 기 타		8,127.76						8,267.95						증 140.19 (녹지및기타=46.88%)
시설률(법정 제한없음)		(9,507.54/17,635.30) x 100 = 53.91%						(9,367.35/17,635.30) x 100 = 53.12%						
건폐율(법정 20%)		0%						0%						

2.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합계				17,635.30	9,507.54					291			17,635.30	9,367.35					308	
기반시설	계			6,904.45	6,904.45								6,848.45	6,848.45						감 56.00
	도로	산	한강로3가 63 일대(23개소)	5,485.45	5,485.45						산	한강로3가 98-4 일대(23개소)	5,429.45	5,429.45						감 56.00
	광장	가	3개소	312.57	312.57						가	3개소	312.57	312.57						
		가-1	3가 223	(186.63)	(186.63)						가-1	3가 223	(186.63)	(186.63)						
		가-2	3가 63	(59.00)	(59.00)						가-2	3가 98-4	(59.00)	(59.00)						
		가-3	3가 63	(66.94)	(66.94)						가-3	3가 98-4	(66.94)	(66.94)						
		나	2가 225	1,106.43	1,106.43						나	3가 98-4	1,106.43	1,106.43						
경관조성시설	계			740.92	740.92								731.61	731.61						감 9.31
	목재데크	다	3가 63	419.96	419.96						다	3가 98-4	419.96	419.96						
	조형뼉	①	2가 224	95.38	95.38						①	3가 98-4	86.07	86.07						감 9.31
	물길	②	3가 63	168.85	168.85						②	3가 98-4	168.85	168.85						
	음악분수	③	2가 196	56.73	56.73						③	3가 98-4	56.73	56.73						
휴양시설	계			1,862.17	1,862.17					108			1,787.29	1,787.29					125	감 74.88
	휴게소	라	11개소	1,795.79	1,795.79						라	11개소	1,754.89	1,754.89						감 40.9
		라-1	3가 63	(133.47)	(133.47)						라-1	3가 98-4	(133.47)	(133.47)						
		라-2	3가 63	(113.40)	(113.40)						라-2	3가 98-4	(113.40)	(113.40)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라-3	3가 63	(459.68)	(459.68)						라-3	3가 98-4	(459.68)	(459.68)						
		라-4	3가 63	(175.22)	(175.22)						라-4	3가 98-4	(175.22)	(175.22)						
		라-5	3가 63	(140.95)	(140.95)						라-5	3가 98-4	(140.95)	(140.95)						
		라-6	3가 63	(122.25)	(122.25)						라-6	3가 98-4	(122.25)	(122.25)						
		라-7	3가 63	(143.16)	(143.16)						라-7	3가 98-4	(143.16)	(143.16)						
		라-8	3가 63	(109.12)	(109.12)						라-8	3가 98-4	(109.12)	(109.12)						
		라-9	3가 63	(140.92)	(140.92)						라-9	3가 98-4	(140.92)	(140.92)						
		라-10	3가 63	(177.30)	(177.30)						라-10	3가 98-4	(177.30)	(177.30)						
		라-11	3가 63	(80.32)	(80.32)						라-11	3가 98-4	(39.42)	(39.42)						감 40.9
	앉음벽	④	3가 63	32.40	32.40						④	3가 98-4	32.40	32.40						
	목재벤치 A,B	⑤	3가 63	33.98	33.98						⑤	3가 98-4							17	감 33.98 중복면적삭제
	경관석 A,B,C	⑥	3가 63							108	⑥	3가 98-4							108	
관리시설	계									183									183	
	공원등	⑦	공원전역							36	⑦	공원전역							36	
	볼라드등	⑧	공원전역							72	⑧	공원전역							72	
	수목투사등	⑨	공원전역							60	⑨	공원전역							60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CCTV	⑩	공원전역							15	⑩	공원전역							15	
녹지 및 기타	계			8,127.76									8,267.95							증 140.19
	녹지		공원전역	8,127.76								공원전역	7,981.69							
	기타											3가 98-4	286.26							선큰, 천창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1,124.39	5,485.45				감 56.00
변경					1,148.12	5,429.45				
당초	산책로	–	1	3.5	19.43	67.99	산책로	광장 나	광장 가 -1	
당초		–	2	6.5	36.19	239.94	산책로	보행자전용도로	광장 나	감 10.72
변경				6.5	35.26	229.22				
당초		–	3	7	30.70	210.69	산책로	산책로4	광장 나	
당초		–	4	7	50.10	350.73	산책로	보행자전용도로	광장 나	
당초		–	5	5.5	80.36	441.97	산책로	산책로10	산책로4	
당초		–	6	4.2	171.63	720.84	산책로	광장 나	산책로17	
당초		–	7	4	13.84	55.36	산책로	보행자전용도로	산책로6	
당초		–	8	5.5	9.09	49.99	산책로	보행자전용도로	산책로6	
당초		–	9	2.4	52.84	126.81	산책로	광장 나	산책로10	감 52.68
변경				1.5	49.42	74.13	산책로	산책로4	산책로10	
당초		–	10	5.5	78.93	434.11	산책로	산책로6	보행자전용도로	
당초		–	11	3.7	14.59	53.99	산책로	산책로6	산책로10	
당초		–	12	5.8	43.04	249.62	산책로	산책로10	목재데크 다	
당초		–	13	1.0	24.32	24.32	산책로	목재데크 다	목재데크 다	
당초		–	14	1.0	6.37	6.37	산책로	산책로13	산책로6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	15	4.0	19.54	78.17	산책로	목재데크 다	산책로17	
당초	산책로	-	16	5	120.35	601.76	산책로	산책로10	산책로17	
당초		-	17	11.0	77.36	850.94	산책로	보행자전용도로	차로	
당초		-	18	2.2	31.08	68.37	산책로	산책로17	광장 가-3	
당초		-	19	2.2	28.37	62.42	산책로	산책로17	광장 가-3	
당초		-	20	5.5	50.18	276.01	산책로	산책로17	광장 가-2	
당초		-	21	3.5	39.23	137.31	산책로	산책로17	광장 가-3	
당초		-	22	2.5	94.08	235.19	산책로	산책로17	산책로21	
당초		-	23	2.5	57.02	142.55	산책로	산책로20	산책로20	
변경		-	24	2.5	1.65	4.13	산책로	산책로9	휴게소 라-11	신설
변경		-	25	1.5	2.18	3.27	산책로	산책로9	녹지및기타	신설

조성계획도(당초)

버들개 문화공원



■ 법규검토사항 (단위:m2)

	산출근거	법적면적	계획면적	비고
공원면적				

■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면적(m2)	공작물(기)	비고
총 계					
기반시설	소 계				
	광 장 (소계)				
	광 장	가			
	광 장	가-1			
	광 장	가-2			
	광 장	가-3			
	광 장	나			
	도 로 (소계)				
	산 책 로	산-1			
	산 책 로	산-2			
	산 책 로	산-3			
	산 책 로	산-4			
	산 책 로	산-5			
	산 책 로	산-6			
	산 책 로	산-7			

구분	시설명	부호	면적(m2)	공작물(기)	비고
기반시설	산 책 로	산-8			
	산 책 로	산-9			
	산 책 로	산-10			
	산 책 로	산-11			
	산 책 로	산-12			
	산 책 로	산-13			
	산 책 로	산-14			
	산 책 로	산-15			
	산 책 로	산-16			
	산 책 로	산-17			
	산 책 로	산-18			
	산 책 로	산-19			
	산 책 로	산-20			
	산 책 로	산-21			
	산 책 로	산-22			
	산 책 로	산-23			

구분	시설명	부호	면적(m2)	공작물(기)	비고
조경시설	소 계				
	목재데크	다			
	조형벽	○			
	물길	○			
	음악분수	○			
휴양시설	소 계				
	휴게소	라			
	휴게소	라-1			
	휴게소	라-2			
	휴게소	라-3			
	휴게소	라-4			
	휴게소	라-5			

구분	시설명	부호	면적(m2)	공작물(기)	비고
휴양시설	휴게소	라-6			
	휴게소	라-7			
	휴게소	라-8			
	휴게소	라-9			
	휴게소	라-10			
	휴게소	라-11			
	암문벽	○			
	목재벤치A,B	○			
	경관석A,B,C	○			
관리시설	소 계				
	공 원 등	○			
	볼라드등	○			
	수목투사등	⑨			
		⑩			
녹지및기타	소 계				

조성계획도(변경)

버들개 문화공원



■ 법규검토사항 (단위:m2)

	산출근거	법적면적	계획면적	비고
공원면적				

■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면적(m2)	공작물(기)	비고
총 계					
기반시설	소 계				감 56,00
	광 장 (소계)				
	광 장	가			
	광 장	가-1			
	광 장	가-2			
	광 장	가-3			
	광 장	나			
	도 로 (소계)				감 56,00
	산 책 로	산-1			
	산 책 로	산-2			감 10,72
	산 책 로	산-3			
	산 책 로	산-4			
	산 책 로	산-5			
	산 책 로	산-6			
	산 책 로	산-7			

구분	시설명	부호	면적(m2)	공작물(기)	비고
기반시설	산 책 로	산-8			
	산 책 로	산-9			감 52,68
	산 책 로	산-10			
	산 책 로	산-11			
	산 책 로	산-12			
	산 책 로	산-13			
	산 책 로	산-14			
	산 책 로	산-15			
	산 책 로	산-16			
	산 책 로	산-17			
	산 책 로	산-18			
	산 책 로	산-19			
	산 책 로	산-20			
	산 책 로	산-21			
	산 책 로	산-22			
	산 책 로	산-23			

구분	시설명	부호	면적(m2)	공작물(기)	비고
기반시설	산 책 로	산-24			산설
	산 책 로	산-25			산설
조경시설	소 계				감 9,31
	목재데크	다			
	조형벽	○			감 9,31
	물길	○			
	음악분수	○			
휴양시설	소 계				감 74,88
	휴게소	라			감 40,9
	휴게소	라-1			
	휴게소	라-2			
	휴게소	라-3			
	휴게소	라-4			
	휴게소	라-5			
	휴게소	라-6			

구분	시설명	부호	면적(m2)	공작물(기)	비고
휴양시설	휴게소	라-7			
	휴게소	라-8			
	휴게소	라-9			
	휴게소	라-10			
	휴게소	라-11			감 40,9
	담올벽	○			
	목재벤치A,B	○			감 33,98 출목인적석계
	경관석A,B,C	○			
관리시설	소 계				
	공 원 등	○			
	볼라드등	○			
	수목투사등	⑨			
		⑩			
녹지및기타	소 계				총 140,19
	녹지				
	기타				선큰, 천창

◈ 중랑구공고 제2024-1539호

도시계획시설[중화한마당근린공원(가칭)] 조성계획 결정(최초)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223호(2009.06.04.)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413호(2024.08.22.)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종 결정된 중랑구 중화동 311-87번지 일대 중화한마당근린공원(가칭) 조성계획 결정(최초)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3. 본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7일
중 랑 구 청 장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311-87번지 일대
나. 공원면적 : 4,556.0㎡
다. 결정내용 : 중화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의한 신규 공원 조성
라.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마. 열람장소 : 중랑구청 공원녹지과(☎02-2094-2356)
바. 관계도서 : 조성계획도, 결정조서 등 일체 서류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화한마당근린공원(가칭) 조성계획 결정(최초)조서

가. 총괄표 (중랑구 중화동 311-87번지 일대)

구분		부지면적 (m2)	시설면적 (m2)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 (동)	건축면적 (m2)	연면적 (m2)		
계		4,556.00	1,796.70	1	28.00	28.00	38	
기반시설	소 계	1,589.10	1,589.10					
	광 장	1,133.00	1,133.00					
	도 로	456.10	456.10					
조경시설								
휴양시설		35.00	35.00				17	
유희시설								
운동시설		85.40	85.40				3	
관리시설		87.20	87.20	1	28.00	28.00	18	
녹지 및 기타		2,759.30						
시 설 율		1,796.70 / 4,556.00 x 100 = 39.44%						법정40%이하
건 폐 율		28.00 / 4,556.00 x 100 = 0.61%						법정10%이하
특정시설율		-						법정20%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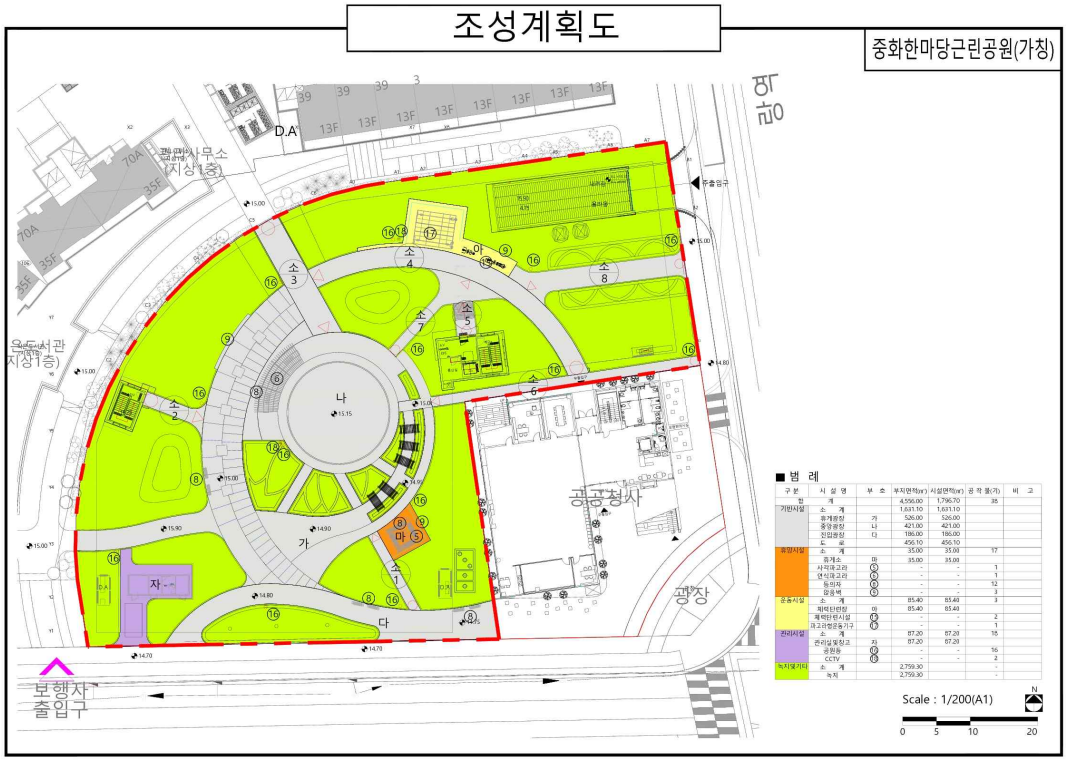
나.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m2)	시설면적 (m2)	구 조	규 모	건축물(m2)		공작물 (기)	비고
								바닥 면적	연면적		
합 계				4,556.00	1,796.70		1	28.00	28.00	38	
기반시설	소 계			1,589.10	1,589.10					-	
	광 장	소계	부지 내	1,133.00	1,133.00					-	
	휴게광장	가	부지 내	526.00	526.00						
	중앙광장	나	부지 내	421.00	421.00						
	진입광장	다	부지 내	186.00	186.00						
	도 로		부지 내	456.10	456.10					-	
휴양시설	소 계			35.00	35.00					17	
	휴게소	마	부지 내	35.00	35.00						
	사각파고라	⑤	부지 내	-	-	목재				1	
	연식파고라	⑥	부지 내			목재				1	
	등의자	⑧	부지 내	-	-	목재				12	
	앉음벽	⑨	부지 내	-	-	석재				3	
운동시설	소 계			85.40	85.40					3	
	운동공간	아	부지 내	85.40	85.40						
	파고라형운동기구	⑰				철재				1	
	체력단련시설	⑮	부지 내	-	-	철재				2	
관리시설	소계			87.20	87.20		1	28.00	28.00	18	
	관리실및창고	자	부지 내	87.20	87.20	철재	1	28.00	28.00		
	공원등	⑯	부지 내	-	-					16	
	CCTV	⑱	부지 내	-	-					2	
녹지	소 계			2,759.30						-	
	녹지			2,759.30						-	

다.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m)	면적(m2)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계					178.00	456.10				
신설	소계				178.00	456.10				
	소로		1	1.5	13.00	19.50	연결로	진입광장 다	휴게광장 가	
	소로		2	1.5	14.20	21.30	연결로	계단실	휴게광장 가	
	소로		3	4.0	19.00	76.00	진입로	아파트 진입부	중앙광장 나	
	소로		4	3.0	47.33	142.00	연결로	소로 6	소로 3	
	소로		5	2.8	4.8	14.00	연결로	계단실	소로 4	
	소로		6	1.5	39.67	59.50	진입로	외곽보도	휴게광장 가	
	소로		7	1.5	16.00	44.80	연결로	중앙광장 나	소로 4	
	소로		8	1.5	24.00	79.00	진입로	외곽보도	소로 4	

중화한마당근린공원(가칭) 조성계획도



◈ 성북구공고 제2024-1668호

장위10구역 문화공원(가칭) 조성계획(안) 재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10 (2024.02.29.)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변경)된 장위10구역 문화공원(가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2에 따른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완료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공고 제2024-778호로 주민의견 청취한 계획 내용에서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열람공고 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성 북 구 청 장

가. 공원위치 : 성북구 장위동 69-36번지 일원
나. 공원명칭 : 장위10구역 문화공원(가칭)
다. 면적 : 5,941.00㎡
라. 조성계획결정도 및 결정조서 : 붙임참조
마.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바. 열람장소 :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사. 본 조성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 02-2241-28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위10구역 문화공원(가칭) 조성계획결정(최초) 조서

가. 총괄표 (위치 : 성북구 장위동 69-36번지 일원)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 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5,941.00	4,233.95	1동	1,042.00	3,530.00	50개소	시설율 71.27%
기반시설	소 계	2,005.45	2,005.45					
	도 로	918.41	918.41				8개소	
	광 장	1,087.04	1,087.04					
조 경 시 설		540.34	540.34				21개소	
휴 양 시 설		355.25	355.25				18개소	
운 동 시 설		66.13	66.13				3개소	
교 양 시 설		1,266.78	1,266.78	1동	1,042.00	3,530.00		건폐율 18.24%
녹지 . 기타		1,707.05						녹지율 28.73%
시 설 률 (제한없음)		(4,233.95㎡ / 5,941.00㎡) x 100% = 71.27%						
건 폐 율 (법정 20%)		(1,042.00㎡ / 5,941.00㎡) x 100% = 17.54%						

나.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계				5,941.00	4,129.12		1동	1,042.00	3,530.00	50개소	시설율 71.27%
기반시설	소계			2,005.45	2,005.45					8개소	33.76%
	도로			918.41	918.41						
	진입광장-1	가-1		55.66	55.66						
	진입광장-2	가-2		51.86	51.86						
	진입광장-3	가-3		257.40	257.40						
	광장	가-4		259.78	259.78						
	진입광장-4	가-5		462.34	462.34						
	램프A	⑨								1개소	
	램프B	⑩								1개소	
	계단A	⑪								1개소	
	계단B	⑫								1개소	
	계단C	⑬								1개소	
	계단D	⑭								1개소	
	계단E	⑮								2개소	
조경시설	소계			540.34	540.34					21개소	9.10%
	미러폰드	나-1		134.88	134.88						
	잔디광장	나-2		405.46	405.46						
	캐스케이드	②								1개소	
	수목보호대	⑯								20개소	
휴양시설	소계			355.25	355.25					18개소	5.98%
	휴게쉼터1	다-1		67.07	67.07						
	휴게쉼터2	다-2		18.23	18.23						
	휴게쉼터3	다-3		17.47	17.47						
	앉음벽A	①		29.04	29.04					2개소	
	야외테이블세트A	③								4개소	
	야외테이블세트B	④								6개소	
	스탠드	⑤		211.04	211.04					1개소	
	앉음벽B	⑥								2개소	
	앉음벽C	⑦		12.40	12.40					1개소	
	앉음벽D	⑰								2개소	
운동시설	소계			66.13	66.13					3개소	1.11%
	운동공간	라		66.13	66.13						
	체력단련시설	⑧								3개소	
교양	소계			1,266.78	1,266.78					-	21.32%
	도서관	마		1,266.78	1,266.78		1동	1,042.00	3,530.00		
녹지 및 기타				1,707.05							녹지율 28.73%

다.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 계					472.04	918.41	진입로 연결로			
신설	소계				4.9	20.43				
	소로	3류	1	4.17	4.9	20.43	진입로	부지경계	도서관	
	소계				467.14	897.98				
	산책로		1	3.0	12.20	36.60	연결로	진입광장-1	진입광장-2	
	산책로		2	2.4	12.20	29.28	연결로	진입광장-1	진입광장-2	
	산책로		3	1.5	121.20	181.80	연결로	진입광장-1	진입광장-4	
	산책로		4	2.0	47.75	95.50	연결로	진입광장-1	진입광장-3	
	산책로		5	1.5	56.70	85.05	연결로	산책로-3	산책로-4	
	산책로		6	3.1	19.27	59.74	연결로	진입광장-3	진입광장-2	
	산책로		7	1.5	21.48	32.22	연결로	산책로-4	산책로-2	
	산책로		8	2.5	28.30	70.75	연결로	진입광장-4	산책로-6	
	산책로		9	3.0	10.45	31.35	연결로	진입광장-4	광장	
	산책로		10	2.5	9.72	24.30	연결로	진입광장-4	광장	
	산책로		11	3.3	5.65	18.64	연결로	진입광장-4	광장	
	산책로		12	1.65	11.75	19.39	연결로	광장	진입광장-4	
	산책로		13	2.0	4.36	8.72	연결로	진입광장-4	휴게쉼터-1	
	산책로		14	3.3	14.18	46.79	연결로	진입광장-4	진입광장-3	
	산책로		15	1.5	6.67	10.01	연결로	산책로-3	진입광장-3	
	산책로		16	1.84	45.07	82.93	연결로	산책로-8	산책로-6	
	산책로		17	1.84	25.07	46.13	연결로	산책로-6	산책로-7	
	산책로		18	1.5	2.12	3.18	연결로	대지경계	소로3-1	
	산책로		19	1.2	13.00	15.60	연결로	산책로-5	진입광장-3	

장위10구역 문화공원(가칭) 조성계획결정(최초) 도면



■범 례

시설구분	기호	번호		시 설 명	면 적(㎡) 부지면적	면 적(㎡) 연면적	공작물	비 고
총 계					5,941.00	3,530.00	50개소	
기반시설				소 계	2,005.45		8개소	
				도로	918.41			
		가	1	진입광장-1	55.66			
			2	진입광장-2	51.66			
			3	진입광장-3	257.40			
			4	광장	259.78			
			5	진입광장-4	462.34			
			⑨	펌프A			1개소	
			⑩	펌프B			1개소	
			⑪	계단A			1개소	
			⑫	계단B			1개소	
			⑬	계단C			1개소	
			⑭	계단D			1개소	
			⑮	계단E			2개소	
조경시설				소 계	540.34		21개소	
		나-1	1	미러폰드	134.88			
		나-2	2	잔디광장	405.46			
			②	캐스케이드			1개소	
			⑯	수목보호대			20개소	
휴양시설				소 계	355.25		18개소	
		다-1	1	휴게쉼터1	67.07			
		다-2	1	휴게쉼터2	18.23			
		다-3	1	휴게쉼터3	17.47			
			①	앉음벽A	29.04		2개소	
			③	아외테이블세트A			4개소	
			④	아외테이블세트B			6개소	
			⑤	스탠드	211.04		1개소	
			⑥	앉음벽B			2개소	
			⑦	앉음벽C	12.40		1개소	
			⑰	앉음벽D			2개소	
운동시설				소 계	66.13		3개소	
		라		운동공간	66.13			
			⑧	체력단련시설			3개소	
교양시설				소 계	1,266.78	3,530.00		
		마		도서관	1,266.78	3,530.00		
녹지					1,707.05			28.73%

PROJECT TITLE	DRAWING TITLE	SCALE	Date.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성계획도	1/200	2024.10

공 람 의 견 서

공람내용	장위10구역 문화공원(가칭) 조성계획(안)-장위10구역			
공람기간	2024.11.07. ~ 2024.11.21.			
의 견 제 출 인	주소	(전화 :)		
	성명		주민등록번호	
의 견 내 용				

2024. . .

제 출 인 (인)

성 북 구 청 장 귀 하

◈ 은평구공고 제2024-1895호

불광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열람 공고

1. 건설교통부 고시 제138호(1977.7.14.)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54호(2020.6.29.)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서울시 고시 제2024-208호(2024.4.25.)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불광근린공원에 대하여 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은 평 구 청 장

가. 공 원 명: 불광근린공원
나. 위　　치: 은평구 불광동 산33-1 일원
다. 면　　적: 118,314.2㎡
라.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안)의 내용
- 불광근린공원(변경) 세부
1) 공원면적 : 118,314.2㎡ → 118,349.2㎡(증35㎡)
2) 기반시설(도로및광장) : 14,199.2㎡ → 14,125.5㎡(감73.7㎡)
3) 녹지 및 기타 : 97,018.5㎡ → 97,127.2㎡(증108.7㎡)
※ 세부조서 및 도면 별첨 참조
마.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바. 열람장소 : 은평구청 공원녹지과
사. 본 조성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은평구청(공원녹지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공원녹지과, ☎ 351-800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불광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 (위치 : 은평구 불광동 산33-1번지 일원)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건축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건축면적 (㎡)	연면적 (㎡)		
계		118,314.2	19,542.7	2	1,380.6	6,044.5	5	118,349.2	19,469.0	2	1,380.6	6,044.5	5	전체부지면적 증)35.0㎡
기반시설	소 계	14,199.2	13,341.2					14,125.5	13,267.5					감) 73.7㎡
	도 로	12,738.2	11,880.2 (858.0)					12,664.5	11,806.5 (858.0)					도시계획도로 시설면적 미반영
	광 장	1,461.0	1,461.0					1,461.0	1,461.0					-
조경시설		1,727.2	1,727.2				4	1,727.2	1,727.2				4	-
휴양시설		1,255.0	1,255.0				1	1,255.0	1,255.0				1	-
운동시설		1,302.7	1,302.7					1,302.7	1,302.7					-
교양시설		2,235.0	1,340.0	1	1,340.0	6,003.9		2,235.0	1,340.0	1	1,340.0	6,003.9		-
편익시설		576.6	576.6	1	40.6	40.6		576.6	576.6	1	40.6	40.6		-
녹지 및 기타		97,018.5						97,127.2						증)108.7㎡
시 설 율 (법정40%)		(19,542.7 / 118,314.2) x 100 = 16.52%						(19,469.0 / 118,349.2) x 100 = 16.45%						
건 폐 율		(1,308.6 / 118,314.2) x 100 = 1.17%						(1,308.6 / 118,314.2) x 100 = 1.17%						

2. 시설조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합계				118,314.2	19,542.7		2동	1,380.6	6,044.5	5			118,349.2	19,469.0		2동	1,380.6	6,044.5	5	
기반시설	소계			14,199.2	13,341.2								14,125.5	13,267.5						감) 73.7㎡
	도로			12,738.2	11,880.2 (858)								12,664.5	11,806.5 (858)						감) 73.7㎡ 도시계획도로 시설면적 미포함
	진입광장	가	1개소	1,461.0	1,461.0						가	1개소	1,461.0	1,461.0						-
		가-1	불광동 산59-32임	1,461.0	1,461.0						가-1	불광동 산59-32임	1,461.0	1,461.0						-
조경시설	소계			1,727.2	1,727.2					4			1,727.20	1,727.20					4	-
	다목적 잔디광장	다	불광동 산58-3임	1,663.2	1,663.2						다	불광동 산58-3임	1,663.2	1,663.2						-
	파고라	①	4개소	64.0	64.0					4	①	4개소	64.0	64.0					4	-
		①-1	불광동 산54-5임	(16.0)	(16.0)					1	①-1	불광동 산54-5임	(16.0)	(16.0)					1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휴양시설		①-2	불광동 산54-5임	(16.0)	(16.0)					1	①-2	불광동 산54-5임	(16.0)	(16.0)					1	-
		①-3	불광동 산58-3임	(16.0)	(16.0)					1	①-3	불광동 산58-3임	(16.0)	(16.0)					1	-
		①-4	불광동 산58-3임	(16.0)	(16.0)					1	①-4	불광동 산58-3임	(16.0)	(16.0)					1	-
	소계			1,255.0	1,255.0					1			1,255.0	1,255.0					1	-
휴양시설	휴게소	라	20개소	1,255.0	1,255.0						라	20개소	1,255.0	1,255.0						-
		라-1	불광동 산58-3임	50.0	50.0						라-1	불광동 산58-3임	50.0	50.0						-
휴양시설	휴게소	라-2	불광동 산58-3임	122.0	122.0						라-2	불광동 산58-3임	122.0	122.0						-
		라-3	불광동 산59-5임	28.0	28.0						라-3	불광동 산59-5임	28.0	28.0						-
		라-4	불광동 산59-5임	59.7	59.7						라-4	불광동 산59-5임	59.7	59.7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라-5	불광동 산33-1임	485.8	485.8						라-5	불광동 산33-1임	485.8	485.8						-
	라-6	불광동 산58-3임	136.9	136.9						라-6	불광동 산58-3임	136.9	136.9						-
	라-7	불광동 산54-5임	51.1	51.1						라-7	불광동 산54-5임	51.1	51.1						-
	라-8	불광동 산54-5임	53.0	53.0						라-8	불광동 산54-5임	53.0	53.0						-
	라-9	불광동 산54-5임	57.1	57.1						라-9	불광동 산54-5임	57.1	57.1						-
	라-10	불광동 산58-2임	15.0	15.0						라-10	불광동 산58-2임	15.0	15.0						-
	라-11	불광동 산58-3임	17.5	17.5						라-11	불광동 산58-3임	17.5	17.5						-
	라-12	불광동 산58-3임	43.9	43.9						라-12	불광동 산58-3임	43.9	43.9						-
	라-13	불광동 산58-3임	13.5	13.5						라-13	불광동 산58-3임	13.5	13.5						-
	라-14	불광동 산58-3임	13.5	13.5						라-14	불광동 산58-3임	13.5	13.5						-
	라-15	불광동 산60-1임	40.5	40.5						라-15	불광동 산60-1임	40.5	40.5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휴양시설		라-16	불광동 산33-1임	13.5	13.5						라-16	불광동 산33-1임	13.5	13.5						-
	휴게소	라-17	불광동 산58-14임	13.5	13.5						라-17	불광동 산58-14임	13.5	13.5						-
		라-18	불광동 산58-2임	13.5	13.5						라-18	불광동 산58-2임	13.5	13.5						-
		라-19	불광동 산58-3임	13.5	13.5						라-19	불광동 산58-3임	13.5	13.5						-
		라-20	불광동 산54-5임	13.5	13.5						라-20	불광동 산54-5임	13.5	13.5						-
	장의자		전지역							1		전지역							1	65개소
운동시설	소계			1,302.7	1,302.7								1,302.7	1,302.7						-
	체력단련장	아	불광동 산33-1임 외	476.9	476.9						아	불광동 산33-1임 외	476.9	476.9						-
		아-1	불광동 산33-1임 외	238.1	238.1						아-1	불광동 산33-1임 외	238.1	238.1						-
		아-2	불광동 산33-1임 외	116.2	116.2						아-2	불광동 산33-1임 외	116.2	116.2						-
		아-3	불광동 산33-1임 외	122.6	122.6						아-3	불광동 산33-1임 외	122.6	122.6						-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운동장	차	불광동 산54-5임	397.0	397.0						차	불광동 산54-5임	397.0	397.0						-
	배드민턴장	카		428.8	428.8						카		428.8	428.8						-
교양시설	소계			2,235	1,340		1동	1,340.0	6,003.9				2,235	1,340		1동	1,340.0	6,003.9		-
	도서관	3	불광동 산59-32임	2,235	1,340	R.C	1동	1,340.0	6,003.9		3	불광동 산59-32임	2,235	1,340	R.C	1동	1,340.0	6,003.9		-
편익시설	소계			576.6	576.6		1동	40.6	40.6				576.6	576.6		1동	40.6	40.6		-
	주차장	자	1개소	536	536						자	1개소	536	536						-
		자-2	불광동 산59-32임	536	536						자-2	불광동 산59-32임	536	536						-
	화장실	4	1개소	40.6	40.6	FRC	1동	40.6	40.6		4	1개소	40.6	40.6	FRC	1동	40.6	40.6		-
		4-1	불광동 산58-3임	31.6	31.6			31.6	31.6		4-1	불광동 산58-3임	31.6	31.6			31.6	31.6		-
		4-2	불광동 산54-5임	9.0	9.0			9.0	9.0		4-2	불광동 산54-5임	9.0	9.0			9.0	9.0		-
녹지 및 기타	소계			97,018.5									97,127.20							증)108.7㎡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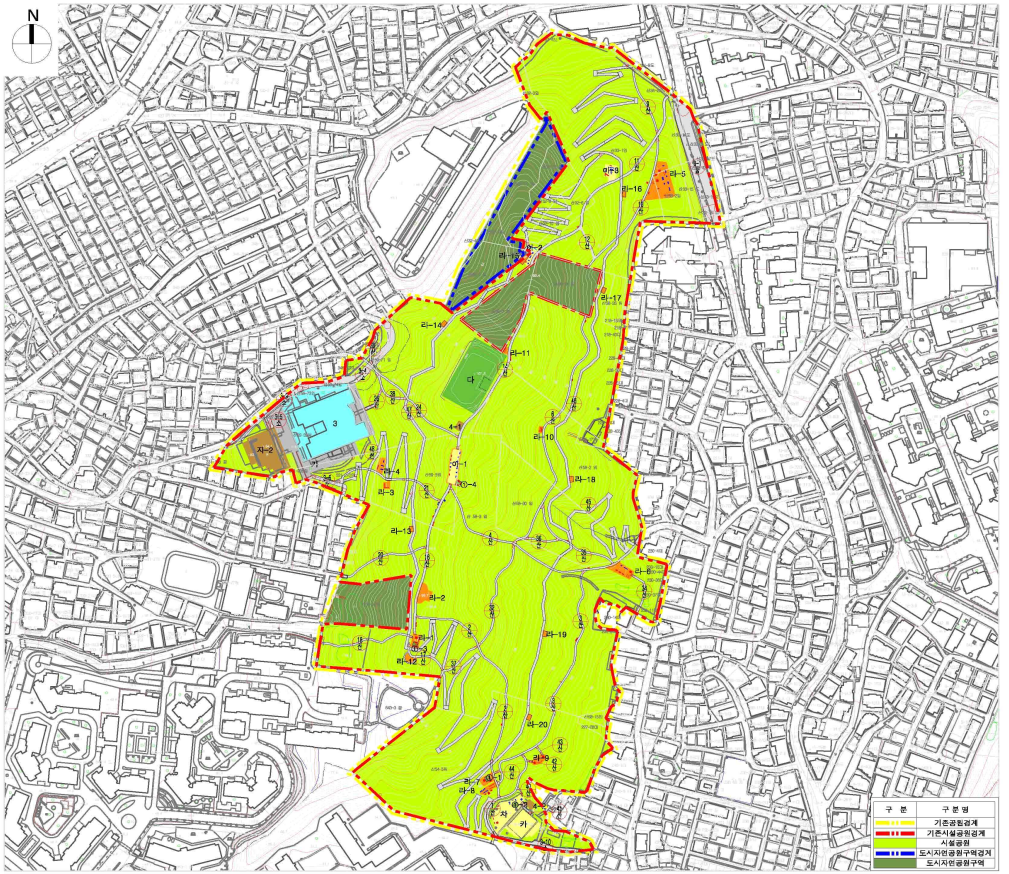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5,716	11,880.2				
변경					5,677	11,806.5				감) 73.7㎡
당초	중 로	소계			104	1,438				
당초		3	1	12	104	1,438	진입로	불광동 산33-4도	불광동 213도	
당초	소 로	소계			301	346 (858)	진입로연결			
당초		3	4	6	107	(577)	〃	불광동 산58-3임	소로 3-9	도시계획 도로
당초		3	5	6	11	64	〃	소로 3-9	주차장 (자)	
당초		3	6	3	36	107	〃	불광동 331-210임	광장 (가-2)	
당초		3	9	4	75	(281)	〃	소로 3-4	불광동 산59-73임	도시계획 도로
당초		3	10	2	72	175	〃	불광동 산54-5임	산책로 1	
당초	산책로	소계			5,311	10,096.2				
변경					5,272	10,022.5				감) 73.7㎡
당초			1	1.5	86	133.3	〃	불광동 산54-5임	산책로 2	
당초			2	1.5	202	304.4	〃	산책로 1	산책로 16	
당초			3	1.5	214	326.9	〃	산책로 2	산책로 4	
당초			4	1.5	200	317.9	〃	대양아파트	체력단련장 (아-2)	
변경			4	1.5	200	303.2	〃	대암아파트	체력단련장 (아-1)	감) 14.7㎡
당초			6	1.5	220	488.2	〃	산책로 4	불광동 산 58-14	
당초			9	1.5	60	90.7	〃	불광동 산34-25도	산책로10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10	1.5	128	193.7	"	불광동 산34-25도	휴게소 (라-5)	
당초			11	2.0	194	386.0	"	휴게소 (라-5)	체력단련장 (아-3)	
당초			12	1.5	27	48.3	"	산책로 10	산책로 11	
당초			14	2.0	147	293.8	"	불광동 산58-14	체력단련장 (아-1)	
당초			16	2.0	131	378.2	"	휴게소 (라-1)	체력단련장 (아-1)	
당초			17	1.5	65	82.2	"	휴게소 (라-1)	산책로 37	
당초			18	1.5	82	122.8	"	불광동 산58-3임	휴게소 (라-1)	
당초			20	1.5	78	121.6	"	불광동 산58-3임	산책로 16	
당초			21	1.5	111	182.5	"	소로 3-6	산책로16	
당초			24	1.5	107	160.8	"	불광동 산 59-71	산책로 14	
당초			26	1.5	23	44.5	"	광장 (가)	산책로 38	
당초	산책로		32	1.5	94	142.3	"	산책로 2	산책로 4	
당초			34	1.5	39	59.0	"	불광동 산58-3임	휴게소 (라-6)	
변경			-	-	-	-	-	-	-	폐지
당초			35	1.5	84	127.9		산책로 4	산책로 6	
당초			36	1.5	37	52.7	"	산책로 35	산책로 6	
당초			37	1.5	43	65.8	"	아미산자락 소공원	산책로 2	
당초			38	1.5	39	62.0	"	산책로 24	산책로 24	
당초			39	1.5	30	46.7	"	불광동 산58-3임	산책로 24	
당초			40	0.8	8	8.2	"	산책로 1	운동장 (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41	1.8	13	28.0	"	배드민턴장 (카)	운동장 (차)	
당초			42	1.2	5	6.0	"	산책로 1	휴게소 (라-9)	
당초			43	1.2	8	11.0	"	산책로 3	휴게소 (라-9)	
당초			44	1.2	5	7.4	"	산책로 3	산책로 2	
당초			45	2.0	215	452.7	"	산책로 4	산책로 46	데크로드
당초			46	2.0	1,161	2,368.9	"	불광동 산54-5임	불광동 산34-25도	데크로드
당초			47	2.0	1,180	2,415.5	"	산책로 2	산책로 46	데크로드
당초			48	2.0	275	566.3	"	소로 3-6	산책로 47	데크로드

조성계획도(변경전)

불광근린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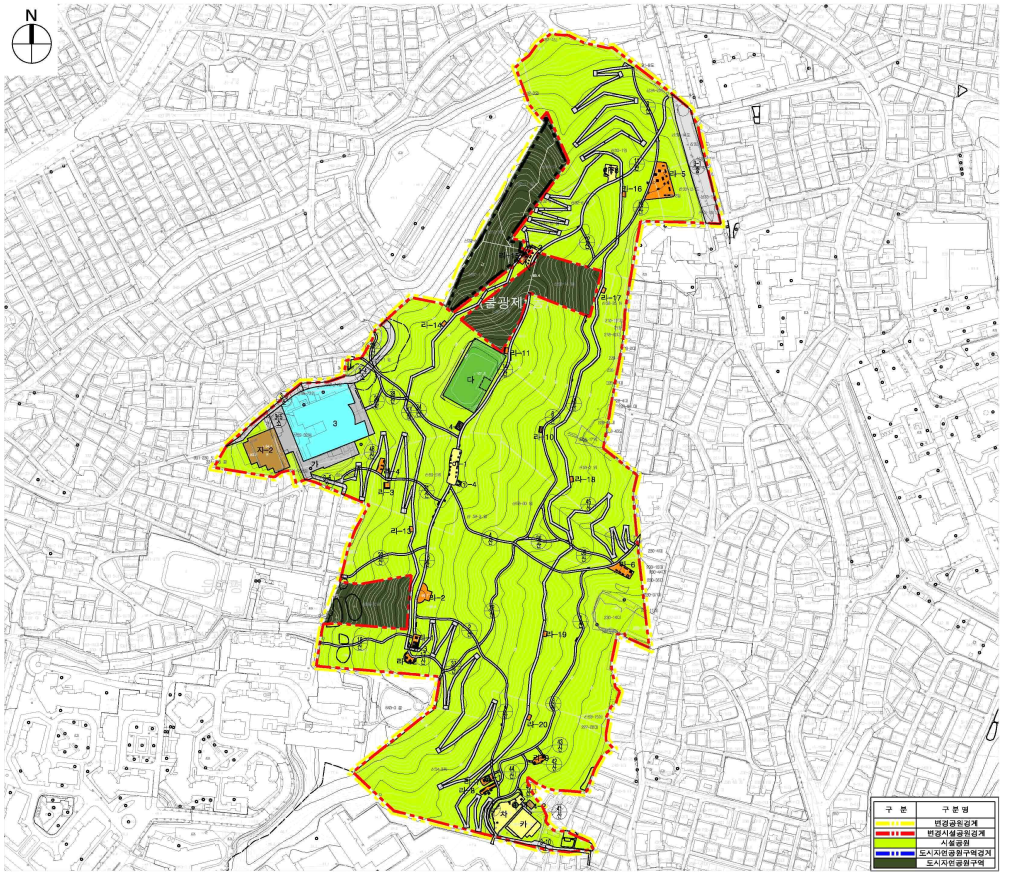
■ 범 례(변경전)

구 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 작 물(기)	비 고
합 계			118,314.2	19,542.7	5	
기반시설	소 계		14,199.2	13,341.2		
	도 로		12,738.2	11,680.2 (858.0)		도시계획도로 시설면적 미포함
	광 장	가	1,461.0	1,461.0		
조경시설	소 계		1,727.2	1,727.2	4	
	다목적잔디광장	다	1,663.2	1,663.2		
	폭 포 라	①	64.0	64.0	4	
		①-1	(16.0)	(16.0)	(1)	
		①-2	(16.0)	(16.0)	(1)	
		①-3	(16.0)	(16.0)	(1)	
		①-4	(16.0)	(16.0)	(1)	
휴양시설	소 계		1,255.0	1,255.0	1	
	휴 게 소	라	1,255.0	1,255.0		
		라-1	(50.0)	(50.0)		
		라-2	(122.0)	(122.0)		
		라-3	(28.0)	(28.0)		
		라-4	(59.7)	(59.7)		
		라-5	(485.6)	(485.6)		
		라-6	(136.9)	(136.9)		
		라-7	(51.1)	(51.1)		
		라-8	(53.0)	(53.0)		
		라-9	(57.1)	(57.1)		
		라-10	(15.0)	(15.0)		
		라-11	(17.5)	(17.5)		
		라-12	(43.9)	(43.9)		
		라-13	(13.5)	(13.5)		
		라-14	(13.5)	(13.5)		
		라-15	(40.5)	(40.5)		
		라-16	(13.5)	(13.5)		
		라-17	(13.5)	(13.5)		
		라-18	(13.5)	(13.5)		
		라-19	(13.5)	(13.5)		
		라-20	(13.5)	(13.5)		
	장 의 자	전지역			1	(65개소)
운동시설	소 계		1,302.7	1,302.7		
	체 력 단 련 장	아	476.9	476.9		
		아-1	238.1	238.1		
		아-2	116.2	116.2		
		아-3	122.6	122.6		
	운 동 장	차	397.0	397.0		
	버 드 민 턴 장	카	428.8	428.8		
교양시설	소 계		2,235.0	1,340.0		
	도 서 관	3	2,235.0	1,340.0		
편익시설	소 계		576.6	576.6		
	주차장	자	536.0	536.0		
		자-2	536.0	536.0		
	화장실	4	40.6	40.6		
		4-1	31.6	31.6		
		4-2	9.6	9.6		
녹지및기타	소 계		97,018.5			
	녹 지		97,018.5			

*공원시설율 : (19,542.7 / 118,314.2) x 100 = 16.52%
*건폐율 : (1,380.6 / 118,314.2) x 100 = 1.17%

조성계획도(변경후)

불광근린공원



■ 범 례[변경후]

구 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 작 물(기)	비 고
합	계		118,349.2	19,469.0	5	
기반시설	소 계		14,125.5	13,267.5		
	도 로		12,664.5	11,808.5 (858.0)		도시계획도로 사업면적 지표함
	광 장	가	1,461.0	1,461.0		
조경시설	소 계		1,727.2	1,727.2	4	
	다목적잔디광장	다	1,663.2	1,663.2		
	폭 포 라	①	64.0	64.0	4	
		①-1	(16.0)	(16.0)	(1)	
		①-2	(16.0)	(16.0)	(1)	
		①-3	(16.0)	(16.0)	(1)	
		①-4	(16.0)	(16.0)	(1)	
휴양시설	소 계		1,255.0	1,255.0	1	
	휴 게 소	라	1,255.0	1,255.0		
		라-1	(50.0)	(50.0)		
		라-2	(122.0)	(122.0)		
		라-3	(28.0)	(28.0)		
		라-4	(59.7)	(59.7)		
		라-5	(485.8)	(485.8)		
		라-6	(136.9)	(136.9)		
		라-7	(51.1)	(51.1)		
		라-8	(53.0)	(53.0)		
		라-9	(57.1)	(57.1)		
		라-10	(15.0)	(15.0)		
		라-11	(17.5)	(17.5)		
		라-12	(43.9)	(43.9)		
		라-13	(13.5)	(13.5)		
		라-14	(13.5)	(13.5)		
		라-15	(40.5)	(40.5)		
		라-16	(13.5)	(13.5)		
		라-17	(13.5)	(13.5)		
		라-18	(13.5)	(13.5)		
		라-19	(13.5)	(13.5)		
		라-20	(13.5)	(13.5)		
	장 의 자	전지역			1	(65개소)
운동시설	소 계		1,302.7	1,302.7		
	체 력 단 련 장	아	476.9	476.9		
		아-1	238.1	239.1		
		아-2	116.2	116.2		
		아-3	122.6	122.6		
	운 동 장	자	397.0	397.0		
	버 드 민 턴 장	카	428.8	428.8		
교양시설	소 계		2,235.0	1,340.0		
	도 서 관	3	2,235.0	1,340.0		
편익시설	소 계		576.6	576.6		
	주차장	자	536.0	536.0		
		자-2	536.0	536.0		
	화장실	4	40.6	40.6		
		4-1	31.6	31.6		
		4-2	9.6	9.6		
녹지및기타	소 계		97,127.2			
	녹 지		97,127.2			

*공원시설율 : (19,469.0 / 118,349.2) x 100 = 16.45%
*건폐율 : (1,380.6 / 118,314.2) x 100 = 1.17%

◈ 서대문구공고 제2024-1552호

도시계획시설(독립문문화공원) 조성계획(변경)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1-373호(2001.11.06.) 천연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결정으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15-116호(2015.9.24.)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19-173호(2019.11.20.) 도시계획시설 세분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20-206호(2020.11.18.)로 천연·충현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변경고시되어 천연충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독립문문화공원에 대하여,
2. 공원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서 대 문 구 청 장

1. 위　　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천동 263번지 일대
2. 면　　적 : 4,347㎡
3. 조성계획 변경(안)
   1) 기반시설 : 2,047.60㎡ → 1,973.88㎡
   2) 조경시설 : 4.67㎡ → 7.11㎡
   3) 휴양시설 : 156.91㎡ → 94.25㎡
   4) 편익시설 : 101.65㎡ → 189.34㎡
   5) 녹지 및 기타 : 2,036.17㎡ → 2,082.42㎡
4.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5. 열람기간 : 열람공고 다음날로부터 14일간
6. 열람장소 :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 330-1396)
7. 기　　타 : 본 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푸른도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독립문문화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 (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천동 263번지 일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4,347.00	2,310.83	(3)	(298.12)	(298.12)	27	4,347.00	2,264.58	1(4)	29.63 (583.82)	29.63 (583.82)	19	감 46.25㎡
기반시설	소계	2,047.60	2,047.60					1,973.88	1,973.88					감 73.72㎡
	광장	552.22	552.22					555.54	555.54					증 3.32㎡
	도로	1,495.38	1,495.38					1,418.34	1,418.34					감 77.04㎡
조경시설		4.67	4.67				6	7.11	7.11				4	증 2.44㎡
휴양시설		156.91	156.91				21	94.25	94.25				15	감 62.66㎡
유희시설		-	-					-	-					-
교양시설		-	-					-	-					-
편익시설		101.65	101.65					189.34	189.34	1	29.63	29.63		증 87.69㎡
관리시설		-	-					-	-					
녹지 · 기타		2,036.17	(298.12)	(3)	(298.12)	(298.12)	(3)	2,082.42	(583.82)	(4)	(583.82)	(583.82)	(4)	증 46.25㎡
시 설 률 (법정 제한없음)		(2,310.83/4,347.0) × 100 = 53.16 %						(2,264.58 /4,347.0) × 100 = 52.09 %						
건 폐 율 (법정 20%이하)		-						(29.63 / 4,347.0) x 100 = 0.68%						

2. 시설조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바닥면적	건축물 (㎡)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바닥면적	건축물 (㎡) 연면적	공작물 (기)	
합 계				4,347.00	2,310.83			(298.12)	(298.12)	27			4,347.00	2,264.58		1	29.63 (583.82)	29.63 (583.82)	19	감 46.25㎡
기반시설	소 계			2,047.60	2,047.60								1,973.88	1,973.88						감 73.72㎡
	광 장	가		552.22	552.22						가		555.54	555.54						증 3.32㎡
	도 로		전지역	1,495.38	1,495.38							전지역	1,418.34	1,418.34						감 77.04㎡
조경시설	소 계			4.67	4.67					6			7.11	7.11					4	증 2.44㎡
	메모리얼가벽	①	소로 3-2,3	0.53	0.53					4	①	소로 3-2,3	0.16	0.16					2	감 0.37㎡
	장식가벽	②	북측 출입구	1.20	1.20					1	②	북측 출입구	3.81	3.81					1	증 2.61㎡
	분수대	③	북측 출입구	2.94	2.94					1										폐지
	만초샘										③	북측 출입구	3.14	3.14					1	신설
휴양시설	소 계			156.91	156.91					21			94.25	94.25					15	감 62.66㎡
	파고라	④	서측 출입구	22.44	22.44					1	④	서측 출입구	24.50	24.50					1	증 2.06㎡
	모두의식탁	⑤	광장 좌측	19.87	19.87					1	⑤	광장 좌측	12.60	12.60					2	감 7.27㎡
	평상	⑥	광장 좌측	12.00	12.00					3	⑥	광장 좌측	4.50	4.50					4	감 7.5㎡
	야외테이블 셋트										⑦	영천시장 입구부, 광장 좌측	6.38	6.38					4	신설
	앉음벽	⑦	전지역	102.60	102.60					16	⑧	전지역	46.27	46.27					6	감 56.33㎡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편의시설	소계			101.65	101.65								189.34	189.34		1	29.63	29.63		증 87.69㎡
	주차장	1		101.65	101.65						1	광장 좌측	159.71	159.71						증 58.06㎡
	공중화장실										2	광장 좌측	29.63	29.63	목구조 철구조	1	29.63	29.63		신설
녹지 및 기타	소 계			2,036.17	(298.12)			(298.12)	(298.12)	(3)			2,082.42	(583.82)			(583.82)	(583.82)	(4)	증 46.25㎡
	녹지		전지역	2,036.17	(298.12)			(298.12)	(298.12)	(3)		전지역	2,082.42	(583.82)			(583.82)	(583.82)	(4)	증 46.25㎡
	주차장 계단실-1	2	광장 좌측	(32.33)	(32.33)	철콘	1층	(32.33)	(32.33)	(1)	3	광장 우측	(62.59)	(62.59)	철골	1층	(62.59)	(62.59)	(1)	주차장 이용시설
	주차장 계단실-2	3	주차장램프 우측	(73.44)	(73.44)	철콘	1층	(73.44)	(73.44)	(1)	4	주차장램프 우측	(57.84)	(57.84)	철콘	1층	(57.84)	(57.84)	(1)	주차장 이용시설
	주차장 램프	4	영천시장 입구부	(192.35)	(192.35)	철콘	1층	(192.35)	(192.35)	(1)	5	영천시장 입구부	(169.18)	(169.18)	철콘	1층	(169.18)	(169.18)	(1)	주차장 이용시설
	교통센터										6	주차장 좌측	(294.21)	(294.21)	철콘	1층	(294.21)	(294.21)	(1)	신설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499.5	1,495.38				
변경					450.5	1,378.82				
당초	소로	소 계			499.5	1,495.38				
변경					450.5	1,378.82				
당초		3	1	5.5	77.5	387.44	진입로	시장입구	보도	
변경				4.0	79.0	319.24	진입로	시장입구	도로	
당초		3	2	3.0	51.5	110.56	진입로	지하주차장 우측	보도	
변경				2.0	44.0	90.98	진입로	지하주차장 우측	소로3-1	
당초		3	3	3.0	52.0	106.26	연결로	소로3-1	보도	
변경				2.0	18.0	36.43	연결로	소로3-1	소로3-18	
당초		3	4	2.0	8.0	14.11	연결로	소로3-2	보도	
변경				2.0	9.0	16.37	연결로	주차장램프	소로3-1	
당초		3	5	3.5	45.5	120.98	연결로	소로3-6	보도	
변경				1.5	56.5	151.8	연결로	소로3-6	도로	
당초		3	6	1.5	10.0	16.30	연결로	소로3-2	보도	
변경				3.5	20.5	73.09	연결로	소로3-2	보도	
당초		3	7	4.0	28.0	140.39	연결로	시장입구	소로3-9	
변경				10.0	12.0	143.71	연결로	소로3-1	보도	
당초		3	8	4.0	21.5	71.79	연결로	소로3-7	소로3-9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변경				3.0	21.5	67.80	연결로	소로3-7	소로3-9	
당초	소로	3	9	2.5	34.0	157.49	연결로	보도	소로3-10	
변경				2.5	15.5	35.15	연결로	소로3-7	보도	
당초		3	10	2.0	19.0	38.90	연결로	소로3-11	광장	
변경				2.0	23.5	47.95	연결로	보도	광장	
당초		3	11	2.0	28.0	74.05	연결로	소로3-12	보도	
변경				1.5	26.5	42.79	연결로	소로3-10	보도	
당초		3	12	2.0	59.5	149.33	연결로	소로3-9	보도	
변경				1.5	12.5	50.08	연결로	소로3-9	소로3-10	
당초		3	13	1.5	11.0	16.46	연결로	소로3-12	소로3-16	
변경				1.5	12.5	18.23	진입로	보도	소로3-16	
당초		3	14	1.2	9.0	11.07	연결로	소로3-12	소로3-16	
변경				1.5	11.0	15.81	진입로	보도	소로3-16	
당초		3	15	0.6	8.0	4.65	연결로	소로3-12	소로3-16	
변경				4.0	9.0	55.34	진입로	보도	도로	
당초		3	16	2.0	15.0	30.46	연결로	보도	소로3-17	
변경				3.2	17.5	38.22	연결로	소로3-15	소로3-17	
당초		3	17	2.0	22.00	45.14	연결로	보도	소로3-11	
변경				2.2	29.0	56.34	연결로	소로3-16	보도	
신설		3	18	3.5	33.0	112.38	진입로	보도	소로3-1	
신설		2	1	8.1	6.0	46.63	진입로	시장입구	주차장램프	

◈ 마포구공고 제2024-158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20-83호(2020.06.25.)로 실시계획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22-12호(2022.02.03.)로 실시계획(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22-235호(2022.12.22.)로 실시계획(변경) 고시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23-230호(2023.12.21.)로 실시계획(변경)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대흥동261-3~338-5 외 6개소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2. 실시계획(변경)을 작성하였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계 서류 열람을 공고 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과(☎02-3153-9754)에 비치하여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자(영업권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본 실시계획(변경)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7일
마 포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마포구 도로개선과(☎02-3153-9754)
다. 변경사유 : 사업규모(폭원) 변경, 물건조서 변경, 영업권조서 추가
라. 사업시행지(변경 없음)
마..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바. 사업규모 : 사업시행지(1개 구간) 폭원 변경
1) 공사개요

연번		사 업 명	사업시행지	사업의종류 및 규모	도시계획사항	사업기간
1	기정	망원동 57-33 ~ 57-207 도로개설공사	망원동 57-33 ~ 57-207간	도로개설 폭 = 6m 연장= 430m	마포구제98호 (98.11.24.) 도시계획시설결정	인가일로부터 2025. 12. 31.
2	변경	망원동 57-33 ~ 57-207 도로개설공사	망원동 57-33 ~ 57-207간	도로개설 폭 = 5~7m 연장= 430m	마포구제98호 (98.11.24.) 도시계획시설결정	인가일로부터 2025. 12. 31.

사.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아.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없음)(2020. 6. 25. ~ 2025. 12. 31.)
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도로개선과, ☎02-3153-9754)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물건 등의 감정평

가 결과에 따라 고시되는 내용과 달리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의 보상면적 및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1) 교통시설(도로)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	6	국지도로	430	망원동 57-33	망원동 57-207	일반 도로	마포구제98호 (98.11.24.)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소로	2	-	5~7	국지도로	430	망원동 57-33	망원동 57-207	일반 도로	마포구제98호 (98.11.24.) 도시계획시설결정	폭원변경

○ 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소로2류	폭원 변경 (경미한 변경)	· 지형도면과 결정조서 상이로 지형도면에 맞춰 변경	

카. 지형도면의 작성(변경없음)

별첨 1. 물건조서 1부.
2. 영업권조서 1부. 끝.

<물 건 조 서>

○ 사 업 명 : 대흥동 261-3 ~ 338-5 도로개설공사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층수	편입수량	단위	주용도	소유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명 또는 명칭(지분)	주 소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소유권 이외의 권리	
1	기정	대흥동 341-2	건물	연와조 (1층)	23	㎡	주택 (다가구)	오*건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				
	변경	대흥동 341-2	건물	연와조 (1층)	23	㎡	주택	최*애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길 ** (용강동)				

<영 업 권 조 서>

사업명 : 대흥동 261-3 ~ 338-5 도로개설공사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영업의 종류	상호명	수량	영업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1	대흥동 328-12	도 · 소매(페인트)	누리가이	1	이*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길 *, *층				
2	대흥동 328-13	건설(도장공사)	태광공사	1	유*목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길 *				
3	대흥동 346	도 · 소매(열쇠)	하나열쇠	1	박*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길 **, *층 우측				
4	대흥동 346	사업서비스업 (기타임가공업)	을지인테리어	1	김*덕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길 **, *층				
5	대흥동 341-1	건설업 (난방공사)	대흥설비	1	김*복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 동원빌딩 ***				
6	대흥동 34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의복)	동영수선	1	조*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길 **, *층				

<영 업 권 조 서>

사업명 : 망원동 57-433 ~ 448 도로개설공사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영업의 종류	상호명	수량	영업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1	망원동 57-376	소매(편의점)	GS25 편의점 (망원명품길점)	1	한*훈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길 **, *층				
2	망원동 57-376	서비스(미용)	명품헤어샵	1	김*희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길 **, *층				

<영 업 권 조 서>

사업명 : 망원동 57-33 ~ 57-207 도로개설공사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영업의 종류	상호명	수량	영업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1	망원동 57-189	소매(도자기)	자요포터리	1	김*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길 **, *층(망원동)				

◈ 구로구공고 제2024-196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구로구고시 제2021-1호(2021.01.07.)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고시되고, 구로구공고 제2021-48호(2021. 1.14.)로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하고, 구로구고시 제2021-39호(2021.02.25.)로 실시계획 인가되고, 구로구고시 제2022-191호(2022.12.22.)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된 고산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9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관련서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도로과(☎860-2257)에 비치하고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드리며, 본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실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7일
구 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76-232 ~ 76-321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　　칭 : 고산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규모(변경없음) : 도로개설 폭 8m, 연장 85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성　　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가마산로 245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실시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2년간
바. 열람기간 : 공보게재일 익일로부터 14일간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 첨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별 첨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도로과(☎860-22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 업 시 행 자 : 구로구청장

○ 사 업 의 명 칭 : 고산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비고	모지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고척동 76-321	도	5	5	이ㅇ하	서울 강서구 목동 ㅇ					
2	고척동 76-317	잡	463	463	김ㅇ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ㅇ					
					오ㅇ태	경상남도 사천시 문선1길 ㅇ					
					이ㅇ호	경상남도 마산시 회원구 양덕동 ㅇ					

◈ 서초구공고 제2024-2328호

서울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서울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사업인정 의제에 관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지역 전체의 각종 행위를 아래와 같이 제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서 초 구 청 장

1.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예정) : 2026년 ~ 2035년

지 구 명	위 치	면 적	지구지정 제안자 명칭(성명) 및 주소
서울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원지동, 신원동, 염곡동, 내곡동 일원	2,018,074㎡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 열람기간 및 장소

열람기간	열람장소
2024년 11월 05일 ~ 2024년 11월 26일(21일간)	- 서초구청 도시계획과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4. 11. 05. ~ 2024. 11. 26.(21일간)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제출

○ 제출장소 : 서초구청 도시계획과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21 4층 도시계획과 (FAX. 02-2155-6819)

※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단지사업팀 (☎ 02-3416-3751)

4. 행위제한

○ 서울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사업예정지는「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행위제한이 적용되며, 행위제한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2) 「공공주택 특별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주택지구 안에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허가를 하려면 미리 공공주택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가)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나) 인공 시설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다)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切土), 성토(盛土), 정지(整地), 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행위
라) 토석의 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제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토지의 분할·합병
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사)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3) 「공공주택 특별법」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가)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다)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라) 주택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 채취
마) 주택지구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바) 관상용 죽목을 임시로 심는 행위(경작지에 임시로 심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 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 본 열람내용은 최종결정 내용이 아니며, 결정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 견 서

①사업명	서울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②사업지구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원지동, 신원동, 염곡동, 내곡동 일원			
③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④의견제출자	성 명 및 기관 · 단체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⑤의견내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따라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서초구청장 귀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 제출서

사업명	서울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사업장 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원지동, 신원동, 염곡동, 내곡동 일원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열람기간	2024.11.05. ~ 2024.11.26.	
관련지번 (소유지번)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번지	
의견제출자	□ 소유자 □ 관계인 (해당사항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주민등록상 현주소)	연락처
서울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사업인정에 대한 의견 **※ 소유자 및 관계인, 이해관계가 있는자 작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서울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초구청장 귀하

◈ 서초구공고 제2024-2329호

서울서리풀2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서울서리풀2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사업인정 의제에 관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지역 전체의 각종 행위를 아래와 같이 제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서 초 구 청 장

1.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예정) : 2026년 ~ 2035년

지 구 명	위 치	면 적	지구지정 제안자 명칭(성명) 및 주소
서울서리풀2 공공주택지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일원	193,259㎡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 열람기간 및 장소

열람기간	열람장소
2024년 11월 05일 ~ 2024년 11월 26일(21일간)	- 서초구청 도시계획과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4. 11. 05. ~ 2024. 11. 26.(21일간)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제출

○ 제출장소 : 서초구청 도시계획과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21 4층 도시계획과 (FAX. 02-2155-6819)

※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단지사업팀 (☎ 02-3416-3751)

4. 행위제한

○ 서울서리풀2 공공주택지구 사업예정지는「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행위제한이 적용되며, 행위제한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2)「공공주택 특별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주택지구 안에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허가를 하려면 미리 공공주택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가)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나) 인공 시설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다)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切土), 성토(盛土), 정지(整地), 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행위
라) 토석의 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제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토지의 분할·합병
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사)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3) 「공공주택 특별법」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가)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다)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라) 주택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 채취
마) 주택지구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바) 관상용 죽목을 임시로 심는 행위(경작지에 임시로 심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 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 본 열람내용은 최종결정 내용이 아니며, 결정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 견 서

①사업명	서울서리풀2 공공주택지구			
②사업지구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일원			
③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④의견제출자	성 명 및 기관 · 단체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⑤의견내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따라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서초구청장 귀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 제출서

사업명	서울서리풀2 공공주택지구	
사업장 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일원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열람기간	2024.11.05. ~ 2024.11.26.	
관련지번 (소유지번)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번지	
의견제출자	□ 소유자 □ 관계인 (해당사항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주민등록상 현주소)	연락처
서울서리풀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사업인정에 대한 의견 **※ 소유자 및 관계인, 이해관계가 있는자 작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서울서리풀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초구청장 귀하

◈ 서초구공고 제2024-2339호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내 소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03호(2010.11.11.)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13-89호(2013.8.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18-42(2018.3.8.)호로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41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된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내 소공원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결정을 변경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서 초 구 청 장

1. 공원현황
   가. 도시계획시설(공원):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내 소공원
   나. 위　　치: 서초구 방배동 967-25번지 일대
   다. 공원면적: 6,702.5㎡
2. 조성계획 변경(안)
   가. 목　적 :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따라 주변녹지와 연계성을 강화한 공원계획을 통해 주민들에게 휴게 및 녹지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나. 조성내역 :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어린이공원1 → 소공원)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안) 변경
   <변경>
   - 기반시설 : 도로, 광장(감) 275.78㎡ (1,181.76㎡→905.98㎡)
   - 조경시설 : 실개울(감) 534.47㎡ (546.17㎡→11.70㎡)
   - 휴양시설 : 휴게공간(증) 130.37㎡ (193.84㎡→324.21㎡)
   - 녹지및기타 : 녹지(증) 1,415.33㎡ (4,045.28㎡→5,460.61㎡)

   <폐지>
   - 유희시설 : 어린이놀이터, 모래놀이터(감) 587.36㎡ (587.36㎡→0㎡)
   - 운동시설 : 체력단련장(감) 109.10㎡ (109.10㎡→0㎡)
   - 편익시설 : 화장실(감) 38.99㎡ (38.99㎡→0㎡)
3.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4.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열람시간 09:00 ~ 18:00)
5. 열람장소 : 서초구청 공원녹지과 (☎02-2155-6861)
6. 본 조성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공원 조성계획결정조서 및 조성계획도 각 1부.　끝.

방배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소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 (서초구 방배동 967-25번지 일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동수 (동)	건축물 바닥면적 (㎡)	건축물 연면적 (㎡)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동수 (동)	건축물 바닥면적 (㎡)	건축물 연면적 (㎡)	공작물 (기)	
계		6,702.50	2,657.22				69	6,702.50	1,241.89				32	시설면적 감 1,415.33㎡ 공작물 감 37기
기반시설	소 계	1,181.76	1,181.76				-	905.98	905.98				-	감 275.78㎡
	도 로	1,011.32	1,011.32				-	815.23	815.23				-	감 196.09㎡
	광 장	170.44	170.44				-	90.75	90.75				-	감 79.69㎡
조경시설		546.17	546.17				12	11.70	11.70				-	감 534.47㎡ 감 12기
휴양시설		193.84	193.84				23	324.21	324.21				5	증 130.37㎡ 감 18기
유희시설		587.36	587.36				5	-	-				-	폐지
운동시설		109.10	109.10				5	-	-				-	폐지
편익시설		38.99	38.99				-	-	-				-	폐지
관리시설		-	-				24	-	-				27	증 3기
녹지 및 기타		4,045.28	4,045.28				-	5,460.61	5,460.61				-	증 1,415.33㎡
시설률		법정 60% (2,657.22 / 6,702.50) × 100 = 39.64%						법정 20% (1,241.89/6,702.50) × 100 = 18.53%						어린이공원에서 소공원으로 변경

2. 시설조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바닥면적	건축물 (㎡)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바닥면적	건축물 (㎡) 연면적	공작물 (기)	
합 계				6,702.50	2,657.22					69			6,702.50	1,241.89					32	시설면적 감 1,415.33㎡ 공작물 감 37기
기반시설	소 계			1,181.76	1,181.76					-			905.98	905.98					-	감 275.78㎡
	도 로		방배동 967-25 일대	1,011.32	1,011.32					-	-	방배동 967-25 일대	815.23	815.23					-	감 196.09㎡
	광장			170.44	170.44					-	-		90.75	90.75					-	감 79.69㎡
	광장-1	㉮		99.39	99.39					-	-		-	-					-	폐지
	광장-2	㉯		71.05	71.05					-	-		-	-					-	폐지
	광장			-	-					-	가	방배동 967-25 일대	90.75	90.75					-	신설
조경시설	소 계			546.17	546.17					12			11.70	11.70					-	감 534.47㎡
	앉음벽	①	방배동 967-25 일대	-	-					4	-		-	-					-	폐지
	장식벽	②		-	-					5	-		-	-					-	폐지
	계단-1	③		11.00	11.00					-	-		-	-					-	폐지
	계단-2	④		8.40	8.40					-	-		-	-					-	폐지
	계단-3	⑤		7.30	7.30					-	-		-	-					-	폐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계단-4	⑥		10.20	10.20					-	-		-	-					-	폐지
	계단-5	⑦		9.10	9.10					-	-		-	-					-	폐지
	계단-6	⑧		72.47	72.47					-	-		-	-					-	폐지
	계단-7	⑨		22.30	22.30					-	-		-	-					-	폐지
	계단-8	⑩		69.30	69.30					-	-		-	-					-	폐지
	잔디밭	⑪		210.80	210.80					-	-		-	-					-	폐지
	실개울	⑫		117.00	117.00					-	-		-	-					-	폐지
	디딤돌	⑬		8.30	8.30					-	-		-	-					-	폐지
	플랜터	⑭		-	-					2	-		-	-					-	폐지
	목교	⑮		-	-					1	-		-	-					-	폐지
조경시설	조형가벽										나	2개소	11.70	11.70					-	신설
											나-1	다-1	5.49	5.49					-	신설
											나-2	다-1	6.21	6.21					-	신설

구분	부호	위치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지면적(㎡)	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소계			193.84	193.84					23			324.21	324.21					5	증 130.37㎡ 감 187
목재데크	⑯	방배동 967-25 일대	55.00	55.00					-			-	-					-	폐지
휴게공간	⑰		138.84	138.84					-			-	-					-	폐지
휴게공간	-									다	3개소	324.21	324.21					-	신설
휴게공간	-									다-1	방배동 967-25번지 일대	52.74	52.74					-	신설
휴게공간	-									다-2		53.41	53.41					-	신설
휴게공간	-									다-3		218.06	218.06					-	신설
고물자 파고라	⑲		-	-					1	-		-	-					-	폐지
막구조 파고라	⑳		-	-					3	-		-	-					-	폐지
팽이의자	㉑		-	-					5	-		-	-					-	폐지
팽이 테이블	㉒		-	-					1	-		-	-					-	폐지
캐노피	-		-	-						①	다-3	-	-					1	신설
야외테이블	-		-	-						②	가	-	-					2	신설
등의자	㉓		-	-					13	③	전지역	-	-					2	신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야외시설	소계		587.36	587.36					5									–	폐지
	어린이 놀이터	㉮ 방배동 967-25 일대	298.56	298.56	–				–	–		–	–					–	폐지
	모래 놀이터	㉯	88.80	88.80					–	–		–	–					–	폐지
	경사데크	㉰	94.00	94.00					–	–		–	–					–	폐지
	조합놀이대	㉱	–	–					1	–		–	–					–	폐지
	경사 슬라이드	㉲	–	–					3	–		–	–					–	폐지
	모래탁자	㉳	–	–					1	–		–	–					–	폐지
	놀이길	㉴	106.00	106.00					–	–		–	–					–	폐지
야외시설	소계		109.10	109.10					5									–	폐지
	체력 단련장	㉵ 방배동 967-25 일대,	109.10	109.10					–	–		–	–					–	폐지
	체력 단련시설	㉶	–	–					5	–		–	–					–	폐지
편의시설	소계		38.99	38.99					–			–	–					–	폐지
	화장실	㉷ 방배동 967-25 일대	32.01	32.01					–	–		–	–					–	폐지
	정화조	㉸	6.98	6.98					–	–		–	–					–	폐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관리시설	소계		방배동 967-25 일대	-	-					24			-	-					27	증 3기
	안내시설	㉛		-	-					-	㉛		-	-					-	폐지
	안내판	-		-	-					-	④		-	-					2	신설
	종합안내판	㉜		-	-					2	-		-	-					-	폐지
	서설이용안내판	㉝		-	-					2	-		-	-					-	폐지
	입구안내판	-		-	-					-	⑤		-	-					1	신설
	음수전	㉞		-	-					1	-		-	-					-	폐지
	공원등	㉟		-	-					14	-		-	-					-	폐지
	보안등	-		-	-					-	⑥		-	-					6	신설
	녹지등	-		-	-					-	⑦		-	-					14	신설
	갈대조명	-		-	-					-	⑧		-	-					1	신설
	CCTV	㊱		-	-					5	⑨		-	-					2	감 3기
	관수시설	-		-	-					-	⑩		-	-					1	신설
녹지	소계			4,045.28								방배동 967-25 일대	5,460.61	5,460.61						증 1,415.33㎡
			방배동 967-25 일대	4,045.28									5,460.61	5,460.61						증 1,415.33㎡

3. 도로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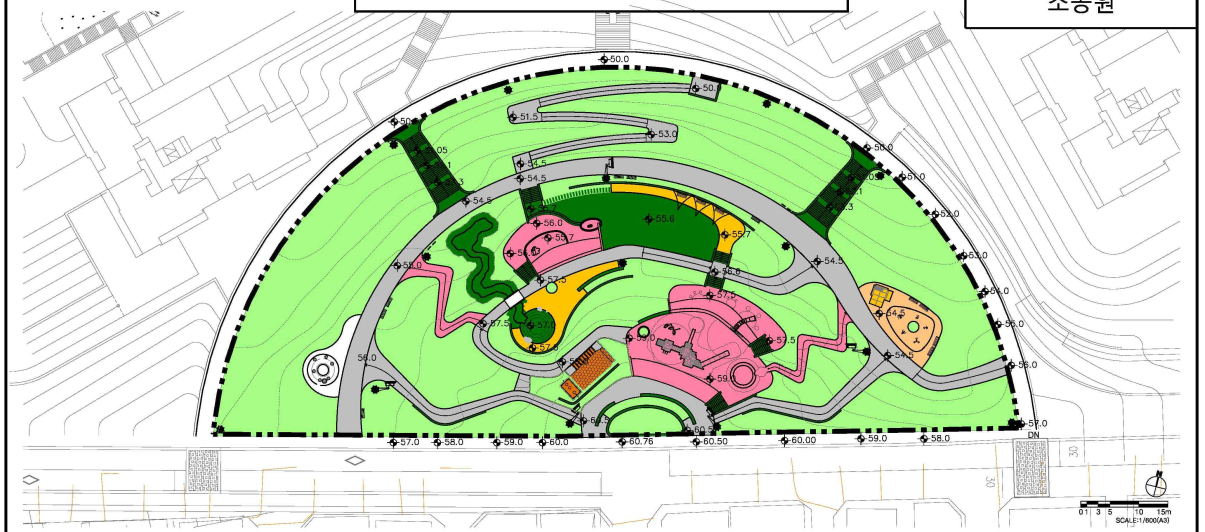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변경	합계				(394.5) 289.0	(1,011.32) 815.23				
당초 변경	소 로	합계			(133.8) 289.0	(451.94) 815.23				
당초 변경		(3류) 3류	(1) 1	(3.0~4.8) 3.0	(62.5) 45.1	(205.44) 136.56	(진입로) 산책로	(공원진입부) 광장 가	(북측광장) 녹지	
당초 변경		〃	(2) 2	(2.5~5.0) 3.0	(71.3) 61.0	(246.50) 185.68	(진입로) 산책로	(공원진입부) 녹지	(북측광장) 녹지	
당초 변경		〃	(신설) 3	(신설) 3.0	(신설) 65.8	(신설) 197.82	(신설) 산책로	(신설) 녹지	(신설) 녹지	
당초 변경		〃	(신설) 4	(신설) 3.0	(신설) 42.0	(신설) 125.95	(신설) 산책로	(신설) 녹지	(신설) 휴게공간 다-3	
당초 변경		〃	(신설) 5	(신설) 5.0	(신설) 10.6	(신설) 52.99	(신설) 산책로	(신설) 공원경계	(신설) 휴게공간 다-3	
당초 변경		〃	(신설) 6	(신설) 1.8	(신설) 17.0	(신설) 30.74	(신설) 산책로	(신설) 휴게공간 다-2	(신설) 휴게공간 다-3	
당초 변경		〃	(신설) 7	(신설) 1.8	(신설) 20.4	(신설) 36.74	(신설) 산책로	(신설) 소로 3-8	(신설) 휴게공간 다-2	
당초 변경		〃	(신설) 8	(신설) 1.8	(신설) 6.8	(신설) 12.21	(신설) 산책로	(신설) 휴게공간 다-1	(신설) 소로 3-3	
당초 변경		〃	(신설) 9	(신설) 1.8	(신설) 20.3	(신설) 36.54	(신설) 산책로	(신설) 광장 가	(신설) 휴게공간 다-1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변경	산책로	합계			(260.7) 폐지	(554.10) 559.38				
당초 변경		-	(1)	(1.5~5.0) 폐지	(87.4) 폐지	(156.40) 폐지	(진입로) 폐지	(공원진입부) 폐지	(소로1) 폐지	
당초 변경		-	(2) 폐지	(1.7~6.9) 폐지	(41.7) 폐지	(99.28) 폐지	(산책로) 폐지	(소로1) 폐지	(남측광장) 폐지	
당초 변경		-	(3) 폐지	(1.8~2.5) 폐지	(2.9) 폐지	(6.70) 폐지	(산책로) 폐지	(산책로2) 폐지	(산책로4) 폐지	
당초 변경		-	(4) 폐지	(1.5~6.3) 폐지	(94.5) 폐지	(216.80) 폐지	(산책로) 폐지	(소로2) 폐지	(어린이놀이터) 폐지	
당초 변경		-	(5) 폐지	(1.5~5.2) 폐지	(34.2) 폐지	(80.20) 폐지	(산책로) 폐지	(소로2) 폐지	(남측광장) 폐지	

조성계획도(변경전)

소공원



■ 조 경 개 요

구 분	법정면적(M2)	적용면적(M2)	비 율(%)	검토결과
공원면적	6,702.50	-	-	
시설면적	4,021.5	2,657.22	39.64%	법규기능범위내 (법규60%이하)

■ 시설물 총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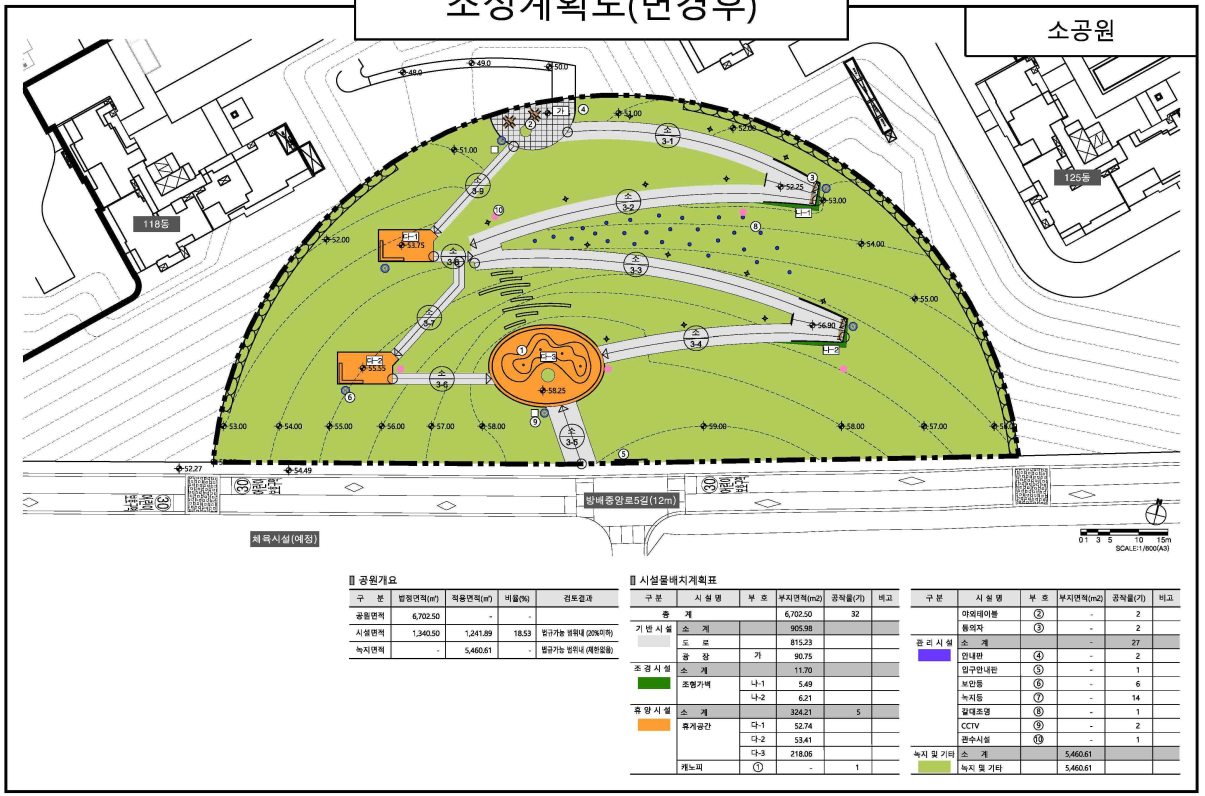
구 분	기 호	시설명	면 적(M2)	공작물	비 고
총 계			6,702.50	69	
시설면적			2,657.22	-	
기반시설	(21)	도 로	1,011.32	-	
	(11)	광장-1	99.39	-	
	(22)	광장-2	71.05	-	
		소 계	1,181.76	-	

구 분	기 호	시설명	면 적(M2)	공작물	비 고
조경시설	①	앞광벽	-	4	
	②	환석벽	-	5	
	③	계단-1	11.00	-	
	④	계단-2	8.40	-	
	⑤	계단-3	7.30	-	
	⑥	계단-4	10.20	-	
	⑦	계단-5	9.10	-	
	⑧	계단-6	72.47	-	
	⑨	계단-7	22.30	-	
	⑩	계단-8	69.30	-	
	⑪	잔디밭	210.80	-	
	⑫	실개울	117.00	-	
	⑬	디딤돌	8.30	-	
	⑭	플랜터	-	2	
	⑮	목교	-	1	

구 분	기 호	시설명	면 적(M2)	공작물	비 고
조경시설		소 계	546.17	12	
휴양시설	⑯	목재데크	55.00	-	
	⑰	휴게공간	138.84	-	
	⑱	등의자	-	13	
	⑲	고용자피고라	-	1	
	⑳	탁구조파고라	-	3	
	㉑	평의의자	-	5	
	㉒	평이테이블	-	1	
		소 계	193.84	23	
유희시설	㉓	어린이놀이터	298.56	-	
	㉔	도래놀이터	88.80	-	
	㉕	경사네크	94.00	-	
	㉖	조합놀이대	-	1	
	㉗	경사슬라이드	-	3	
	㉘	도래탁자	-	1	

구 분	기 호	시설명	면 적(M2)	공작물	비 고
유희시설	㉙	놀이집	106.00	-	
		소 계	587.36	5	
운동시설	㉚	체력단련장	109.10	-	
	㉛	체력단련시설	-	5	
		소 계	109.1	5	
편익시설	㉜	화장실	32.01	-	
	㉝	정화조	6.98	-	
		소 계	38.99	-	
관리시설	㉞	종합안내판	-	2	
	㉟	시설이용안내판	-	2	
	㊱	용수전	-	1	
	㊲	공원등	-	14	
	㊳	CCTV	-	5	
		소 계	-	24	
녹 지		소 계	4,045.28		

조성계획도(변경후)



공원개요

구 분	법정면적(㎡)	적용면적(㎡)	비율(%)	검토결과
공원면적	6,702.50	-	-	
시설면적	1,340.50	1,241.89	18.53	법규가능 범위내 (20%이하)
녹지면적	-	5,460.61	-	법규가능 범위내 (제한없음)

시설물배치계획표

구 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m2)	공작물(기)	비고
총	계		6,702.50	32	
기 반 시 설	소 계		905.98		
	도 로		815.23		
	광 장	가	90.75		
조 경 시 설	소 계		11.70		
	조형거벽	나-1	5.49		
		나-2	6.21		
휴 양 시 설	소 계		324.21	5	
	휴게공간	다-1	52.74		
		다-2	53.41		
		다-3	218.06		
	캐노피	①	-	1	

구 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m2)	공작물(기)	비고
	야외테이블	②	-	2	
	등의자	③	-	2	
관 리 시 설	소 계		-	27	
	안내판	④	-	2	
	입구만내판	⑤	-	1	
	보안등	⑥	-	6	
	녹지등	⑦	-	14	
	쓰레기통	⑧	-	1	
	CCTV	⑨	-	2	
	관수시설	⑩	-	1	
녹지 및 기타	소 계		5,460.61		
	녹지 및 기타		5,460.61		

◈ 송파구공고 제2024-2023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1. 송파구고시 제2024-80호(2024. 10. 4.)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된 잠실동 230-3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관계서류는 송파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되었으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하오니, 본 열람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7일
송 파 구 청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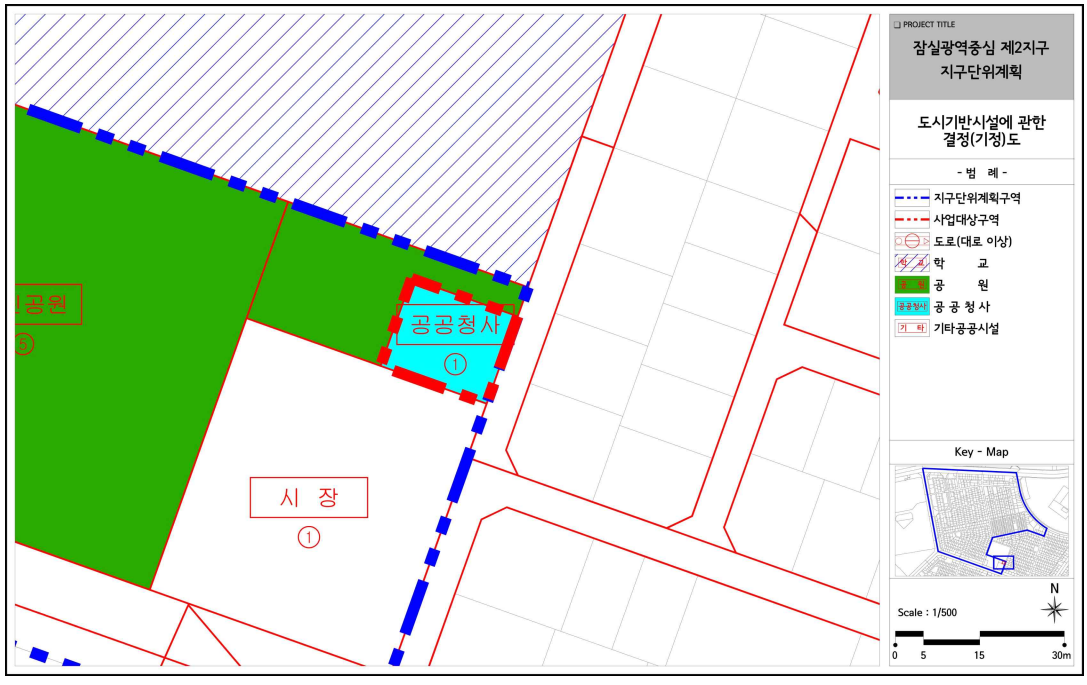
1.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230-3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사회복지시설: 송파경찰서 직장어린이집)
      - 명칭: 제5차 경찰관서 직장어린이집 18개소 임대형 민자사업(BTL) 서울 송파경찰서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면적: 328.6㎡
      - 규모: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608.17㎡, 건축면적 196.55㎡ 건폐율 59.81%, 용적률 143.24%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경찰청
      -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미근동)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 고시일~2025. 11. 30. 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면적	성명	공유 지분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및 내용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230-3	대	328.6	328.6	경찰청	-	서대문구 통일로 97 (미근동)	-	-	-	-
계				328.6	32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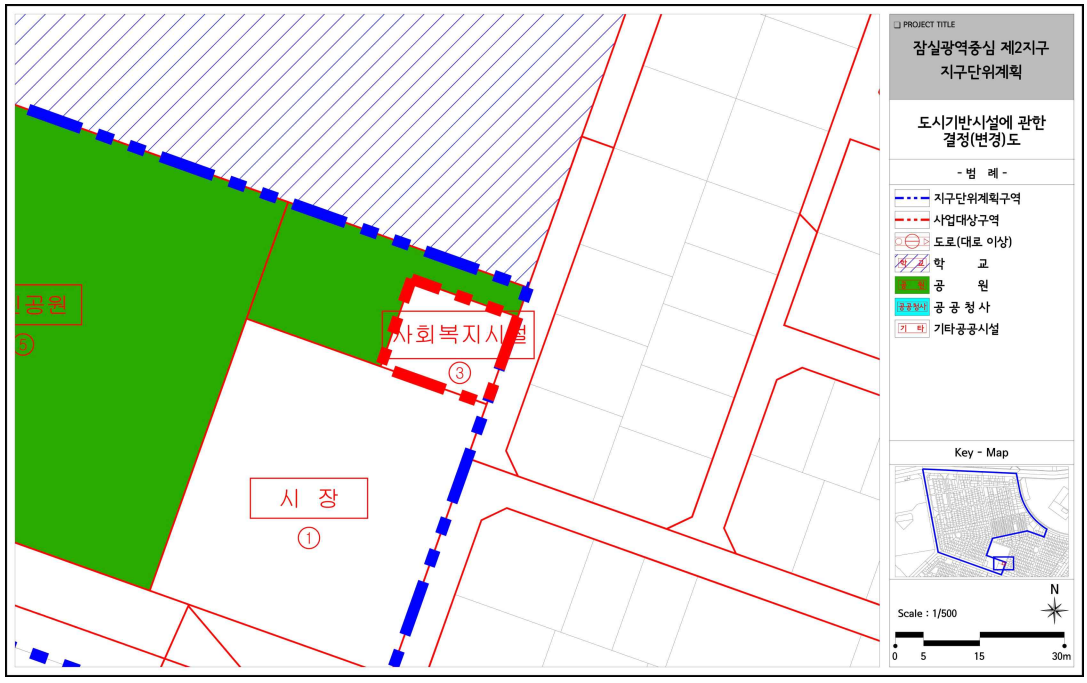
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①	공공청사	파출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230-3	328.6	감)328.6	-	서고2015-296 (2015. 9. 24.)	-
신설	③	사회복지시설				증)328.6	328.6	송파구고시2024-80 (2024. 10. 4.)	-
계				328.6	328.6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2. 관계도서: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3. 열람기간: 2024. 11. 8. ~ 21.(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02-2147-3000)1

사업소고시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31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강포레크루즈 (대표 김진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7길 21, 9층 33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84번지 일대	유선장의 설치 가계류 4,378㎡	유선장 설치	2024.11.1. ~ 2024.12.31.	2024. 10.31.
			둔치 공작물 설치 4,380㎡		2024.11.1. ~ 2024.12.31.	
			상수도 · 오수관로 · 통신관로 공사중 435㎡/ 매설 54㎡		(공사)2024.11.1. ~ 2024.12.31. (매설)2025.1.1. ~ 2029.12.31.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32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수허가자		하천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한강문화관광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84-1	수상 562.3㎡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등	2027. 7. 4. 까지	2024. 10. 31.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32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교량안전과)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교량안전과	서울시계내 한강 (동호대교 일원)	373.64㎡ - 기선 1척 부산 1척	서울시계 내 동호대교 보수공사 중 선박운항	'24. 10. 10. ~ '24. 11. 30.	'24. 10. 10.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32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교량안전과)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교량안전과	서울시계내 한강 (서강대교 일원)	614.4㎡ - 기선 1척 부산 1척	서울시계 내 서강대교 보수공사 중 선박운항	'24. 10. 11. ~ '24. 12. 27.	'24. 10. 11.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32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미래조선기술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86번길47, 10동 309호	서울시계내 한강 (광진구 강변북로 2160, 청담대교,양화대교,가양대교 일원)	(선박2척) 472.5㎡	뚝섬유선장 공사 및 항로표지 보수공사중 선박운항	'24. 10. 15. ~ '25. 4. 8.	'24. 10. 15.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32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미래조선기술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86번길47, 10동 309호	서울시계내 한강 (광진구 강변북로 2160)	(선박2척) 641.28㎡	뚝섬유선장 공사 중 선박운항	'24. 10. 16. ~ '24. 12. 14.	'24. 10. 15.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32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교량안전과)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교량안전과	서울시계내 한강 (서강대교 일원)	446.4㎡ - 기선 1척 부산 1척	서울시계 내 서강대교 보수공사 중 선박운항	'24. 10. 16. ~ '24. 12. 27.	'24. 10. 15.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32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교량안전과)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교량안전과	서울시계내 한강 (행주,가양,성산,원효,한강,동작,반포,한남대교 일원)	353.64㎡ - 기선 1척 부산 1척	서울시계 내 교량 우물통 보수공사 중 선박운항	'24. 10. 17. ~ '24. 11. 15.	'24. 10. 16.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33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담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로 152 B동 608호	서울시계내 한강 (아라갑문~마포대교 남단)	(선박3척) 406.77㎡	중량물 운송 중 선박운항	'24. 10. 16. ~ '24. 10. 22.	'24. 10. 16.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33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글로벌중공업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23-8	서울시계내 한강 (마포대교 남단 상류)	(선박3척) 837.7㎡	여의도 선착장 공사 중 선박운항	'24. 10. 21. ~ '24. 12. 31.	'24. 10. 18.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33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교통공사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서울시계내 한강 (잠실철교 일원)	400㎡ - 기선 1척 부산 1척	서울시계 내 잠실철교 보수공사 중 선박운항	'24. 11. 4. ~ '24. 11. 24.	'24. 10. 28.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33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교통공사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서울시계내 한강 (당산철교 일원)	353.64㎡ - 기선 1척 부산 1척	서울시계 내 당산철교 정밀안전점검 중 선박운항	'24. 10. 28. ~ '24. 10. 31.	'24. 10. 25.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33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교량안전과)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교량안전과	서울시계내 한강 (반포대교~ 잠실대교 일원)	338.26㎡ - 기선 1척 부산 1척	서울시계 내 한강교량 명판 설치 중 선박운항	'24. 11. 1. ~ '24. 12. 14.	'24. 10. 31.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33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미래한강본부 (서울항조성과)	서울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서울시계내 한강 (마포대교 남단)	7㎡ - 작업선 1대	항주파 관측용역 중 선박운항	'24. 10. 31. ~ '24. 12. 12.	'24. 10. 30.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33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신호개발	서울시 중구 왕십리로 415-3	서울시계내 한강 (마포구 상암동 496-119번지상 한강)	(선박5척) 576.45㎡	공사 투입을 위한 선박 정박대기장소	'24. 11. 1. ~ '24. 11. 30.	'24. 10. 31.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33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수개발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56 LG팰리스 1905호	서울시계내 한강 (마포구 상암동 496-119번지상 한강)	(선박33척) 7,462.43㎡	공사 투입을 위한 선박 정박대기장소	'24. 11. 1. ~ '24. 11. 30.	'24. 10. 31.

사업소공고

◈ 미래한강본부공고 제2024-316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규정을 위반으로 단속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의해 과태료부과전에 처분내용을 통지하고자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이의제기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의견제출 기간 이후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2024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1. 건 명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행위자(사전통지 과태료 부과고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및 제20조

3. 공시송달 대상 : “세부내역 별첨 참조”

4. 공 고 기 간 : 2024. 11. 07. ~ 2024. 11. 20. (14일)

5. 자진납부기간 : 2024. 11. 21. ~ 2024. 12. 04. (14일) *자진납부시 20%감경

6. 납부방법
- 공고대상자는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운영총괄과에서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 및 무인수납기(은행 및 각 구청)등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공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운영총괄과(☏02-3780-08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세목명	사전통지 번호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금액	반송일자	반송사유	우편번호	납세자기본주소	위반장소
1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6862	911119-*******	소*정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85부****)자동차	2024-08-09 11:38	50,000	2024-09-25	폐문부재	22397	인천광역시중구자연대로	여의도한강공원 수영장철문옆자전거도로
2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6864	640628-*******	이*복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서울동작아****)이륜차	2024-08-10 23:18	50,000	2024-09-24	기타	07048	서울특별시동작구양녕로25마길	여의도한강공원 원효대교하부주변
3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6867	710820-*******	김*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서울강서타**** 이륜차	2024-08-07 20:36	50,000	2024-09-24	기타	07900	서울특별시양천구남부순환로27길	양화센터 한강공원 제1호매점 앞
4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6871	770711-*******	임*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385더****)자동차	2024-08-21 03:03	50,000	2024-09-24	폐문부재	10083	경기도김포시김포한강2로	강서한강공원 개화나들목 원형교차로 주변
5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6874	971220-*******	장*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서울강남거****)이륜차	2024-08-15 09:15	50,000	2024-09-24	기타	08760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3길	여의도한강공원 제2배달존옆
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6876	860509-*******	김*국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서울중자****)이륜차	2024-08-16 21:21	50,000	2024-09-23	기타	63133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신대로18길	여의도한강공원 제1배달존주변
7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6877	971112-*******	김*원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서울마포파****)이륜차	2024-08-17 16:39	50,000	2024-09-24	기타	04203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대로26길	여의도한강공원 1호매점옆
8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6882	020828-*******	권*정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서울마포타****)이륜차	2024-08-18 20:46	50,000	2024-09-24	기타	08760	서울특별시관악구관천로10길	여의도한강공원 수영장매표소주변
9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6884	870602-*******	홍*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서울마포파**** 이륜차	2024-08-27 19:04	50,000	2024-09-24	기타	0720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양평로30길	양화센터 한강공원 축구장 입구 앞
10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6892	560420-*******	하*유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서울동작자****)이륜차	2024-08-26 16:51	50,000	2024-09-24	기타	0736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신길로42가길	여의도한강공원 마포대교롤링장주변
11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6900	641102-*******	김*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서울강북가****)이륜차	2024-08-31 19:09	50,000	2024-09-24	기타	01430	서울특별시도봉구해등로	여의도한강공원 안내센터보도위주변

순번	세목명	사전통지 번호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금액	반송일자	반송사유	우편번호	납세자기본주소	위반장소
12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6967	660405-*******	김*효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315누****)자동차	2024-08-31 22:17	50,000	2024-10-02	폐문부재	15235	경기도안산시단원구	잠실한강공원 내 잠실대교 남단 하부 화장실 부근
13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6968	880717-*******	윤*종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225거****)자동차	2024-08-31 18:34	50,000	2024-10-02	기타	05396	서울특별시강동구 성내로17길	잠실한강공원 내 잠실나들목 입구 주변
14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6974	831108-*******	안*혁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41고****)자동차	2024-09-04 21:09	50,000	2024-09-30	폐문부재	12996	경기도하남시감일순환로	잠실한강공원 내 잠실나들목 입구 주변
15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6976	340724-*******	김*경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312라****)자동차	2024-09-07 19:25	50,000	2024-10-02	폐문부재	15539	경기도안산시상록구	잠실한강공원 내 잠실나들목 입구 주변
1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6986	680928-*******	박*)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126하****)자동차	2024-07-25 16:27	50,000	2024-10-02	기타	05330	서울특별시강동구 구천면로36길	광나루한강공원내 제3주차장 요금정산소앞주변
17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6990	600229-*******	안*순	지정된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41루****)자동차	2024-08-31 03:20	50,000	2024-10-02	폐문부재	15386	경기도안산시단원구	잠원한강공원 내 한남대교하부 4주차장주변(41루****)자동차
18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6993	770130-*******	김*국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강남자****)이륜차	2024-09-10 06:06	50,000	2024-10-02	기타	05691	서울특별시송파구 가락로5길	잠실한강공원 내 탄천호안가 보행로(서울강남자****)이륜차
19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6994	800826-*******	임*경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32우****)자동차	2024-09-15 19:43	50,000	2024-10-02	기타	05673	서울특별시송파구 오금로32길	잠실한강공원 내 잠실나들목 입구 횡단보도(32우****)자동차
20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012	791220-*******	김*완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97조****)자동차	2024-09-07 16:15	50,000	2024-10-04	폐문부재	11793	경기도의정부시오목로	난지한강공원내 하늘다리 출차게이트 진입로
21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015	960709-*******	박*훈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42부****)자동차	2024-09-07 19:19	50,000	2024-10-04	기타	21443	인천광역시부평구 열우물로	난지한강공원내 제1주차장주변

순번	세목명	사전통지 번호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금액	반송일자	반송사유	우편번호	납세자기본주소	위반장소
22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018	921106-*******	변*욱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31거****)자동차	2024-09-07 19:36	50,000	2024-10-04	기타	08733	서울특별시관악구 관악로	난지한강공원내 제2주차장주변
23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037	791214-*******	박*하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228구****)자동차	2024-09-08 17:39	50,000	2024-10-04	기타	04127	서울특별시마포구 숭문길	난지한강공원내 승강기인근 보행로
24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040	800227-*******	김*관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6마****)자동차	2024-09-08 17:26	50,000	2024-10-02	기타	07535	서울특별시강서구 양천로67길	난지한강공원내 캠핑장인근 보행로
25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043	780810-*******	이*빈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21로****)자동차	2024-09-08 17:19	50,000	2024-10-04	기타	21521	인천광역시남동구 만수로105번길	난지한강공원내 캠핑장인근 보행로
2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047	770703-*******	이*모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46모****)자동차	2024-09-08 18:07	50,000	2024-10-02	기타	03711	서울특별시서대문구 가재울미래로	난지한강공원내 승강기인근 보행로
27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077	991112-*******	오*석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경기하남라****)이륜차	2024-09-07 18:39	50,000	2024-10-04	폐문부재	12932	경기도하남시덕풍로	반포한강공원내 달빛광장2 주변
28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087	840204-*******	이*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중파****)이륜차	2024-09-07 22:17	50,000	2024-10-04	기타	11449	경기도양주시화합로1325번길	반포한강공원내 달빛광장2 주변
29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090	770130-*******	김*국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강남자****)이륜차	2024-09-08 06:09	50,000	2024-10-04	기타	05691	서울특별시송파구 가락로5길	반포한강공원내 서래3교 주변
30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100	650804-*******	박*형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23오****)자동차	2024-09-10 13:20	50,000	2024-10-02	폐문부재	14126	경기도안양시동안구	반포한강공원내 수상레져 주변
31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101	970923-*******	박*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동대문가****)이륜차	2024-09-10 20:58	50,000	2024-10-02	기타	02556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전농로31길	반포한강공원내 잠수교 횡단보도 주변
32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103	700704-*******	M*N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92서****)자동차	2024-09-14 19:50	50,000	2024-10-04	폐문부재	04406	서울특별시용산구 보광로50길	반포한강공원내 잠수교 제1수변무대 주변

순번	세목명	사전통지 번호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금액	반송일자	반송사유	우편번호	납세자기본주소	위반장소
33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104	980105-*******	성*셉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경기과천나****)이륜차	2024-09-14 20:54	50,000	2024-10-04	폐문부재	12997	경기도하남시감일백제로	반포한강공원내 잠수교 회전교차로 주변
34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126	780218-*******	강*정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주차행위(서울마포카****)이륜차	2024-09-17 22:13	50,000	2024-10-04	기타	03936	서울특별시마포구월드컵북로	망원한강공원내제4주차장주변
35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148	850108-*******	이*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65허****)자동차	2024-06-02 18:49	50,000	2024-10-14	기타	07748	서울시강서구곰달래로47길	뚝섬한강공원 윈드서핑장 주변
3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149	570120-*******	김*성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05하****)자동차	2024-08-31 23:29	50,000	2024-09-30	주소불명	25417	강원도주문진읍연주로	뚝섬한강공원 긴급차량출입소 주변
37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151	610628-*******	김*철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813너5**** 자동차	2024-09-05 09:36	50,000	2024-10-07	기타	22158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인주대로291번길	이촌한강공원내 옥수역 호안가 산책로 (813너5**** 자동차
38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157	920804-*******	임*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66부1**** 자동차	2024-09-07 11:13	50,000	2024-10-08	폐문부재	03339	서울특별시은평구연서로41가길	이촌한강공원내 제1주차장 건설기계 보관소 출입구(66부1**** 자동차
39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171	720723-*******	두*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광진카****)이륜차	2024-09-09 16:13	50,000	2024-10-08	기타	05093	서울특별시광진구자양번영로3나길	뚝섬한강공원 제1배달존 주변
40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172	930404-*******	김*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강동카****)이륜차	2024-09-09 20:57	50,000	2024-10-08	기타	05390	서울특별시강동구천호대로170길	뚝섬한강공원 청담대교 하부 주변
41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173	950620-*******	안*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중파****)이륜차	2024-09-09 20:28	50,000	2024-10-08	폐문부재	11941	경기도구리시이문안로99번길	뚝섬한강공원 청담대교 하부 주변
42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189	730501-*******	홍*상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326고****)자동차	2024-09-22 18:56	50,000	2024-10-10	기타	13263	경기도성남시수정구	잠실한강공원 내 사각사각 주변(326고****)자동차

순번	세목명	사전통지 번호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금액	반송일자	반송사유	우편번호	납세자기본주소	위반장소
43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198	751229-*******	김*호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23고****)자동차	2024-09-21 22:07	50,000	2024-10-10	폐문부재	12735	경기도광주시초월읍	잠실한강공원 내 잠실나들목 입구 주변(23고****)자동차
44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221	590215-*******	김*오	지정된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233소****)자동차	2024-09-22 18:59	50,000	2024-10-11	기타	27834	충청북도진천군진천읍	잠원한강공원 내 1주차장주변(233소****)자동차
45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229	990329-*******	강*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관악가****)이륜차	2024-09-17 19:00	50,000	2024-10-14	기타	08817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로11길	반포한강공원내 잠수교 로타리 주변
4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234	931010-*******	윤*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구로카****)이륜차	2024-09-17 21:21	50,000	2024-10-14	기타	08845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로29길	반포한강공원내 잠수교 로타리 주변
47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237	590116-*******	L*E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87로****)자동차	2024-09-18 10:13	50,000	2024-10-14	기타	21366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대로	반포한강공원내 수상레져 주변
48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238	730302-*******	최*철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83서****)자동차	2024-09-20 10:53	50,000	2024-10-14	폐문부재	15298	경기도안산시상록구	반포한강공원내 제1주차장 자전거도로 주변
49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245	820421-*******	김*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07우****)자동차	2024-09-22 19:50	50,000	2024-10-14	기타	54103	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상지곡안4길	반포한강공원내 더리버 슬로프 주변
50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251	570930-*******	이*옥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22우****)자동차	2024-09-22 19:59	50,000	2024-10-11	폐문부재	28521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	반포한강공원내 더리버 슬로프 주변
51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252	980505-*******	한*찬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84더****)자동차	2024-09-15 17:14	50,000	2024-10-07	이사불명	10364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	난지한강공원내 제1주차장주변 회전교차로
52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259	700103-*******	원*희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78나****)자동차	2024-09-22 13:35	50,000	2024-10-14	기타	21016	인천광역시계양구장군봉길	난지한강공원내 난지안내센터앞

순번	세목명	사전통지 번호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금액	반송일자	반송사유	우편번호	납세자기본주소	위반장소
53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261	590911-*******	박*구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67우****)자동차	2024-09-22 10:37	50,000	2024-10-11	폐문부재	21939	인천광역시연수구 한나루로186번길	난지한강공원내 야구장주변 보행로
54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269	930821-*******	이*인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64너****)자동차	2024-09-22 13:24	50,000	2024-10-14	기타	12249	경기도남양주시다 산중앙로82번길	난지한강공원내 하늘다리하부
55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316	660117-*******	김*명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93호****)자동차	2024-09-01 20:51	50,000	2024-10-14	기타	21126	인천시계양구작전동	이촌한강공원내 제1주차장 건설기계보관소출입구
5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318	910816-*******	여*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57하****)자동차	2024-09-07 22:48	50,000	2024-10-10	주소불명	12284	경기도남양주시다 산지금로	뚝섬한강공원 제2축구장 주변
57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320	891013-*******	최*육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20누1**** 자동차	2024-09-23 13:28	50,000	2024-10-14	기타	04067	서울특별시마포구 독막로19길	이촌한강공원내 옥수역 하부 광장 (120누1**** 자동차
58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323	990205-*******	오*』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68보**** 자동차	2024-09-26 20:44	50,000	2024-10-15	기타	04501	서울특별시중구만리재로	이촌한강공원내 반포대교 북단 하부 자재창고 부근(68보**** 자동차
59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328	941004-*******	문*석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성동사****)이륜차	2024-09-16 21:59	50,000	2024-10-08	수취인불명	04720	서울특별시성동구 독서당로	뚝섬한강공원 자양역 주변
60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329	610407-*******	오*육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노원자****)이륜차	2024-09-16 18:57	50,000	2024-10-11	기타	01765	서울특별시노원구 덕릉로	뚝섬한강공원 제1편의점 주변
61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331	871130-*******	이*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용산자****)이륜차	2024-09-17 21:04	50,000	2024-10-14	기타	04947	서울특별시광진구 영화사로9길	뚝섬한강공원 청담대교 하부 주변
62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332	980615-*******	임*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관악하****)이륜차	2024-09-17 21:02	50,000	2024-10-15	기타	07318	서울특별시영등포 구영등포로79길	뚝섬한강공원 청담대교 하부 주변

순번	세목명	사전통지 번호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금액	반송일자	반송사유	우편번호	납세자기본주소	위반장소
63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334	011207-*******	D*N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동작카****)이륜차	2024-09-17 18:53	50,000	2024-10-14	기타	07013	서울특별시동작구 사당로28길	뚝섬한강공원 청담대교 하부 주변
64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336	951022-*******	김*정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용산차****)이륜차	2024-09-22 20:49	50,000	2024-10-15	기타	02741	서울특별시성북구 오패산로	뚝섬한강공원 낙천정나들목 주변
65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337	960928-*******	최*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관악하****)이륜차	2024-09-26 21:12	50,000	2024-10-14	기타	08820	서울특별시관악구 대학14길	뚝섬한강공원 자양역 주변
6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339	590602-*******	마*란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광진하****)이륜차	2024-09-27 13:23	50,000	2024-10-14	기타	04942	서울특별시광진구 긴고랑로35길	뚝섬한강공원 테니스장 주변
67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341	710517-*******	황*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52소****)자동차	2024-09-28 13:58	50,000	2024-10-15	폐문부재	10061	경기도김포시양촌읍	뚝섬한강공원 긴급차량출입소 주변
68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363	960313-*******	김*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강서타****)이륜차	2024-09-25 15:08	50,000	2024-10-18	기타	07925	서울특별시양천구 월정로17길	반포한강공원내 제2주차장 주변
69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365	600402-*******	박*학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은평파****)이륜차	2024-09-21 16:38	50,000	2024-10-18	폐문부재	03485	서울특별시은평구 응암로9길	망원한강공원내망원GS1호편의점주변
70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367	770430-*******	T*O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서대문자****)이륜차	2024-09-22 22:22	50,000	2024-10-14	이사불명	07270	서울영등포구선유로33길	망원한강공원내망원안내센터 주변
71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369	991116-*******	이*훈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성동파****)이륜차	2024-09-22 22:38	50,000	2024-10-18	기타	04906	서울특별시광진구 동일로	망원한강공원내망원제4주차장주변
72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377	590110-*******	김*준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46루****)자동차	2024-09-28 17:00	50,000	2024-10-22	기타	14790	경기도부천시소사구	난지한강공원내 회전교차로옆 보행로

순번	세목명	사전통지 번호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금액	반송일자	반송사유	우편번호	납세자기본주소	위반장소
73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382	110111-*******	(*지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45보****)자동차	2024-09-28 16:47	50,000	2024-10-18	폐문부재	03422	서울특별시은평구 은평로3가길	난지한강공원내 안내센터부근 차도
74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392	840101-*******	구*준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39나****)자동차	2024-09-28 15:42	50,000	2024-10-17	기타	07609	서울특별시강서구 금낭화로7길	난지한강공원내 안내센터앞 보행로
75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394	950728-*******	명*재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46우****)자동차	2024-09-28 15:56	50,000	2024-10-18	기타	21427	인천광역시부평구 경인로	난지한강공원내 버스정류장주변
7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400	900209-*******	이*양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303구****)자동차	2024-09-29 15:13	50,000	2024-10-21	기타	12002	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	난지한강공원내 하늘다리하부
77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402	930927-*******	윤*섭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50보****)자동차	2024-09-29 17:22	50,000	2024-10-18	폐문부재	04314	서울특별시용산구 원효로97길	난지한강공원내 하늘다리하부
78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410	940903-*******	송*석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90너****)자동차	2024-09-28 00:27	50,000	2024-10-14	주소불명	05801	서울특별시송파구 새말로15길	반포한강공원내 제2주차장 보행자도로 주변
79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411	780210-*******	유*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인천남동하****)이륜차	2024-09-28 00:17	50,000	2024-10-17	기타	22240	인천광역시미추홀구경원대로716번길	반포한강공원내 달빛광장2 주변
80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423	740512-*******	김*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강남파****)이륜차	2024-09-28 21:17	50,000	2024-10-18	기타	0742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신길로17길	반포한강공원내 잠수교 교각43번 주변
81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424	910221-*******	박*용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서대문차****)이륜차	2024-09-29 17:01	50,000	2024-10-18	기타	03643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홍제내2라길	반포한강공원내 반포회전나들목 주변
82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623	781010-*******	신*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32우7**** 자동차	2024-09-29 16:55	50,000	2024-10-21	폐문부재	04428	서울특별시용산구 서빙고로62길	이촌한강공원내 태니스장 옆 주변 (32우7**** 자동차

순번	세목명	사전통지 번호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금액	반송일자	반송사유	우편번호	납세자기본주소	위반장소
83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625	881107-*******	박*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55소3**** 자동차	2024-09-29 19:57	50,000	2024-10-22	기타	36165	경상북도영주시구 성로210번길	이촌한강공원내 인라인 스케이트장 부근 서빙고 나들목 안전지대 (55소3**** 자동차
84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626	960804-*******	정*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35누9**** 자동차	2024-09-29 20:01	50,000	2024-10-18	폐문부재	12768	경기도광주시텃골 길47번길	이촌한강공원내 인라인 스케이트장 부근 서빙고 나들목 안전지대 (135누9**** 자동차
85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637	820214-*******	고*주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19라****)자동차	2024-09-28 16:42	50,000	2024-10-22	기타	16852	경기도용인시수지 구	잠실한강공원 내 잠실나들목 입구 주변(19라****)자동차
8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639	110111-*******	(*카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101하****)자동차	2024-09-28 16:53	50,000	2024-10-16	이사불명	08047	서울특별시양천구 남부순환로	잠실한강공원 내 잠실대교 하부 주변(101하****)자동차
87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640	820505-*******	최*선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64버****)자동차	2024-09-28 16:55	50,000	2024-10-22	기타	05256	서울특별시강동구 고덕로	잠실한강공원 내 잠실대교 하부 주변(64버****)자동차
88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642	840203-*******	백*원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120나****)자동차	2024-09-28 16:56	50,000	2024-10-22	기타	01376	서울특별시도봉구 우이천로38길	잠실한강공원 내 잠실대교 하부 주변(120나****)자동차
89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646	871011-*******	박*형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02서****)자동차	2024-09-28 17:00	50,000	2024-10-22	기타	16223	경기도수원시영통 구	잠실한강공원 내 잠실대교 하부 주변(02서****)자동차
90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651	900820-*******	지*례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60오****)자동차	2024-09-28 18:56	50,000	2024-10-22	기타	07040	서울특별시동작구 상도로60길	잠실한강공원 내 잠실대교 하부 주변(60오****)자동차
91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655	900702-*******	김*진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166도****)자동차	2024-09-28 19:07	50,000	2024-10-21	기타	31177	충청남도천안시동 남구	잠실한강공원 내 잠실대교 하부 주변(166도****)자동차
92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660	651007-*******	신*원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30로****)자동차	2024-09-28 21:48	50,000	2024-10-21	기타	02608	서울특별시동대문 구답십리로	잠실한강공원 내 잠실대교 하부 주변(30로****)자동차

순번	세목명	사전통지 번호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금액	반송일자	반송사유	우편번호	납세자기본주소	위반장소
93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670	710705-*******	홍*우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34너****)자동차	2024-09-28 22:05	50,000	2024-10-21	기타	02519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안벚꽃로3길	잠실한강공원 내 잠실대교 하부 주변(34너****)자동차
94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673	110111-*******	(*행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74바****)자동차	2024-09-28 22:10	50,000	2024-10-22	기타	05556	서울특별시송파구올림픽로	잠실한강공원 내 잠실대교 하부 주변(서울74바****)자동차
95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674	861215-*******	C*N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230수****)자동차	2024-09-28 22:11	50,000	2024-10-22	기타	01062	서울특별시강북구덕릉로	잠실한강공원 내 잠실대교 하부 주변(230수****)자동차
9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675	920327-*******	김*찬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53서****)자동차	2024-09-28 22:13	50,000	2024-10-21	폐문부재	22732	인천광역시서구봉오재2로	잠실한강공원 내 잠실대교 하부 주변(53서****)자동차
97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680	790225-*******	이*은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159구****)자동차	2024-09-28 19:22	50,000	2024-10-21	기타	16515	경기도수원시영통구	잠실한강공원 내 잠실대교 하부 주변(159구****)자동차
98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688	860328-*******	김*석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126어****)자동차	2024-09-28 19:51	50,000	2024-10-22	기타	05769	서울특별시송파구동남로	잠실한강공원 내 잠실대교 하부 주변(126어****)자동차
99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692	860921-*******	박*심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209누****)자동차	2024-09-28 19:57	50,000	2024-10-21	폐문부재	12765	경기도광주시이배재로	잠실한강공원 내 잠실대교 하부 주변(209누****)자동차
100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696	610125-*******	이*영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43서****)자동차	2024-09-28 20:13	50,000	2024-10-22	기타	18418	경기도화성시10용사로	잠실한강공원 내 잠실안내센터 앞(43서****)자동차
101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699	720529-*******	조*영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28더****)자동차	2024-09-28 21:43	50,000	2024-10-23	기타	18485	경기도화성시동탄순환대로19길	잠실한강공원 내 잠실대교 하부 주변(28더****)자동차
102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707	920202-*******	이*수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384모****)자동차	2024-09-29 20:39	50,000	2024-10-21	폐문부재	12713	경기도광주시퇴촌면	잠실한강공원 내 잠실대교 아래 회전로타리(384모****)자동차

순번	세목명	사전통지 번호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금액	반송일자	반송사유	우편번호	납세자기본주소	위반장소
103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713	741019-*******	양*일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51버****)자동차	2024-09-29 20:33	50,000	2024-10-21	폐문부재	12793	경기도광주시양벌로	잠실한강공원 내 잠실대교 아래 회전로타리(51버****)자동차
104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719	800417-*******	송*근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33우****)자동차	2024-09-29 19:05	50,000	2024-10-16	수취인불명	135-280	서울강남구삼성로61길	잠실한강공원 내 잠실안내센터 인근(33우****)자동차
105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727	980509-*******	K*H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강동타****)이륜차	2024-09-18 23:13	50,000	2024-10-22	기타	05332	서울특별시강동구 성안로31길	광나루한강공원내 녹지창고 인근 보행로(서울강동타****)이륜차
1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732	970410-*******	최*민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376오****)자동차	2024-09-22 17:33	50,000	2024-10-22	기타	05320	서울특별시강동구 천중로21길	광나루한강공원내 어린이놀이터주변 도로(376오****)자동차
107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734	880130-*******	김*선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392고****)자동차	2024-09-22 17:34	50,000	2024-10-21	폐문부재	13006	경기도하남시감일백제로	광나루한강공원내 어린이놀이터주변 도로(392고****)자동차
108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743	741222-*******	이*호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159모****)자동차	2024-09-29 14:07	50,000	2024-10-22	기타	05331	서울특별시강동구 천중로30길	광나루한강공원내 어린이놀이터주변 도로(159모****)자동차
109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744	780913-*******	Y*N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145하****)자동차	2024-09-22 16:39	50,000	2024-10-22	기타	15011	경기도시흥시배곧1로	잠실한강공원 내 잠실대교 회전교차로 주변(145하****)자동차
110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747	911128-*******	양*호	지정된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60마****)자동차	2024-09-28 21:04	50,000	2024-10-22	기타	16413	경기도수원시권선구	잠원한강공원 내 3주차장주변(60마****)자동차
111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749	930504-*******	박*훈	지정된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50마****)자동차	2024-09-28 21:11	50,000	2024-10-22	폐문부재	11945	경기도구리시검배로120번길	잠원한강공원 내 3주차장주변(50마****)자동차

순번	세목명	사전통지 번호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금액	반송일자	반송사유	우편번호	납세자기본주소	위반장소
112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754	911119-*******	이*원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148조****)자동차	2024-10-05 14:33	50,000	2024-10-22	기타	06321	서울특별시강남구 개포로	잠실한강공원 내 잠실나들목 입구 부근(148조****)자동차
113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755	960522-*******	김*환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161루****)자동차	2024-10-05 14:30	50,000	2024-10-22	기타	26449	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서원대로	잠실한강공원 내 잠실나들목 입구 부근(161루****)자동차
114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762	730727-*******	하*호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강남나****)이륜차	2024-10-06 10:19	50,000	2024-10-22	기타	06331	서울특별시강남구 삼성로	잠실한강공원 내 제4주차장 인근 보도(서울강남나****)이륜차
115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766	860620-*******	최*호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149마****)자동차	2024-10-03 17:13	50,000	2024-10-22	기타	05779	서울특별시송파구 양산로8길	잠실한강공원 내 잠실나들목 앞 차도(149마****)자동차
11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767	880422-*******	성*송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134로****)자동차	2024-10-03 16:17	50,000	2024-10-22	기타	05618	서울특별시송파구 백제고분로45길	잠실한강공원 내 잠실나들목 앞 차도(134로****)자동차
117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768	115021-*******	사*)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70오****)자동차	2024-10-03 16:18	50,000	2024-10-22	기타	05834	서울특별시송파구 중대로2길	잠실한강공원 내 잠실나들목 앞 차도(70오****)자동차
118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769	870725-*******	정*늘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06더****)자동차	2024-10-03 16:23	50,000	2024-10-22	폐문부재	04352	서울특별시용산구 한강대로76길	잠실한강공원 내 잠실대교 아래 회전로타리(06더****)자동차
119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778	920811-*******	이*경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392버****)자동차	2024-10-03 16:27	50,000	2024-10-22	기타	05562	서울특별시송파구 석촌호수로12길	잠실한강공원 내 잠실대교 아래 회전로타리(392버****)자동차
120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783	910714-*******	이*은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179서****)자동차	2024-10-03 16:30	50,000	2024-10-22	기타	05686	서울특별시송파구 백제고분로40길	잠실한강공원 내 잠실대교 아래 회전로타리(179서****)자동차

순번	세목명	사전통지 번호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금액	반송일자	반송사유	우편번호	납세자기본주소	위반장소
121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787	840826-*******	전*영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68가****)자동차	2024-10-03 14:13	50,000	2024-10-22	기타	12161	경기도남양주시화도읍	잠실한강공원 내 잠실나들목입구주변(68가****)자동차
122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788	781111-*******	원*희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324고****)자동차	2024-10-03 14:14	50,000	2024-10-22	기타	05645	서울특별시송파구 오금로29길	잠실한강공원 내 잠실나들목입구주변(324고****)자동차
123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805	134211-*******	주*스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164두****)자동차	2024-10-03 17:06	50,000	2024-10-21	폐문부재	12705	경기도광주시남한산성면	광나루한강공원 제3주차장 진입로(164두****)자동차
124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7814	900628-*******	기*호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302로****)자동차	2024-10-03 10:34	50,000	2024-10-21	기타	06592	서울특별시서초구 서초중앙로29길	광나루한강공원 제2주차장 입구인근(302로****)자동차

◈ 미래한강본부공고 제2024-317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수시분)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규정위반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수시분)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1. 건 명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행위자 (수시분 과태료 부과고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및 제20조

3. 공시송달 대상 : “세부내역 별첨 참조”

4. 공고기간 : 2024. 11. 07. ~ 2024. 11. 20. (14일)

5. 수령방법
-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운영총괄과에서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6. 공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운영총괄과(☏02-3780-08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세목명	과세대상	과세년월	과세번호	반송일자	반송사유
1	750907-*******	홍*익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4-09	001524	2024-09-27	수취인불명
2	660915-*******	양*진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4-09	001467	2024-09-30	수취인불명
3	660915-*******	양*진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4-09	001544	2024-09-30	수취인불명
4	660915-*******	양*진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4-09	001508	2024-09-30	수취인불명
5	990412-*******	이*찬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4-09	001474	2024-09-30	주소불명
6	660915-*******	양*진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4-09	001477	2024-09-30	수취인불명
7	660915-*******	양*진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4-09	001516	2024-09-30	수취인불명
8	660915-*******	양*진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4-09	001490	2024-09-30	수취인불명
9	660915-*******	양*진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4-09	001532	2024-09-30	수취인불명
10	660915-*******	양*진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4-09	001458	2024-09-30	수취인불명
11	660915-*******	양*진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4-09	001499	2024-09-30	수취인불명
12	720312-*******	홍*호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4-09	001465	2024-10-07	기타
13	720312-*******	홍*호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4-09	001506	2024-10-07	기타
14	660813-*******	고*영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4-09	001468	2024-10-07	기타
15	460929-*******	김*원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4-09	001509	2024-10-07	기타
16	660813-*******	고*영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4-09	001510	2024-10-07	기타
17	720312-*******	홍*호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4-09	001475	2024-10-07	기타
18	720312-*******	홍*호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4-09	001522	2024-10-07	기타

선택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세목명	과세대상	과세년월	과세번호	반송일자	반송사유
19	720312-*******	홍*호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4-09	001488	2024-10-07	기타
20	720312-*******	홍*호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4-09	001527	2024-10-07	기타
21	660813-*******	고*영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4-09	001491	2024-10-07	기타
22	660813-*******	고*영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4-09	001533	2024-10-07	기타
23	720312-*******	홍*호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4-09	001456	2024-10-07	기타
24	720312-*******	홍*호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4-09	001495	2024-10-07	기타
25	460929-*******	김*원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4-09	001538	2024-10-07	기타
26	720312-*******	홍*호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4-09	001541	2024-10-07	기타
27	660903-*******	임*식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4-09	001460	2024-10-08	기타
28	681224-*******	이*옥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4-09	001461	2024-10-08	기타
29	750313-*******	신*수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4-09	001463	2024-10-08	폐문부재
30	790807-*******	정*만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4-09	001464	2024-10-08	기타
31	660505-*******	최*민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4-09	001503	2024-10-08	기타
32	660903-*******	임*식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4-09	001545	2024-10-08	기타
33	770213-*******	정*민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4-09	001471	2024-10-08	기타
34	681224-*******	이*옥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4-09	001472	2024-10-08	기타
35	660505-*******	최*민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4-09	001512	2024-10-08	기타
36	790807-*******	정*만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4-09	001514	2024-10-08	기타

선택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세목명	과세대상	과세년월	과세번호	반송일자	반송사유
37	660505-*******	최*민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4-09	001547	2024-10-08	기타
38	590128-*******	김*용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4-09	001548	2024-10-08	기타
39	660903-*******	임*식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4-09	001478	2024-10-08	기타
40	660903-*******	임*식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4-09	001517	2024-10-08	기타
41	660505-*******	최*민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4-09	001479	2024-10-08	기타
42	680701-*******	서*석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주차행위(경기 안양아9865)이륜차	2024-09	001435	2024-10-08	폐문부재
43	620401-*******	김*근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4-09	001481	2024-10-08	폐문부재
44	660505-*******	최*민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4-09	001519	2024-10-08	기타
45	750313-*******	신*수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4-09	001526	2024-10-08	폐문부재
46	620401-*******	김*근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4-09	001529	2024-10-08	폐문부재
47	790807-*******	정*만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4-09	001530	2024-10-08	기타
48	871204-*******	정*관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광진파8254)이륜차	2024-09	001452	2024-10-08	기타
49	681224-*******	이*옥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4-09	001454	2024-10-08	기타
50	750313-*******	신*수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4-09	001455	2024-10-08	폐문부재
51	660505-*******	최*민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4-09	001492	2024-10-08	기타
52	750313-*******	신*수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4-09	001493	2024-10-08	폐문부재
53	660505-*******	최*민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4-09	001459	2024-10-08	기타

선택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세목명	과세대상	과세년월	과세번호	반송일자	반송사유
54	681224-*******	이*옥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4-09	001496	2024-10-08	기타
55	660505-*******	최*민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4-09	001535	2024-10-08	기타
56	681224-*******	이*옥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4-09	001537	2024-10-08	기타
57	660903-*******	임*식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4-09	001500	2024-10-08	기타
58	750313-*******	신*수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4-09	001501	2024-10-08	폐문부재
59	790807-*******	정*만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4-09	001540	2024-10-08	기타
60	750313-*******	신*수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4-09	001542	2024-10-08	폐문부재
61	610628-*******	남*호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4-09	001462	2024-10-10	기타
62	610628-*******	남*호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4-09	001505	2024-10-10	기타
63	610628-*******	남*호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4-09	001473	2024-10-10	기타
64	610628-*******	남*호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4-09	001521	2024-10-10	기타
65	610628-*******	남*호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4-09	001525	2024-10-10	기타
66	610628-*******	남*호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4-09	001457	2024-10-10	기타
67	610628-*******	남*호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4-09	001498	2024-10-10	기타
68	610628-*******	남*호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4-09	001539	2024-10-10	기타
69	750219-*******	권*준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주차행위(경북 안동자2489)이륜차	2024-10	001580	2024-10-17	주소불명
70	740218-*******	원*일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04하3967) 자동차	2024-10	001555	2024-10-18	수취인불명

선택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세목명	과세대상	과세년월	과세번호	반송일자	반송사유
71	660526-*******	최*규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75하5960)자동차	2024-10	001557	2024-10-18	수취인불명
72	901005-*******	곽*진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주차행위(서울마포타8543)이륜차	2024-10	001564	2024-10-18	수취인불명
73	790130-*******	정*자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관악가5169)이륜차	2024-10	001596	2024-10-18	주소불명
74	881108-*******	성*연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은평파5511)이륜차	2024-10	001602	2024-10-18	수취인불명
75	135511-*******	재*사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노원차8458)이륜차	2024-10	001628	2024-10-18	수취인불명
76	850401-*******	곽*효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서초차8613)이륜차	2024-10	001641	2024-10-18	수취인불명
77	910214-*******	전*영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장소 외 주차행위(서울강남나8350)이륜차	2024-10	001688	2024-10-18	수취인불명
78	940901-*******	주*)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58루5394)자동차	2024-10	001689	2024-10-18	수취인불명
79	661025-*******	신*철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동대문가6198)이륜차	2024-10	001585	2024-10-21	주소불명
80	830623-*******	배*진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37마0940)자동차	2024-10	001612	2024-10-21	이사불명
81	630901-*******	문*숙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49소4891) 자동차	2024-10	001632	2024-10-21	수취인불명
82	951117-*******	신*원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송파파2023)이륜차	2024-10	001645	2024-10-22	기타

선택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세목명	과세대상	과세년월	과세번호	반송일자	반송사유
83	980116-*******	최*조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강서카8539)이륜차	2024-10	001567	2024-10-23	기타
84	930625-*******	조*빈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369어4784)자동차	2024-10	001576	2024-10-23	폐문부재
85	730805-*******	한*희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4-10	001579	2024-10-23	기타
86	900212-*******	김*이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67너1324)자동차	2024-10	001597	2024-10-23	기타
87	870622-*******	김*호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송파자7450)이륜차	2024-10	001605	2024-10-23	기타
88	720511-*******	조*현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서초카4097)이륜차	2024-10	001622	2024-10-23	폐문부재
89	720811-*******	백*정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383루1733)자동차	2024-10	001629	2024-10-23	기타
90	570201-*******	오*묵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노원아2294)이륜차	2024-10	001631	2024-10-23	기타
91	921020-*******	송*영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227노9922)자동차	2024-10	001635	2024-10-23	기타
92	131311-*******	㈜*)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349조1880)자동차	2024-10	001552	2024-10-24	기타
93	850609-*******	곤*)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36호2476)자동차	2024-10	001553	2024-10-24	폐문부재
94	590128-*******	김*용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김운용)	2024-10	001558	2024-10-24	기타

선택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세목명	과세대상	과세년월	과세번호	반송일자	반송사유
95	010110-*******	P*I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64소0200)자동차	2024-10	001559	2024-10-24	폐문부재
96	941128-*******	양*현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관악파2872)이륜차	2024-10	001560	2024-10-24	기타
97	771201-*******	최*호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서초자1828)이륜차	2024-10	001561	2024-10-24	기타
98	630805-*******	김*순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42가0729)자동차	2024-10	001562	2024-10-24	폐문부재
99	680206-*******	노*환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주차행위(서울중차9071)이륜차	2024-10	001563	2024-10-24	기타
100	730428-*******	정*수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관악가3727) 이륜차	2024-10	001565	2024-10-24	기타
101	911026-*******	V*S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관악가5608)이륜차	2024-10	001566	2024-10-24	기타
102	930325-*******	최*문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26오0565)자동차	2024-10	001569	2024-10-24	기타
103	900204-*******	지*근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31라0147)자동차	2024-10	001570	2024-10-24	폐문부재
104	871002-*******	하*름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86구8893)자동차	2024-10	001572	2024-10-24	기타
105	840626-*******	안*성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25부8889)자동차	2024-10	001573	2024-10-24	기타
106	880214-*******	박*규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6무0127)자동차	2024-10	001574	2024-10-24	폐문부재

선택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세목명	과세대상	과세년월	과세번호	반송일자	반송사유
107	961004-*******	김*순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강동타4285)이륜차	2024-10	001575	2024-10-24	기타
108	801014-*******	김*현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동작차7752)이륜차	2024-10	001578	2024-10-24	기타
109	740330-*******	A*H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용산카2745)이륜차	2024-10	001581	2024-10-24	폐문부재
110	691025-*******	강*』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54러1727)자동차	2024-10	001582	2024-10-24	기타
111	800318-*******	W*S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중아3105) 이륜차	2024-10	001583	2024-10-24	폐문부재
112	620401-*******	김*근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김재근)	2024-10	001584	2024-10-24	폐문부재
113	971211-*******	박*환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경기시흥마6698)이륜차	2024-10	001586	2024-10-24	기타
114	920310-*******	조*철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성동바0647) 이륜차	2024-10	001588	2024-10-24	기타
115	620401-*******	김*근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김재근)	2024-10	001590	2024-10-24	폐문부재
116	580514-*******	이*국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광진파5732)이륜차	2024-10	001592	2024-10-24	기타
117	810531-*******	설*호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관악가8513)이륜차	2024-10	001593	2024-10-24	기타
118	870211-*******	현*훈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강북하5135)이륜차	2024-10	001594	2024-10-24	기타

선택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세목명	과세대상	과세년월	과세번호	반송일자	반송사유
119	970524-*******	김*혜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경기성남하0837)이륜차	2024-10	001598	2024-10-24	기타
120	930630-*******	최*을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중파4435)이륜차	2024-10	001600	2024-10-24	기타
121	410530-*******	이*호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중카9255)이륜차	2024-10	001603	2024-10-24	폐문부재
122	830619-*******	최*영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용산자8251)이륜차	2024-10	001606	2024-10-24	폐문부재
123	750216-*******	황*부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강동타4926)이륜차	2024-10	001607	2024-10-24	기타
124	030907-*******	정*우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광진하2610)이륜차	2024-10	001608	2024-10-24	기타
125	560222-*******	최*학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주차행위(서울은평타3713)이륜차	2024-10	001610	2024-10-24	폐문부재
126	940903-*******	송*석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이외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90너5466)자동차	2024-10	001611	2024-10-24	기타
127	810601-*******	정*석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399오8629)자동차	2024-10	001613	2024-10-24	폐문부재
128	840719-*******	김*희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49루9635)자동차	2024-10	001614	2024-10-24	폐문부재
129	850814-*******	김*훈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50조3811)자동차	2024-10	001616	2024-10-24	기타
130	830412-*******	J*E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구로카9407)이륜차	2024-10	001619	2024-10-24	기타

선택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세목명	과세대상	과세년월	과세번호	반송일자	반송사유
131	801010-*******	J*U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24마3389)자동차	2024-10	001621	2024-10-24	기타
132	570519-*******	정*덕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용산카9228)이륜차	2024-10	001623	2024-10-24	기타
133	890816-*******	강*환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은평파4709)이륜차	2024-10	001624	2024-10-24	폐문부재
134	730111-*******	김*문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강동타0273)이륜차	2024-10	001630	2024-10-24	기타
135	720401-*******	박*나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806노9559)자동차	2024-10	001634	2024-10-24	기타
136	610921-*******	S*N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21루4609)자동차	2024-10	001636	2024-10-24	기타
137	900307-*******	최*명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38너2019)자동차	2024-10	001637	2024-10-24	기타
138	790717-*******	김*상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40다7651)자동차	2024-10	001638	2024-10-24	폐문부재
139	961015-*******	변*성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222머9024)자동차	2024-10	001639	2024-10-24	폐문부재
140	730317-*******	박*진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강남다7432)이륜차	2024-10	001656	2024-10-24	기타
141	590305-*******	민*』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22도9057)자동차	2024-10	001664	2024-10-24	기타
142	640216-*******	이*숙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4-10	001665	2024-10-24	폐문부재

선택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세목명	과세대상	과세년월	과세번호	반송일자	반송사유
143	930619-*******	김*준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65소9870)자동차	2024-10	001667	2024-10-24	기타
144	620401-*******	김*근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4-10	001672	2024-10-24	폐문부재
145	690718-*******	이*』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경기의정부아9909)이륜차	2024-10	001680	2024-10-24	폐문부재
146	680130-*******	이*재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4-10	001684	2024-10-24	기타
147	680130-*******	이*재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4-10	001690	2024-10-24	기타
148	841121-*******	이*남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299거9677)자동차	2024-10	001554	2024-10-25	폐문부재
149	940412-*******	이*훈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42어2454)자동차	2024-10	001571	2024-10-25	기타
150	870830-*******	김*율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경기하남다6130)이륜차	2024-10	001595	2024-10-25	기타
151	621018-*******	국*춘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경기고양타6915)이륜차	2024-10	001604	2024-10-25	폐문부재

◈ 미래한강본부공고 제2024-322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부과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규정을 위반한 대상 차량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1. 건 명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행위자(독촉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및 제20조
3. 공시송달 대상 : “세부내역 별첨 참조”
4. 공 고 기 간 : 2024. 11. 07.~ 2024. 11. 20. (14일)
   - 공고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미래한강본부 운영총괄과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 농협, 전국 우체국 및 무인수납기(은행 및 각 구청)등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압류예고 안내
   - 과태료 미납 시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및 국세징수법 제4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납부의무자)의 재산(자동차, 부동산, 예금 등)을 압류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운영총괄과(☏02-3780-08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기 타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431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굴포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주식회사 E1
   -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 (LS용산타워 20층, 21층)

3. 점용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오곡동 699-9
   - 면 적 : 19.4㎡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오수관로 매설
   - 내 역 : 오수관로 매설 1식

5. 점용기간 : (당초) 2019.06.01. ~ 2024.06.30.
   (변경) 2024.07.01. ~ 2029.06.30.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45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중랑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중랑구청(치수과)
 - 주 소 :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3. 점용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중랑구 묵동 361-5
 - 면 적 : 7,994㎡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중랑구 파크골프장 현행화
 - 내 역 : 파크골프장(9홀) 1개소, 가설휀스(H1800×W2000) 358경간,
 방풍막휀스(H1800×W2000) 44경간, 이동식화장실(7×3.4) 1개소,
 이동식관리실(7×3) 1개소

5. 점용기간 : 2024.10.31. ~ 2025.04.31.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458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안양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유림이씨(주)
 -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2385번길 111, 비동3층

3. 점용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40-2, 614-41, 562-2, 340-5,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800-8
 - 면 적 : (당초) 115.18㎡
 (변경) 115.18㎡ 일시 6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안양천 가산 아이월 데이터센터 내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관로 매설
 - 내 역 : (당초) 전력관(D200mm, L=192m) 3공
 (변경) 전력관(D200mm, L=192m) 3공, 가시설 BOX(5m×10m×8m)

5. 점용기간 : 2024.04.04. ~ 영구

6. 공사기간 : 당초 2024.04.04. ~ 2024.09.30.
 변경 2024.04.04. ~ 2024.03.31.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461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영등포구청장(당초, 서울특별시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86-6
 - 면 적 : (당초) 1.7㎡ (변경) 2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당초) 구상(具常) 시비(詩碑) 조형물
 (변경) 구상(具常) 시비(詩碑) 조형물, 조명등 설치

5. 점용기간 : (당초) 2021.2.21.~2026.6.30. (변경) 2024.11.4.~2029.11.3.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463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한강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12층

3. 점용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24번지 ~ 신천동 1번지(11필지)
   - 면 적 : 영구 27,208㎡, 일시 6,178㎡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잠실대교 남단 IC 연결체계 개선공사
   - 내 역 : 차수판 설치위치 변경

5. 점용기간 : 영구

6. 공사기간 : 2021.7.5. ~ 2026.7.4



기관의 장
선람

공람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편집인 홍보기획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02-2133-6455 문의 : ☎120